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문학·출판

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문학·출판

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Contents

52

53

012	편집의 방향과 원칙
013	일러두기
016	52·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016	1. 의결주문
01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19	제1절 조사 개요
019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02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021	제2절 조사 경과
021	1. 문건 등 자료조사
02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024	제3절 조사 내용
024	1. 기초사실
027	2.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055	3. 신청인 서성란, 신현림, 백정희,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 등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057	제4절 조사 결과
057	1. 진상규명 사실
064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064	3. 이 사건의 성격
068	53·'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068	1. 의결주문
06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70	제1절 조사 개요
070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07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071	제2절 조사 경과
071	1. 문건 등 자료조사
07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074	제3절 조사 내용
074	1. 기초사실
078	2.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095	3. 신청인 '인디고서원'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097	4.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라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098	제4절 조사 결과
098	1. 진상규명 사실
103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103	3. 이 사건의 성격



54

106 54·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06 1. 의결주문

10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08 제1절 사건 개요

108 1. 직권조사 취지

108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109 제2절 주요 조사 경과

109 1. 문건 등 자료 조사

11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12 제3절 조사 내용

112 1. 기초사실

113 2.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일반적인 배제사유에 대하여

122 3.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배제지시 및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145 제4절 조사 결과

145 1. 진상규명 사실

150 2. 이 사건의 성격

151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5

154 55·이시영 등 한국문학번역원 배제 사건

154 1. 의결주문

15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55 제1절 조사 개요

155 1. 신청의 취지

156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56 제2절 조사 경과

156 1. 문건 등 자료조사

15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58 제3절 조사 내용

158 1. 기초사실

158 2.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

167 3. 신청인 이시영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번역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170 제4절 조사 결과

170 1. 진상규명사실

56

176 56·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176 1. 의결주문

17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79 제1절 조사 개요

179 1. 신청의 취지

17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80 제2절 조사 경과

180 1. 문건 등 자료조사

Contents

56

18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81	제3절 조사 내용
181	1. 기초사실
183	2. 주목할만한 작가상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설계의 특징
184	3.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여부
192	4. 신청인 김성규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194	제4절 조사 결과
194	1. 이 사건의 성격
195	2. 진상규명사실
198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7

202	57·공지희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202	1. 의결주문
20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03	제1절 조사 개요
203	1. 신청의 취지
204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04	제2절 조사 경과
204	1. 문건 등 자료조사
20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05	제3절 조사 내용
205	1. 기초사실
207	2. 신청인 공지희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207	3. 신청인이 2016 국제교류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배제된 것인지 여부
211	제4절 조사 결과
211	1. 진상규명 사실
21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58

216	58·윤혜숙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216	1. 의결주문
21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18	제1절 조사 개요
218	1. 신청의 취지
218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219	제2절 조사 경과
219	1. 문건 등 자료조사
220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20	제3절 조사 내용
220	1. 기초사실
222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222	3.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234	제4절 조사 결과



58

59

60

- 234 1. 진상규명 사실
- 23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40 59·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

- 240 1. 의결주문
- 24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241 **제1절** 조사 개요
- 241 1. 신청의 취지
- 241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 242 **제2절** 조사 경과
- 242 1. 문건 등 자료조사
- 24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243 **제3절** 조사 내용
- 243 1. 기초사실
- 244 2. 예술위 2016 심의위원 풀제 변경 경위
- 249 3.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라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 250 **제4절** 조사 결과
- 250 1. 진상규명 사실
- 252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256 60·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사업 배제 의혹 사건

- 256 1. 의결주문
- 25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258 **제1절** 조사 개요
- 258 1. 신청 취지
- 259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 259 **제2절** 조사 방법
- 259 1. 자료 조사
- 260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 260 **제3절** 조사 결과
- 260 1. 사건 개요
- 262 2. 자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 266 3.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
- 269 **제4절** 결론

Contents

61

274	61·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
274	1. 의결주문
27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75	제1절 사건 개요
275	1. 신청의 취지
27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276	제2절 조사 경과
276	1. 문건 등 자료조사
27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77	제3절 조사 내용
277	1. 기초사실
279	2. 이창숙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283	제4절 조사 결과
283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62

288	62·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288	1. 의결주문
28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90	제1절 사건 개요
290	1. 직권조사의 취지
290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291	제2절 조사 경과
291	1. 문건 등 자료조사
29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293	제3절 조사 내용
293	1. 기초사실
294	2.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
299	3.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정부기관의 개입 정황
304	4. 형식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출판진흥원 이사회
308	5. 2016년 출판진흥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
313	제4절 조사 결과
313	1. 진상규명 사실
319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63

322 6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배제 사건

322 1. 의결주문
32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25 제1절 사건 개요
325 1. 직권조사의 취지
325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326 제2절 조사 경과
326 1. 문건 등 자료조사
327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29 제3절 조사 내용
329 1. 기초사실
330 2.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선정 배제
339 3.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355 4. 출판진흥원 여타 사업들에 대한 배제 관련
358 5. 배제 도서 작가와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360 6. 기타 사항

363 제4절 조사 결과
363 1. 진상규명 사실
368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368 3. 이 사건의 성격

64

374 6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374 1. 의결주문
37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77 제1절 사건 개요
377 1. 직권조사의 취지
377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378 제2절 조사 경과
378 1. 문건 등 자료조사
38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82 제3절 조사 내용 - 기초사실
382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83 2. 세종도서 사업
384 3.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384 4.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384 5.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385 6.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386 제4절 조사내용 -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386 1.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394 2.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418 3.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Contents

64

- 423 제5절 조사내용 -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사업 선정 배제
- 423 1.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선정 배제
- 430 2.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 444 제6절 조사내용 - 기타 사업들에서의 배제 정황
- 444 1.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 449 2.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 458 3. 출판진흥원 여타 사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 465 제7절 조사 결과
- 465 1.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 471 2.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 477 3.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 479 4. 인문독서 아카데미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 480 5. 이 사건의 성격
- 483 6.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65

- 488 65·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배제 사건
- 488 1. 의결주문
- 48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490 제1절 조사 개요
- 490 1. 신청의 취지
- 49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 491 제2절 조사 경과
- 491 1. 문건 등 자료조사
- 49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493 제3절 조사 내용
- 493 1. 기초사실
- 494 2.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 501 3.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 524 4.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 528 5. 신청인 '창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 537 제4절 조사 결과
- 537 1. 진상규명 사실
- 54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66

- 550 66·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 아카데미 강연, 세종도서 등 배제 의혹 사건
- 550 1. 의결주문
- 55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552 제1절 조사 개요
- 552 1. 신청의 취지
- 552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 553 제2절 조사 경과



66

553 1. 문건 등 자료조사
55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556 **제3절 조사 내용**
556 1. 기초사실
558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559 3.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566 4.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589 5.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593 6.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599 **제4절 조사 결과**
599 1. 세종도서 관련 진상규명 사실
604 2.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관련 진상규명 사실
606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67

610 **67·시인 손세실리아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

610 1. 의결주문
61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12 **제1절 조사 개요**
612 1. 신청의 취지
612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613 **제2절 조사 경과**
613 1. 문건 등 자료조사
61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616 **제3절 조사 내용**
616 1. 기초사실
618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619 3.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626 4.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649 5.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배제 경위

658 **제4절 조사 결과**
658 1. 세종도서 관련 진상규명사실
663 2.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관련 진상규명 사실
665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68

670 **68·'책임은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670 1. 의결주문
67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72 **제1절 조사 개요**
672 1. 신청의 취지
673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Contents

68

673	제2절 조사 경과
673	1. 문건 등 자료조사
67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675	제3절 조사 내용
675	1. 기초사실
676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678	3. 우수문화도서 사업 관련
685	4. 책사회가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조정 관련
690	5. 신청인 책사회가 2015년 내 생애 첫 책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경위
697	제4절 조사 결과
697	1. 진상규명 사실
699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69

702	69·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702	1. 의결주문
70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703	제1절 조사 개요
703	1. 신청 취지
70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704	제2절 조사 경과
704	1. 문건 등 자료조사
705	2. 대인 조사
705	제3절 조사 내용
705	1. 기초 사실
709	2. 조사 내용
713	제4절 조사 결과
713	1. 진상규명 사실

70

718	70·작가 유영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718	1. 의결주문
71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719	제1절 사건 개요
719	1. 신청의 취지
72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720	제2절 조사 경과
720	1. 문건 등 자료조사
722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722	제3절 조사 사항·내용
722	1. 기초사실
724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경위
733	3.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배제 의혹
740	4. 2016년 예북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배제 의혹
745	제4절 조사 결과



70

71

72

745	1. 진상규명 사실
746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750	71·소설가 김성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
750	1. 의결주문
75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751	제1절 조사 개요
751	1. 신청 취지
752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753	제2절 조사 경과
753	1. 자료조사
754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754	제3절 조사 결과
754	1. 신청인의 시국선언 등 참여 내용
755	2. 신청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미행, 감시, 해킹 등 사찰 여부
760	72·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760	1. 의결주문
76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761	제1절 사건 개요
761	1. 신청의 취지
762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762	제2절 조사 경과
762	1. 문건 등 자료조사
763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763	제3절 조사 사항·내용
763	1.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766	2. 공모사업 등 지원·심사위원 배제 사실
769	3. 국가기관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변인을 부당하게 감시하거나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는지에 관한 점
769	제4절 조사 결과
769	1. 진상규명 사실
771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Ⅰ 편집의 방향과 원칙 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3권 말미의 별첨 부분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의 옥고들이 참고 자료로 수록되었다. 4권에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외부 필진이 집필한 부분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의 부록으로 기관별, 분야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이 총 6권으로 편집되었다. 부록 1권은 기관별, 부록 2권과 3권은 공연 분야, 부록 4권은 문학·출판 분야, 부록 5권은 영화 분야, 부록 6권은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조사관)들이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들과 수많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신청 사건들은 주로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에 의해 다루어졌고, 직권 사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건들의 범주화 또는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명을 설정하였다.

이 백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실명으로 표기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 범칙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장관, 차관 및 각 기관장들은 실명을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사무관 이상은 직급과 성까지만 표기하였고, 6급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 본부장과 부장 또는 팀장까지는 직급과 성까지 표기하였고, 그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직급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직위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백서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 확인, 당사자 소명,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백서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김 미 도**

일러두기

분류	원 명칭	약칭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검사, 특검, 박영수특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특검법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 중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기소 사건 재판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법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법
법령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법령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화진흥심사규정
청와대	청와대	BH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감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실
유관기관	대한승마협회	승마협회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총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사업·기금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세종도서
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기금
기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기타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위원 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2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52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문1[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사건번호 2017문 4·5·6·8·9·10 병합)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 (1) 아르코창작기금의 경우, 역량 있는 '문학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1천 만원씩 100여 명에게 지원하는 10억 규모의 대표적인 '창작 지원 사업'으로, 매년 공모에 1천여 명 안팎의 작가들이 신청하는 등 예술인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수혜 사실을 이력에 기재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온전한 개념의 예술가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예술정책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업이다.
- (2) 김기춘 외 6인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도 위 사업에 공모한 특정 신청자를 배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예술위는 체계적으로 명단을 관리하는 한편, 심사 단계에 따라 여러 차례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정 결과 발표를 수개월간 지연시켰으며, 특정한 배제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선정 인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이 가장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된 대표적인 사례이자 강한 집행 의지가 반영된 사례이며, 따라서 블랙리스트 운용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를 보다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시기 예술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운용 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의 파행 과정을 직권조사하였다.

나. 신청의 취지

서성란(2017문4), 신현림(2017문5), 백성희(2017문6), 윤혜숙(2017문8), 안학수(2017문9), 이미애(2017문10)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탈락’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배제’였는지, 해당 사건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다.

다.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위원회의 조사결과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실행 전모는 다음과 같다.

심의단계	일정	신청자 및 심의통과자	청와대 및 문체부의 배제지시	비고
공모 신청	2014. 10. 27. ~ 11.11	959명 신청	76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1차 심의	2015. 1. 21. ~ 22.	198명 통과	16명에 대한 배제지시	무기명 심사
2차 심의	2015. 3. 31. ~ 4. 1.	102명(94명+8명) 통과	6명에 대한 배제지시 8명에 대한 추가 배제지시	
3차 심의	2015. 6. 26.	102명(안) 확정		책임심의위원 배제지시 거부
위원회 서면결의	2015. 7. 17.	70명(안) 확정	5명 배제	선정 인원 축소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청와대-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집요한 실행으로 ① 심의일정 지연, ② 배제기준 고안, ③ 최종 선정인원 축소, ④ 잔여예산 발생 등 여러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업이다.

예술위는 2014. 11. 청와대 및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공모 신청자 949명의 명단을 송부하고, 이에 청와대 및 문체부는 76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을

하달하였다. 2015. 1. 22. ~ 22. 1차 심의 이후 심사를 통과한 198명의 명단을 예술위는 문체부에 다시 보고하였고,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다시 16명의 배제명단을 예술위에 하달하였다. 이들에 대한 배제명분을 찾지 못해 계속하여 심의일정이 지연되어 2015. 3. 31. ~ 4. 1.경 2차 심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심의의 통과자 총 102명(2차 심사 통과자는 94명, 배제명단이 계속하여 내려올 것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8명 선정) 중 청와대 및 문체부에서 1차 심의결과 중 배제를 지시하였던 16명 중 5명이 통과자에 포함되었고, 문체부는 다시 이 5명에 이윤택을 추가하여 총 6명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 4. 23.경 8명에 대한 추가 배제지시가 다시 하달되어 총 14명에 대한 배제지시가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배제방법을 찾지 못하자 문체부는 3차 심의 일정을 계속해서 승인하지 않았고, 2015. 6. 26.에야 3차 심의가 열렸으나, 책임심의위원들은 배제명단 적용을 거부하고 2차 심의에 따른 102명(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예술위는 최종적인 배제명단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정인원을 70명으로 축소하여 2015. 7. 17. 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술위는 선정인원을 축소하고 배제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시와 소설분야는 60%로 축소지원 결정 등 형평성이라는 표면적 사유를 내세워 여러 배제기준을 고안하였다.

이처럼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블랙리스트의 극심한 실행으로 당초 공고되었던 심의기간(2014. 11.~2015. 2.)보다 약 5개월 여 늦춰진 2015. 7. 17.자 위원회 서면결의로 최종 선정자가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인원을 70명으로 축소하면서 해당 사업의 예산(총 10억원)에서 약 3억원 가량의 잔여예산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은 선정자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0억원을 고려하면 최대 1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였던 사업이며, 예년에는 9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인원 축소 과정에서 3차 심의에서 책임심의위원들이 확정하였던 94명(안)이 위원회 서면결의 과정에서 70명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총 32건의 블랙리스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들 중 블랙리스트로 인한 직접적인 배제는 5건이며, 나머지 27건의 신청자들은 블랙리스트 실행의 여파로 선정인원이 축소되면서 피해를 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붙임 :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문1,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2017문4, 5, 6, 8, 9, 10,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배제 사건(병합)

[신청인] 서성란, 신현림, 백정희,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 (1) 아르코창작기금의 경우, 역량 있는 ‘문학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1천만원씩 100여 명에게 지원하는 10억 규모의 대표적인 ‘창작 지원 사업’으로, 매년 공모에 1천여 명 안팎의 작가들이 신청하는 등 예술인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수혜 사실을 이력에 기재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온전한 개념의 예술가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예술정책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업이다.
- (2) 김기춘 외 6인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도 위 사업에 공모한 특정 신청자를 배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예술위는 체계적으로 명단을 관리하는 한편, 심사 단계에 따라 여러 차례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정 결과 발표를 수개월간 지연시켰으며, 특정한 배제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선정 인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이 가장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된 대표적인 사례이자 강한 집행 의지가 반영된 사례이며, 따라서 블랙리스트 운용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3)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를 보다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시기 예술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운용 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의 파행 과정을 직권조사하였다.

나. 신청의 취지

서성란(2017문4), 신현림(2017문5), 백정희(2017문6), 윤혜숙(2017문8), 안학수(2017문9), 이미애(2017문10)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탈락’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배제’였는지, 해당 사건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1) 2017직문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9. 29.자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2) 신청인 서성란, 신현림, 백정희,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및 병합 의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조사 개시하고, 아래 다수의 사건들이 2017직문11(‘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병합을 의결하였다.

신청인 서성란 및 백정희의 신청 사건(2017문4, 6)은 2017. 10. 20.자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및 2017직문1(‘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신청인 안학수의 신청 사건(2017문9)은 2017. 10. 27.자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및 2017직문1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신청인 이미애의 신청사건(2017문10)은 2017. 11. 3.자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및 2017직문1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신청인 신현림의 신청사건(2017문5)은 2017. 12. 8.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및 2017직문1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3) 신청인 윤혜숙(2017문8)의 신청사건 중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관련 조사 신청 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10. 27.자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의 조사는 먼저 청와대-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의 전반적인 경위를 밝힌 다음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심의 단계마다 어느 정도 규모의 배제명단이 하달되었는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예술위가 책임심의위원들에게 배제명단 적용을 설득한 경위, 최종적으로 3차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70명 선정 축소안으로 서면결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이 파행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및 예술위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인지 및 가담 여부, 구체적인 배제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7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2014-2017 예술위 문학 관련 사업 지원자 및 선정자 자료	예술위	2017. 11. 10.	
2	제4차 예술지원 소위원회 회의자료	예술위	2017. 11. 10.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3	-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추진현황			
4	예술위 제164차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서면) 공문	예술위	2017. 11. 10.	
5	예술위 제164차 위원회 회의자료(서면)	예술위	2017. 11. 10.	
6	-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과			
7	예술위 제164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 공문	예술위	2017. 11. 10.	
8	예술위 제161차 위원회 회의 속기록	예술위	2017. 11. 10.	
9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및 「리스트-2016.9.27현재」	오OO	2017. 8.	
10	2015. 7. 6.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리스트			
11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문			
13	참고인 김OO 2016. 12. 19.자 특검 진술조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14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5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6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박민권 2017. 6.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6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김중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7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8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9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20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2014. 12. 19.)	오OO	2017. 8.	
21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2015. 1. 15.)	오OO	2017. 8.	
22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2015. 1. 27.)	오OO	2017. 8.	
23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2015. 3. 9.)	오OO	2017. 8.	
24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2015. 5. 11.)	오OO	2017. 8.	
25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2015. 5. 21.)	오OO	2017. 8.	
26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현안 보고(2015. 7. 3.)	예술위	2017. 8.	
27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2015. 10. 2.)	예술위 박명진	2017. 10.	당시 박명진 위원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용 자료로 작성한 문건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총 4인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정OO	예술위 창작지원부 차장	진술조서(2017. 10. 13.)
2	장OO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진술조서(2017. 12. 12.)
3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진술조서(2018. 2. 1.)
4	오OO	예술위 위원	진술조서(2017. 12. 12.)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나.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1) 2014. 10.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문학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 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2)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경과

구분	일정	심의대상	심의기준	심의위 구성	심의위원
1차 심의 (장르별)	1. 21. ~22.	959건	미발표원고 (100%) (무기명심사)	장르별 심의위원회	(시) 이00, 김00, 조00, 정00, 문00 (소설) 윤00, 김0, 강00, 이00, 윤00 (시조) 홍00, 이00 (동시) 장00, 이0 (동화) 유00, 김00 (희곡) 조00, 고00 (평론) 김00, 김00 (수필) 고00, 류00
2차 심의 (장르별)	3. 31. ~4. 1.	198건	작가의 잠재성(30%), 집필계획(30%), 미발표원고(40%)	외부 전문가 + 문학 책임심의위원	(시, 시조) 유00, 김00, 유00 (소설) 이00, 권00, 박00 (동시, 동화) 최00, 선00 (수필, 희곡, 평론) 하00, 정00, 이00
3차 심의 (장르 통합)	6. 26.	102건	장르 통합 평가	문학 책임심의위원	권00, 김00, 유00, 이00, 하00

(3) 최종선정(안)

구분	시	소설	시조	동시	동화	수필	희곡	평론	계
신청건수	383	197	58	86	123	71	24	17	959
1단계 결정건수	82	42	12	18	26	8	7	3	198
2단계 결정건수	41	24	6	9	14	4	3	1	102
- 지원후보	40	22	6	7	12	4	2	1	94
- 예비사업	1	2	-	2	2	-	1	-	8
3단계 결정건수	41	24	6	9	14	4	3	1	102
- 지원후보	40	22	6	7	12	4	2	1	94
- 예비사업	1	2	-	2	2	-	1	-	8
최종지원대상	24	14	6	7	12	4	2	1	70

(4) 잔여예산 현황(단위: 천원)

사업명	2015년 예산	지원결정액	잔여예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000,000	700,000	300,000

다. 주요 관여자

순번	기관	이름	사건 당시 직책
1	예술위	이OO	본부장
2		장OO	부장
3		정OO	차장
4		오OO	위원
5		권영빈	위원장
6		박명진	위원장
7	문체부	오OO	사무관
8		이OO	과장
9		김OO	예술정책관
10		박민권	차관
11	청와대	김종덕	장관
12		김OO	교문수석실 행정관
13		김소영	교문수석실 비서관
14		김상률	교문수석

2.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가. 관련 리스트

(1) 오OO 관리,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은 문체부 오OO 서기관이 관리한 것으로,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이라는 기재는 사업이 워낙 방대하여 문학 분야는 총 관리해야 할 리스트가 118명 정도라는 통계를 내서 정리한 내용으로, 2015 예술위 공모사업 관련 문학분야에서는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② 문학창작공간지원, ③ 우수문예지발간 등이 사업들의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총 118명을 배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¹⁾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사업명	신청 건수	1차 검토	2차 추가	비고
① 아르코문학 창작기금 14년(신청/신청) 399/941 92명	959	○ 총 74명 각정현(75), 공광규(60), 최규석(50), 김도영(79), 김 미영(75), 김미애(72), 김상경(59), 김영희(64), 김윤길 (57), 김은경(65), 김정희(58), 김중경(68), 김태형(71), 김필남(81), 김현주(61), 박남희(56), 박해선(69), 박해 숙(58), 박홍식(43), 방현희(64), 배봉기(57), 백정희 (52), 서규영(49), 서성민(67), 서유미(75), 설황숙(58), 손명림(67), 송명희(57), 송은일(64), 송호림(62), 신덕 룡(56), 신동욱(77), 신현영(61), 안지숙(61), 안학수 (54), 오미경(65), 윤동수(60), 윤원일(51), 유이주(68), 윤태숙(62), 이경희(75), 이노영(80), 이동애(65), 이표 진(67), 이덕애(64), 이병순(64), 이상권(64), 수필사 아칼리 (64), 이선(62), 이성목(62), 이정희(61), 이지영(58), 이광숙(95), 이철경(66), 임분(70), 임수영(62), 임수현(75), 장태훈(65), 선영환(61), 권	○ 2차 추가 : 총 17명 - 2차 추가 검토 및 - 각정현 - 1차 무기명 심사결과 118명 중 16명(*15.1.22) 김정현, 김성철, 김은경, 김은진, 김필남, 박남희, 박 해선, 백정희, 서유미, 신동욱, 이상권, 이성목, 이경 희, 이지영, 조황미, 황은덕 ○ 3차 추가 : 총 14명 - 2차 심사결과 6명(*15.4.1) - 김정현, 김은경, 박남희, 이상권, 이성목, 이숙애 - 추가자 8명(*15.4.23) - 박석근, 권희순, 정광우, 김해경, 박선희, 김영권, 박 진성, 이경목 ○ 4차 확인(15.6.22) - 이숙애 제외함 13명 중 1명(박선희) ○ 정무리스트 추가(*15.7.6)	
		배훈(55), 정이진(57), 조성익(63), 조윤희(62), 조계도 (67), 조할미(70), 지노휘(76), 최종선(54), 최영진(76), 최영철(58), 최영철(64), 최상진(70), 한정훈(63), 황신 영(63), 황준석(66)	○ 중척(4), 장정현, 김은경, 이상권, 하선희 - 추가(5) 구정미, 김경, 김미진, 김서영, 김지희, 김인숙, 유 종인, 이재훈, 최영진 ○ 최종 : 5명 제외(15.7.17 최종 확정) - 박석근, 이숙애, 김영권, 이성목, 권희순	

1)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2) 2015. 7. 6. 받음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리스트

(가) 2015. 7. 6. 받음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명단 문건은 이OO 과장으로부터 정무 수석실에서 온 것으로 들어 알고 있으며, 해당 문건은 아르코문학창작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시 6월쯤 청와대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98명 통과자 명단을 다시 보내라고 해서 송부였고 이렇게 보내고 나니 "이게 제외할 명단이다"라고 출력번호로 이OO 과장이 받아와 오OO이 수령한 날짜가 7. 6.이었다.2)

(나) 해당 명단과 관련하여서는 참고인 이OO가 청와대에 가서 김OO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건이다.3)

2015. 7. 6. 받음

번호	서명명	대표자	지원신청금액	종류	연의미	참고문헌
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차용선 서명명			연의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차우도 친구 허나를 > 필자(가명)	김영란	10,000,000	동시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전향실	10,000,000	동시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향숙	10,000,000	동시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신상 '연애의 열정' (가명)	정재훈	10,000,000	동시	문신상 제출 받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홍시영 필자	김영란	10,000,000	동시	문신상 제출 받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차우도 친구 허나를 > 필자(가명)	공영갑	10,000,000	동시	문화예술계 3차인 연의미 2차 지원(2012.12.15)
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미희 동시명 <사랑 담긴 문채란>	김미희	10,000,000	동시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채	최익숙	10,000,000	동시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최향실	10,000,000	동화, 단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기금	박윤숙	10,000,000	동화, 단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시영 동화 창작실	김나영	10,000,000	동화, 단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홍영일 (문학) 고봉 외 1명	김영란	10,000,000	동화, 단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란	10,000,000	동화, 단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첫사랑은 영웅은>-필자	전향실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기금 나경나외 1명 사두루스	김효미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미애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동화 창작실	백성민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1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최은영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신상 2차 지원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민호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홍영일 동시명 <사랑 담긴 문채란>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소녀의 열정>-필자	이국진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정은숙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창작실 <나나를 > 필자	이시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향숙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2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향숙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그레고리 문학부 수필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남지영 창작실 필자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랑의 열정' 필자	박영민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4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기금 <사랑 담긴 문채란>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기금 <사랑 담긴 문채란> (가명)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6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홍기영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기금	이향숙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8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소녀의 열정>-필자(가명)	이향숙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39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영란	10,000,000	동화, 장편	연의미 제출 쓰고 만드는 사람들 2차 지원(2012.12.15)

나. 청와대-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가)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5쪽)

- 1) 장OO은 2016. 5. ~ 현재는 평창문화올림픽TF 팀장이며,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7. 12.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당시 예술위는 2014. 11. 11.경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공모가 마감되자, 문

2)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3)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2. 1.자 진술, 진술조서 15-16쪽).

체부에 시, 소설 등 세부 장르별 지원신청 현황을 기재한 통계를 보고하였는데, 문체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예년과는 달리 959명의 신청자 전원의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기재하고 작품분석을 하여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는 이 전례 없는 지시에 따라 신청자들의 생년월일, 작품의 내용까지 분석하여 다시 문체부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보고 이후 약 76건 정도의 배제 명단이 예술위에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5쪽)

참고인 정OO은 현재 예술위 문학지원부 부장이며, 2013년에는 창작지원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당시 장OO과 함께 일하였다. 참고인 정OO은 2017. 10. 13.자 위원회 조사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와 관련하여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진행 당시 문체부에서 공모 신청자 명단 등을 요구하였으며, 문체부에서 유선상으로 명단의 번호나 실명으로 배제를 요청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6쪽)

- 1) 이OO은 2013. 하순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 2)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공모신청내역, 각 단계별 심사결과 내역을 송부토록 하였고, 송부 후 배제명단을 하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과 장OO은 오OO 사무관이 불러주는 지원배제 대상을 받아적었고, 이를 이OO 예술위 사무처장과 당시 권영빈 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명단을 보고한 것은 아니나 문체부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보고는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해당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배제지시 건이 너무 많아서 문체부에 이렇게까지 배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대한 배제명수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문체부에 다시 보고하고 다시 배제지시를 받는 과정이 반복되어 3~5개월 정도 최종 발표가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2, 16-17, 29쪽)

- 1) 오OO은 2012. 4.경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오OO은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에 지시가 내려오면 이 지시를 주로 국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3) 오OO은 2014. 11.경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자 전체 리스트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6쪽). 청와대에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문예지금 지원사업 정기공모 신청이 만료되는 시점에 명단을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5년 해당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배제지시를 문체부 김OO 국장을 통해 전달을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4) 오OO은 위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주로 유선상으로 예술위 직원 이OO, 장OO, 류OO 등에게 전달하였고, 직접 만나서 대책을 세우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마) 참고인 이OO의 2018. 2. 1.자 진술 및 2017.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 1) 이OO는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2. 1.자 진술, 진술조서 15-16쪽)
참고인 이OO는 2018. 2. 1.자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해당 사업의 경우 블랙리스트가 극심하게 실행되었던 경우로 막판에는 사업 포기 각오도 하였었으며, 결국 70명 정도만 선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청와대와 지난한 협의를 거친 결과였다고 진술하였다.
- 3) 이OO 2017.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5쪽)
김OO 행정관이 이OO에게 예술위 공모사업 지원배제자 명단을 유선상으로 전달

할 때는 주로 김OO 국장에게 하였고, 리스트 형태로 2015. 7.경 김OO으로부터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배제명단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지시였기 때문에 모두 장·차관에게 보고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바) 김OO 2016. 12. 19.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진술조서 8-11, 15쪽)

- 1) 김OO은 2014. 11. 1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문체부 예술정책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2015. 1.~2.경 유선상으로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이 일부 배제 명단을 불러주어 받아적었고, 당시 오OO 사무관에게도 일부 명단을 불러주어 오OO 사무관이 받아적고 명단을 만들어 김OO에게 보고하였으며, 오OO 사무관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일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 배제명단은 예술위 공모지원 사업에서 제외해야 할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또한 김OO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은 문체부 장·차관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 4)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소영 문체비서관 또한 김OO에게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사들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사) 박민권 2017. 6. 14.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5쪽)

- 1) 박민권은 2015. 2. 9.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박민권은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대상자 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과정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아)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7쪽)

- 1) 김종덕은 2014. 8. ~ 2016. 9.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 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며, 김소영 비

서관이 지시를 하여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자)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8쪽)

- 1) 김OO은 2014. 10. 20.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이하 '교문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이하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하였던 자이다. 김OO은 2017. 5. 31. 2017고합102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증인신문 녹취서에 기재되었다.
- 2) 김OO은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김OO은 2014. 11.경부터 문체부로부터 예술위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받아서 검토하였으며, 이 명단을 받아 국민소통비서관실에 보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김소영 비서관은 김OO에게 문체부로부터 받은 신청자명단을 정무수석실 산하 소통비서관실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김OO은 봉투에 밀봉한 신청자 명단을 국민소통비서관실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명단을 보내면, 소통비서관실에서 지원배제명단을 체크하여 다시 문체비서관실로 보내는 과정을 거쳤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비서관은 김OO에게 예술위 공모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소통비서관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낸 지원배제명단은 김소영 비서관이 받았고, 김OO이 그 명단을 문체부에 알려주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1.과 12. 예술위 관련된 지원사업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소통비서관실에서 지원배제 명단을 선별해주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소통비서관실에서 지원배제대상자로 선정한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자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대응을 비판한 인사 등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 4) 김OO은 2014. 11. 문체부로부터 예술위가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공고한다는 보고를 듣고,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문체부 오OO 사무관으로부터 공모 신청자 명단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 후, 신청자 명단을 봉투에 밀봉하여 소통비서관실에 보냈고, 소통비서관실

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받으면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배제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보내주었다.

(차)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8-14쪽)

- 1) 김소영은 2013. 11.경부터 2016. 9. 2.까지 대통령 비서실 문체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김소영은 문체부 오OO의 2014. 12. 19.경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문체비서관실에 보고한 후 2014. 12. 말경부터 지원배제명단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하여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지원 사업 진행과정 보고 여부에 대하여 아르코문학의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1차 심사가 끝난 후 198명 명단이 보고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신청현황 외에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품내용까지 요약한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그러한 명단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4) 해당 사업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에 대해서는 위 명단을 보고받았다는 사실 이외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카)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3-5쪽)

- 1) 김상률은 2014. 11. 18.부터 2016. 6. 7.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김상률은 교문수석으로 재직 당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3쪽).
- 3) 2014. 12. 19. 8:50 장관보고필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5쪽).

다. 위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승부 후 하달된 약 76명에 대한 배제지시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4. 12. 19.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 (가) ‘2014. 12. 19. 8:50 장관보고필’ 가필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현황’ 문건은 오OO이 작성한 문건이며, ‘2014. 12. 19. 8:50 장관보고필’ 수기는 김OO 국장이 기재한 것이고,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다.⁴⁾
- (나) 총 신청건수 1,989건 중 특이사항 106건이라는 기재와 함께 ‘1. 문학분야’ 특이사항에 ‘아르코창작기금 7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재판기록 중 이OO 2016. 12. 26.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기재내용은 예술위에 지원신청한 건수가 총 1,989건이고 그 중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문제 있는 건수가 106건이라는 의미이고 각 표의 ‘특이사항’란에 문제 사업의 건수가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표의 ‘방안’란에 해당 사업마다 지원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14.12.19 8:50 장관보고필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총 신청건수 1,989건 중 특이사항 106건

1. 문학분야

신청	특이사항	방안
총 1,103건 - 아르코창작기금 959 - 우수문예지지원 99 - 문학행사지원 45	총 83건 - 아르코창작기금 76 - 우수문예지지원 5 - 문학행사지원 2	○창작기금 -1차심사(무기명심사) 통과자(약 200명 이내) 대상으로 주활동자 위주 제외 ○우수문예지, 행사지원: 심사에서 제외

4)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2015. 1. 15.자)

(가) 2015. 1. 15.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은 오OO이 작성한 문건이며, 청와대에서 배제대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다.⁵⁾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15.1.15(월)

□ 심사 현황

분야	진행상황	검토	발표시기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심사완료	특이사항 없음	‘15.1월말
시각예술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민운기)	‘15.1월말
소외계층문화순회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윤시중)	‘15.1월말
다원예술	심사진행중	특이사항 총 11건 전부 제외예정 -프린지페스티벌 등	‘15.1월말
연극분야	심사예정(1월3주)	특이사항 총 12건 전부 제외예정	‘15.1월말
문학분야	공간,국제지원-완료 창작기금-심사중 문예지,행사지원-미정	별도방안 모색 중(총 99건) -창작기금, 무기명 심사시 일부제외 예상 -심사완료분야 4건추가 발생	별도방안 마련

(3)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2015. 1. 27.자)

(가) 2015. 1. 27.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문건은 오OO이 작성한 문건이며, 문건 상단에 2015. 1. 27.(화) 17:40 장관보고필이라는 가필은 김OO 국장이 기재한 것이고, 해당 문건은 당시 1월 초에는 예술위 지원대상 확정 발표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지원배제 명단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1안, 2안으로 나누어 방안을 수립해본 문건이며,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되었다.⁶⁾

5)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6)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나) 해당 문건에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현황과 관련하여 문제사업 건수로 '76건'이 명시되어 있다.

'15. 1. 27 (화) 17:40 상산빌딩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27(화)

□ 지원심의 현황

분야		지원심의 현황(문제사업 건수)
심의 진행 중	문학	○ 문제사업 - 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 (76건) 문예지지원사업 (11건)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6건) 민간국제교류지원(5건)
	연극	○ 비평연구활성화지원 (1건) 민간국제교류지원(연극) (10건)

[검토사업 현황]

○ 문학

- (심의예정)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 : 958명중 76명
- (심의예정)우수문예지지원사업 : 99건 중 11건
 - * 1차 : 발견(황학주), 천년의시작(채상우), 시와문화(박몽구), 실천문학(김남일) 작가들(한국작가회의인천지회 문계봉)
 - * 2차 : 시와동화(강정규), 문학수첩(강봉자), 주변인과학(김명관), 문학동네(강병선) 문학N(이종찬), 문학나무(윤영수)

(4)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5쪽)

(가) 장OO은 2016. 5. ~ 현재는 평창문화올림픽TF 팀장이며,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7. 12.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현황 보고 이후 문체부로부터 약 76건 정도의 배제 명단이 예술위에 내려왔으나, 1차 심의는 무기명 심사로 배제명단을 적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설명하였고, 1차 심의의 경우 배제명단의 적용없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6-7쪽)

(가) 참고인 정OO은 현재 예술위 문학지원부 부장이며, 2013년에는 창작지원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당시 장OO과 함께 일하였다. 참고인 정OO은 2017. 10. 13.자 위원회 조사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1차 심의는 무기명 심사로 배제리스트를 적용하지 못하였고, 문체부에서는 공모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 아니라 심사일정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7쪽). 위의 배제지시는 주로 문체부의 오OO이 사무관이 예술위의 장OO 부장에게 하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5. 1. 21.경 1차 심사 통과자 명단 보고 및 16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1)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2015. 3. 9.자)**

‘2015. 3. 12. 14:50’ 가필 2015. 3. 9.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은 오OO이 작성한 문건으로 상단에 수기로 ‘2015. 3. 12. 14:50’은 김OO국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한 일시를 기재한 것이며, 문건상 ‘1차 검토’란과 ‘2차 추가’란, 현재 상태 ‘1차 심사결과 통과자 198명에 대한 의뢰 중’이라는 기재는 “198명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건이다.⁷⁾ 해당 문건의 붙임자료에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배제대상자 리스트가 2차 검토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다.

7)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21-22쪽.

'15. 3. 12 / 14:50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15.3.9(월)

□ 심의보류사업 현황

분야	지원심의 현황(문제사업 건수)
문학(9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창작기금지원 (71건) → 16건으로 감소 ○ 우수분예지지원 (11건)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8건) ○ 민간국제교류지원(5건)

붙임 문약분야

사업명	신청 건수	1차 검토	2차 추가	현재상태
①아르코문학창작기금 14년(선정/신청) :99/941	959	○ 총 71명(저체발굴)-동명이인 등 포함 강정연(75), 공광규(60), 김규성(50), 김도연(72), 김미영(75), 김미애(72), 김장진(59), 김영희(64), 김용권(57), 김은경(65), 김정희(58), 김종경(68), 김태형(71), 김필남(81), 김현주(61), 박남희(56), 박혜선(69), 박혜숙(58), 박홍익(43), 방원희(64), 배복기(57), 백정희(52), 서규경(49), 서성민(67), 시유미(75), 성향숙(58), 손필래(67), 송영희(57), 송은원(64), 송호필(62), 신덕봉(56), 신동욱(77), 신현림(61), 안지숙(61), 안학수(54), 오미경(65), 윤동수(60), 윤원일(51), 윤이주(68), 윤혜숙(62), 이경희(75), 이나영(80), 이동애(65), 이보선(67), 이미애(64), 이병순(64), 이상권(64,수필), 이상권(64,시), 이선(62), 이성옥(62), 이정희(61), 이지담(58), 이창숙(65), 이원경(66), 임봉(70), 임수영(62), 임수연(76), 장대순(65), 권영권(61), 정세훈(55), 정익진(57), 조성국(63), 조용미(62), 조계도(57), 조항미(70), 차노희(74), 최종현(54), 최민진(76), 최영철(58), 최영철(64), 최창근(70), 한장훈(63), 황신일(63), 황은덕(66)	○ 총 17명 - 2차 추가검토자 : 장정규 - 1차 무기명 심사결과 16명(저체발굴) 강정연, 김상정, 김은경, 김종영, 김필남, 박남희, 박혜선, 백정희, 서유미, 신동욱, 이상권, 이상복, 이정희, 이지담, 조항미, 황은덕	- 1차 심사결과 통과자 198명에 대한 의외 등
②우수분예지발	99	○ 총 5명		

(2)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5쪽)

(가) 장OO은 2016. 5. ~ 현재는 평창문화올림픽TF 팀장이며,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7. 12.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2015. 1. 21.~22.경 1차 심사가 끝난 후 심사를 통과한 198명 명단을 문체부에 다시 보고하였다. 이를 받은 문체부는 16명 배제명단을 다시 하달하였고, 2차 심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이 작품을 읽고 각자의 재량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제명단을 적용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5. 4. 1.경 2차 심사 통과자 명단 보고 및 추가 배제지시 하달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자)

2015. 5. 11.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관련 현안' 문건은 오OO이 청와대에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며, '공모사업 총 213건 배제 조치(14.6.월~현재)'는 2014. 6.부터 문건 작성일 2015. 5. 11. 사이에 총 213건을 배제조치하였다는 의미이고, 문제점 및 검토의견란에 '공모사업이 2015년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특이사항 확인절차 지연'라는 기재가 있으며, '사회이슈와 연계된 특이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의 참고자료에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에서 배제명단의 적용이 3차까지 진행된 현황이 적시되었다.

□ 문제점 및 검토의견

[문제점]

- 공모사업이 15년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특이사항 확인절차 지연
 - 신청건수 증가→확인대상 지속 증가→ 확인과정 부하·지연 →심사절차 지연→사업추진

- 5 - 5128

순연→단체 불만 누적, 부정적 여론화 추세

- 문학 및 연극분야의 경우 특이사항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 곤란한 상황
 - 사회이슈와 연계된 특이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점점 줄어들어 현재의 공모시스템에 한계

참고3

2015년 예술위, 문예기금 정기공모사업(요약)

분야	세부사업	예산	지원 확정액	신청 건수	선정 건수	검토
	합계	2,769	791	1,137	40	1건 심사미정
	아르코창작기금 지원	990	미정	958	미정	예심(1,2차)에서 총 75건중 69건 배제 3차:6건+8건추가, 14건 •별도기준으로 7건 제외, 7건 잔여상태

(2)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6-7쪽)

- (가) 장OO은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7. 12.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나) 배제명단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술위는 심의계획을 계속 미루다가 2015. 3. 31.~2015. 4. 1.경 2차 심사를 하여 심사통과자 102명을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보고하였다. 당시 2차 심사 통과자는 94명이었으나, 청와대에서 배제명단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8명을 추가하여 102명을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예비후보자 8명을 추가로 통과시킨 것은 94명 명단 중 배제지시가 내려올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선정해 놓은 것이다. 다만, 문체부가 1차 심사결과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16명 중 강OO, 김OO, 박OO, 이OO, 이OO 5명에 대한 배제명분을 찾지 못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고, 문체부는 위 5명에 이윤택을 추가하여 총 6명을 지원에서 배제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 (다) 지원배제 명분이 없음에도 청와대의 거듭된 배제지시를 하달받아 난처한 입장에 있던 예술위는 2015. 4. 갑자기 1차 심사결과를 다시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명단을 송부하자 2015. 4. 23.경 이전에는 배제대상에 없던 박석근, 전석순, 정광모, 김혜정, 하신아, 김병곤, 박진성, 이정록 등 8명을 추가배제할 것을 지시하였

다. 이로써 예술위는 2차 심사통과자 102명 중 14명(6명+8명)에 대한 배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바. 예술위 직원들의 해당 사업 책임심의위원(권OO, 유OO, 이OO, 하OO) 배제명단 적용 설득 경위

(1)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6쪽)

- (가) 장OO은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7. 12.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나) 예년의 경우 2차 심사가 끝나면 바로 3차 심사가 이어졌고, 이는 2차 심사를 그대로 확정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2015년도 사업의 경우 청와대에서 지원배제 지시가 계속 하달되는 상황 속에서 대상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자 문체부는 3차 심사일을 계속하여 승인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예술위 장OO 창작지원부장 등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위 직원인 장OO 등은 예술위 위원 오OO, 책임심의위원 하OO, 이OO, 권OO 등을 직접 만나 상부의 배제지시로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고, 사업 자체가 중단되게 생겼으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2)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6-7쪽)

- (가) 이OO은 2013. 하순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 (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배제건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심의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들에게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들을 계속하여 설득하면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아예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한다고 심의위원들에게 읍소를 하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사업 심사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들이 문체부 지시에 따르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였고, 이OO은 2015. 6.경 책임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상황보고를 하면서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소위원회 차원에서 배제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발표를 할 것인지, 발표를 연기하고 다시 양해를 구할 것인지 중 결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8-9쪽)

(가) 참고인 정OO은 현재 예술위 문학지원부 부장이며, 2013년에는 창작지원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당시 장OO과 함께 일하였다. 참고인 정OO은 해당 사업의 책임심의위원들을 만나 배제명단 적용을 설득한 경위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2차 심의 이후 배제명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장OO 부장과 함께 책임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문체부에서 배제명단이 하달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심의과정에 적용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8쪽). 하OO, 김OO, 권OO 심의위원은 장OO 부장과 함께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이OO 심의위원의 경우는 참고인 정OO이 단독으로 만나 상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9쪽).

사. 3차 심의 과정 및 2015. 7. 17.자 서면결의로 70명 선정 축소안 결정 경위

(1)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3차 심의회의 심의결정서 및 제164차 예술위 회의 안건서

2015. 6. 26.자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3차 심의회의 심의결정서에는 102건의 최종 지원대상 선정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2015. 7. 17.자 예술위 서면결의로 진행된 제 164차 예술위 회의 안건서를 보면 지원선정건수로 '70건'이 기재되어 있다.

심 의 결 정 서

□ 회의명 :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3차 심의회의

□ 안 건 :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최종 지원대상 선정(3차)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수임(受任)하여 불입과 같이 결정합니다. (102 건, 세부내역 불입 참조)
(102 건, 세부내역 참조)

2015. 6. 26.

심의위원	김 00	김 00	김 00
심의위원	하 00	김 00	김 00
심의위원	오 00	김 00	김 00

붙임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대상 최종 결정 내역서 1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6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

□ 안건번호 : 제 458호

□ 안 건 :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대상 결정의 건

□ 회의구분 : (공개, 비공개)

1. 의 결 주 문

○ 2015년도 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2. 제 안 사 유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와 전문 심의위원의 기능)에 의거하여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을 확정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지원결정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지원신청현황			지원결정현황				
	지원신청건수 (A)	신청액 (B)	예산배정액	지원신청건수 (C)	비율 (C/A)	결정액 (D)	비율 (D/B)	잔여예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969건	9,590	1,000	70건	7.22%	700	7.29%	300

(2) 예술위 작성,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현안 보고’(2015. 7. 3.자)

예술위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위 문건의 작성 일자(2017. 7. 17.)를 보면 3차 심의(2017. 6. 26.) 이후 2017. 7. 17.자 서면결의 사이에 작성되었다.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3차 심의위원회에서 특이사업 14건 해소를 추진하였으나 심의위원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대책으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특이사업 전체 해소에 실패하였으니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결 불가피’라는 내용이 적시되었다.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현안 보고

'15. 7. 3(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⑧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추진경과

- 접수 기간 : 2014.10.27(월)~11.11(화) / 총 접수건수 959건
- 자원심의 추진경과

구분	일정	목적	심의결과
1차 심의 (장르별)	1.21(수), 22(목)	2차 심의 대상 추천	198건 선정
2차 심의 (장르별)	3.31(화), 4.1(수)	수상후보자 추천	94건 선정
3차 심의	6.5(금)	최종 지원 후보 결정	94건 장르통합심의 특이사업 논의
	6.26(금)		

□ 심의결과 및 특이사업 현황

- 2차, 3차 심의결과 : 94건 선정
- 특이사업 논의
 - 최종지원후보 (94건) 중 중 특이사업 (14건) 포함
 - 3차 심의위원회에서 특이사업 14건 해소 추진 : 심의위원 불가입장 교수
- 건의사항(향후대책)
 -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특이사업 전체 해소 실패 ⇒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결 불가피**
 - 건의사항 : 위원회 의결 시 14건 중 5건 해결 (9건 미결) 불가피성 양해
 - ※ 위원회 전체회의는 작품성 판단이 불가하여 전체 해결 곤란
 - ※ 계부장관 안배 차원(정책적 판단)에서 비중이 큰 시, 소설분야는 상위 60%만 선정하는 원칙을 세워 특이사업 최대한 해소

□ 기타사항

- 발표차원 민원 반영, 위원회 임시회의 또는 서면의결 검토
- 시, 소설 40% 감축에 따른 잔여예산 활용 방안 수립 추진

③

⑤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3)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6-7쪽)

(가) 장OO은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7. 12.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3차 심의 과정과 위원회 서면결의로 70명 축소안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나)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위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3차 심사 일정을 2015. 6. 26.로 확정하였다. 3차 심사 과정에서 장OO은 부당한 지원배제 지시 등을 모두 설명하였으나 심의위원들은 심의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 지원배제를 거부하였다. 3차 심의에서는 결국 배제명단의 적용없이 102명(안)이 최종 확정되었으나,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70명 선정 축소안이 상정되었고 이 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
- (다) 위 선정축소 경위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지원배제자들을 도저히 모두 배제할 방법이 없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당초 선발예정이었던 99명을 70명으로 줄이면 박석근, 이운택, 김병곤, 이성목, 전석순이 최종 배제될 수 있었기 때문에, 2015. 7. 17. 예술위 회의에서 선정자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종 7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위 5명을 추가로 배제한 것이다.
- (라) 당시 70명 축소결정을 위한 선정방침은 지원후보(94명) 중 시와 소설분야는 60%로 축소지원 결정하고, 시조 등은 육성차원에서 지원후보 100% 결정 등 세부분야별 형평성 안배를 감안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는 단편소설 분야 박석근 작가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문체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박석근 작가가 단편소설 분야 상위 50% 바로 뒷 등수에 있었기 때문에 단편소설 분야는 50%, 장편소설 분야는 100%, 총 소설 분야 평균 60%(시분야도 논리를 맞추기 위해 60% 유지)라는 조건이 산출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희곡분야의 선정방식이 정부사업 지원 실적이 많은 후보를 예비후보로 교체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운택 작가를 배제하라는 문체부의 지시 때문이었으며, 최종 지원 인원 확정 과정에서 예술위는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특별히 박석근 작가에 대한 정부의 거부감이 너무 커서 선정 인원 축소 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9쪽)

- (가) 이OO은 2013. 하순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 (나) 심의위원회 94명 선정안을 무시하고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배제명단을 배제하기 위해 결국 70명안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최종

의사결정의 권한은 위원회에 있지만, 통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를 크게 손대지 않고 의결하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5) 이OO 2016. 12. 26.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진술조서 18-19쪽)

(가) 이OO는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교무수석실 김소영 비서관에게 양해를 구했던 경우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1차 심의가 무기명 심사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선정절차를 거치다보면 정부비판 성향의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이 상위 순위에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김소영 비서관에게 양해를 구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8-19쪽).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등재 작가들을 제외하였는지에 대하여 이OO는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100명에서 77명으로 하기로 권편을 받고 예술위에서 대상자를 선정 축소하여 최종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19쪽).

아. 책임심의위원의 블랙리스트 인지 및 가담 여부

(1)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8-9쪽)

(가) 이OO은 2013. 하순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책임심의위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여, 이OO은 이 사항을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지원소위원회에 보고를 하였고, 보고를 할 때 3차 심의 단계에서 94명안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문체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양해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5. 6. 26. 3차 심의위원회 전에 하OO, 이OO 등 책임심의위원들을 사전에 만나 상황을 설명하였고, 해당 날짜의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상황을 다시 말하였으나 책

임심의위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 사안을 예술지원소위원회⁸⁾ 위원들⁹⁾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하OO 2017. 4. 26.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 8-10쪽)

(가) 하OO은 2014년부터 2015. 6.경까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나) 아르코문학창작기금에서 3차 심의는 2차 심의에서 한 것을 종합하여 주로 숫자조정 정도만 진행하며, 이렇게 총 3차례의 심의를 진행하여 책임심의위원이 심의 결과를 올리면 100% 반영이 되고, 최종적으로 책임심의위원의 심의회의 결정과 다르게 결론이 난 경우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경우 심의가 3차례 진행되면 늦어도 2015. 3.경에는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3차 심의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5. 5.경 예술위 장OO, 정OO이 하OO의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직원들이 하OO에게 2차 심의 결과 선정된 102명에서 약 18명에 대하여 일종의 ‘검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는 것 같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아예 해당 사업을 무사시키려 하니 하OO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여 18명을 제외한 상태로 심의결과서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는지 의사를 타진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배제명단 중 1명이 ‘이운택’이라고 예술위 직원들이 대답하였다고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하OO은 2015. 6. 3차 심의 과정에서도 장OO이 위와 같은 요청을 계속하자 심의 결과에 대하여 도장을 찍지 않고 심의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문예진흥법 제32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9) 5기(‘15.3~’17.11) 2차 소위원회 - 예술지원소위원회(4명) - 김OO(위원장), 오OO, 정OO, 정OO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arko.or.kr/arkoinfo/page2_3_5_2.jsp)

자. 예술위 문학분야 오OO 위원의 블랙리스트 인지 및 가담 여부

(1) 예술위 2015. 5. 29.자 제161차 회의록

예술위에서 2015. 5. 29.자에 열린 제161차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과 관련하여 당시 예술위 위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 예술위 문학분야 위원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 차선책으로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며, “내용은 대강 아실”것으로 생각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통보를 한다거나 의사를 타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창작지원부장

- 당초 오늘 의결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 있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다음주 정도에 개최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분야의 문학창작기금사업인데 100명을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 위원님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결정이 됐으면 오늘 위원회 회의에 상정을 했겠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발표가 나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했으면 3개월 전에 발표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서면으로 다음 주 이후에 3차 심의가 종결되면 돌리고 싶은데 괜찮을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

- 오 위원님이 말씀하셔야죠.

○○○○ 위원

-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책임심의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고, 차선책으로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내용은 대강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다음 달까지 가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한없이 늘어지니까 결정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통보를 한다거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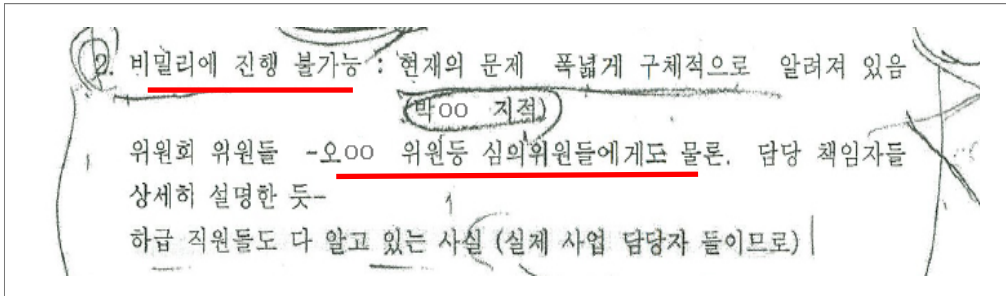
(2015. 5. 21.자) 중 ‘참고 2015년 문제사업 현황(15. 5. 13 현재)’

위 문건에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과 관련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102건 중 14건의 특이사항이 있으며, 1안의 경우 14건 전원제외조치를 시도 증으로 ‘문학분야 오OO 위원, 심사위원 5인 대상 설득 작업 중’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p>③아르코문학 창작기금 지원 *15년 정기공모사 업중미해결사업</p>	<p>1,2차 심사를 통해 총 83건중 69건 배제 조치 및 14명 미해결 상태 -후보자 102건중 14건 특이사항 통보(기존6+추가8) -1안: 14건 전원제외조치 시도중(문학분야 오OO 위원, 심사위원 5인 대상 설득 작업중) -2안: 14건중 기수해자 7건 제외한 7건 처리 곤란</p>
--	---

(3) 박명진 작성,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2015. 10. 2.자, 3쪽)

당시 박명진 예술위 위원장이 2015. 10. 2.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참고자료로 해당 문건의 3면에는 특이사업들을 “비밀리에 진행 불가능”하며 현재 문제들이 폭넓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고, ‘위원회 위원들 - 오OO 위원 등 심의위원들에게도 물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9쪽)

(가) 장OO은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7. 12.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문체부 등의 특정 작가에 대한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일일이 작가들의 이름은 직접 거론한 적은 없지만,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제지시 상황을 예술위 위원이자 문학분야를 대표하였던 오OO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8-9쪽)

- (가) 이OO은 2013. 하순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 (나) 책임심의위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여, 이OO은 이 사항을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지원소위원회 위원들(김OO, 오OO, 정OO, 정OO)에 보고를 하였고, 보고를 할 때 3차 심의 단계에서 94명안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문체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양해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6)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13쪽)

- (가) 참고인 정OO은 2013년에는 창작지원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당시 장OO과 함께 일하였다. 참고인 정OO은 2017. 10. 13.자 위원회 조사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나) 오OO 위원의 블랙리스트 작동 인지 여부 및 가담 정도에 대하여 참고인 정OO은 당시 오OO 위원이 문학 분야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장OO 부장이 배제리스트 하달과 관련하여 보고를 한 적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OO 위원이 다른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7) 참고인 오OO의 진술(2017. 12. 12.자 진술조서, 3-7쪽)

- (가) 참고인 오OO는 소설가로, 2015. 2. ~ 2017. 11.까지 예술위 위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당시 예술위 위원이었다. 참고인 오OO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인지 여부 및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나) 참고인 오OO는 2015~2016 시기, 예술위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블랙리스트 작동에 가담한 적도 없

- 다고 진술하였다(3쪽).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도 특정 작가들에 대한 배제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다)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2015. 7.까지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인원도 70명으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작동이 아니라 재정지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또한 장OO 부장이 참고인 오OO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문체부로부터 배제지시가 하달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마) 장OO, 이OO, 정OO 등 예술위 직원들이 위 사업의 책임심의위원들을 찾아가 배제명단이 하달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설득했던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 (바)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 중 ‘[참고] 2015년 문제사업현황) 2015. 5. 13 현재)’ 8쪽에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1, 2차 심사를 통해 총 83건 중 69건 배제 조치 및 14명 미해결 상태’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1안: 14건 전원제외조치 시도중(문학분야 오OO 위원, 심사위원 5인 대상 설득 작업 중)’이라는 문구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건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 (사) 참고인 오OO는 박명진 위원장 2015. 10. 작성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 3쪽에서 ‘비밀리에 진행 불가능’ ‘오OO 위원 등 심의위원들에게도 물론’이라는 문구에 대하여도 참고인 오OO가 박명진으로부터 듣기로는 박명진이 장관과 면담을 할 때 참고인의 이야기를 하면 장관에게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하여 거론하였다고 들었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아) 예술위 161차 회의록에 기재된 장OO 부장과 참고인 오OO의 발언에 대하여도 배제지시를 인지하고 한 발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자) 70명으로 선정인원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선정 축소가 아니라 예산부족에 의한 선정축소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배제기준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자)

2015. 5. 11.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관련 현안’ 문건은 오OO이 청와대에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며,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DB 관리’(15.4.월 현재 9,473건),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명’이라는 기재에 따르면 2015. 4.경 9,473명 명단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고, 이 문건에 기재된 위 기준들은 4월경 김OO 행정관이 4개 카테고리를 통보받았던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¹⁰⁾

-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DB 관리(‘15.4월현재 9,473건)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 문재inh후보 지지선언(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 박원순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21.자)

(1)항 문건과 기재된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해당 문건의 3면에 ‘상대적으로 사회비판적 작품들이 많고, 수요자층도 두터워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응이 예민한 편’ 추가 기재되어 있고, ‘참고 2015년 문제사업 현황(‘15. 5. 13 현재)’에 “세월호 관련 문학인 시국선언에 해당됨”이라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10)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23-24쪽.

③아르코문화 창작기금 지원
 *15년 경기공모사업 중 미해결사업
 1,2차 심사를 통해 총 83건중 69건 배제 조치 및 14명 미해결 상태
 -후보자 102건중 14건 특이사항 통보(기존6+추가8)
 -1안: 14건 전원제외의조치 시도중(문학분야 오○○ 위원, 심사위원 5인 대상 설득 작업중)
 -2안: 14건중 기수해자 7건 제외한 7건 처리 곤란

* 세월호관련 문학인 시국선언 해당됨				
순번	이름	신청사업	작품 내용	지원내역
1	김은경 (김박은경)	시집 <죽기전 가족> 발간	가족의 해체를 통해 소통의 해법과 최선의 방향을 찾아나서는 작품	○ 지원내역없음
2	박남희	시집 <슬어터의 배후> 발간	일상에 담긴 시적인 새로움이나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는 작품	○2005/예술창작지원/8백만원/예술위 ○2007/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12백만원/예술위
3	이성목	시집 <단아들로 이루어진 사람> 발간	존재를 끊임없이 오류에 빠지게 하는 언어에 관한 사유와 고민에 대한 작품	○ 지원내역없음
4	박진성	시집 <낮과 편자> 발간	인간들의 개별적인 삶의 모습에 집중하고 티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내용의 작품	○2004/신진예술가지원/7백만원/예술위 ○2007/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12백만원/예술위 ○2007/창작활동및상계비지원/6백만원/예술위 ○2008/조건부기부금사업지원금/1백만원/예술위
5	김병곤	시집 <빈방이슴> 발간	희미해지는 것들이 잠시 시인의 눈에 머무는 시간을 붙잡아 이야기한 작품	○ 지원내역없음
6	이정숙	시집 <내가 좋다> 발간	일고의미깊은시에중점을두어도두기떠난 빈집의숨살함을이야기한작품	○2005/예술창작지원/8백만원/예술위 ○2007/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12백만원/예술위 ○2015/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3백만원/충남문화재단
7	박석근	소설집 <이미테이션> 발간	이미테이션기수의 일대기를 통해 이미지가실체를 지배하고 전복하는 시대를 풍자한작품	○ 지원내역없음
8	전석순	소설집 <고공행진> 발간	살인이나 자살현장을 청소하는 특수형 소부를 화자로 삼아 감정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한 작품	○ 지원내역없음
9	장광모	소설집 <토스쿠> 발간	필라핀의만섬을배경으로또다른세상에사는 나들만나는과정을통해인간의양면성을 그린작품	○201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3백만원/부산문화재단
10	김해정	동화 <내가 들어줄까> 발간	12살 아이들이 악령의 고민상담 사이트를 만들어 직접 상담해주면서 소통의 중요성과 고민 해결의 방법을 주체적으로 찾아나갈기 기대하는 작품	○2012/해외창작거점예술기파견지원차/19백만원/예술위 ○2012/작가창작활동지원/10백만원/서울문화재단
11	강정연	동화 <그레도 행복한 우리집> 발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그쳐내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는 작품	○2018/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12만원/예술위 ○2010/문학창작활성화지원/10백만원/서울문화재단
12	하신하	동화 <마을장군 김돌쇠> 발간	김돌쇠가 비늘로 왜곡과 싸웠다는 충청 지역의 아사를 바탕으로 입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그린 작품	○ 지원내역없음
13	이상권 ^Y	수필집 <아생초 밭살> 발간	아생초 밭살과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형식으로 소개한 작품	○ 지원내역없음
14	이운택	희곡집 <꽃을 바치는 시간> 발간	향가<향화>와 접목하여 극화한 시극으로 조선 여성을 통해 주체적인 삶의 의식을 다룬 작품	○ 지원내역없음 *국립단체 중복지원으로 배제

(3)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8, 14쪽)

- (가) 참고인 정OO은 현재 예술위 문학지원부 부장이며, 2013년에는 창작지원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당시 장OO과 함께 일하였다. 참고인 정OO은 2017. 10. 13.자 위원회 조사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나) 참고인 정OO은 장OO 부장의 지시로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는 예술위 내부에서 해당 명단을 참고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지시였다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 (다)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배제와 관련하여 적용된 기준 중 하나가 세월호 관련 문학인 시국선언이라고 진술하였다.

(4)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23-26쪽)

- (가) 오OO은 2012. 4.경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나) 2015. 5. 11.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관련 현안' 문건은 오OO이 청와대에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며, '공모사업 총 213건 배제 조치(14.6.월~현재)'는 2014. 6.부터 문건 작성일 2015. 5. 11. 사이에 총 213건을 배제조치하였다는 의미이고,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DB 관리(15.4.월 현재 9,473건),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명'이라는 기재에 따르면 2015. 4. 경 9,473명 명단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고, 이 문건에 기재된 위 기준들은 4월경 김OO 행정관이 4개 카테고리를 통보받았던 것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 명단은 너무 방대하여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청와대에서 지원배제 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 활용되었던 것도 맞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의 실질적인 작성 배경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이 거의 배제명단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동안 했던 조치들의 실적을 부풀리는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5)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6쪽)

(가) 김OO은 2014. 10. 20.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이하 '교문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이하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김OO은 2017. 5. 31. 2017고합102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증인신문 녹취서에 기재되었다.

(나) 소통비서관실에서 지원배제대상자로 선정한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자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인사들이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 서성란, 신현림, 백정희,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 등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가.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1) 서성란

(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 및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포함, 2012. 12.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인, 2014. 6. 박원순 후보지지 문화예술인 909인에 등재되었다.

(나) 오OO 작성, '리스트-2014/215년도분(654명)-확정'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검토 명단에 등재되었다.

(2) 신현림

(가)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2012. 12.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인에 등재되었다.

(나) 오OO 작성, '리스트-2014/215년도분(654명)-확정'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검토 명단에 등재되었다.

(3) 백정희

(가)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에 등재되었다.

(나) 오OO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검토 명단 및 1차 무기명 심사 결과 남은 배제지시 대상자 명단에 등재되었다.

(4) 윤혜숙

(가)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에 등재되었다.

(나) 오OO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검토 명단에 등재되었다.

(5) 이미애

(가)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에 등재되었다.

(나) 오OO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검토 명단에 등재되었다.

(6) 안학수

(가)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2012. 12.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인에 등재되었다.

(나) 오OO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검토 명단에 등재되었다.

나.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배제되었는지 여부

(1) 서성란, 신현림,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

신청인 서성란, 신현림,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심의에서 탈락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심의는 무기명 심사이다.

(2) 백정희

신청인 백정희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에서 탈락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전모

위원회의 조사결과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실행 전모는 다음과 같다.

심의단계	일정	신청자 및 심의통과자	청와대 및 문체부의 배제지시	비고
공모 신청	2014. 10. 27. ~ 11.11	959명 신청	76명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1차 심의	2015. 1. 21. ~ 22.	198명 통과	16명에 대한 배제지시	무기명 심사
2차 심의	2015. 3. 31. ~ 4. 1.	102명 (94명+8명) 통과	6명에 대한 배제지시 8명에 대한 추가 배제지시	
3차 심의	2015. 6. 26.	102명(안) 확정		책임심의위원 배제지시 거부
위원회 서면결의	2015. 7. 17.	70명(안) 확정	5명 배제	선정 인원 축소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청와대-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집요한 실행으로 ① 심의일정 지연, ② 배제기준 고안, ③ 최종 선정인원 축소, ④ 잔여예산 발생 등 여러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업이다.

예술위는 2014. 11. 청와대 및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공모 신청자 949명의 명단을 송부하고, 이에 청와대 및 문체부는 76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을 하달하였다. 2015. 1. 22. ~ 22. 1차 심의 이후 심사를 통과한 198명의 명단을 예술위는 문체부에 다시 보고하였고,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다시 16명의 배제명단을 예술위에 하달하였다. 이들에 대한 배제명분을 찾지 못해 계속하여 심의일정이 지연되어 2015. 3. 31. ~ 4. 1.경 2차 심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심의의 통과자 총 102명(2차 심사 통과자는 94명, 배제명단이 계속하여 내려올 것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8명 선정) 중 청와대 및 문체부에서 1차 심의결과 중 배제를 지시하였던 16명 중 5명이 통과자에 포함되었고, 문체부는 다시 이 5명에 이윤택을 추가하여 총 6명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 4. 23.경 8명에 대한 추가 배제지시가 다시 하달되어 총 14명에 대한 배제지시가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배제방법을 찾지 못하자 문체부는 3차 심의 일정을 계속해서 승인하지 않아 2015. 6. 26.에야 3차 심의가 열렸고, 책임심의위원들은 배제명단 적용을 거부하고 2차 심의에 따른 102명(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예술위는 최종적인 배제명단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정인원을 70명으로 축소하여 2015. 7. 17. 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술위는 선정인원을 축소하고 배제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시와 소설분야는 60%로 축소지원 결정 등 형평성이라는 표면적 사유를 내세워 여러 배제기준을 고안하였다.

이처럼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블랙리스트의 극심한 실행으로 당초 공고되었던 심의기간(2014. 11.~2015. 2.)보다 약 5개월 여 늦춰진 2015. 7. 17.자 위원회 서면결의로 최종 선정자가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인원을 70명으로 축소하면서 해당 사업의 예산(총 10억원)에서 약 3억원 가량의 잔여예산이 발생하였다.¹¹⁾ 해당 사업은 선정자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0억원을 고려하면 최대 1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였던 사업이며, 예년에는 99명이 지원을 받았다.¹²⁾ 선정인원 축소 과정에서 3차 심의에서 책임심의위원들이 확정하였

11) 우리 위원회 [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2017문3)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잔여예산으로 진행된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에서 또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

12) 2014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자(심의대상 954건 / 선정 99건)

던 94명(안)이 위원회 서면결의 과정에서 70명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총 32건의 블랙리스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들 중 블랙리스트로 인한 직접적인 배제는 5건이며, 나머지 27건의 신청자들은 블랙리스트 실행의 여파로 선정인원이 축소되면서 피해를 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1) 관련 증거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오OO 작성), 2015. 7. 6. 받음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리스트 및 예술위 직원인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 참고인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문체부 공무원인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2. 1.자 진술조서) 및 2017.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OO 2016. 12. 19.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및 청와대의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경위가 확인된다.

(2) 청와대-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청와대 김OO 교문수석실 행정관은 교문수석실 비서관인 김소영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에 예술위에서 진행하는 2015 문예진흥기금 사업 공모 신청자 전체 명단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체부는 예술위에 동일한 지시를 하여 신청자 명단을 청와대에 송부하였으며, 이를 김OO은 김소영의 지시에 따라 소통비서관실에 송부하여 배제명단을 받아 다시 이를 문체부에, 문체부는 이를 예술위에 하달하였다.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2014. 11. 959명의 지원 신청자가 공모하였고, 이 신청자 명단이 예술위에서 문체부를 거쳐 청와대에 송부되었고, 청와대에서는 약 76명의 배제명단을 문체부에, 문체부는 예술위에 하달하여 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후 하달된 약 76명에 대한 배제지시

(1)항의 관련증거 및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오OO 작성, 2014. 12. 19.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오OO 작성, 2015. 1. 15.자)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및 문체부는 2015 아르크문학창작기금 1차 심의가 진행되기 전 약 76명의 배제명단을 예술위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차 심의는 무기명 심사로 진행되어 위 76명 배제명단 적용이 어려웠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4) 2015. 1. 22.경 1차 심사 통과자 명단 보고 및 약 16명에 대한 배제지시

(1)항의 관련증거 및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오OO 작성, 2015. 3. 9.자)에 따르면, 예술위는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1차 심사 통과자 198명의 명단을 다시 송부하였고, 문체부는 이에 대하여 약 16명의 배제명단을 다시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2015. 4. 1.경 2차 심사 통과자 명단 보고 및 추가 배제지시 하달

(1)항의 관련증거 및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오OO 작성, 2015. 5. 11.자)에 따르면, 배제명단 적용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위는 심의계획을 계속 미루다가 2015. 4. 1.경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총 102명(통과자 94명+예비후보 8명)을 선정하고, 이 명단을 다시 문체부에 송부하였다. 여기서 예비후보 8명은 차후 이 94명 명단에 대해서도 배제지시가 하달될 것에 대비하여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한 것이다. 총 102명 명단에서 문체부가 1차 심사 통과자 명단 중 배제지시를 하였던 16명 중 5명이 포함된 상태였고, 이에 문체부는 이윤택 1인을 추가하여 총 6명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 4. 23.경 이전에는 배제대상자 명단에 없던 박석근 등 8명에 대한 추가배제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예술위 직원들의 해당 사업 책임심의위원 배제명단 설득 경위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하OO 2017. 4. 26.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2015년 아르크문학

창작기금사업 현안 보고'(예술위 작성, 2015. 7. 3.자) 등에 따르면, 예술위 장OO, 이OO, 정OO은 청와대 및 문체부에서 지시한 배제명단 적용에 어려움을 느껴 직접 해당 사업의 책임심의위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배제명단을 심의에 적용하기 위하여 책임심의위원들을 설득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책임심의위원들을 이에 대해 따르기 어렵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7) 3차 심의 과정 및 2015. 7. 17.자 위원회 서면결의로 70명 축소 선정 경위

(가)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현안 보고'(예술위 작성, 2015. 7. 3.자),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이OO 2016. 12. 26.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등에 따르면, 문체부가 배제명단을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심의날짜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15. 6. 26. 3차 심의가 열렸고 해당 심의에서도 예술위 이OO, 장OO은 책임심의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배제명단 적용을 설득하였으나 책임심의위원들을 2차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던 102명 선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예술위는 박석근, 이운택, 김병곤, 이성목, 전석순의 최종 배제를 위하여 70명 선정 축소(안)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를 2015. 7. 17.자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가)항 관련증거 및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현황" 문건 등에 따르면, 70명 축소결정을 위한 선정방침은 지원후보(94명) 중 시와 소설분야는 60%로 축소지원 결정하고, 시조 등은 육성차원에서 지원후보 100% 결정 등 세부분야별 형평성 안배를 감안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단편소설 분야 박석근 작가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문체부의 지시 때문에 고안한 산출 조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박석근 작가가 단편소설 분야 상위 50% 바로 뒷 등수에 있었기 때문에 단편소설 분야는 50%, 장편소설 분야는 100%, 총 소설 분야 평균 60%(시분야도 논리를 맞추기 위해 60% 유지)라는 조건이 산출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편소설의 경우 박석근 작가를 포함한 박석근 작가 이후 등수 8명이 탈락하였고, 시 분야의 경우 상위 60% 이후 등수 16명이 탈락하게 되었다.

(8) 책임심의위원 블랙리스트 인지 및 가담 여부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하OO 2017. 4. 26.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책임심의위원들은 계속해서 사업의 심의가 늦춰지는 것뿐 아니라 예술위 직원을 통해 청와대 및 문체부에서 배제명단이 하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블랙리스트를 인지하였으나 3차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배제지시를 따르지 않고 102명(안)을 확정하여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9) 예술위 문학분야 오OO 위원 블랙리스트 인지 및 가담 여부

예술위 2015. 5. 29.자 제161차 회의록,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오OO 작성, 2015. 5. 21.자) 중 ‘참고 2015년 문제사업 현황’,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박명진 작성, 2015. 10. 2.자),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예술위 이OO, 장OO은 문학분야를 사실상 대표하는 오OO 위원에게 청와대 및 문체부에서 배제명단이 하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이에 대해 오OO 위원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오OO는 2017. 12. 12.자 진술에서 전혀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었던 점, 선정 인원이 축소된 점이 모두 예산부족으로 인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것이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로 발생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OO 위원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관련 진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문건과 오OO 위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경위에 대한 장OO의 진술 및 이OO의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가 구체적 인바 오OO 위원이 적어도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인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0) 배제기준

2015. 7. 6. 받음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리스트,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오OO 작성, 2015. 5. 11.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오OO 작성 2015. 5.

21.자) 중 ‘참고 2015년 문제사업 현황’,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등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문인이 배제기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재인 지지, 박원순 지지 등이 배제명단을 만드는 카테고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신청인 서성란, 신경림, 백정희, 안학수, 이미애 등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1) 신청인 서성란, 신경림,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의 경우

(가) 신청인 서성란, 신경림,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리스트 및 ‘리스트-2014/215년도분(654명)-확정’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검토 명단(오OO 작성)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그러나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심의는 무기명 심사로 해당 심의 단계에서는 배제명단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바, 신청인 서성란, 신경림, 윤혜숙, 안학수, 이미애가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배제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신청인 백정희의 경우

(가) 신청인 백정희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리스트 및 ‘리스트-2014/215년도분(654명)-확정’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 2차 검토 명단(오OO 작성)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그러나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에서 배제명단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바, 신청인 백정희가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배제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권영빈, 박명진 등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이 파행 과정에 재임하였던 예술위 위원장들이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비위행위에 가담한 정도, 즉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예술위 위원 오OO가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의 성격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역량 있는 ‘문학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1천만원씩 100여 명에게 지원하는 10억 규모의 대표적인 ‘창작 지원 사업’으로, 매년 공모에 1천여 명 안팎의 작가들이 신청하는 등 예술인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수혜 사실을 이력에 기재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온전한 개념의 예술가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예술정책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업이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에 공모한 특정 신청자를 배제하기 위해 청와대, 문체부, 예술위는 체계적으로 명단을 관리하는 한편, 심사 단계에 따라 여러 차례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를 번복하고 선정 결과 발표를 수개월 간 지연시켰으며, 특정한 배제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선정 인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이 가장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된 대표적인 사례이자 강한 집행 의지가 반영된 사례이며, 따라서 블랙리스트 운용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약 100여 명에 달하는 문인들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 배제지시가 하달되어, 단독 사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3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53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문2[‘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사건번호 2017문 13 병합)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김기춘 외 3인 1심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에서 밝혀진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파행과 관련하여 총 9건의 배제결과가 밝혀졌을 뿐,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의 전모가 면밀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2015년 해당 사업의 파행 이후 사업의 폐지 및 선정축소로 발생한 잔여예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창설된 후속 사업, 2016년의 ‘기간문학단체 활동지원 사업’까지 일련의 흐름을 블랙리스트의 작동과 연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2015년 해당 사업의 폐지 이후 후속사업에서 특정 문학단체에 대한 선정비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포착되는바 일련의 흐름에 대한 과정을 직권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신청의 취지

신청인 ‘인디고서원(대표: 허아람)’(이하 ‘인디고서원’)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의 ‘탈락’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배제’였는지, 해당 사건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다.

다.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은 청와대 및 문체부로부터 하달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선정건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배제지시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3년 55건, 2014년 39건이 선정되었던 해당 사업은 2015년에는 14건만 지원결정을 함으로써 배정되었던 총 10억원의 예산 중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억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향후 블랙리스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2015년 사업에서 선정축소를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탈락하였던 보수문예지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후속사업을 만들어내고 특정 성향의 문인단체들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창설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2) 신청인 ‘인디고서원’은 청와대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연번 86,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의 탈락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한 부당배제임을 확인하였다.

붙임 :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문2,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2017문13, 인디고서원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배제 사건(병합)

[신청인] 인디고서원(대표: 허아람)

제1절 | 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김기춘 외 3인 1심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에서 밝혀진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파행과 관련하여 총 9건의 배제결과가 밝혀졌을 뿐,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의 전모가 면밀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2015년 해당 사업의 파행 이후 사업의 폐지 및 선정축소로 발생한 잔여예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창설된 후속 사업, 2016년의 ‘기간문학단체 활동지원 사업’까지 일련의 흐름을 블랙리스트의 작동과 연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2015년 해당 사업의 폐지 이후 후속사업에서 특정 문학단체에 대한 선정비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포착되는바 일련의 흐름에 대한 과정을 직권조사하였다.

나. 신청의 취지

신청인 ‘인디고서원(대표: 허아람)’(이하 ‘인디고서원’)의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의 ‘탈락’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른 ‘배제’였는지, 해당 사건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1)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2017직문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11. 10.자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2) 신청인 인디고서원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및 병합 의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조사 개시하고, 신청인 인디고서원(대표: 허아람)의 신청사건(2017문13)이 2017직문2(‘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7. 11. 10.자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및 2017직문2(‘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에 병합을 의결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본 사건은 위 흐름이 2015년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예술위 내에서의 배제명분 발굴에서 사업선정의 축소발표, 사업변경 및 대체사업 창설 등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작동 이후의 파생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블랙리스트 작동 이후 예술위 등의 하부기관에서 배제명분 발굴에서부터 보다 손쉽게 배제지시를 따르고 차후 사업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배제지시를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후 창설된 사업에서 특정 단체로 선정비율이 집중되는 양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5건을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안내 중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세부 공고	예술위	2017. 11.	
2	제15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 안건지	예술위	2017. 11.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0차 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지 - 2015년도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방안	예술위	2017. 11.	
4	2016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예술위	2017. 11.	
5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오OO	2017. 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문		2017. 8.	
7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		2018. 1.	
8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감사원	2017. 8.	
9	참고인 김OO 2016. 12. 19.자 특검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10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1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2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3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증거기록
14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 12. 19.)	문체부 오OO		
15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2015. 1. 15.)	문체부 오OO		
16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2015. 1. 27.)	문체부 오OO		
17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2015. 3. 9.)	문체부 오OO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8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2015. 5. 11.)	문체부 오OO		
19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2015. 5. 21.)	문체부 오OO		
20	이OO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사업 개편안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7. 8.	
22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7. 8.	
23	2015. 4. 2.자 '대통령 수신 편지	김OO	2017. 10.	
24	정호성 2017. 6. 9.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25	2015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심의결과	예술위	2017. 11.	
26	2016 기간문화단체활동지원 사업 심의결과	예술위	2017. 1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총 5인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정OO	예술위 창작지원부 차장	진술조서(2017. 10. 13.)
2	장OO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진술조서(2017. 12. 12.)
3	강OO	예술위 부장	진술조서(2018. 1. 25.)
4	오OO	예술위 위원	진술조서(2017. 12. 12.)
5	이OO	문체부 공무원	녹취록(2018. 2. 20.)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나.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¹⁾

(1) 사업목적 및 지원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문학 창작 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 등 우수한 문학 분야 전문지의 발간을 지원하여 문학 창작 및 비평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다. 문예지 또는 기관지를 발간하는 문학단체 및 출판사가 지원신청 자격을 가지며, ① 국내에서 발간되는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종합 문예지 및 분야별 전문지, ②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학 분야 주요 단체 기관지, ③ 국내에서 발간되는 청소년 문예지가 지원대상이다.

(2) 지원규모

지원 종수는 40종 내외로, 호당 지원규모는 400만원~800만원 사이에서 신청사업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한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안내 중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세부 공고 https://www.arko.or.kr/business/popup_2015_02.jsp(접속일자: 2018. 4. 25.)

구분(연간발행호수)	A급	B급
월간(12호)	6천만 원	4천 8백만 원
격월간(6호)	3천만 원	2천 4백만 원
계간(4호)	2천만 원	1천 6백만 원
반년간(2호)	1천만 원	8백만 원

(3) 지원심의 기준

중점심의방향은 국내 문학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문예지 및 기관지를 심의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원규모를 차등 적용하며, 작가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평가에 반영한다.

세부적인 지원심의기준 ① 사업계획의 지원 타당성(25%), ② 수록작품의 예술성(25%), ③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5%), ④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5%)이다.

(4) 심의결과

(단위 : 원)

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총소요액	지원신청액	지원결정액
현대시학	전기화	월간 <현대시학> 발간	96,000,000	60,000,000	24,000,000
현대시	이선희	월간 <현대시> 발간	72,000,000	48,000,000	24,000,000
중앙북스	노재현	계간 <문예중앙> 발간	100,000,000	20,000,000	16,000,000
한국문학	홍정완	계간 <한국문학> 발간	181,200,000	16,000,000	16,000,000
(주)실천문학	김남일	계간 <실천문학> 발간	100,000,000	20,000,000	16,000,000
(주)문학동네	강병선	계간 <문학동네> 발간	252,000,000	20,000,000	16,000,000
문학과지성사	주일우	계간 <문학과사회> 발간	88,000,000	20,000,000	16,000,000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방귀희	계간 <솟대문학> 발간	85,899,120	23,200,000	16,000,000
문학사상	최정희	월간 <문학사상> 발간	258,000,000	60,000,000	36,000,000
현대문학	양숙진	월간 <현대문학> 발간	108,000,000	86,400,000	36,000,000
(사)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월간 <월간문학> 발간	420,000,000	42,000,000	36,000,000
자음과모음	강병철	계간 <자음과모음> 발간	208,000,000	20,000,000	16,000,000
작가세계	최선호	계간 <작가세계> 발간	120,000,000	18,000,000	16,000,000

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총소요액	지원신청액	지원결정액
창비	강일우	계간 <창작과비평> 발간	200,000,000	20,000,000	16,000,000
총 14건					300,000,000

(5) 지원결정현황(단위: 백만원)²⁾

분야	사업명	지원신청현황			지원결정현황				
		지원 신청 건수(A)	신청액 (B)	예산 배정액	지원 선정 건수(C)	비율 (C/A)	결정액 (D)	비율 (D/B)	잔여 예산
문학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98	2,414	1000	14	14.3%	300	12.4	700

다. 2015 우수문예지 콘텐츠 아카이빙 사업(2015. 6. ~ 12.)

(1)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예술위는 2015년도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 잔여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우수문예지 콘텐츠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였다.³⁾ 위원회로부터 우수문예지로 선정된 바 있는 주요 문예지에 수록된 우수기획기사의 상당수가 디지털 아카이빙이 구축 운영되지 않아 향후 유실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수집, 보존, 공유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잔여예산 7억원 중 5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2) 선정결과

총 56건이 1~3차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2) 제15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 안건지.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0차 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지 - 2015년도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잔여 예산 활용방안

라. 2016 기간문학단체 활동지원 사업

(1) 개요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주요 단체나 협회 또는 전국적 규모의 문학 장르별 대표단체나 협회의 문예지(협회지)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문인들의 작품생산 및 토론 공간을 확보하고, 원고료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기초적인 창작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단위 규모의 국내 주요 비영리 기간문학단체(문학계의 대표적인 주요 단체·협회 또는 문학 장르별 대표적인 주요단체·협회)가 지원대상이다.

(2) 지원심의 결과(2016. 5. 2.)⁴⁾

연번	지원대상 단체명	대표자명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결정액
1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상문	PEN 문학 발간	21,000,000
2	(사)한국문인협회	문효치	월간문학 발간 및 문학활성화 기획사업	52,000,000
3	(사)한국소설가협회	김명자	월간 한국소설 발간 및 문학활성화 기획사업	40,000,000
4	(사)한국수필가협회	지연희	월간 한국수필 발간	24,000,000
5	(사)한국희곡작가협회	홍창수	계간 한국희곡 발간	18,000,000
6	한국아동문학회	김철민	아동문학예술 발간 및 문학활성화 기획사업	9,000,000

마. 주요 관여자

순번	기관	이름	사건 당시 직책
1		이OO	본부장
2		장OO	부장
3	예술위	정OO	차장
4		오OO	위원
		강OO	부장
5		권영빈	위원장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2016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http://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cid=364277&sf_icon_category=cw00000020(접속일자: 2018. 4. 25.)

순번	기관	이름	사건 당시 직책
6		박명진	위원장
7		오OO	사무관
8		이OO	과장
9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
10		박민권	차관
11		김종덕	장관
12		김OO	교문수석실 행정관
13	청와대	김소영	교문수석실 비서관
14		김상률	교문수석

2.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가. 관련 문건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관리,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은 문체부 오OO 서기관이 관리한 것으로,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이라는 기재는 사업이 워낙 방대하여, 문학 분야는 총 관리해야 할 리스트가 118명 정도라는 통계를 내서 정리한 내용으로, 2015 예술위 공모사업 관련 문학분야에서는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② 문학창작공간지원, ③ 우수문예지발간 등이 사업들의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총 118명을 배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⁵⁾

<p>③ 우수문예지 발간 - 11명 14년(선정/신청) : 55/93</p>	<p>99</p> <p>○ 총 5명</p> <p>한국작가회의(원문지해문계분), 실천문학(김남일), 천년의 시계(세상우), 발전(황하우), 시과 문화(박봉규)</p>	<p>‘백년만리사색’년 역사상 중 원정투 프로젝트 활동가로 임명됨</p> <p>○ 2차 8명 추가</p> <p>문학동네(강명진, 계간 문학동네 발간), 시와동해(강정규, 계간 시와 동해)발간, 문학수첩(강봉제, 시안수첩 발간), 문예IN (이중 천, 계간 문예IN 발간), 문학나무(윤영수, 계간 문학나무 발간) 우연연의 문해(김민권, 계간 우연연과 문학 발간)</p>	<p>2건 양해실 천문학, 문학 동네</p>
<p>④-1 우수문예지</p>	<p>○ 오늘외비제</p>	<p>○ 오늘외비제</p>	

(2)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84쪽) 중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부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등 다른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술위는 2014. 11.

5)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11.경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지원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거쳐 11개 문예지가 배제대상으로 하달되었다. 예술위는 배제대상으로 하달된 문예지 중 ‘실천문학’, ‘문학동네’를 배제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문체부도 2015. 3.경 ‘문학검열에 대한 현장의 우려’, ‘문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단초 우려(예술위의 입장)’ 등을 이유로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여, 청와대의 양해를 받아 2015. 3. 31. 9개 문예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실천문학’, ‘문학동네’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문체부 오OO은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①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②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각 지시하였고, 이러한 문체부 오OO의 지시를 받은 예술위 장OO은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다.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49~58에는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부당하게 배제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 (대상자)	담당 (문체부/ 산하기관)
49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문학in>발간	문학IN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50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문학나무> 발간	문학나무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51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시인수첩> 발간	문학수첩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52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발견> 발간	발견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순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 (대상자)	담당 (문체부/ 산하기관)
54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시와동화> 발간	시와동화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55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시와문화> 발간	시와문화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56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인문교양지 인디고잉> 발간	인디고 서원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57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주변인과 문학> 발간	주변인과 문학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58	2014-11-11	2015-03-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시작> 발간	천년의 시작	예술정책과 오OO/ 창작지원부 장OO

(3)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연번 59-68

감사원이 문체부와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2017. 1. 19.~3. 10까지 진행하여 2017. 6.에 발표한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단체들이 연번 59-68에 기재되어 있다.

(4)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4. 12. 19.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가) ‘2014. 12. 19. 8:50 장관보고필’ 가필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현황’ 문건은 오OO이 작성한 문건이며, ‘2014. 12. 19. 8:50 장관보고필’ 수기는 김OO 국장이 기재한 것이고,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다.⁶⁾

- (나) 총 신청건수 1,989건 중 특이사항 106건이라는 기재와 함께 '1. 문학분야' 특이사항에 '우수문예지지원 5'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중 이OO 2016. 12. 26.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기재내용은 예술위에 지원신청한 건수가 총 1,989건이고 그 중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문제 있는 건수가 106건이라는 의미이고 각 표의 '특이사항'란에 문제 사업의 건수가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표의 '방안'란에 해당 사업마다 지원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14.12.19 8:50 장상근교필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총 신청건수 1,989건 중 특이사항 106건

1. 문학분야

신청	특이사항	방안
총 1,103건	총 83건	○창작기금
- 아르코창작기금 959	- 아르코창작기금 76	-1차심사(무기명심사) 통과자(약 200명이내)
- 우수문예지지원 99	- 우수문예지지원 5	대상으로 주활동자 위주 제외
- 문학행사지원 45	- 문학행사지원 2	○우수문예지, 행사지원: 심사에서 제외

(5)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2015. 1. 15.자)

2015. 1. 15.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은 오OO이 작성한 문건이며, 청와대에서 배제대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다.7)

6)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7)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 심사 현황

‘15.1.15(월)

분야	진행상황	검토	발표시기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심사완료	특이사항 없음	‘15.1월말
시각예술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민운기)	‘15.1월말
소외계층문화순회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윤시중)	‘15.1월말
다원예술	심사진행중	특이사항 총 11건 전부 제외예정 -프린지페스티벌 등	‘15.1월말
연극분야	심사예정(1월3주)	특이사항 총 12건 전부 제외예정	‘15.1월말
문학분야	공간,국제지원-완료 창작기금-심사중 문예지,행사지원-미정	별도방안 모색 중(총 99건) -창작기금, 무기명 심사시 일부제외 예상 -심사완료분야 4건추가 발생	별도방안 마련

(6)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2015. 1. 27.자)

(가) 2015. 1. 27.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문건은 오OO이 작성한 문건이며, 문건 상단에 ‘2015. 1. 27.(화) 17:40 장관보고필’이라는 가필은 김OO 국장이 기재한 것이고, 해당 문건은 당시 1월 초에는 예술위 지원대상 확정 발표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지원배제 명단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1안, 2안으로 나누어 방안을 수립해본 문건이며,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되었다.⁸⁾

(나) 지원심의 현황에서 심의진행 중인 문학분야 사업 중 ‘문예지지원사업’의 경우 11건의 문제사업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검토사업 현황으로 ‘우수문예지지원사업’은 총 99건 중 11건의 문제사업이 있는데, 이 문제사업들은 1차에 5건, 2차에 6건이 검토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27(화)

□ 지원심의 현황

분야		지원심의 현황(문제사업 건수)
심의 진행 중	문학	○ 문제사업 - 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 (76건) 문예지지원사업 (11건)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6건) 민간국제교류지원(5건)
	연극	○ 비평연구활성화지원 (1건) 민간국제교류지원(연극) (10건)

[검토사업 현황]

○ 문학

- (심의예정)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 : 958명중 76명
- (심의예정)우수문예지지원사업 : 99건 중 11건
 - * 1차 : 발견(황학주), 천년의시작(채상우), 시와문화(박몽구), 실천문학(김남일) 작가들(한국작가회의인천지회 문계봉)
 - * 2차 : 시와동화(강정규), 문학수첩(강봉자), 주변인과문학(김명관), 문학동네(강병선) 문학N(이종찬), 문학나무(윤영수)

(7)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2015. 3. 9.자)

(가) '2015. 3. 12. 14:50' 가필 2015. 3. 9.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 상황' 문건은 오OO이 장관 보고 및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상단에 수기로 '2015. 3. 12. 14:50'은 김OO 국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한 일시를 기재한 것이다.

(나) 심의보류사업 현황으로 우수문예지지원(11건)이 기재되어 있다.

'15. 3. 12 / 14:50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15.3.9(월)

심의보류사업 현황

분야	지원심의 현황(문제사업 건수)
문학(9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창작기금지원 (71건) → 16건으로 감소 ○ 우수문예지지원 (11건)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8건) ○ 민간국제교류지원(5건)

(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우 특이사항 11건 중 2건 선정가능성이 높으며, '실천문학'과 '문학동네'의 경우 2010년 동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지원을 받아왔고, 동 2건에 대해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사업방식 변경 추진시, '문학검열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의심에 대한 확증이 되어 문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예술위원회 입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실천문학', '문학동네'는 내년에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2015년에는 두 곳을 모두 지원하고, 2016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방안을 보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11건 중 2건 선정가능성 높음 - '실천문학', '문학동네: 2010년 동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지원(평균 1,700만원내외) - 동 2건에 대해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사업방식 변경 추진 시, (세종도서 사업에서 촉발된) 문학검열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의심에 대한 확증이 되어 문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예술위원회 입장) * 국회 도종환 의원실에서는 세종도서 선정관련 항의를 담은 문학 표현의 자유 세미나('14.2.23(월))를 개최하고 1차 항의 의사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의 작가의 원고료로 작가에게 전액 지출되는 사업으로, 문예지는 지원매개역할에 불과 → 2016년에 동 사업 폐지 예정

(라) 해당 문건 2면에는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단체들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실천문학과 문학동네의 경우 선정가능성이 '높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 문학회 대표 문예지의 인위적 배제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고려, 심사위원의 심의에 맡기는 방안(2건 포함, 9건 배제)

신청단체명(대표, 사업명)	대표자	문예지 성격 및 특이사항	선정 가능성
①실천문학(김남일)* - 실천문학 발간(계간)	소설가, 아시아문화네트워크 책임연구원(한국작가회의 소속)	문학과 삶의 분리를 지양하는 정신으로 창간되었으며, 최근 인문 사회영역과의 교류 강화	높음
②문학동네(강병선)* - 문학동네 발간(계간)	시인, 필명 강태형	많은 작가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인 발굴에 역점을 두어 신인상 제도 다수 운영	높음
③반전(황학주, 계간 반전 발간)	시인, 국제민간연구재단 퍼스프렌드 대표	시 전문 계간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좋은 시를 독자에게 소개하는 것에 역점	보통
④천년의시작(채상우, 계간 시작 발간)	시인	시 전문 계간지,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양하고 우수 한국 시 소개에 집중	보통
⑤시와동화(강정규, 계간 시와 동화발간)	동화작가	보수와 진보 양자 우수작품을 동일한 비율로 소개	보통
⑥문학수첩(강봉자, 시인수첩 발간)	김종철 전 한국시인협회장의 미망인	대중적 시 문학 계간지를 지향하며 외국시를 국내에 소개하고도 있음	낮음
⑦시와문화(박몽구, 계간 시와문화 발간)	시인	시 전문 계간지, 음악, 미술 타 장르와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시와 시인들을 지속적으로 소개	낮음
⑧작가회의 인천지회(문계봉, 계간 작가들 발간)	시인, 한국작가회의 인천지회 회장, 인천민예총 상임이사	인천 지역의 계간지이지만 전국의 작가들에게 지면을 할애해 개방성을 확대 유지함	낮음
⑨문학IN (이종찬, 계간 문학IN 발간)	시인, 필명 이소리	서울 및 전국 9개도, 6개 광연시에 취재 및 운영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들이 지방의 작가들을 추천함	낮음
⑩문학나무(윤영수, 계간 문학나무 발간)	소설가	스마트소설을 포함한 문학작품 전 장르를 수용하며 문학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도모	낮음
⑪주변인과 문학(김명관, 계간 주변인과 문학 발간)	양산 시민신문 대표, 2013년 시인 등단	영남지역 문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작품성을 최우선으로 문인과 함께 일반인에게까지 지면을 할애 확대	낮음

(8)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21.자)

(가) 2015. 5. 11.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관련 현안' 문건은 오OO이 청와대에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다. 실천문학과 문학동네에 대한 양해조치가 예술현장의 특정 편향 의심을 불식시키고 문제제기의 명분을 상실시킨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일부 사업 양해조치로 예술현장의 특정 편향 의심 불식 및 문제제기 명분 상실 효과
 - 문학(실천문학, 문학동네 등) 연극(하땅세, 한국연극연출가협회 등) 분야 필수사업 7건 양해조치를 통해 특정단체에 대한 사전검열 및 불이익에 대한 의심 불식
 - * 현재까지 예술위에 공식적인 항의 및 집단행동 건수는 없음. 다만 탈락사유 등에 대해 개별민원 제기(유선 및 구두 민원 133건 등)

(나) 특이사항 배제를 위해 무리한 사업축소 결과 보수단체들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특이사항 배제를 위해 무리한 사업축소결과 보수단체 민원제기
 - 우수문예지지원사업: 한국소설가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수필문학진흥회 등

(9)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2015. 12. 8.자)**□ 장르별 사업 개선안**

○ 문학분야

'15년(37.8억)	'16년(30.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중심의 관성적인 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창작기금 (10억)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1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 수요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지 활동지원 (3억), 「문학주간」 (8.5억) ○ 우수 작품 지속 생산·유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창작기금(3억), - 차세대작가육성 (2.5억), 청소년영재 (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지원 형식으로의 아르코창작기금 개편(문단 추천, 상금액 조정) - <u>문예지 지원을 발간 지원에서 기획사업 지원으로 전환(10개 단체, 3,000만원)</u> 	

‘국제펜클럽한국본부’에 지원이 되지 않은 것과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 지원액이 3,6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부당하고, ‘창비’나 그 아류인 ‘문학동네’ 등은 ‘반체제’ ‘반정부’로 국비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한국소설가협회와 국제펜클럽한국본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한국문인협회 지원금 삭감분 9백만원을 원상 복구하여 4천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강력히 지시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자 진술

(1) 청와대 관련자 진술

(가)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00쪽)

- 1) 김OO은 2014. 10. 20.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김OO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 중 문예지 지원 개선방안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는데, 해당 보고서는 창비, 실천문학, 문학동네 같은 것에 대한 지원 축소 내지 배제 방안을 강구하고, 소위 우파문예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정호성 2017. 6. 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9-10쪽)

- 1) 정호성은 2013. 2. 2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정호성은 부속비서관으로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각종 자료, 보고서 등을 취합해서 보고하고, 대통령 말씀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대통령에 대한 민원, 편지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 2) 정호성은 2015. 4.경 대통령의 은사가 보낸 편지를 기억하고 있으며, 특검 진술시에는 교문수석실에서 대통령 은사로부터의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소위 ‘건전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서면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6. 9.자 증인신문에서는 모든 보고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해당 수석실에서 그러한 보고를 올렸다면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다)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9-21쪽)

- 1) 김상률은 2014. 11. 18.부터 2016. 6. 7.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2015. 3.~4.경 박근혜 대통령이 김상률에게 유선상으로 은사인 김OO 교수가 민원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주면 검토를 해보라고 하였고, 지시의 내용은 “수필문학이나 시조문학 같이 열악한 그런 문예지 지원이 안 된다고 은사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보수문예지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내용이었고, 이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당부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소영 비서관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김소영 비서관과 문체부에서는 그 서한을 읽고 대통령의 초점은 열악한 소수 문예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문체부에 전달된 다음에 올라온 것은 보수문예지의 경우 남은 예산으로 간단한 기획사업을 통해 지원을 5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보다 진보문예지인 창비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가 왔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통령 은사인 김OO의 편지가 문체부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82쪽)

- 1) 김소영은 2013. 11.경부터 2016. 9. 2.까지 대통령 비서실 문체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김소영은 2017. 6. 23.자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내용이 녹취서에 기재되어 있다. 김소영은 김상률 수석으로부터 당시 VIP께서 건전문예지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좌편향문예지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 검토보고서를 올리라고 하였다는 지시를 전달받고 그에 대하여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썼는데, 지원이 많이 된 문예지는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문체부 관련자 진술

(가) 이OO 2018. 2. 20.자 위원회 조사 녹취록(11-12쪽)

- 1) 이OO은 2014. 11. 2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이OO은 2018. 2. 20.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경 두 장짜리의 양식이 하나 온 것을 회의를 통해 각 실국에 하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술정책과 이OO 과장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2-3주 후에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창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김종덕 장관이 이OO 과장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할 정도의 문제였다고 기억하며, 이 리스트 전달과정에서의 문제로 공교롭게 '창비'는 당시 사업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OO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7-48쪽)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이OO에 대한 2017. 5. 26.자 증인신문 녹취록(47-48쪽)에는 위 사안의 세부적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OO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예술정책과장이었던 이OO는 2015. 3.~4.경 '창비' 지원과 관련하여 당시 이OO 과장으로부터 리스트를 늦게 받아 예술위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3월 말 심사에서 창비가 선정되면서, 그 후 송OO 기획조정실장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창비가 지원된 데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 경위서를 보고 인사조치 등에 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중에 일정을 확인해 보니 당시 이OO가 다른 일정으로 건전콘텐츠TF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날 이OO이 건전콘텐츠TF 회의에서 해당 리스트를 다른 과장들에게는 하달하였으나, 예술위가 진행하는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담당 부처인 예술정책과 이OO는 리스트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추후에 이OO으로부터 해당 리스트를 받았을 때는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심사 직전으로 해당 리스트를 반영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 특검 2016. 12. 19.자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진술조서 32쪽)

김OO 당시 예술정책관은 특검에서 “2015. 3.~4.경 정무수석실에서 문체부 창조행정 담당관실로 리스트를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창조행정담당관이던 이OO 과장이 그 리스트의 중요성을 모른 채 저희 부서로 전달하지 않고 약 3주 정도 들고 있었던 적이 있다. 그때 정무수석실에서 보낸 것은 예술정책관 쪽이 담당하는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만 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 사안들도 섞여 있었는데, 이OO 과장이 3주가 지나서 각 부서별로 정무수석실에서 온 자료를 뿌렸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 김종덕 장관이 송OO 기획조정실장에게 경위조사를 시키고 징계하라고 하였는데, 유아무야되어 징계는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예술위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16-19쪽)

- 1) 장OO은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자로, 2017. 12. 22.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 장OO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던 경우와 관련하여 지원신청한 문예지들의 많은 수가 배제대상으로 하달되어 심의자체가 불가능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문예지지원사업에서 상위를 다투는 ‘실천문학’과 ‘문학동네’에 대한 배제지시는 양해요청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었고, 다른 대상에 대한 배제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건수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던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에 배정되었던 10억원의 예산을 3억원으로 축소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위 14개 사업만이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3년에는 39건, 2014년에는 55건이 지원되었으나, 2015년에는 14건으로 축소된 것은 하달된 배제명단을 적용하려다보니 선정 건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10억원 중 7억원이 남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 4)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명단에서는 양해요청을 통해 양해를 받은 실천문학, 문학동네를 제외하고는 모두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5) 잔여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의 경우 보수문예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은 심의 결정 과정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나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종료 이후 펜문학, 소설가협회의 민원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건전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보기 보다는 2015년 사업에서 탈락되었던 단체들에 대한 구제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6)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문인협회 등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단체들로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의 단체라고 진술하였다.
- 7) 2016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 지원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자체의 성격이 기간문학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연히 위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수필가협회가 지원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보수문예지, 즉 정부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문예지들이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 17-21쪽)

- 1) 참고인 정OO은 2013년에는 창작지원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참고인 정OO은 2017. 10. 13.자 위원회 조사에서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제논리도 발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정 문예지 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4년에 55건을 선정했던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하여 2015년에는 14건의 지원만 이루어졌으며, 예산 또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어 집행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 쪽에서는 특정 문예지들을 배제하지 못하겠다는 차라리 해당 사업을 폐지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장OO 부장을 통해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이 잔여예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예지 수록 우수기획기사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서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의 문예지 ‘PEN 문학’은 2015. 7. 30.경 해당 사업에서 1차 심의 및 지원 결정으로 2천만원의

지원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2015년 우수문예지 사업에서 탈락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배제된 문예지들에 대한 후속차원의 성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시와 동화’, ‘삶이 보이는 창’ 등은 안타깝게 다시 배제된 경우라고 진술하였다.

- 4) 참고인 정OO은 이러한 흐름이 문학 분야에서 화이트리스트가 작동된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5) 2016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몇몇 보수단체들이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것에 원래 지원을 받아왔던 곳으로 특별히 더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 17-18쪽)

- 1) 참고인 강OO는 2015. 11. 23.~2017. 3. 7. 문학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2018. 1. 25.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은 2016년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폐지 이후 후속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 사업에서 몇몇 보수문학 단체들이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은 이유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상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문예지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감당하기 어려워 만든 사업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오OO의 진술(2017. 12. 12.자 진술조서, 8-10쪽)

- 1) 참고인 오OO는 소설가로, 2015. 2. ~ 2017. 11.까지 예술위 위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2017. 12. 12.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 오OO는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창비나 문학동네 같은 대형 출판사들은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회의 공평을 위해 제외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용이한 실행을 위해 해당 사업에 배정되었던 10억원의 예산 중 30%에 해당하는 3억원만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참고인 오OO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3) '문예지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 위 사업의 잔여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4) 2016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심의 결과 특정 성향의 단체들에 많은 지원이 된 것에 대하여 2016년의 경우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정 단체들에 지원이 집중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보수문예지, 정부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문예지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배제기준

(1)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자)

2015. 5. 11.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관련 현안' 문건은 오OO이 청와대에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며,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DB 관리'(15.4.월 현재 9,473건),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명'이라는 기재에 따르면 2015. 4.경 9,473명 명단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고, 이 문건에 기재된 위 기준들은 4월경 김OO 행정관이 4개 카테고리를 통보받았던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⁹⁾ 동일한 내용이 동일 제목의 2015. 5. 21.자 문건에도 기재되어 있다.

-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DB 관리('15.4월 현재 9,473건)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 문재인후보 지지선언(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 박원순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2)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가) 오OO은 2012. 4월 경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9)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23-24쪽.

(나) 2015. 5. 11.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관련 현안’ 문건은 오OO이 청와대에 보고 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며, ‘공모사업 총 213건 배제 조치(‘14.6.월~현재)’는 2014. 6.부터 문건 작성일 2015. 5. 11. 사이에 총 213건을 배제조치하였다는 의미이고,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DB 관리(‘15.4. 월 현재 9,473건),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명’이라는 기재에 따르면 2015. 4. 경 9,473명 명단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고, 이 문건에 기재된 위 기준들은 4월경 김OO 행정관이 4개 카테고리를 통보받았던 것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23-24쪽). 이 명단은 너무 방대하여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청와대에서 지원배제 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 활용되었던 것도 맞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25쪽).

(3)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6쪽)

(가) 김OO은 2014. 10. 20.부터 2016. 1. 28.까지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이하 ‘교문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이하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김OO은 소통비서관실에서 지원배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자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인사들이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 ‘인디고서원’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가. 청와대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8쪽)

김기춘은 2014년 초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4. 4.경부터 국민소통, 교육, 문화체육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해당 TF의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부처별 관

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¹⁰⁾

86	인디고서원	<인디고잉> 발간 지원	16	-	문재인 2030 영입대상	지원배제
----	-------	--------------	----	---	---------------	------

신청인 ‘인디고서원’의 경우, 위 문건의 첨부 일람표상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중 문체부 부분 연번 86에 기재되어 있다. 문예지 <인디고잉> 발간지원과 관련하여 2013년에 지원을 받았으며, 특이사항으로 ‘문재인 2030 영입대상’, 조치결과로 “지원배제”가 기재되어 있다.

나.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관리,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서울중앙지검 2017. 10. 15.자 오OO 진술조서(41-42쪽)에 따르면,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2015. 3.~4.경 이전에 관리한 문건으로, ‘기존관리 리스트’는 당시 청와대 김OO 행정관이 기존관리 리스트를 한 번에 모아서 배제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 문건의 ‘공연과 관리(중요)-79명’란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이 보관하고 있던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인디고서원’이 기재되어 있다.

공연과 관리 (중요) - 79명	- 12.2월 문체소지가 있는 무분 제외하고 발간 ①강은교(동아대 명예교수), ②고은(시인), ③고연옥(작가, 연극), ④고창운(건대교수), ⑤구중서(문화평론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⑥김경미(시인), ⑦김도연(소설가), ⑧김병호(소설가), ⑨김보성(전 마포문화재단대표), ⑩김상용(화가), ⑪김성철(시인), ⑫김소연(시인), ⑬김영동(일상창작예술센터 대표), ⑭김정은(연극), ⑮김중업(시인), ⑯김태수(헤이수, 소설가), ⑰김혜진(아동문학가), ⑱박솔피(소설가), ⑲서상혁(연극, 호서대교수), ⑳서성관(소설가), ㉑서철원(소설가), ㉒성기웅(연극연출), ㉓송미경(아동문학가), ㉔송진권(시인), ㉕양해규(설치미술가), ㉖오성윤(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 ㉗유영소(소설가), ㉘이상국(시인), ㉙이선아(무용가), ㉚이종호(국제무용협회 회장), ㉛이준호(소설가), ㉜이지호(고암문화재단 대표, 이응노미술관 관장), ㉝이진희(은행나무출판사 주간), ㉞정미경(소설가), ㉟정상윤(경남대교수),
----------------------	--

10)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7쪽.

	㉔정혜원(아동문학가), ㉕주원익(시인), ㉖천수호(시인), ㉗천운영(소설가), ㉘최용배(영화사 청어람 대표), ㉙최용탁(소설가), ㉚한장훈(소설가), ㉛함성호(시인), ㉜한정임(소설가), ㉝홍선(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①강릉시네마테크(권정삼), ②광안리 사람들(이승욱), ③국제극예술협회(최치림), ④그린피그(윤한술), ⑤극단놀방, ⑥다빈나오(김지원), ⑦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⑧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⑨테아드르고도 극단(권영국), ⑩문학동네, ⑪미디어트, ⑫민족미학연구소(조성래), ⑬밀양연극촌(손숙), ⑭비투이, ⑮산울림극단(임영웅), ⑯서울괴담 극단(유영봉), ⑰실천문학, ⑱아트스페이스 씨, ⑲아트클럽(이지혜), ⑳애틀나인필름, ㉑연우무대극단(유인수), ㉒연희단거리패(김소희), ㉓오장환문학계추진위원회, ㉔윤이상평화재단(신계륜), ㉕극단 이루(손기호), ㉖인디고서원, ㉗일상예술창작센터(최현정), ㉘제주장애인인권포럼(고현수), ㉙조은컴퍼니(김계훈), ㉚강비, ㉛책읽는사회문화재단, ㉜천년의시작, ㉝퍼주복소리조직위원회, ㉞한글문화연대	
--	--	--

4.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라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가.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84쪽)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56(380-381쪽)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56에 신청인 ‘인디고서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연번 29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연번 29에 신청인 ‘인디고서원’이 기재되어 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여부

(1)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③ 우수문예지발간(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49~58,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4. 12. 19.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오OO 서기관 작성, 2015. 1. 15.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오OO 서기관 작성, 2015. 1. 27.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오OO 서기관 작성, 2015. 3. 9.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5. 5. 21.자),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59차 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실천문학', '문학동네'에 대한 양해조치

예술위는 2014. 11. 11.경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지원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거쳐 11개 문예지가 배제대상으로 하달되었다. 예술위 및 문체부는 차례로 청와대에 배제대상으로 하달된 문예지 중 '실천문학', '문학동네'를 배제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두 출판사는 양해를 받아 2015. 3. 31.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9건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해당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리스트 누락으로 최종 선정된 '창비'를 둘러싼 논란

이OO 2018. 2. 20.자 위원회 조사 녹취록, 이OO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OO 특검 2016. 12. 19.자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이OO은 건전콘텐츠TF를 통해 ‘창비’가 포함된 배제명단을 여러 실국 과장들에게 전달하였으나 이 전달과정에서 당시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던 예술정책과 이OO 과장 및 오OO 사무관에게 ‘창비’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블랙리스트가 전달되지 않아 몇 주 후 ‘창비’에 대한 배제 지시가 예술정책과에 하달되었을 때에는 이미 심의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해당 사업에서 ‘창비’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자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김종덕 장관을 질책하였고 김종덕 장관은 당시 송OO 기조실장에게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OO 예술정책과장이 해당 사안의 경위서를 쓰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창비’는 해당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최종 선정되었다.

(4)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의 점

위 (가)항 기재 증거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5. 12. 8.자),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6. 1. 8.자) 등을 종합하면,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은 청와대 및 문체부로부터 하달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선정건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배제지시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3년 55건, 2014년 39건이 선정되었던 해당 사업은 2015년에는 14건만 지원결정을 함으로써 배정되었던 총 10억원의 예산 중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억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향후 블랙리스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2015년 사업에서 선정축소를 통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탈락하였던 보수문예지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후속사업을 만들어내고 특정 성향의 문인단체들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창설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나. 후속 사업에서 특정 문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는지 여부

- (1) 2015. 4. 2.자 ‘대통령 수신 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5. 12. 8.자),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6. 1. 8.자), 김OO 2017. 5. 31.자 증인신문 녹

취서, 정호성 2017. 6. 9.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 참고인 오OO의 진술(2017. 12. 12.자 진술조서),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0차 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자료(2015년도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방안), 2016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박근혜 대통령의 은사인 김OO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창비’와 같은 ‘반체제’ ‘반정부’적인 문예지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펜클럽한국본부’나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원액이 적은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소설가협회와 국제펜클럽한국본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한국문인협회에 대한 지원금 삭감액을 복구하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달라는 해당 서신은 박근혜가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전달하여 보수문예지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상률 교문수석은 이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김소영 비서관은 김OO 행정관을 통하여 이를 서신과 함께 창비 등 좌성향 문예지에 대한 지원 축소 및 보수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문체부에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검토보고서는 김OO 행정관 또한 지시에 따라 작성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는 김상률 수석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2015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서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소위 보수문예지들이 1~2차 심사를 통해 모두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던 국제펜클럽한국본부의 문예지 PEN문학은 2015. 7. 30.경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1차 심의 및 지원 결정으로 200백만원 지원을 결정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위 (1)항 기재 증거 및 (2)항에서 확인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015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사업이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파행으로 블랙리스트에 의한 배제나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문예지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창설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소위 보수문예지에 대한 지원 또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업명	응모자(단체)	지원금액(원)	선정여부	비고
〈PEN문학〉 발간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20,000,000	가	1차 심의 시 선정
〈한국소설〉 발간	(사)한국소설가협회	30,000,000	가	1차 심의 시 선정
〈한국수필〉 발간	(사)한국수필가협회	22,000,000	가	1차 심의 시 선정
〈월간문학〉 발간	(사)한국문인협회	6,000,000	가	2차 심의 시 선정

(4) 2015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의 점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잔여예산으로 진행된 위 사업은 보수문예지들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총 56건에 대하여 지원을 진행하면서 여기는 창비, 문학동네와 같은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문예지들에 대한 지원도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파행으로 부당배제 및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문예지들에 대한 구제책의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면 아래 표에 기재된 단체들 또한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기타 블랙리스트 문건에 등재된 단체로 해당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결정되었어야 하는 단체들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아래 단체들은 이 사업에서도 배제된바, 이것이 다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다.

사업명	응모자(단체)	지원금액(원)	선정여부	비고
〈삶이보이는창〉발간	(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	부	문제단체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OOO 기존관리리스트, 정무리스트 등재 단체
〈푸른글터〉발간	도서출판해성	-	부	
〈문학청춘〉 발간	문학청춘	-	부	
〈발견〉 발간	발견	-	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배제
〈시와동화〉발간	시와동화	-	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배제
〈어린이시조나라〉발간	어린이시조나라사람들	-	부	
〈인디고잉〉 발간	인디고서원	-	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부당배제

(5) 2016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이 특정 문인단체들에 대하여 지원이 집중되었는지 여부

위 (1)항 기재 증거 및 (2)항에서 확인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016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의 설계상 보수 문인단체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김상률 수석에게 보수문예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2016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에서 소위 보수 문인단체들에 대하여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추정 가능하다.

다. 신청인 인디고서원이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인한 '배제'였는지 여부

(1)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 '인디고서원'은 청와대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연번 86, '리스트-2014/2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리스트-149명'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2)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한 배제인지 여부

신청인 '인디고서원'은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84면)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56,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연번 29에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 '인디고서원'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해당 사업에서 부당하게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에 따르면 배제사유는 문제인 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신청인 '인디고서원'이 후속 사업 문예지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배제되었는지 여부

위 나. (4)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인디고 서원'은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

업의 파행으로 진행된 후속사업인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권영빈, 박명진 등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진행 시기부터 파행을 거쳐 후속사업들이 진행되던 시기에 재임하였던 예술위 위원장들이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비위행위에 가담한 정도, 즉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나. 예술위 위원 오OO가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하였는지 및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후속사업인 우수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과 2016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에서 소위 보수문예지 및 문인단체들에 지원이 집중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3. 이 사건의 성격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은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해당 사업이 선정 축소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파행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의 활용방안으로 만들어진 사업에서 조차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 또한 불거졌다. 그리고 해당 우수문예지 사업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롭게 창설된 사업조차 보수 문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하여 만든 사업이라는 정황까지 사업의 파행·폐지·창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4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54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문3[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 취지

2017. 9. 7. 시인 이시영(이하 '신청인')이 우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2016. 2. 열린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행사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배제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신청을 하였는바, 위원회의 2017. 9. 15. 조사개시결정 이후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번역원 '교류' 사업 전반에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문체부·청와대 등의 특정 문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2014~2016 시기 동안 해당 기관이 진행한 사업 전반에 걸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하여 직권조사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번역원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문학진흥법」 제13조 제1항)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령상 번역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동법 제14조). 그러나 문체부는 이러한 감독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번역원 교류사업 분야 전반에 특정 작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파견불허 지시, 즉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체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특정 문인 배제지시는 대부분의 경우 청와대 등에 블랙리스트 실행 경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일부 문인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특정 문인들에 대한 검토 및 배제지시를 문체부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 측면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 - 문체부 - 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의 파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 및 주무관이 번역원 해외교류 매 사업마다 파견작가 명단을 청와대 및 국정원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청와대 및 국정원의 구체적인 특정 문인 배제지시 없이도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이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명단 등을 파견 작가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 이는 당시 문체부에 팽배하게 퍼져있던 좌파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른 블랙리스트 실행의 구조화 및 일상화에 따른 결과물로 파악된다. 즉,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은 ‘청와대 및 국정원 - 문체부 - 예술위 등 산하기관’ 간 상명하복식 지시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복되면서, 좌파배제의 국정기조가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방식으로 문체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어떤 특수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 및 내재화·일상화된 방식으로 작동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붙임 :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문3,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제1절 | 사건 개요

1. 직권조사 취지

2017. 9. 7. 시인 이시영(이하 ‘신청인’)이 우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2016. 2. 열린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행사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배제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신청을 하였는바, 위원회의 2017. 9. 15. 조사개시결정 이후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번역원 ‘교류’ 사업 전반에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문체부·청와대 등의 특정 문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2014~2016 시기 동안 해당 기관이 진행한 사업 전반에 걸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하여 직권조사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먼저, 번역원에서 진행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조사는 청와대 및 국정원, 문체부 그리고 산하기관인 번역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지시체계 및 관여자 등을 밝힘으로써 블랙리스트 실행의 전모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하여 ① 청와대 및 국정원 등의 문체부에 대한 번역원의 특정 문인들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하였는지 여부, ② 번역원에 문체부의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번역원의 누구에게 특정 작가에 대한 배제지시 사항이 하달되었는지 여부, ③ 특정 문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배제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여부, ④ 이러한 문체부 등의 지시에 대한 번역원

의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번역원에서 2014~2016년에 진행된 개별 사업들에서 특정 문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지시가 어떻게 하달되고, 산하기관 내부에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번역원에서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면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대표적인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서술 및 ② 문체부 담당 과장 및 번역원 측에서 제출한 배제지시가 있었던 특정 사업 및 작가 목록의 기술을 통해 번역원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현황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2절 | 주요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9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2014~2016 국내작가 해외교류지원 현황(해외기관 초청을 지원한 경우)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2	2014~2016 국내작가 해외교류지원 현황(번역원 자체 지원한 경우)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3	2016. 2. “미국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사업 이시영 등 배제 관련 답변서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4	위 사업계획안	번역원	2017. 10 12.
5	위 사업 관련 기안문 (2015. 12. 4. 등)	번역원	2017. 10 12.
6	배제 경위 관련 이메일 사본 (2015. 7. ~ 2015. 11.)	OOO	2017. 10 12.
7	위 사업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2016. 1. 13.)	번역원	2017. 10 12.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8	위 사업이 포함된 회계연도 번역원 지원 예산 및 지출 시기가 포함된 월별 예산 집행 현황 (2016. 2.)	번역원	2017. 10 12.
9	2016. 3. “파리 도서전” 초청 관련 황석영 등 배제 관련 답변서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10	위 사업계획안 및 보고서 (2015. 10. 8. 등)	번역원	2017. 10 12.
11	2015. 11.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김애란, 김연수 등 배제 관련 답변서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12	위 사업 관련 보고서 및 회의록 (2016. 10. 22.)	번역원	2017. 10 12.
13	위 사업 진행 관련 이메일 사본 (2015. 6. 26. ~ 9. 8.)	이OO	2015. 7.
14	2016. 9. “중국 항주 문학 행사” 관련 신경림, 박범신 등 배제 관련 답변서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15	위 사업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 (2017. 3. 9.)	번역원	2017. 10 12.
16	위 사업 진행 관련 이메일 사본 (2016. 2. 29. ~ 7. 5.)	박OO	2016. 3.
17	위 사업계획안(2016. 3. 21.)	번역원	2017. 10 12.
18	해외교류사업 참가작가 파견 기준 내규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19	번역원 근거법령, 정관, 규정 또는 운영세칙 등에 대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신규법령 대조표 명기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20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문인 지원내역 (2017. 2. 28.)	번역원	2017. 10 12.
21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공모사업 관련 자료	번역원	2017. 11. 1.
22	번역지원 공모사업 지원현황 (2017. 11. 1.)	번역원	2017. 11. 1.
23	번역지원 선정과정 관련 자료 (2017. 11. 1.)	번역원	2017. 11. 1.
24	번역지원공모사업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내용 관련 자료 (2017. 11. 1.)	번역원	2017. 11. 1.
25	(2014~2016)번역원 교류사업별 파견작가명단에서 문체부로부터 파견불허(또는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번역원	2017. 12. 20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작가 명단 표기 문건 (2017. 12. 20)		
26	위 배제지시 관련 이메일 사본 제출 (2016. 5.~)	각 사업 번역원 담당자	2017. 12. 20.
27	김OO 증인신문조서 (2017. 5. 17. 제14회 공판조서 중 일부)	김OO	2017. 11. 22.
28	정OO 진술서(2018. 1. 20.)	정OO	2017. 1. 22.
29	강OO 진술서(2018. 1. 24.)	강OO	2018. 1. 24.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1인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이시영	사건 신청인	신청서
2	OOO	번역원 영문화권 팀장 대리	진술조서(2017. 11. 6.)
3	고OO	번역원 번역출판본부장	진술조서(2017. 11. 10.)
4	김OO	번역원 전문위원	진술조서(2017. 11. 14.)
5	OOO	문체부 출판인쇄사업과 주무관	진술조서(2017. 11. 17)
6	박OO	번역원 교육정보본부장	진술조서(2017. 11. 22.)
7	정OO	번역원 유럽문화권 팀장	진술조서(2017. 11. 30.)
8	김성곤	번역원장	진술조서(2017. 12. 19)
9	김OO	모스크바문화원장 및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2014-2016)	진술서(2017. 12. 15.) 진술조서(2017. 12. 19)
10	권OO	베를린문화원장 및 번역원 본부장 (~2016. 1. 23. 재직)	진술녹음(2017. 12. 28.) 및 녹취록 별도
11	김OO	문체부 공무원 및 2014-2016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진술조서(2018. 1. 11.)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은 1996년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진행한다(문학진흥법 제13조 제1항). 문체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가진다(동법 제14조). 번역원은 연간 10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및 번역가 양성 사업을 비롯하여 한국 문학이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및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 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사업의 특성

번역원이 진행하는 해외교류 지원 사업은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를 목표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문학 및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문학진흥법 제13조 제3항 제3, 4호 참조).

해당 사업은 파견되는 한국작가의 선정 및 파견의 유형과 관련하여 크게 ① 해외기관의 초청이 있는 경우, ② 번역원의 자체 지원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유형은 특정 문인들에 대하여 해외기관에서 먼저 해당 행사의 초청을 요청하는 유형으로, 이 경우에 번역원은 특정 문인을 알선·중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교통 및 숙박 등)을 해외 초청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②유형은 번역원이 파견 사업을 기획하거나 유명 행사에 특정 세션을 구성하여 한국 문인을 선정 및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 경우에는 파견되는 행사 운영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에 대하여 매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외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2.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일반적인 배제사유에 대하여

가. 번역원 블랙리스트 지시체계

(1) 청와대·국정원 등의 문체부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

(가) 문체부 관리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관리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에서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신경림(X), 박범신(X)’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리스트-」16.9.27현재,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문체부 작성)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 오세영, 김예린, 최승, 특이없음(7.25)
	○ 고혜선, 특이없음(7.26)
	○ 신경림(X), 박범신(X), 황호승(O)

(나) 2017. 10. 15.자 서울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32쪽)

오OO은 2012. 4.경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017. 10. 15.자로 서울지검에서 진행된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 32쪽을 보면,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에서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신경림(X), 박범신(X)’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국정원에서 회신온 자료입니다. 신경림, 박범신은 국정원에서 배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배제를 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참고인 오OO의 진술(2018. 2. 7.자 진술조서, 36-36쪽)

참고인 오OO은 2012. 4.경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료, 2018. 2. 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오OO은 2016. 8. 이후 번역원 소관부서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예술정책과로 변경된 이후에는 번역원과 관련하여서도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배제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9쪽에서 '신경림(X), 박범신(X)' 부분은 앞서 2017. 10.경 서울지검에서 한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서, 해당 작가들에 대하여 국정원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 자 진술서(2-3쪽) 및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7-10쪽)

참고인 김OO은 2014. 10.~2016. 9.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청와대·국정원 등의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OO 작성, 위원회 제출 2017. 12. 15. 자, 진술서에서 “2014년 10월 과장 부임 직후부터 직급 및 직위와 무관하게 문화부 내부의 유관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영화, 공연, 문학 등과 함께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자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제지시 실행과 관련하여 진행경과를 “최종적으로는 실국장과 장차관께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했으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참고용으로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전했다”고 하여 번역원 진행사업에 파견되는 특정 작가들에 대한 배제지시 실행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등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OO은 번역원 해외교류사업에서 작가들의 파견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배제지시가 청와대 및 국정원 등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4년 10월 과장 부임 직후부터 직급 및 직위와 무관하게 문화부 내부의 유관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영화, 공연, 문학 등과 함께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으며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공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 중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참고인 김OO은 “출판과장 부임 당시 BH 포함한 정권 쪽에서도, 민간 쪽에서도 부당한 행정이라는 지시를 받지 않도록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박OO 국장님을 포함한 상급자, 동료들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지시라기보다는 관련된 기관 간의 행정협력”이라는 진술도 하였으나, 번역원의 본부장 등 블랙리스트 관여자들이 김OO 과장에게 리

스트가 어떻게 작동되는 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김OO 과장이 더 높은 곳으로부터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높은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참고인은 ‘청와대’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러한 경우 배제지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진술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청와대 등 상부기관에 블랙리스트 실행 경과 보고 여부와 관련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김소영 비서관 및 김상률 수석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주로 유선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참고인 OOO의 진술(2017. 11. 17.자 진술조서, 13쪽)

참고인 OOO은 1992년 문체부 입사 이후 현재까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근무 중인 주무관으로서 번역원 등 산하기관의 해외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온 자로, 번역원에 대한 특정 작가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청와대 등의 지시를 받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문체부 담당 과장인 김OO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 등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5-6쪽)

참고인 김OO는 2014. 4. 청와대에 파견되었던 문체부 공무원으로 2014. 4.부터 2016. 6.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출판’ 분야를 담당하였던 바, 김OO는 출판문화진흥원의 세종도서 사업 이외에는 출판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례를 알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롯하여 번역원 해외교류 사업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번역원에 특정 문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부인의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에게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인 김OO과 및 주무관인 OOO으로부터 번역원 내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경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참고인은 번역원 블랙리스트 관련 어떤 ‘보고’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영의 위원회 조사 거부

김소영은 2013. 10. 말경부터 2016. 9.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으로 근무한 자로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이었던 김OO의 상관으로서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5. 17.자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및 그에 따른 녹취서를 보면, 당시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는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인 김소영으로부터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등을 지시받고, 이에 대하여 김소영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나(공판기록 4,359~4,363쪽),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서는 재판기록에 명확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김소영은 변호사를 통하여 2018. 1.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청와대에서 번역원에 대해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문체부 담당 과장 등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받지 못하였다.

(2) 문체부의 번역원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

(가) 번역원 제출 2017. 10. 12.자 답변서(3쪽)

진상조사위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 이시영 등 배제 사건](2017문1)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2017. 9. 26. 번역원 측에 ‘2014~2016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관련 자료’ 및 ‘이시영·황석영·김애란·김연수·신경림·박범신 등 번역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알려진 문인들에 대한 배제사실 확인 및 문체부 등의 지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번역원으로부터 2017. 10. 12.자 답변서를 제출받은 바, 번역원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2014~2016년 시기에 번역원에서 진행한 해외교류 사업 전반에 걸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등에서 특정 작가들에 대한 파견 불허 통보, 즉 배제지시가 빈번하게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번역원 2017. 12. 22. 제출 2014~2016 해외교류사업 현황 및 배제지시 표기 파일

번역원은 진상조사위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2.자로 제출하였던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파일에 문체부로부터 특정 문인들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사업 및 파견 불허 통보가 있었던 문인을 표기한 후, 그러한 지시를 하달

하였던 문체부 담당 부서 및 번역원 내 담당팀을 명기하여 제출하였는바, 해당 내용은 본 결과보고서 '4.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배제지시 및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중 '사. 기타'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다) 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 자 진술서(6쪽) 및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 자 진술조서, 13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15.자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2014. 10.~2016. 9.)에 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특정 문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또한 번역원 해외교류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안을 분기별 등으로 '미리' 문체부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라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번역원 해외교류 사업 분야에 특정 문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사업의 계획안 등을 '미리' 송부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와 동일한 취지의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로서 특정 문인들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문체부 내에서는 OOO 주무관, 번역원에서는 각 사업부 본부장들, 특히 권OO 본부장 및 해당 사업의 팀장에게 배제지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진술조서 13쪽).

(라) 참고인 OOO의 진술(2017. 11. 17.자 진술조서, 13-15쪽)

참고인 OOO은 1992년 입사 이래로 현재까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출판 분야 중 해외진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으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김OO 과장과 함께 출판인쇄산업과에 근무한 자이다. 번역원에 대한 문체부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2017. 11. 1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번역원에 특정 작가에 대한 배제지시는 하달한 적이 없으며, 세월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작가들은 지원이 어렵다는 분위기를 전달하였을 뿐이며 이는 문체부와 번역원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사항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배제지시의 결정권과 관련하여 참고인에게는 결정권이 없으며, 상관인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으로부터 지

시를 받았으며, 참고인이 직접 청와대나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김OO 과장이 2015년 중순 무렵, 번역원에 교류사업별 파견 작가 명단을 분기별 등으로 '미리' 송부하라고 전달하라며 참고인에게 지시하였고, 참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번역원에 향후 해외교류 사업별 파견작가 명단을 미리 문체부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전달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은 번역원 교류 부분 전 사업 분야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된 것은 2015. 8. 9일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번역원에서 진행된 특정 문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실행은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번역원이 자체적으로 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참고인 000의 진술(2017. 11. 6.자 진술조서, 4-5쪽)

참고인 000은 2013. 8.에는 번역원의 영문화권팀 대리, 2015. 9.~2016. 12.까지 영문화권팀 팀장 직무대리, 2017. 1. 1.부터 현재까지 영문화권 팀장에 재임 중인 자이다. 2017. 11. 6.자 위원회 조사에서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담당 과장이나 주무관에게 번역원에서 진행하는 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월간계획에 따른 파견 작가 명단 등을 송부하는 것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당연한 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작가 명단을 검열하고 특정 문인들에 대해 파견을 불허한다는 통지가 번역원에 하달된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이 이러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한 것은 2015년 무렵의 일로 이시영, 김애란, 김연수 파견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체부에서 이들에 대한 배제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지시는 실무자인 참고인에게 직접 하달된 것이 아니라 번역원 김성곤 원장 및 당시 참고인의 상관이었던 김OO 번역출판본부장(現 번역원 전문위원)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바)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1. 30.자 진술조서, 5쪽)

참고인 정OO은 현재 번역원의 교류홍보팀 팀장 겸 부분부장이며 2015, 2016년에는 유럽문화권 팀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참고인은 2017. 11. 30.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주로 문체부 출

판인쇄산업과 000 주무관으로부터 특정 문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번역원 교류 사업 계획안을 분기별, 연도별로 ‘미리’ 문체부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000 주무관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이를 김00 번역원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참고인이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로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항은 000 주무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번역원의 팀장급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이는 유선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직접 대면한 경우에 전달받은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참고인 김00의 진술(2017. 11. 14.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00은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의 전문위원이며, 2013년에는 교육정보본부장, 이후에는 경영지원본부장 및 번역출판사업 본부장을 역임한 자이다. 참고인은 2017. 11. 14.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문체부의 번역원 교류 사업 분야에 대한 특정 문인 배제지시 여부에 대하여 2014년 런던도서전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4년 초, 김영하 소설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뉴욕 타임즈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쓴 칼럼을 써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시점 이후에 김영하 작가를 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전까지는 특정 작가를 해외에 파견할 때 번역원에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월별 사업계획표, 주간계획 등을 송부하여도 일체의 간섭이나 관여가 있지 않았으나, 2014년 런던 도서전 이후에는 특정 문인에 대한 배제지시가 빈번하게 하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전에는 월별 사업 계획안 등을 문체부에 보고하였는데, 런던 도서전 이후에는 김00 과장이 번역원에서 진행되는 해외 교류사업에 대해 분기별, 연도별, 상하반기 계획을 ‘미리’ 송부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배제지시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전달되었고 주로 000 주무관을 통해서 하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아) 참고인 고00의 진술(2017. 11. 10.자 진술조서, 4-5쪽)

참고인 고00은 2016. 1. 부터 번역원 번역출판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교육정보본부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참고인은 2017. 11. 10.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번역원이 문체부 측에 제출해온 번역원 사업에 대한 월

간보고는 통상적으로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 2013년 이후부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의 배제지시는 번역원의 교류 사업 분야에 집중되었고, 주로 유선상으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참고인 권OO에 대한 2017. 12. 19.자 녹음진술 및 2018. 1. 17.자 녹취록(4-5쪽)

참고인 권OO은 현재 독일 주재 한국문화원장에 재임 중이며, 2011. 12. ~ 2014. 8.까지는 번역원 번역출판본부장 및 2014. 9. ~ 2016. 1. 면직 전까지는 경영기획본부장을 역임한 자이다. 참고인은 2017. 12. 19.자 위원회 조사에 따른 녹음진술 및 이에 대한 2018. 1. 17.자 녹취록에서 참고인이 번역원에 번역출판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문체부의 특정 문인에 대한 배제지시가 본인에게는 전달된 바 없으며, 2014년도에는 이러한 배제지시가 느슨한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강화된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이 진행하였던 2014년 런던 도서전과 관련하여서도 황석영, 김영하, 윤태호 작가 등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정도의 의견이 자신에게 전달되었을 뿐 참고인이 실무자로서 원안대로 해당 작가들의 파견을 관철시켰다는 진술을 하였다.

(차) 참고인 김성곤의 진술(2017. 12. 19.자 진술조서, 4쪽)

참고인 김성곤은 2012. 2. 1.부터 2017. 12.까지 번역원장을 역임한 자로, 2017. 12. 19.자 위원회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체부가 번역원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하달한 것은 2014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지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항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누구로부터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출판인쇄산업과에서 하달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이를 전달받은 번역원 내 본부장들이 참고인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일반적인 배제 기준 및 사유

(1) 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자 진술서(5쪽) 및 참고인 김OO의 진술 (2017. 12. 21.자 진술조서, 12쪽)

참고인 김OO은 특정 작가 배제지시의 기준과 관련하여 2017. 12. 15.자 진술서에서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진술조서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은 출판·문학 관련 문서화된 리스트를 가지고 배제지시를 실행한 것은 아니고, 창작물과 창작자에 따라서 사례별로 항상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이 검토에는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명단을 출력하여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외에도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및 출판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참고인 OOO의 진술(2017. 11. 17.자 진술조서, 13-16쪽)

참고인 OOO은 2017. 11. 17.자 진술조서에서 특정 작가 배제지시의 기준 및 사유와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문인” ‘들이 배제기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상급자인 김OO 과장이 세월호 관련 작가는 안 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참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참고인이 직접 세월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작가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배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번역원 측에 전달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번역원 측에서 해외교류 사업계획안 등을 문체부의 지시대로 분기별, 연도별로 미리 송부하면 이 명단을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1. 14.자 진술조서, 4쪽)

참고인 김OO은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서 문체부의 배제지시에는 구체적인 배제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에 문학동네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눈먼 자들의 국가』 등 이러한 서적들이 출판된 이후에 이곳에 글을 쓴 작가들에 대하여 모두 배제지시가 하달되고 있다는 내용을 짐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번역원 특정 사업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된 편혜영, 김애란, 김연수 작가 등의 경우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된 사유에 대하여 세월호 관련 작가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 - 참고인 김성곤, 김OO, 고OO, 이OO, 정OO에 대한 각 2017. 12. 19., 2017. 11. 14., 2017. 11. 10., 2017. 11. 6., 2017. 11. 30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성곤, 김OO, 고OO, OOO, 정OO은 공통적으로 번역원이 문체부의 특정 문인에 대한 ‘파견 불허’ 지시에 대하여 번역원의 해외교류 지원사업의 특성상 항상 해외 사업파트너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된 작가들에 대하여, 해외기관 초청이 있는 경우에는 ① 해외기관이 해당 문인들에 대한 초청을 요청한 점, ② 이미 해외기관과 작가 파견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들어 번역원에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피하여 해외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파견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배제지시 및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가. 2014. 3. 런던도서전 - 김영하, 한강, 황석영 등 배제의 건

(1) 사건 개요

위 사업은 영국 런던에서 매년 4월경 열리는 국제도서전으로, 한국은 제43회 2014 런던도서전에서 주빈국으로 참가하여 문학행사를 개최하였다. 해당 행사에는 황석영, 김영하, 한강, 윤태호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주한 영국문화원과 참여작가 선정 협의 완료 후에 문체부에서 황석영, 김영하, 윤태호 등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으나 번역원 측에서 이미 주한 영국문화원과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작가들을 파견하였다.

(2)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은 2017. 12. 20.자로 위원회에 제출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 교류 지원 현황' 문건에서 2014년에 문체부로부터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사업으로 '2014 런던도서전'을 지목하고 있다. 주한 영국문화원과 참여작가 선정 협의 완료 후에 문체부에서 황석영, 김영하, 윤태호 등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으나 번역원 측에서 이미 주한 영국문화원과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참여작가들의 파견을 관찰시켰다는 진행 과정에 대하여도 해당 자료의 비고란에 명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제 지시는 문체부의 출판인쇄산업과로부터 번역원의 영문화권팀으로 하달되었으며, 유선 상으로 배제지시를 받았다는 연락형식 또한 기재하였다.

(3) 참고인 정OO 작성 2018. 1. 20.자 진술서(3쪽)

참고인 정OO는 2017. 2. 3.부터 현재까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2014년 런던도서전 당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8. 1. 20.자 본인 작성 진술서에서 '2014년 제43회 런던 도서전' 사업의 경우 출판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참고인의 업무 소관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김영하, 윤태호, 한강, 황석영 등 런던도서전 참여작가들에 대하여 산하기관인 번역원에 특정 작가의 파견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배제지시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참고인 OOO의 진술(2017. 11. 17.자 진술조서, 18쪽)

참고인 OOO은 2017. 11. 17.자 진술조서에서 '2014 런던도서전'과 관련하여 번역원에 특정 작가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1. 14.자 진술조서, 4쪽)

참고인 김OO은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서 "2014년 3월 무렵 런던도서전에서 저희가 주빈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가가 7-8명 정도 파견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가 선정 때 문체부가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황석영 같은 작가들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OO이 본부장이던 때입니다. 당시 영국문화원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작가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문체부의 배제지시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을 예정대로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참고인 권OO에 대한 2017. 12. 19.자 진술녹음 및 녹취록(5-7쪽)

“2014 런던도서전” 당시 번역원의 번역출판본부장으로 해당 사업을 담당하였던 참고인 권OO은 문체부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황석영 등의 작가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파견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번역원에 전달하였으나 실무자인 참고인이 영국문화원 측과 협의하여 파견을 관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2015. 11. 프랑스 MEET 문예축제 - 편혜영 등 배제의 건

(1) 사건 개요

프랑스에서 2015. 11. 18. ~ 26. 기간 동안 열린 ‘프랑스 MEET 문예축제’는 MEET 문학축제 조직위원회 측에서 이승우, 성석제, 편혜영, 김언수 등에 대하여 초청을 요청한 경우로, 번역원 측의 진술에 따르면 편혜영(소설가)에 대하여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번역원 유럽문화권팀에 배제지시를 하달하였으나 해외기관에서 초청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파견한 사업이다.

(2)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이 2017. 12. 20.자로 위원회에 제출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중 ‘2015년’ 부분을 보면 2015. 11. 열린 ‘프랑스 MEET 문예축제’의 문학 행사에서 편혜영 작가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배제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문체부 OOO이 번역원 정OO에게 편혜영 작가 배제를 지시하는 2015. 8. 7.자 메일

번역원 정OO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및 OOO의 번역원 교류 사업계획안 등을 분기별로 ‘미리’ 송부하여 문체부의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2015년 4분기 해

외문학행사파견작가.hwp' 파일을 문체부 000에게 송부하였고, 해당 파일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어 2015. 8. 6.에 누락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문체부 000에게 송부하자 000은 2015. 8. 7.자 메일 '번역원 하반기 작가명단'에서 '번역원 하반기 문학행사 중 편혜영 작가와 류보선 평론가는 제외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번역원 정 00에게 하달하였다.

[표-4] 문체부 000이 번역원 정00에게 편혜영 작가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는 2015. 8. 7.자 메일

----- Original Message -----
 From : <[redacted]@korea.kr>
 To : <[redacted]@klti.or.kr>
 Sent : 2015-08-07 11:10:25
 Subject : 번역원 하반기 작가명단

안녕하세요.

번역원 하반기 문학행사 중 편혜영 작가와 류보선 평론가는 제외하는 편이 좋을 듯 하고요.

파리 주빈국 작가는 일단 프랑스 측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작가 40명 중 참석이 어려운 작가를 표시하여 드리겠습니다.(오후에...)
 작가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 의견입니다.

시원한 하루 되시길...

보낸사람 정 00 ([redacted]@klti.or.kr)
 받는사람 [redacted]@korea.kr ([redacted]@korea.kr)
 날 짜 2015년 8월 6일(목) 13:50:01
 재 목 한국문학번역원입니다.

000 선생님께.

얼마 전 보내드린 파견작가 명단에서 과달라하라 도서전 부분이 빠져있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해주셨습니다.

- 파견(예정)작가: 정현중 시인, 구병모 소설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 드림

(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1. 14.자 진술조서, 7-8쪽)

참고인 김OO은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서 편혜영 작가 배제 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측에서 편혜영 작가의 초청을 번역원에 요청하였는데 문체부에서 해당 작가에 대하여 파견불허 통보가 왔으며, 이에 번역원 측에서는 당시 편혜영 작가의 『재와 빨강』이 유럽에서 평가가 좋아 프랑스 측에서 요청한 것이므로 파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파견을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문체부의 담당 과장 및 주무관에게 참고인이 위 배제지시에 관하여 강하게 반발하자, 문체부 담당 과장인 김OO의 지시로 다음날 번역원의 본부장들이 모두 세종시 문체부로 소집되었고, 김OO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간 예산 100억원의 번역원을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5) 참고인 고OO의 진술(2017. 11. 10.자 진술조서, 5쪽)

참고인 고OO은 2017. 11. 10.자 진술조서에서 번역출판본부의 부서장이 참고인에게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던 편혜영 작가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파견불허 통보가 하달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었고, 이에 참고인은 담당 문체부 주무관인 OOO에게 유선 상으로 배제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또한 이러한 반발 이후 문체부 김OO 과장의 지시로 번역원 본부장들이 모두 세종시로 소집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2015. 11.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 김애란, 김연수 등 배제의 건

(1) 사건 개요

위 사업은 북미한국문학회의가 주최한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및 영어권 번역가 세미나’로 강영숙 소설 『리나』 영문판 출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미한국문학회 측과 번역원이 공동으로 해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북미한국문학회는 2015. 11. 무렵 학회 운영비 및 작가 초청 경비 지원 및 학회 운영위에서 논의한 결과로 김애란, 김연수 작가의 초청을 요청하였다. 당시 문체부에서는 김애란·김연수의 해외 파견에 대해 불허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번역원은 북미한국문학회 측에 요청한 작가 파견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혔다.

(2)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이 제출한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 11. 열렸으며 강영숙 및 김종희가 초청된 '미국 동부 한국문학 행사'에서 김애란, 김연수의 경우 문체부에서 배제지시가 유선상으로 하달되었으며, 이 경우 결론적으로 해당 작가들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기재하였다.

(3) 번역원 2017. 10. 12.자 제출 답변서(3쪽)

번역원이 제출한 2017. 10. 12.자 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는 번역원에 김연수, 김애란 작가의 해외 파견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2017. 10. 12.자 번역원 측 김애란, 김연수 건 관련 답변서 일부

<h2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4. 김애란, 김연수 관련 사업 답변서</h2>
<p>○ 거절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에서 김연수, 김애란 작가 해외 파견에 대해 불허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과 주무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두 작가의 지원 불허 통보를 받음. 정확한 불허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 지시라고만 통보함

(4) 참고인 000이 제출한 2015. 7. 31., 2015. 9. 2.자 메일

참고인 000은 김애란, 김연수 등이 배제된 '2015. 11.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진행 당시 번역원 측 담당자인 000과 듀크대 측 담당자 000 사이에 주고받은 2015. 7. 31.자 메일과 2015. 9. 2.자 메일을 제출하였다. 2015. 7. 31.자 메일에서 듀크대 측 담당자인 000은 번역원 측의 000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김애란, 김연수 작가의 초청을 요청하였으나, 2015. 9. 2.자 번역원 000은 문체부와 해당 작가들의 파견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김애란, 김연수 작가는 파견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번 정부가 작가들에 대한 검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표-6] 2015. 7. 31.자 듀크대 측 담당자가 번역원 측 담당자에게 “김애란, 김연수” 작가 초청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 일부

From : ○ Kwon
 To :
 Cc : 신○○ @asu.edu
 Sent : 2015-07-31 오전 10:35:00
 Subject : Re: Re: Re: Re: 11월 북미 한국문학 행사에 관하여--

이○○ 팀장님,
 보내주신 서류 등 잘 받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관한 정보도 감사합니다. 한가지 확인 하고 싶은 점은 LTIK에서 총 \$13,000를 학회 행사에 한정 해서 지원 해 주시고, 작가파견 예산은 그 외 별도로 지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13,000 중 \$6000의 신청 절차가 작가파견 보고서와 같이 진행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했습니다. 혹시 재가 오해였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8월말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출 할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희망 작가는 전에 말씀 드린 김애란, 김연수, 두분을 먼저 추천 해 봅니다. 이 분들이 못 오실 경우, 다른 분들을 추천 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가능하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참석 할 수 있게, 11월 13일 오후나 저녁 시간에 작가들과의 도임을 계획 하던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많으니 앞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도 생각 나는 것이 있으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좋은 여름 보내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권○○ 드림.

[표-7] 2015. 9. 2.자 번역원 측 담당자가 듀크대 측 담당자에게 김애란, 김연수 작가에 대하여 문체부 측 파견불허 입장 통보하는 메일 내용 일부

2015-09-02 21:51 GMT-04:00 이○○ :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화부와 파견작가 명단을 협의해보았는데, 김애란 김연수 작가는 파견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0월에 출간되는 달기 한국문학 시리즈 5종 중에서 두분 작가를 선정해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달기에서 저희와 협력 하에 총 25종의 한국문학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도 5종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작가 중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현황을 고려하여 초청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1. 이문열 <사람의 아들> 2. 강영숙 <리나> 3. 서하진 <착한 가족> 4. 김경옥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5.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순서입니다
 이 순서로 작가 두분을 섭외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하시는 작가를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정부가 작가들에 대한 검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가 안에 대한 안을 주시는대로 섭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5) 참고인 ○○○의 진술(2017. 11. 6.자 진술조서, 13-15쪽)

참고인 ○○○은 당시 사업 담당자로, 북미한국문화회 측에서 김애란, 김연수의 초청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문체부 측에서 파견불허 통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김애란, 김연수의 경우 영어로 번역·출간된 작품이 없어 파견불허 지시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1. 14.자 진술조서, 11-12쪽)

참고인 김OO 또한 김애란, 김연수의 경우 당시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있었으나 두 작가는 번역·출간된 작품이 아직 없는 상태로 파견불허 지시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김OO은 김애란, 김연수의 경우 배제사유에 대하여 ‘세월호’와 관련하여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문인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2016. 2. 미국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한국문학행사 -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 등 배제의 건

(1) 사건 개요

위 사업은 미국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캠퍼스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한국학 센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초청받은 시인과 번역가가 한국문학 행사에 참석하여 시낭송회 및 한국문학 강연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에서 번역원은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의 초청에 따라 한국 작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원내용은 해당 작가들의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 비용 부분이었으며, 해당 사업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승희, 안선재, 이시영, 김수복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의 파견과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배제지시가 번역원에 하달되었으며, 번역원 측은 이시영, 김수복의 경우에는 버클리대 측에 위 시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예정대로 파견하였다.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도종환의 경우에는 당시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공천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에 불참을 통보하였다.

(2)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이 2017. 12. 20.자 제출한 ‘2014-2016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중 ‘2016년’ 부분에 따르면, 2016. 2. 열린 미국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사업에서 이시영, 김수복에 대하여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번역원 영문화권팀에 유선상으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3) 번역원 2017. 10. 12. 제출 답변서(3쪽)

번역원 측이 2017. 10. 12.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위 사업에서 이시영, 김수복 시인에 대하여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과 주무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지원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표-8] 2017. 10. 12.자 번역원 측 이시영 시인 건 관련 답변서 일부

2. 이시영 시인 관련 질의 답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영, 김수복 시인 버클리대에 지원요청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에서 김수복, 이시영 시인 파견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과 주무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두 작가의 지원 불허 통보를 받음. 정확한 불허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 지시라고만 통보함

(4) 번역원 000이 버클리대 측 000에게 보낸 2015. 8. 28.자 메일

해당 사업진행 과정에서 번역원 측 담당자인 000 팀장이 버클리대 측 담당자인 000 교수에게 보낸 2015. 8. 28.자 메일을 보면 “정부에서 이시영, 김수복 시인의 파견을 지원하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더욱 곤란”한 상황이며, “이번 정부가 저희가 지원하는 작가 명단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9] 2015. 8. 28.자 번역원 측 담당자가 버클리대 측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일부

<p>보낸사람: "이00" <@klti.or.kr> 받는사람: "권00" <@snu.ac.kr> 날짜: 2015년 8월 28일(금) 13:39:48 제목: Re:RE: Re:RE: [한국문학번역원] 2016년 2월 시인파견 논의</p>
<p>그리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u>정부에서 이시영, 김수복 시인의 파견을 지원하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더욱 곤란하나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가 저희가 지원하는 작가 명단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어서요,,,</u></p>

(5) 문체부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

문체부가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에 따르면 ‘작가회의’의 경우 2010년 쇠고기파동 시국선언시 참여단체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다. 이시영의 경우 2016. 1.까지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도종환의 경우에도 2008년에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김수복의 경우에도 한국작가회의 회원이다.

[표-10]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 (문체부 작성)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분야	단체명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	진행상황
공통 - 15명	①민예총, ②지역민예총 ③불우탈라협 동조합(민예총소속)	예술위 보조금사업 평평으로 고발 및 환수조치(2010년) - 492백만원 중 5천만원 변제상대, 전액반납시까지 지원중단	
	④작가회의	민예총산하 민족문제연구소(대표 조성래, 이사장 채희원), 민미협(박홍순) 2010년 쇠고기파동 시국선언시 참여단체 작가회의 소속 ⑤고명철, ⑥박몽규, ⑦신용목 / ⑧광주전남소설가협회 ⑨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유한계(신미협) / ⑩광주전남소설가협회	

(6) 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자 진술서(5면) 및 참고인 김OO의 진술 (2017. 12. 21.자 진술조서, 12-13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에서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의 배제사유에 대하여 “위 분들은 이미 한국 문학계의 거성들로서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작품들에 대한 수요도 높았기에 오히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은 젊은 유망 작가들을 신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자는 취지로 협의”했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진술조서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도종환의 경우에도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이시영의 경우에도 단체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젊은 유망 작가들을 위해 이들을 제외하자는 취지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가들을 지원하여 정부 차원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미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참고인 000의 진술(2017. 11. 6.자 진술조서, 5-11쪽)

참고인 000은 해당 사업의 번역원 내 담당자로서 2017. 11. 6.자 진술조서에서 이시영 등에 대한 문체부의 파견불허 통보를 통해 문체부로부터 특정 문인들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당시 번역원의 번역출판사업 본부장이었던 김00을 통해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에 대한 문체부의 파견 불허 통보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번역원의 김성곤 원장에게도 해당 문인들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00 본부장은 우회적으로 해당 작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참고인에게 지시하였고, 참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해외 초청기관인 버클리대 측에서 배제지시가 내려온 작가들에 대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이 2015. 8. 28.자 메일을 통해 버클리대 측 담당자인 000에게 당시 정부에서 파견 작가 명단에 대하여 검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은 이시영, 김수복의 경우 버클리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번역원이 직접 지원을 결정하는 것보다 버클리대 측이 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체부의 불허통보가 있어 번역원의 지원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참고인 김00의 진술(2017. 11. 14.자 진술조서, 8-10쪽)

참고인 김00은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서 당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00 과장과 000 주무관으로부터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에 대한 파견불허 통보가 유선상으로 번역출판사업 본부장인 자신에게 직접 하달되었으며, 이를 해당 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000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시영, 도종환, 김수복의 지원배제 사유에 대하여 참고인은 작가회의 소속 작가였다는 점이 배제 사유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6. 3. 파리도서전 - 황석영, 김영하, 김애란, 한강, 임철우 배제의 건

(1) 사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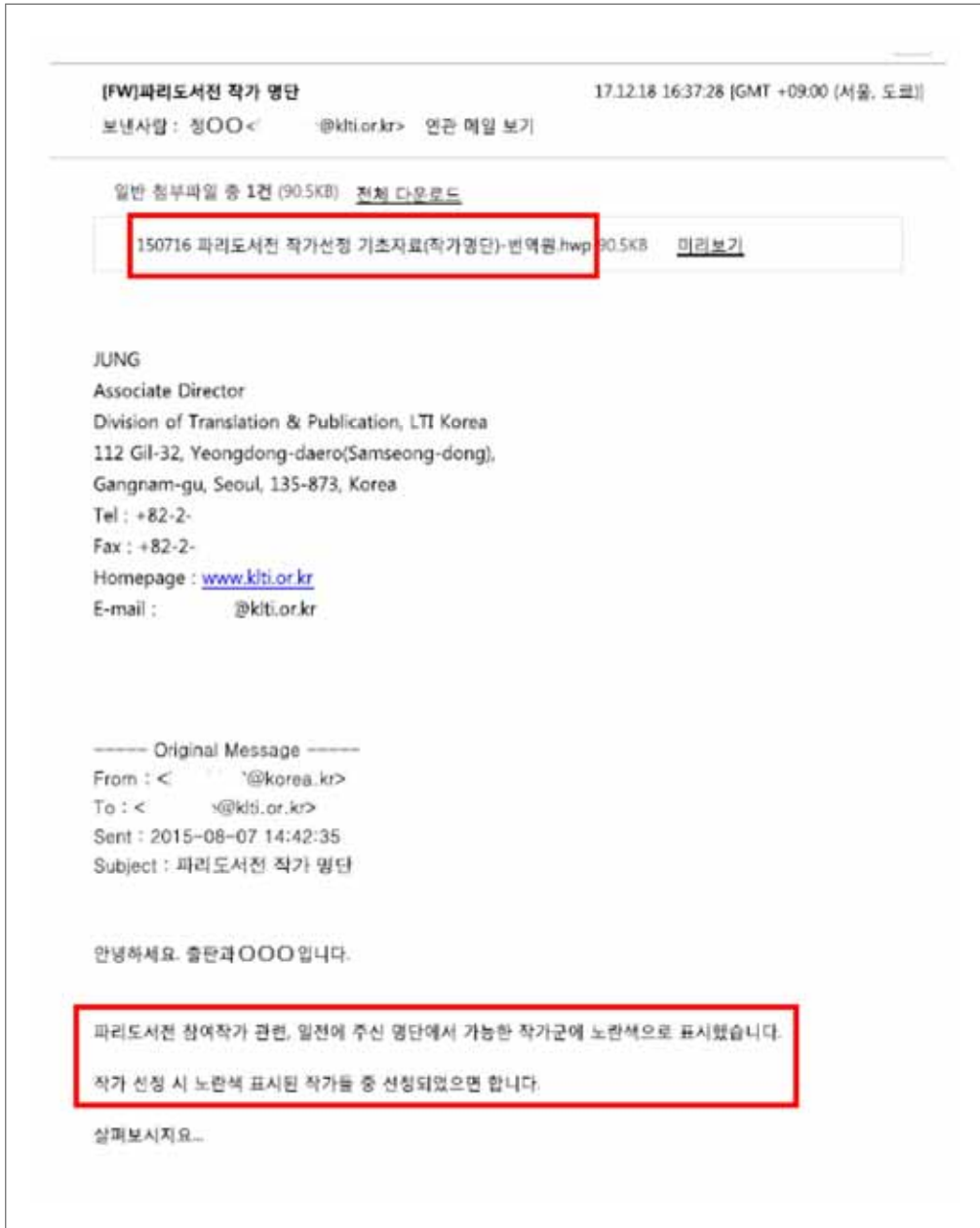
2016. 3.에 열린 파리도서전은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했던 행사로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이었다. 해당 사업은 번역원에서 주관했던 사업은 아니었으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문화홍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번역원 등이 참여하였다. 문학분야 작가선정을 위해 2015. 6.부터 사전작업을 실시하여 프랑스 내 한국문학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파리도서전 참석을 원하는 한국작가 명단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9.에는 파리도서전 조직위 관계자와 작가선정 원칙(최소한 1권 이상 작품이 프랑스에 번역·출판된 작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저명 작가 등)을 공유하였다. 이후 2015. 10. ~ 2016. 1. 사이에는 파리도서전 파견작가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김애란, 김영하, 임철우, 한강, 황석영 등의 작가들이 초청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문체부의 파견 불허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번역원은 해외기관 측에서 초청하는 작가들이며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들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2)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이 2017. 12. 22. 제출한 ‘2014-2016 국내작가 해외교류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6. 3. 파리도서전의 경우, 황석영, 한강, 김영하, 김애란, 은희경, 임철우, 김혜순에 대하여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 및 주무관으로부터 번역원 유럽문화권팀에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

(3) 문체부 000이 번역원 정00에게 보낸 2015. 8. 7.자 메일 및 첨부파일에 표시된 배제 작가 명단

[표-11] 문체부 000이 번역원 정00에게 보낸 2015. 8. 7.자 메일 및 첨부파일에 표시된 배제 작가 명단



번역원 측 파리도서전 담당자인 정OO 팀장이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OOO 주무관에게 파리도서전 작가선정을 위한 작가명단을 송부하자 OOO 주무관은 2015. 8. 7.자 '파리도서전 작가 명단' 메일에서 '가능한 작가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파일을 송부하였고, '작가선정 시 노란색 표시된 작가들 중 선정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문체부 OOO 주무관이 번역원 정OO 팀장에게 보낸 작가명단 파일을 보면 황석영, 김애란, 한강, 은희경, 김연수, 공지영, 임철우, 편혜영, 고은, 김훈, 박민규, 박범신, 이창동, 황지우 등이 '가능한 작가군'에서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참고인 OOO의 진술(2017. 11. 17.자 진술조서, 19쪽)

참고인 OOO은 2017. 11. 17.자 진술조서에서 2016. 3. 파리도서전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해당 사업의 담당 주무관이었던 것은 맞으나 황석영 등 작가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번역원에 하달한 기억은 없고, 해당 사업의 경우 황석영 등의 작가들은 프랑스 조직위 측에서 선정하여 초청한 작가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배제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14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진술조서에서 2016. 3. 파리도서전에서 특정 문인 파견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황석영 등 명망 있는 작가들의 경우 프랑스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구성하는 참여 작가들의 경우 신진 작가 위주로 추진해보자는 의미로 의견제시를 한 것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1. 30.자 진술조서, 6-7쪽)

참고인 정OO은 당시 번역원의 유럽문화권 팀장이자 당시 한불상호교류의 해 문학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었던 자로서, 2016 파리도서전 파견 작가들에 대하여 문체부의 파견 불허 통보가 있었으며, OOO 주무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황석영, 한강 등에 대한 배제지시를 참고인이 직접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은 프랑스 조직위 측에서 초청을 요청한 작가들의 경우에도 문체부 측에서 파견 불허 통보를 하여 이

들의 경우 프랑스 측에서 선택한 작가들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파견을 강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참고인이 보고한 번역원 내 담당자는 상급자였던 번역출판사업 본부장 김OO이었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 13쪽)

참고인 김OO은 2016. 3. 파리도서전 준비단계에서 번역원의 번역출판사업 본부장으로 총괄책임자였던 자로서,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정OO 팀장으로부터 자신에게 보고되었고, 황석영, 은희경, 김영하, 김애란, 한강, 임철우 등에 대한 배제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2016. 9. 중국 항주 한국문학 행사 - 신경림, 박범신, 정끝별 등 배제의 건

(1) 사건 개요

2016. 9. 중국 항주 한국문학 행사는 G20정상회담 개최 및 정부 국빈 순방을 기념한 문학행사로, 번역원과 항주양안사지문화연구및교류센터가 주관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감사원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중 [별표9]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분야에서 신경림, 박범신 작가가 배제되었다는 결과도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사항은 2016. 8. 「문학진흥법」의 시행으로 번역원의 문체부 내 담당부서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예술정책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출판인쇄사업과와 예술정책과가 모두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9] 한국문학번역원 부분

감사원이 문체부와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2017. 1. 19. ~ 3. 10까지 진행하여 2017. 6.에 발표한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별표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6개 기관 공모사업 신청자 등 부당 지원·선정 배제 명세' 중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기획사업 부분에서 신경림, 박범신이 배제되었다는 감사결과가 기재되었다.

(3) 문체부 관리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문체부가 관리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에서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신경림(X), 박범신(X)’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2] 「리스트-’16.9.27현재」,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문체부 작성)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 오세영, 김에란, 최윤: 특이없음(7.25) ○ 고해선: 특이없음(7.26) ○ 신경림(X), 박범신(X), 정호승(O)
--------------	---

(4)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이 2017. 12. 20.에 제출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6. 9. 8. ~ 12. 열렸던 중국 항주 문학행사에서 신경림, 정끝별, 박범신 작가에 대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및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배제지시를 번역원에 유선상으로 하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번역원이 제출한 2017. 10. 12.자 답변서(1-2쪽)

번역원이 제출한 2017. 10. 12.자 답변서에 따르면 번역원은 2016. 6.경 문체부에 신경림, 김기택, 정끝별 3인(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경림, 정끝별에 대하여 2016. 6. 중 유선상으로 변경을 요청받았고, 이후에 다시 번역원은 문체부에 유안진, 김기택, 박범신, 김중혁 4인(안)을 제출하였으나, 문체부에서 박범신 불가를 통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표-13] 번역원이 제출한 2017. 10. 12.자 답변서

5. 신경림, 박범신 관련 사업 답변서
<p>3. 지원 배제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의 “예술정책관, VIP 순방 계기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계획” 의 일환으로 번역원에 행사 요청 및 계획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의 대통령 문화순방 관련 행사 요청(2016. 2. 29. 메일 참조) · 문화부에 “예술정책관, VIP 순방 계기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계획” 5개국 행사 계획안 제출(2016. 3. 21. 메일 참조) ※ 상반기 이란, 프랑스 행사의 경우에는 작가 확정, 하반기 러시아(7월), 중
- 1 -
<p>국 항주(9월), 페루(11월) 행사의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협의를 통해 행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항주 현지 국제시책계 주관 기관과 협업하여 시인행사 개최로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현지 문예지에 소개된 시인 3인(원로, 중진, 신인 각 1인) 잠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림: <작가(作家)>(2011년 4월호) 한국당대문학특집호 게재 · 김기택, 정끝별: <역림(譯林)>(2011년6호) 한국문학특별호 시인3인선 게재 ※장석남의 경우 5월 이란행사 참여로 제외 - 문화부에 신경림, 김기택, 정끝별 3인(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순방 연계 중국문학행사 승인 요청 (2016. 6. 13. 메일 참조) - 문화부에서 신경림, 정끝별 변경 요청받음(2016. 6월중 추정. 유선 상 작가 교체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관련 자료 없음) - 중국 현지에서 출간된 작가 명단을 토대로 유안진, 김기택, 박범신, 김중현 4인(안) 2차 결정. 특히 소설가 박범신, 김중현 2인의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최근 출판사 및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안진: 『素雨二袋子(솔비 한주머니)』(2006년, 百花文艺出版社) · 박범신: 『如意芥的尘世(올라체)』(2013년, 古吴轩出版社), 『肮脏的书桌(더러운 책상)』(2016년, 人民文学出版社) · 김중현: 『乐群图书馆(악기들의 도서관)』(2015년, 华东科技太学出版社), 『儒户村(졸비들)』(2016년, 上海译文出版社) - 문화부에 유안진, 김기택, 박범신, 김중현(안) 4인(안) 제출(2016. 6. 24. 메일 참조) - 문화부에서 “유안진, 김기택, 박범신, 김중현” 4인(안)에 대해 박범신 불가 통보(직접 관련자료 없음)

(6) 참고인 고OO의 진술(2017. 11. 10.자 진술조서, 7-9쪽)

참고인 고OO은 위 행사 당시 번역원의 번역출판사업 본부장이었던 자로 해당 행사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하였는데, 참고인은 신경림과 박범신의 경우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원 측에서 문체부에 제출한 1, 2차 파견 작가 리스트(1차: 신경림, 김기택, 정끝별 3인(안), 2차: 유안진, 김기택, 박범신, 김중혁 4인(안))에 포함시켰던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출 이후 문체부에서는 1차에서는 신경림·정끝별, 2차에서는 박범신에 대해 파견불허 통보를 해왔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고인은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관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 사업의 경우 번역원 측에서 우회지원의 방식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은 해당 행사가 중국 항주 측에서 한국 작가를 초청하거나 한·중 사이에 이미 사전준비를 진행하여 작가 선정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참고인이 번역원 000로부터 들은 바로는 2차 확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김기택에 대해서도 문체부에서 사업 추진 도중에 파견이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14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진술조서에서 2016. 9. 중국 항주 한국학 행사에서 신경림, 박범신 등에 대하여 번역원에 배제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사유와 관련해서는 “1) 국가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 등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신경림 같은 작가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 문학계의 거성들로서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작품들에 대한 수요도 높았기에 오히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은 젊은 유망 작가들을 신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자는 취지로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하였다.

(8) 참고인 강OO 작성 2018. 1. 24.자 진술서(1-3쪽)

참고인 강OO는 2015. 11. 23.부터 현재까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사무관으로 근무 중으로, 2016. 6. 중국 항주 한국 문학 행사에서 번역원과 해당 행사에 파견할 작가 리스트에 대하여 협의하는 업무를 처리한 자이다. 본인 작성

2018. 1. 24.자 진술서에 따르면, 참고인과 앞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 문체부 내 담당 공무원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現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 번역원 내 담당자는 OOO 당시 경영기획본부 정책기획팀 대리(現 정책기획팀장)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2016. 6. 중 번역원 측에서 <신경림, 김기택, 정끝별> 3인(안)을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나 유선상으로 신경림, 정끝별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청받았고, 이후 번역원 측은 <유안진, 김기택, 박범신, 김중혁> 4인(안)을 2차로 결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문체부에서 박범신 불가를 통보하였는데, 위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① 참고인이 직접 번역원에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는지, ② 문체부 내 담당 과장 등으로부터 배제지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③ 신경림, 박범신, 정끝별에 대한 배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예: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문재인 지지선언 참여 문인 등), ④ 위 배제지시에 대하여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던 것인지, ⑤ 위 배제와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 보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① 행사 참가자 인선에 대하여 번역원 OOO 대리에게 연락은 참고인이 직접 하였으며, ② 행사 참가자 인선에 관하여 번역원 OOO 대리가 보내온 명단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에게 전달하였으며, 오OO 서기관이 그 명단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었고, 참고인이 그 결과를 번역원 OOO 대리에게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신경림, 박범신, 정끝별에 대한 배제사유에 대하여는 파견 불가 통보만 받은 경우로 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오OO서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으나 오OO 서기관이 해당 명단에 관하여 협의한 대상은 청와대 및 국정원 등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⑤ 이러한 배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이 직접 청와대 및 국정원에 보고를 한 바는 없으나 동 행사 참가자로 최종 확정된 인사(오정희, 정호승, 김기택)에 대하여는 오OO 서기관으로부터 행사 참가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바, 오OO 서기관이 참가자 인선에 대하여 청와대와 협의를 하였다면 당연히 청와대도 이 명단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기타 - 2014~2016년 번역원 교류 사업 중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된 사업 및 작가 명단

(1) 참고인 김OO의 2018. 1. 29.자 메일을 통해 확인한 배제작가 리스트

전문위원은 2018. 1. 23. 참고인 김OO에게 메일을 통해 '번역원 2014 ~2016 번역

원 해외교류사업 현황' 파일을 열람케 하고, 배제지시를 하달했던 문인들 중 특별히 기억이 나는 대상들에 대하여 표기하여 1월 말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고인 김OO은 2018. 1. 29.자 답신을 통해 번역원 작가 해외파견 지원의 경우 한강, 공지영, 황석영, 성석제, 편혜영에 대해 배제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번역원 2017. 12. 20. 제출 2014~2016 해외교류사업 현황 및 배제지시 표기 파일¹⁾

2014년 총 11건의 교류사업 중 1건, 2015년 총 61건의 교류사업 중 5건, 2016년 총 69건의 교류사업 중 총 9건의 개별사업에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며, 문인 약 30여 명에 대한 배제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4] 2014~2016 국내작가 해외교류 지원 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배제지시 사실 확인	비고
2014	영국 런던도서전 (2014. 4. 6. ~ 13.)	1. 행사명: 2014년 런던도서전 한국 주빈국 문학행사 개최 2. 행사내용: 한국문학번역원 부스 및 주빈국 작가존 운영, 문학 세미나 6회, 문학살롱 4회, 도서전 외부 문학행사 9회, 오늘의 작가 행사(황선미), 주빈국출판세미나, 한국문학번역세미나 3. 대상작가: 황석영, 이문열, 이승우, 김인숙, 신경숙, 김영하, 한강(이상 7인 소설가), 김혜순(시인), 황선미(아동작가), 윤태호(웹툰작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주한 영국문화원과 모든 참가작가 선정 협의 완료 후, 문체부에서 황석영(소설가), 김영하(소설가), 윤태호(웹툰작가) 등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2015	프랑스 국제 시인 비엔날레 (2015. 5. 29. ~ 6. 10.)	1. 행사명: 국제 시인 비엔날레 2. 행사내용: 프랑스 국제 시 비엔날레 한국 대표 시인으로 참가, 다양한 행사 개최 3. 대상작가: 심보선, 강정, 김이름 (이상 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심보선 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황석영 작가 <바리데기> 출간 기념 행사 (2016. 5. 10. ~ 6. 3.)	1. 행사명: 황석영 작가 <바리데기>출간 기념 행사 및 독자와의 만남, 현지언론 인터뷰 등 2. 행사내용: 2015년 황석영 작가 <바리데기>가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 출간됨에 따라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지원	파견

1) 번역원 2017. 12. 22. 제출 자료 재구성.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배제지시 사실 확인	비고
		3. 대상작가: 황석영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황석영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이탈리아 유네스코 본부 특별 시 낭송회	1. 행사명: 유네스코 본부 특별 시 낭송회 2. 행사내용: 유네스코 본부 시낭송회 및 출판 기념회 개최 3. 대상작가: 고은(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고은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개최(2015. 11. 11. ~ 16.)	1. 행사명: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2. 행사내용: 한국문학회 참가,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개최 3. 대상작가: 강영숙(소설가), 김종희(평론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김애란, 김연수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배제
	프랑스 MEET 문예축제(2015. 11. 18. ~ 26.)	1. 행사명: 프랑스 MEET 문예축제 2. 행사내용: 프랑스 MEET 문학행사 참가 3. 대상작가: 편혜영(소설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편혜영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하와이대 및 UC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2016. 2. 17. ~ 28.)	1. 행사명: 하와이대 및 UC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2. 행사내용: 미국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캠퍼스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한국학 센터가 주관하는 한국문학 행사 참석, 시 낭송회 및 한국문학 강연 진행 3. 대상작가: 김승희(시인), 안선재(번역가), 이시영, 김수복(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이시영, 김수복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2016	프랑스 파리도서전 (2016. 3. 16. ~ 20.)	1. 행사명: 파리 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 2. 행사내용: 파리도서전 한국 주빈국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대표작가들 간 작가대담, 토론회 및 낭독회 진행 3. 대상작가: 김애란, 김연수, 김영하, 김종혁, 김혜순, 마종기, 문정희, 오정희, 은희경, 이승우, 이인성, 임철우, 정유정, 한강, 황석영 (소설가, 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황석영, 한강, 김영하, 김애란, 은희경, 임철우(이상 소설가), 김혜순(시인)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러시아 한국문학행사 (2016. 7. 7. ~ 9.)	1. 행사명: 한국 문학 행사 2. 행사내용: 한국 시인과의 만남 개최 및 출판사 미팅 3. 대상작가: 이근배, 문정희, 최동호(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이근배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슬로베니아 시 축제 작가 파견(2016. 8. 23. ~ 28.)	1. 행사명: 슬로베니아 시 축제 작가 파견 2. 행사내용: 시축제 참가, 언론사 인터뷰 및 문학행사 개최 등	파견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배제지시 사실 확인	비고
		3. 대상작가: 고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고은 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중국 항주 문학행사 (2016. 9. 8. ~ 12.)	1. 행사명: 중국 항주 문학행사 2. 행사내용: 항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작가의 문학행사 개최 3. 대상작가: 오정희, 김기택 4. 문체부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신경림, 정끝별, 박범신 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배제
	베를린 문학축제 및 문학행사 작가 파견(2016. 9. 8. ~ 23.)	1. 행사명: 베를린 문학축제 및 문학행사 작가 파견 2. 행사내용: 문학축제 참가, 문학행사 개최, 현지 언론사 인터뷰 등 3. 대상작가: 한강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한강 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Manoa 지 한국문학특집호 출간 마케팅 지원(2016. 9. 18. ~ 23.)	1. 행사명: Manoa 지 한국문학특집호 출간 마케팅 지원 2. 행사내용: 미국 의회도서관, 조지워싱턴대학교 주관 문학 행사 참석, 시 낭송 및 한국문학 강연 개최 3. 대상작가: 고은(시인), 안선재(번역가), 프랭크 스튜어트(하와이대 교수)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고은 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한국-호주 시인 교류행사 지원(한국 2016. 10. 16. ~ 21. / 호주 2016. 11. 6. ~ 11.)	1. 행사명: 한국-호주 시인 교류행사 지원 2. 행사내용: 한국 및 호주에서 시 낭독 행사, 세미나 개최, 시 창작 워크숍 진행 3. 대상작가: 심보선, 김이듬, 김소연(시인)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메일) - 심보선 (시인)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홍콩 10월 한국 문화제(2016. 10. 19. ~ 22.)	1. 행사명: 홍콩 10월 한국 문화제 2. 행사내용: 2016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Festive Korea) 한국문학행사 참가 3. 대상작가: 김애란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유선) - 김애란 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됨.	파견

(3) 2016년 해외교류 지원 사업의 경우 배제지시 정황이 담긴 메일 자료

2016년 번역원에서 진행한 해외교류 지원 사업의 경우, 번역원 박OO 당시 팀장이 문체부 OOO에게 2016. 5. 20.자 메일로 '2016 해외교류행사 파견단(160520)_한국문학번역원.hwp' 파일을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문체부 OOO은 2016. 6. 1.에 위 파일에 배제대상 명단에 음영처리하여 박OO에게 재송부하였다.

[표-15] 문체부 OOO이 번역원 박OO에게 보낸 2016. 6. 1. 자 메일



첨부파일에서 음영처리 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시인행사에서 이근배, 슬로베니아 시 축제에서 고은, 미국 마노아지 출판마케팅에서 고은, 독일 베를린 문학축제에서 한강, 홍콩 문학행사에서 심보선이다.

[표-16] [표-15]에 기재된 메일에 첨부된 파일에서 음영처리된 작가 명단

13	러시아 시인행사	7. 8.	문정희, 최동호, 이근배	* vip 해외순방 * 고전사업 예산
14	중국 상해 문학행사	8. 17. ~ 8. 23.	이혜경, 배수아	
15	슬로베니아 시 축제	8. 23.~ 8. 28.	고은	
16	미국 마노아지 출판마케팅	9. 17.	고은	
17	독일 베를린 문학축제	9. 5. ~ 12.	한강	
18	일본 동경도서전	9. 23. ~ 9. 25.	김인숙, 천운영	
19	브라질 상 파울루 문학축제	9월	배수아	
20	미국 <에세이스트의 책상> 출판 마케팅	10. 6. ~ 9. 20.	배수아	
21	홍콩 문학행사	10.19. ~ 10. 22.	심보선 (혹은 오세영)	
22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10. 19. ~ 10. 23.	성석제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일반적인 배제사유

(1) 청와대 및 국정원의 문체부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

참고인 김OO의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및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및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록에서 2017. 5. 17.자 제14회 공판조서 중 김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에 따른 녹취서, 참고인 강OO의 본인 작성 2018. 1. 24.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와대가 문체부 출판인 쇄산업과 등 번역원 소관 부서의 담당 과장이나 주무관에게 직접적으로 특정 문인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들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문체부의 담당 과장인 김OO은 번역원 내 블랙리스트 실행 현황과 관련하여 청와대 김OO 행정관에게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OO 행정관은 이를

상급자인 김소영 교문수석실 비서관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 관리 「리스트-20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에서 번역원 해외교류지원 사업 부분, 참고인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서울 지검 2회 진술조서(32면) 및 2018. 2. 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경림, 박범신 작가의 경우 국정원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체부의 번역원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

번역원 제출 2017. 10. 12.자 답변서, 번역원 제출 2017. 12. 22.자 ‘2014~2016 해 외교류 사업 현황 및 배제지시 표기 파일’, 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자 진술서 및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7. 11. 17.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참고인 정OO에 대한 2017. 11. 30.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 참고인 고OO에 대한 2017. 11. 10.자 진술조서, 참고인 권OO에 대한 2017. 12. 19.자 녹음진술 및 2018. 1. 17.자 녹취록, 참고인 김성곤에 대한 2017. 12. 19.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문체부의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및 주무관은 산하기관 번역원의 본부장 및 담당 사업 팀장들에게 번역원 해외 교류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안 등을 분기별로 ‘미리’ 송부하라고 지시하여 이 자료에 기초하여 특정 문인들에 대하여 파견 불허 등의 배제지시를 번역원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일반적인 배제기준 및 사유

참고인 김OO의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및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7. 11. 17.자 진술,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의 판단 기준은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되었

으며, 이러한 정부비판적인 문인들, 특히 2014. 4. 16.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인들이 집중적인 배제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문체부의 배제지시에 대하여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

참고인 김성곤에 대한 2017. 12. 19.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 참고인 고OO에 대한 2017. 11. 10.자 진술조서,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7. 11. 22.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참고인 정OO에 대한 2017. 11. 30.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번역원은 문체부의 특정 문인에 대한 ‘파견 불허’ 지시에 대하여 번역원의 해외교류 지원사업의 특성상 항상 해외 사업파트너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배제지시가 하달된 작가들에 대하여, 해외기관 초청이 있는 경우에는 ① 해외기관이 해당 문인들에 대한 초청을 요청한 점, ② 이미 해외기관과 작가 파견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들어 번역원에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피하여 해외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파견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라.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배제지시 및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1) 2014. 3. 런던도서전 - 김영하, 한강, 황석영 등 배제의 건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였던 2014년 제43회 런던도서전에서 김영하, 한강, 황석영 등 문인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번역원 2017. 12. 20.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 참고인 권OO에 대한 2017. 12. 19.자 진술녹음 및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황석영, 김영하, 윤태호 등에 대한 배제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번역원 측은 주한 영국문화원과 이미 참여작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파견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2) 2015. 11. 프랑스 MEET 문예축제 - 편혜영 등 배제의 건

번역원 2017. 12. 20.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문체부 OOO이 번역원 정OO에게 편혜영 작가 배제를 지시하는 2015. 8. 7.자 메일,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 참고인 고OO일에 대한 2017. 11. 10.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2015. 11.에 열린 ‘프랑스 MEET 문예축제’에 성석제, 편혜영 작가 등이 초청되었으나,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 및 주무관으로부터 번역원 측에 편혜영 작가에 대한 배제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 경우 번역원이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제출하였던 ‘2015년 4분기 해외문학행사 파견작가’ 명단에서 문체부 000 주무관을 통해 하반기 문학행사 중 편혜영 작가는 제외하라는 지시가 번역원에 하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2015. 11. 미국 동부 한국문학행사 - 김애란, 김연수 등 배제의 건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 2017. 10. 12.자 제출 답변서, 참고인 000이 제출한 2015. 7. 31., 2015. 9. 2.자 메일, 참고인 000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00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우 문체부에서 번역원 측에 김애란, 김연수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고, 번역원 측은 당시 김애란, 김연수의 경우 영미권 번역본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다른 번역원 교류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배제지시를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해 문체부의 배제지시대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4) 2016. 2. 미국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한국문학행사 -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 등 배제의 건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 2017. 10. 12.자 제출 답변서, 번역원 000이 버클리대 측 000에게 보낸 2015. 8. 28.자 메일, 문체부 관리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기존 관리 리스트-149명’, 참고인 김00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및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000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00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우 문체부가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번역원 측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도종환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개인 일정에 따라 불참하였고, 이시영·김수복의 경우 버클리대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파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도종환·이시영·김수복 배제사유는 이들이 당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었던 ‘한국작가회의’ 소속의 임원이자 작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정된다.

(5) 2016. 3. 파리도서전 - 황석영, 김영하, 김애란, 한강 등 배제의 건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문체부 000이 번역원 정00에게 보낸 2015. 8. 7.자 메일 및 첨부파일에 표시된 배제작가 명단, 참고인 정00에 대한 2017. 11. 30.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00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6. 3. 파리도서전의 경우 황석영, 김영하, 김애란, 한강 등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문체부로부터 번역원에 하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000 주무관은 번역원 측이 2015. 6.부터 문학분야 작가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내 한국문학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파리도서전 참석을 원하는 한국작가 명단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담긴 문건에 파리도서전 파견 가부에 대하여 작가 명단에 음영처리하여 2015. 8. 7.자로 번역원에 문건을 송부하였으며, 이후 파리도서전에서 프랑스 조직위 측에서 작가 선정을 완료한 것은 2015. 10. ~ 2016. 1.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번역원은 문체부에서 파견불허 지시를 내린 작가들에 대하여 프랑스 측에서 이미 선정한 작가들이라는 점을 들어 파견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2016. 9. 중국 항주 한국문학 행사 - 신경림, 박범신, 정끝별 등 배제의 건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9] 한국문학번역원 부분, 문체부 작성 「리스트-」 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 제출 2017. 10. 12.자 답변서, 참고인 고00에 대한 2017. 11. 10.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00에 대한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강00 작성 2018. 1. 24.자 진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우 신경림, 정끝별의 경우 번역원이 문체부에 제출하였던 1차 파견 작가 리스트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며, 박범신의 경우 이후 번역원이 제출한 2차 파견 작가 리스트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작가들은 최종적으로 위 행사 참가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7) 기타 사업 - 2014~2016년 번역원 교류 사업 중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된 사업 및 작가명단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18건의 교류사업 중 1건, 2015년 총 61건의 교류사업 중 5건, 2016

년 총 69건의 교류사업 중 9건의 사업에서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며, 문인 약 30명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6년 해외교류 지원 사업의 경우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중 문체부 담당 주무관 000과 번역원 박00 사이에 주고 받은 메일을 보면, 문체부가 번역원에 해외교류 사업 분야의 사업계획안 등을 분기별로 미리 송부하라는 지시에 따라 박00가 000에게 2016. 5. 20.자로 '2016 해외교류행사 파견단' 파일을 송부하자 이에 대하여 000이 검토 이후 2016. 6. 1.에 파견에 '유념'해야 할 작가들을 음영처리하여 박00에게 재송부함으로써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사건의 성격

번역원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문학진흥법」 제13조 제1항)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령상 번역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동법 제14조). 그러나 문체부는 이러한 감독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번역원 교류사업 분야 전반에 특정 작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파견불허 지시, 즉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체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특정 문인 배제지시는 대부분의 경우 청와대 등에 블랙리스트 실행 경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일부 문인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특정 문인들에 대한 검토 및 배제지시를 문체부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 측면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 - 문체부 - 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의 파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 및 주무관이 번역원 해외교류 매 사업마다 파견작가 명단을 청와대 및 국정원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청와대 및 국정원의 구체적인 특정 문인 배제지시 없이도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이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명단 등을 파견 작가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 이는 당시 문체부에 팽배하게 퍼져있던 좌파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른 블랙리스트 실행의 구조화 및 일상화에 따른 결과물로 파악된다. 즉,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은 '청와대 및 국정원 - 문체부 - 예술위 등 산하기관' 간 상명하복식 지시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복되면서, 좌파배제의

국정기조가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방식으로 문체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어떤 특수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 및 내재화·일상화된 방식으로 작동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번역원의 경우 문체부의 특정 문인에 대한 파견 불허라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에도 배제대상 문인들에 대한 파견이 일부분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사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의 유형상 해외기관이 특정 문인에 대한 초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이처럼 해외기관이 특정 문인의 초청을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번역원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작가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해외기관과 작가 선정 및 비용분담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절차가 있는 점이 문체부의 배제지시로부터 번역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호하고,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특정 문인들을 원천적으로 파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번역원 진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배제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관여자들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 나. 번역원에서 진행한 해외교류지원사업 이외의 번역·출판 관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5

이시영 등 한국문학번역원 배제 사건



55

이시영 등 한국문학번역원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문1[이시영 등 한국문학번역원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2017. 9. 7. 시인 이시영(이하 ‘신청인 이시영’)이 우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2016. 2. 열린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행사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배제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신청을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번역원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문학진흥법」 제13조 제1항)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령상 번역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동법 제14조). 그러나 문체부는 이러한 감독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번역원 교류사업 분야 전반에 특정 작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파견불허 지시, 즉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청와대 및 국정원의 구체적인 특정 문인 배제 지시 없이도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 및 주무관이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명단 등을 파견 작가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 즉,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은 ‘청와대 및 국정원 - 문체부 - 예술위 등 산하기관’ 간 상명 하복식 지시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복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좌파배제의 국정기조가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방식으로 문체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구조화 및 내재화·일상화된 방식으로 작동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2) 신청인 이시영의 경우, 문체부가 신청인에 대한 배제지시를 번역원 측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번역원 측에서는 해외초청으로 진행되는 점을 이용하여 UC 버클리대 측에 신청인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청하여 파견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배제사유는 신청인이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인이었으며, 당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었던 ‘한국작가회의’ 소속의 임원이자 작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붙임 : [이시영 등 한국문학번역원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문1, 이시영 등 한국문학번역원 배제 사건

[신청인] 이시영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2017. 9. 7. 시인 이시영(이하 ‘신청인 이시영’)이 우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2016. 2. 열린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행사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배제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신청을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9. 15.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파견을 진행한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행사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인하여 번역원 측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으므로, ①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② 실행되었다면, 블랙리스트 지시체계는 어떠한지, ③ 신청인 이시영이 해당 행사에서 번역원 측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6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이시영 시인 관련 답변서 (2017. 10. 12.)	번역원	2017. 10. 12
2	UC Berkeley Invitation - Lee Si Young	UC Berkeley	2017. 10. 12
3	2015. 7. ~ 11. 000과 권00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000, 권00	2017. 10. 12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사본		
4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	2017. 12. 20.
5	문체부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오OO	2017. 9. 7.
6	2017. 10. 15.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진술조서(2회)	문체부 오OO	2018. 2. 2.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총 9인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조사함.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이시영	사건 신청인	신청서
2	OOO	번역원 영문화권 팀장 대리	진술조서(2017. 11. 6.)
3	김OO	번역원 전문위원	진술조서(2017. 11. 14.)
4	OOO	문체부 출판인쇄사업과 주무관	진술조서(2017. 11. 17)
5	정OO	번역원 유럽문화권 팀장	진술조서(2017. 11. 30.)
6	김성곤	번역원장	진술조서(2017. 12. 19)
7	김OO	모스크바문화원장 및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2014-2016)	진술서(2017. 12. 15.) 진술조서(2017. 12. 21.)
8	김OO	문체부 공무원 및 2014-2016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진술조서(2018. 1. 11.)
9	오OO	문체부 공무원	진술조서(2018. 2. 7.)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은 1996년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진행한다(「문학진흥법」 제13조 제1항). 문체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가진다(동법 제14조). 번역원은 연간 10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및 번역가 양성 사업을 비롯하여 한국 문학이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및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 2016. 2. 미국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한국문학행사 사업

2016. 2. 미국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한국문학행사 사업은 미국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캠퍼스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한국학 센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초청받은 시인과 번역가가 한국문학 행사에 참석하여 시낭송회 및 한국문학 강연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에서 번역원은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의 초청에 따라 한국 작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원내용은 해당 작가들의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 비용 부분이었으며, 해당 사업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승희, 안선재, 이시영, 김수복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신청인 이시영의 파견과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배제지시가 번역원에 하달되었으며, 번역원 측은 신청인 이시영의 경우에 대해서 UC 버클리대 측에 지원을 요청하여 파견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

가. 청와대·국정원 등의 문체부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

(1) 문체부 관리 「리스트-20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8쪽)

문체부가 관리한 「리스트-20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

업' 부분에서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특정 문인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리스트-16.9.27현재」,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문체부 작성)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 오세영, 김예란, 최유: 특이없음(7.25)
	○ 고해선: 특이없음(7.26)
	○ 신경림(X), 박범신(X), 정호승(O)

(2) 2017. 10. 15.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32쪽)

2017. 10. 15.자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 32면을 보면, 「리스트-20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에서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신경림(X), 박범신(X)'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국정원에서 회신 온 자료입니다. 신경림, 박범신은 국정원에서 배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배제를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3) 참고인 오OO의 진술(2018. 2. 7.자 오OO의 진술조서, 35~36쪽)

참고인 오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 8. 이후 번역원 소관 부서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예술정책과로 변경된 이후에는 번역원과 관련하여 서도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배제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리스트-2016. 9. 27.」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9면에서 '신경림(X), 박범신(X)' 부분은 앞서 2017. 10.경 서울지검에서 한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서, 해당 작가들에 대하여 국정원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참고인 김OO의 진술서(2017. 12. 15.자 진술서, 2~3쪽) 및 진술(2017. 12. 21.자 김OO의 진술조서, 7~10쪽)

참고인 김OO은 직접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였다(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자 진술서, 2~3쪽). 참고인 김OO은 2014. 10.~2016. 9.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으로,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청와대·국정원 등의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7. 12. 15.자 진술서에서

“2014년 10월 과장 부임 직후부터 직급 및 직위와 무관하게 문화부 내부의 유관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영화, 공연, 문학 등과 함께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제지시 실행과 관련하여 진행경과를 “최종적으로는 실국장과 장차관계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했으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참고용으로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전했다”고 하여 번역원 진행사업에 파견되는 특정 작가들에 대한 배제지시 실행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등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7. 12. 21.자 김OO의 진술조서). 김OO은 번역원 해외교류사업에서 작가들의 파견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배제지시가 청와대 및 국정원 등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4년 10월 과장 부임 직후부터 직급 및 직위와 무관하게 문화부 내부의 유관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영화, 공연, 문학 등과 함께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으며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공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 중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참고인 김OO은 “출판과장 부임 당시 BH 포함한 정권 쪽에서도, 민간 쪽에서도 부당한 행정이라는 지시를 받지 않도록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박OO 국장님을 포함한 상급자, 동료들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지시라기보다는 관련된 기관 간의 행정협력”이라는 진술도 하였으나, 번역원의 본부장 등 블랙리스트 관여자들이 김OO 과장에게 리스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김OO 과장이 더 높은 곳으로부터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서 ‘더 높은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진술인은 ‘청와대’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러한 경우 배제지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청와대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진술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또한 진술인은 청와대 등 상부기관에 블랙리스트 실행 경과 보고 여부와 관련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김소영 비서관 및 김상률 수석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주로 유선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참고인 000의 진술(2017. 11. 17.자 000의 진술조서, 13쪽)

참고인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000은 1992년 문체부 공무원으로 입문 이후 현재까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근무 중인 주무관으로서 번역원 등 산하기관의 해외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온 자로, 번역원에 대한 특정 작가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청와대 등의 지시를 받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문체부 담당 과장인 김OO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 등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김OO진술조서, 5~6쪽)

참고인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OO는 2014. 4. 청와대에 파견되었던 문체부 공무원으로 2014. 4.부터 2016. 6.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출판’ 분야를 담당하였던 바, 김OO는 출판문화진흥원의 세종도서 사업 이외에는 출판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례를 알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롯하여 번역원 해외교류 사업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번역원에 특정 문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부인의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술인에게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인 김OO과 주무관인 000으로부터 번역원 내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경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인은 번역원 블랙리스트 관련 어떤 ‘보고’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 김소영의 위원회 조사 거부

김소영은 2013. 10. 말경부터 2016. 9.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으로 근무한 자로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이었던 김OO의 상관으로서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5. 17.자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및 그에 따른 녹취서를 보면, 당시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는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인 김소영으로부터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등을 지시받고, 이에 대하여 김소영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나(공판기록 4359~4363쪽),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

행과 관련하여서는 재판기록에 명확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김소영은 변호사를 통하여 2018. 1.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청와대에서 번역원에 대해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문체부 담당 과장 등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받지 못하였다.

나. 문체부의 번역원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

(1) 번역원 제출 2017. 10. 12.자 답변서(3쪽)

위원회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 이시영 등 배제 사건](2017문1)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2017. 9. 26. 번역원 측에 ‘2014~2016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관련 자료’ 및 ‘이시영·황석영·김애란·김연수·신경림·박범신 등 번역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알려진 문인들에 대한 배제사실 확인 및 문체부 등의 지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번역원으로부터 2017. 10. 12.자 답변서를 제출받은 바, 번역원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2014~2016년 시기에 번역원에서 진행한 해외교류 사업 전반에 걸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등에서 특정 작가들에 대한 파견 불허 통보, 즉 배제지시가 빈번하게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번역원 2017. 12. 22. 제출 2014~2016 해외교류사업 현황 및 배제지시 표기 파일

번역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2.자로 제출하였던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파일에 문체부로부터 특정 문인들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사업 및 배제지시가 있었던 문인을 표기한 후, 그러한 지시를 하달하였던 문체부 담당 부서 및 번역원 내 담당팀을 명기하여 제출하였다.

(3) 참고인 김OO의 진술서(2017. 12. 15.자 진술서, 6쪽) 및 진술(2017. 12. 21.자 김OO의 진술조서, 13쪽)

참고인 김OO은 직접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였다(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자 진술서, 6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15.자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2014. 10.~2016. 9.)에 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특정 문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또한 번역원 해외교류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안을 분기별 등으로 ‘미리’ 문체부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라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7. 12. 21.자 김OO의 진술조서, 13쪽). 번역원 해외교류 사업 분야에 특정 문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사업의 계획안 등을 ‘미리’ 송부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와 동일한 취지의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로서 특정 문인들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문체부 내에서는 OOO 주무관, 번역원에서는 각 사업부 본부장들, 특히 권OO 본부장 및 해당 사업의 팀장에게 배제지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참고인 OOO의 진술(2017. 11. 17.자 OOO의 진술조서, 13~15쪽)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은 1992. 5. 27. 문체부 공무원으로 입문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출판인쇄사업과에서 출판 분야 중 해외진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으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김OO 과장과 함께 출판인쇄산업과에 근무한 자로, 번역원에 대한 문체부의 특정 작가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진술인은 번역원에 특정 작가에 대한 배제지시는 하달한 적이 없으며, 세월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작가들은 지원이 어렵다는 분위기를 전달하였을 뿐이며 이는 문체부와 번역원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사항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배제지시의 결정권과 관련하여 진술인에게는 결정권이 없으며, 상관인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진술인이 직접 청와대나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김OO 과장이 2015년 중순 무렵, 번역원에 교류사업별 파견 작가 명단을 분기별 등으로 ‘미리’ 송부하라고 전달하라며 진술인에게 지시하였고, 진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번역원에 향후 해외교류 사업별 파견작가 명단을 미리 문체부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전달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진술인은 번역원 교류 부분 전 사업 분야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된 것은 2015. 8, 9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번역원에서 진행된 특정 문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실행은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번역원이 자체적으로 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참고인 000의 진술(2017. 11. 6.자 000의 진술조서, 5쪽)

참고인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00은 2013. 8.에는 번역원의 영문화권팀 대리, 2015. 9.~2016. 12.까지 영문화권팀 팀장 직무대리, 2017. 1. 1.부터 현재까지 영문화권 팀장에 재임 중인 자로,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담당 과장이나 주무관에게 번역원에서 진행하는 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월간계획에 따른 파견 작가 명단 등을 송부하는 것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당연한 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작가 명단을 검열하고 특정 문인들에 대해 파견을 불허한다는 통지가 번역원에 하달된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진술인이 이러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한 것은 2015년 무렵의 일로 이시영, 김애란, 김연수 파견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체부에서 이들에 대한 배제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지시는 실무자인 진술인에게 직접 하달된 것이 아니라 번역원 김성곤 원장 및 당시 진술인의 상관이었던 김00 번역출판본부장(現 번역원 전문위원)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6) 참고인 정00의 진술(2017. 11. 30.자 정00의 진술조서, 5~6쪽)

참고인 정00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정00은 현재 번역원의 교류홍보팀 팀장 겸 부분부장이며 2015, 2016년에는 유럽문화권 팀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진술인은 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주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000 주무관으로부터 특정 문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번역원 교류 사업 계획안을 분기별, 연도별로 '미리' 문체부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000 주무관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이를 김00 번역원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진술인이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로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항은 000 주무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번역원의 팀장급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이는 유선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직접 대면한 경우에 전달받은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1. 14.자 김OO의 진술조서, 4쪽)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OO은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의 전문위원이며, 2013년에는 교육정보본부장, 이후에는 경영지원본부장 및 번역출판사업 본부장을 역임한 자이다. 진술인은 2014년 이전까지는 특정 작가를 해외에 파견할 때 번역원에서 문체부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월별 사업계획표, 주간계획 등을 송부하여도 일체의 간섭이나 관여가 없었으나, 2014년 런던 도서전 이후에는 특정 문인에 대한 배제지시가 빈번하게 하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문체부 김OO 과장이 번역원에서 진행되는 해외 교류사업에 대해 분기별, 연도별, 상하반기 계획을 ‘미리’ 송부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배제지시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전달되었고 주로 OOO 주무관을 통해서 하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참고인 김성곤의 진술(2017. 12. 19.자 김성곤의 진술조서, 4쪽)

참고인 김성곤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성곤은 2012. 2. 1.부터 2017. 12.까지 번역원장을 역임한 자로, 문체부가 번역원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하달한 것은 2014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지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항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누구로부터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출판인쇄산업과에서 하달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이를 전달받은 번역원 내 본부장들이 진술인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일반적인 배제 기준 및 사유**(1) 참고인 김OO의 진술서(2017. 12. 15.자 진술서, 6~7쪽) 및 진술(2017. 12. 21.자 김OO의 진술조서, 12쪽)**

참고인 김OO은 직접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였다(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자 진술서, 6~7쪽). 참고인 김OO은 특정 작가 배제지시의 기준과 관련하여 2017. 12. 15.자 진술서에서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

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7. 12. 21.자 김OO의 진술조서, 12쪽). 진술인은 출판·문학 관련 문서화된 리스트를 가지고 배제지시를 실행한 것은 아니고, 창작물과 창작자에 따라서 사례별로 항상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이 검토에는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명단을 출력하여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외에도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및 출판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참고인 OOO의 진술(2017. 11. 17.자 OOO의 진술조서, 13~16쪽)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특정 작가 배제지시의 기준 및 사유와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문인’들이 배제기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진술인은 상급자인 김OO 과장이 세월호 관련 작가는 안 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진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진술인이 직접 세월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작가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배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번역원 측에 전달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번역원 측에서 해외교류 사업계획안 등을 문체부의 지시대로 분기별, 연도별로 미리 송부하면 이 명단을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인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1. 14.자 김OO의 진술조서, 5쪽)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서 문체부의 배제지시에는 구체적인 배제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에 문학동네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눈먼 자들의 국가』 등 이러한 세월호 관련 저작들이 출판된 이후에 관련 글을 쓴 작가들에 대하여 모두 배제지시가 하달되고 있다고 짐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신청인 이시영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번역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가. 신청인 이시영이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¹⁾,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²⁾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나.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이 2017. 12. 20.자 제출한 ‘2014-2016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중 ‘2016년’ 부분에 따르면, 2016. 2. 열린 미국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시인 및 번역가 파견 지원 사업에서 이시영, 김수복에 대하여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번역원 영문화권팀에 유선상으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다. 번역원 2017. 10. 12. 제출 답변서

번역원 측이 2017. 10. 12.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위 사업에서 이시영, 김수복 시인에 대하여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과 주무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파견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림-2] 2017. 10. 12.자 번역원 측 이시영 시인 건 관련 답변서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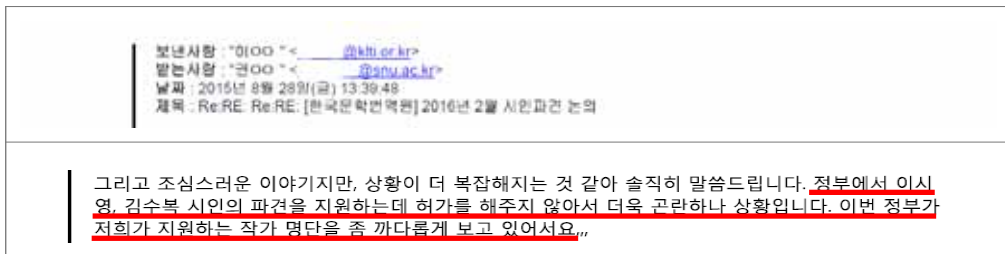
2. 이시영 시인 관련 질의 답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영, 김수복 시인 버클리대에 지원요청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에서 김수복, 이시영 시인 파견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과 주무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두 작가의 지원 불허 통보를 받음. 정확한 불허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 지시라고만 통보함

- 1) <한겨레>,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 명단”, 2015. 5.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412.html(접속날짜: 2018. 3. 16.)
- 2) <한국일보>,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명단”,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146abf21618f42c5ab80bfe37a521e8a>(접속날짜: 2018. 3. 15)

라. 번역원 이OO이 UC 버클리대 측 OOO에게 보낸 2015. 8. 28.자 메일

해당 사업진행 과정에서 번역원 측 담당자인 이OO 팀장이 UC 버클리대 측 담당자인 OOO 교수에게 보낸 2015. 8. 28.자 메일을 보면 ‘정부에서 이시영, 김수복 시인의 파견을 지원하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더욱 곤란’한 상황이며, ‘이번 정부가 저희가 지원하는 작가 명단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3] 2015. 8. 28.자 번역원 측 담당자가 UC 버클리대 측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일부



마. 문체부 관리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

문체부가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에 따르면 ‘작가회의’의 경우 2010년 쇠고기파동 시국선언서 참여단체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다. 이시영의 경우 2016. 1.까지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도종환의 경우에도 2008년에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김수복의 경우에도 한국작가회의 회원이다.

[그림-4]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6」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부분 (문체부 작성)

분류	단체명	사업개요 및 관리내용	진행상황
공통 - 15명	①민예총, ②지역민예총 ③문화발달원 ④문화재단(문화소관) ⑤작가회의	예술위 보조금사업 집행으로 교발 및 관수조지(2010년) - 492백만원 중 5천만원 면제상대, 권역별남시까지 지원중단 민예총산하 민족문제연구소(대표 조성태, 이사장 최희원), 민미협(박종순) 2010년 쇠고기파동 시국선언서 참여단체 작가회의 소속 ⑥고명철, ⑦박용구, ⑧신용복 / ⑨광주권남소설가협회	

바. 참고인 김OO의 진술서(2017. 12. 15.자 진술서, 5면) 및 진술(2017. 12. 21.자 김OO의 진술조서, 12~13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위원회 제출 진술서에서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의 배제사유에 대하여 “위 분들은 이미 한국 문학계의 거성들로서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작품들에 대한 수요도 높았기에 오히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은 젊은 유망 작가들을 신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자는 취지로 협의”했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도종환의 경우에도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이시영의 경우에도 단체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젊은 유망 작가들을 위해 이들을 제외하자는 취지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가들을 지원하여 정부 차원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미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참고인 OOO의 진술(2017. 11. 6.자 이OO의 진술조서, 5~8쪽)

참고인 O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해당 사업의 번역원 내 담당자로서 이시영 등에 대한 문체부의 파견불허 통보를 통해 문체부로부터 특정 문인들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당시 번역원의 번역출판사업 본부장이었던 김OO을 통해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번역원의 김성곤 원장에게도 해당 문인들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OO 본부장은 우회적으로 해당 작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진술인에게 지시하였고, 진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해외 초청기관인 UC 버클리대 측에서 배제지시가 내려온 작가들에 대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진술인이 2015. 8. 28.자 메일을 통해 UC 버클리대 측 담당자인 OOO에게 당시 정부에서 파견 작가 명단에 대하여 검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은 이시영, 김수복의 경우 버클리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번역원이 직접 지원을 결정하는 것보다 UC 버클리대 측이 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체부의 불허통보가 있어 번역원의 지원이 곤란하다는 사

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아.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1. 14.자 김OO의 진술조서, 9~10쪽)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과 OOO 주무관으로부터 이시영, 김수복, 도종환에 대한 파견불허 통보가 유선상으로 번역출판사업 본부장인 자신에게 직접 하달되었으며, 이를 해당 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이OO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시영, 도종환, 김수복의 배제 사유에 대하여 진술인은 '작가회의' 소속의 작가였다는 점이 작용하였다고 짐작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사실

가.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

(1) 청와대 및 국정원의 문체부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

참고인 김OO의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및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및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록에서 2017. 5. 17.자 제14회 공판조서 중 김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에 따른 녹취서, 참고인 강OO의 본인 작성 2018. 1. 24.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와대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등 번역원 소관 부서의 담당 과장이나 주무관에게 직접적으로 특정 문인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들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문체부의 담당 과장인 김OO은 번역원 내 블랙리스트 실행 현황과 관련하여 청와대 김OO 행정관에게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OO 행정관은 이를 상급자인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 작성 「리스트-20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에서 번역원 해외교류지원 사업 부분, 참고인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서울 지검 2회 진술조서(32면) 및 2018. 2. 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경림, 박범신 작가의 경우 국정원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체부의 번역원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여부

번역원 제출 2017. 10. 12.자 답변서, 번역원 제출 2017. 12. 22.자 「2014~2016 해 외교류 사업 현황 및 배제지시 표기 파일」, 참고인 김OO 작성 2017. 12. 15.자 진술서 및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7. 11. 17.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참고인 정OO에 대한 2017. 11. 30.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성곤에 대한 2017. 12. 19.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문체부의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및 주무관은 산하기관 번역원의 본부장 및 담당 사업 팀장들에게 번역원 해외교류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안 등을 분기별로 ‘미리’ 송부하라고 지시하여 이 자료에 기초하여 특정 문인들에 대하여 파견 불허 등의 배제지시를 번역원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일반적인 배제기준 및 사유

참고인 김OO의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및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OOO에 대한 2017. 11. 17.자 진술,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의 판단 기준은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답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 되었으며, 이러한 정부비판적인 문인들, 특히 2014. 4. 16.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인들이 집중적인 배제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해당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번역원 2017. 12. 20.자 제출 '2014-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 현황', 번역원 2017. 10. 12.자 제출 답변서, 번역원 000이 UC 버클리대 측 000에게 보낸 2015. 8. 28.자 메일, 문체부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기존 관리 리스트-149명', 참고인 김OO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및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7. 11. 6.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1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우 문체부가 신청인 이시영에 대한 배제지시를 번역원 측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번역원 측에서는 해외초청으로 진행되는 점을 이용하여 UC 버클리대 측에 신청인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청하여 파견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배제사유는 신청인이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인이었으며, 당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었던 '한국작가회의' 소속의 임원이자 작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6

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56

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문3[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김성규는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 명단에 신청인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진행된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사업’(이하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신청인이 위 시국선언 참여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 및 해당 경위에 대한 조사신청을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주목할만한작가상’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주목할만한작가상’은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후속사업으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면서 발생하였던 시행착오를 줄이고 배제지시의 수월

한 이행을 위해 ‘추천위원 및 예비심사 제도’라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우 배제지시를 하달한 문체부 서기관은 예술위에 당시까지 하달하였던 배제지시 대상자들을 모두 누적하여 배제해야 된다는 지시를 예술위에 내렸으며, 예술위에서는 추천위원들의 추천으로 구성된 해당 사업의 후보 작가군을 두고 미리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탈락자, 주요 문학상 수상자 등 기준들을 만들어 여러 배제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당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는지를 엑셀자료로 작성하여 문체부 해당 주무관에게 보고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진행하였고, 이를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비공식적 가이드라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신청인 김성규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해당 사업에서 ‘배제’된 것인지 여부

신청인 김성규는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체부에서 작성한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아르코주목할만한작가상’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김성규의 경우 예술위 직원들이 고안해낸 위 배제 기준에서 ‘주요 문학상 수상자’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배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붙임 : 1. 책임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사본 1부

2. [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 (책임심의위원)	
사건번호/사건명	2017문3 / 김성규 등 2015 주옥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담당팀(전문위원)	조사2팀2반 / 이윤주 전문위원
심의 일정	1. 전원위원회 전체위원 심의서 취합 기간 : 2018. 3. 19.-3. 23. 2. 책임심의위원 심의 기간 및 방법 : 2팀2반 정기회의(3. 21. 수), 온라인 3. 진상조사 소위원회 안건 상정일 : 2018. 3. 26.(월)
조사 내용 등에 대한 검토 내용	참고인 등 대인조사가 충분치 않습니다. 주요 실행자 중 류 씨 의 진술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확인 과정이 있었다면 적시 바랍니다. 실행 과정에서 심의위원(오 씨 , 정 씨 , 홍 씨 , 권 씨)들의 블랙리스트 인지, 공모, 부역 등의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 적시 바랍니다. 없다면 관련 사실 확인 과정이 질의서 등을 통해 필요할 듯합니다. 당시 문화예술위원장의 인지, 지시 등 비위 관련도 적시가 필요할 듯합니다. 문재부 오 씨 사무관 위의 보고 라인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듯합니다. 확인 과정이 있었다면 적시 바랍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의 누구였는지 사실 확인 과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도했다면 관련 사실 적시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내용	전체적으로 신청인 김성규에 대한 검열, 배제 사실은 잘 조사가 된 듯 합니다. 다만, 주옥할만한작가상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주요인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점, 조사가 어려웠던 이유 등에 대한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체구성 목차 사례> 중 '조사결과(결론)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부분 기술이 필요합니다. 권고의견에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상층 비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적시도 필요할 듯합니다.
종합 의견	현재 조사 기간의 추가가 보장되지 않는 점, 훈령 상 수사권 등이 없는 점, 문재부 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협조' 차원의 요청 밖에 가능하지 않는 점, 관련 비위 행위자들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여 충분한 않은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성실한 조사와 기술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통해 추후 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위 검토 내용에 대한 추가 보강을 통해 진상조사소위 심의에 임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책임심의위원	2018. 3. 25. 류 지 호 (서명 또는 날인) 송 경 동 (서명 또는 날인) 배 인 석 (서명 또는 날인)

[사 건] 2017문3, 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신청인] 김성규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김성규는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 명단에 신청인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진행된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사업’(이하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신청인이 위 시국선언 참여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 및 해당 경위에 대한 조사신청을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12. 8.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은 예술위에서 진행한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는바, ①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② 위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방식, ③ 신청인이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배제’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1건에 대한 문서와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2015년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추진계획(안) (2015. 9. 25.)	예술위 창작지원부	2017. 11. 17.
2	- [참고] 추천위원회, 예비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안)	예술위 창작지원부	2017. 11. 17.
3	예술위 제176차 전체회의 회의록(2015. 12. 21.)	예술위	2017. 11. 17.
4	- 붙임. 2015년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지원 심의 결과	예술위	2017. 11. 17.
5	예술위 제164차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서면) 공문 (2015. 7. 16)	예술위	2017. 11. 17.
6	제164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2015. 7. 27.)	예술위	2017. 11. 17.
7	2015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5. 10. 8.)	예술위	2017. 11. 17.
8	예술위 제176차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서면) (2015. 12. 22.)	예술위	2017. 11. 17.
9	2015년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결과 보고 (2015. 12. 29.)	예술위	2017. 11. 17.
10	- 붙임1.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결정서 및 세부내역 1부	예술위	2017. 11. 17.
11	- 붙임2.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공정심의서약서 1부	예술위	2017. 11. 17.
12	- 붙임3.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평 1부	예술위	2017. 11. 17.
13	- 붙임4.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회의록 1부	예술위	2017. 11. 17.
14	- 붙임5.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채점표 1부	예술위	2017. 11. 17.
15	2015년도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지원심의	예술위	2017. 11. 17.
16	- 심의대상자 명단	예술위	2017. 11. 17.
17	- 위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들에 대한 추천사유	예술위	2017. 11. 17.
18	- 정리된 엑셀파일	예술위	2017. 11. 17.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9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평	예술위	2017. 11. 17.
20	2015. 12. 7.자 000이 000에게 보낸 메일	예술위 000	2018. 1. 25.
21	- 위 메일에 첨부된 엑셀자료	예술위 000	2018. 1. 2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3인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성규	신청인	조사보고(2017. 9. 28.)
2	오00	예술위 위원	진술조서(2017. 12. 12.)
3	강00	예술위 담당 직원	진술조서(2018. 1. 2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개요

2015년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사업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작가 중 현재까지의 성과가 뛰어나고 앞으로의 문학적 성취에 지원이 필요한 우수작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 소설, 아동·청소년문학을 선정분야로 하며, 총 예산 300백만원으로 총 20인에게 각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 추천위원 및 예비심의위원 제도 도입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은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지원’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공모로 진행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달리 비공모 형태의 지원사업이었다. 해당 사

업은 추천위원회 및 예비심사위원회 제도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사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당시 예술위에서 진행하여 온 단순공모형 작가지원 체제에서 ‘문학분야 우수 작가의 발굴·육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50인 내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추천을 통한 후보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정 심의회의에 앞서 중점심의회방침을 검토하고 수립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전문가 등으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¹⁾

총 300여 명의 추천된 작가들 중 추천위원 2인 이상의 중복추천을 받은 자들로 80여 명의 후보풀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점수 순위에 따라 총 20명의 작가들이 지원을 받았다.

다. 신청인과의 관련성

신청인 김성규는 추천위원 나OO, 함OO 2인의 추천으로 ‘주목할만한작가상’ 82인 후보풀에 속하였고, 예비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평가표에 따르면 총점 301점, 평균 75.3점으로 순위 35위를 기록하여 총 20인만 선정하는 지원사업에서 탈락하였다.²⁾

[표-3] 주목할만한작가상 신청인 김성규 심의결과 표

심의위원	심의기준 작가의 창작역량 및 최근 작품의 우수성	지속적인 확산 활동 가능성	기대성과 및 문학분야 발전의 기여도	합계
오OO	32	24	21	77
정OO	32	21	24	77
홍OO	28	21	18	67
권OO	32	24	24	80

1) 2015. 9. 25. 예술위 창작지원부 작성, 「2015년 아르크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추진계획[안]」

2)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심의결과 중 신청인 부분

2. 주목할만한 작가상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설계의 특징

가.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추진 배경

예술위에서 2015년 말에 진행한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사업’(이하 ‘주목할만한작가상’)은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 사업’이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파행되면서 해당 사업의 잔여예산³⁾으로 진행된 후속 사업으로, 예술위 작성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과」 문건을 보면 잔여예산 활용계획(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원 예산 잔액(3억원)은 문학분야 창작진흥을 위하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2016년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개편 대비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라고 기재되어있는 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잔여예산이 활용된 후속조치 사업이 바로 2015년 말에 진행된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이다.

나. 추천위원회 및 예비심사위원회 운영

해당 사업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후보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 또한 별도로 구성하였다. 추천위원회가 선정작가 후보풀을 구성하면, 유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본격 심의회의에 앞서 중점심의방침을 검토·수립하였다.⁴⁾

추천위원은 총 79명으로 이들의 추천자는 총 445명, 중복을 제외하면 300명이 후보풀을 구성하였으며, 예술위는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작가 82명으로 한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⁵⁾

3) 제164차 한국문화예술회전위원회 전체회의(2015. 7. 17.) 회의록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과”

[표 4]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잔여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15년 예산	지원결정액	잔여예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000,000	700,000	300,000

4) 2015. 9. 25. 예술위 창작지원부 작성, 「2015년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추진계획(안)」

5) 제176차 한국문화예술회전위원회 전체회의(2015. 12. 21.) 회의록 중 “붙임. 2015년도 아르코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지원심의 결과 1부”

[표-5]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후보풀 구성 관련

구분	시	소설	아동	합계
접수건수	178	145	122	445
중복제외	128	84	88	300
2명 이상 추천	33	32	17	82

다.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4쪽)

참고인 강OO는 2015. 11. 23.~2017. 3. 7. 문학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한 자로, ‘주목할만한작가상’은 201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사업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선정인원을 축소하면서 남은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처럼 무기명 작품 제출 방식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청와대 및 국정원,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대상자들을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할만한작가상’의 경우 비공모사업으로서 추천위원 제도 및 예비심사 제도 설계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손쉬운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여부

가.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연번 204~216(331~332쪽)

감사원이 문체부와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2017. 1. 19.~3. 10까지 진행하여 2017. 6.에 발표한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이 연번 204~216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 김성규도 연번 206번에 기재되어 있다.

나.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 2424(병합)) 333쪽 및 ‘범죄일람표2’ 순번 266~277(417~419쪽)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2심 판결문 333쪽 ‘강OO가 담당한 사업’에서 강OO는 지원배제 지시를 받은 특정 작가들을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다른 문학상 수

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강OO는 다른 문학상 수상 전력 등은 통상 심의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심사기준으로 만들어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판결문에는 이것은 특정 작가들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심사기준을 만들어 심의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체부 담당자 지시내용으로는 ‘문체부 오OO은 예술위 강OO에게,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①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②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각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지시에 따른 산하기관 담당자는 ‘문체부 오OO의 지시를 받은 예술위 류OO의 지시에 따라 강OO는 ① 후보자 명단을 송부, ②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 김성규도 순번 268번에 명시되어 있다.

다. 문체부 작성,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34쪽)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이 작성한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34쪽에 따르면, ‘주목할만한작가상’의 경우에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내용에 따르면, 2015. 11. 12.자로 청와대와 국정원에 주목할만한작가상의 후보풀을 구성한 작가명단이 보고되었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2015. 12. 11., 2015. 12. 7.에 배제되어야 할 작가명단이 검토되어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에게 하달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청인 김성규의 이름도 아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문체부 작성,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아크로주목할만한작가상 (*15.11.12) - 15명	○①한용국, ②신용복, ③김성규, ④OOO(통진당당원), ⑤백가흠, ⑥손용규, ⑦조해진, ⑧OOO(사) 15.12.7) ○김태용- 오케이(K) ○⑨강성훈, ⑩김사람(만드시제외), ⑪김선계(김선아), ⑫오주영, ⑬이인(만드시제외), ⑭한정영-IR(*15.12.11)
----------------------------------	---

라.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

(1) 참고인 강OO 제출 예술위 000이 문체부 000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 및 첨부된 엑셀자료

참고인 강OO는 2018. 1. 25.자 조사 과정에서 ‘주목할만한작가상’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예술위 000이 문체부 000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 및 해당 메일에 첨부된 엑셀자료를 제출하였다.

예술위 000은 참고인 강OO와 함께 문학지원부 업무를 진행한 사원으로 2015. 12. 7.자 메일에서 문체부 000에게 “주목할만한 작가 창작지원 관련 특이사항 14건을 표기하여 보내드립니다. 비고 특이사항 셀에 빨간색으로 어떤 사업 신청, 혹은 심의 시 검토대상이었는지 작성했습니다.”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그림-2] 예술위 000이 문체부 000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



위 메일에 첨부된 엑셀자료를 보면 3가지 기준이 문건 상단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기준은 “기준1(노랑): 등단 15년 이상”, “기준2(초록): 개인 작품집 없음”, “기준3(파랑): 2014~2015 아르코, 서울, 대산문화재단 창작기금 선정자 및 2015 아르코,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 신청 탈락자”이며, 아래 이어지는 표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총 83명의 작가들을 색깔 별로 구분하고 있다. 신청인 김성규의 경우 위 3가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 노랑, 초록, 파랑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위 메일 첨부자료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an Excel spreadsheet titled "2015 아르코 주최할만한 작가 창작지침". The spreadsheet is organized into columns for different criteria and categories. A red box highlights the name "김성규" in the "기준3" column. The spreadsheet includes a header section with criteria like "기준1", "기준2", and "기준3", and a main data table with columns for "기준1", "기준2", "기준3", "작가명", "생년월일", "소속", "주요경력", "주요작품", "주요수상", "주요출판", "주요전시", "주요공연", "주요활동", "주요협력", "주요지원", "주요협력", "주요지원", "주요협력", "주요지원".

(2)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가) 문체부 오OO의 배제대상자 명단 하달(9쪽)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와 관련하여 예술위 류OO 본부장은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한 작가들의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문체부 오OO 서기관에게 보내 검토를 요청하라고 진술인에게 지시하였으며, 진술인은 이를 담당자인 OOO 대리에게 다시 전달하였고, OOO 대리가 이를 정리하여 오OO 서기관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오OO 서기관이 직접 진술인에게 유선상으로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지금까지 문학분야 각 지원사업에서 지원심의 대상을 검토하면서 예술위에 하달한 명단이 있으니 이를 누적해서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위 문체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한 예술위 배제기준 고안 과정(9~10쪽)

오OO 서기관이 통보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류OO 본부장 등과 상의하였는데, 류OO 본부장이 지원심의를 앞서 지원배제 대상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OOO 대리가 '등단 15년 이상'과 같이 추천조건에 맞지 않는 명백한 결격사유 외에도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부적격 사유와 기준들을 만들어 함께 검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OOO 대리가 작성한 엑셀파일은 문체부 등에서 구체적인 배제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추천위원들로부터 2인 이상 중복 추천을 받은 약 80여 명의 작가들에 대하여 여러 기준들을 설정하여 미리 지원배제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엑셀파일에 기재된 기준들은 실제로 예비심의 단계에서 고안한 기준이 아니라 해당 작가들에게 만약 배제지시가 하달된다면 이러한 기준을 들어 배제가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문건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파일의 비고란에 붉은 색으로 표기된 작가들 14명이 바로 오OO 서기관이 누적하여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던 관리대상자들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기존 누적 명단 + 신규 추가 명단(10쪽)

[표-6] 기존 누적 명단 및 신규 추가 명단 구분

기존 누적 명단	김경주(김병곤), 김종일, 박진성, 손병걸, 신동욱, 구병모(정유경), 김태용, 박솔미, 서유미, 안지숙, 윤고은(고은주), 천명관, 김혜정, 송미경
신규 추가 명단	강성은, 김사람(김진호), 김성규, 백기흠, 손홍규, 신용목, 이안, 오주영, 조해진, 한용국, 한정영, OOO, 황정은

오OO의 지시대로 당시까지 예술위에 하달되었던 배제지시 대상자들을 누적하여 김경주 등 14명은 '기존 누적 명단'으로, 이외에 해당 사업에서 새롭게 배제지시가 내려온 신청인 김성규 등 13명은 '신규 추가 명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적용한 기준들(10쪽)

실제로 예비심사 단계에서 지원배제 대상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제시한 심사기준은 ① 최근 2년간(2014~2015)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작가와 주요 문학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② 같은

해에 예술위가 시행한 아코문학창작기금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코문학창작기금이 주목할만한 작가 지원 사업과 동일한 목적 및 취지의 사업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기준들을 적용하면 실제로 지원배제 지시가 하달된 대상자들 중 90% 이상이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위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된 김태용, 오주영, 000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11쪽)

참고인 강00는 000으로부터 하달받은 배제대상자 명단에 대해 위 기준을 적용하면 90% 배제가 가능하였으나, 지원배제 대상자들 중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작가 3명(김태용, 오주영, 000)이 남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000에게 유선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여 1차로 오주영 작가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김태용에 대하여도 양해를 구하였으나, 000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지 않아 류00 본부장이 심의위원 몇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000은 이미 인지도가 높아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선정 순위에 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강00가 000에게 보낸 000, 김태용 양해 요청 2015. 12. 15.자 메일 및 첨부자료

강00는 2015. 12. 15.자로 000에게 00과 김태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양해요청을 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림-4] 강00가 000에게 보낸 2015. 12. 15자 메일



[그림-5] 예술위 문학지원부 작성,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후보자 검토 문건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후보자 검토	
'15.12.15(화)/ 문학지원부	
□ 검토사항	
성 명	주요경력 및 문단평
 김태용 소설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석사 · 2005년 세계의 문학 등단 · 2008 한국일보문학상, 2012 문지문학상 수상 · 저서 『폴발 위의 돼지(2007)』, 『포주 이야기(2012)』, 『숨김없이 남김없이(2010)』, 『벌거숭이들(2014)』 및 프랑스 시인 자끄 드뇌팡 시집 『빨바지』 번역 · 포주 이야기 2012년 우수문학도서 선정 · 최근 활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초빙교수 - '루' 동인 - 2015 사이버문학광장 내 중편소설 <당신의 사라진 미소는 어디에> 연재 중 · 문단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사와 현실이 과포화된 한국 소설에 새 돌파구를 마련하는 범상치 않은 고투(한국일보 문학상 심사위원단) ※ 문학 작품이나 사회 활동에서 정치 편향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꾸준하고 활발한 문단활동 외 특이경력 없음
 OOO 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사 · 2010년 현대시 등단 · 2012 제31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 · 저서 『구관조 씻기기(2012)』 『회지의 세계(2015)』 · 『회지의 세계』 교보문고 판매순위 시분야 10위, 예스24 13위('15년 12월 기준) · 최근 활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동인 - 2015 제4회 오장환신인상 심사위원 · 문단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시인, 모든 익숙한 대상과 현상들을 낮설게 바라보기, 시 아닌 것을 시적인 프레임 속에서 재발견하기에 능란한 솜씨를 보인다. (장석주 시인) - 언어에게 옷을 입히는 방식이 아니라 언어를 씻기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시적 경험을 선사하는 OOO의 시는 예술적인 다양한 '방법론'을 지워 버리는 희귀한 '방법론'으로 최근 우리 시에서 볼 수 없었던 농도 짙은 개성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김수영문학상 심사위원단)

(사) 위 배제기준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12~13쪽)

강OO는 위 배제기준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최대한 심의위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낸 것은 맞습니다. 공공부문 중복지원 지양의 경우에는 공공재원의 공평한 활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아르크문학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의 대해서는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준으로 타당성을 가졌고,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사업의 후속사업이므로 앞의 공모에서 탈락시켜놓고 하반기에서 방식만 바뀌었다고 해서 선정시켜주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으므로 타당성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주는 문학상의 경우 중복지원을 배제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2015 아르크문학창작기금사업 탈락자를 해당 사업에서 다시 제외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이중 실행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정한 심의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로 탈락한 자가 해당 사업에서 또다시 배제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2015년도 아르크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 회의록(1~3쪽)

2015. 12. 18. 심의위원 오OO, 정OO, 홍OO, 권OO 및 사무처 류OO, 강OO, OOO 이 참석하였던 ‘2015년도 아르크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지원 심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예술위 문학지원부장 강OO는 “또한 공공재원 간의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최근 3년간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지원 선정자, 최근 2년간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과 서울문화재단 문학창작집발간지원사업 선정자 및 최근 2년간 상금 5백만원 이상의 주요 문학상 수상자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아르크문학창작기금의 후속사업이므로 금년도 아르크문학창작기금사업에 지원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사람들은 본 심의에서도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심의위원 일동은 동의하였다. 또한 강OO는 해당 사업의 후보 작가군 프로필에 “해당 작가의 등단 이력과 타 공공재원이 추진하는 유사사업에서 최근 선정된 이력 및 주요 문학상 수상 이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전에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유사사업 중복 지원 배제 사항이라든지 (...)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른 검토 사항들과 함께 개인별 채점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4) 참고인 오OO에 대한 2017. 12. 12.자 진술조서(10~12쪽)

참고인 오OO는 예술위 위원(2015. 2. ~ 2017. 11.)이자 당시 해당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자로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예술위 직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 및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해당 기준이 기억이 나는지, 해당 기준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신청인 김성규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가. 신청인 김성규가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1) 세월호 문학인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신청인은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⁶⁾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2) 문체부 작성,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34쪽

문체부 오OO작성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아르코주목할만한작가상'에 보면 신청인 김성규가 등재되어 있다. 리스트 기재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 후보 작가군 명단은 2015. 11. 12.에 청와대 및 국정원에 보고되었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2015. 12. 7. 검토결과가 하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국일보>,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명단",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146abf21618f42c5ab80bfe37a521e8a>(접속날짜: 2018. 3. 15)

[그림-6] 문체부 작성,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1.5. 2015.11.12. 주 목 아로코주목할만한작가상 ('15.11.12) - 15명 인문예술교서편 수능	①한용국, ②신용득, ③김성규, ④OOO (통진당당원), ⑤백가흠, ⑥손홍규, ⑦조해진, ⑧정영은-B('15.12.7) ○김태용- 오케이(O) ○⑨강성은, ⑩김시람(받드시제외), ⑪김선제(김선아), ⑫오주영, ⑬이안(받드시제외), ⑭한정영-B('15.12.11) * 기재의 일 * 15.12.7
---	---

나. 신청인이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배제된 것인지 여부

(1)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연번 206

감사원이 문체부와 산하기관 등이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2017. 1. 19.~3. 10까지 진행하여 2017. 6.에 발표한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주목할만한작가상’ 연번 206에 신청인 김성규가 기재되어 있다.

(2)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 2424(병합)) 333면 및 ‘범죄일람표2’ 순번 268번

신청인은 위 판결문 ‘범죄일람표2’ 상 순번 268번에서 배제대상자로 명기되어 있다.

(3) 참고인 강OO 제출 예술위 OOO이 문체부 오OO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에 첨부된 엑셀자료 및 2018. 1. 25.자 진술조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참고인 강OO의 2018. 1. 25.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배제지시를 수월하게 실행하게 위해 고안해 낸 배제사유 중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자’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참고인 강OO가 제출한 예술위 OOO이 문체부 오OO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에 첨부된 엑셀자료를 보면 신청인 김성규에 대하여 ‘수상이력’란에 ‘2015 김구용 시문학상’, ‘2014 신동엽문학상’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이 사건의 성격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은 청와대 - 국정원 - 문체부 - 예술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를 가진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후속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예술위에서 진행한 2015년 공모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이후 운영되었던 사업인 것이다.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의 경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면서 발생하였던 시행착오를 줄이고 배제지시의 수월한 이행을 위해 추천위원 및 예비심사 제도라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고안된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 사업의 경우 배제지시를 하달한 문체부 서기관은 예술위에 당시까지 하달하였던 배제지시 대상자들을 모두 누적하여 배제해야 된다는 지시를 예술위에 내렸으며, 예술위에서는 추천위원들의 추천으로 구성된 해당 사업의 후보 작가군을 두고 미리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탈락자, 주요 문학상 수상자 등 기준들을 만들어 여러 배제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당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는지를 엑셀자료로 작성하여 문체부 해당 서기관에게 보고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할 준비작업을 철저히 진행하였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고안되었던 기준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민간 부문 수상자 제외와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탈락자들을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또 다시 해당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다. 민간 부문 문학상의 경우 ‘주목할만한작가상’과는 상금 등의 규모에서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영세한 상들을 수상한 작가들도 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타당한 기준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심의위원들이 예술위 직원들이 제안한 비공식적 심사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다. 또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파행된 대표적 사업으로 이미 한 차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를 본 작가들을 다시 한 번 해당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블랙리스트의 이중적 실행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은 예술위

2015년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면서 있었던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블랙리스트를 보다 손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예술위 내에서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여러 장치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배제기준을 고안해내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사건으로 평가된다.

2. 진상규명사실

가.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설계 특징의 점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은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이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선정하려고 하였던 인원보다 30여 명 가량 축소하여 지원하였던 까닭으로 남은 예산으로 후속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는 달리 비공모로 진행된 사업으로 이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였던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청와대·국정원 및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참작하여 블랙리스트의 손쉬운 실행을 위하여 ‘비공모 사업’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과 달리 후보 작가군을 추천하는 위원회 및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심의방침 등을 검토하는 예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공모하는 형태로 1차를 무기명 심사로 진행하는 등 블랙리스트 지시를 이행하기에 쉽지 않은 지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및 예비심사위원 제도를 두어 후보 작가군의 구성 및 심의방침 등 초기단계에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여부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333면 및 ‘범죄일람표2’, 문체부 작성 「리스트 - 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34

쪽, 참고인 강OO 제출 예술위 OOO이 문체부 오OO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 및 첨부된 엑셀자료,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특정 작가들에 대한 배제지시가 청와대 및 국정원 - 문체부(오OO)를 통해 예술위(류OO, 강OO 등)에 하달되었고, 이러한 배제지시가 예술위에서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

- (1)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333면 및 '범죄일람표2', 문체부 작성 「리스트 - 2014 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34쪽, 참고인 강OO 제출 예술위 OOO이 문체부 오OO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 및 첨부된 엑셀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오OO은 해당 사업 후보 작가군 명단을 2015. 11. 12.에 청와대 및 국정원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가 국정원에서 2015. 12. 7.에 하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2) 또한 문체부 오OO은 예술위 강OO 등에게 주목할만한작가상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예술위에서 류OO, 강OO 등이 해당 자료를 송부하였다. 이후 오OO은 예술위 강OO 등에게 우선상으로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지금까지 예술위에 하달하였던 배제대상자들을 모두 누적하여 해당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예술위 직원 OOO은 상급자인 류OO, 강OO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배제지시가 하달되기 이전에 80여 명의 후보군에 대하여 등단 15년 이상, 주요 문학상 수상자,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탈락자 등 여러 기준들을 고안하여 미리 배제지시 이행 여부를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오OO에게 송부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 행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및 2015년도 아르코 주목할 만한작가 창작지원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예비심사 단계에서 지원배제 대상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안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제시한 심사기준은 ① 최근 2년간(2014~2015)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작가와 주요 문학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② 같은 해에 예술위가 시행

한 아르코문학창작기금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주목할만한 작가 지원 사업과 동일한 목적 및 취지의 사업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배제기준이 주목할만한 작가상 심의회의에서 예술위 강OO 등에 의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신청인 김성규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주목할만한작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1)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 김성규는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체부 오OO이 작성한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 - 262명’ ‘아르코주목할만한작가상’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목할만한작가상 지원배제 사실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및 강OO 제출 예술위 OOO이 문체부 오OO에게 보낸 2015. 12. 7.자 메일에 첨부된 엑셀자료,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333쪽 및 ‘범죄일람표2’,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를 종합하면, 신청인 김성규의 경우 위 기준에서 ‘① 최근 2년간(2014~2015)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작가와 주요 문학상 수상자’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지원배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주목할만한작가상 사업의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청와대 및 국정원 어느 부서, 누구에게 해당 사업의 후보 작가군 명단에 대한 검토를 받고 블랙리스트 실행 경과를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 나. 또한 문체부 내 실·국장들이 이 사업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오OO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 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심의위원들의 블랙리스트 인지 여부 및 가담 정도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라. 위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7

공지희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57

공지희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문기공지희 등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공지희는 예술위에서 진행한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배제’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 공지희는 문체부 오OO이 작성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부당배제 사실

- (가)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참고인 오OO의 진술(2018. 2. 7.자 진술조서)을 종합하면, 신청인 ‘공지희’는 청와대의 배제지시로 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에서는 연번 218에 신청인 공지희가 기재되어 있어 부당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련 예술위 직원들의 진술 및 회의록 등을 통해서는 신청인 공지희의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서의 탈락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배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공지희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문7, 공지희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신청인] 공지희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공지희는 예술위에서 진행한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배제’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11. 17.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 공지희는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인한 배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는바, ①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②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하달이 있었는지, ③ 신청인이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배제인지. ④ 블랙리스트에 의한 ‘배제’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5건의 문서와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감사원	2017. 8.
2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1차공모 문학분야 심의 회의록	예술위	2018. 4.
3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문학분야 채점자료	예술위	2018. 4.
4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공모사업 상세안내	예술위	2018. 4.
5	리스트-’16. 9. 27. 현재	문체부 오OO	2017. 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4인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오OO	문체부 공무원	진술조서(2018. 2. 7.)
2	강OO	예술위 직원	진술조서(2018. 1. 25.)
3	임OO	예술위 직원	진술서(2018. 3. 30.)
4	류OO	예술위 직원	사실확인서(2018. 2. 14.)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나.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기획형)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공모사업-(기획형)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사업’은 해외 주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예술가 참가를 지원하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자격은 현지 비자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영어나 현지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예술인이다. 지원대상은 ‘문인’은 희곡을 제외한 장르의 경우 최소 1권 이상의 발

간 실적이 있는 문인이며, 희곡의 경우 최소 1편 이상 공연 실적이 있는 문인이다. 공모대상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2015. 11. 16.~30.이며, 심의일정은 2015. 12.~2016. 1., 결과발표는 2016. 2.~3.로 예정되었다.

신청인 공지희가 지원하였던 ‘주스웨덴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시’는 주요 사업내용이 다음과 같다.

[표-3] 사업 개요

장르	파견기관(협력기관)	주요 사업내용
문학	주스웨덴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시	- 내용: 개인 창작활동 - 파견대상: 문인(1인: 아동·청소년문학가) - 기간: 3개월

다. 신청인 ‘공지희’ 채점 자료

해당 사업에서 ‘주스웨덴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시’에는 총 3명이 지원하였고, 그 중 신청인 공지희는 총점 392점, 평균 78.4점으로, 지원자 중 총점상으로 공동 2위였다.

[표-4] 2016년도 분야별 1차 채점표 중 ‘공지희’ 부분

연번	신청인	신청사업명	심의위원	총점 및 심의기준			
				총점	사업계획의 총실성, 타당성 (40%)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30%)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1			A	79	34	22.5	22.5
2		주 스웨덴	B	75	30	22.5	22.5
3	공지희	한국대사관 협력	C	79	34	22.5	22.5
4		레지던시	D	81	30	25.5	25.5
5			E	78	30	22.5	25.5

2. 신청인 공지희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문체부 오OO이 작성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에서 신청인 ‘공지희’는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 사업 검토 명단에 등재되었다.

[그림-1]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리스트-’16.9.27현재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사업명	검토내용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 (’15.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무용분야 해당없음-K(15.12.21) ○타 분야도 결과가 낮아지므로 먼저 진행할 것(16.1.7)-k ○B확인(1.21) -문학 ①정영효 ②공지희 ③홍정선 (K(2000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활동-국가보안법 폐지서명 등) →예술사업에 적극 협조, 개인사업이 아닌 문학대행사도 양해됨 ○K(4.4) -문학: 홍정선, 정영효/ 시각: 김계연, 평화미술협회(이시규)/ 전통예술: 화성열린문화터(김경오) ○K(1.7)-결과가 낮아지므로 먼저 진행할 것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3. 신청인이 2016 국제교류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배제된 것인지 여부

가.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연번 218

감사원이 문체부와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2017. 1. 19.~3. 10까지 진행하여 2017. 6.에 발표한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예술가창작역량강화(기

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1차' 사업이 연번 2017-218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 공지희도 연번 218에 기재되어 있다.

나. 참고인 오OO의 진술(2018. 2. 7.자 진술조서, 36-37쪽)

- (1) 참고인 오OO은 2012. 4.경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참고인 오OO은 2018. 2. 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관련하여 참고인 오OO이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맞으며, 문건의 사업명 란에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15. 12. 11.)’라는 것은 사업명과 청와대 및 국정원에 관련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고, 검토내용 란에 ‘B’는 청와대를, ‘K’는 국정원을 의미하며, ‘B확인(1. 21.)’은 15. 12. 11.자 명단 송부에 대하여 1. 21.에 확인해주었다는 의미이다.
- (3) ‘② 공지희’도 청와대에서 지시한 배제대상자였는지에 대해, 기억에는 없지만,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 (4) 위 명단을 예술위에 통보하였는지에 대해, 예술위 당시 담당 부장에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5) 공지희가 위 배제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탈락하였는지에 대해 탈락 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는 않았지만,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다면 배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 (6) 공지희에 대한 배제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참고인 임OO의 진술서(2018. 3. 30.자 진술서, 1-2쪽)

- (1) 참고인 임OO은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 예술위 국제교류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2) 참고인 임OO은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서 문체부 또는 예술위 내의 상급자로부터 배지지시를 하달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배제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전임 국제교류부장인 류OO가 국제교류공모사업 중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의 배제 여부를 총괄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 (3) 신청인 ‘공지희’에 대한 배제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배제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 (4) 해당 사업에서 신청인 ‘공지희’가 탈락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탈락사유를 특정하여 기억하지 못하며, 임OO은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문학 분야 심의위원들이 해당 작가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였고 심의위원들이 각자 채점하여 최종 ‘탈락’이 결정된 사업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류OO 사실확인서(2018. 2. 14.자, 1-4쪽)

- (1) 류OO는 2013. 7. 1.~2015. 8. 23.까지 예술위 국제교류부 부장, 2015. 8. 24.~2015. 11. 22.까지 예술진흥본부 본부장 및 국제교류부장(겸직), 2015. 11. 23.~2016. 10. 31. 문학시각예술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류OO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2018. 2. 14. 본인 작성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2) 류OO는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에 기재된 특정인들을 배제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문예진흥기금 사업심의시 담당부서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심의 전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명단 송부 후 1~2개월 정도의 검토 기간 후에 지원배제 대상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당시 지시자는 문체부 오OO 서기관이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배제방법과 관련하여 국제교류지원 사업 지원심의 회의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개별신청 사업들의 초청장 구비 여부, 초청 조건의 타당성, 동일 단체에 대한 역대 지원 현황, 전년도 지원 금액 정산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본인의 의견과 위의 기준들을 참고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배제지시가 하달된 대상 가운데 지원후보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을 때 해당 사업의 미비점이나 특기사항 등을 다시 언급하는 방식으로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마.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조서, 15-16쪽)

- (1) 참고인 강OO는 2015. 11. 23.~2017. 3. 7. 문학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2018. 1. 25.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 강OO는 ‘2016 국제교류공모 사업’에서도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사업이 아니며, 각 장르별로 국제교류 사업이 따로 있어 국제교류부에서 총괄 주관을 하면서 각 장르별 심의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해당 파트의 공모된 신청 건들을 따로 진행하였고 관리를 국제교류부에서 했으므로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참고인 강OO는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를 본 적은 없으며, 신청인 ‘공지희’와 관련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교류부 쪽으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1차공모 문학분야 심의 회의록(7-8쪽)

심의위원 5인과 사무처 5인(류OO 문학시각예술본부장, 강OO 문학지원부장(간사), 임OO 국제교류부장, 강OO 과장, OOO 대리)가 참석하여 2016. 1. 21. 진행된 ‘2016년도 문예기금 국제교류 1차 공모 문학분야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심의 회의록에서 예술위 류OO(문학시각예술본부 본부장)가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스의 경우 “아동청소년문학가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신청인 공지희에 대해 “출판사에서 위탁해서 쓰는 위인전이라 아동문학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는 심의위원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2]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1차공모 문학분야 심의 회의록

류 oo : 다음은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스입니다. 기존에 시, 아동문학 분야 작가를 파견해 왔는데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문학가로 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영어가 가능한 작가를 원합니다.

- 7 -

강 oo : 세 분 모두 기본적인 영어 구사가 가능해서 현지 체류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oo : 작품을 보니 공지희 작가는 출판사에서 위탁해서 쓰는 위인전이라 아동문학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최상희 작가가 작품활동도 활발하고, 레지던스 성격 상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일동 : 동의합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신청인 공지희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2016 국제교류공모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1)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 공지희는 문체부 오OO이 작성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부당배제 사실

- (가)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참고인 오OO의 진술(2018. 2. 7.자 진술조서)을 종합하면, 신청인 ‘공지희’는 청와대의 배제지시로 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에서는 연번 218에 신청인 공지희가 기재되어 있어 부당배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다만, 신청인 ‘공지희’의 경우 세월호 시국선언 등 언론에 소위 ‘블랙리스트’라 알려진 명단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배제지시가 하달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청와대 및 국정원 어느 부서, 누구에게 해당 사업의 후보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받고 블랙리스트 실행 경과를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 나. 또한 문체부 내 실·국장들이 이 사업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오OO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 다. 신청인 공지희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된 사유 및 신청인 공지희가 해당 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배제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못하였다.
- 라. 위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8

윤혜숙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58

윤혜숙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문8[윤혜숙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윤혜숙(이하 신청인)은 동화작가로 활동하며, 세월호 시국선언을 비롯한 사회정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청년들의 전기를 엮은 책 '416 단원고 약전 - 짧은 그리고 영원한'¹⁾의 작가단으로 활동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으며, 201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1) 소설가, 동화작가, 시인, 극작가, 기자 등 '416 단원고 약전 작가단' 139명의 작가들이 희생자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인터뷰하여 집필한 책으로, 굿플러스 출판사에서 2016. 1. 12. 총 12권으로 발간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2015, 2016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에 개입하였다. 특히 2015,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을 준용, 3차 심사 과정에서 배제 지시를 하여 특정도서들이 탈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신청인의 응모작에 대한 배제 지시 여부

신청인은 2015년 「잠자는 도서관」, 「열여섯, 그 해 여름에」와 2016년 「조선으로 사라진 아이들」, 「기적의 삼단법칙」을 출판진흥원에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네 작품 모두 1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으며, 2015,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 배제 지시가 있었음은 확인하였다. 다만, 배제 지시가 2차 선정 목록에 대해서 진행되었다고 확인된 바, 신청인이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결과가 블랙리스트에 의한 배제 지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 신청인이 제기한 예술위의 2015년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탈락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건 '2017직문1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피해 사건'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붙임 : [윤혜숙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전] 2017문8 윤혜숙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신청인] 윤혜숙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윤혜숙(이하 신청인)은 동화작가로 활동하며, 세월호 시국선언을 비롯한 사회정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청년들의 전기를 엮은 책 「416 단원고 약전 - 짧은 그리고 영원한」²⁾의 작가단으로 활동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으며, 201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7년 11월 17일 제15차 전원위원회 의결(조사기록 34쪽)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①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② 2015년, 2016년 출판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탈락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 신청인이 제기한 예술위의 2015년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탈락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건 '2017직문1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피해 사건'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소설가, 동화작가, 시인, 극작가, 기자 등 '416 단원고 약전 작가단' 139명의 작가들이 희생자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인터뷰하여 집필한 책으로, 굿플러스 출판사에서 2016. 1. 12. 총 12권으로 발간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 [표1]과 같이 문서, 메일 등 모두 15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 26.	
2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계획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 26.	
3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결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 26.	
4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 26.	
5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계획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 26.	
6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결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 26.	
7	김OO이 2015. 3. 30. 발송한 메일 (위원회 확보자료) [사건번호 2017노2425]	N	2018. 11. 7.	
8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소송기록-이OO 증인신문조서(2017고합102)	서울고등법원	2018. 2. 2.	
9	(위원회 확보자료) 리스트 - 16. 2. 1.	문화체육관광부	2018. 2. 2.	
10	김OO이 2018. 1. 29. 위원회에 발송한 메일	김OO	2018. 2. 1.	
11	참고인 N 전화조사 보고	위원회	2018. 2. 1.	
12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목록	출판문화산업진흥원		
13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목록	출판문화산업진흥원		
14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목록	출판문화산업진흥원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6. 30. 보도자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8인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윤혜숙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28.)
2	OOO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	진술조서 (2018. 2. 21.)
3	N	출판문화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진술조서 (2017. 11. 07.)
4	김OO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진술서 (2017. 12. 15.)
5	김OO	"	진술조서 (2017. 12. 21.)
6	이OO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진술서 (2018. 3. 5.)
7	유OO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진흥팀장	진술조서 1차 (2017. 12. 27.)
8	N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전화조사 보고 (2018. 2. 1.)
9	유OO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진흥팀장	진술조서 2차 (2018. 3. 9.)
10	OOO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좋은책선정 사업담당자	진술조서 (2018. 3. 8.)
11	최OO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진흥팀 차장	진술조서 (2018. 4. 20.)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³⁾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⁴⁾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7월 27일 개원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통계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작성,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1)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저자의 우수출판 콘텐츠를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출판사에 우수출판콘텐츠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출판 생산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하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진행하였다.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매년 미 발간된 우수출판콘텐츠 140편을 선정하여, 각 편당 1,000만원(저작 상금 300만원 + 출판지원금 700만원) 씩 총 1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또는 출판사가 원고와 기획안 등으로 접수를 하였다. 선정된 저작물의 경우 출판사와 출판진흥원 간에 출판협약서를 작성하여 출간되도록 하였으며, 지원 도서 판권란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0000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게 하였다.

선정기준은 집필의도(출간의의), 참신성, 우수성, 완성도, 우대사항 등의 심사기준과 1저자 1편과 1인 및 지역 출판사의 응모작은 전체 선정작 가운데 25%(2016년에는 30%) 내외를 선정하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 발간된 도서, 외국 번역 도서, 타 공모전에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었다.

(2) 심사는 1단계 예비검토, 2단계 본심사, 3단계 최종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다. 1단계 심사는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소분과별로 최종 선정종수의 3배수를 선정하여, 심사위원별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소분과의 합의결과를 논의하여 최종 선정종수의 2배수를 선정하는 2단계 심사를 진행하였다. 3단계 최종심사는 저자 중복과 분과 간 선정작을 조정하여 최종 선

정작을 확정하였다. 연중 3~4월 공모 및 응모작을 접수하여, 6월 심사회의 및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7월경 저작상금을 지급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12월 선장작 발간도서를 홍보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위원회 확보자료 ‘리스트-’16.2.1 현재’의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문건에서 ‘사업명 ①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14년(선정/신청) : 99/941 92명 / 신청건수 959 / 1차검토 ○ 총 74명 윤혜숙(62)’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⁵⁾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명단’에 ‘윤혜숙’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공모 및 심사 과정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심사회의 개최 결과’[콘텐츠진흥팀 - 178(2015. 06. 29.)]와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심사회의 개최 결과” [콘텐츠진흥팀 - 599(2016. 7. 11.)](조사기록 118쪽)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6년 4. 18.부터 4. 29.까지 온라인 신청 후 접수처로 관련서류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2015년은 원고 1,858편, 기획안 1,232편 등 총 3,090편이, 2016년은 원고 2,131편, 기획안 862편 등 총 2,993편이 접수되었다. 지원작 140편 및 후보작 10편 선정을 위해 교수, 저자, 출판 전문가 등 2015년에는 59명, 2016년에는 49명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고,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5개 분야로 나눠 1차 예비심사, 2차 본심사, 3차 최종심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 접수 응모작에 대해 1차 심사(예비심사)는 2015. 6. 1. ~ 6. 5. 진행되었으며,

5)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등록 2016/10/12 04:40, 수정 2016/10/12 11:47,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2018/4/09-접속날짜)

심사위원 전원이 소분과별 심사회의를 통해 416편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본심사)는 2015. 6. 10. ~ 6. 12. 진행되었으며, 소분과장 20명과 과학분야 2명 위원 등 22명이 참석하여 274편을 선정하였다. 3차 회의(최종심사)는 분과위원장 5명이 참석하여 2015. 6. 17. 진행되었으며, 선정작 140편, 예비후보작 10편을 선정하였다.

2016년 접수 응모작에 대해 1차 심사(예비심사)는 2016. 6. 7. ~ 6. 13.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 전원이 소분과별 회의를 통해 19개 소분과 총 365편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본심사)는 소분과위원장 18명이 참석(1명 불참)하여 2016. 6. 22. ~ 6. 23. 진행되었으며, 1차 심사 선정작 365편 중 5개 분야 총 256편을 선정하였다. 3차 심사는 분과위원장 5명이 참여하여 2016. 7. 1. 진행되었으며, 선정작 140편 및 후보작 10편을 선정하였다.

후보작 선정 이유에 대해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 000은 선정작 중에 국고 이증지원 등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책 발간을 포기하는 경우를 예비하기 위함이라 진술(조사기록 252쪽)하였다.

나. 신청인의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공모 응모작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신청인은 「잠자는 도서관」을 응모하고, 도서출판 「단비」에서 신청인의 작품 「열여섯, 그 해 여름에」를 응모하였으나, 각각 출간의의 15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1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5점, 계 60점(조사기록 154쪽)으로 1차 심사에서 비선정, 출간의의 15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10점, 완성도 10점, 가산점 10점, 계 60점(조사기록 155쪽)으로 1차 심사에서 비선정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공모에도 「조선으로 사라진 아이들」과 「기적의 삼단법칙」 등 두 작품을 접수하였다. 「조선으로 사라진 아이들」은 1차 심사에서 비선정(조사기록 196쪽)되었으며, 세부 심사 내역은 완성도 15점, 집필의도 15점, 참신성 10점, 우수성 10점, 가산점 0점, 계 50점이었다. 「기적의 삼단법칙」 또한 1차 심사에서 비선정(조사기록 197쪽)되었으며, 세부 심사 내역은 완성도 20점, 집필의도 10점, 참신성 10점, 우수성 10점, 가산점 0점, 계 50점이었다.

「기적의 삼단법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타이핑 봉사를 하던 복자씨가 동화작가가 되기까지의 내용을 다룬 동화’라고 작품 목록 내용에 기록(조사기록 196쪽)되어 있다. 이후 2017. 4. 28. ‘별숲’ 출판사를 통해 「기적을 불러온 타자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도서는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문학 나눔’ 사업에서 아동청소년 분야 사업에

선정(조사기록 249쪽)되었으며, 2017년 7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달의 읽을 만한 책’⁶⁾(조사기록 230쪽) 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작품성이 있다는 반증인데,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조사기록 43쪽)라고 진술하였다.

신청 취지에서 2016년 선정 탈락한 것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블랙리스트 등재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등재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깝게 있던 2016년 건의 경우는 기억이 생생하여, 조사 신청서에 썼던 것입니다.’(조사기록 43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정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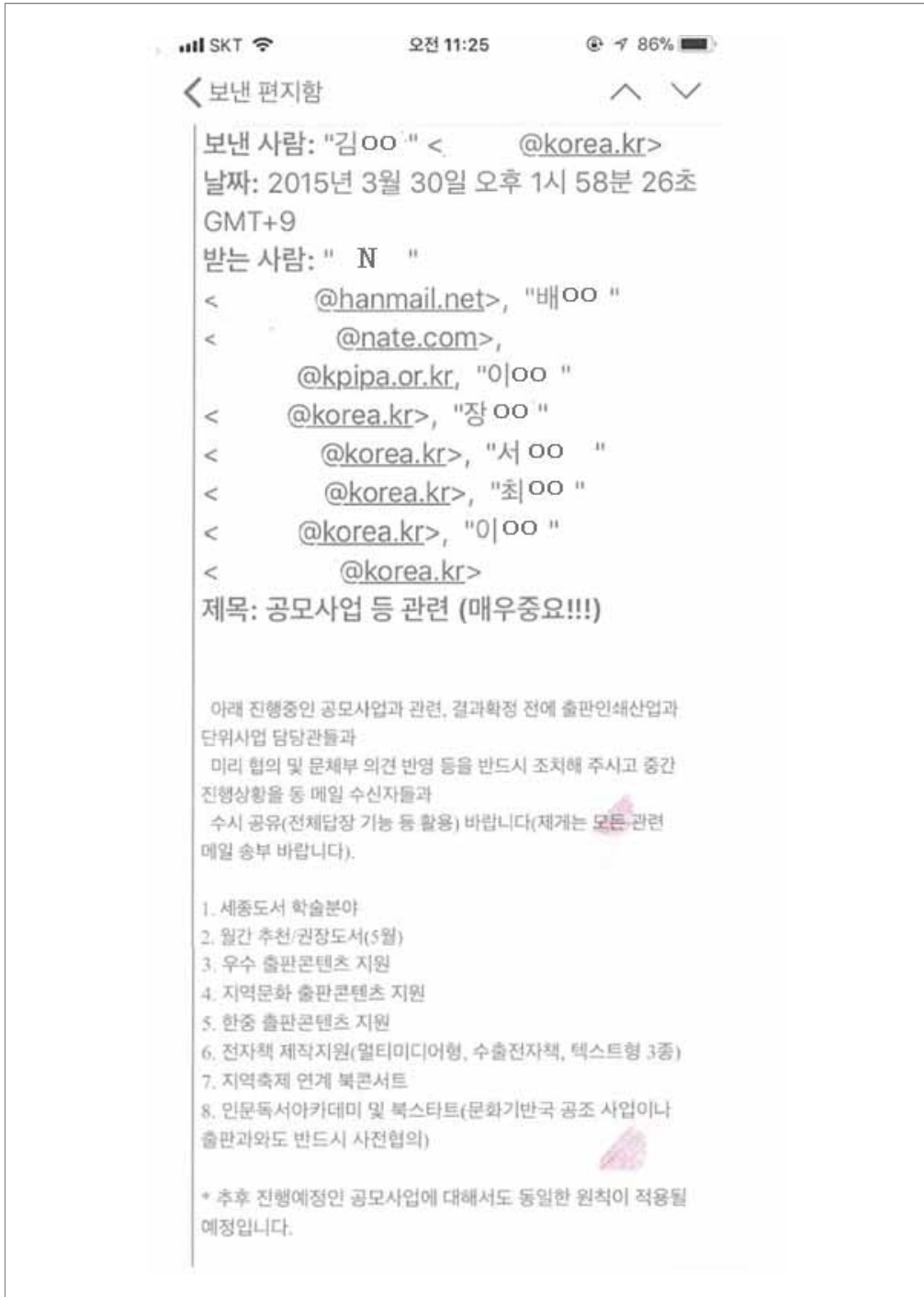
(1)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출판인쇄과장 김OO의 개입

김OO은 출판인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5년 3월 30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들과 출판진흥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게 [그림1]의 “제목: 공모사업 등 관련(매우중요!!!)”의 메일(조사기록 138쪽)을 발송하였는데, “1. 세종도서 학술분야, 2. 월간 추천/권장도서(5월), 3.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4. 지역문화 출판콘텐츠 지원, 5. 한중 출판콘텐츠⁷⁾ 지원, 6. 전자책 제작지원(멀티미디어형, 수출전자책, 텍스트형 3종), 7. 지역축제 연계 북콘서트, 8. 인문독서아카데미 및 북스타트(문화기반국 공조 사업이나 출판과와도 반드시 사전협의)”의 사업을 열거하며,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 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 공유(전체답장 기능 등 활용) 바랍니다(제게는 모든 관련 메일 송부 바랍니다).”와 “추후 진행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기록(조사기록 28쪽)되어 있다.

6)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좋은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해 출판산업과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좋은책 선정위원회를 통해 문학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실용일반, 유아아동 분야의 책을 매달 선정해왔다(조사기록 229쪽 참조).

7) ‘한중 출판콘텐츠 지원’의 오기로 보임.

[그림-1]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이 출판진흥원 본부장과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 사무관, 주무관에게 2015. 3. 30. 발송한 메일



김OO은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제외, 배제 지시를 인정하였으며,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과 초록 샘플 사업이었고’(조사기록 55쪽), ‘1번 세종도서, 3번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6번 전자책 지원 등의 사업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조사기록 67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메일 내용 중,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의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문체부 의견을 제출하여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해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이를 심사 과정에서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조사기록 68쪽)라고 진술하였다.

(2)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선정 배제 지시 기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출판진흥원의 사업에서 배제 지시를 한 기준으로 ‘정무적 판단(북한관련, 자유주의 시장경제 관련, 정부 정책 관련, 지나친 보수주의 시각으로 부담되는 콘텐츠⁸⁾도 포함)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사회적 쟁점 중 우리 입장을 따르지 않는 듯한 콘텐츠 또는 주제의(일본을 지나치게 동경하는 도서), 저자가 문체부 OB인 경우(2중발전) 등이 해당되었습니다.’라는 내용과 ‘1차 또는 (거의 대부분) 2차 심사를 거친 후 3차 심사 전에 문체부 출판과 의견을 줍니다’라고 진술하여 2차 심사를 통과한 심사 목록에 대해 배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일(조사기록 220쪽)을 위원회에 2018. 1. 29. 송신하였다.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기준에 대해, 김OO은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1)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4)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5)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6)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7)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조사기록 55쪽)라고 진술하고, 위 7가지의 규정을 누가 지시하였는지의 물음에 대해 “2년여의 과장 근무기간 동안 진행한 사안들을 종합해보니 이런 기준들을 정하지 않았으나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조사기록 56쪽)라고 진술하였다.

8) 콘텐츠의 오기로 보임.

(3) 김OO의 배제 지시와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김OO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저희 과에서 담당한 사업들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체로서의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위해서 말씀드린 불문화된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검토했습니다.', '문서화 된 블랙리스트 소지 여부에 대해 '리스트는 없었으며, 창작물과 창작자에 따라서 모든 사례별로 항상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조사기록 67쪽)라고 진술하였다.

이OO 사무관이 법정에서 진술⁹⁾(조사기록 227쪽)한 김OO이 전달하였다는 출판사와 작가가 적혀있는 메모지에 대해, 김OO은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저쪽, BH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했습니다.'(조사기록 56쪽)라고 진술하였다.

(4) 출판인쇄과장 김OO이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 지시한 도서 목록

김OO은 2018. 1. 29. 위원회에 '사업별 제외 콘텐츠 및 작가 (당시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억과 유추를 통해 재구성 한 것입니다.) ○ 2015년 우수콘텐츠 : 69, 189, 227, 240, 809, 850, 894, 937, 2107, 2514, 1718, ○ 2016년 우수콘텐츠 : 270'의 내용을 [그림2]와 같이 메일(조사기록 221쪽)로 송신하였다. 2015,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상정목록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9, 이혼추진위원회, 정연철¹⁰⁾ / 189, 전선일기, 안재성 / 227, 세계를 매혹시킨 태극기, 이현표 / 240, 낫선 식민지 제주, 김동현 / 809,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김세연 / 850, 혁신가 경제학, 이일영 / 894,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명월관, 신현규 /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박계리 / 2107,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 이민 김주희 / 2514, 남북의 연구자가 함께 만든 북한사회의 이해, 정일영 정대진 김혁 이혜란 / 1718, 가을방학, 이혜진 / [2016년]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상, 원용찬'으로 확인되었다.

9)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형사항소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이OO 녹취록 35쪽

10) 연번, 제목, 작가명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연번은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심사목록표에 기입된 연번임.

[그림-2] 김OO이 위원회에 송달한 메일 중,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 배제 지시 메일 캡처 (조사기록 221쪽)

- 진흥원 통해 민간 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1차 또는 (거의 대부분) 2차 심사를 거친 후 3차 심사 전에 문체부 출판과 의견을 줍니다.
따라서 1차 미전에 처음부터 탈락한 콘텐츠 100% 및 2차에 오르기 전에 탈락한 콘텐츠 대부분과 최종 선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념하셔도 됩니다(물론 2차에서 탈락한 콘텐츠 중에도 문체부 출판과 의견과 무관하게 심사위원들이 자연스럽게-정당하게 탈락시킨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기억을 더듬어 보니 대체로 정무적 판단(북한관련, 자유주의 시장경제 관련, 정부 정책 관련, 지나친 보수주의 시각으로 부담되는 콘텐츠도 포함)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사회적 쟁점 중 우리 입장을 따르지 않는 듯한 콘텐츠 또는 주제의(일본을 지나치게 동경하는 도서), 저자가 문체부 OB인 경우(2종 발견)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 나. 사업별 제외 콘텐츠(출판진흥원, 목록상의 번호) 및 작가(번역원, 성명)
(* 당시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억과 유추를 통해 재구성 한 것입니다).
- 2015년 우수콘텐츠 : 69, 189, 227, 240, 809, 850, 894, 937, 2107, 2514, 1718
 - 2016년 우수콘텐츠 : 270
 - 2015년 멀티미디어 전자책 : 202
 - 2016년 텍스트형 전자책 : 5500, 9180, 9342, 9371, 9484, 9555-9566, 9574-9577, 9580-9583
 - 작가 해외파견 지원 : 한강, 공지영, 황석영, 성석제, 편혜영

(가) 189번 전선일기, 작가 안재성

‘189번 전선일기’의 작가 안재성은 강원대학교 재학 중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제적되었다. 1983년부터 10여 년간 구로공단, 청계 피복노동조합, 강원도 탄광지대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다시 구속되었다. 1989년 장편소설 『파업』으로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사랑의 조건』, 『황금이삭』, 『경성트로이카』 등의 장편소설과 『이관술』, 『이현상 평전』, 『박헌영 평전』 『이관술』 등의 인물 평전과 『청계피복노동조합사』 등 역사 다큐멘터리를 집필하였다.¹¹⁾

11)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15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3점, 계 78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작 4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나) 240번 낮선 식민지, 제주, 작가 김동현

‘240번 낮선 식민지, 제주’는 글누림 출판사를 통해 2016. 3. 28.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식민지 시기, 해방기와 전쟁기를 통해 외부에서 바라본 제주에 대해 다루며 한편으로는 내부자의 시선도 함께 그 자리에 놓는다. 구체적인 사건과 텍스트를 통해 제주를 바라보기도 한다. 지난 한 세기동안 제주는 수많은 주석을 달았다. 제주의 특수성을 보는 계보학적 탐구와 제주 4·3과 같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이 큰 줄기를 두는 가운데 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외부, 즉 내부 식민지주의라는 관점에서 제주를 바라보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기록¹²⁾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15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0점, 계 7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도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다) 809번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작가 김세연

‘809번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는 글라이더 출판사를 통해 2016. 3. 25.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위대한 인문·고전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인식을 깨우는 「10대에 마주하는 인문 고전」 시리즈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마르크스의 사상과 《자본론》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기록¹³⁾되어 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6029993&orderClick=LAG&Kc=>

12)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63273358&orderClick=LAH&Kc=>

13)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20점, 우수성 18점, 완성도 22점, 가산점 0점, 계 8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4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라) 850번 혁신가 경제학, 작가 이일영

‘850번 혁신가 경제학’은 출판사 창비를 통해 2015. 9. 11. 출간되었으며, 작가 이일영에 대한 소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창작과비평』 『동향과 전망』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안적 지역경제 모델로 ‘한반도경제론’을 제기하고 연구하는 한편,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록¹⁴⁾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15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10점, 완성도 20점, 가산점 10점, 계 7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1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마) 2718 수요시위 갈래요, 작가 윤미향

김OO은 배제 지시 목록으로 ‘1718 가을방학’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배제 지시 목록과는 달리 ‘1718 가을방학’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며, ‘2718’의 경우 ‘수요시위에 갈래요, 윤미향’은 2차 심사까지 통과된 점, 위안부 문제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다뤄진 점 등 김OO이 언급한 배제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미뤄, 2718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718, 수요시위에 갈래요’는 출판사 사이행성을 통해 2016. 2. 3.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고 희생된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스런 증언들은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어야 하는지 되새기게 만든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뼈아픈 역사부터 해방 후 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6510131&orderClick=LAH&Kc=>

14)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36485993&orderClick=LAH&Kc=>

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그리고 지나긴 침묵을 깨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나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아픈 역사에 대해 이 책은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작가 윤미향에 대한 소개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1992년 정대협 결성 초기부터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 증언을 녹취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 유럽 연합 의회와 미국 하원 등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섰고, 시민들과 함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건립했다. 2011년 12월 14일에는 천 번째 수요시위를 맞이하여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건립했다. … 그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오늘도 수요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기록¹⁵⁾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비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0점, 계 8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도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후보7로 선정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바)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향, 작가 원용찬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향’은 출판사 인물과사상사를 통해 2016. 9. 23. ‘빵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탐욕과 부패가 만연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첨예한 가운데, 저자는 ‘빵’으로 상징되는 생명을 화두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역사와 문학, 사상과 철학, 과학까지 아우르며 인류가 거쳐온 경제사상의 다양한 모습을 살핀다. 그 면면은 카뮈나 톨스토이 같은 문학과, 칼 폴라니나 존 러스킨 같은 사상가, 햄릿과 로빈슨 크루소 같은 문학 속 인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 애덤 스미스와 소스타인 베블런, 존 메이너드 케인스, 헨리 조지, 프랑수아 케네, 아마르티아 센, 토마 피케티 같은 경제학자를 넘나든다. 심지어는 양자역학을 통해 호혜와 증여의 경제를 논하기도 한다.’라고 기록¹⁶⁾되어 있다. 우수출판콘

15)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716906&orderClick=LEB&Kc=>

16)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9064106&orderClick=LAH&Kc=>

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완성도 25점, 집필의도 20점, 참신성 10점, 우수성 20점, 가산점 0점, 계 7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사) 기타 배제 지시 목록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2107,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는 모두 북한을 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 감상’은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0점, 계 7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작 5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2107,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는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20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25점, 가산점 10점, 계 9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후보6으로 선정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라. 김OO의 진술과는 상반된 관련자들의 진술

(1) 문체부 사무관 이OO의 진술 (2018. 3. 5. 진술서, 조사기록 265쪽)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근무하며, 출판진흥원의 출판진흥본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OO는 세종도서 관련 건 이외의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 대해 특정 도서 및 작가에 대한 지원 배제, 선정 요청 등의 업무 지시를 한 바가 없으며,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배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OO 과장이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과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 사무관, 주무관에게 발송한 메일에 대해서도 이OO는 ‘이에 관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출판진흥원 사업담당자 OOO 진술(2018. 2. 21. 진술조서, 조사기록 252쪽)

출판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담당자 OOO은 문체부 출판인쇄과로부터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접수목록을 비롯하여, 1, 2차 선정 목록 등을 문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으며, 팀장이 최종적으로 3차 선정된 결과를 문체부 사무관과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콘텐츠진흥팀의 경우, 사업 담당자들이 (문체부) 사무관과 업무 연락을 주고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OO 과장을 비롯한 문체부로부터 특정 도서의 선정 및 배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으

며,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라는 의견도 전달받은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정부 시책에 반하는 원고나 기획안은 선정해도 되는 건가 하는 스스로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의 진술(2017. 12. 21. 진술조서, 2018. 02. 21. 진술조서 조사기록 96쪽, 281쪽)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담당하는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은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에도 원고나 기획안으로 접수가 되니까 이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인지 배제지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특정 도서의 배제나 선정 등의 요구를 받은 바도 없으며, 김OO이 배제 지시 목록이라며 메일에 적시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배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탈락한 도서가 좋은 책(이달의 읽을만한 책) 선정 사업에서 선정될 수도 있냐는 물음에 대해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서는 말씀드린 것 처럼 도서가 없는 상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원고가 완성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책 선정 사업과의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의 2차 선정 결과와 최종 선전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4) 출판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N의 진술(2017. 11. 07. 진술조서, 조사기록 4쪽)

출판진흥본부장 N은 '진흥본부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문체부 출판인쇄과)의 검토를 받은 이후에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OO 과장이 온 이후부터 치밀하고, 집요하게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검토하는 등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N은 2018. 2. 1.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아야겠기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조사기록 223쪽)라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마. 2014, 2015 세종도서 문학 나눔 분야에 선정된 신청인의 작품

세종도서 문학 나눔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시기였던 2014년, 2015년에 신청인이 집필한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사계절출판사)와 「밤의 화사들」(한우리북스)은 세종도서 문학 나눔 분야에 선정(조사기록 238, 241쪽)되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대한 배제 지시 여부

(1)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의 배제 지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은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을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 주무관을 비롯하여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들의 선정 결과에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의 2차 선정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하였다.

2차 선정 결과를 검토한 김OO은 1)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4)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5)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6)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7)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해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의 기준과 북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부 정책, 지나친 보수주의 시각,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 사회적 쟁점 중 우리 입장을 따르지 않는 듯한 주제, 저자가 문체부 출신인 경우 등의 자의적인 기준을 준용하여 특정 도서 배제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정연철의 이혼추진위원회, 안재성의 전선일기, 이현표의 세계를

매혹시킨 태극기, 김동현의 낫선 식민지 제주, 김세연의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이 일영의 혁신가 경제학, 신현규의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명월관, 박계리의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이민 김주희의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 정일영 등의 남북의 연구자가 함께 만든 북한사회의 이해, 윤미향의 수요시위에 갈래요와 2016년 원용찬의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향' 등의 응모작에 대해 배제를 지시하였으며, 각각의 응모작들은 후보작으로 처리 되거나, 비선정 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담당한 문체부 이OO 사무관,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 OOO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진술하고,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은 세종도서와 달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는 배제 지시가 없었다며 김OO의 진술과는 상반된 내용을 진술하였다. 김OO의 배제 지시를 직접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판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N은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나, 당사자인 김OO이 자신의 행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진술 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김OO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미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 지시를 하였다라는 김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김OO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송부받은 2차 선정 결과 중 특정 응모작을 탈락시키기 위한 배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이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 되었는지의 여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신청인은 「잠자는 도서관」을 응모하고, 도서출판 '단비'에서 신청인의 작품 「열여섯, 그 해 여름에」를 응모하였다. 또한 2016년 신청인은 「조선으로 사라진 아이들」과 「기적의 삼단법칙」 등을 응모하였다. 신청인의 네 작품 모두 탈락, 선정되지 않았다.

김OO이 언급한 배제 목록에 신청인의 응모작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제 지시한 목록은 조사과정에서 기억을 유추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당시의 김OO이 배제 지시한 정확한 목록이라 보기 힘들다. 또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인 명단을 출력하여 활용했다는 이OO, 김OO의 진술, 정부 시책에 반하는 원고나 기획안을 선정하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업 담당자 OOO의 진술, 신청인이 '416 단원고 약전' 필진으로 참여하고, 세월호 서명 문학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인의 응모작

도 배제 지시에 포함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김OO은 2차 심사 결과에 대해 배제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청인의 작품 모두 1차 심사에서 탈락된 점으로 미뤄,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있긴 하나, 우수출판콘텐츠제작 지원 사업 탈락 결과는 김OO의 지시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판단된다.

(3)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김OO이 배제 지시한 작가들 중 위원회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작가는 안재성(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4,110명)이 유일하다. 또한 신청인의 작품이 2014, 2015년에 세종도서 문학 나눔에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청와대, 국정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적용, 실행되었다는 관련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여타의 기관과 사업에서 정부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시행되었던 점,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작가와 도서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김OO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OO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자신이 관장하는 출판진흥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서도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적용, 실행한 사례라 판단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김OO의 배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N의 경우 위원회 조사를 거부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담당 대리였던 OOO는 퇴직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김OO의 배제 지시가 어떤 경위로 출판진흥원의 선정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기관 감사 등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59

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



59

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문11[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김형중은 2016 예술위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된 것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 김형중은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체부 오OO이 작성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실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문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278-325번,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7]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2017. 10. 15.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조서) 및 서울중앙지검 2017. 11. 9.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 김형중의 경우 국정원-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배제지시의 하달로 인하여 2016 예술위 심의위원 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붙임 : [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문11, 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

[신청인] 김형중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김형중은 2016 예술위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된 것이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11. 10.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은 예술위 2016 심의위원 풀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는바, ① 심의위원 풀제 변경 경위, ② 심의위원 풀제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③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의 작동으로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9건에 대하여 문서와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 2015. 5. 21.자)	문체부 오OO	2017. 8.
2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2016. 1. 8.자)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7. 8.
3	2017. 10. 15.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	문체부 오OO	2018. 2.
4	2017. 11. 9.자 서울중앙지검 제출 강OO 진술서	예술위 강OO	2018. 2.
5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		
6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문체부 오OO	2017. 8.
7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문		2017. 8.
8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2018. 1.
9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1인에 대하여 총 1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강OO	예술위 직원	진술조서(2018. 1. 2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나. 심의위원 풀제

예술위는 문체부와의 협의에 따라 2015. 8. 5.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심의위원후보단) 제도로 변경하여 위원장이 개별 심사마다 심의위원 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처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의위원 풀은 예술위 위원회가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 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 제3항).

2016년 예술위 심의위원 풀은 2016. 1.경부터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2016. 7.경에야 심의위원 풀이 최종 확정될 수 있었다.

2. 예술위 2016 심의위원 풀제 변경 경위

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2015. 5. 11., 2015. 5. 21.자)

2015. 5. 11.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관련 현안” 문건은 오OO이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며, 2015. 5. 21.자 동일 제목의 문건 또한 오OO 작성 문건으로 ‘문예기금사업 심사제도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심의위원회(1년 임기제/15.2월 임기종료)는 임명되면 1년동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재가 곤란함에 따라 심사위원을 풀(pool)제로 전환함으로써 사업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작품의 선정 논란 차단’ 및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 2015. 5. 21.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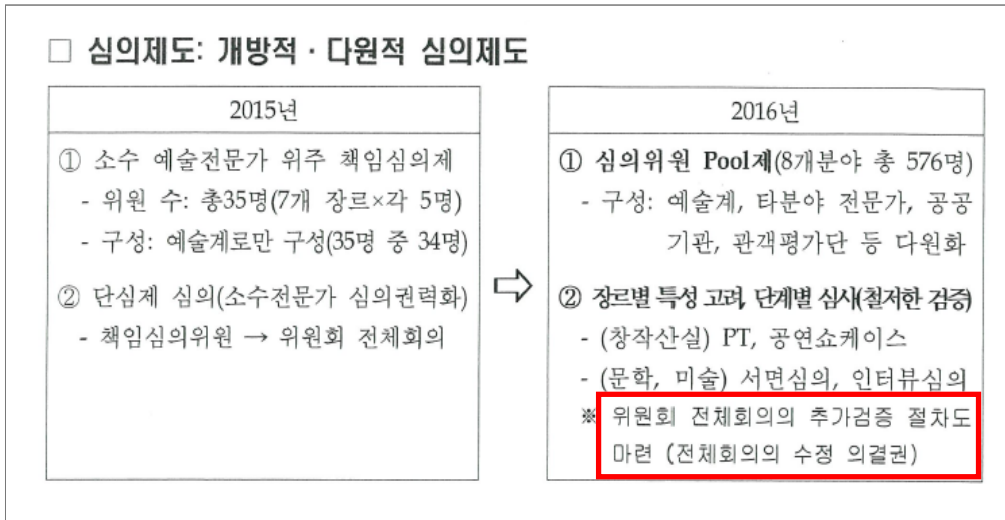
4. 문예기금사업 심사제도 개선

- 책임심의위원회(1년 임기제/15.2월 임기종료)는 임명되면 1년동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재가 곤란함에 따라 심사위원을 풀(pool)제로 전환함으로써 사업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작품의 선정 논란 차단
- * 심사위원에 국립예술기관장, 사무처 간부진 포함
- 심의위원의 단심제 선정(100%)으로 심사 후 문제 발생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심의단계를 사업특성에 따라 1~3차로 구분, 심사하고 선정비율 사전 배분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1차(150%), 2차(120%), 최종(100%) 선정 제도 도입

나.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2016. 1. 8.자)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작성한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 문건에서는 1쪽에서 ‘(심의제) 소수 예술전문가 중심 심의제 폐지, 개방적·다원적 심의제 도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3쪽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함께 ‘위원회 전체회의의 추가검증 절차도 마련(전체회의의 수정 의결권)’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림-2]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2016. 1. 8.자)



다. 2017. 10. 15.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30쪽)

서울중앙지검 2017. 10. 15.자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30쪽)에 기재된 오OO의 진술에 따르면, 2015. 12. 2.경 오OO이 심의위원 풀에 선정된 명단을 국정원에 송부하였고, 2016. 2. 23.경 국정원으로부터 문학분야의 “⑮ 김형중”을 비롯한 14명에 대하여 각 배제대상자로 선정되어 회신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인 오OO은 배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비록 심의위원 풀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3]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분

<p>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15.12.2)</p>	<p>○K-17명(16.2.23)</p> <p>-문학: ①안현미 ②박범신 ③은희경 ④강은교 ⑤이문재 ⑥이수환 ⑦부효근 ⑧나희덕 ⑨이병재 ⑩임영천 ⑪홍정선 ⑫구모룡 ⑬정홍수 ⑭유성호 ⑮김형중</p> <p>-음악 : ①이건용</p> <p>-문화일반: ① 최재봉</p> <p>○B-37명(7.13)</p> <p>-문학:박성원, 윤대녕, 이승우, 정미경(이상 소설가) 김승희, 진은영, 함성호, 장이지(장이수)(이상 시인) 김상욱, 신지영, 이안, 권성우(이상 아동문학가), 권희철, 고봉준, 김나영, 김종욱, 송종원, 신형철, 양윤의, 유성호, 이재복, 정여울, 정영훈, 조강석, 차미령, 최윤정, 최현석, 함돈근, 허윤진, 황종연(이상 평론)</p> <p>-연극: 송진</p> <p>-음악: 송영국, 한상원, 최상화, 진인평,</p>
- 3 -	
<p>연극: 장유정 / 정통: 이계성</p>	<p>-다원:강윤주, 정무정, ○B-(7.22) 추가</p>

라.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조사) 및 서울중앙지검 2017. 11. 9.자 진술서

(1) 참고인 강OO는 2015. 11. 13.경부터 2017. 3. 7.경까지 문학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문학지원부가 여러 장르별 담당 부서들의 선임부서 역할을 하고 있어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참고인 강OO는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와 관련하여 2018. 1. 25.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제로 변경된 경위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제로 변경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5. 8. 1.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명단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책임심의위원들이 배제명단 적용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어 블랙리스트를 계속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책임심의위원 제도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문체부의 배제지시

오○○ 서기관에게 심의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나면 보통 한 달 이상이 지나고 나서 오○○ 서기관이 직접 유선상으로 배제해야 할 명단을 불러주었고, 문학지원부가 신설되기 이전의 창작지원부에서 문학분야의 각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되었던 인사들도 모두 누적해서 지원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심의위원 풀 구성 부당배제 명단

서울중앙지검 2017. 11. 9.자 강○○ 작성 진술서 및 참고인 강○○가 2018. 1. 25.자 위원회 조사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심의위원 풀 선정 배제와 관련하여 문체부 오○○ 서기관이 하달한 배제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3] 심의위원 풀 구성 부당배제 명단

분야	배제지시가 하달된 명단	배제가 실행되지 않은 명단
문학	안현미, 박범신, 박성원, 서성란, 윤대녕, 은희경, 이승우, 정미경, 강은교, 김승희, 나희덕, 복효근, 이문재, 이승하, 진은영, 함성호, 장이지(장인수), 김상욱, 신지영, 이안, 권성우, 권희철, 고봉준, 구모룡, 김나영, 김종욱, 김형중, 송종원, 신형철, 양윤의, 유성호, 이명재, 이재복, 임영천, 정여울, 정영훈, 정홍수, 조강석, 차미령, 최윤정, 최현식, 함돈균, 허윤진, 황종연	서성란, 김종욱
연극·뮤지컬	송전	송전
음악	이건용	
전통예술	송영국, 한상일, 최상화, 전인평	한상일
문화복지	강윤주, 정무정	강윤주
문화일반	정준모, 최재봉	정준모

문학분야는 안현미, 박범신, 박성원, 서성란, 윤대녕, 은희경, 이승우, 정미경, 강은교, 김승희, 나희덕, 복효근, 이문재, 이승하, 진은영, 함성호, 장이지(장인수), 김상욱, 신지영, 이안, 권성우, 권희철, 고봉준, 구모룡, 김나영, 김종욱, 김형중, 송종원, 신형철, 양윤의, 유성호, 이명재, 이재복, 임영천, 정여울, 정영훈, 정홍수, 조강석, 차미령, 최윤정, 최현식, 함돈균, 허윤진, 황종연 총 44명 중 실제 배제된 인원은 서성란과 김종욱을 제외한 42명이다. 연극·뮤지컬 분야에서는 송전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배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악분야는 이진용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고 배제가 실행되었다.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송영국, 한상일, 최상화, 전인평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고, 한상일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하여 배제가 실행되었고, 문화복지 분야의 강윤주, 정무정에게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강윤주에 대해서는 배제가 진행되지 않았고, 문화일반 분야에서 정준모, 최재봉에 대해 배제지시가 있었으나 정준모에 대해서는 배제가 진행되지 않았다.

(5) 예술위의 배제지시 이행 경위

오OO 서기관이 통보한 검토 결과를 바로 류OO 본부장과 해당 사업 담당자와 공유하면서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심의위원 풀 구성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 자료를 작성할 때 해당 인사들을 빼고 안건을 만들어 상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해당 지시에 따라 담당자인 OOO 사원으로 하여금 오OO 서기관이 통보해 준 심의에서 배제되어야 할 인사들 중 5명(정미경, 김종욱, 송전, 한상일, 강윤주)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빼고 안건 자료를 작성하게 하여 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논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추가로 전문인사를 추천하거나 작고한 사람을 풀 명단에서 제외하는 보완 조치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 및 확정되었다. 심의에서 배제되어야 할 인사들 중 안건자료에 포함된 5명은 심의위원 풀 제도가 시행된 2015. 8. 5. 이후에 추진된 각 사업의 지원심의에 이미 심의위원으로 한 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 풀에서도 제외할 수 없었던 인사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라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가. 신청인 김형중이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1) 세월호 문학인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신청인은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¹⁾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관리,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문체부가 관리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에서 신청인 ‘김형중’은 ‘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사업 검토 명단에 등재되었다.

나. 신청인이 심의위원 풀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따라 배제된 것인지 여부

(1)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문(85쪽)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278-325번(421-425쪽)

2016년 예술위 심의위원 풀은 2016. 1.경부터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청와대, 국정원 등의 지원배제 명단이 문체부를 통하여 예술위로 내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 후보자의 인원이 너무 많아 2016. 7.경에야 심의위원 풀이 최종 확정될 수 있었다.

문체부 오OO은 예술위 강OO에게,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① 후보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②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각 지시하였고, 이에 문체부 오OO의 지시를 받은 예술위 강OO는 ① 후보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 ② 배제 대상자를 안전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

범죄일람표2 순번287에 신청인 ‘김형중’이 기재되어 있다.

1) <한국일보>,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명단”,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146abf21618f42c5ab80bfe37a521e8a>(접속날짜: 2018. 3. 15)

[표-4]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287번

순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287	비공모	2016-02-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김형중

(2)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연번 29

감사원이 문체부와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2017. 1. 19.~3. 10까지 진행하여 2017. 6.에 발표한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중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중 ‘2016년도 심의위원 풀 선정’ 연번 29에 신청인 김형중이 기재되어 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예술위 심의위원 풀제 변경 경위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 5. 11., 2015. 5. 21.자),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2016. 1. 8.자),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예술위가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제로 변경한 이유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약 8개월 여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 3차 심의에서 책임심의위원들이 배제명단 적용을 거부하여 결국 위원회 의결로 선정인원 축소를 선택하여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책임심의위원 제도를 심의위원 풀 제도 개편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의 추가검증 절차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2016 심의위원 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는지 여부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문(85쪽)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278-325번,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2017. 10. 15.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조서) 및 서울중앙지검 2017. 11. 9.자 진술서 등에 따르면, 2016 심의위원 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어 특정인들에 대한 부당한 배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블랙리스트 실행 방식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문(85쪽)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278-325번,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2017. 10. 15.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조서) 및 서울중앙지검 2017. 11. 9.자 진술서 등에 따르면, 문체부의 오OO은 심의위원 풀 후보자 명단을 예술위 류OO, 강OO, OOO 등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각 청와 대와 국정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배제명단을 다시 예술위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예술위 류OO는 배제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 자료를 작성할 때 배제명단이 하달된 특정인들은 제외하고 안건을 만들어 상정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지시대로 예술위 강OO, OOO는 안건자료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및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신청인 김형중이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2016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1)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 김형중은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고 알려진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체부 오OO이 관리한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실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문(85쪽) 및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연번 278-325번, 감사원 2016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2017. 6.) 중 [별표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작성, 「리스트-」16. 9. 27. 현재」 중 「[2016]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부분, 2017. 10. 15.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오OO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참고인 강OO의 진술(2018. 1. 25.자 진술조서) 및 서울중앙지검 2017. 11. 9.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 김형중의 경우 국정원-문체부-예술위로 이어지는 배제지시의 하달로 인하여 2016 예술위 심의위원 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2016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청와대 및 국정원 어느 부서, 누구에게 해당 사업의 후보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받고 블랙리스트 실행 경과를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 나. 또한 문체부 내 실·국장들이 이 사업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오OO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 다. 참고인 강OO는 2018. 1. 25.자 위원회 조사에서 심의위원 풀 구성 절차와 관련하여 심의위원 풀은 소관 장르의 비상임 위원과 협의하여 구성을 한다고 진술하였는데(2018. 1. 25.자 진술조서, 14쪽) 해당 진술에 따르면 심의위원 풀 구성 절차와 관련하여 예술위 위원의 블랙리스트 인지 여부 및 가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조사기간의 한계로 조사가 되지 못한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라. 위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0

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사업 배제 의혹 사건



60

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사업 배제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문12[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사업 배제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허아람)이 대표로 있는 인디고서원은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사업에 응찰하였으나 동년 6월말 경 심사결과 탈락하였다. 탈락 직후, 동사 관계자는 '1차 심사결과 1위였으나 뒷선의 압력으로 최종 탈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국국학진흥원 내부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한편 동사는 전년도인 2013년에 동일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행사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이 당시 초청 강사를 고은에서 복거일로 변경하라는 문체부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신청인은 인디고서원이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사업자 선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 소위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7.10.13. 우리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인디고서원은 한국국학진흥원의 2013년도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으나, 2014년의 동일 사업에서 탈락하였다.

조사 결과 인디고서원이 여러 블랙리스트 상에 ‘문재인 2030 영입대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재되어있음이 확인되었다. 2012.3.20.자 <내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재인이 인디고서원 대표 허아람을 영입하려 했다고 하며, 이러한 보도가 국정원이 인디고서원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문체부에 배제 통보한 사유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업담당자였던 000는 문체부 지역민족문화과 관계자들이 ‘인디고서원을 배제시키라’는 취지를 전달하자,¹⁾ 이에 압력을 느끼고 2014년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에 앞서 내·외부 심사위원 일부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심사위원 일부가 인디고서원에게 불리한 평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인디고서원은 위 용역 사업에서 탈락하였는데, 한국국학진흥원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내·외부 위원 일부가 인디고서원에게 불리한 점수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인디고서원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관리되었던 점,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 사업 담당자 000의 증언 등에 의해

1) 이와 관련하여 박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18. 11. 14.).

본인은 배제 취지를 전달한 바 없음. 단순히 주관기관(국학진흥원) 직원의 기억으로 추측한 것임. 주관기관(한국국학진흥원)은 2014년에도 2013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였음. 다만, 용역사업의 기본적 행정 절차의 원칙은 공모이며, 다른 자생적 인문 기관(푸른역사아카데미, 수유너머, 무등지성 등)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공모로 진행한 것임. 또한, 심사위원의 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위원의 종합기술평가서 결과를 보더라도, 참고인이 진술한 심사위원 점수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거의 모든 위원이 최종 선정된 기관(푸른역사아카데미)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평가결과 표에서 가격평가도 푸른역사아카데미가 더 높았음. 심사위원 평가의 최종 점수 산정시 각 기관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었으며, 이에 더해, 만약 인디고서원의 최저점 2인과 푸른역사아카데미의 최고점 2인을 제외하고 점수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푸른역사아카데미가 선정되는 결과가 나오는 바, 인디고서원의 탈락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한 사업 역량 평가에 대한 공정한 심사의 결과였고, 문체부는 동 사업에서 인디고서원의 배제를 지시한 기억도 전혀 없음. 인디고서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속했다는 사실과 주관기관(국학진흥원) 직원의 기억과 추측에 따른 진술만으로 ‘배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서술하는 것은 부적절함.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인디고서원의 탈락 이유가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상당’하다는 서술도 논리의 비약이 있음.

문체부가 인디고서원을 위 사업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²⁾ 그러므로 인디고서원이 위 용역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문체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붙임 : [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사업 배제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문12[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사업 배제 의혹 사건]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허아람)이 대표로 있는 인디고서원은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사업에 응찰하였으나 동년 6월말 경 심사결과 탈락하였다. 탈락 직후, 동사 관계자는 ‘1차 심사결과 1위였으나 워선의 압력으로 최종 탈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국국학진흥원 내부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한편 동사는 전년도인 2013년에 동일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행사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이 당시 초청 강사를 고은에서 복거일로 변경하라는 문체부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신청인은 인디고서원이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사업자 선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 소위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7.10.13. 우리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前 인문정신문화과장 김OO은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하였다(18. 11. 14.).

인디고서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속했다는 사실과 주관기관(국학진흥원) 직원의 기억과 추측에 따른 진술에만 의존한 결론을 사실이 확인 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부적절함. 용역사업 추진 절차상 원칙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였고, 외부 심사위원(전문가)의 심사에 따라 실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인디고서원의 탈락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한 사업 역량 평가에 대한 공정한 심사의 결과였고, 문체부는 동 사업에서 인디고서원의 배제를 지시한 기억도 전혀 없음.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 근거

본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17차 전원위원회(2017.12.1.)에서 조사개시 결정되었다(의안번호 17-083).

나. 조사 목적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규명과제는 인디고서원의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사업 탈락 경위 및 그 사유이다.

제2절 |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자료 조사 주요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시기	비고
1	문예 6-5_리스트-'16.2.1 현재	문체부	2016.2.1.	
2	「문예 6-4 제목 없는 명단」	”	2014.경	
3	2013 ~ 2014 인문정신문화포럼 청년캠프 관련 자료	한국국학진흥원	2013.~2014.	
4	2014 청년인문캠프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자료	”	2014.6.	
5	[공고문] 2014 청년 인문 캠프 행사	”	2014.6.16.	
6	2014 청년인문캠프 개최 제안요청서	”	”	

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목록

연번	성명	관련 사항	조사 내용
1	박OO	인디고서원 편집장(신청 대리인)	전화조사(2017.11.15.)
2	OOO	한국국학진흥원 사업담당자	진술조사(2018.4.19.)
3	김OO	문체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전화조사(2018.3.20.)
4	박OO	"	전화조사(2018.4.18.)
5	OOO	문체부 지역민족문화과 주무관	전화조사(2018.4.25.)

제3절 | 조사 결과

1. 사건 개요

가. 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허아람)이 대표로 있는 인디고서원은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사업에 응찰하였으나 동년 6월말 경 심사결과 탈락하였다. 탈락 직후, 동사 관계자는 ‘1차 심사결과 1위였으나 워선의 압력으로 최종 탈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국국학진흥원 내부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한편 동사는 전년도인 2013년에 동일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행사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이 당시 초청 강사를 고은에서 북거일로 변경하라는 문체부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나. 2014 ‘청년 인문학 캠프’ 사업 개요

‘청년 인문학 캠프’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2013년과 2014년에 개최되었다. 2013년은 인디고서원이 수의계약으로 행사를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인디고사원이 응찰하였으나, 탈락하였다. 위 사업의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3] 2014 '청년 인문학 캠프'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1. 인문정신의 함양을 통해 청년세대 스스로 시대정신을 찾고 미래비전을 제시토록 함
2. 청년들이 인문적 토대 위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청년세대의 인문정신 축적을 통해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역량 강화
4.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이, 수많은 위험과 기회를 넘어 도달해야 할 대한민국 공동체 비전에 대한 모색

□ 사업 추진 방향

1. 하나의 대주제 아래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두 차례 캠프 진행
 - ※ 두 캠프가 별개로 개최되면서도 연관성을 가지는 유기적 관계로 구성
 - 대주제; 청년과 공동체
 - 제1주제;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청년 캠프'
 - 제2주제; '글로벌 시대의 청년 공동체'
2. 1박 2일의 인문캠프로 모둠토론, 전체토론, 현장학습, 강의 등이 어우러진 프로그램
3.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형태와 결합(확장된 인문 개념 적용)
4. 사회적으로 호응이 높으면서도 청년들 자신의 고민이 담긴 프로그램 지향

□ 주요 행사 내용

1. 대주제 : 청년과 공동체
 - 제1주제 :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청년 캠프(1박 2일, 청년 100여 명)
 - 제2주제 : 글로벌 시대의 청년 공동체(1박 2일, 청년 100여 명)
2. 시 기 : 8월 중·후반 2회
3. 장 소 : 기획 의도에 맞게 업체에서 선정

□ 예산액 : 총 50,000,000원(금오천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공고기간 : 2014년 6월 16일(월) ~ 25일(수)

□ 제안서 평가일시 : 2014년 6월 27일(금) 14:00

2. 자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가. 한국국학진흥원의 2014 ‘청년 인문학 캠프’ 사업 관련 자료 검토 결과

2014년도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사업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국학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총 111쪽에 달하는 ‘2014 청년인문캠프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자료’를 검토 결과, 총 5개 업체가 응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푸른역사아카데미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선정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2014 ‘청년인문캠프’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의 요지이다. 내·외부 평가위원 7명이 평가에 참여하여 푸른역사아카데미를 1순위로 선정하였다.

[표-4] 「2014 청년인문캠프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요지

□ 사업자 선정				
• 계약내역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약방법
2014 청년 인문 캠프 행사	44,290	2014. 7. 8~9.30	푸른역사 아카데미	협상에 의한 계약
※ 푸른역사아카데미 (서울시 종로구 소재)				
• 계약추진사항				
- 공고기간 : 2014. 6. 16~6. 25				
- 예정금액 : 50,000천원 / 낙찰금액 : 44,290천원				
- 응찰업체 : 5개 업체 (인디고서원, 푸른역사아카데미, 지에프솔루션, 굿잡투데이, 이펙토리)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2014. 6. 27. 14:00 / 장소 : 시민행성(서울 종로구)				
- 제안서 평가위원 : 7명 (내부 3, 외부 4) ※ 평가위원 후보자 21명중 무작위 7명 선정 (내부) 박OO, 권OO, 박O (외부) 정OO(문화관광연구원), 김OO(길위의 인문학 단체대표) 이OO(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김OO(대안연구공동체 대표)				

- 평가결과 : 푸른역사아카데미 (1순위)

응찰업체	기술평가	가격평가	합계	우선협상순위
푸른역사아카데미	75.4	9.946	85.346	1
인디고서원	73.2	9.691	82.891	2
(주)굿잡투데이	68.6	10	78.6	3
이펙토리	64.2	9.734	73.934	4
지에프솔루션	56.0	9.693	65.693	5

나. 인디고서원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자료조사 결과 인디고서원이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음이 아래 [그림 1], [그림 2]와 같이 각각 확인되었다.

[그림-1]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中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공연과 관리 (중요) - 79명	<p>①강은교(동아대명예교수), ②고은(시인), ③고연옥(작가,연극), ④고창운(전대교수), ⑤구중서(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⑥김경미(시인), ⑦김도연(소설가), ⑧김병호(소설가), ⑨김보성(전 마포문화재단대표), ⑩김상용(화가), ⑪김성철(시인), ⑫김소연(시인), ⑬김영동(일상창작예술센터 대표), ⑭김정은(연극), ⑮김중일(시인), ⑯김태수(헤이수,소설가), ⑰김택진(아동문학가), ⑱박승희(소설가), ⑲서상혁(연극, 호서대학교수), ⑳서성란(소설가), ㉑서철원(소설가), ㉒성기용(연극연출), ㉓송미경(아동문학가), ㉔송진권(시인), ㉕양혜규(설치미술가), ㉖오성운(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 ㉗유영소(소설가), ㉘이상국(시인), ㉙이선아(무용가), ㉚이종호(국제무용협회 회장), ㉛이준호(소설가), ㉜이지효(고암문화재단 대표, 이용노미술관 관장), ㉝이진희(은행나무출판사 주가), ㉞정미경(소설가), ㉟정사영(시인)</p> <p>㊱정해원(아동문학가), ㊲주원익(시인), ㊳천수호(시인), ㊴천윤영(소설가), ㊵최용배(영화사 청어람 대표), ㊶최용탁(소설가), ㊷한창훈(소설가), ㊸함성호(시인), ㊹한경임(소설가), ㊺홍선(희망제작소 부리센터장)</p> <p>①강릉시네마테크(권정삼), ②광안리 사람들(이승욱), ③국제극예술협회(최치림), ④그린피그(윤환술), ⑤극단늘망, ⑥다빈나오(김지원), ⑦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⑧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⑨메아드르고도 극단(권영국), ⑩문학동네, ⑪미디어트, ⑫민족미학연구소(조성래), ⑬밀양연극촌(손숙), ⑭비투이, ⑮산울림극단(임영웅), ⑯서울피담 극단(유영봉), ⑰실천문학, ⑱아트스페이스 씨, ⑲아트클럽(이지혜), ⑳옛나인필름, ㉑연우무대극단(유인수), ㉒연희단거리패(김소희), ㉓오장관문학계추진위원회, ㉔윤이상평화재단(신계륜), ㉕극단 이부(손기호), ㉖인디고서원, ㉗일상예술창작센터(최현정), ㉘제주장애인인권포럼(고현수), ㉙조은컴퍼니(김계훈), ㉚창비, ㉛책읽는사회문화재단, ㉜천년의시작, ㉝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㉞한글문화연대</p>

[그림-2]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中 ‘정무리스트’

7 정무 리스트 ('15.4.13현재)/중요) - 59명		2013	2014	2015	비 고 (지원 사업명)
(사다지컬 노동문화부서(같은)하는 장 발(거점)	14,000	18,000	지원심의 탈락	우수문예지 지원	
실천문학	16,000	28,000	16,000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13년 16,000천원, '14년 18,000천원, '15년 16,000천원 문학행사및연구지원: '14년, 10,000천원
천년의시작(시작)	14,000	14,000	지원심의 탈락		
인디고서원(인디고영)	16,000	30,000	지원심의 탈락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13년 16,000천원, '14년 20,000천원 문학행사및연구지원: '14년 10,000천원
창비(창작과비평)	16,000	20,000	16,000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위와 같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당시 문체부 사무관 오OO은 다음과 같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즉 「기존관리 리스트-149명」 리스트는 청와대 김OO 행정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관리하던 명단을 정리한 것이며, 「정무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하달한 배제자 명단이라고 한 것이다.3)

[표-5] 「오OO 서울지검 진술조서(2회)」, 2017.10.15.

문 위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은 어떻게 작성하게 된 것인가요.
 답 당시 청와대 김OO 행정관이 기존 관리 리스트를 한 번에 모아서 배제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 위 내용 중 '공연과 관리(중요) - 79명'이란 기재는 무엇인가요.
 답 이것은 공연과 김OO 사무관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다른 부서로부터도 리스트를 모아서 취합한 것 같습니다.
 문 위 '기존관리 리스트-149명'은 언제 만든 것인가요.
 답 2015.3. ~ 4.경으로 2015.4.13. 보다는 이전인 것 같습니다.
 (중략)
 이 때 검사는 문체부 담당자 PC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 문건('7 정무리스트')을 진술인에게 제시하고 충분히 열람하도록 한 후,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위 문건은 어떻게 작성이 된 것인가요.

3) 오OO 서울지검 진술조서(2회), 2017.10.15.

답 2015.4.13. 위 리스트가 예술정책과장이었던 이OO로부터 정무수석실에서 온 것이라고 전해 주어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도 배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이OO 과장이 준 자료인가요.

답 이OO 과장이 출력물을 주었고, 그 자료 그대로 한글파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문 결국 국정원의 배제 명단이 적용이 된 것인가요.

답 네, 그것은 맞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전까지는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적용을 하였고, 국정원에서 온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를 한 다음 자료를 축적한 다음 차회 신청자가 올 때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의 경우에도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명단 회신을 받은 이후부터는 모두 적용을 하였습니다.

위 오OO의 설명에 따르면 인디고서원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는 국정원이 인디고서원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관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이 인디고서원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이유는 문체부가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아래 [그림 3]의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그림-3] 「문예 6-4 제목 없는 명단」

주실천문학	<실천문학> 발간 지원	16	-	• 문재인 지지 1인칭 예술인
뿌천년의시작	<시작> 발간 지원	14	-	• 문재인 지지 1인칭 예술인
인디고서원	<인디고잉> 발간 지원	16	-	• 문재인 2030 영입대상
창비	<창작과 비평> 발간 지원	16	-	• 출판인대표 문재인 지지
구중서	융합적 인간과 한국문화의 발견	5	-	• 문재인 멘토단 참여 문해

위 명단에 인디고서원에 대한 배제 사유가 ‘문재인 2030 영입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2.3.20.자 <내일신문>에 실린 「문재인, 부산 ‘인디고’ 허아람 영입작전 - 2030세대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도와주소”」 라는 기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인디고서원 허아람 대표에게 4·11 총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2030 세대인 허아람 대표, 정은혜씨가 문재인 고문과 함께 사상구를 비롯한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설 경우,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젊은 이미지에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라는 내용이 실려있다.⁴⁾

4) 「문재인, 부산 ‘인디고’ 허아람 영입작전 - 2030세대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도와주소”」, <내일신문>.

실제로 인디고서원의 허아람 대표가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문재인의 영입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2012년 경부터 인디고서원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

가. 참고인 000의 진술⁵⁾

2014년도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사업의 한국국학진흥원 사업담당자였던 000는 위 사업에서 문체부 주무부서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6.27.의 제안서 평가 직전, 당시 문체부의 주무부서인 지역민족문화과 과장 김OO, 사무관 박OO, 주무관 000 등 3인이 광화문 문화융성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국학진흥원 담당자 등을 불러 놓고 ‘인디고서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면담을 했다는 것이다.

“제가 몇 번이나 명확하게 물어봤습니다. ‘떨어뜨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저한테 문서적으로 뭘 보여주든가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
다. ‘떨어뜨려야 하나?’ 직접 물어봤죠. 떨어뜨려야 된다면 먼저 알아서 실행하면
되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죠, 저희들은... 그런데 그 말은 안 했다는 거죠. 돌려서.
계속 돌려서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되겠느냐?’ 돌아가면서 합니다. 직접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은 성공시켜야 된다. 좋은 데를 뽑아
야 된다.’

뭘 저희들은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인디고서원을 어떻게 떨어뜨려
야 되나 그 방안을 고민했죠.”

000는 조사과정에서 “문체부 관계자들이 완곡하게 ‘인디고서원이 좀 문제가 있다.’, ‘왜 꼭
여기가 해야 되냐?’”라는 식의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1년 짜리 계약직 직원이었던 000는 고민 끝에 내부위원 박OO, 권OO, 박O, 외부위원 정OO(문화관광연구원), 김OO(길위의 인문학 단체대표), 이OO(고려대 국문학과 교

2012.3.20.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780 (접속일자 - 2018.4.19.)
5) 000 녹취록, 2018.4.19.

수), 김OO(대안연구공동체 대표) 등 심사위원 7인 중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정OO 등 4인에게 문체부의 인디고서원 배제 의향을 제안서 평가에 앞서 설명하였고, 결국 이들 4인 중 일부가 푸른역사아카데미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인디고서원이 최종 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 담당 주무관은 별도로 문자를 보내와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OOO의 진술에 따라 당시 종합기술평가서(정성평가)를 검토한 결과, 정OO 위원과 박O 위원이 부여한 점수에 있어 인디고서원과 푸른역사아카데미의 차이가 각 10점으로 총 20점에 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⁶⁾

[그림-4] 2014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 심사 결과(정성평가)

2014 청년 인문학 캠프 행사 용역
종합기술평가서(정성평가)

번호	제안업체명	정	김	아	김	박	권	박	학계	정성 점수
1	인디고서원	54	60	60	62	64	50	48	286	59.2
2	GF솔루션	23	45	44	30	39	42	41	200	40
3	푸른역사아카데미	64	68	66	60	64	53	56	307	61.4
4	이펙토리	23	50	51	45	51	44	68	241	48.2
5	(주)굿잡투데이	24	50	47	43	51	51	52	243	48.6

※최고, 최저 점수는 제외함.

2014년 6월 29일

다음 [그림 5]는 정량평가 결과이다. 이미 2013년에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디고서원이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에서 푸른역사아카데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총점 차이는 2점에 불과하였다.

6) 「2014 청년인문학캠프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자료」, 한국국학진흥원, 2014.6.

[그림-5] 2014 '청년 인문학 캠프' 영역 심사 결과(정량평가)

2014 청년 인문 캠프 행사 영역
종합기술평가서(정량평가)

번호	제안업체명 (컨소시엄 업체명)	제작인력보유상태		최근3년 유사영역 수행실적		총점	비고
		기술 인력	점수	건수	점수		
1	인디고서원	7	6	9	10	16	
2	GF솔루션	6	6	7	10	16	
3	푸른역사아카데미	11	10	2	4	14	
4	이펙토리	7	6	7	10	16	
5	(주)굿잡투데이	12	10	49	10	20	

2014년 6월 7일

결국 인디고서원(57.2+16=73.2)은 푸른역사아카데미(61.4+14=75.4)에 2점 차이로 밀려 다음 [표 6]의 결과와 같이 최종 탈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6] 최종 평가결과 : 푸른역사아카데미 (1순위)

응찰업체	기술평가	가격평가	합계	우선협상순위
푸른역사아카데미	75.4	9.946	85.346	1
인디고서원	73.2	9.691	82.891	2
(주)굿잡투데이	68.6	10	78.6	3
이펙토리	64.2	9.734	73.934	4
지에프솔루션	56.0	9.693	65.693	5

나.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

1) 2013년 '청년 인문학 캠프' 당시 강사 교체 압력 관련

2013년 '청년 인문학 캠프' 당시 초청강사 고은을 복거일로 교체하라는 압력과 관련하여 참고인 000는 "당시 문체부 김OO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 와 '고은을 교체하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직접 인디고서원 측에 전화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⁷⁾ 인디고서원의 편집장 박OO은 “처음에 김OO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 와 ‘한OO 과장 지시로 초청강사 고은을 복거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한OO 과장이 직접 전화해서 ‘교체 안 하면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⁸⁾ 이에 대해 당시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이었던 김OO은 “당시 한OO 과장의 ‘개인적 취향’일 뿐,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다.⁹⁾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3년 인디고서원 측이 강사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14 ‘청년 인문학 캠프’에서 인디고서원 배제 관련

2014 ‘청년 인문학 캠프’와 관련하여 문체부 박OO 사무관과 OOO 주무관은 모두 “한국국학진흥원과 업무를 진행한 것은 맞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¹⁰⁾라고 하였다.

제4절 | 결론

이 사건은 인디고서원이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사건이다.

인디고서원은 한국국학진흥원의 2013년도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 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2014년의 동일 사업에 응찰하였지만 탈락하였다. 인디고서원은 2013년도 ‘청년 인문학 캠프’ 당시 문체부 담당 부서 과장이 초청강사를 고은에서 복거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 때문에 2014년 동일 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인디고서원은 이미 여러 블랙리스트 상에 ‘문재인 2030 영입대상’

7) OOO 녹취록, 2018.4.19.

8) 박OO 전화조사, 2017.11.15.

9) 김OO 전화조사, 2018.3.20.

10) OOO 전화조사, 2018.4.26. 박OO 전화조사, 2018.4.26.

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2.3.20.자『내일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재인이 인디고서원 대표 허아람을 영입하려 했다고 하며, 이렇게 야당이 인디고서원 대표를 영입하고자 했던 행동이 국정원이 인디고서원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문체부에 통보한 사유로 추정된다.

한편 2014년도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업담당자였던 000는 문체부 지역민족문화과 관계자들이 ‘인디고서원을 배제시키라’는 취지를 전달하자, 이에 압력을 느끼고¹¹⁾ 위 사업 제안서 평가에 앞서 내·외부 심사위원 일부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심사위원 일부가 인디고서원에게 불리한 평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인디고서원은 위 용역 사업에서 탈락하였는데, 한국국학진흥원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내·외부 위원 일부가 인디고서원에게 불리한 점수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당시 문체부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인디고서원이 2013년도 ‘청년 인문학 캠프’ 진행과 관련하여 초청강사를 고은에서 복거일로 교체하라는 문체부 지역민족문화과 관계자의 압력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2014년 동일 사업의 탈락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 문체부 관계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인디고서원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관리되었던 점,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인문학 캠프’ 용역 사업 담당자 000의 증언 등에 의해 문체부가 인디고서원을 위 사업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인디고

11) 이와 관련하여 박00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18. 11. 4.). 본인은 배제 취지를 전달한 바 없음. 단순히 주관기관(국학진흥원) 직원의 기억으로 추측한 것임. 주관기관(한국국학진흥원)은 2014년에도 2013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였음. 다만, 용역사업의 기본적 행정 절차의 원칙은 공모이며, 다른 자생적 인문 기관(푸른역사아카데미, 수유너머, 무등지성 등)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공모로 진행한 것임. 또한, 심사위원의 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위원의 종합기술평가서 결과를 보더라도, 참고인이 진술한 심사위원 점수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거의 모든 위원이 최종 선정된 기관(푸른역사아카데미)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평가결과 표에서 가격평가도 푸른역사아카데미가 더 높았음. 심사위원 평가의 최종 점수 산정시 각 기관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었으며, 이에 더해, 만약 인디고서원의 최저점 2인과 푸른역사아카데미의 최고점 2인을 제외하고 점수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푸른역사아카데미가 선정되는 결과가 나오는 바, 인디고서원의 탈락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한 사업 역량 평가에 대한 공정한 심사의 결과였고, 문체부는 동 사업에서 인디고서원의 배제를 지시한 기억도 전혀 없음. 인디고서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속했다는 사실과 주관기관(국학진흥원) 직원의 기억과 추측에 따른 진술만으로 ‘배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서술하는 것은 부적절함.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인디고서원의 탈락 이유가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상당’하다는 서술도 논리의 비약이 있음.

서원이 위 용역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문체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¹²⁾

12) 이와 관련하여 김OO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18. 11. 14.). 인디고서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속했다는 사실과 주관기관(국학진흥원) 직원의 기억과 추측에 따른 진술에만 의존한 결론을 사실이 확인 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부적절함. 용역사업 추진 절차상 원칙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였고, 외부 심사위원(전문가)의 심사에 따라 실행업체를 선정된 것으로, 인디고서원의 탈락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한 사업 역량 평가에 대한 공정한 심사의 결과였고, 문체부는 동 사업에서 인디고서원의 배제를 지시한 기억도 전혀 없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



61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문14[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조사 취지

신청인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6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서 선정 제외된 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이창숙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배제 대상자였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진상규명하지 못하였다. 2016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서도 이창숙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상규명하지 못하였다.

붙임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문14[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
[신청인] 이창숙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은 세월호 참사관련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난 뒤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였고, 2016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도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지원 탈락이 블랙리스트에 따라서 배제된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의거, 2017년 11월 17일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6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서 선정 제외된 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것인지 밝히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3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2014-2017 예술위 문학 관련 사업 지원자 및 선정자 자료	예술위	2017. 11. 10.	
2	제4차 예술지원 소위원회 회의자료	예술위	2017. 11. 10.	
3	-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추진현황			
4	예술위 제164차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서면) 공문	예술위	2017. 11. 10.	
5	예술위 제164차 위원회 회의자료(서면)	예술위	2017. 11. 10.	
6	-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과			
7	예술위 제164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 공문	예술위	2017. 11. 10.	
8	예술위 제161차 위원회 회의 속기록	예술위	2017. 11. 10.	
9	문체부 예술정책과,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 정」 및 「리스트-'16.9.27현재」	오OO	2017. 8.	
10	2015. 7. 6.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리스트			
11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2	김기춘 외 3인 제1심 공판기록 중 참고인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공판기록
13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2015. 3. 9.)	오OO	2017. 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총 5인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정OO	예술위 창작지원부 차장	진술조서(2017. 10. 13.)
2	장OO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진술조서(2017. 12. 12.)
3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진술조서(2018. 2. 1.)
4	오OO	예술위 위원	진술조서(2017. 12. 12.)
5	이창숙	신청인	진술조서(2018. 3. 16.)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나.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 (1) 2014. 10.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문학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

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2)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경과

구분	일정	심의대상	심의기준	심의위 구성	심의위원
1차 심의 (장르별)	1. 21. ~22.	959건	미발표원고 (100%) (무기명심사)	장르별 심의위원회	(시) 이00, 김00, 조00, 정00, 문00 (소설) 윤00, 김00, 강00, 이00, 윤00 (시조) 홍00, 이00 (동시) 장00, 이00 (동화) 유00, 김00 (희곡) 조00, 고00 (평론) 김00, 김00 (수필) 고00, 류00
2차 심의 (장르별)	3. 31. ~4. 1.	198건	작가의 잠재성(30%), 집필계획(30%), 미발표원고(40%)	외부 전문가 + 문학 책임심의위원	(시, 시조) 유00, 김00, 유00 (소설) 이00, 권00, 박00 (동시, 동화) 최00, 선00 (수필, 희곡, 평론) 하00, 정00, 이00
3차 심의 (장르 통합)	6. 26.	102건	장르 통합 평가	문학 책임심의위원	권00, 김00, 유00, 이00, 하00

(3) 최종선정(안)

구분	시	소설	시조	동시	동화	수필	희곡	평론	계
신청건수	383	197	58	86	123	71	24	17	959
1단계 결정건수	82	42	12	18	26	8	7	3	198
2단계 결정건수	41	24	6	9	14	4	3	1	102
- 지원후보	40	22	6	7	12	4	2	1	94
- 예비사업	1	2	-	2	2	-	1	-	8
3단계 결정건수	41	24	6	9	14	4	3	1	102
- 지원후보	40	22	6	7	12	4	2	1	94
- 예비사업	1	2	-	2	2	-	1	-	8
최종지원대상	24	14	6	7	12	4	2	1	70

2. 이창숙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 인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오OO 관리,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은 문체부 오OO 서기관이 관리한 것으로,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이라는 기재는 사업이 워낙 방대하여 문학 분야는 총 관리해야할 리스트가 118명 정도라는 통계를 내서 정리한 내용으로, 2015 예술위 공모사업 관련 문학분야에서는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② 문학창작공간지원, ③ 우수문예지발간 등 이 사업들의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총 118명을 배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¹⁾ 118명 중 이창숙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사업명	신청 건수	1차 검토	2차 추가	비고
14. 아르코문학 창작기금 14년(신청/진행) 99941 32명	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4명 장영언(75), 공창규(60), 김규상(50), 김도연(72), 김미영(75), 김미애(72), 김성경(59), 김영희(64), 김윤길(57), 김은경(65), 김정희(58), 김우경(68), 김태형(71), 김철남(81), 김현주(61), 박남희(56), 박혜선(69), 박혜숙(58), 박홍식(43), 방원희(64), 배봉기(57), 백영희(52), 서규정(49), 시정란(67), 서유미(75), 신창숙(56), 손명길(67), 송영희(57), 송은일(64), 송호영(62), 신덕물(54), 신동숙(77), 신현림(61), 안지숙(81), 안학수(54), 오여정(85), 윤문수(60), 윤원일(51), 윤어주(68), 윤혜숙(62), 이영희(75), 이니영(80), 이봉우(65), 이희진(47), 이이재(64), 이병순(64), 이상권(64), 이상권(64), 이자민(64), 이자민(64), 이선(82), 이상희(82), 이영희(61), 이지남(58), 이창숙(62), 이광정(66), 임원(70), 임수영(62), 임수영(76), 장태웅(65), 전병관(61),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추가 : 총 17명 -2차 추가검토자 : 강영규 -1차 추가명 심사결과 118명중 16명(*15.1.22) 장영언, 김성상, 김은경, 김윤경, 김원남, 박남희, 백혜선, 백영희, 서유미, 신동숙, 이상권, 이성희, 이경희, 이지남, 조창희, 황은희 ○ 3차 추가 : 총 14명 -3차심사결과 6명(*15.4.1) 장영언, 김은경, 박남희, 이상권, 이성희, 이윤택 -추가자 8명(*15.4.23) 박익근, 권석순, 정광모, 김재철, 하신희, 김병관, 박진실, 이정희 ○ 4차 확인(15.6.23) -이윤택 제외된 13명중 1명(박석순(필태당형)) ○ 필무리스트 추가(*15.7.6) 	

(2) 2015. 7. 6. 받음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리스트

(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2015. 7. 6. 받음’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명 단 문건은 이OO 과장으로부터 정무수석실에서 온 것으로 들어 알고 있으며, 해당

1) 2017고합102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문건은 아르고문학창작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시 6월쯤 청와대에서 아르고 문학창작기금 198명 통과자 명단을 다시 보내라고 해서 송부했고 이렇게 보내고 나니 '이게 제외할 명단이다'라고 출력번호로 이OO 과장이 받아와 오OO이 수령한 날짜가 7. 6.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 (나) 해당 명단은 참고인 이OO가 청와대에 가서 김OO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건이다.³⁾ 이 문건 연번 3번에서 신청인 이창숙이 확인되는데 2012. 12. 15.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이 '참고사항'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8. 2. 6 발송

연번	사업명	지원사업 사업명	신청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금액	분야	참고사항
1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지우개 > 발간	김영숙	김영숙	10,000,000	문예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 보조창작기금	최희준	최희준	10,000,000	문예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이창숙	이창숙	10,000,000	문예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4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문예사업 <어린이책 > 발간	박서윤	박서윤	10,000,000	문예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유치원 교구	박영	박영	10,000,000	문예	유치원 교구 제작을 위한 100여 명의 어린이 책 제작 지원(2012.12.15)
6	아르고문학창작기금	< 지우개 친구 > 발간 (2개월)	유영진	유영진	10,000,000	문예	문화예술계 531인 연수(2012.06.15)
7	아르고문학창작기금	김미희 동시집 <글을 달간 문예>	김미희	김미희	10,000,000	문예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8	아르고문학창작기금	글자	조민숙	조민숙	10,000,000	문예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9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최영선	최영선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0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박철선	박철선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1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문학창작실 발간 지원	박영우	박영우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2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니랑 동화 창작실	이나영	이나영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3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동화집 (2월 2회 3월 1회)	김미애	김미애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4	아르고문학창작기금	2015년 아르고 문학 창작 기금	김리리	김리리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인사말은 영웅송> 발간	전경남	전경남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6	아르고문학창작기금	행복공동체 나눔노래의 디딤돌사투르노	김효미	김효미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7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이미애	이미애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8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동화 작품집	백승남	백승남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19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최은정	최은정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0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김유정	김유정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1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초등책 소년영웅	김영민	김영민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2	아르고문학창작기금	2015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	김리리	김리리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3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올드타임 뉴스리 2	임지현	임지현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4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수업 안 읽는 > 발간	이윤준	이윤준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 문학창작 기금	김연진	김연진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6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정윤수	정윤수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7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창씨명 <이 나래> 발간	신사순	신사순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8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이성금	이성금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29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이복희	이복희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0	아르고문학창작기금	그림책 <물방울 우렁이>	김정연	김정연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1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남해 세계 작곡발간	김재호	김재호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2	아르고문학창작기금	'개울 너대인 서간' 발간	박정남	박정남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3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 문학창작기금	김경우	김경우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4	아르고문학창작기금	한문서 주비율 가진 소년	김준원	김준원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장편동화 <유구는 로켓 타고> (가제)	신정연	신정연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6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봉기운	봉기운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7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문예창작기금 지원] 발간 사업	이영숙	이영숙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8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로랑의 노래> 발간(가제)	이성희	이성희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 30기 발간
39	아르고문학창작기금	2015.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장정복	장정복	10,000,000	문화, 일반	어린이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지지 선언(2012.12.15)

(3) 이OO 2017. 5. 15.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이OO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으로,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공모신청내역, 각 단계별 심사결과 내역을 송부하였고, 송부 후 배제명단을 하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쪽). 이OO과 장OO은 오OO 사무관이 불러주는 지원배제 대상을 받아적었고, 이를 이OO 예술위 사무처장과 당시 권영빈 위원장에게 구제

- 2)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 3)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2. 1.자 진술, 진술조서 15-16쪽).

적인 명단을 보고한 것은 아니나 문체부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보고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4쪽)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해당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배제 지시 건이 너무 많아서 문체부에 이렇게까지 배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대한 배제명수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문체부에 다시 보고하고 다시 배제지시를 받는 과정이 반복되어 3~5개월 정도 최종 발표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6쪽).

(4) 오OO 2017. 4.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은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에 지시가 내려오면 이 지시를 주로 국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쪽) 2014. 11.경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자 전체 리스트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보고하였고, (16쪽) 청와대에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문예지금 지원사업 정기공모 신청이 만료되는 시점에 명단을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16쪽) 2015년 해당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배제지시를 문체부 김OO 국장을 통해 전달을 받았고, (16-17쪽) 위 배제지시와 관련하여 주로 유선상으로 예술위 직원 이OO, 장OO, 류OO 등에게 전달하였고, 직접 만나서 대책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9쪽).

(5)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2015. 3. 9.자)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2015. 3. 9.자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은 상단에 수기로 ‘15. 3. 12. 14:50’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이는 김OO 예술국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한 일시를 기재한 것이며, 문건상 ‘1차 검토’란과 ‘2차 추가’란, 현재 상태 ‘1차 심사결과 통과자 198명에 대한 의뢰 중’이라는 기재는 ‘198명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건이다.⁴⁾ 해당 문건의 붙임자료에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배제대상자 리스트가 2차 검토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차 검토 대상자 17명 중에 이창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창숙 작가의 경우 1차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오OO 증인신문 녹취서 21-22쪽.

'15. 3. 17 / 14:50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15.3.9(월)

심의보류사업 현황

분야	지원심의 현황(문제사업 건수)
문학(9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창작기금지원 (71건) → 16건으로 감소 ○ 우수문예지원 (11건)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8건) ○ 민간국제교류지원(5건)

붙임 문학분야

사업명	신청건수	1차 검토	2차 추가	현재상태
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4년(신청/신청):99/941	959	○ 총 71명(자체발굴)동행이인 등 포함 강장현(75), 공광규(60), 김규성(50), 김도연(72), 김미영(75), 김미애(72), 김성강(59), 김영희(64), 김용걸(57), 김은경(65), 김경희(58), 김종강(68), 김태형(71), 김필남(81), 김현주(61), 박남희(56), 박혜신(69), 박혜숙(58), 박홍식(43), 방현희(64), 배봉기(57), 백정희(52), 서규강(49), 서성민(67), 서유미(75), 상향숙(58), 손병길(67), 송영희(57), 송은익(64), 송호필(62), 신덕왕(56), 신동욱(77), 신현림(61), 안지숙(61), 안희수(54), 오미경(65), 윤동수(60), 윤원일(51), 윤이주(68), 윤애숙(62), 이정희(75), 이나영(80), 이동재(65), 이보신(67), 이미애(64), 이형선(64), 이상권(64,수필), 이상권(64,시), 이선(62), 이상목(62),이정희(61), 이지담(58), 이창숙(65), 이철경(66), 임분(70), 임수영(62), 임수영(75), 장대성(65), 권영관(61), 정새론(55), 정익진(57), 조성국(63), 조용미(62), 조세도(57), 조향미(70), 차노희(74), 최종현(54), 최명선(76), 최영철(58), 최영철(64), 최창근(70), 한창훈(63), 황신영(63), 황은덕(66)	○ 총 17명 - 2차 추가검토자 : 강정규 - 1차 무기명 심사결과 16명(자체발굴) 강장현, 김성강, 김은경, 김종강, 김필남, 박남희, 박혜신, 백정희, 서유미, 신동욱, 이상권, 이상목, 이정희, 이지담, 조향미, 황은덕	- 1차 심사결과 통과자 198명에 대한 의외 증
② 우수문예지원	99	○ 총 5명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장OO의 진술(2017. 12. 22.자 진술조서, 5쪽)

참고인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장OO5)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 11. 11.경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공모가 마감되자, 문체부에 시, 소설 등 세부 장르별 지원신청 현황을 기재한 통계보고를 하였는데, 문체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예년과는 달리 959명의 신청자 전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작품분석을 하여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예술위는 이 전례 없는 지시에 따라 신청자들의 생년월일, 작품의 내용까지 분석하여 다시 문체부에 보고하였는데, 보고 후 약 76건 정도의 배제 명단에 예술위에 내려왔다고 진

5) 2013. 7. ~ 2015. 8.까지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술하였다. 한편 장OO 창작지원부장은 이 사업 1차 심사의 경우 무기명 심사였기 때문에 1차 심사에서는 배제 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이러한 상황을 문체부 오 OO 사무관에게 설명하였고 배제 리스트 적용 없이 1차 심의를 진행하였고, 1차 심의에서 확정된 명단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다시 16건의 배제 명단이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정OO의 진술(2017. 10. 13.자 진술조서, 5쪽)

참고인 정OO 예술위 문학지원부 차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당시 장OO과 함께 일하였는데,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진행 당시 문체부에서 공모 신청자 명단 등을 요구하였으며, 문체부에서 우선상으로 명단의 번호나 실명으로 배제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이OO의 진술(2018. 2. 1.자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이OO는 2018. 2. 1. 위원회 조사에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경우 블랙리스트가 극심하게 실행되었던 경우로 막판에는 사업 포기 각오도 하였으며, 결국 70명 정도만 선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청와대와 지난한 협의를 거친 결과였다고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혹은 쟁점

가. 이창숙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

신청인 이창숙이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2015-1 문학분야 [2015 예술위 공모사업] - 118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 7.

6. 받음 가필 김영란 등 115명 리스트’ 리스트에서도 이창숙이 확인되는 점을 통하여 이창숙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대상자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창숙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예술위 창작지원부장장○○이, 1차 심사의 경우 무기명 심사였기 때문에 배제 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이러한 상황을 문체부 오○○ 사무관에게 설명하였고 배제 리스트 적용 없이 1차 심의를 진행하였다는 진술만이 있어서, 이창숙은 1차 무기명 심사 결과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창숙이 1차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이창숙이 2016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 여부

이창숙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2016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문서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6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출1[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운영과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 실적 및 결산, 기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는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이 이사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연락을 통해 과거 활동 경력을 비롯하여 출판진흥원의 운영과는 상관없는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임원 선임 과정에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이 제기 되어,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를 진행키로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청와대에서 주도한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

출판진흥원은 임원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는 문체부로부터 전달받은 단체 추천 이사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통보, 국정원은 신원 검증을 진행한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출판진흥원 임원 대상자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이 명단에 따라 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는 임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판진흥원 임원 대상자들에 대해 국정원, 청와대 등의 정부 기관이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며, 자녀문제, 결혼 여부, 개인적인 소송 문제, 과거 학생운동 이력, 출판인회의 회장과의 관계, 정치인 지지 여부 등 출판진흥원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인사 검증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결국 공공기관 임원 선임시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를 탈락시키는 자료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 소홀하게 관리된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출판진흥원을 지도, 감독하는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과장은 문체부 국장 교체, 출판진흥원 이사의 권한 미비, 청와대의 입장과 출판계의 반발 등을 고려 등을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을 지연, 누락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임기 만료 이전 임원 선임 완료, 연 2회 정기이사회 개최, 차기년도 예산안 의결이 다음해로 미뤄지는 등 출판진흥원 정관 위배의 결과를 가져와 업무적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는 출판진흥원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인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업무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출판진흥원장 선임 과정 의혹

출판진흥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문체부가 임기 1년 연장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으나, MB쪽 인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였고, 이로 인해 진흥원장 후임 선정 과정이 6개월 지연되는 혼선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6년 출판진흥원장 선임 절차에서 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성이 서류 심사에서 2위를 하였음에도, 면접에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과 간행물윤리위원 등이 최고점을

주어 면접 1위로 추천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이기성이 사전 내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출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사건

제1절 | 사건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운영과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기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는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이 이사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연락을 통해 과거 활동 경력을 비롯하여 출판진흥원의 운영과는 상관없는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임원 선임 과정에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이 제기 되어,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를 진행기로 하였다.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가. 직권조사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3호(직권조사)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7년 9월 22 제8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 (1)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정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선정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의 실상을 밝힌다.
- (2)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에 대한 절차, 자격요건, 심사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3) 출판진흥원 이사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도 살펴,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문서, 메일 등 모두 17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3.20.	
2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6140호[시행2015.3.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3.20.	
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341호[시행2015.4.1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3.20.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출판진흥원	2018.3.20.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지정 2014. 1. 24.	기획재정부	2018.3.20.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지정 2018. 1. 31.	기획재정부	2018.3.20.	
7	'자료제출' [출판인쇄독서진흥과-543] (2017. 10. 23.)	문체부	2017.10.23.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8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감보-1645] (2017.11.22.)	국가정보원	2017.11.22.	
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임명 보고’ [출판인쇄산업과-513] (2012. 7. 17.)	문체부	2017.11.23	
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임명’ [출판인쇄산업과-2162] (2013. 12. 11.)	문체부	2017.10.23.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임명’ [출판인쇄산업과-1617] (2014. 9. 2.)	문체부	2017.10.23.	
12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임명’ [출판인쇄산업과-2940] (2016. 12. 9.)	문체부	2017.10.23.	
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계획’ (2015. 7. 17)	문체부	2017.10.23.	
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통보’ [출판인쇄산업과-480] (2016. 2. 24.)	문체부	2017.10.23.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출판인쇄산업과-261](2016.1.29)	문체부	2017.10.23.	
16	사유서 - 진술서 제출 거부 (2016. 12. 19.)	이기성	2017.12.22.	
17	출판진흥원 2014 ~ 2016 이사회 의사록, 회의록	출판진흥원	2017.09.28.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7인에 대하여 18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조OO	출판진흥원 이사 후보자	면담보고 (2017. 9. 12.)
2	조OO	출판진흥원 이사 후보자	면담보고 (2017. 9. 13.)
3	고OO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	진술조서 (2017. 9. 14.)
4	장OO	대한출판문화협회 경영본부장	진술조서 (2017. 9. 21.)
5	박OO	출판진흥원 이사 후보자	진술조서 (2017. 9. 21.)
6	김OO	출판진흥원 이사	진술조서 (2017. 9. 26.)
7	유OO	출판진흥원 이사	진술조서 (2017. 9. 27.)
8	윤OO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진술조서 (2017. 9. 28.)
9	문OO	출판진흥원 운영지원팀장	진술조서 (2017. 10. 24.)
10	이OO	출판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 (2017. 10. 25.)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1	배OO	출판진흥원 전략기획실장	진술조서 (2017. 10. 26.)
12	박OO	출판진흥원 전 전략기획실장	진술조서 (2017. 10. 26.)
13	이OO	전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7. 11. 1.)
14	김OO	문체부 운영지원과 사무관	면담보고 (2017. 11. 2.)
15	박OO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면담보고 (2017. 11. 2.)
16	나OO	문체부 운영지원과 사무관	진술서 (2017. 11. 24.)
17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1회 진술서 (2017. 12. 18.)
18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2회 진술조서 (2017. 12. 21.)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¹⁾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²⁾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7월 27일 개원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통계 작성,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배제되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및 이사회

출판진흥원의 정관에는 원장 1인, 이사 9인 이내(원장 1인 포함), 감사 1인의 임원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으며, 원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 임기 만료에도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될 경우 후임 원장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가 매년 2회 개최되며,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결산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2.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

가. 임원 선임에 대한 법률 및 관련 근거

(1) 기타공공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출판진흥원

기획재정부에서 2014. 1. 24.과 2018. 1. 31.에 배포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판진흥원은 문체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타 공공기관의 임원 임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유형별 공운법 적용내용’에도 기타 공공기관의 임원 관련 사항은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림-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 공공기관 유형별 공운법 적용내용

참고1 공공기관 유형별 공운법 적용내용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이사회구성	15인 이내	15인 이내	15인 이내	x
이사회 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자산 2조원 이상: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x
감사위원회	o	자산 2조원 이상 기관만 적용	x	x
선임비상임이사	o	o	o	x
임기	기관장: 3년, 이사·감사: 2년			x
연임	1년 단위			x
임명	기관장	(대규모: 총수입 1천억 ↑, 직원정원 500명 ↑) 임원추천위원회 → 공운위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대규모: 총수입 1천억 ↑, 직원정원 500명 ↑ * 기금형은 자산 1조원 ↑, 직원정원 500 ↑)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x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주무장관 임명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임명	
	상임이사	기관장 임명	기관장 임명	x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임명	(대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임명 (소규모) 주무장관 임명	x
감사	(대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x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임명			

(2) 임원 선임 관련 출판진흥원 정관

출판진흥원 정관에는 임원 선임 관련하여 제2장 임원, 제3장 이사회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임원)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원장 1인

이사 9인 이내(원장 1인 포함)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원장과 이사,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원장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될 경우 후임 원장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³⁾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미성년자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출판진흥원 임원 임명 절차에 대한 관련자 진술

(1) 참고인 이OO 2017. 11. 1. 진술조사

이OO는 2013. 12. 13. ~ 2016. 1.경까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출판진흥원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3)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판진흥원 임원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관이 직권으로 임명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률과 출판진흥원 정관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여 준 정부기관 임원 임명 규정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만들었으며, 출판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단체인 대한출판협회(이하 출협), 한국출판인회의(이하 출판인회의)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 풀을 구성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이후, 운영지원과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명단을 전달한다고 진술하였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신원조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 임명 절차를 거친다고 진술하였다.

운영지원과의 신원조회 관련하여, 인사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잘 모르며, 지방경찰청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절차는 장관 직권사항이라 공문처리 하지 않았고, 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답변은 구두로 전달받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은 관례였으며, 김OO 행정관에게 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김OO 2017. 11. 2. 면담 보고

김OO은 2016. 1. 1. ~ 2016. 10. 까지 출판인쇄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이OO 사무관 후임으로 출판진흥원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관련하여, 일정, 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한 이후 출협, 출판인회의, 인쇄협회, 서점연합회 등의 유관단체들에게 추천을 받았으며, 2~3배수의 명단을 취합,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과 운영지원과에 명단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와대에는 관례적으로 보고하는 차원에서 알린 것이며, 인사 검증은 운영지원과에서 진행한 업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고OO 2017. 9. 14. 진술조서

고OO은 출판인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한 자이다.

문체부 출판인쇄과로부터 출판인회의에서 추천할 이사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받아서 2014. 7월경 홍OO(OOO 대표), 김OO(OOOOO 대표), 조OO(OOO 대표)를 추천하였

으나 신원조회에서 탈락하여 이후 신OO(OOOO 대표)과 김OO(OOOOO 대표)를 추천하여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6. 7월 경 송OO(OOOOO 대표), 김OO(OOOOO 대표), 김OO(OOOOO 대표) 등을 추천하였으며, 이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여 2016년 9월 경 문체부의 추가 요청에 따라 조OO(OOO 대표), 박OO(OOO 대표) 등을 추천하였다고 기록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10일, 문체부 사무관 김OO이 송OO과 김OO를 이사 임용 후보자로 선정하여, 신원조회와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을 출판인회의 담당자 김OO에게 보낸 메일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는 2016년 8월 출판진흥원 이사 대상자로 OOOOO의 김OO 대표와 OOOOO의 송OO 대표를 이사 대상자로 결정하여 신원조회를 진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참고인 박OO 2017. 10. 26. 진술조서, 참고인 배OO 2017. 10. 26. 진술조서,
참고인 이OO 2017. 10. 25. 진술조서, 참고인 문OO 2017. 10. 24. 진술조서**

박OO은 2016년 중순까지 출판진흥원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자로, 출판진흥원의 이사회 운영 및 보좌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며, 배OO은 위 박OO의 후임으로 2016년 7월부터 출판진흥원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이OO는 2012.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략기획실 운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문OO는 위 이OO의 후임으로 2016년 7월부터 전략기획실 운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출판진흥원에서 임원 선임 및 이사회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출판진흥원에서는 임원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원 선임 절차도 잘 모르며, 임원 선임이 통보되면 등기 등의 후속사업과 이사회 운영 등의 역할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사항 중 임원 선임 부분이 적시되어 있으나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으며, 문체부 장관이 임면권자로 되어 있어 출판진흥원은 별다른 역할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000 2017. 11. 16. 진술조서

000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주무관으로 출판계의 해외진출 업무,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한국문학번역원 이사 선임 관련하여, 1, 2 순위 후보가 올라오면 경찰청에 신원조회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신원조회는 담당자인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정부기관의 개입 정황

가. 출판진흥원 임원 대상자에 대한 신원 조회

(1)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문체부에서 회신한 공문 “자료제출”[출판인쇄독서진흥과-543](2017. 10. 23.)의 첨부 문서에 ‘문서등록대장에 지원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서 직접 신원 조회를 의뢰한 문서는 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에서 회신한 공문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감보-1645](2017. 11. 22.)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실로부터 유OO 및 박OO, 조OO 등에 대한 ‘공직후보자 자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회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정부기관의 개입 법률⁴⁾ 및 관련 근거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61404호[시행2015.3.11.]의 ‘제3장 신원조사’ 중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제33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 조사를 한다.
-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제34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 훈령 제341호 [시행 2015. 4. 13.]의 ‘제3장 신원조사’ 중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7.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 제58조(신원조사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업 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4)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시기인 2016년에서 가장 가까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인용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음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제59조(신원조사결과에의 처리) ①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원조사 회보서의 양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 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3) 신원조사 회보서

국정원에서 진행한 신원조사의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를 통해 요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조사 회보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23호, 별지 24호 등 2종류이다. ‘신원조사 회보서’ 23호에는 ‘준법성’, ‘생활상태’, ‘대인관계’, ‘특이사항’ 등이, 24호에는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성’, ‘성품 및 생활상태’, ‘참고사항’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다. 관련자 진술

(1) 참고인 나OO 2017. 11. 24. 진술서

나OO은 2014. 11. 17. ~ 2016. 10. 11. 문체부 운영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해, 해당과에서 명단을 전달 받은 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서류를 전달하여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관련 근거와 규정이 아닌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절차였으며, 담당

행정관 신OO 메일로 자료를 보냈으며, 유선으로 가, 부의 결과만을 통보받았을 뿐, 세부적인 신원조회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고,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인사검증 절차의 세부적인 진행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출판인쇄과 출판진흥원 지도, 감독 담당자들의 진술

출판진흥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이OO 사무관, 김OO 사무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이사 선임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관례적으로 보고하는 차원에서 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원조회 내용도 모르고 결과만 통보받았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3) 참고인 김OO 2018. 1. 3. 진술조서

김OO는 2014. 4. 15.부터 청와대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주요 업무가 아니라 기억나지 않으며,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조OO 2017. 9. 13. 진술녹음

조OO은 출판사 OOO 대표로, 출판진흥원 이사 후보로 출판인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의 정부기관 개입에 대해, 2016년 8, 9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이사 지원 서류 제출 이후 국정원 직원이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전화가 와서,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조OO은 전 직원과 소송 문제가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도서에 대한 문의, 출판인회의의 활동, 결혼 여부 등도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경 청와대에서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의 절차라며 전화를 걸어와, 출판인회의에서 맡고 있는 직함을 문제 삼았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박OO 2017. 9. 21. 진술조서

박OO은 출판사 OOO 대표로, 출판진흥원 이사 후보로 출판인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2016년 9월 경, 출판인회의의 추천으로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면접이라고 생각되는 전화를 받았으며, 청와대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 진흥원 이사 인사검증입니다 라는 멘트를 한 이후, 일반적인 인적사항으로 출신학교, 이력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며, 자녀들이 몇 학년인지, 어느학교에 다니는지 등도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6) 참고인 김OO 2017. 9.26. 진술조서

김OO은 출판사 OOOOO 대표로, 출판진흥원 이사 후보로 출협의 추천을 받은 자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출판진흥원 이사로 활동한 자이다.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의 정부기관의 개입에 대해, 청와대로 기억하는 곳에서 범죄 사실, 군필 여부, 종교 등과 신원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온 적이 있으며, 출판진흥원 이사가 청와대 인사팀에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의아했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유OO 2017. 9. 27. 진술조서

유OO은 출판사 OOOO 대표로, 출판진흥원 이사 후보로 출협의 추천을 받아, 2016년 12월부터 출판진흥원 이사로 활동한 자이다.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의 정부기관의 개입에 대해, 국정원에서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을 위해 신원조회를 한다며, 전화연락이 와 직접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국정원 직원은 임OO이며, 연락처는 010-****-****이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젊은 편으로 기억하고, 2016. 8. 22. 만났다는 내용이 다이어리에 적혀있으며, 국정원 직원이 출판계에 막 부임하여 인사할 겸, 이사 선임건으로 이력서 제출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국정원 직원 면담 3개월 정도 후 2016. 12. 22., 청와대에서 출판진흥원 이사 검증이라며 전화가 왔으며, 10년도 지난 개인적인 벌금 문제와 출판인회의 윤OO 회장과 친함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8) 참고인 조OO 2017. 9. 12. 녹음진술

조OO은 000 출판사 대표로, 2014년 경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 출판인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정부기관 개입에 대해, 마포경찰서 정보과 담당이 전화를 하여, 출판진흥원 이사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한다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국정원에서 직원 찾아가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과거 학생 운동을 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김상곤 교육감 지지선언, 문재인 후보 등 정치인 지지를 했었는지도 질문을 했었으며,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에서 너무 민감하다, 내가 사인을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잘릴꺼다, 쉽지 않을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출판인회의에는 왜 이런 사람들(운동권)밖에 없냐는 말도 했었다'고 기억하였다.

(9) 참고인 김OO 2017. 12. 21. 진술조서

김OO은 2014. 10. 15. ~ 2016. 9. 27. 문체부 출판인쇄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정부기관 개입에 대해, BH에서 이사 선임 절차와 출판단체 추천 명단을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8월경 송OO(00000 대표), 김OO(00000 대표), 김OO(00000 대표)과 같은 해 9월 경 조OO(000 대표)이 이사에서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도 BH에서 의견이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4. 형식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출판진흥원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연, 누락되는 임원 선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임명 보고[출판인쇄산업과-513](2012. 7. 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임명[출판인쇄산업과-2162](2013. 12.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임명[출판인쇄산업과-1617](2014. 9. 2.)',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 임명[출판인쇄산업과-2940](2016. 12. 9.)의 문서를 종합해보면, 문체부는 2012. 7. 27. 이재호를 원장으로, 2012. 7. 27 ~ 2014. 7. 26.(2년) 임기의 이사로 이OO, 정OO, 송OO, 홍OO기, 이OO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2013. 12. 11. ~

2015. 12. 10.(2년) 임기의 이사로 김OO과 김OO을 임명하였다. 그 이후 임기 만료된 사람들에 대한 총원으로 2014. 9. 1. ~ 2016. 8. 31.(2년) 임기의 이사로 김OO, 신OO, 양OO, 서OO, 오OO을 임명하였으며, 2016. 12. 19. ~ 2018. 12. 18.(2년) 임기의 이사로 박OO, 박OO, 양OO, 유OO, 유OO을 임명하였다.

일자별로 출판진흥원 이사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 총원 9명으로 선임, 운영된 시기는 출판진흥원이 출범한 2012. 7월부터 2016년말까지 기간(56개월) 동안 12개월 남짓에 지나지 않으며, 2016년 9월부터 4개월간은 진흥원장과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문체부 미디어국장 2명만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판진흥원 정관의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전에 임원 선임이 진행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기간별 출판진흥원 이사 인원 및 명단

기간	인원	이사 명단
2012. 7. 27. ~ 2013. 12. 10.	7명	이OO, 정OO, 송OO, 홍OO, 이OO, 진흥원장, 미디어정책국장(당연직)
2013. 12. 11. ~ 2014. 7. 26.	9명	이OO, 정OO, 송OO, 홍OO, 이OO, 김OO, 김OO, 진흥원장, 미디어정책국장(당연직)
2014. 7. 27. ~ 2014. 8. 31.	4명	김OO, 김OO, 진흥원장, 미디어정책국장(당연직)
2014. 9. 1. ~ 2015. 12. 9.	9명	김OO, 신OO, 양OO, 서OO, 오OO, 김OO, 김OO, 진흥원장, 미디어정책국장(당연직)
2015. 12. 10. ~ 2016. 8. 31.	7명	김OO, 신OO, 양OO, 서OO, 오OO, 진흥원장, 미디어정책국장(당연직)
2016. 9. 1. ~ 2016. 12. 18.	2명	진흥원장, 미디어정책국장(당연직)

덧붙여, 출판진흥원은 임원 구성에 감사 1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사는 1. 진흥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4. 이사회에의 출석 및 발언, 5. 진흥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7. 진흥원의 이익과 원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대표하는 일 등의 직무 권한을 두고 있다.

5) 출판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6) 출판진흥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표-4] 출판진흥원 감사 이름 및 활동 기간

기간	이름	비고
2012. 7. 27. ~ 2014. 7. 26.	한OO	
2014. 7. 27. ~ 2014. 8. 31.	없음	
2014. 9. 1. ~ 2016. 8. 31.	오OO	
2016. 9. 1. ~ 2016. 12. 18.	없음	
2016. 12. 19. ~ 2018. 12. 18.	승OO	

위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4. 7. 27. ~ 2014. 8. 31. 1달여 기간과 2016. 9. 1. ~ 2016. 12. 18. 4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출판진흥원에서는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나.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출판진흥원 이사회

출판진흥원에서 2014년부터 진행된 이사회 의사록,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2014년도에는 임시 이사회 2회, 정기 이사회 2회, 2015년도에는 임시 이사회 2회, 정기 이사회 2회, 2016년도에는 임시 이사회 1회, 정기 이사회 1회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 9월 기준으로 2017년에는 임시 이사회 1회, 정기 이사회가 1회 진행되었다. 출판진흥원 정관에는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해야 한다’⁷⁾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6년에는 정기 이사회가 2016. 3. 28. 한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 출판진흥원 정관의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⁸⁾는 조항이 있음에도,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은 2016년 하반기 정기이사회가 아닌, 2017년 1월 19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출판진흥원 정관 제18조(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8) 출판진흥원 정관 제4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관련자 진술

(1) 참고인 박OO 2017. 11. 2. 진술녹음

박OO은 2016. 10.부터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사무관으로 출판진흥원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후임 이사 구성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임명권자인 장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2016년 하반기의 현황과 국장 교체 시기, 본인의 부임 시기가 맞물렸던 점 등으로 인해 늦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정관상 9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출판진흥원장과 문체부 국장 2명의 당연직 이사만으로 진행시켜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모양새를 갖추는 차원과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임명과정에서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017년 11월 현재 이사회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9인으로 추진하다가 출판, 서점, 인쇄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 중 업종별 고른 안배를 하다 보니 7인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하였으며, 출판계 1명이 수락을 거부하여 6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김OO 2017. 11. 2. 진술녹음

김OO은 2016. 1. 1. ~ 2016. 10.까지 출판인쇄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이OO 사무관 후임으로 출판진흥원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임기만료 이전에 신입 이사 선임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기 만료 전에 이사 선임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미디어 국장이 박OO에서 한OO로 교체되는 시기였고, 출판진흥원의 비상임이사 역할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 천천히 하자고 하는 등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유OO 2017. 9. 27. 진술조서

2016. 12월부터 출판진흥원 이사로 활동했던 유OO은 출판진흥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답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7년 1월 19일에 첫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하루전날 수십 페이지가 넘는 이사회 문건이 메일로 첨부, 전달되어 서류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출판진흥원에서 2017. 1. 18.에 유

OO에게 송신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 상정안건' 메일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출판진흥원 사업을 내부 회의를 통해서 다 정해놓은 다음 이사회에서 지적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이사회가 거수기처럼 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배OO 2017. 10. 26. 진술조서

출판진흥원 전략기획실장으로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배OO은 2016년 8월 이후 이사가 2명만 존재한 이유에 대해, 이사 임면권자도 장관이고, 문체부가 진행하는 업무라서 출판과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준 적이 없어 출판진흥원에서는 그 사유를 알기 힘들다고 진술하고, 출판진흥원에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2016년 출판진흥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

가. 6개월 지연된 2016년 출판진흥원장 선임 과정

(1) 6개월여 공백이 발생한 출판진흥원장 선임 과정

출판진흥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이재호의 임기가 2015. 7. 26. 만료됨에 따라 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계획'(2015. 7. 17.)을 수립하였다. 추진 일정으로 2015. 7. 22. 공고하여, 2015. 7. 27. ~ 2015. 8. 5. 10일간 접수를 거쳐, 2015. 8. 4. 추천위원회를 구성, 2015. 8. 10. ~ 2015. 8. 19. 10일간 심사를 거쳐, 2015. 8. 21. 추천을 하고, 2015. 8. 26. ~ 2015. 8. 21. 20일간 검증 후 2015. 9. 17. 발표하여, 2015. 9. 21. 임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진행 일정에 착수하였다.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일정이 애초 2015. 8.경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6개월이나 지난 2016. 2월에서야 서류 및 면접 심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문체부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통보'[출판인쇄산업과 - 480]를 2016. 2. 24.에 하게 되었으며, 차기 원장을 이기성으로 선임, 임기가 전임 원장의 공식적 임기 보다 6개월이 늦은 2016. 2. 25. ~ 2019. 2. 24.까지로 결정되었다.

(2) 이사회 의결조치 없는 전임 원장의 임기 연장

이재호 원장은 2015. 7. 26.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2016년 2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하며 2015. 10. 29. 2015년 제2차 임시 이사회, 2015. 12. 10. 2015년 제2차 정기 이사회 등 2차례나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출판진흥원 정관에는 앞에서 언급한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⁹⁾는 조항, ‘후임 원장 선임 지연 원장 임기 연장할 수 있다’¹⁰⁾는 조항,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¹¹⁾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게끔 명시되어있다. 그렇지만 전임 이재호 원장이 임기 이후에 진행했던 2015년 2차 임시 이사회에서는 ‘직제 규정 개정의 건’, ‘보수 규정 개정의 건’, 2015년 2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 ‘인사 규정 개정의 건’,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등이 논의 되었을 뿐, 전임 원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은 논의된 적이 없다.

(3) 출판진흥원장 임명 과정 지연에 대한 문체부 입장

2016년 출판진흥원장 임명이 6개월 지연된 사유와 관련된 문서 제출 요청에 대해, “진흥원의 지방이전(7.30)과 원장 임기 만료(7.26) 시점이 겹쳐,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임명절차 시기를 조정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자료 제출”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543](2017.10.23.)로 회신하였다.

(4) 관련자 진술

(가) 출판인쇄과 사무관 이OO, 김OO 진술조서

이OO는 출판진흥원장 임명 관련, 출판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관 직권으로 임명하더라도 법률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업계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정부기관 등의 임원 임명 규칙 등을 참고하여 계획안을 만들어 심사위

-
- 9) 제2장 임원, 제9조(임원의 임면),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 만료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10) 제2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임기), ④ 원장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될 경우 후임 원장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11) 제3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원회 등의 선임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6개월 동안 차기 진흥원장 선임 절차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이OO는 보고를 하였으나, 장관의 아무런 지시가 없어 진흥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후임 사무관 김OO도 차기 원장 선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궁금하기는 했으나,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김OO 2017. 12. 21. 진술조서

김OO은 2014. 10. 15. ~ 2016. 9. 27. 문체부 출판인쇄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차기 진흥원장 선임 과정에 대해, 전임 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장관이 청와대에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 입장이 이재호 원장이 MB쪽 인사라며 반대가 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진흥원장을 선임할 경우, 출판계가 더욱 반대할 사람이 올 가능성도 크고, 시간을 끌어 이재호 원장의 임기가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정관의 내용도 있어 선정 과정을 늦췄다고 진술하였다.

나. 출판진흥원장 선임 과정의 의혹

(1) 출판진흥원장 임명 계획

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는 2015. 7. 17. 차기 출판진흥원장 선임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원장 추천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출판인쇄산업과 - 261](2016. 1. 29.)에서 김OO, 신OO, 박OO, 노OO, 김OO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이후 3명을 문체부 장관에서 추천키로 하고, 2016. 2. 2.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2016. 2. 5. 면접 심사 일정으로 일정을 추진하였다. 서류 심사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료’ 등을 진행하였으며, 면접 심사는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문제해결 능력, 공직 윤리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016년 면접 심사 김OO, 신OO은 출판진흥원 이사, 노OO은 출판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이며 변호사였으며, 박OO은 문체부 미디어 정책국장, 김OO 교수는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과 교수로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¹²⁾이다.

12) http://kdips.org/modules/doc/index.php?doc=greet&__M_ID=22 한국전자출판학회

(2)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

출판진흥원장 공모에 김OO, 이기성, 장OO, 김OO, 김OO, 남OO, 정OO 등 7명이 응모하였다. 서류 심사에서는 김OO가 89.6점으로 1위를 하였으며, 이기성이 85점으로 2위, 장OO가 76.6점으로 3위를 하였으며, 정OO을 제외한 6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면접 대상자로 2016. 2. 2. 결정되었다.

2016. 2. 5.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면접심사에서는 이기성이 93점으로 1위, 김OO가 89점으로 2위, 장OO가 85점으로 3위를 하였다.

[그림-2] 2016년 출판진흥원장 면접심사 집계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면접심사 집계표										
연번	성명	위원명	위원 별 평점 내역					계	순위	심사 결과
			①전문성	②리더십	③경영 혁신	④문제 해결능력	⑤공직 윤리관			
5	이기성	김OO	20	20	20	20	20	100	1	
		김OO	20	15	15	15	20	85		
		노OO	20	20	15	20	20	95		
		박OO	20	20	20	20	20	100		
		신OO	20	15	15	15	20	85		
		평균	20	18	17	18	20	93		
3	김준희	김OO	20	15	15	20	20	90	2	
		김OO	20	20	15	20	15	90		
		노OO	15	15	20	15	20	85		
		박OO	20	15	15	20	15	85		
		신OO	20	20	20	20	15	95		
		평균	19	17	17	19	17	89		

이기성에 대해 김OO, 박OO은 100점 만점, 노OO은 차점인 95점을 부여하였으며, 김OO에 대해서는 노OO, 박OO이 85점을 김OO가 90점을 부여하였다.

면접 심사 통과자 중 상위 3명, 이기성, 김OO, 장OO가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며, 문체부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통보”[출판인쇄산업과 - 480](2016. 2. 24.)를 통해 이기성을 출판진흥원장으로 임명하였다.

(3) 관련자 진술

(가) 참고인 이OO 2017. 11. 01. 진술조서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이OO는 이기성의 내정 의혹에 대해,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기성보다 업무의 애로사항도 잘 알고 문체부 출신이자, 출판진흥원 사무처장을 해서 문체부와 소통도 잘 했던 남OO가 되는 것이 더 수월했을 것이며, 낙점을 하였다면 6개월 여의 공백기간도 없었을 테고, 접수, 심사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하였다.

(나) 참고인 김OO 2017. 9. 26. 진술조서

출판진흥원 이사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출판사 여원미디어 대표 김OO는 (이기성이) 일흔이 넘는 사람이 1위가 되는 것이 의아했으며, 출판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심사는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김OO 2017. 12. 21. 진술조서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이기성의 내정 의혹에 대해, 출판진흥원장 공모에 참여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장OO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결정이었다면 굳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타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윤OO 2017. 9. 28. 진술조서

참고인 윤OO는 2016년 당시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출판진흥원장 및 이사 선임 당시 출판인회의 인사를 추천한 자이다.

윤OO는 출판진흥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전임 원장 이재호의 경우 MB 낙하산이라는 평가가 많아, 차기 원장 선임시 문체부 출판인쇄과와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며, 웅진 출판사 김OO 대표를 추천하는 것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장OO를 문체부 김OO 과장이 진흥원장에 응모할 것을 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OO 교수의 경우 이기성 원장 취임 당시 심사위원을 한 사람인데, 이후 출판진

흥원에서 진행하는 판면권 연구 용역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출판진흥원장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이기성은 위원회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청와대에서 주도한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

출판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임원 임면과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다. 또한 출판진흥원 정관상 임원 임면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어, 장관 직권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출판계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는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 규정을 참고하여 출협, 출판인회의, 인쇄협회, 서점연합회 등 출판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였다.

문체부 출판인쇄과는 각 단체별로 이사 대상자들의 추천을 받아 2~3배수의 명단을 취합하여 결격 사유 확인 등 신원 조회를 위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였다. 출판인쇄과에서 권장하는 다른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 출판인쇄과에서 직접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요청한 반면,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에서는 특이하게도 관련 기관에 직접 의뢰하지 않고, 명단을 문체부 운영지원과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전달하며 선임 절차를 진행하였다.

출판인쇄과에서 교문수석실에 임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동일하게 ‘관계적인 보고’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명단을 전달받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도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문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선정 결과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전달받은 정황 등을 고려

또한 출판진흥원 이사 선정 과정에 신원 검증 등을 문체부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여 국정원이 진행한 것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 임원의 신원 조회는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반면 출판진흥원은 운영지원과, 청와대, 국정원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 신원 검증의 판단을 청와대가 진행하였다 점, 출판진흥원 이사의 경우 1년에 2차례의 회의만을 진행하는 비상임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힘든 직책까지 청와대, 국정원에서 신원 조회를 진행한 점, 전반의 절차가 정식적인 공문 처리가 아닌 유선과 메일로 처리되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을 청와대가 주도, 결정한 정황은 출판진흥원 임원 선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인사 검증과 확인할 수 없는 결과

2014년 7월 경 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는 출판인회의의 추천을 받은 홍○○(○○○ 대표), 김○○(○○○○○ 대표), 조○○(○○○ 대표)등을 대상으로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을 추진하였으나, 탈락하였으며, 이후 신○○(○○○○○ 대표)과 김○○(○○○○○ 대표)를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6년 7월 경 문체부 출판인쇄과는 출판인회의의 추천을 받은 송○○(○○○○○ 대표), 김○○(○○○○○ 대표), 김○○(○○○○○ 대표)를 대상으로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을 추진하였으나, 전부 탈락하였으며, 추가로 2016년 9월 경 조○○(○○○ 대표), 박○○(○○○ 대표)를 추천 조○○ 대표는 탈락하고 박○○이 출판진흥원 이사로 선임되었다. 인사검증의 내용과 결과는 국정원에서 답신을 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심각한 것은 인사 검증 결과에 대해 인사검증을 의뢰하였던 문체부 운영지원과는 물론 출판인쇄과 담당자들도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지점이다.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정원에서 신원조사를 진행할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를 통해 요청 기관에 회신하게 되어있어, 이에 따라 국정원은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사 검증 결과를 결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문체부 운영지원과와 출판인쇄과에는 결과만 통보했을 뿐 관련 내용은

전혀 전달되지 않아, 문체부 관련자들조차 어떤 사유로 인해 이사 대상자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더불어 국정원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의 내용 또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출판진흥원 이사 대상자였던 조OO, 박OO, 김OO, 유OO, 조OO 등은 국정원, 청와대, 경찰 등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문제, 결혼 여부, 개인적인 소송 문제, 과거 학생운동 경력, 출판인회의 회장과의 관계, 정치인 지지 여부 등 출판진흥원 이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정원이 청와대로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조사 회보서’에는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성, 성품 및 생활상태’ 등을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안들의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에 따라 보고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탈락시켰을 개연성 또한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홀하게 관리된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과 이사회

출판진흥원 정관에는 출판진흥원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공모, 심사, 신원 조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였을 때, 전임자의 임기 만료 최소 한 달 전에는 임원 선임에 대한 절차가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2014. 7. 26.로 임기를 만료한 이OO, 정OO, 송OO, 홍OO, 이OO의 후임은 2달이 지난 후에야 선임되었으며, 2015. 12. 9. 임기가 만료된 김OO, 김OO의 후임은 선임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또한 2016. 8. 31. 임기가 만료된 김OO, 신OO, 양OO, 서OO, 오OO의 경우 후임 이사 선임 절차가 2016. 12. 18.까지 4개월여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임기만료 전 임원 선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출판진흥원 정관은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9명의 이사 정족수가 7명, 4명, 심지어 문체부 미디어 정책국장과 출판진흥원장 등 당연직 이사 2명으로 구성되는 파행이 발생했다.

출판진흥원 정관상 이사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문체부 사무관 김OO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정기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이사의 충원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 인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임원 선임의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사 구성의 파행은 물론, 감사 선임에도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4.

7. 27. ~ 2014. 8. 31.의 기간과 2016. 9. 1. ~ 2016. 12. 18.의 기간 동안 출판진흥원은 감사가 없이 운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출판진흥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한 상태의 기간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공공기관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며, 임원 선임 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여겨진다.

또한 정기 이사회 년 2회 개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당해년도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고 출판진흥원 정관에 명시되어있다. 그렇지만 2016년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이 4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2016년 하반기 이사회는 열리지 못하였고,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2017년 1월 19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차질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2017년 1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루진 안전 관련 수십 페이지의 자료들이 하루 전날 이사들에게 메일로 전달되었다는 점은 이사회 운영이 얼마나 편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준다.

라. 편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취급된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 과정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들은 국장 및 사업 담당자의 교체 시기와 맞물렸으며, 출판진흥원 이사의 경우 비상임으로 별다른 권한이 없으니 천천히 진행해도 될 것이며, 당연직 이사 2인으로만 구성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고, 출판인쇄과장은 청와대의 입장과 출판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사 선임 시기를 조절했다고 진술하는 등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이 너무 안일하고 형식적인 인식 속에서 진행해 왔음을 살필 수 있다.

더구나, 출판진흥원 임원 선임의 모든 책임은 문체부 출판인쇄과가 가지고 있어 담당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앞에서 언급한 임원 선임의 파행과 이사회 운영의 차질 등 모든 피해가 출판진흥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6개월 지연된 출판진흥원장 선임 과정

출판진흥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이재호의 임기가 2015. 7. 26.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는 차기 진흥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또한 이사와 감사 선임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것 처럼, 애초 계획은 2015. 9. 21 임명하는 계획으로, 임기 전 차기 임원 선임을 완료한다는 정관을 지키지 못하는 진행 과정이었다.

애초 문체부에서는 출판진흥원의 지방 이전 등을 사유로 이재호 원장 임기 1년 연장을

청와대에 건의하였으나, MB쪽 인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였고, 이 상황에서 진흥원장 추진을 강행할 경우 출판계의 반대가 극심할 것을 우려한 문체부 출판인쇄과장은 일부러 기일을 6개월 늦춰 출판진흥원장 선임 과정을 진행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체부의 진흥원장 선임 지연으로 인해, 이재호 원장의 임기가 출판진흥원 정관에 따라 자동 연장되었다. 그렇지만 이재호 원장 임기 연장에 대한 관련 보고나,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출판진흥원을 지도, 감독하는 이OO 사무관과 김OO 사무관의 경우 사유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출판진흥원장 임원 선임이 청와대의 정치적 이유와 이에 대한 문체부의 판단으로 출판진흥원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장 실무자들은 업무 추진에 혼선이 야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출판진흥원장 심사 과정의 의혹

문체부 출판인쇄과는 2016년 출판진흥원장 선임 과정에서 출판진흥원 이사 김OO와 신OO 등 2명과 미디어정책국장 박OO, 변호사 노OO, 교수 김OO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업무를 진행하였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차 서류심사에서는 출판계의 추천을 받은 김OO가 1위, 전자출판 교수 이기성이 2위, 문체부 출판인쇄과장이 추천한 장OO가 3위를 하였으며, 2차 면접 심사에서는 이기성이 1위, 김OO가 2위, 장OO가 3위를 하였다. 3순위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였으며, 결국 문체부 장관은 면접 1위를 한 이기성을 출판진흥원장으로 2016. 2. 24. 임명하였다.

하지만 면접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기성에 대해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박OO은 최고점 100점을, 출판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인 노OO 변호사는 95점을, 이기성과 전자출판 학회에서 활동을 함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OO 교수는 최고점 100점을 주어 이기성이 1위를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출판계의 추천을 받은 김OO에 대해서는 노OO, 박OO이 85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김OO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박OO, 노OO의 경우는 문체부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로, 이기성이 사전에 출판진흥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출판진흥원장 임명 과정을 담당하였던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이OO는 이기성보다는 출판진흥원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던 남OO가 더 수월했을 것이며, 굳이 접수, 심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출판인쇄과장 김OO은 개인적으로 장OO에게 부탁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출판사 OOOOO를 운영하며, 출판진흥원장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던 김OO가 심사 과정은 공정했다고 진술하는 등 출판진흥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기성을 사전에 내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출판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출판인회의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탈락하였는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정원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관련 내역을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추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국정원의 인사 검증 내용과 청와대에서 판단한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나. 출판진흥원장 선임 과정에 대해 이기성 진흥원장 선임자는 조사를 거부하여 내정 의혹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배제 사건



6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출2[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등의 사업에서 특정 작가와 도서들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가 2017. 10. 24.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공문(조사기록 1쪽)을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직권 조사를 진행키로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출판진흥원은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60종의 위탁도서를 선정하였다. 그 이후 문체부 출판인쇄과 김OO 과장이 김지옥, 김동

성의 「느영나영 제주」, 고도원의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정홍규의 「마을로 간 신부」,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1~3」, 박시백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등 5종 도서 배제 지시를 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출판진흥원은 55종의 위탁도서가 선정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5종을 도서를 지원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도서 배제 사실

출판진흥원은 문체부 출판인쇄과 김OO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12차의 정지형의 「텔레비전나라의 푸푸」,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와 13차의 김종배, 조형근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4차의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 등 5종 도서에 대한 배제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는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의 배제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 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5종의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견

(1) 김OO에 대한 수사의뢰

김OO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이미 최종 선정된 도서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판단을 근거로 특정 도서들을 배제하라는 지시하여,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수사의뢰함이 상당하고, 징계의뢰함이 상당하다.

다만, 자신의 부당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2) OOO에 대한 징계의뢰

OOO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배제 지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상급자인 김OO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수사의뢰보다는 징계의뢰함이 상당하다.

(3) N에 대한 징계의뢰

N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본부장으로서, 소관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불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당연직 심사위원임에도 자신이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하급 직원에게 심사를 대신하게 하고,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업무를 해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출판진흥원에 통보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한다.

붙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출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배제 사건

제1절 | 사건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등의 사업에서 특정 작가와 도서들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의혹¹⁾이 제기되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출판인쇄 독서진흥과가 2017. 10. 24.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공문(조사기록 1쪽)을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기로 하였다.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가. 직권조사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3호(직권조사)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7년 11월 3일 제13차 전원위원회 의결(조사기록 106쪽)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 (1) 출판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을 밝힌다.
- (2) 위 사업의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와 이에 따른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의 문제점 등을 확인한다.
- (3) 출판진흥원 여타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 및 출판진흥원 임원 및 직원들의 인지와 가담 정도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1) JTBC 뉴스 2017. 9. 29., <국일일보>, <경향신문> 등 2017. 10. 20.,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대상 국정감사 노용래, 김민기 의원의 질의 등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문서, 메일 등 모두 22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간 성과보고 (2016. 7. 18. ~ 7. 22., 8. 8. ~ 8. 12.)	출판진흥원	2017. 10. 26.	조사기록 19쪽 ~ 74쪽
2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12차, 13차 관련 김OO, OOO가 주고받은 메일 (2016. 7. 27. ~ 2016. 8. 16.)	김OO, OOO	2017. 11. 1.	조사기록 90쪽 ~ 98쪽
3	출판진흥원 사업 관련 김OO이 문체부 사무관, 주무관, 출판진흥원 본부장에게 발송한 메일 (2015. 3. 30.)	김OO	2017. 11. 7.	조사기록 138쪽 ~ 139쪽
4	도서 - 느영나영 제주 (2015. 7. 27.)	조OO, 김OO	2017. 11. 15.	조사물건 1
5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3회 관련 김OO, OOO, OOO이 주고받은 메일(2016. 7. 22. ~ 2016. 7. 28.)	김OO, OOO, OOO	2017. 11. 15.	조사기록 180쪽 ~ 194쪽
6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 (2016. 3. ~ 2016. 11.)	출판진흥원	2017. 11. 15.	조사기록 195쪽 ~ 379쪽
7	2015, 2016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참가사 관련 자료 (2015., 2016.)	출판진흥원	2017. 11. 17.	조사기록 412쪽 ~ 425쪽
8	2016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회의록 (2016. 4. ~ 2016. 7.)	출판진흥원	2017. 11. 17.	조사기록 426쪽 ~ 438쪽
9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2016. 2.)	출판진흥원	2017. 11. 22.	조사기록 453쪽 ~ 467쪽
10	2016년 제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결과 및 심사 계획(안) (2016. 7. ~ 2016. 8.)	출판진흥원	2017. 11. 22.	조사기록 468쪽 ~ 487쪽
11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관련 박OO, OOO가 주고받은 메일 (2016. 3. ~ 2016. 11.)	박OO, OOO	2017. 11. 22.	조사기록 510쪽 ~ 537쪽
12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박OO 심사표 (2016. 3. ~ 2016. 11.)	박OO	2017. 11. 22.	조사기록 538쪽 ~ 573쪽
13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관련 김OO, OOO가 주고받은 메일(2016. 3. ~ 2016. 11.)	김OO, OOO	2017. 11. 24.	조사기록 574쪽 ~ 604쪽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4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사업 김OO 심사표 (2016. 3. ~ 2016. 11.)	김OO	2017. 11. 24.	조사기록 605쪽 ~ 626쪽
15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김OO 심사표 (2016. 3. ~ 2016. 10.)	김OO	2017. 11. 24.	조사기록 627쪽 ~ 656쪽
16	추가 진술서 - N (2017. 12. 11.)	N	2017. 12. 11.	조사기록 689쪽 ~ 690쪽
17	사유서 - 진술서 제출 거부 (2016. 12. 19.)	이기성	2017. 12. 22.	조사기록 763쪽 ~ 765쪽
18	2016년 제1~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개최 결과 보고 (2016. 4. 12., 6. 28., 8. 9.)	출판진흥원	2018. 3.	조사기록 767쪽 ~ 788쪽
19	2016년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추진 계획(안) (2016. 3.)	출판진흥원	2018. 1. 11.	조사기록 814쪽 ~ 821쪽
20	2016년 1~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 계획(안) (2016. 4., 2016. 6., 2016. 7.)	출판진흥원	2018. 1. 11.	조사기록 822쪽 ~ 848쪽
21	(위원회 확보자료) [예술-11] 리스트 - '16. 9. 27 현재	청와대	2018. 2. 1.	조사기록 889쪽 ~ 899쪽
22	(위원회 확보자료) [사건번호 2017노2425]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소송기록 - 이OO 증인신문조서(2017고합102)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조사기록 900쪽 ~ 902쪽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4인에 대하여 21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정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장 (2016. 7. ~ 현재)	1회 진술조서 (2017. 10. 31.) 조사기록 75쪽 ~ 89쪽
2	N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2014. 6. ~ 2017. 6.)	1회 진술조서 (2017. 11. 7.) 조사기록 114쪽 ~ 143쪽
3	정OO	출판진흥원 전 글로벌사업팀장 (2014. ~ 2016. 6.)	1회 진술조서 (2017. 11. 8.) 조사기록 144쪽 ~ 154쪽
4	O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주임 (2015. 3. ~ 현재)	1회 진술조서 (2017. 11. 8.) 조사기록 155쪽 ~ 165쪽
5	김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차장 (2015. 5. ~ 2016. 12.)	1회 진술조서 (2017. 11. 9.) 조사기록 166쪽 ~ 176쪽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6	O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주무관 (1992. ~ 현재)	1회 진술조서 (2017. 11. 16.) 조사기록 379쪽 ~ 400쪽
7	이OO	중소출판인협회 전략개발단장	1회 진술조서 (2017. 11. 16.) 조사기록 401쪽 ~ 409쪽
8	도OO	출판진흥원 사무처장 (2015. 7. ~ 현재)	1회 진술조서 (2017. 11. 16.) 조사기록 439쪽 ~ 452쪽
9	박OO	초록샘플 사업 심사위원 (2016.)	1회 진술조서 (2017. 11. 22.) 조사기록 488쪽 ~ 509쪽
10	김OO	초록샘플 사업 심사위원 (2016.)	1회 진술녹음 (2017. 11. 28.) 조사기록 657쪽 ~ 660쪽 녹음CD 별첨
11	정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장 (2016. 7. ~ 현재)	2회 진술조서 (2017. 12. 5.) 조사기록 661쪽 ~ 670쪽
12	N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2014. 6. ~ 2017. 6.)	2회 진술조서 (2017. 12. 7.) 조사기록 671쪽 ~ 679쪽
13	O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주임 (2015. 3. ~ 현재)	2회 진술조서 (2017. 12. 7.) 조사기록 680쪽 ~ 687쪽
14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2014. 10. ~ 2016. 9.)	1회 진술서 (2017. 12. 18.) 조사기록 697쪽 ~ 714쪽
15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2014. 10. ~ 2016. 9.)	2회 진술조서 (2017. 12. 21.) 조사기록 715쪽 ~ 762쪽
16	김OO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2014. 4. ~ 2016. 10.)	1회 진술조서(2018. 1. 11.) 조사기록 797 ~ 813쪽
17	OOO	출판진흥원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담당자 (2015. 4. ~ 2016. 12.)	1회 진술조서(2018. 1. 23.) 조사기록 849 ~ 862쪽
18	정OO	출판진흥원 전 글로벌사업팀장 (2014. ~ 2016. 6.)	2회 진술조서 (2017. 11. 8.) 조사기록 863쪽 ~ 875쪽
19	정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장 (2016. 7. ~ 현재)	3회 전화조사 (2018. 1. 25.) 조사기록 876쪽 ~ 877쪽
20	김OO	초록샘플 사업 심사위원 (2016.)	1회 진술녹음 (2018. 1. 26.) 보고서 조사기록 878쪽 ~ 881쪽 녹음CD 별첨
21	N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2014. 6. ~ 2017. 6.)	3회 전화조사 (2018. 2. 2.) 조사기록 887쪽 ~ 888쪽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²⁾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³⁾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7월 27일 개원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통계 작성,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배제되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나.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1) 출판진흥원은 2015년부터 국내 출판물 중국시장 진출 지원과 대외 출판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을 진행하였다. 해외출판사와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출판사의 수출콘텐츠 발굴 및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출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인 출판수출 활로 개척과 함께, 한중 출판인 출판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 현지 출판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거래도 하며, 참가가 힘든 출판사들은 출판진흥원에 도서를 위탁하여, 현지에서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2) '2016년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 사업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글로벌사업팀 소관 업무로, 2016년 5월 장시성 난창에서 1회를 시작으로, 2회는 7월 충칭, 3회는 9월 장쑤성 난징에서 진행하였다. 각 회차별로 출판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출판사와 위탁도서를 선정하고, 선정된 출판사에게는 50~70만원 정도가 홍보비 명목으로 지원되며, 선정된 위탁도서에는 출판진흥원이 고용한 에이전시를 통해 저작권 계약 등의 업무 등이 지원된다.

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 (1) 출판진흥원에서는 2016년부터 출판 저작권 수출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1~2쪽 서지정보, 작가·작품 소개, 마케팅 정보를 요약하여 해외출판사 및 에이전시에게 즉각적인 소개 자료로 활용되는 '초록'과 도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후 50쪽 내외로 요약한 소개 자료 '샘플'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 (2) 2016년,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에서 사업, 예산을 이관하여,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글로벌사업팀에서 총 18회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였다. 각 회차별로 출판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도서를 선정하였다.

2.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선정 배제

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참가도서 선정 개요

(1) 심사 과정 및 참여 심사위원

출판진흥원의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참가출판사 등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조사기록 816쪽)에 따르면 2016년 7월 6일부터 2016년 7월 15일 까지의 기간 동안 34개 출판사와 79종의 위탁도서가 접수되었다. 1차 예비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참가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개별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7월 21일 열린 2차 본심사에서 참가출판사 및 위탁도서를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은 박OO 한국교통대 중문과 교수, 부OO 동원대 광고편집과 교수, 송OO 한양대 수행인문학부 교수, 이OO KL 매니저먼트 대표, 정OO 연아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참가하였다.

(2) 중국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출판진흥원의 6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참가출판사 등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6(조사기록 822쪽)에 참가 출판사 선정 기준은 ‘도서 질적 우수성 30%’, ‘출판사 평가 30%’, ‘중국시장 적합성 20%’, ‘출판한류 기여도 20%’ 등이며, 위탁 도서는 ‘도서 질적 우수성’, ‘중국시장 적합성’, ‘출판한류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법적 분쟁 소지가 있거나, 전담 에이전시에 수출입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려는 출판사의 도서는 선정 제외 대상이라 명시하였다.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38 (2016. 08. 09.)]에 따르면 위탁도서 선정에 대해 ‘중국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심사 진행’,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 도서 제외 후 선정’(조사기록 782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위탁도서 배제 내용

(1) 배제 지시 내용 및 경위

(가) 심사위원회 선정보고 60종, 최종 결과발표 55종, 제외 5종

문체부가 제출한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출판인쇄독서진흥과-548(2017. 10. 24)]에 “□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 ○ 신청접수 79종, 선정보고 60종, 결과발표 55종 [*제외 : 5종] / * 문체부 제외 요청 도서 제외 후 목록을 내부 선정 보고 및 결과 발표”로 기록되어 있으며, 목록 “6-느영나영 제주”, “44-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51-마을로 간 신부”, “75-미학 오디세이 1~3”, “76-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심사선정 ○, 선정보고 ×, 결과발표 ×, 비고 : 제외”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출판진흥원의 ‘2016. 7. 18. ~ 7. 22. 주간 성과보고’에는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결과’ 중 위탁도서가 60종으로 선정되었다고 기록(조사기록 33쪽)되어 있다. 그러나 ‘2016. 8. 8. ~ 8. 12. 주간 성과보고’에는 위 사업에 대해 위탁도서 55종 선정이라 기록(조사기록 61쪽)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출판인쇄독서진흥과-548(2017. 10. 24.)]의 첨부파일 “3. 2015~2016년 찾아가는 도서전 상정 도서목록 및 심사결과.hwp” 35쪽에 기록된 내용

출판진흥원의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글로벌 사업팀-538(2016. 08. 09.)]에도 위탁도서가 55종으로 선정되었다고 기록(조사기록 782쪽)되어 있다.

(나) 문체부에 전달된 심사위원회 선정 결과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가 2016년 7월 21일(목), 출판콘텐츠 센터 201호에서 진행(조사기록 786쪽)되어 심사 내용, 선정 결과, 심사위원 박OO, 송OO, 이OO, 정OO, 정OO의 서명이 날인된 심사 확인서 등이 포함된 “2016년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회의록”(조사기록 438쪽)을 작성하였다. 그 이후 2016년 7월 22일(금)에 출판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담당자인 OOO이 문체부 출판인쇄과 주무관 OOO에게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송부’라는 제목의 메일에 60종을 선정한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위탁도서 선정 목록.xls’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조사기록 182쪽)하였다.

(다) 배제 지시 메일을 작성한 문체부 주무관 OOO

위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위 OOO을 수신자로, 출판인쇄과 주무관 OOO, 글로벌사업팀장 정OO,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을 참조로 하여 2016년 7월 25일에 [그림 1]과 같이 “문체부 확인 전까지는 최종 확정 보류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조사기록 184쪽)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OOO은 2016년 7월 28일에 [그림 2]와 같이 “3차 찾아가는 도서전 위탁도서 목록 중 4번, 31번, 37번, 56번, 57번⁵⁾ 제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과 위 도서들을 표기한 첨부 파일을 발송하였다. 첨부파일(조사기록 182쪽)에서 제외를 지시한 도서는 ‘4번, 느영나영 제주, 조지욱/김동성, 나는별’, ‘31번,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고도원, 큰나무’, ‘37번, 마을로 간 신부, 정홍규, 학이사’, ‘56번, 미학 오디세이 1~3, 진중권, 휴머니스트’, ‘57번,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⁶⁾’이다.

5)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548(2017. 10. 24.) 문서에 있는 연번과 OOO이 2016. 7. 28. 발송한 메일의 연번이 다르다. 문체부 공문에 있는 번호는 접수된 전체 도서 목록에 대한 연번이며, OOO이 메일에서 나열한 도서 번호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도서 목록의 연번으로, 해당 도서들은 동일한 도서들이다.

6) 연번, 도서명, 작가, 출판사 순

**[그림-1] 김OO이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담당자 OOO에게 2016. 7. 25. 발송한 메일
(조사기록 184쪽)**

보낸사람: "김OO" <...@korea.kr>
 날짜: 2016년 7월 25일 오전 9:04
 제목: RE: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송부
 받는사람: ... <...@gmail.com>
 참조: "OOO 주무관님" <...@korea.kr>, "N 본부장님" <...@hanmail.net>, ... <...@kpipa.or.kr>

문체부 확인 전까지는 최종 확정 보류 바랍니다.r

[그림-2] OOO이 OOO에게 2016. 7. 28. 발송한 메일(조사기록 182쪽)

보낸사람: ... <...@korea.kr>
 날짜: 2016년 7월 28일 오후 1:55
 제목: (중요)RE: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송부
 받는사람: OOO <...@gmail.com>, ... <...@kpipa.or.kr>, ... <...@gmail.com>
 참조: 김OO <...@korea.kr>

안녕하세요.

3차 찾아가는 도서전 위탁도서 목록 중
 4번, 31번, 37번, 56번, 57번 제외바랍니다.

OOO은 위 배제 지시 메일에 대해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OO 과장이 메일 참조가 걸려있던 사람들에게 보류를 지시했고, 직접 목록 중 몇 번, 몇 번을 지적하면서 빼라는 지시가 있어,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조사기록 382쪽)라고 진술하였으며, 배제 지시 도서 목록 표기에 대해 “자체 목록이 온 것은 진흥원에서 온 것이고, 과장(김OO)이 지적한 부분을 음영 처리하여 진흥원에 다시 보낸 파일입니다.”(조사기록 383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김OO은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제외, 배제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예”(조사기록 721쪽)라고 진술하였다.

(2) 해당 도서들에 대한 배제 지시 사유

(가) 배제를 지시한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입장

도서들의 배제 사유에 대해 출판인쇄과장 김OO은 “고도원 선생님과 진중권 선생님의 작품은 중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으며, 박시백 화백님의 실록은 중세사와 근대사 부분에 지금의 중국적 사관과 충돌하는 점

이 있을 수 있어 역시 중국시장에서의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욱 선생님의 작품은 중국이 반대하는 우리 해군의 대양 진출정책과 그 일환인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어 중국에 소개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홍규 신부님의 작품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담고 있어 국내에서는 의미가 있는 도서이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기획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조사기록 741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4.3 사건, 강정해군기지 내용 때문에 배제된 ‘느영나영 제주’

[그림 3]과 같이 ‘느영나영 제주’ 아래에 ‘4.3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 포함 확인’이라고 기입된 부분에 대해 000은 “제가 기입을 했습니다. 당시 김OO 과장이 ‘제주’이기 때문에, 4.3 사건과 강정기지 문제가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확인해보라고 하여, 진흥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기입한 것입니다.”(조사기록 383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림-3] ‘4번, 느영나영 제주’ 배제 지시 음영 표기와 ‘4.3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 포함 확인’이라 의견이 기입된 파일 - 김OO 과장의 지시로 000 주무관이 작성(조사기록 186쪽)

3	칼매나무	장사는 과학이다 : 백년가게 만들기	이기훈	경제경영/ 창업	한 정중철 방법을 마련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지 않는 '선(先) 성공
4	나는별	느영나영 제주 (4.3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포함 확인)	김 조지욱/그림 김 동성	어린이	판필지 제주가 아닌, 자 [얼마 마중]의 작가 김 신철 바닷가의 풍력 발전연기념물인 제주 조류 봄에 피는 유채꽃과 무 판필지 제주가 아닌, 자
5	나는별	색깔 찾아 서울 가자!	김 조지욱/그림 신 영우	어린이	아시아의 중심 도시 저 건물도 많고 차도 많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하지만 눈송이 크게 뜨고 알록달록 곱고 예쁜 색

김OO은 “중국이 반대하는 우리 해군의 대양 진출정책과 그 일환인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어 중국에 소개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3 사태 또한 그 정확한 실체를 국내외적으로 알려야 하고 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의 큰 사건이지만 정부사업에까지 포함해서 한국전쟁 당시 상대국이었던 중국에 굳이 소개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조사기록 74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느영나영 제주’를 직접 보여주며 어느 부분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4.3 사건에 대한 언급이냐는 물음에 대해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 이 책을 왜 배제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을 떠올려 봐야할 듯합니다.”(조사기록 742쪽)라고 진술하였다.

사업 담당자 000은 “첨부파일을 열어보니,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국 도서전이다보니 중국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 때문에 배제된 것이 아니라, 4.3 사태라고, 빨간 색으로 도서명 아래 쓰여 있는 등 이와 같은 이유로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조사기록 15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000의 ‘진흥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는 차원’이라는 진술에 대해 000은 “그걸 왜 진흥원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일 내용의 자체가 몇 번, 몇 번 제외하라는 내용이었고, 첨부된 엑셀파일도 배제 도서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고, ‘느영나영 제주’도 번호와 색깔로 표시되어 있으니, 4.3 사태 때문에 그 책을 배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조사기록 682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대한 출판진흥원의 조치

(1) 허위로 심사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작성

(가)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심사 회의록 허위 작성

사업 담당자인 000은 배제 지시 메일을 받은 이후 “회의록을 바꿨습니다. 위탁도서에서 심사 선정에서 ‘중국시장 적합성이라는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 제외’에 문체부에서 내려온 항목을 찾아서 추가하는 형태로 회의록을 수정하였습니다.”(조사기록 159쪽), “문체부 확인 전까지 보류하라는 지시 메일이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배제 지시 메일이 온 이후에 보고를 했고, 그런 다음 회의록을 작성한 것입니다.”(조사기록 681쪽), “회의록은 심사위원회가 끝나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올리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조사기록 682쪽)라고 진술하였다.

글로벌사업팀장 정00은 “회의 내용은 60종이 선정되었지만, 서류상으로 55종으로 선정되었다고 회의록을 추후 작성한 것입니다.”(조사기록 663쪽), “김00 과장의 지시를 맞추기 위해서 회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찾아 000과 제가 회의록을 만든 것입니다.”(조사기록 664쪽),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을 때, 그 배제 지시를 반영한 선정 목

록과 회의록을 맞춰서, 이미 받아놓은 날인지를 뒤에 덧붙이는 형태로 회의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조사기록 663쪽), “문체부의 지시가 내려온 이후에 회의록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회의록 허위 작성을 지시한 글로벌사업팀장 정OO

회의록 허위 작성을 논의한 정황에 대해 OOO은 “당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된 시점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고 하여, 정OO 팀장, 김OO 차장에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별로 놀랍지 않다는 듯이, 회의록에서 빼서 보고하면 되겠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입사한지 1년 남짓이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경험도 없고,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처지라서 여쭙았던 것이고, 회의록 수정하라고 하여 진행한 것입니다.”(조사기록 158쪽), “(회의록 허위 작성 이후)이야기 드렸습니다. 결재 올릴 때, ‘수정하여 올렸습니다’라고 팀장에게 말했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조사기록 159쪽)라고 진술하였다.

정OO은 “OOO 주임의 이야기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고, 그쪽(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 시킨대로 해라 라고 지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조사기록 662쪽)라고 진술하였다.

글로벌사업팀의 김OO 차장은 “OOO 주임이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는 함께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니다.”(조사기록 169쪽)라고 진술하였다.

(2) 배제 지시 및 회의록 허위 작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지 여부

(가)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의 인지 여부

OOO, 김OO으로부터 배제 지시 메일을 수신한 부분에 대해 N은 “참조로 되어있어서 받기는 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메일들을 주고 받았던 터라 열어본 기억이 없습니다.”(조사기록 116쪽), “업무가 정OO 팀장 담당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조사기록 117쪽), “중국도서전은 제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진흥원의 모든 개별사업은 팀장 단위에서 이뤄지며 저는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조사기록 676쪽)라고 진술하였다.

배제 지시에 대한 출판진흥원 차원의 논의 여부에 대해, 정OO은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에서 목록이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하거나 보고해야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OOO 주무관과 OOO 주임이 주고받은 메일은 항상 N 본부장과 김OO 과장이 함께 받아왔기에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조사기록 79쪽)라고 진술하였다. 심사 결과 수정을 결재 과정에서 보고하였는지에 대해, “회의록이 사후에 작성되기도 하였고, 문체부의 배제 지시 메일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본부장(N)에게 특별히 보고할 사안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조사기록 664쪽)라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의 내부결재 문서인 “2016년 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38(2016.08.09.)](조사기록 782쪽)에는 “본부장 전결 N”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나) 사무처장 도OO의 인지 여부

출판진흥원 사무처장 도OO은 “연초 계획은 원장이 하고, 도서전 전체 언제, 어디로, 몇 개의 출판사가 참여하고, 위탁도서는 몇 종이 참여하고, 예산 등에 대한 결재는 사무처장에게 있습니다.”(조사기록 44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결재시,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대한 언급에 대해 “없었습니다.”(조사기록 44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N은 도OO 사무처장이 배제 지시 및 회의록 임의 수정의 인지 여부에 대해 “행사 일시, 몇 종 선정, 예산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되지, 그 경과까지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조사기록 148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심사위원들에게 변경된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 과정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심사 결과 변경을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하였는지에 대해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회의록을 공유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조사기록 664쪽)라고 진술하였다. 사업 담당자 OOO은 “회의록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사기록 161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 :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도서 배제

[표-3]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도서 배제 과정 일람

일자	시행자	내용
2016. 7. 6. ~ 2016. 7. 15.	출판진흥원	위탁도서 79종 접수
2016. 7. 21.	출판진흥원 심사위원회	위탁도서 60종 선정
2016. 7. 21.	사업 담당자 000	위탁도서 60종 선정 목록 문체부에 발신
2016. 7. 25.	출판인쇄과장 김00	최종 확정 보류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7. 28.	문체부 주무관 000 (김00의 지시)	5종(4, 31, 37, 56, 57번) 배제 지시 메일을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8. 9.	사업 담당자 000 (팀장 정00의 지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60종에서 55종 선정된 것으로 허위 작성
	출판진흥원	55종 선정으로 결과 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538(2016. 8. 9.)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과정에서, 2016년 7월 21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60종의 위탁도서가 선정되었다. 2016년 7월 22일, 출판진흥원의 사업 담당자 000은 위탁도서 선정 60종의 목록을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00 과장과 000 주무관에게 송부하였고, 김00은 7월 25일 확정 보류를 지시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000은 김00의 지시를 받아 7월 28일 ‘느영나영 제주’,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마을로 간 신부’, ‘미학 오디세이 1~3’,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등 5종에 대한 선정 제외 지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메일을 수신한 000은 정00의 지시에 따라, 배제 지시한 도서들이 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되어 애초에 55종이 선정된 것처럼 회의 결과를 변경,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이후 출판진흥원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였으며, 결국 배제 지시한 도서 5종이 선정에서 탈락되었다.

3.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가.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개요

(1) 심사 과정 및 참여 심사위원

‘수출도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조사기록 455쪽)에 따르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은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접수를 거쳐 심사를 하고, 심사 방법은 월 2회, 2주 접수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은 내부 위원으로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 협업 위원으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 부본부장 박OO, 외부 위원으로 김OO, 김OO, 김OO가 참여하였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일정 등을 고려 1명씩 심사에 참여하였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OO는 “메일로 의뢰가 들어오면, 해외 출장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절을 했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수락했습니다. 심사 자료를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엑셀파일에 의견을 달아, 다시 메일을 반송하는 형태였습니다.”, “도서를 직접 살피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책을 살피는 형태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조사기록 488쪽)라고 진술하였다.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심사라서, 엑셀파일에 심사결과지가 옵니다. 심사위원들이 담당자에게 심사표를 작성하여 직접 메일로 발송을 합니다.”(조사기록 664쪽)라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 본부장이 위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 위 N은 “이전(2015년까지) 번역원에서는 내부 심사위원만으로 추진했던 전례도 있고, 지원 규모도 2, 30만원 내외라서, 금액이 소진 될 때까지 진행하는 것이어서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만 따로 꾸리지 않고 진행한 것입니다.”(조사기록 123쪽)라고 진술하였다.

(2) 해외 시장 적합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

‘수출도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추진 계획(안)’(조사기록 455쪽)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도서의 질적 우수성, 해외 시장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외 기준은 ‘유사 사업을 통해 번역 지원을 받은 도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이 사업은 이 전에 번역됐던 책들, 현저히 가치가 없는 책들, 번역의 가

치가 없는 책들을 제하고”(조사기록 8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N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 부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 색채가 강할 경우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물 같은 경우도 전부 선정하기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조사기록 124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12, 13차에서의 배제 내용

(1) 배제 지시 내용 및 경위

(가) 문체부에 선정 검토 요청 메일 발송

출판진흥원의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담당자인 000는 2016년 7월 27일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주무관 000을 수신자로, 글로벌사업팀장 정0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 출판인쇄과장 김00을 참조로 하여 “[출판진흥원]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도서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조사기록 94쪽)을, 2016년 8월 10일 “[출판진흥원]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도서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조사기록 97쪽)을 발송하였다.

(나) 문체부에서 하달된 배제 도서 목록

위 12차 관련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김00은 2016년 7월 27일에 [그림 4]와 같이 000를 수신자로 정00, 000, N을 참조로 하여 “제외 : 차남들의 세계사,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조사기록 93쪽)라는 내용의 메일과, [그림 5]와 같이 “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메일 드린 3종은 제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조사기록 92쪽)을 발송하였다.

[그림-4] 김OO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담당자 OOO에게 2016. 7. 27. 발송한 배제 지시 메일(조사기록 93쪽)

보내는사람 : "김OO " <_____@korea.kr>
 받는사람 : " OOO " <_____@kpipa.or.kr>
 참조 : "정 OO " <_____@kpipa.or.kr>, "OOO 전문관님" <_____@korea.kr>, " N " <_____@kpipa.or.kr>, "김 OO 과장님" <_____@nate.com>
 보낸 날짜 : 2016-07-27 13:53:11

제목 : RE: [출판진흥원]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도서 검토 요청

○ 제외 : 차남들의 세계사,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그림-5] 김OO이 OOO에게 2016. 7. 27. 발송한 배제 지시 메일(조사기록 92쪽)

보낸사람 : "김 OO " <_____@korea.kr>
 날짜 : 2016년 7월 27일 오후 3:52
 제목 : RE: Re:RE: [출판진흥원]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도서 검토 요청
 받는사람 : " OOO " <_____@kpipa.or.kr>
 참조 : " N " <_____@hanmail.net>, "정 OO " <_____@gmail.com>, "O, OO " <_____@korea.kr>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일 드린 3종은 제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13차 관련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김OO은 2016년 8월 16일 OOO, 정OO, N 을 수신자로, OOO을 참조로 하여 [그림 6]과 같이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은 제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조사기록 96쪽)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림-6] 김OO이 OOO에게 2016. 8. 16. 발송한 배제 지시 메일(조사기록 96쪽)

보낸사람 : "김 OO " <_____@korea.kr>
 날짜 : 2016년 8월 16일 오후 2:14
 제목 : RE: Fw:[출판진흥원]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도서 검토 요청
 받는사람 : " N " <_____@hanmail.net>, "정 OO " <_____@gmail.com>, " OOO " <_____@kpipa.or.kr>
 참조 : " OOO " <_____@korea.kr>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은 제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당시 김OO 과장에게 직접 메일이 왔습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2차례의 메일에 7종 4건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조사기록 8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메일 발신자로 명기된 김OO은 진술과정(조사기록 715쪽)에서 선정 배제 지시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배제 지시와 일치하는 12차, 13차 선정 결과 보고 내용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16(2016. 08. 04.)](조사기록 316쪽)에 ‘차남들의 세계사’,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가 탈락되었고,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67(2016. 08. 18.)](조사기록 324쪽)에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이 탈락되었다.

(2) 해당 도서들에 대한 배제 지시 사유

(가) 배제 지시 메일을 발송한 출판인쇄과장 김OO 입장

김OO은 해당 도서들에 대한 배제 지시 사유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창작과 출판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대상으로는 공공성과 보편성 확보 측면에서,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출판콘텐츠로써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창작품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사업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조사기록 738쪽)라고 진술하고, 정부예산 지원에 자유시장경제에 문제제기 하는 작품들이 포함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 “제 생각에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정부 사업에서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논리들은 책으로 출간되고, 읽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조사기록 738쪽)라고 진술하였다.

배제 지시 도서들을 직접 검토했느냐는 물음에 “완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평과 서지 정보 등은 확인했고, 책의 일부분은 확인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습니다.”(조사기록 739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배제 사유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문체부 주무관 000은 “과장이 직접 메일을 보낸 것인데, 참조로 전달된 거라 그 상황에서 제가 나서거나, 알리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조사기록 383쪽)라고 진술하였다.

정00은 “찾아가는 도서전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업무 지시라 여겨 묻지도 않았고, 진흥원 내에서 논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조사기록 83쪽)라고 진술하고, 사업 담당자 000는 “배제 사유를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지시라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조사기록 853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대한 출판진흥원의 조치

(1)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표 조작 후 결과보고 진행

(가) 심사표 변경 내용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16(2016. 08. 04.)]와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67(2016. 08. 18.)]에 첨부된 박00의 심사표와 박00가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의 내용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1) 12차 결과보고의 박00 심사표 변경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16(2016. 08. 04)]에 첨부된 ‘3.2 김00) 출판수출자문위원’(조사기록 322쪽)의 심사표에는 「차남들의 세계사」에 대해 ‘심사결과 - 부적격, 의견-‘공란’,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에 대해 ‘심사결과 - 부적격, 의견 - 수출경쟁력이 낮아 샘플 번역 지원이 부적절함.’으로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박00가 2016년 7월 26일 000에게 보낸 ‘[Re][출판진흥원]2016년 제12차

7) “3.2 김00 출판수출자문위원” 심사표에 “심사위원 : 박00”라고 날인이 되어 있으며,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에 박00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보고, 박00가 2016. 7. 29. 사업 담당자인 000에게 심사표를 발송한 것 등을 종합하였을 때 “박00를 김00”으로 잘못 기입한, 보고 과정에서의 단순 오기로 판단된다.

2) 13차 결과보고의 박OO 심사표 변경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67(2016. 08. 18.)]에 첨부된 '3.2 박OO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 부분부장'(조사기록 330쪽)의 심사표에는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 대해 '심사결과 - 부적격, 의견 - 도서 소재 특성 상 중화권 수출 경쟁력이 낮음.'으로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박OO가 2016년 8월 16일 OOO에게 보낸 '[Re][출판진흥원]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의뢰' 제목의 메일에 첨부한 '붙임 2.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_박OO.xls'(조사기록 557쪽)에는 연번 10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의 심사결과를 '적격'으로, 의견은 공란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박OO가 작성한 심사표에는 심사일자가 8월 12일로 되어 있으나, 출판진흥원의 결과보고에는 8월 16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OOO는 “날짜가 변경된 부분은 심사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타자가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문체부 검열을 받으면서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일정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날짜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조사기록 858쪽)라고 진술했다. 8월 16일 김OO으로부터 배제 지시 메일을 수신한 이후, 박OO의 심사결과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심사일자도 8월 12일에서 8월 16일로 변경한 것이다.

[그림-8] 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박OO 심사표 조작 내용 (위 - 박OO가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 아래-출판진흥원 결과보고 붙임 박OO 심사표)

[붙임 2]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										특격 부칙격
연번	신청사	출판사	도서명 (공역 시 도서정보데이터로 기재)	글	그림	장르	언어	신청구분	심사결과	의견
10	사이언스북스	사이언스북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	인문/역사	중국어	초록	적격	
심사일자 : 2016. 8. 12.									심사위원 : 박OO (위)	
3. 심사위원별 심사표										박OO
3.2. 박OO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 부분부장										
연번	신청사	출판사	도서명	글	그림	장르	언어	신청구분	심사결과 적격/부적격	의견 (부칙격일 경우 상세 의견 기재)
10	사이언스북스	사이언스북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	인문/역사	중국어	초록	부적격	도서 소재 특성 상 중화권 수출 경쟁력이 낮음
심사일자 : 2016.08.16.									심사위원 : 박OO (위)	

이를 종합하면, [그림 8]과 같이 박OO의 심사표 중 1종의 도서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란, 심사일자를 임의로 조작,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12, 13차 심사결과에 대한 박OO의 진술

박OO는 제12차 심사 결과에 대해 “저는 전부 적격 처리하여 보냈으며, ‘차남들의 세제사’같은 경우, 적격으로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기타 의견으로 초록의 경우 번역원과도 사후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조사기록 592쪽), 제13차 심사 결과에 대해 “저는 적격 처리하여 보냈으며, 부적격 처리한 도서는 한건도 없습니다.”(조사기록 592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심사표 조작 과정

1) 심사표 수정, 조작을 지시한 글로벌사업팀장 정OO

사업담당자 OOO는 김OO으로부터 배제 지시 메일을 받은 이후, “팀장과 상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팀장이 심사위원에게 전화로 심사결과를 수정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정OO 팀장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지에 ‘수출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들어 해당 도서를 탈락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심사표를 바꾸고, 결과보고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조사기록 852쪽)라고 진술하고, 심사표 조작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 대해 “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내용을 바꿨습니다.”(조사기록 858쪽)라고 진술하였다.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아마, 제가 (조작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출판인쇄과의 지시에 대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수출경쟁력’이라는 표현을 들으니, 내가 지시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OOO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조사기록 87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전임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담당자가 무슨 이유로 제출된 심사표를 변경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출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들어 탈락한 경우도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이런 식의 표현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적격 처리된 도서가 거의 없었고, 수출경쟁력이라는 표현도 생소합니다.”(조사기록 863쪽)라고 진술하였다.

OOO는 심사표 조작 지시자가 정OO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정OO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12차 배제 지시 메일을 받은 날이 7월 27일이고, 글로벌사업팀장이 정OO으로 바뀐 시점이 7월 18일로 며칠 차이가 나지 않아 OOO의 기억에 착오라고 판단되며,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16(2016. 08. 04.)](조사기록 316쪽) 결재에 ‘정OO’이 팀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심사표 조작이 자신의 지시였다고 정OO이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이 OOO에게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따르기 위해 심사표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2) 심사위원들에게 심사결과 변경을 요청

사업 담당자 OOO는 “당시 팀장이 심사위원에게 전화로 심사결과를 수정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조사기록 852쪽), “김OO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줄 수 있냐고 여쭙봤습니다. 김OO 심사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 요청에 응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사결과를 수정해주지 않았습니다.”(조사기록 853쪽)라고 진술하였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OO는 “작년(2016년), 당시 출판진흥원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적격’으로 심사결과를 송부한 도서에 대해 제고해줄 수 없느냐는 전화 제의를 받았다. 정지형 작가의 책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와 자본주의를 비판한 책이라서 문체부 간부로부터 이 책의 통과를 제고하라는 의견이었다고 전달받았다. 당시 간부가 누구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지원도 많지 않은 사업이며, 이런 식으로 관여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심사 결과를 수정하는 부분을 거부하였으며, 담당자였던 OOO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심사 결과를 고쳐달라는 제안이 의의하고, 처음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아있다.”(조사기록 657쪽)고 진술하였다.⁸⁾

심사위원 김OO, 박OO는 심사결과 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8) 12차 「차남들의 세계사」의 경우 김OO는 문체부의 배제 지시와 동일한 부적격으로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김OO는 미문화원 방화사건이라 중국 통과가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본인이 직접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3) 사업담당자 000의 심사표 조작

사업 담당자 000는 심사표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표를 바꾸고, 결과보고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조사기록 852쪽), “이때에도 팀장이 언급했던 ‘수출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고친 것 같습니다.”, “‘도서 소재 특성상 중화권 및 영미권 수출 경쟁력 낮음’의 표현은 자주 썼던 표현이라 제가 기입했던 것 같고”(조사기록 854쪽)라고 진술하였다.

심사표 조작 당시 000의 근무 기간에 대한 물음에 대해, “청년인턴을 마치고, 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3, 4개월 되었을 시점입니다.”(조사기록 855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출판진흥원 내부에서 문체부의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으며, 해당 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 등을 이용하여 심사표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배제 지시 이후 000가 작성한 N 심사표

출판진흥원의 12, 13차 결과보고에 첨부되어있는 N의 심사표에는 김OO이 배제 지시한 도서에 대해 전부 ‘부적격’ 처리 되어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N의 경우, 12, 13차 심사 당시 작성했던 심사표 제출요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조사기록 671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문서에 첨부된 “3.1 N 출판산업진흥본부장”의 각 심사표에 기록된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는지, 김OO 과장의 배제 지시 내용을 파악한 후 심사를 진행했는지, 김OO 과장의 배제 지시 내용과 심사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물음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조사기록 671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11일에 제출한 추가 진술서에서 “저는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믿고, 접수된 내용을 사전 검토하게 하였고 그 의견대로 심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조사기록 690쪽)라고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000는 “(12, 13차 N의 심사표를) 김OO 과장의 지시와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맞춰 제가 작성을 하였습니다.”(조사기록 854쪽)라고 진술하였으며, N 심사표가 김OO의 배제 지시 이후에 작성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이미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맞춰 작성해 놓고 있다가 김OO 과장 지시를 받고 수정했을 수도 있습니다.”(조사기록 854쪽)라고 진술하였다.

(2) 배제 지시 및 심사표 조작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지 여부

(가)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의 인지 여부

N은 김OO의 배제 지시에 대해 “참조에 제 메일이 있어 받기는 했을 테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조사기록 124쪽), “모릅니다. 보고가 없어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조사기록 671쪽)라고 진술하였으며, 담당자와 팀장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만을 믿었으며, 심사위원으로서 결과를 재확인하고 업무 진행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조사기록 690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16(2016. 08. 04.)]와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67(2016. 08. 18.)]에는 “본부장 전결 N”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으며, 각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3. 심사위원별 심사표”에도 N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OOO는 N 본부장이 심사표 조작으로 심사결과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조사기록 852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사무처장 도OO의 인지 여부

출판진흥원 사무처장 도OO은 “초록 샘플 사업은 제가 결재를 하지 않는 사안이라서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조사기록 446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배제 지시 정황

(1) 심사위원들의 심사표와 출판진흥원 결과보고의 내용 상이

(가) 출판진흥원의 14차 결과보고에 「한국이 싫어서」 선정 탈락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609(2016. 08. 29)]의 [붙임1]의 연번 10의 “한국이 싫어서(출판사 민음사, 글 장강명)”에 대해 박OO 심사표(조사기록 340쪽)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와 “도서 소재 특성 상 영미권 수출 경쟁력이 낮음”으로, 김OO 심사표(조사기록 342쪽)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와 “로컬 콘텐츠 특성상 초록 지원으로 인한 해외시장의 호의적 반응을 살펴본

후 추후 샘플 번역 지원하는게 좋을 듯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심사위원들은 「한국이 싫어서」에 대해 적격으로 심사

2016년 8월 22일 심사위원 김OO이 OOO에게 보낸 ‘Re[출판진흥원]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의뢰’ 제목의 메일에 첨부한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_김OOxlsx’(조사기록 619쪽)에는 연번 10의 「한국이 싫어서」의 심사결과를 ‘적격’으로, 의견은 공란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6년 8월 25일 심사위원 박OO가 보낸 ‘[Re][출판진흥원]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의뢰’ 제목의 메일에 첨부한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_박OOxls’(조사기록 559쪽)에도 「한국이 싫어서」의 심사결과를 ‘적격’으로, 의견은 공란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박OO는 “(「한국이 싫어서」에 대해)저는 적격 처리 하였으며, 의견란도 공란으로 제출하였습니다.”(조사기록 492쪽)라고 진술하였다.

(2) 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배제 지시 정황과 심사표 조작

사업담당자 OOO는 14차 「한국이 싫어서」의 배제 지시가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책이라서, 이 출판사 담당자분과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있는 것으로 봐서,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로 배제 지시가 내려왔는지 명확치 않습니다.”(조사기록 856쪽)라고 진술하고,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한국이 싫어서」 도서가 부적격 처리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선상으로 담당자가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경우라면, 저는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조사기록 666쪽)라고 진술하였다.

12차, 13차 선정 과정의 배제 지시를 한 김OO은 14차 「한국이 싫어서」의 배제 지시에 대해 “제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조사기록 740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림-9] 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박OO(왼쪽), 김OO(오른쪽) 심사표 조작 내용
(위 - 박OO, 김OO이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 아래 - 출판진흥원 결과보고 붙임 박OO, 김OO 심사표)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						
번역	출판사	도서명	공	신청구분	심사결과	비고
외	진흥사	한국의 삶에서	당양본	샘플	부적격	
심사일자: 2016. 8. 25					심사위원: 박 OO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						
번역	출판사	도서명	공	신청구분	심사결과	비고
외	진흥사	한국의 삶에서	당양본	샘플	부적격	
심사일자: 2016.08.22					심사위원: 김 OO	

14차 박OO 출판진흥원 제출 번역 지원사업 부본부일						
번역	출판사	도서명	공	신청구분	심사결과	비고
외	진흥사	한국의 삶에서	당양본	샘플	부적격	7. 부적격일 경우 상세 의견 기재 부적격 사유 기재 후 심사 신청 가능 부적격 사유 기재 후 심사 신청 가능 부적격 사유 기재 후 심사 신청 가능
심사일자: 2016.08.25					심사위원: 박 OO	

14차 김OO 출판진흥원 제출 부본부일						
번역	출판사	도서명	공	신청구분	심사결과	비고
외	진흥사	한국의 삶에서	당양본	샘플	부적격	7. 부적격일 경우 상세 의견 기재 부적격 사유 기재 후 심사 신청 가능 부적격 사유 기재 후 심사 신청 가능 부적격 사유 기재 후 심사 신청 가능
심사일자: 2016.08.25					심사위원: 김 OO	

이를 종합하면, 배제 지시 경위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김OO은 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한국이 싫어서」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OOO는 이를 따르기 위해 [그림9]와 같이 박OO와 김OO의 심사표를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심사표 조작이 용이했던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특수성

(1) 비중이 크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라는 인식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특성에 대해, 글로벌사업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김OO는 “이 사업은 팀에서 큰 비중을 다루는 사업도 아니어서, 일상적인 업무라서 이런 사업에서 까지 배제 지시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조사기록 171쪽)라고 진술하고, 위 N은 “초록·샘플 사업은 단어별, 문단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소액사업으로 이러한 사업까지 문체부에서 관여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조사기록 676쪽)라 진술하였다. 위 박OO는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경우 적은 규모의 지원 사업이고, 출판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식의 메일(배제 지시)이 오갔는지 생각도 못했습니다.”(조사기록 49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문체부 주무관 OOO 또한 “해외진출을 위한 출판사 지원 사업이라서, 당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정산

을 할 때, 해외 수출이 되었느냐가 핵심이었지, 어느 특정 도서의 초록, 샘플을 지원했는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조사기록 387쪽)라고 진술하였다.

(2) 심사위원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 과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OO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는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조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결과 조차도 통보받아본 적이 없습니다.”(조사기록 491쪽)라고 진술하고, 심사위원 김OO도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한 이후, 심사 결과에 대해 통보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은 없음”(조사기록 658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업담당자 OOO도 심사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했냐는 물음에 대해 “아니오.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한 업무지시는 없었습니다.”(조사기록 855쪽)라고 진술하였다.

(3) 사업의 전 과정을 사업담당자 1인이 전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N은 “저는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믿고, 접수된 내용을 사전검토하게 하였고 그 의견대로 심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조사기록 690쪽)라고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담당자 OOO도 “이 사업 심사를 초반에 2, 3번 정도 N 본부장이 심사를 하다가 제게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 의견들에 맞춰서 심사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조사기록 854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임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담당자가 심사표를 변경해서 결재를 올린다면, 팀장 위치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내온 심사결과를 팀장이 챙기지 않습니다.”(조사기록 868쪽)라고 진술하고, N은 심사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도 “결과는 공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조사기록 675쪽)라고 진술하여 사업 담당자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 진행과정 조차 팀장, 본부장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심사표 임의 조작이 60여 곳으로 사업 전반이 허술하게 관리

출판진흥원이 작성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글로벌사업팀-899 (2017.11.15.)](조사기록 195쪽)의 “2016년 초록 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보고”(1~18차)와 심사위원 박OO, 김OO, 김OO이 작성한 심사표를 비교한 결과 60여 곳의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조사기록 790쪽)하였다. 박OO 심사표 16곳, 김OO 심사표 5곳, 김OO 심사표 45곳으로, 변경된 사항은 심사날짜 14곳, 성명과 날인 부분 4곳, 심사 결과 및 의견 41곳 등이다. 특히 8차 김OO이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출판진흥원 결과보고에는 김OO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으며, 9회차 김OO 심사표에는 ‘김OO의 서명’으로 추정되는 그림 파일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12차 박OO의 심사표의 경우, ‘김OO’으로 오기 표기 되어 있는 등 사업 전반이 허술하게 처리, 관리되었으며, 이에 대한 점검조치 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OO의 경우 14회차의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⁹⁾, 「경서 친구 경서」, 「먹고 말거야!」, 「쪽지전쟁」, 「사라지지 않는 노래」, 「순희네 집」, 「여우 소녀 미랑」, 「우리는 가족일까」, 16회차의 「진시황의 책교실」, 「썬과 함께한 열한번의 건축수업」, 「마사코의 질문」, 「진짜 백설공주는 누구일까」, 「최기봉을 찾아라」, 18회차의 「콜센터 연봉 1억녀의 비밀」, 「독공」, 「떡이 최고야」의 도서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였으나, 출판진흥원 결과보고에는 적격으로 변경된 심사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위 OO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해당 사업은 예산규모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소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의 취지 등을 이용하여 타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맞춰 최대한 적격 처리하는 식으로 업무를 편의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조사기록 876쪽)라고 진술하였다.

9)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라. 기타사항”에서 다시 언급

바. 소결 :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도서 배제

[표-4] 2016년 제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도서 배제 과정 일람

회차	일자	시행자	내용
12회차	2016. 7. 26.	심사위원 박OO	12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7. 27.	사업담당자 OOO	12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2016. 7. 27.	출판인쇄과장 김OO	3종 배제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7. 29.	심사위원 김OO	12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7. 29. ~ 8. 4	사업담당자 OOO (팀장 정OO의 지시)	심사위원 김OO에게 배제 지시 도서에 대한 심사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12회차	2016. 7. 29. ~ 8. 4	사업담당자 OOO	N의 심사표 중 3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4.	사업담당자 OOO (팀장 정OO의 지시)	박OO의 심사표 중 3종을 부적격으로 조작
		출판진흥원	12차 초록샘플 지원사업 결과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516(2016. 8. 4.)
13회차	2016. 8. 10.	사업담당자 OOO	13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2016. 8. 12.	심사위원 김OO	13차 온라인 심사 진행
		심사위원 박OO	13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8. 16.	출판인쇄과장 김OO	1종 배제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8. 16. ~ 8. 18.	사업담당자 OOO	N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18.	사업담당자 OOO (팀장 정OO의 지시)	박OO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심사일자를 8. 16.로 조작
		출판진흥원	13차 초록샘플 지원사업 결과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567(2016. 8. 18.)
일자불상	사업담당자 OOO	14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14회차	2016. 8. 22.	심사위원 박OO	14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8. 25.	심사위원 김OO	14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8. 26.	사업담당자 OOO	N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29.	사업담당자 OOO (팀장 정OO의 지시)	박OO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김OO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김OO의 심사표 심사일자를 8. 26.로 조작
14회차	2016. 8. 29.	출판진흥원	14차 초록샘플 지원사업 결과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609(2016. 8. 29.)

2016년 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000는 접수 목록을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00, 주무관 000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김00은 12차 3종(차남들의 세계사,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과 13차 1종(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4차 1종(한국이 싫어서) 등의 도서에 대해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다.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장 정00은 김00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000에게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표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000는 위 도서들에 대해 12, 13차에서 박00의 심사표를, 14차에서 박00와 김00의 심사표를 「적격」에서 「부적격」조작하였다. 또한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의 지시로 김00의 배제 지시를 반영한 12~14차 N의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출판진흥원은 조작한 박00, 김00의 심사표와 배제 지시를 반영한 후 작성한 N의 심사표를 취합하여, 12~14차의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보고를 진행하여, 위 도서들을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4. 출판진흥원 여타 사업들에 대한 배제 관련

가. 출판인쇄과장 김00이 출판진흥원 주요 사업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정황

(1) 출판진흥원 주요 사업에 문체부 의견 반영을 지시한 메일 발송

김00은 출판인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들과 출판진흥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게 「제목 : 공모사업 등 관련(매우중요!!!)」의 메일(조사기록 138쪽)을 발송하였는데, 「1. 세종도서 학술분야, 2. 월간 추천/권장도서(5월), 3.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4. 지역문화 출판콘텐츠 지원, 5. 한중 출판콘텐츠¹⁰⁾ 지원, 6. 전자책 제작지원(멀티미디어형, 수출전자책, 텍스트 형 3종), 7. 지역축제 연계 북콘서트, 8. 인문독서아카데미 및 북스타트(문화기반국 공조 사업이나 출판과와도 반드시 사전협의)」의 사업을 열거하며,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 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 공유(전체답장 기능 등 활용) 바랍니다(제게는 모든 관련 메일 송부 바랍니다).」와 「추후 진행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0) '한중 출판콘텐츠 지원'의 오기로 보임.

(2)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 대한 배제 지시 인정

김OO은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제외, 배제 지시 여부에 대해 물은 바, “예”(조사기록 721쪽),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과 초록 샘플 사업이었고”(조사기록 721쪽), “1번 세종도서, 3번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6번 전자책 지원 등의 사업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조사기록 733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메일 내용 중,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의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문체부 의견을 제출하여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이를 심사과정에서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조사기록 734쪽)라고 진술하였다.

문체부 주무관 OOO은 김OO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세종도서를 포함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신경을 썼던 것 같고, 해외파트 사업에 대해서만 지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가와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알고 있어서, 현 정부에 의해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심하는 차원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조사기록 390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지원 지시 : 화이트 리스트

(1)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김OO의 지원 지시

김OO은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해 “2016년 늦여름쯤 정관주 차관님께서 책을 구해 검토해보라고 하여 일람하고 번역원(번역)과 진흥원(출판)에 검토 지침을 주었으나 곧 제가 러시아로 부임받는 프로세스¹¹⁾가 진행되어 실제로는 유야무야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록 차관의 지시(사실 검토 건의에¹²⁾ 가까운,,,)였으나 담당 과장으로서 해외출판시 상업적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조사기록 886쪽)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1) ‘프로세스’의 오기로 판단됨.

12) ‘건의에’의 오기로 판단됨.

(2)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14차에서 적격 처리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은 문체부에서 특별히 통과시키라는 지시가 온 도서로 알고 있으며, N 본부장도 이걸 챙기며,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 책의 저자가 김인섭이라고 태평양 법무법인 대표로, 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이며,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도 박정희를 칭송하며 ‘한강의 기적’은 계속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기록 877쪽)라고 진술하였다.

전임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N 본부장이 쪽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영림카디널 출판사)라는 책이었는데, 문체부 김OO 과장의 지시라면서 이 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책 내용이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한 책이었습니다.”(조사기록 870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업담당자 OOO는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선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조사기록 857쪽)라고 진술하였으나, N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OO 과장으로부터 개별적 지시 내려온 것이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요.”(조사기록 887쪽)라고 진술하였다.

(3) 14차 심사표 조작으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지원 결정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609(2016. 08. 29.)]의 [붙임1]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의 ‘3.3 김OO 출판수출자문위원’의 심사표(조사기록 342쪽)에는 연번 12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출판사 영림카디널, 글 김인섭)」에 대해 “적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김OO이 제출한 14차 심사표(조사기록 620쪽)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와 ‘로컬 콘텐츠 특성상 초록 지원으로 인한 해외시장의 호의적 반응을 전제로 샘플 번역 지원하는 게 좋을 듯함.’의 의견이 기록되어, 출판진흥원의 결과보고와는 상이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OOO는 심사표 조작이라고 인정(조사기록 857쪽)하였다.

일자과 지시 경위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출판진흥원은 김OO의 선정 지시에 따라 김OO의 부적격 심사표를 적격으로 변경, 조작하여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제 도서 작가와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가. 배제 도서 작가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표-5]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배제된 도서 목록
(※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작가)

사업명	도서명	작가	비고
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느영나영 제주	김지옥, 김동성	
	당시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고도원	
	마을로 간 신부	정홍규	
	미학오디세이 1~3	진중권	
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텔레비전나라의 푸푸	정지형	
	삼살개가 독에 감춘것	정지형	
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차남들의 세계사	이기호	※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김종배, 조형근	
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	※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도서 작가들 중, 박시백, 이기호, 장강명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위원회에 2016년 8월 17일에 제출한 “문예6-11_리스트-’16.9.27현재”(조사기록 890쪽) 중 7쪽에 “문화예술명예교사(6.21) / B(6.29)-이기호(소설) / K(7.11)-장강명(소설), 이기호(소설)”, 8쪽에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지원사업(8.9) / B(8.12) 이기호(소설가) / K(9.5)-이기호”, 11쪽에 “세계책의날기념 책드림콘서트 초청 작가 (4.6) / K-문학작가 박시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¹³⁾에 “2012년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 박시백(만화)”로 명시되어 있다.

13)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등록 2016/10/12 04:40, 수정 2016/10/12 11:47,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2018/1/26-접속날짜)

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청와대 등 유관기관과 상급자의 지시 여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OO는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사업들 중 세종도서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보고 및 선정 결과에 따른 배제 지시 등을 하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조사기록 799쪽)하였으며, 김OO은 “저희 과(출판인쇄과)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체로서의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위해서 말씀드린 불문화된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검토했었습니다.”(조사기록 733쪽)라고 진술하였다.

미디어정책국장 등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김OO은 “김희범 당시 차관이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에 선 과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의지 등이 MB때부터 이어져왔던 헌법을 수호하던 노력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조사기록 717쪽), “포괄적 형태에 대해 방향성에 대한 지시는 있었지만, 구체적 지시는 없었습니다.”(조사기록 744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과장 부임 직후부터 직급 및 직위와 무관하게 문화부 내부의 유관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영화, 공연, 문학 등과 함께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자주 들었으며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공감을 했습니다.”(조사기록 721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개인적 판단에 의한 블랙리스트 실행 기준을 마련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기준에 대해, 김OO은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1)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4),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5)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6)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7)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조사기록 721쪽)라고 진술하고, 위 7가지의 규정을 누가 지시하였는지의 물음에 대해 “2년 여의 과장 근무기간 동안 진행한 사안들을 종합해보니 이런 기준들을 정하지 않았으나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조사기록 72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OO 사무관이 법정에서 진술¹⁴⁾(조사기록 900쪽)한 김OO이 전달하였다는 출판사와 작가가 적혀있는 메모지에 대해,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저쪽, BH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했습니다.”(조사기록 722쪽)라고 진술하였다.

6. 기타 사항

가. 문체부와 출판진흥원과의 관계

(1) 출판진흥원의 문화로 인식된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문체부의 사전 검토

N은 “다른 본부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출판산업)진흥본부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검토를 받은 이후에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 진술하고,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담당자 OOO은 “입사하면서부터 사업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문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산하기관으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조사기록 157쪽),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체부의 컨펌이 나아만, 이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조사기록 160쪽)라고 진술하였다. 정OO은 “출판과장의 의견 하나에 진흥원에서 결정된 사업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출판담당 과장의 영향력은 출판진흥원 사업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조사기록 86쪽)라고 진술하였다.

OOO는 문체부 김OO 과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심사결과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물음에 대해 “문체부 김OO 과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표현보다, 출판진흥원 내부에서 문체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조사기록 855쪽)라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 N은 김OO에 대해 “담당 과장(김OO)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는데, 누가 이런 지시를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조사기록 126쪽)라고 진술하고, “진흥원의 제1고객은 문체부 직원들이며, 본부장이라는 자리 역시 문체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진흥원 같은 조직을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폭언을 들은 바 있습

14)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형사항소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이OO 녹취록 35쪽

니다. 아마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문체부 과장과 주무관의 지시에 저항하기는 힘든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조사기록 690쪽)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출판인쇄과장 김OO이 발송한 위 메일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김OO은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입니다. 즉, 제 업무들이었습니다.”(조사기록 725쪽)라고 진술하고, 문체부 주무관 OOO은 “공공기관이고, 100% 국고사업이고 하니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공유를 하였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조사기록 385쪽)라고 진술하였다.

(2) 공공기관에 대한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인식

(가) 배제 지시는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 주장

김OO은 “(출판진흥원의) 모든 사업들과 행정행위들에 대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문화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담당 실무부서인 출판인쇄과와 담당 과장인 제가 수시로 의견을 주고 협의함은 부당한 지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정책 집행부서의 행정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오히려 두 기관(출판진흥원과 문학번역원) 임직원들과 민간 심사위원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놓은 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태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조사기록 725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창작이나, 출판 유통, 독서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에서 관여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지시는 정부지원의 예산으로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급되는 도서의 대상기관이 공공도서관이고, 지원되는 콘텐츠의 목적이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국가 정체성 등의 사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업들이었습니다.”(조사기록 752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공기관 설립 취지는 해당과가 담당할 업무를 소화하기 위함이라 주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 김OO은 “공공기관을 설립한 취지가 과에서 담당할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는 담당과에서 협의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조사기록 734쪽)라고 진술하였으며, “문학의 전문적 영역이 아닌, 행정적 의견은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조사기록 738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회의록 허위 작성, 심사표 조작과 관련한 출판진흥과장 김OO의 입장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배제 지시에 따른 출판진흥원의 회의록 허위 작성에 대해, “제가 회의록 수정, 임의 작성을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저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 발생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조사기록 743쪽)라고 진술하였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배제 지시에 따른 출판진흥원의 심사표 조작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가 지시를 못했지만, 제가 이를 따르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출판과장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탈락시키라는 내용을 적시하라는 의견도 전달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흥원 차원에서 제 이름을 직접 적시 하는게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제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저를 거명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하며,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데 책임을 느낍니다.”(조사기록 740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사업 담당자 OOO가 과장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 담당자의 경우, 인턴 사원인줄 몰랐고, 진흥원 차원에서 진행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상당히 불편했겠다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조사기록 739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출판진흥원 관련자의 조사 방해 행위

(1) 출판진흥원장 이기성의 조사 거부

출판진흥원장 이기성은 본 사건 및 출판진흥원의 전반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요청을 거부(조사기록 688쪽)하고, 진술서 제출 요청에 대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전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

항이 없어”(조사기록 765쪽)라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N의 조사 방해 행위

OOO는 “10월 말경, 출판진흥원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 N 본부장 이야기라며, 위원회 조사를 받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조사기록 859쪽)라고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확인된 사실

(1)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사실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과정에서, 김지욱, 김동성의 「느영나영 제주」, 고도원의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정홍규의 「마을로 간 신부」,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1~3」, 박시백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등 5종 도서에 대한 배제가 진행되었다. 출판진흥원은 2016년 7월 21일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여 60종의 위탁도서가 선정되었으나, 55종 선정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2016년 8월 9일 심사위원회 결과보고를 통해 위 5종의 도서를 지원 배제하였다.

해당 사업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며, 심사위원회 이후 회의록을 작성해왔던 허점을 이용하여 출판인쇄과장의 배제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심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야 할 도서들을 선정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도서 배제 사실

2016년 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12차의 정지형의 「텔레비전나라의 푸푸」, 「삽살개가 독에 감춘 것」,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와 13차의 김종배, 조형근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4차의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 등 5종 도서에 대한 배제가 진행되었다. 12~14차 심사에 참여한 박OO는 위 도서들에 대해 전부 ‘적격’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14차 심사에 참여한 김OO 또한 「한국이 싫어서」에 대해 ‘적격’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였다. 출판진흥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표를 ‘부적격’으로 조작하여, 2016년 8월 4일 12차, 2016년 8월 18일 13차, 2016년 8월 29일 14차의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위 5종의 도서를 지원 배제하였다.

심사위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던 전례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심사표 조작이 용이하다는 허점, 출판진흥원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허술하게 관리되던 사업의 특수성 등을 이용하여,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는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의 배제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 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특정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출판진흥원의 여타 사업에서의 배제 지시 정황

출판진흥원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체부의 검토가 진행되었다는 출판진흥원 관련자들의 진술, 선정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는 일반적이며, 당연한 행정행위였다는 김OO, 000의 진술, 2015년 3월 30일 김OO이 출판진흥원 본부장과 문체부 사무관, 주무관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선정 결과에 문체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내용, 출판진흥원의 사업들 중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전자책 출판 지원 사업’ 등에 배제 지시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김OO의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출판진흥원의 여러 사업들에서 배제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관련자들의 행위 사실

(1) 선정 도서에 대해 배제를 지시한 김OO의 행위 사실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문체부 주무관 000에게 2016년 찾아가는 중국도서 전 위탁도서 중 5종에 대한 배제 지시 메일을 하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출판진흥

원 사업 담당자 000에게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목록 중 2016년 7월 27일 12차의 3종, 2016년 8월 16일 13차의 1종, 일자불상 경 14차 1종의 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각 5종의 도서를 배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에서 배제된 도서들의 배제 사유에 대해,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미학에세이」는 중국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따르며,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중국의 사관과 충돌하는 점이 있을 수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수용에 한계가 있고, 「느영나영 제주」는 우리 해군의 대양 진출정책과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라 밝혔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도서들에 대해서는, 해당 도서들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들이며,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대상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출판콘텐츠로써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배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도서들을 직접 검토한 이후 배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배제 지시 등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지도감독 과장으로서의 당연하고 필요한 행정업무였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배제 지시를 받은 문체부 주무관 000, 출판진흥원의 N, 정00, 000, 000 등 누구도 배제 사유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느영나영 제주」처럼 도서에서 배제 사유로 언급한 부분을 김00 본인 스스로도 지적하지 못하는 점, 해외 시장의 적합성이 최우선적인 선정 기준이었던 심사업무에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용 한계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웠던 점, 문체부 과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진술, 공공기관은 해당 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김00의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00은 출판진흥원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인쇄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사업에 배제 지시 등을 통하여 선정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배제 지시 메일을 발송한 000의 행위 사실

문체부 출판인쇄과 주무관 000은 출판인쇄과장 김00의 지시로, 2016년 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결과 목록 파일에 도서 5종에 대해 음영처리하여 배제 도서임을 표시하고, 「느영나영 제주」에는 ‘4.3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 포함 확인’이라는 내

용을 빨간색으로 기입한 이후, 7월 28일 해당 도서들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출판진흥원에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은 문체부 주무관으로, 출판계의 해외진출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의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지시가 이례적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배제 지시에 부담을 느꼈음에도, 배제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는 진술, 배제 지시에 대해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OO의 배제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하기 보다는, 이에 순응하여 출판진흥원에 배제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의 행위 사실

N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닌 자로, 김OO, OOO으로부터 배제 지시 내용의 메일을 수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N은 배제 지시가 왔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으며, 팀장과 담당자가 보고한 적도 없어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4)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의 행위 사실

정OO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실무책임자로, 김OO, OOO으로부터 배제 지시 내용의 메일을 수신하였다. 이 지시를 따르기 위해 사업담당자 OOO에게 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에서 60종으로 선정된 위탁도서 목록에서 배제 지시가 내려온 5종이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것처럼 심사결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55종이 선정된 것처럼 허위 작성된 회의록을 첨부한 심사결과보고를 작성, 결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5종의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정OO은 김OO이 초록·샘플 번역 지원 12~14차 5종의 도서에 대해 배제 지시의견을 하달하자, 사업담당자 OOO에게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표 조작을 지시하였다. 5종의 도서들이 부적격이라고 조작된 심사표를 첨부한 심사결과보고를 작성, 결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5종의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담당자 000의 행위 사실

000은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라는 정00 팀장의 지시가 있었던 점, 문체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출판진흥원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 당시 근무기간이 1년 남짓으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일반 사원으로 책임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의 사실 또한 확인된다.

(6)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000의 행위 사실

000는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담당자로, 2016년 7월 27일 12차, 2016년 8월 10일 13차, 일자불상 경 14차의 접수목록을 김00과 000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 김00은 2016년 7월 27일 12차 3종, 2016년 8월 16일 1종, 일자불상 경 14차 1종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하달하였다. 정00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김00에게 심사 결과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후 정00의 지시에 따라, 배제 지시가 된 도서 5종이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해 탈락된 것처럼 심사위원 박00과 김00이 ‘적격’으로 심사한 5종의 도서를 ‘부적격’으로 심사표를 조작하였다. 또한 000는 N의 지시로, N이 진행해야할 심사업무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김00의 배제 지시에 따라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김00의 배제 지시에 따라 조작한 심사표와 000가 작성한 N의 심사표 등을 취합하여 12차는 2016년 8월 4일, 13차는 2016년 8월 18일, 14차는 2016년 8월 29일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결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000는 심사표를 조작하라는 정00 팀장의 지시가 있었으며, 문체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출판진흥원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 청년인턴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3개월 남짓으로 일반 사원으로 책임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의 사실 또한 확인된다.

다. 블랙리스트와 김00 과장의 배제 지시와의 관계

김00, 김00는 청와대와 문체부간의 출판계 관련 담당자로서, 두 사람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출판계와 관련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에 하달되지 않았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여타의 기관과 사업에서 정부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시행되었던 점, 특정 도서와 작가의 배제가 아닌 포괄적 형태의 방향성 -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하라는 - 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김OO의 진술,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작가와 도서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김OO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OO 과장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호응하여, 자신이 관장하는 출판진흥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서 블랙리스트 정책을 적용,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문체부 김OO 과장이 출판진흥원의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정책을 적용, 실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OO 과장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지시한 문체부 상급자와 청와대 등의 상급 기관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 이 사건의 성격

가. 출판계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동의 일부분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도 크지 않고, 입사 1년 정도 되는 신입 직원과 인턴 직원이 사업 담당자로 해당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담당 본부장이 본 사업의 진행경과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출판진흥원 내에서 중요도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소소하고 일상적인 사업에서까지 정치성향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작가와 도서가 선별 배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판결문,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밝혀진 '세종도서' 외에도 출판진흥원의 여러 사업들에서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세종도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기간을 2014년 ~ 2015년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16년에 지원 사업에서 특정 도서가 배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때, 광범위한 출판계의 블랙리스트 작동의 일부분이며, 박근혜 정부 전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여겨진다.

나. 문체부 출판인쇄과의 횡포와 출판진흥원의 예측성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문체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¹⁵⁾, 사실상 출판진흥원의 정책집행을 좌우하고 있다. 또한 출판진흥원의 법인 인가권¹⁶⁾과 원장 임면권¹⁷⁾을 지니고, 각종 사업예산은 문체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¹⁸⁾이고,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및 검사를 통한 감독권¹⁹⁾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출판진흥원의 주무부서인 문체부 출판인쇄과는 출판진흥원과 철저한 상하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문체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준용²⁰⁾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1조²¹⁾에 따라 출판진흥원의 예산 및 정책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사 업무를 하고 있어, 자체의 심사 및 선정 과정 등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률적 원칙보다도 출판인쇄과장과 주무관의 지시가 절대성을 발휘했고, 부당한 지시라 하더라도 이를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출판진흥원 내부에 만연하였다.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했으며, 운영의 투명성 또한 제고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기저에는 위계를 이용한 문체부 출판인쇄과의 횡포가, 위계에 굴복한 출판진흥원의 예측성이 자리하고 있다.

-
- 15)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6)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7)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 18) 제21조(경비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9)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0)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1) 제5조(공기업·주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다. 기본적인 준법정신조차 지켜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공정성 훼손

출판진흥원은 계획 수립, 사업 공고, 접수, 심사위원회 운영, 선정 결과 발표 등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출판계, 나아가 국민들에게 국가를 대변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켜가며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절차이다. 그렇지만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문체부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편법적이며, 임의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되었다. 결국 출판인쇄과장 개인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표를 조작하는 등 기본적인 준법정신조차 지켜지지 않은 행위들이 발생하였다. 이후 출판인쇄과장의 개인 성향과 업무 스타일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의 선정 결과도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민주주의 원리가 무시되고,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출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라. 올바르지 못한 조직문화 학습과 임원, 간부들의 무책임함

회의록 허위 작성과 심사표 조작의 당사자는 출판진흥원의 1년 남짓의 신입 직원과 계약직 직원이었다. 이들에게 문체부 출판인쇄과장과 주무관의 지시는 거의 절대적이었을 것이며, 문체부의 지시를 당연히 따라야한다는 출판진흥원 내부의 분위기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강제력을 발휘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도 따라야 한다는 올바르지 못한 조직문화를 학습하게 되었으며, 이후 출판진흥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부당한 지시에도 자연스레 굴복하게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이 사건에 내포되어 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발휘하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사건이다.

또한 해당 본부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할 본부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심사 업무를 담당 직원에게 맡기고 처리 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출판진흥원 업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였다. 임원과 간부들이 출판진흥원 외부의 압력과 청탁에 보호막이 되어주는 커녕, 근무태만과 묵인, 책임 회피의 태도가 이 사건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²²⁾

22) 이와 관련하여 N은 다음과 같이 추가 이의제기함(19. 1. 16.).

해당 사업은 한국도서 소개 홍보물을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해 지원하는 것으

마.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전횡

김OO이 어떤 이유로 해당 도서들에 대해 배제 지시를 하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지시를 받아 메일을 보낸 문체부 주무관도, 메일을 받은 본부장과 팀장도, 회의록을 수정, 조작한 사업 담당자도 왜 이 도서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시만을 따라야했다. 그리고 김OO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등 국가의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는 배제 지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부처의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선정과정에 담당과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논리와 출판진흥원의 주무부처 과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김OO 한사람에 의해 공공기관의 공정성, 민주주의적 절차 등이 완전히 짓밟힌 사건이다.

로, OOO은 외국어 특기자로 당시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어 신청자료를 1차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 또한 출판진흥원 공모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공고하고 이를 통해 신청업체들이 선정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동 사업 역시 그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본부장이 신청업체들의 선정 인지여부를 알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6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출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직권조사의 취지

“2017고합102” 사건으로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을 통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이 확인되었으며, 위원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원 등의 지시로 특정 출판사, 작가, 독서 단체를 임의로 배제한 추가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가 2017. 10. 24.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키로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인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세종도서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

여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김OO 행정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청자 명단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 명단을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를 자신의 상급자인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은 이를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하고 정무수석실에 검토를 받아 다시 이를 문체부에 하달하였고, 문체부는 이 배제명단을 출판진흥원에 하달하여 특정 도서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였다. 또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은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에게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고, 이에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은 심의과정에서 배제 지시가 하달된 대상 도서에 대한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배제를 유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관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좌성향 및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지원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가)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과정에서, 김지옥, 김동성의 「느영나영 제주」, 고도원의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정홍규의 「마을로 간 신부」,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1~3」, 박시백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등 5종 도서에 대한 배제가 진행되었다. 출판진흥원은 2016년 7월 21일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여 60종의 위탁도서가 선정되었으나, 55종 선정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2016년 8월 9일 심사위원회 결과보고를 통해 위 5종의 도서를 지원 배제하였다. 해당 사업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며, 심사위원회 이후 회의록을 작성해왔던 허점을 이용하여 출판인쇄과장의 배제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심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야 할 도서들을 선정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6년 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12차의 정지형의 「텔레비전나라의 푸푸」,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와 13차의 김종배, 조형근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4차의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 등 5종 도서에 대한 배제가 진행되었다. 12~14차 심사에 참여한 박경희는 위 도서들에 대해 전부 '적격'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14차 심사에 참여한 김경순 또한 「한국이 싫어서」에 대해 '적격'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였다. 출판진흥

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표를 ‘부적격’으로 조작하여, 2016년 8월 4일 12차, 2016년 8월 18일 13차, 2016년 8월 29일 14차의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위 5종의 도서를 지원 배제하였다.

심사위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던 전례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심사표 조작이 용이하다는 허점, 출판진흥원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허술하게 관리되던 사업의 특수성 등을 이용하여,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는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 OO의 배제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 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특정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 OO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에 개입하였다. 특히 2015,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을 준용, 3차 심사 과정에서 배제 지시를 하여 특정도서들이 탈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한 의상도서관장 최 OO이 진술이 구체적이며, 허위진술 할 까닭이 없고,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도 특정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정황 등이 확인되는 바,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의상도서관 강연자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여부 확인되지 않았다.

붙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출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제1절 | 사건 개요

1. 직권조사의 취지

“2017고합102” 사건으로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을 통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이 확인되었으며, 위원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원 등의 지시로 특정 출판사, 작가, 독서 단체를 임의로 배제한 추가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가 2017. 10. 24.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키로 하였다.

2. 직권조사의 근거 및 목적

가. 직권조사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3호(직권조사)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8일 제18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 (1) 출판진흥원에서 진행된 각종 공모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을 밝힌다.
- (2) 출판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 출판진흥원 임원 및 직원들의 인지와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하고, 업무 수행의 문제점 등을 확인한다.
- (3) 진상 조사를 통해 출판, 독서 행정에서 현장 단체와 지원 기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문서, 메일 등 모두 70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비고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미래한국	
2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2014. 2.)	문체부 이OO	
3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2014. 2. 21.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4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2014. 2. 28.)	문체부 이OO	
5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2014. 10.)	문체부	
6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		
7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8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9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0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 (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11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2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3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4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출판진흥원 N	
1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문체부	
16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7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2014. 11. 4.자)	문체부 이OO	
18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19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출판진흥원 유OO	
20	유OO 컴퓨터 복구 엑셀자료	출판진흥원 유OO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비고
21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 (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22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 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2018. 4. 23.자)		
23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2018. 4. 23.자)		
24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5	oh&kim 가필 문건	문체부 김OO	
26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오OO	
27	이OO에 대한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록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28	김OO 특검 2016. 12. 19.자 진술조서 (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29	2014, 2015, 2016 세종도서 접수목록 및 심사결과	출판진흥원	
3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간 성과보고 (2016. 7. 18. ~ 7. 22., 8. 8. ~ 8. 12.)	출판진흥원	
31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12차, 13차 관련 김OO, 000가 주요받은 메일(2016.7.27. ~ 8.16.)	김OO, 000	
32	김OO이 문체부 사무관, 주무관, 출판진흥원 본부장에게 발송한 메일 (2015. 3. 30.)	김OO	
33	도서 - 느영나영 제주 (2015. 7. 27.)	조OO, 김OO	
34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3회 관련 김OO, 000, 000이 주요받은 메일 (2016. 7. 22. ~ 2016. 7. 28.)	김OO, 000, 000	
35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 (2016. 3. ~ 2016. 11.)	출판진흥원	
36	2015, 2016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참가사 관련 자료 (2015., 2016.)	출판진흥원	
37	2016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회의록 (2016. 4. ~ 2016. 7.)	출판진흥원	
38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2016. 2.)	출판진흥원	
39	2016년 제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결과 및 심사 계획(안) (2016. 7. ~ 2016. 8.)	출판진흥원	
40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관련 박OO, 000가 주요받은 메일 (2016. 3. ~ 6. 11.)	박OO, 000	
41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박OO 심사표 (2016. 3. ~ 2016. 11.)	박OO	
42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관련 김OO, 000가 주요받은 메일 (2016. 3. ~ 2016. 11.)	김OO, 000	
43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사업 김OO 심사표 (2016. 3. ~ 2016. 11.)	김OO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비고
44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김OO 심사표 (2016. 3. ~ 2016. 10.)	김OO	
45	추가 진술서 - N (2017. 12. 11.)	N	
46	사유서 - 진술서 제출 거부 (2016. 12. 19.)	이기성	
47	2016년 제1~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개최 결과 보고	출판진흥원	
48	2016년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추진 계획(안)	출판진흥원	
49	2016년 1~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 계획(안) (2016. 4., 2016. 6., 2016. 7.)	출판진흥원	
50	리스트 - '16. 9. 27 현재	청와대	
51	[사건번호 2017노2425]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소송기록 - 이OO 증인신문조서(2017고합102)	서울고등법원	
52	2016 인문독서아카데미 제천기적의도서관 지원 신청서	출판진흥원	
53	2016 인문독서아카데미 의상도서관 지원 신청서	출판진흥원	
54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결과 보고 (제천기적의도서관)	제천기적의도서관	
55	제목없는 명단표	문체부	
56	리스트 - 2014, 2015도분(654명) - 확정	문체부	
57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사업 계획(안) 보고	출판진흥원	
58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국정원	
59	2016. 3. 2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제3기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출범회의 개최”	문체부	
60	2015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출판진흥원	
61	2015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심사회의 개최 계획	출판진흥원	
62	2015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결과	출판진흥원	
63	2016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출판진흥원	
64	2016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계획	출판진흥원	
65	2016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결과	출판진흥원	
66	[사건번호 2017노2425]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소송기록 - 이OO 증인신문조서(2017고합102)	서울고등법원	
67	리스트 - 16. 2. 1.	문화체육관광부	
68	김OO이 2018. 1. 29. 위원회에 발송한 메일	김OO	
69	참고인 N 전화조사 보고	위원회	
7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6. 30. 보도자료	출판진흥원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7인에 대하여 35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OOO	출판진흥원 좋은책선정 사업담당자	진술조서 (2018. 3. 8.)
2	최OO	출판진흥원 콘텐츠 진흥팀 차장	진술조서 (2018. 4. 20.)
3	정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장	1회 진술조서 (2017. 10. 31.)
4	N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1회 진술조서 (2017. 11. 7.)
5	정OO	출판진흥원 전 글로벌사업팀장	1회 진술조서 (2017. 11. 8.)
6	O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주임	1회 진술조서 (2017. 11. 8.)
7	김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차장	진술조서 (2017. 11. 9.)
8	O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주무관	진술조서 (2017. 11. 16.)
9	이OO	중소출판인협회 전략개발단장	진술조서 (2017. 11. 16.)
10	L	출판진흥원 사무처장	진술조서 (2017. 11. 16.)
11	박OO	초록샘플 사업 심사위원	진술조서 (2017. 11. 22.)
12	김OO	초록샘플 사업 심사위원	진술녹음 (2017. 11. 28.)
13	정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장	2회 진술조서 (2017. 12. 5.)
14	N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2회 진술조서 (2017. 12. 7.)
15	O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주임	2회 진술조서 (2017. 12. 7.)
16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1회 진술서 (2017. 12. 18.)
17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2회 진술조서 (2017. 12. 21.)
18	김OO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진술조서(2018. 1. 11.)
19	OOO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담당자	진술조서(2018. 1. 23.)
20	정OO	출판진흥원 전 글로벌사업팀장	2회 진술조서 (2017. 11. 8.)
21	정OO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장	3회 전화조사 (2018. 1. 25.)
22	김OO	초록샘플 사업 심사위원	1회 진술녹음 (2018. 1. 26.) 보고서
23	N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3회 전화조사 (2018. 2. 2.)
24	하OO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3. 14.
25	OOO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주무관	진술조서 2018. 3. 7.
26	윤OO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장	진술조서 2018. 2. 22.
27	OOO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담당자	진술조서 2018. 2. 22.
28	김OO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장	진술조서 2018. 3. 8.
29	배OO	출판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 2018. 3. 9.
30	최OO	의상도서관 관장	면담보고 2017. 11. 24.
31	강OO	제천기적의도서관 관장	면담보고 2018. 3. 2.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32	유00	출판진흥원 콘텐츠 진흥팀장	진술조서 1차 (2017. 12. 27.)
33	유00	출판진흥원 콘텐츠 진흥팀장	진술조서 2차 (2018. 3. 9.)
34	이00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진술서 (2018. 3. 5.)
35	000	출판진흥원 우수출판사업 담당자	진술조서 (2018. 2. 21.)

제3절 | 조사 내용 - 기초사실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¹⁾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²⁾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7월 27일 개원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통계 작성,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배제되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세종도서 사업

가. 개요

세종도서 사업은 문학, 교양, 학술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래 출판진흥원은 교양, 학술 2개 분야에 관해 ‘우수도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문학 분야는 ‘우수문학도서(문학나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민간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서관협회 등 사업자를 달리하며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문학부문까지 출판진흥원에 통합 운영되어 명칭을 세종도서로 바꾸었다.

나.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 (1)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출판사로부터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의 경우 총 5개 분야(시, 소설, 수필, 평론·희곡, 아동청소년)에서 599종, 학술부문 319종, 교양부문 310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 (2)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의 경우 510종, 학술부문 320종, 교양부문 455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다. 세종도서 선정절차

“사업공고 → 도서접수 →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회(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3차) 및 선정 → 도서 구입 및 배포”의 단계를 거친다.

3.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출판진흥원은 2015년부터 국내 출판물 중국시장 진출 지원과 대외 출판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을 진행하였다. 해외출판사와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출판사의 수출콘텐츠 발굴 및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출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인 출판수출 활로 개척과 함께, 한중 출판인 출판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 현지 출판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거래도 하며, 참가가 힘든 출판사들은 출판진흥원에 도서를 위탁하여, 현지에서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16년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 사업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글로벌사업팀 소관 업무로, 2016년 5월 장시성 난창에서 1회를 시작으로, 2회는 7월 충칭, 3회는 9월 장쑤성 난징에서 진행하였다. 각 회차별로 출판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출판사와 위탁도서를 선정하고, 선정된 출판사에게는 50~70만원 정도가 홍보비 명목으로 지원되며, 선정된 위탁도서에는 출판진흥원이 고용한 에이전시를 통해 저작권 계약 등의 업무 등이 지원된다.

4.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출판진흥원에서는 2016년부터 출판 저작권 수출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1~2쪽 서지 정보, 작가·작품 소개, 마케팅 정보를 요약하여 해외출판사 및 에이전시에게 즉각적인 소개 자료로 활용되는 ‘초록’과 도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후 50쪽 내외로 요약한 소개 자료 ‘샘플’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에서 사업, 예산을 이관하여,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글로벌사업팀에서 총 18회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였다. 각 회차별로 출판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도서를 선정하였다.

5.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출판진흥원은 국내 저자의 우수출판 콘텐츠를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출판사에 우수출판콘텐츠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출판 생산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출판콘

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하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진행하였다.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매년 미 발간된 우수출판콘텐츠 140편을 선정하여, 각 편당 1,000만원(저작 상금 300만원 + 출판지원금 700만원) 씩 총 1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또는 출판사가 원고와 기획안 등으로 접수를 하였다. 선정된 저작물의 경우 출판사와 출판진흥원 간에 출판 협약서를 작성하여 출간되도록 하였으며, 지원 도서 판권란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0000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게 하였다.

선정기준은 집필의도(출간의의), 참신성, 우수성, 완성도, 우대사항 등의 심사 기준과 1저자 1편과 1인 및 지역 출판사의 응모작은 전체 선정작 가운데 25%(2016년에는 30%) 내외를 선정하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 발간된 도서, 외국 번역 도서, 타 공모 전에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었다.

심사는 1단계 예비검토, 2단계 본심사, 3단계 최종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다. 1단계 심사는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소분과별로 최종 선정종수의 3배수를 선정하여, 심사위원별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소분과의 합의 결과를 논의하여 최종 선정종수의 2배수를 선정하는 2단계 심사를 진행하였다. 3단계 최종심사는 저자 중복과 분과 간 선정작을 조정하여 최종 선정작을 확정하였다. 연중 3~4월 공모 및 응모작을 접수하여, 6월 심사회의 및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7월경 저작상금을 지급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선정작 발간도서를 홍보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6.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국민들의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인문정신 고양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사업을 진행기로 하였다.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인문학 관련 강연과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의 주제로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및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인문정신 고양을 위한 문학, 역사, 철학 및 기타 학문을 융합한 ‘통섭형’ 기획과 독서와의 접목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2016년에는 10억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지역 안배를 고려한 전국 60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강사료, 교재 제작비, 모니터링 활동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였다. 공고 접수, 교육일정 안내,

활동 후기 등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 www.inmunnac-kpipa.or.kr³⁾를 운영하였다.

전국 단위의 50명 이상 교육인원 수용이 가능한 교육장 및 기반시설을 구비한 기관의 신청 자격에 따라 20회 강의, 4개 주제, 주제당 5회, 1회 2시간 강의 등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교육과정 내용의 우수성, 아카데미 운영 능력, 역량있는 강사 섭외, 수행기관의 전국 균형 분포를 위한 지역 안배 등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을 선정, 운영하였다. 출판진흥원에서는 출판기반조성본부 인재양성팀에서 사업을 담당하였다.

제4절 | 조사내용 -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1.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가. 국정원 작성, ‘문체부장관,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배제지시’(2013.11.1.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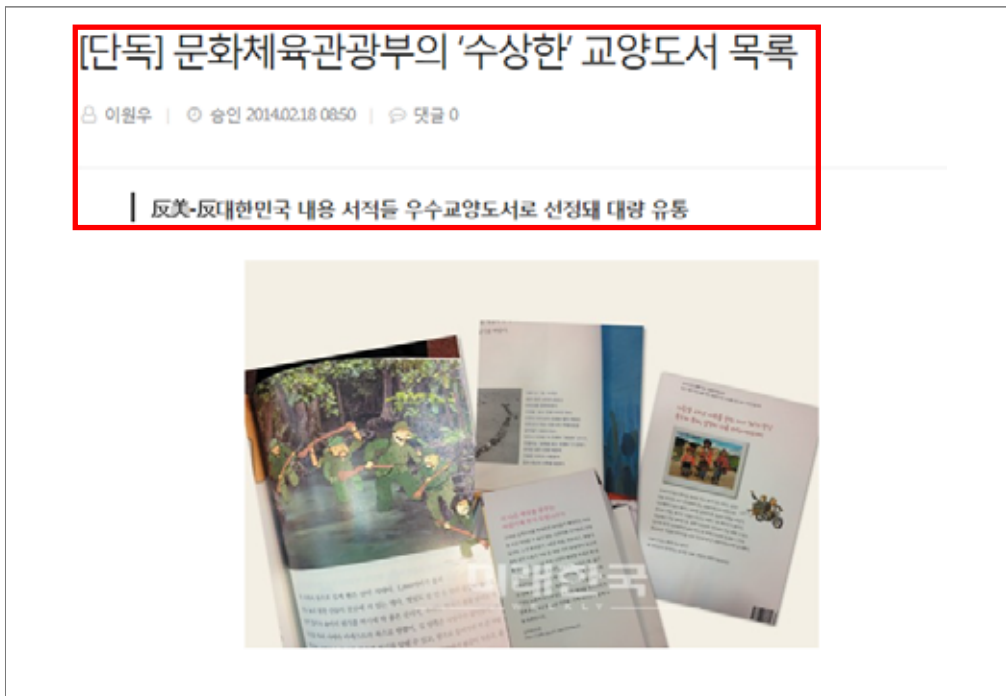
국정원 2013. 11. 1.자 작성 위 문건에는 “유진룡 장관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저자: 신은미) 제하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이 우수문학 도서에 선정되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우수문학도서 선정기관 및 주관부서를 변경, 관리를 강화하라’고 각별 지시”라는 내용이 1쪽에 기재되어 있다.

2쪽에서 “이념성향 스크린 및 도서지원 사업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동 문학나눔 사업을 우수 교양·학술도서 보급사업과 통합하여 처리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현재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는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독서 관련 사업들의 사이트가 통합 운영되는 ‘독서인’ www.readin.or.kr 을 운영하며, 2018년 4월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나. 2014. 2. 18.자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논란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경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체게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⁴⁾

4) <미래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한’ 교양도서 목록”, 2014. 2. 18.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4> (접속일자: 2018. 4. 20.)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2014. 2.)

미래한국 기사관련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의견>	
①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 ② 기자가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	
1. 제 케마라와 팔팔라 라틴아메리카 _ 최광범 글, 오봉 그림/ 판우라카스	
기자의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조망함으로써 독자에게 반미 감정을 유발 책의 일부분에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 책의 일부분에 쿠바경제가 붕괴성, 위기,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고 표현하여 쿠바 경제를 미화
다 언론사 추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신일보) '제케마라와 팔팔라 라틴아메리카'는 조금 다르다. 실존 인물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그 인물의 전기를 따라가 재미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의 길을 보면) 라틴아메리카를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의 눈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 반미 서적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책의 속을 보면)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사회, 문화 등에 관해 어린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야기로 구성하여 소개한 책 - 기자의 시각에는 책이 쿠바 경제를 미화하고 있다고 보나, 책의 앞뒤를 읽어 보면 쿠바경제가 국민의 정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로 쿠바는 나라 안에서 국민 스스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미 - 기자의 시각에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
2. 나는 빈 리덴이 아니에요! _ 레프나드 상메르 저, 양진희 옮김/ 초록개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책을 '반미주의 동화책'으로 규정짓고,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은 강조하기보다는 비국에 대한 적개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도드라진다"

해당 문건은 2014. 2.경 미래한국 기사가 문제가 되면서 청와대 해명용으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미래한국 기사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① 미래한국 기사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하고, ②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한 측면이 많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은 당시 미디어정책관 박OO, 출판인쇄산업과장 정OO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에서는 미래한국에서 보도한 도서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⁵⁾

(3)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2014. 2. 21.자)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 우수도서 심사·선정 문제

□ 논란 사항

주간지 미래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미래한국 거론 서적 사례>

- ① 청소년에게 반이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체게바라와 할랄라 라틴아메리카(서울대 최광열 작)
- ② 민주노총 김진숙 씨의 추천사를 받은 “비정규직 출근 하세요(여린이책 작가모임 작)”
- ③ 김일성 중심의 일제 항거를 담은 한국의 레지스탕스(조한성/진일반민력신상규영위원)
- ④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책(“고장난 거대기업”,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등”)

□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위 미래한국 보도 논란과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미래한국의 보도와 그 무렵 예술위의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제 삼은 국정원의 문건 등에 관하여 문체부 당시 유진룡 장관이 2014. 2. 21.경 김기춘에게 대면보고 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중 도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간지 미래한국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이에 논란이 된 도서의 선정 경위를 보면 이념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러지지 않은 측

5)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6쪽(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공판기록).

면이 존재하므로, 향후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련자 징계문제도 검토”하고,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 2013년 하반기 우수도서가 이념편향 논란이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1. 중점 검토

- 우수도서 선정 과정·결과를 둘러싼 외부 영향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 재점검
- 사업의 명칭·시행 주기, 도서선정 방법 재검토

이후 문체부 이OO 사무관 등은 2014. 2. 28.경 유진룡 장관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위 보고의 요지는 ①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 ② 선정시스템 개편·강화로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는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각 심사, ③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로 이념편향 도서가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우수도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설치, 기타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 문체부 작성,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2014. 10.)

< 미디어 >

□ 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방안

○ 추진현황 (한국출판진흥원 주관)

- (선정분야) 교양(400종), 문학(600종), 학술(330종)의 3개 분야
- (선정시기) 상반기 학술분야(6월), 하반기 교양 및 문학 선정(11월)
- (선정방법) 사업공고 → 도서접수 → 심사위원 위촉 → 심사(3차)·선정 → 도서 배포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약 6,000개소)

◆ 우수 도서 선정 기준

- ① 출판 기획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며 내용이 충실한 도서
- ② 인문학 등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
- ③ 민족문화 및 발전적 세계관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도서
- ④ (문학 분야의 경우) 우수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작품

※ 역사왜곡,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도서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

○ 개선방안

< 단계 >	< 주요 대응전략 >
도서접수	(출판사) 온라인 신청 → (출판진흥원) 접수 및 도서 개요 정리, 특이사항 점검
↓	↓
심사위원 위촉(75명)	후보자 검토 강화(출판산업진흥원, 관계기관 공동)
↓	↓
심사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10개 분과, 25개 소위, 소위원 3명) 분과위원회 구성 (10개 분과, 분과별 평균 7~8명) → 출판산업진흥원 균형적 시각의 인사를 분과장으로 지정 선정위원회 구성 (10명 내외, 각 분과장 참여) → 출판산업진흥원 균형적 시각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지정
↓	↓
심사 및 선정(45일) *(1차) 소위원회 → (2차) 분과위원회 → (3차) 최종 선정위원회	(1차) 선정목표의 300% 2차 상정(15일 심사) (2차) 선정목표의 200% 3차 상정(20일 심사) (3차) 선정위원별 검토후 회의에서 최종확정(약 10일) → 도서 결격사유(저작권위반, 출판사별 선정 총량 초과, 용성 등이 당겨 국민에게 귀차하는 것이 부정확한 도서 등), 점검시 정치편향 도서는 선정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 비공식 의견 제출

김종덕 장관이 2014. 10.경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 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였는데 그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종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미래한국의 보도) (사례)’,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문제점)’,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개선방안)’ 등이다⁶⁾.

6)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111쪽.

다. 2015. 1. 7. 신은미 우수도서 선정 취소 사건

(1) 경위

- (가) 신은미는 2011. 10.부터 2012. 5.경까지 북한 여행 경험을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매체에 2012. 6.부터 2012. 10.까지 30회에 걸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고, 이 기고문들을 묶어 동일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이후 2013. 6.경 문체부 주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우수문학도서' 사업에서 신은미의 해당 책이 수필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 (나) 2014. 11. 19. 신은미와 황○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보도를 하는 등 문제가 되었다.
- (다) 문체부는 2015. 1. 7.경 책사회에 신은미의 책에 대한 우수문학도서선정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책사회는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 (라) 문체부는 2015. 1. 13. 전국 각 지역 도서관에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 회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해당 책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에 따르면(188-189쪽), 2014. 11. 25.경 종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신은미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일이 청와대 실수비에서 문제로 거론되었고, 조운선은 그 무렵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하여 정관주는 신은미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와 함께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김소영 문체비서관과 논의한 사실, 정관주 소통비서관은 2015. 5.경 문체부 제1차관이던 박민권에게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3)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91-92쪽)

신은미 책 우수도서 취소와 관련하여 정관주는 2017. 1. 17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 11쪽)에서 “신은미의 책이 문제되었을 때, 조운선 수석이 직접 우수도서 선정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를 하라고 지시해서 제가 김소영 비서관과 협의를 하게 되었고,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문체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아 조운선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소영은 이에 대하여 김상률 수석으로부터도 지시가 있었고, 정관주도 조운선의 지시사항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우수도서 선정취소와 관련한 여러 과정이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책의 우수도서 선정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91쪽). 당시 김소영의 기억에 따르면 신은미 책에 대한 우수도서 취소는 실수비의 지시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상률, 조운선 등이 함께 이 부분을 체크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92쪽), 자신은 김상률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에 전달하였던 것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92쪽).

(4)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쪽)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 12.경 갑작스럽게 우수도서 선정이 취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N은 2014년 말이면 문학나눔 사업이 출판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여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에 우수도서 취소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우수도서 선정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니 당시 사업을 진행중이던 출판진흥원에 출판진흥원장 명의로 선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신은미 책 우수도서 선정결정 취소 사건이 일련의 세종도서 부당배제 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7쪽)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 12.경 갑작스럽게 우수도서 선정이 취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에 해당 책의 선정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 출판진흥원은 2013년에는 문학나눔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4. 2. 미

래한국 보도와 함께 신은미 책의 우수도서 취소 결정이 세종도서 선정 부당배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2.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가.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상 ‘범죄일람표4’(515-516쪽)에는 출판진흥원 2014 세종도서 문학부문, 2015 세종도서 문학 및 교양 부문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배제되었던 도서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2014년 9종, 2015년 13종). 특정 도서 배제와 관련하여 문체부 이OO는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① 2014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③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각 지시하였고, 문체부 이OO의 지시를 받은 출판진흥원 N, 유OO은 ① 2014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범죄일람표상 배제도서 목록표

순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담당 (문체부/산하기관)
1	2014년도	소설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강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2	2014년도	시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수호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3	2014년도	시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4	2014년도	시	기운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맹문재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5	2014년도	시	봄눈	도서출판 b	김병섭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6	2014년도	시	영통의 기쁨	서정시학	박희진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순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담당 (문체부/산하기관)
7	2014년도	시	장춘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8	2014년도	시	체 게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9	2014년도	소설	검은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정창근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0	2015년도	수필	공지영의 수도권 기행(2)	분도출판사	공지영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1	2015년도	시	A형 기침	도서출판 복인	정안나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2	2015년도	시	금정산을 보냈다	산지니	최영철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3	2015년도	시	꿈결에 시를 베다	실천문학사	손세실리아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4	2015년도	시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실천문학사	이재무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5	2015년도	시	집에 가자	삶창	김해자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6	2015년도	소설	단 한 번의 사랑	(주)해냄 출판사	김홍신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7	2015년도	소설	어우동, 사랑으로 죽다	(주)해냄 출판사	김별아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8	2015년도	철학/ 심리학/ 윤리학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북스	이진경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19	2015년도	철학/ 심리학/ 윤리학	파농	(주)도서출판 한길사	이경원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20	2015년도	사회 과학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21	2015년도	사회 과학	자공공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조한혜정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22	2015년도	문학 (교양)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출판인쇄산업과 이00/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00

나.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1) 참고인 김OO 관련

김OO는 2014. 3. 31.경부터 2016. 6.경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기간 동안 김OO는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3-8쪽)

- 1) 참고인 김OO는 2018. 1. 11.자 위원회 조사에서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 김OO는 출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때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OO, 김OO,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을 비롯하여 각 담당 사무관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3쪽). 세종도서에 대한 특정 도서 배제지시 하달과 관련하여서는 위에 말한 사람들과 대부분 동일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OO 사무관과 거의 대부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진행 경과는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3) 참고인 김OO는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에게 세종도서 관련 2차 선정도서 목록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개선방향” 문건과 관련하여 세종도서에 이러한 개선방향이 실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 4) 2014 세종도서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 경위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2015년 동일 사업에서는 2차 선정 목록을 엑셀파일로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인터넷으로 저자 이름과 시국선언 정도의 검색어를 넣어 연필로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표기하였고 이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이 이를 부처에 전달하라고 지시하면 참고인이 김OO 과장 또는 이OO 사무관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5)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일관되게 특정 작가 및 출판사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김OO는 “세종도서 2차 선정목록에 있는 작가들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작가 등에 대한 의견을 문체부에 주었을 뿐

이지 이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으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가 있다는 참고사항을 전달”한 것이므로 반드시 배제지시를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2-3, 7-8쪽)

- 1) 출판진흥원의 2014, 2015년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김OO는 자신이 출판을 담당하였던 것은 맞고 세종도서도 출판과 업무여서 담당하였던 사업은 맞지만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2)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문건은 김OO가 행정관으로 근무를 시작할 무렵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세종도서 관련 자료를 부탁하여 받은 문건으로, 김OO는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소위 ‘문제도서’가 우수(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3) 김OO는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사업선정 심사결과 명단을 문체부 내부 메일인 ‘나루’를 통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보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문건이 이미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보고된 내용이었고, 문건에 기재된 개선내용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4) 위 명단을 송부받은 이후 절차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도서심사과정 1, 2, 3차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2차 심사가 끝난 다음에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서 2배수 정도를 송부받으면 이를 저자 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것을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한 다음 부처에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5) 또한 김OO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도서의 저자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표에 부기하여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700~800종의 저자와 작품명을 보고 저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름하고 시국선언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문건에 부기하였다.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

면 김소영이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소영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 선정 제외 명단에 대해 검토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6) 김OO는 선정 제외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할 때 항상 우선으로 연번을 불러주었다. 2차 심사 결과가 왔을 때 10명 내외의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참고인 김소영 관련

(가) 김소영은 2013. 11.경부터 2016. 9. 2.까지 대통령 비서실 문체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90, 112-114쪽)

- 1) 2015년 하반기 김상률 교문수석으로부터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들은 단 1권도 선정되지 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김상률이 이에 대하여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 중 좌편향 책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비치되었다는 IO 보고서가 올라가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였던 말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소영의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2) 김소영은 세종도서 심사과정에 대해 문체부가 보낸 명단 및 김OO 행정관이 부기한 명단, 그 이유까지 모두 김상률에게 보고하였고, 김상률 또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김소영은 양해 요청과 함께 2차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도 김상률에게 상의하였고, 양해 요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무수석실과 협의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양해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창비와 문학동네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사안 정도로 기억하며 이에 대해 김상률과 상의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피의자신문조서 46-50쪽)

- 1) 문체부 이OO사무관은 교문수석실에서 우수도서 사업 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

정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소영은 사실이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우수도서 문제는 실수비 전달사항으로 자신에게는 모철민 수석이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2) 우수도서 사업은 사업개편이 이루어져 문학나눔 사업과 우수도서 사업이 통합되어 사업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기존 2단계 심사방법을 3단계 심사로 문학의 경우 심사방법을 강화하여 문학 나눔 추천위원회를 두는 방법으로 심사절차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밀도 있게 도서 선정을 진행하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를 거르는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 12-13쪽), 김소영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김OO 행정관이 세종도서 진행상황 전반을 김소영의 지시에 따라 김소영에게 보고한 것이 맞으며, 김소영은 모철민의 지시를 받아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4) 김OO 행정관은 문체부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이 자신에게 학술, 교양, 문학 부문 2차 심사 결과를 문체부 내부 메일 '나루'로 송부해 주면, 제가 인터넷 검색하여 시국선언 작가들을 검색하고, 2차 심사 결과 출력물에 부기한 이후,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김소영 비서관이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후 그대로 하라고 김OO에게 지시하면, 문체부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교양, 문학 부문의 선정 제외 대상 연번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면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이 출판진흥원에 통보하여 3차 최종 심사에서 선정 제외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로 학술부문의 경우 전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선정 제외 대상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김소영은 동의하였다.
- 5) 김상률은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세종도서 선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작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교문수석실의 관여로 특정 작가나 출판사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 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소영은 당연히 김상률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통령 서면보고로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방식을 개편하여 문제 도서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VIP께서 “단 1권도 안됨”이라고 지시할 정도의 사

안으로 이 엄중한 지시가 김상률 수석 때의 일로 김상률 수석이 이에 대해서 왜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3-44쪽)

김상률은 2014. 11. 18.부터 2016. 6. 7.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김상률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선정사업 심사 과정 결과에 대해서 우수 도서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 세종도서로 이름을 개명해서 진행한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선정과 관련하여 시국선언 작가들을 검색해서 명단 배제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배제명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4)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2-43쪽)

김종덕은 2014. 8. ~ 2016. 9.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김종덕은 2014,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도서들에 대한 배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배제 과정에서 자신은 보고를 받거나 관여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5)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9-11쪽)

(가) 이OO는 2013. 12. 13.경부터 2016. 4. 3.경까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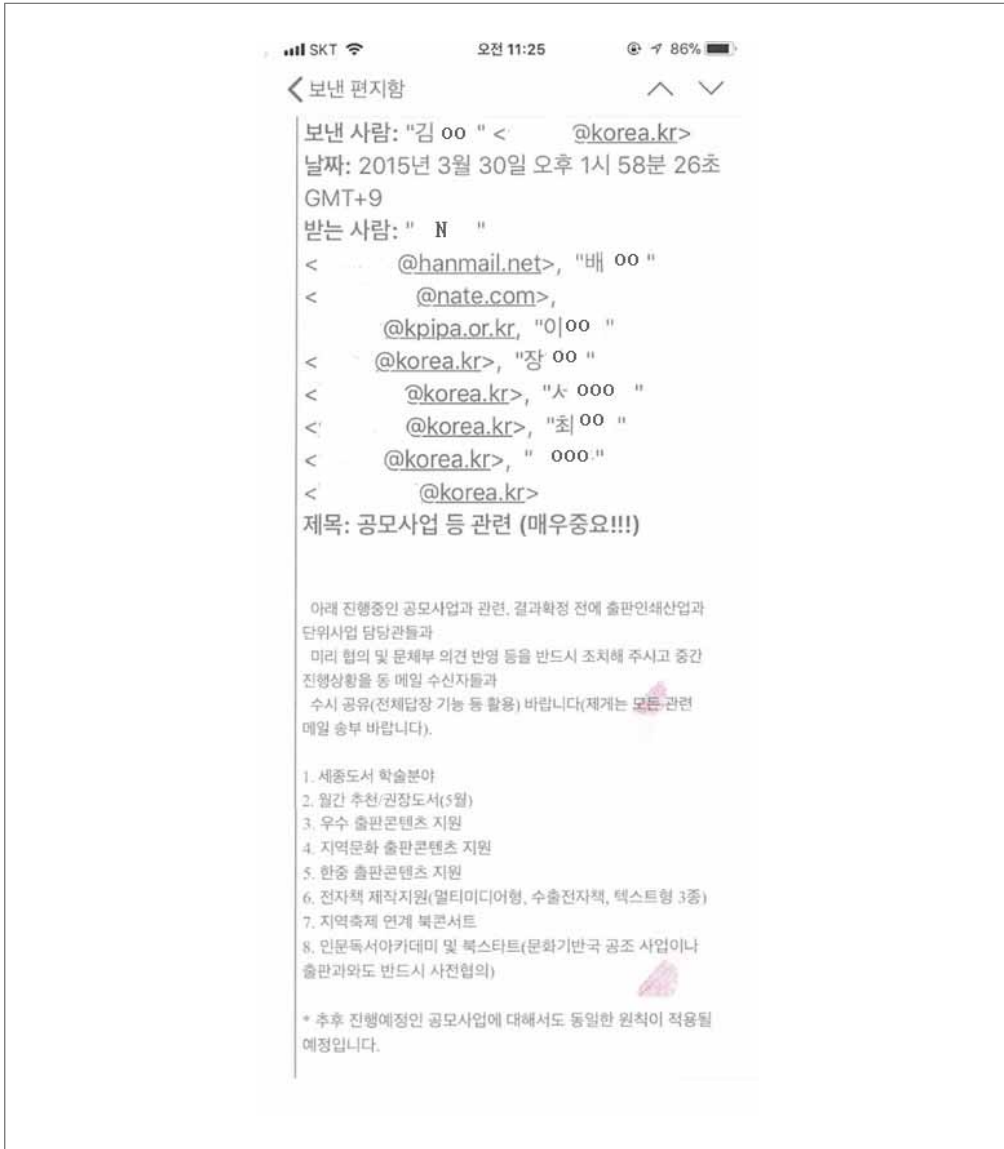
(나) 이OO는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으로부터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출판진흥원에 전달하여 제외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는 출판진흥원 유OO이 2014.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이OO의 요청에 따라 세종도서의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OO는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2014.~2015. 세종도서 사업선정 시 1~3차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보고하였다. 김OO 행정관이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명단을 보고받은 김OO 행정관은 유

선상으로 이OO에게 심사통과자 목록 중 선정제외 대상을 불러주었다. 이를 메모 하여 이OO는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 유OO 팀장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다. 유선상으로 선정제외 대상을 받고 출판진흥원에 이를 유선상으로 전달한 이유는, 기록을 남겨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 등 외부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김OO 행정관은 제외대상을 불러주면서 어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는 김OO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을 출판진흥원에서 보내준 심사통과자 목록 연번에 체크하고 이OO의 상관이었던 김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6)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및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2017. 12. 21.자 진술조서

- (가) 참고인 김OO(現 주러시아한국문화원장)은 2014. 10.~2016. 9.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나)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00 과장이 이00 사무관, 000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N, 배00 등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에 보면 “1. 세종도서 학술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공유” 바라며, 김00 본인에게는 모든 관련 메일을 송부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

김OO은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에서 위 메일을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업무 사무관, 주무관,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송부한 이유와 관련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라는 답변을 기재하였다.

(다)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2-3쪽)

- 1) 김OO은 출판진흥원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외·배제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세종도서 선정 과정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청와대 및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2014. 10. 과장 부임 직후부터 문체부 내부의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출판 분야에서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 2)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합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절차의 후반부 단계에서 산하기관 담당자들에게 검토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배제지시를 진행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 3) 배제지시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체부 실국장장과 장차관에게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진행상황 결과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라)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8-11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세종도서의 경우 미리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하여 선정절차 후반부 단계에서 김OO이 검토의견을 주는 것으로 배제지시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배제지시는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OO은 스스로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세월호 및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출판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3.16)

□ 미디어(출판) 분야

○ 세종도서 학술 부문(320종) 선정

- 공고(3.18), 접수(3.23~4.3), 심사(4~5월), 선정(6월)

☞ (추진방향) 학술 분야로 이념성 등 문제 제기 가능성 낮음

○ 세종도서 교양(450종) 및 문학(510종) 부문 선정

- 하반기에 진행(8월 공고, 11월 선정)

☞ (추진방향)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예년 선정 기준을 유지하되, **심사 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문건에서 세종도서 심사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라는 기재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공성과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정치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지원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18쪽)

(가) N은 2014. 4.경부터 2017. 6.경까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2014, 2015 세종도서 사업에서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는지에 대해 이OO 사무관의 요청에 의해서 유OO 팀장이 송부하였다.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 또한 이OO 사무관이 유OO 팀장에게 하달하였고, N은 유OO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배제지시에 대하여 당시 원장과 사무처장에게 모두 보고하였다. 원장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말만 하였다.

(다) 2014, 2015 세종도서 사업 부당배제가 일어난 경위에 대하여, 한 2년에 걸쳐서

약 100여 종에 대한 배제지시 사항이 문체부로부터 출판진흥원에 하달되었고, 유 OO 팀장과 N은 함께 100여 종에 대한 자체 검토보고서를 써서 이 OO 사무관에게 주고 이 OO 사무관에게 선정 배제할 만한 도서가 아니라는 설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최종적으로 22종만 기재되어 있지만, 지시는 훨씬 많았으며, 주로 문학과 교양 분야에 하달되었고,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유 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및 참고인 유 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가) 유 OO은 2013. 2.경부터 2016. 7.경까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 진흥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해당 부서가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유 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5쪽)
유 OO은 이 OO 사무관이 2014. 11. 처음으로 배제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 OO은 이 OO의 이러한 배제지시를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다) 참고인 유 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4-6쪽)

- 1) 참고인 유 OO은 2017. 12. 2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유 OO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 OO 과장이 출판진흥원 실본부장들에게 출판진흥원 주요사업 선정에 대하여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N 본부장으로 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 3) 유 OO은 세종도서 사업에서 주로 이 OO 사무관으로부터 배제지시를 하달받았고, 김 OO 과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제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OO 사무관은 왜 이러한 지시를 하느냐는 유 OO의 물음에 '위'로부터의 지시 이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4) 배제지시는 주로 미리 유 OO이 송부한 선정도서 목록을 보고 연번을 유선상으로 불러주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유 OO은 2014. 2. 미래한국의 보도 이전에는 별다른 배제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후부터 해당 도서사업을 둘러싸고 원장의 사임위기 등 여러 이야기가 무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문체부 이 OO 사무관이 2차 선정도서 목록을 송부하라는 요청이 시작되었고, 유 OO은 이것이 미래한국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5) 유OO은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되면 이를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N 본부장은 유OO에게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배제대상을 줄여보자고 하였고, 검토결과를 이OO 사무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도서들의 3, 4배는 되는 훨씬 많은 양의 도서들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4, 2015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2014. 11. 4.자)

참고1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		
도서명	검토의견	비고
겨울나기	저자(이수호)가 전교조위원장 출신으로 2009홍삼참사, 쌍용차 투쟁현장을 함께 했고 도서 내용에 (내용 확인-이번 경권은 목 잘린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때리고 짓밟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예 불태워버리는구나 59p 까치진4 발췌) 부분 존재	시
그리운 나무	저자(정희성)는 김근태 추모시 "그대를 잊지 못하리(동 도서 수록-한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나더러는 조시나 쓰라 하고 김근태가 또 먼저 갔다. 38p 그대를 잊지 못하리 발췌)" 장작자로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 동 도서는 2014정치운동문학상 수상작임.	시
기쁜 어린 양들	저자(맹운재)는 전대일문학상 수상자로 노동자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	시
붉은	저자(김병섭)가 노동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도서의 내용상의 부담은 없음(내용 확인-공민의 경부 실직자들 침루탄 삼키며 우리도 일하고 싶다! 목 맺하는데 노동부장관은 무엇하며 근로부장관은 쫓아지기 가셨나, 60p 실업일기-5월1일 발췌)	시
영웅의 기쁨	저자(박희진)는 99년 정부 보관문화상 수상자, 도서의 내용(내용 확인-제 몸 불태운 캣미에서 불사조가 부활하듯 캄캄절벽 노동계에 떠오른 셋발! 전대일은 불멸의 신화가 되었더니, 71p 전대일 찬가 발췌) 일부에 전대일, 위안부, 한일 관계를 다루고 있음	시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80-90년대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대상을 노래하고 시를 통해 분단, 억압을 극복하고 소통, 이해의길 모색(1985년 봄, 국가를 의심하다. 광주시민을 살해한 정부를 알게 되다. 전대일 붉은 꽃잎만 보고도 울게 되다. 1987년 봄과 여름사이, 거리에서 깨달다. 애국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2000년 여름, 너그러워지다, 11p 약력 발췌)	시
체 게바라 만세	2014대산문학상 수상작이나, 제목이 강렬하고 혁명가 체게바라를 소재로 한 시가 2편 존재(내용 확인-왜 체 게바라를 좋아하는냐는 질문에 젊은 인력거꾼은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이라고 대답한다, 105p 산탄굴라라 발췌)	시
검은 눈, 하얀 내향	저자(경창근)는 독일시민자격으로 방북, 통일문학 <동류>를 발표한사항으로 도서 내용은 통일을 염원하는 주인공이 독일에 건너가 좌익으로 몰려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럼에도 통일을 염원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소설
소년이 온다.	2014년 해운문학상 수상작이나, 저자는 "현강" 이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중학생과 그 주변 인물과 그후 남겨진 서생들의 고통 받는 내면을 그려내고 있음	소설

1)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1-13쪽)

2014. 11. 4.자로 이OO가 작성한 문건이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당초에 문체부에서 보고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이다.

해당 문건의 '보고배경'에는 '우리 부는 지난해 선정한 우수교양도서 일부가 중복감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3월 도서선정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 중', '그러나, 문학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완전히 제외하는데 어려움', '대상 도서 중 올해의 대산문학상 수상작 등 이미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선정의견 고수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문학의 경우 선정제외 대상인 도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선정의견을 고수하여 배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의 2쪽에는 '참고1.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겨울나기」, 「그리운 나무」, 「기쁜 어린 양들」, 「봄눈」, 「영통의 기쁨」,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갔을까?」, 「체 게바라 만세」, 「검은 눈, 하얀 바람」, 「소년이 온다」 등 9종의 도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OO는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위 9종의 도서를 반드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12쪽). 위 도서의 선정제외 과정에 대해서는 이O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서 알고 있지 못하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제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OO의 지시를 받은 N, 유OO은 선정제외 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문학작품으로서는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의 도서이고, 「그리운 나무」는 정지용 문학상, 「소년이 온다」는 만해 문학상을 수상한 검증된 작품이라는 의견을 이OO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OO는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인 또한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없고, 김OO 과장 등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양해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양해를 요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으나 어떤 도서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3-4쪽)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위 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0.~11.경 세종도서 ‘문학부문’ 2차 심사결과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송부하였고, 이OO 사무관은 유OO이 송부한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4. 11. 7.경 ‘2014. 11. 4.자 ‘세종도서 추진현황(하반기)’.hwp’ 파일을 첨부하여 유OO에게 메일을 송부하였으며, 유OO은 이 메일을 N 본부장에게 발송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 사무관이 첨부한 파일의 제목은 ‘세종도서의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로 참고자료에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논란 가능 도서 현황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자료에 기재된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이 당시 이OO 사무관이 선정 배제를 요구한 도서 목록이다.

(나) N 관련

1)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7-9, 14-16쪽)

가) N이 2017. 5. 12.자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녹취서에 기재되어 있다. N은 유OO 팀장을 통해서 2014. 11. 7.경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2014. 11. 4.에 작성한 지원배제대상 목록을 전달받았으며, 2014년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한 9건의 도서가 모두 세종도서에서 제외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014년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이OO 사무관이 유OO에게 선정제외 연번을 불러주었고, 유OO이 연번을 메모하여 연번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그 연번의 작가, 작품이름, 내용에 대한 문건을 만들어 N에게 보고하였으며, N은 해당 책 내용을 유OO과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4년도 세종도서 3차 최종심사(심사위원 13명, N, 유OO 참석, N 회의 진행)는 2014. 11. 14.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N은 유OO 팀장과 함께 세종도서 선정 심사 위원회에 간사로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4년도 세종도서와 관련하여 N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책을 선정해 달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책을 공공도서관 등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심사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배제지시가 하달된 특정 도서 및 저자를 언급할 수는 없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N은 위 발언이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이며, 사업의 취지상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는 책을 선정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스스로 발언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 중 「체 게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에 관하여 N은 “2014년 대산문학상 수상작이지만 꼭 선정하여야 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체 게바라 만세는 제가 선정을 제외하였으면 좋겠다”고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또한 N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를 하면서 도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미 전반적으로 책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의 요구를 알아듣고 선정 제외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8쪽)

가) N은 2017. 11. 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N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가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내질 텐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들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와 공감을 위한 문학 작품 위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3차 선정회의에는 최종 선종 종수의 2배수 혹은 1.5배수 가량의 책들이 올라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심사위원 분이 특정 시집을 포함되기를 원하셨고, 그 때 그 시집에 성폭력 등을 묘사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어디에 보내지느냐고 물으시길래, 어른들이 보면 관계없지만 청소년 쉼터 등에 보내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년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심사기준 제14조에 보면 “[문학부문] 1.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따라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2호에 보면 “수요자 관점을 종합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에 따라 발언한 것입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심사위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어떤 심사방향

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9-11쪽)

- 1) 참고인 유OO은 2017. 12. 2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3차 회의 때 심사위원들에게는 배제지시가 하달된 연번을 직접 말할 수 없어 당시 회의진행을 맡았던 N 본부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정이 되면 어떤 곳에 배포가 되고 그곳의 수요자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곳들에 배포가 되니 정서치유가 되는 책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돌려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서치유’에 대한 언급이 해당 도서들을 배제하달라는 뉘앙스를 가졌던 이유는 당시 국감 등에서 이미 블랙리스트가 언급되었고, 심사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N 본부장 등이 ‘정서치유’라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여도 정부 비판적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들을 알아서 배제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2014년 배제목록을 보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만해문학상 수상작이었고, 「체게바라 만세」도 대산문학상 수상작이었는데 이러한 책들이 배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책들이 선정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 3) 유OO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심사장에서 N이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가 청소년 쉽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내질 텐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들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와 공감을 위한 문학 작품 위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수요자들의 정서치유에 도움이 되는 책들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기억”하나, “배제지시가 내려온 도서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접수도서 목록

연번	분야	소분과	도서명	출판사	저자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126	시	시2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수호	선정	선정	비선정
127	시	시2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선정	선정	비선정
128	시	시1	가쁜 어린 양들	루름사상사	염문재	선정	선정	비선정
130	시	시3	봄은	도서출판 b	김병삼	선정	선정	비선정
132	시	시2	영웅의 기록	서정시학	박희권	선정	선정	비선정
133	시	시4	장르년월일 이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봉호	선정	선정	비선정
134	시	시4	채 계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선정	선정	비선정
455	소설	소설3	검은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장광근	선정	선정	비선정
457	소설	소설2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강	선정	선정	비선정

위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첨부 문건에 기재된 9종의 도서는 모두 3차 심사에서 선정 제외되었다.

(2)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선정 관련

(가) 출판진흥원 유OO 팀장 작성,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연번	분야	소분과	도서명	출판사	저자	선정결과	수요자추천	유O	저자	도서	비고
32	시	시1	A형 기쁨	도서출판 복면	김다은	대배			Y		
90	시	시2	공경에 시를 내다	실천문학사	고세영	우선			Y		
120	시	시3	가벼운 벗집을	작가세계	이희연	우선			Y		
126	시	시3	공경산을 보았다	안지니	최이영	우선			Y		
139	시	시3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실천문학사	이희연	우선			Y	Y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담긴 시집으로 특이사항 없음
200	시	시5	집에 가자	살랑	김대지	우선			Y		
212	소설	소설1	단 한 번의 사랑	(주)제남출판사	김두진	우선	Y		Y	Y	사람의 생존함을 믿는 이들에게는 기쁨속으로 고행자의 총명과 사색, 개인적 저항을 간 호몰로지 유려한 문장 안에 담고 있으며, 특이사항 없음
221	소설	소설1	아우름, 사랑으로 죽다	(주)제남출판사	김영미	우선	Y		Y		
250	소설	소설2	침대 없는 여자	실천문학사	신유진	우선			Y		
289	수필	수필1	공자영의 수도원 기행(1)	본도출판사	김기영	우선			Y	Y	수도원을 탐사하면서 특이 기행문으로 여행자의 총명과 사색, 개인적 저항을 간 호몰로지 유려한 문장 안에 담고 있으며, 특이사항 없음

1)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7-8쪽)

본 심사결과 목록은 2015. 10. 중순경 유OO 팀장이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선정제외 대상 도서를 통보받고 정리하여 N 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이다(7쪽). 2015. 10. 중순경 201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OO 사무관이 유선상으로 연번을 불러주고 유OO은 그 연번의 도서와 일치하는지 도서명과 저자명을 확인하였다.

유OO은 N 본부장과 배제지시를 받은 도서를 검토하였으며, 문학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내용이 없어, 해당 도서들의 검토결과를 이OO 사무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OO 사무관은 “위의 요청이 강력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4쪽)

해당 문건은 출판진흥원 유OO이 이OO로부터 선정제외 대상을 전화로 통보받아 메모한 이후, 연번을 정리하여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위 목록 중 32(정안나), 90(손세실리아), 126(최영철), 200(김해자), 212(김홍신), 221(김별아), 289(공지영)이 3차에서 최종탈락하였는데 이는 이OO가 해당 도서들에 대해 선정제외를 요구하였던 도서들이 맞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출판진흥원 유OO 팀장은 2차 심사를 마치고 3차 심사 전, 2015. 10. 중순에서 하순경 이OO가 위 명단을 불러주어 N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도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는데, 별 문제가 없어 이OO에게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더니, 이OO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능하면 노력해 달라.”고 하여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의 경우

이OO가 선정제외를 지시한 문학분야 10건 중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선정 배제되었는데, 이OO는 2017. 5. 10. 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해당 도서들이 배제가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이OO가 배제지시를 하달한 10종 중 허

형만, 서성란의 도서 2종은 선정이 되었는데, 당시 문체부에서는 N 본부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모든 심사과정이 종결되어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5년 세종도서 사업 최종 선정 공고 지연 관련

1)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0쪽)

2015년 세종도서 사업 최종 선정 공고 지연에 대해서는 선정배제 지시가 하달된 책들 중 2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문체부 김OO 과장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느냐고 연락을 하면서 최종 선정 공고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5쪽)

N 본부장이 3차 심사까지 완료되어 방법이 없다고 하자 김OO 과장이 심사위원회는 다시 개최할 수 없는지까지 물어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보통 3차 심사 이후 10일 내지 2주 정도가 지나면 선정결과를 발표하는데, 당시 선정제외 대상이었던 허형만, 서성란의 작품이 선정되어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제로 공고가 2015. 11. 27.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지연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12쪽)

2015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최종 선정 공고가 지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하나 이OO 사무관에게 유OO이 최종적으로 2종이 배제되지 못하였다고 보고를 하자 김OO 과장이 N 본부장에게 연락을 하여 심사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관련

A	B	C	D	E	F	G	H	I	J	K	L
연번	기준연도	신청분야	요목과	도서명	출판사	금저지	번역사	번역사	주요사수 건	2차 심사	3차 회의 비고
3	405	사회과학	5사회/책지 2	자공공	도서출판 또마나의 문학	조한혜정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9	956	문학	5수필/평 론/회고2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6	80	철학/심리 학/윤리학	2서양/철학 일반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북스	이진경			Y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7	96	철학/심리 학/윤리학	2서양/철학 일반	파농	(주)도서출판 현권 사	이경필				예비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24	404	사회과학	5사회/책지 2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유OO은 2017. 1. 5.자 특검 진술조서(N 대질)(진술조서 25-26쪽)에서 컴퓨터에서 복구한 엑셀자료를 제출하면서,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제외와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이 연번3(조한혜정) 「자공공」, 연번9(김기성 외 120인) 「잊지 않겠습니다」, 연번6(이진경)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연번7(이경원) 「파농」, 연번24(김윤태) 「사회적 인간의 몰락」 등 5종을 이OO 사무관이 탈락하도록 통보하였고,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의 '3차 회의 비고'란에는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9쪽)에서, 2015. 11. 초순경 이OO 사무관으로부터 교양부문 도서 배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공공」, 「잊지 않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파농」, 「사회적 인간의 몰락」 총 5종에 대한 배제지시였고 모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N은 문학 분야 이외에 교양, 학술 부문에서 선정제외 대상을 통보받아 선정제외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OO 사무관이 교양부문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N의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이OO도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18쪽)에서 동의하는 취지와 함께 본인의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선정 관여 여부

(가)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7쪽)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2쪽을 보면,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276명 중 부적합 107명, 부적합사유 중 ‘기타 등 4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OO는 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단도 청와대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청와대에서 당시 10여 명 정도의 후보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7-8쪽)

참고인 김OO는 2018. 1. 11.자 위원회 조사에서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문건에서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276명 중 부적합 107명, 부적합 사유 중 ‘기타 등 42명’” 기재와 관련하여 참고인 김OO는 세종도서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에게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것은 맞으나, 정확하게 몇 명을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배제기준

(1)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3-8쪽)

참고인 김OO는 배제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한 기준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이며, 문재인 지지선언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기준은 참고인 김OO가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실수비 이후 내부 비서관들이 주재하던 회의에서 전달받은 기준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피의자신문조서 47쪽)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해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진술조서 12-13쪽)

문학의 경우 문학나눔 추천위원회를 별도 시스템으로 도입한 이유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밀도 있게 도서 선정을 진행하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정부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를 거르는 장치로 활용되었으며, 정부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란 예컨대 정부정책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의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세월호 사건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하는 서적들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8-9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은 스스로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세월호 및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출판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7-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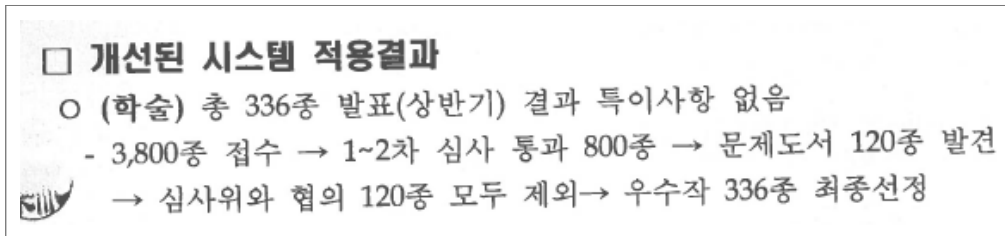
참고인 N은 문체부가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5쪽)

유OO은 2014, 2015년 사이에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문인들의 이름만 나열된 목록이 팩스로 온 적이 있는데, 기재된 이름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세월호 시국선언 문인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배제지시가 내려왔던 저자 목록을 차후에 조합해보니 세월호 관련, 정부비판적 발언들을 해온 문인들이라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 (2014. 11. 4.자)



(1) 이OO 작성 2018. 3. 5.자 진술서(3쪽)

이OO가 2018. 3. 5.자 작성 및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위 문건은 이OO가 작성한 문건이 맞으며, 해당 문건은 세종도서 선정 사업의 개선 동향을 보고해 달라는 김OO 과장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나 문건 작성에 대한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서 ‘학술’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도서 102종 발견’, ‘심사위와 협의 120종 모두 제외’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문건은 청와대 등 정보를 보고받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한 허위 보고서”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며, “1~2차 심사결과 정상적으로 탈락된 도서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어 탈락시킨 것처럼 자료를 가공한 것”이고, 이러한 허위자료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종도서 사업에 대한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016년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이OO는 2016. 4. 4.자로 타 과로 전보되어 해당 업무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2)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10쪽)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문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김OO는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있으며, 위 문건 1쪽에 보면 학술, 교양 부분에서 각 문제도서가 120종, 210종 발견되었으나, ‘심사위와 협의’ ‘모두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배제지시 사항이 하달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수도서 개선방향이 적용된 결과를 기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배제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6 세종도서에도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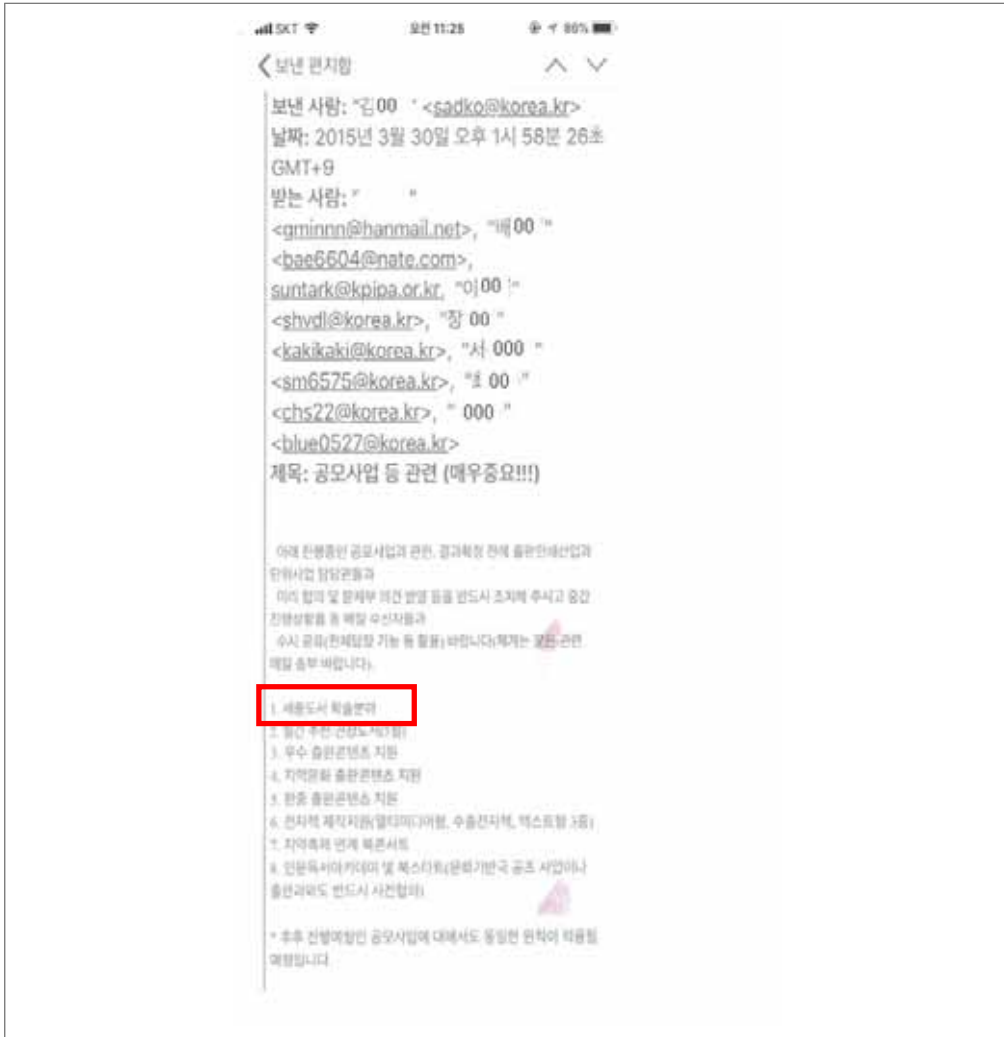
(3)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1쪽)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문건 1쪽에 보면 학술, 교양 부분에서 각 문제도서가 120종, 210종 발견되었으나, ‘심사위와 협의’ ‘모두 제외’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문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술, 교양 분야에서도 배제지시 사항이 하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으로는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도서들이 약 100여 건인데 문건에서 문제도서 몇 종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자연탈락된 책들을 이OO 사무관이 부풀려서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김OO 관련

(1)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N, 배OO 등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에 보면 “1. 세종도서 학술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 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공유” 바라며, 김OO 본인에게는 모든 관련 메일을 송부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



(2)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11쪽)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동일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3) 김OO 2018. 3. 14.자 작성 진술서(3쪽)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특정도서에 대한 배제지시를 출판진흥원 직원에게 하달한 적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배제지시가 청와대 및 국정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 세종도서 학술분야는 문체부 출판과 차원에서

특별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과장으로 부임한 2014년 10월 당해 연도 선정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문학분야 종료시까지는 업무파악 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담당과장으로서 특정도서 선정심의에 의견을 주었던 대상은 2015년 교양 및 문학, 2016년 학술 및 교양인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11쪽)

김OO은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토지조사를 하려는 학자가 쓴 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1-22쪽)

2014, 2015 세종도서 교양, 학술 분야에 모두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것인지에 대해 N은 학술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21쪽). 2016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따로 하달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2쪽).

라.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14-15쪽)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된 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학술의 경우 신청목록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재로 배제지시가 하달된 경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김OO에 대한 2017. 12. 21.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OO은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토지조사를 하려는 학자가 쓴 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유OO은 자신은 잘 모르는 내용이며 심의과정에서 자연 탈락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유OO은 2016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학술 분야까지는 자신이 담당하였으나, 배제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6년 세종도서 심사위원 관련 2018. 4. 23.자 조사보고**(1)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 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
(2018. 4. 23.자)**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강OO는 2018. 4. 23.자 전화 통화에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으나, 매년 심사 때마다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이 형광펜으로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성적 표현이 있는 작품들을 표시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
(2018. 4. 23.자)**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박OO은 2018. 4. 23.자 전화 통화에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제5절 | 조사내용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사업 선정 배제

1.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선정 배제

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참가도서 선정 개요

(1) 심사 과정 및 참여 심사위원

출판진흥원의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참가출판사 등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에 따르면 2016. 7. 6.~2016. 7. 15.까지의 기간 동안 34개 출판사와 79종의 위탁도서가 접수되었다. 1차 예비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참가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개별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7월 21일 열린 2차 본심사에서 참가출판사 및 위탁도서를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은 박OO 한국교통대 중문과 교수, 부OO 동원대 광고편집과 교수, 송OO 한양대 수행인문학부 교수, 이OO KL 매니저먼트 대표, 정OO 연아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참가하였다.

(2) 중국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출판진흥원의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참가출판사 등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에 참가 출판사 선정 기준은 '도서 질적 우수성 30%', '출판사 평가 30%', '중국시장 적합성 20%', '출판한류 기여도 20%' 등이며, 위탁도서는 '도서 질적 우수성', '중국시장 적합성', '출판한류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법적 분쟁 소지가 있거나, 전담 에이전시에 수출입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려는 출판사의 도서는 선정 제외 대상이라 명시하였다.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38 (2016. 08. 09.)]에 따르면 위탁도서 선정에 대해 '중국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심사 진행',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 도서 제외 후 선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위탁도서 배제 내용

(1) 배제 지시 내용 및 경위

(가) 심사위원회 선정보고 60종, 최종 결과발표 55종, 제외 5종

문체부가 제출한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출판인쇄독서진흥과-548(2017. 10. 24)]에 “□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 ○ 신청접수 79종, 선정보고 60종, 결과발표 55종 [*제외 : 5종] / * 문체부 제외 요청 도서 제외 후 목록을 내부 선정 보고 및 결과 발표”로 기록되어 있으며, 목록 “6-느영나영 제주”, “44-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51-마을로 간 신부”, “75-미학 오디세이 1~3”, “76-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심사선정 ○, 선정보고 ×, 결과발표 ×, 비고 : 제외”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출판진흥원의 “2016. 7. 18. ~ 7. 22. 주간 성과보고”에는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결과’ 중 위탁도서가 60종으로 선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016. 8. 8. ~ 8. 12. 주간 성과보고’에는 위 사업에 대해 위탁도서 55종 선정이라 기록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판진흥원의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38(2016. 08. 09.)]에도 위탁도서가 55종으로 선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문체부에 전달된 심사위원회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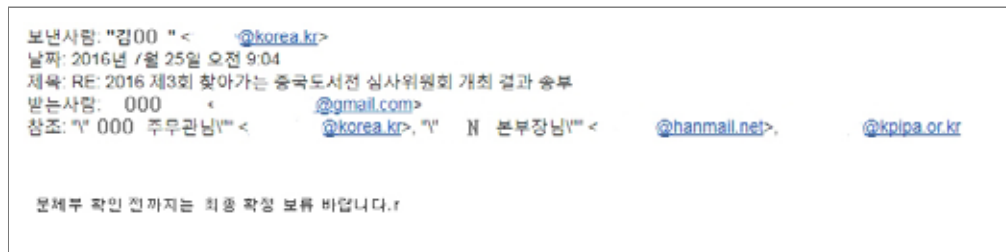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가 2016년 7월 21일(목), 출판콘텐츠센터 201호에서 진행되어 심사 내용, 선정 결과, 심사위원 박OO, 송OO, 이OO, 정OO, 정OO의 서명이 날인된 심사 확인서 등이 포함된 “2016년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 이후 2016년 7월 22일(금)에 출판진흥원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담당자인 OOO이 문체부 출판인쇄과 주무관 OOO에게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송부’라는 제목의 메일에 60종을 선정한 ‘2016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위탁도서 선정 목록.xls’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7)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출판인쇄독서진흥과-548(2017. 10. 24.)]의 첨부파일 “3. 2015~2016년 찾아가는 도서전 상정 도서목록 및 심사결과.hwp” 35쪽에 기록된 내용

(다) 배제 지시 메일을 작성한 문체부 주무관 000

위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00은, 위 000을 수신자로, 출판인쇄과 주무관 000, 글로벌사업팀장 정00,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을 참조로 하여 2016년 7월 25일에 [그림 1]과 같이 “문체부 확인 전까지는 최종 확정 보류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000은 2016년 7월 28일에 [그림 2]와 같이 “3차 찾아가는 도서전 위탁도서 목록 중 4번, 31번, 37번, 56번, 57번⁸⁾ 제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과 위 도서들을 표기한 첨부 파일을 발송하였다. 첨부파일에서 제외를 지시한 도서는 “4번, 느영나영 제주, 조지욱/김동성, 나는별”, “31번,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고도원, 큰나무”, “37번, 마을로 간 신부, 정홍규, 학이사”, “56번, 미학 오디세이 1~3, 진중권, 휴머니스트”, “57번,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⁹⁾”이다.

[그림-1] 김00이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담당자 000에게 2016. 7. 25. 발송한 메일



[그림-2] 000이 000에게 2016. 7. 28. 발송한 메일



8)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548(2017. 10. 24.) 문서에 있는 연번과 000이 2016. 7. 28. 발송한 메일의 연번이 다르다. 문체부 공문에 있는 번호는 접수된 전체 도서 목록에 대한 연번이며, 000이 메일에서 나열한 도서 번호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도서 목록의 연번으로, 해당 도서들은 동일한 도서들이다.

9) 연번, 도서명, 작가, 출판사 순

OOO은 위 배제 지시 메일에 대해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OO 과장이 메일 참조가 걸려있던 사람들에게 보류를 지시했고, 직접 목록 중 몇 번, 몇 번을 지적하면서 빼라는 지시가 있어,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배제 지시 도서 목록 표기에 대해 “자체 목록이 온 것은 진흥원에서 온 것이고, 과장(김OO)이 지적한 부분을 음영 처리하여 진흥원에 다시 보낸 파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김OO은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제외, 배제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2) 해당 도서들에 대한 배제 지시 사유

(가) 배제를 지시한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입장

도서들의 배제 사유에 대해 출판인쇄과장 김OO은 “고도원 선생님과 진중권 선생님의 작품은 중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으며, 박시백 화백님의 실록은 중세사와 근대사 부분에 지금의 중국적 사관과 충돌하는 점이 있을 수 있어 역시 중국시장에서의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욱 선생님의 작품은 중국이 반대하는 우리 해군의 대양 진출정책과 그 일환인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어 중국에 소개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홍규 신부님의 작품 역시 정부 시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담고 있어 국내에서는 의미가 있는 도서이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기획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4.3 사건, 강정해군기지 내용 때문에 배제된 「느영나영 제주」

[그림 3]과 같이 「느영나영 제주」 아래에 ‘4.3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 포함 확인’이라고 기입된 부분에 대해 OOO은 “제가 기입을 했습니다. 당시 김OO 과장이 ‘제주’이기 때문에, 4.3 사건과 강정기지 문제가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확인해보라고 하여, 진흥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기입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림-3] '4번, 느영나영 제주' 배제 지시 음영 표기와 '4.3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 포함 확인'이라 의견이 기입된 파일 - 김OO 과장의 지시로 OOO 주무관이 작성

3	칼매나무	장사는 과학이다 : 백년가게 만들기	이기훈	경제경영/ 창업	음영 처리된 부분은 한 성공할 방법을 마련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지 않는 '선(先) 성공
4	나는별	느영나영 제주 (4.3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 포함 확인)	글 조지욱/그림 김 동성	어린이	편팔지 제주가 아닌 사 [엄마 마음]의 작가 김 신철 바닷가의 풍력 발 천연기념물인 제주 조 볼에 피는 유채꽃과 무 편팔지 제주가 아닌, 사 고
5	나는별	색깔 찾아 서울 가자!	글 조지욱/그림 신 영우	어린이	하지마의 중심 도시 서 건물도 많고 차도 많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일록달록 맑고 예쁜 색:

김OO은 “중국이 반대하는 우리 해군의 대양 진출정책과 그 일환인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어 중국에 소개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3 사태 또한 그 정확한 실체를 국내외적으로 알려야 하고 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의 큰 사건이지만 정부사업에까지 포함해서 한국전쟁 당시 상대국이었던 중국에 굳이 소개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느영나영 제주」를 직접 보여주며 어느 부분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4.3 사건에 대한 언급이냐는 물음에 대해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 이 책을 왜 배제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을 떠올려 봐야할 듯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업 담당자 OOO은 “첨부파일을 열어보니,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국 도서전이다보니 중국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 때문에 배제된 것이 아니라, 4.3 사태라고, 빨간 색으로 도서명 아래 쓰여 있는 등 이와 같은 이유로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OOO의 ‘진흥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는 차원’이라는 진술에 대해 OOO은 “그걸 왜 진흥원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일 내용의 자체가 몇 번, 몇 번 제외하라는 내용이었고, 첨부된 엑셀파일도 배제 도서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고, ‘느영나영 제주’도 번호와 색깔로 표시되어 있으니, 4.3 사태 때문에 그 책을 배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대한 출판진흥원의 조치

(1) 허위로 심사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작성

(가)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심사 회의록 허위 작성

사업 담당자인 000은 배제 지시 메일을 받은 이후 “회의록을 바꿨습니다. 위탁도서에서 심사 선정에서 ‘중국시장 적합성이라는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 제외’에 문체부에서 내려온 항목을 찾아서 추가하는 형태로 회의록을 수정하였습니다.”, “문체부 확인 전까지 보류하라는 지시 메일이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배제 지시 메일이 온 이후에 보고를 했고, 그런 다음 회의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회의록은 심사위원회가 끝나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올리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글로벌사업팀장 정00은 “회의 내용은 60종이 선정되었지만, 서류상으로 55종으로 선정되었다고 회의록을 추후 작성한 것입니다.”, “김00 과장의 지시를 맞추기 위해서 회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찾아 000과 제가 회의록을 만든 것입니다.”,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을 때, 그 배제 지시를 반영한 선정 목록과 회의록을 맞춰서, 이미 받아 놓은 날인지를 뒤에 덧붙이는 형태로 회의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체부의 지시가 내려온 이후에 회의록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회의록 허위 작성을 지시한 글로벌사업팀장 정00

회의록 허위 작성을 논의한 정황에 대해 000은 “당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된 시점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고 하여, 정00 팀장, 김00 차장에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별로 놀랍지 않다는 듯이, 회의록에서 빼서 보고하면 되겠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입사한지 1년 남짓이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경험도 없고,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처지라서 여쭙봤던 것이고, 회의록 수정하라고 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회의록 허위 작성 이후)이야기 드렸습니다. 결재 올릴 때, ‘수정하여 올렸습니다’라고 팀장에게 말 했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00은 “000 주임의 이야기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고, 그쪽(문체부 출판인쇄과)에서 시킨대로 해라 라고 지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글로벌사업팀의 김OO 차장은 “OOO 주임이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는 함께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배제 지시 및 회의록 허위 작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지 여부

(가)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의 인지 여부

OOO, 김OO으로부터 배제 지시 메일을 수신한 부분에 대해 N은 “참조로 되어있어서 받기는 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메일들을 주고 받았던 터라 열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업무가 정OO 팀장 담당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도서전은 제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진흥원의 모든 개별사업은 팀장 단위에서 이뤄지며 저는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배제 지시에 대한 출판진흥원 차원의 논의 여부에 대해, 정OO은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에서 목록이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하거나 보고해야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OOO 주무관과 OOO 주임이 주고받은 메일은 항상 N 본부장과 김OO 과장이 함께 받아봤기에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사 결과 수정을 결재 과정에서 보고하였는지에 대해, “회의록이 사후에 작성되기도 하였고, 문체부의 배제 지시 메일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본부장(N)에게 특별히 보고할 사안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의 내부결재 문서인 “2016년 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38(2016.08.09.)]에는 “본부장 전결 N”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나) 사무처장 L의 인지 여부

출판진흥원 사무처장 L은 “연초 계획은 원장이 하고, 도서전 전체 언제, 어디로, 몇 개의 출판사가 참여하고, 위탁도서는 몇 종이 참여하고, 예산 등에 대한 결재는 사무처장에게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결재 시,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대한 언급에 대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N은 L 사무처장이 배제 지시 및 회의록 임의 수정의 인지 여부에 대해 “행사 일시, 몇 종 선정, 예산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되지, 그 경과까지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심사위원들에게 변경된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 과정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심사 결과 변경을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하였는지에 대해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회의록을 공유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업 담당자 OOO은 “회의록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가.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개요

(1) 심사 과정 및 참여 심사위원

‘수출도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은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접수를 거쳐 심사를 하고, 심사 방법은 월 2회, 2주 접수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은 내부 위원으로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 협업 위원으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 부분부장 박OO, 외부 위원으로 김OO, 김OO, 김OO가 참여하였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일정 등을 고려 1명씩 심사에 참여하였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OO는 “메일로 의뢰가 들어오면, 해외 출장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절을 했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수락했습니다. 심사 자료를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엑셀파일에 의견을 달아, 다시 메일을 반송하는 형태였습니다.”, “도서를 직접 살피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책을 살피는 형태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심사라서, 엑셀파일에 심사결과지가 옵니다. 심사위원들이 담당자에게 심사표를 작성하여 직접 메일로 발송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 본부장이 위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 위 N은 “이전(2015년까지) 번역원에서는 내부 심사위원만으로 추진했던 전례도 있고, 지원 규모도 2, 30만원 내외라서, 금액이 소진 될 때까지 진행하는 것이라서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만 따로 꾸리지 않고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해외 시장 적합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

“수출도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도서의 질적 우수성, 해외 시장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외 기준은 ‘유사 사업을 통해 번역 지원을 받은 도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이 사업은 이 전에 번역됐던 책들, 현저히 가치가 없는 책들, 번역의 가치가 없는 책들을 제하고”라고 진술했으며, 위 N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 부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 색채가 강할 경우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물 같은 경우도 전부 선정하기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나. 2016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12, 13차에서의 배제 내용

(1) 배제 지시 내용 및 경위

(가) 문체부에 선정 검토 요청 메일 발송

출판진흥원의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담당자인 OOO는 2016년 7월 27일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주무관 OOO를 수신자로, 글로벌사업팀장 정OO,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 출판인쇄과장 김OO를 참조로 하여 “[출판진흥원]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도서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2016년 8월 10일 “[출판진흥원]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도서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문체부에서 하달된 배제 도서 목록

위 12차 관련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김OO은 2016년 7월 27일에 [그림 4]와 같이 OOO를 수신자로 정OO, 이OO, N을 참조로 하여 “제외 : 차남들의 세계사, 삼살개개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라는 내용의 메일과, [그림 5]와 같이 “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메일 드린 3종은 제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림-4] 김OO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담당자 OOO에게 2016. 7. 27. 발송한 배제 지시 메일

보내는사람: "김 OO" < @korea.kr>
 받는사람: "OOO" < @kpipea.or.kr>
 참조: "정OO" < @kpipea.or.kr>, "OOO 전문관님" < @korea.kr>, "N" < @kpipea.or.kr>, "김OO 과장님" < @nate.com>
 보낸 날짜: 2016-07-27 13:53:11

제목: RE: [출판진흥원]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도서 검토 요청

○ 제외: 차남들의 세계사, 샅새개가 독에 갇힌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그림-5] 김OO이 OOO에게 2016. 7. 27. 발송한 배제 지시 메일

보낸사람: "김 OO" < @korea.kr>
 날짜: 2016년 7월 27일 오후 3:52
 제목: RE: Re:RE: [출판진흥원]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도서 검토 요청
 받는사람: "OOO" < @kpipea.or.kr>
 참조: "N" < @hanmail.net>, "정OO" < @gmail.com>, "OOO" < @korea.kr>

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메일 드린 3종은 제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13차 관련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김OO은 2016년 8월 16일 OOO, 정OO, N 우송신자로, OOO를 참조로 하여 [그림 6]과 같이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은 제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림-6] 김OO이 OOO에게 2016. 8. 16. 발송한 배제 지시 메일

보낸사람: "김 OO" < @korea.kr>
 날짜: 2016년 8월 16일 오후 2:14
 제목: RE: Fw:[출판진흥원]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 도서 검토 요청
 받는사람: "N" < @hanmail.net>, "정OO" < @gmail.com>, "OOO" < @kpipea.or.kr>
 참조: "OOO" < @korea.kr>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은 제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당시 김OO 과장에게 직접 메일이 왔습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2차례의 메일에 7종 4건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메일 수신자로 명기된 김OO은 진술과정에서 선정 배제 지시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배제 지시와 일치하는 12차, 13차 선정 결과 보고 내용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16(2016. 08. 04.)]에 「차남들의 세계사」,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가 탈락되었고,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67(2016. 08. 18.)]에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이 탈락되었다.

(2) 해당 도서들에 대한 배제 지시 사유

(가) 배제 지시 메일을 발송한 출판인쇄과장 김OO 입장

김OO은 해당 도서들에 대한 배제 지시 사유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창작과 출판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대상으로는 공공성과 보편성 확보 측면에서,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출판콘텐츠로써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창작품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사업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정부예산 지원에 자유시장경제에 문제제기 하는 작품들이 포함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 “제 생각에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정부 사업에서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논리들은 책으로 출간되고, 읽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배제 지시 도서들을 직접 검토했느냐는 물음에 “완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평과 서지 정보 등은 확인했고, 책의 일부분은 확인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배제 사유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문체부 주무관 000은 “과장이 직접 메일을 보낸 것인데, 참조로 전달된 거라 그 상황에서 제가 나서거나, 알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00은 “찾아가는 도서전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업무 지시라 여겨 묻지도 않았고, 진흥원 내에서 논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사업 담당자 000는 “배제 사유를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지시라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대한 출판진흥원의 조치

(1)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표 조작 후 결과보고 진행

(가) 심사표 변경 내용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16(2016. 08. 04.)]와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67(2016. 08. 18.)]에 첨부된 박00의 심사표와 박00가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의 내용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1) 12차 결과보고의 박00 심사표 변경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16(2016. 08. 04)]에 첨부된 ‘3.2 김00¹⁰⁾ 출판수출자문위원’의 심사표에는 「차남들의 세계사」에 대해 ‘심사결과 - 부적격, 의견-공란’,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에 대해 ‘심사결과 - 부적격, 의견 - 수출경쟁력이 낮아 샘플 번역 지원이 부적절함.’으로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박00가 2016년 7월 26일 000에게 보낸 [Re][출판진흥원]2016년 제12차

10) ‘3.2 김00 출판수출자문위원’ 심사표에 ‘심사위원 : 박00’라고 날인이 되어 있으며,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에 박00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보고, 박00가 2016. 7. 29. 사업 담당자인 000에게 심사표를 발송한 것 등을 종합하였을 때 ‘박00를 김00’으로 잘못 기입한, 보고 과정에서 단순 오기로 판단된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의뢰' 제목의 메일에 첨부한 '붙임 2.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_박OO.xls'에는 연번 2의 「차남들의 세계사」의 심사결과를 '적격'으로, 의견은 「차남들의 세계사」는 번역원에서 2015년말 영어 기획번역으로 저자 및 출판사의 동의하에 진행하고 번역 중 작품임. 번역원에서는 초록을 제작하지 않았고 중국어 초록 신청이 함께 들어온 것이므로 완료 후 영어 초록의 경우에는 번역원과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연번 9의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과 연번 11의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의 심사결과를 '적격'으로, 의견은 공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7] 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박OO 심사표 조작 내용 (위 - 박OO가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 아래-출판진흥원 결과보고 붙임 박OO 심사표)

[붙임과]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										각각 부칙과
연번	신청사	출판사	도서명 (출판 시 도서정보페이지로 적용)	글	그림	장르	언어	신청구분	심사결과	의견
2	민중사	민중사	차남들의 세계사	이기호	-	문학/역사/세계사	영어 중국어	초록	적격	「차남들의 세계사」는 번역원에서 2015년말 영어 기획번역으로 저자 및 출판사의 동의 하에 진행하고 번역 중 작품임. 번역원에서는 초록을 제작하지 않았고 중국어 초록 신청이 함께 들어온 것이므로 완료 후 영어 초록의 경우에는 번역원과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음
9	창조희망	창조희망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정지람	정지람	100/청소년	독일이 영어	샘플	적격	
11	창조희망	창조희망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정지람	정지람	100/청소년	독일이 영어	샘플	적격	

3. 심사위원별 심사표										각각 부칙과
연번	신청사	출판사	도서명	글	그림	장르	언어	신청구분	심사결과	의견 (부칙과일 경우 상세 의견 기입)
2	민중사	민중사	차남들의 세계사	이기호	-	문학/역사/세계사	영어 중국어	초록	부칙과	
9	창조희망	창조희망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정지람	정지람	100/청소년	독일이 영어	샘플	부칙과	내용 불합격이 남아 샘플 번역 자음이 부칙과됨
11	창조희망	창조희망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정지람	정지람	100/청소년	독일이 영어	샘플	부칙과	내용 불합격이 남아 샘플 번역 자음이 부칙과됨

심사일자 2016. 7. 28
 심사위원 박OO

이를 종합하면, [그림 7]과 같이 박OO의 심사표 중 3종의 도서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란을 임의로 조작, 변경하여 출판진흥원의 결과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3차 결과보고의 박OO 심사표 변경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67(2016. 08. 18.)]에 첨부된 ‘3.2 박OO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 부분부장’의 심사표에는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 대해 ‘심사결과 - 부적격, 의견 - 도서 소재 특성상 중화권 수출 경쟁력이 낮음.’으로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박OO가 2016년 8월 16일 000에게 보낸 ‘[Re][출판진흥원]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의뢰’ 제목의 메일에 첨부한 ‘붙임 2.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_박OO.xls’에는 연번 10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의 심사결과를 ‘적격’으로, 의견은 공란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박OO가 작성한 심사표에는 심사일자가 8월 12일로 되어 있으나, 출판진흥원의 결과보고에는 8월 16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000는 “날짜가 변경된 부분은 심사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타자가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문체부 검열을 받으면서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일정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날짜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8월 16일 김OO으로부터 배제지시 메일을 수신한 이후, 박OO의 심사결과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심사일자도 8월 12일에서 8월 16일로 변경한 것이다.

[그림-8] 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박OO 심사표 조작 내용 (위 - 박OO가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 아래-출판진흥원 결과보고 붙임 박OO 심사표)

1. 붙임과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

연번	신청사	출판사	도서명 (공적 서 도서정보제외자료 비공개)	글	그림	장르	언어	신청구분	심사결과	의견
10	사이언스북스	사이언스북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	인문/역사	중국어	초록	적격	

심사일자: 2016. 8. 12.
심사위원: 박OO (인)

2. 심사위원별 심사표

3.2 박OO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 부분부장

연번	신청사	출판사	도서명	글	그림	장르	언어	신청구분	심사결과 (적격/부적격)	의견 (부적격일 경우 상세 의견 기재)
10	사이언스북스	사이언스북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	인문/역사	중국어	초록	부적격	도서 소재 특성 상 중화권 수출 경쟁력이 낮음

심사일자: 2016.08.16.
심사위원: 박OO (인)

이를 종합하면, [그림 8]과 같이 박OO의 심사표 중 1종의 도서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란, 심사일자를 임의로 조작,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12, 13차 심사결과에 대한 박OO의 진술

박OO는 제12차 심사 결과에 대해 “저는 전부 적격 처리하여 보냈으며, 「차남들의 세 계사」같은 경우, 적격으로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기타 의견으로 초록의 경우 번역원과도 사후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제13차 심사 결과에 대해 “저는 적격 처리하여 보냈으며, 부적격 처리한 도서는 한건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심사표 조작 과정

1) 심사표 수정, 조작을 지시한 글로벌사업팀장 정OO

사업담당자 OOO는 김OO으로부터 배제 지시 메일을 받은 이후, “팀장과 상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팀장이 심사위원에게 전화로 심사결과를 수정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정OO 팀장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지에 ‘수출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들어 해당 도서를 탈락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 다. 심사표를 바꾸고, 결과보고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라고 진술 하고, 심사표 조작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 대해 “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내용을 바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아마, 제가 (조작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출판인쇄과의 지시에 대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수출경쟁력이라는 표현을 들으니, 내가 지시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OOO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전임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담당자가 무슨 이유로 제출된 심사표를 변경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출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들어 탈락한 경우도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이런 식의 표현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적격 처리된 도서가 거의 없었고, 수출경쟁력이라는 표현도 생소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OOO는 심사표 조작 지시자가 정OO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정OO은 이를 부인하고 있

다. 그리고 12차 배제 지시 메일을 받은 날이 7월 27일이고, 글로벌사업팀장이 정OO으로 바뀐 시점이 7월 18일로 며칠 차이가 나지 않아 OOO의 기억에 착오라고 판단되며,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516(2016. 08. 04.)] 결재에 '정OO'이 팀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심사표 조작이 자신의 지시였다고 정 OO이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이 OOO에게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따르기 위해 심사표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2) 심사위원들에게 심사결과 변경을 요청

사업 담당자 OOO는 “당시 팀장이 심사위원에게 전화로 심사결과를 수정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OO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줄 수 있냐고 여쭙봤습니다. 김 OO 심사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 요청에 응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사결과를 수정해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OO는 “작년(2016년), 당시 출판진흥원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적격’으로 심사결과를 송부한 도서에 대해 제고해줄 수 없느냐는 전화 제의를 받았다. 정지형 작가의 책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와 자본주의를 비판한 책이라서 문체부 간부로부터 이 책의 통과를 제고하라는 의견이었다고 전달받았다. 당시 간부가 누구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지원도 많지 않은 사업이며, 이런 식으로 관여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심사 결과를 수정하는 부분을 거부하였으며, 담당자였던 OOO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심사 결과를 고쳐달라는 제안이 의아하고, 처음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¹¹⁾

심사위원 김OO, 박OO는 심사결과 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3) 사업담당자 OOO의 심사표 조작

사업 담당자 OOO는 심사표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표를 바꾸고, 결과보고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이때에도 팀장이 언급했던 ‘수출경쟁력’이라

11) 12차 「차남들의 세계사」의 경우 김OO는 문체부의 배제 지시와 동일한 부적격으로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김OO는 미문화원 방화사건이라 중국 통과가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본인이 직접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는 표현을 써서 제가 고친 것 같습니다.”, “‘도서 소재 특성상 중화권 및 영미권 수출 경쟁력 낮음’의 표현은 자주 썼던 표현이라 제가 기입했던 것 같고”라고 진술하였다.

심사표 조작 당시 000의 근무 기간에 대한 물음에 대해, “청년인턴을 마치고, 계약직으로 전환된지 3, 4개월 되었을 시점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출판진흥원 내부에서 문체부의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으며, 해당 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 등을 이용하여 심사표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배제 지시 이후 000가 작성한 N 심사표

출판진흥원의 12, 13차 결과보고에 첨부되어있는 N의 심사표에는 김00이 배제 지시한 도서에 대해 전부 ‘부적격’ 처리 되어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N의 경우, 12, 13차 심사 당시 작성했던 심사표 제출요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문서에 첨부된 “3.1 N 출판산업진흥본부장”의 각 심사표에 기록된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는지, 김00 과장의 배제 지시 내용을 파악한 후 심사를 진행했는지, 김00 과장의 배제 지시 내용과 심사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물음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11일에 제출한 추가 진술서에서 “저는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믿고, 접수된 내용을 사전검토하게 하였고 그 의견대로 심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000는 “(12, 13차 N의 심사표를) 김00 과장의 지시와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맞춰 제가 작성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N 심사표가 김00의 배제 지시 이후에 작성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이미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맞춰 작성해 놓고 있다가 김00 과장 지시를 받고 수정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배제 지시 및 심사표 조작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지 여부

(가)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의 인지 여부

N은 김00의 배제 지시에 대해 “참조에 제 메일이 있어 받기는 했을 테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보고가 없어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담당

자와 팀장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만을 믿었으며, 심사위원으로서 결과를 재확인하고 업무 진행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2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16(2016. 08. 04.)]와 ‘2016년 제13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567(2016. 08. 18.)]에는 ‘본부장 전결 N’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으며, 각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3. 심사위원별 심사표’에도 N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000는 N 본부장이 심사표 조작으로 심사결과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사무처장 L의 인지 여부

출판진흥원 사무처장 L은 “초록 샘플 사업은 제가 결재를 하지 않는 사안이라서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배제 지시 정황

(1) 심사위원들의 심사표와 출판진흥원 결과보고의 내용 상이

(가) 출판진흥원의 14차 결과보고에 「한국이 싫어서」 선정 탈락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609(2016. 08. 29)]의 [붙임1]의 연번 10의 「한국이 싫어서(출판사 민음사, 글 장강명)」에 대해 박OO 심사표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와 ‘도서 소재 특성 상 영미권 수출 경쟁력이 낮음’으로, 김OO 심사표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와 ‘로컬 콘텐츠 특성상 초록 지원으로 인한 해외시장의 호의적 반응을 살펴본 후 추후 샘플 번역 지원하는게 좋을 듯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심사위원들은 「한국이 싫어서」에 대해 적격으로 심사

2016년 8월 22일 심사위원 김OO이 000에게 보낸 ‘Re[출판진흥원]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의뢰’ 제목의 메일에 첨부한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표_김OOxlsx’에는 연번 10의 「한국이 싫어서」의 심사결과를

이를 종합하면, 배제 지시 경위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김OO은 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한국이 싫어서」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OOO는 이를 따르기 위해 [그림9]와 같이 박OO와 김OO의 심사표를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심사표 조작이 용이했던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특수성

(1) 비중이 크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라는 인식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특성에 대해, 글로벌사업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김OO은 “이 사업은 팀에서 큰 비중을 다루는 사업도 아니라서, 일상적인 업무라서 이런 사업에서 까지 배제 지시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N은 “초록샘플 사업은 단어별, 문단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소액사업으로 이러한 사업까지 문체부에서 관여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 진술하였다. 위 박OO는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경우 적은 규모의 지원 사업이고, 출판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이런 식의 메일(배제 지시)이 오갔는지 생각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문체부 주무관 OOO 또한 “해외진출을 위한 출판사 지원 사업이어서, 당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정산을 할 때, 해외 수출이 되었느냐가 핵심이었지, 어느 특정 도서의 초록, 샘플을 지원했는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심사위원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 과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OO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는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조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결과 조차도 통보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심사위원 김OO도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한 이후, 심사 결과에 대해 통보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은 없음”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업담당자 OOO도 심사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했냐는 물음에 대해 “아니오.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한 업무지시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사업의 전 과정을 사업담당자 1인이 전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N은 “저는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믿고, 접수된 내용을 사전검토하게 하였고 그 의견대로 심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담당자 OOO도 “이 사업 심사를 초반에 2, 3번 정도 N 본부장이 심사를 하다가 제게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 의견들에 맞춰서 심사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임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담당자가 심사표를 변경해서 결재를 올린다면, 팀장 위치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내온 심사결과를 팀장이 챙기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N은 심사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도 “결과는 공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업 담당자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 진행과정 조차 팀장, 본부장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심사표 임의 조작이 60여 곳으로 사업 전반이 허술하게 관리

출판진흥원이 작성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글로벌사업팀-899 (2017.11.15.)]의 ‘2016년 초록 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보고’(1~18차)와 심사위원 박OO, 김OO, 김OO이 작성한 심사표를 비교한 결과 60여곳의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박OO 심사표 16곳, 김OO 심사표 5곳, 김OO 심사표 45곳으로, 변경된 사항은 심사날짜 14곳, 성명과 날인 부분 4곳, 심사결과 및 의견 41곳 등이다. 특히 8차 김OO이 출판진흥원에 전달한 심사표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출판진흥원 결과보고에는 김OO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으며, 9회차 김OO 심사표에는 ‘김OO의 서명’으로 추정되는 그림 파일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12차 박OO의 심사표의 경우, ‘김OO’으로 오기 표기 되어 있는 등 사업 전반이 허술하게 처리, 관리되었으며, 이에 대한 점검조차 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OO의 경우 14회차의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¹²⁾, 「경서 친구 경서」, 「먹고 말거야!」, 「쪽지전쟁」, 「사라지지 않는 노래」, 「순희네 집」, 「여우 소녀 미량」, 「우리는 가족일까」, 16회차의 「진시황의 책교실」, 「썬과 함께한 열한번의 건축수업」, 「마사코의 질문」, 「진짜 백설공주는 누구일까」, 「최기봉을 찾아라」, 18회

12)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라. 기타사항”에서 다시 언급

차의 「콜센터 연봉 1억녀의 비밀」, 「독공」, 「떡이 최고야」의 도서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였으나, 출판진흥원 결과보고에는 적격으로 변경된 심사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위 000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글로벌사업팀장 정00은 “해당 사업은 예산규모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소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의 취지 등을 이용하여 타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맞춰 최대한 적격 처리하는 식으로 업무를 편의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6절 | 조사내용 - 기타 사업들에서의 배제 정황

1.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

가.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과정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회의 개최 결과 보고’[인재양성팀 - 411(2016. 4. 18.)]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판진흥원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 www.inmunac-kpipa.or.kr를 활용한 온라인을 통해 116개 공공도서관과 문화원 등의 선정 기관 접수를 받았다. 2016년 4월 5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 회의실에서 김00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이00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¹³⁾, 김00 카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남0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배00 출판기반조성 본부장 등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였다. ‘주제의 적절성, 강사의 적합성, 수행기관 운영 능력’ 등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동일 점수일 경우 지역 안배를 위해 소외 지역을 우선 선정기로 하여,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으로 60곳을 선정하였다.

13) 문화융성위원회 소속으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 정책자문의 필요성으로 출범하였으며, 이00은 3기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장으로 활동하며, 전자신문 eTimes 기획경영실장과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2016. 3. 28. 문화융성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

(1) 의상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시인 이상국이 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사건(사건번호 2017출2)에서 언급된 ‘의상도서관’은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결과’, ‘연번 2 / 권역(기관수) 강원도(5곳) / 수행기관명 의상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의상도서관이 제출한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 신청서(2016. 3. 29.)는 2016. 5. 6. ~ 2016. 9. 28.에 ‘통섭의 세계에서 만난 문학과 생물학’을 주제로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의상도서관의 사업은 문학, 철학, 예술, 종합 등 4개의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이OO, 임OO, 최OO, 배OO, 김O, 최OO를 강연자 등을 섭외하였다. 2016. 3. 29.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된 지원 내역에는 이상국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제천기적의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제천기적의도서관’은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결과’, ‘연번 59 / 권역(기관수) 충청북도(2곳) / 수행기관명 제천기적의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제천기적의도서관의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 신청서(2016. 3. 29.)를 통해 제천기적의도서관은 2016. 5. 3. ~ 2016. 10. 12.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신청서를 출판진흥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학, 역사, 철학, 문학 등 4개의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원OO, 강OO, 김OO, 이OO 등의 강연자 등을 섭외하였다.

그렇지만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결과 보고(제천기적의도서관)(2016.11.17.)’에 따르면 강연자가 강OO, 이OO, 김OO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원OO은 누락되고, 김OO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다. 출판인쇄과장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관여 정황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들과 출판진흥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게 ‘제목 : 공모사업 등 관련(매우중요!!!)’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1. 세종도서 학술분야, 2. 월간 추천/권장도서(5월), 3.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4. 지역문화 출판콘텐츠 지원, 5. 한중 출판콘텐츠¹⁴⁾ 지원, 6. 전자책

제작지원(멀티미디어형, 수출전자책, 텍스트 형 3종), 7. 지역축제 연계 북콘서트, 8. 인문독서아카데미 및 북스타트(문화기반국 공조 사업이나 출판과와도 반드시 사전협의)의 사업을 열거하며,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 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 공유(전체답장 기능 등 활용) 바랍니다(제게는 모든 관련 메일 송부 바랍니다).’와 ‘추후 진행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OO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주무부서가 아닌 출판인쇄과에 보고, 협의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과들끼리 횡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보를 교환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관련 특정 강연자나 도서에 대한 배제는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참고인 최OO 진술 (2017. 11. 24. 전화면담 보고)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선정 기관인 의상도서관 관장으로, 2016년 출판진흥원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을 받아 ‘통섭의 세계에서 만난 인문학과 문학’ 제목의 강연 사업을 진행하였다.

준비과정에서 이상국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프로그램 기획안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였으나, 출판진흥원 담당자로부터 ‘이상국의 경우 유명인사이기도 하여 부담스러우니, 타인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진술하였다.(이상국에게는) 죄송스러웠으나, 출판진흥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강연자 교체는 시기적으로 어려워 기존 강연자들의 강연 회차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전화로 의견을 주고 받아 이상국을 강연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사업 담당자 한OO의 진술 (2018. 2. 22. 진술조사)

출판진흥원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담당자로, 2014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설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14) ‘한중 출판콘텐츠 지원’의 오기로 보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특정 작가와 강연자 등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고, 이상국은 모르는 사람이며,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나 의견을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의 심사위원 목록, 접수목록, 기획안 등 최종 선정 전에 문체부에 보고한 적이 없으며, 최종 선정 이후에는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 본부장이 인문독서아카데미 선정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진행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내부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다.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섭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문체부로부터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 강사를 바꿔달라는 언론기사가 나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의상도서관 강연자 교체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며, 당시 강연자 중 스님이 한명 있어 철학은 괜찮으나, 종교적 이야기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니 당부 차원에서 연락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인재양성팀장 윤OO의 진술 (2018. 2. 22. 진술조사)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장으로 근무했던 자료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담당하였다.

‘의상도서관’ 강연 배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진술하였으며,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자로 섭외된 사람에 대해 출판진흥원에서 요청하여 담당자를 변경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문체부 주무부서가 ‘인문정신과’였으며, 출판진흥원의 사업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문체부에 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보고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출판기반조성본부장 배OO의 진술 (2018. 3. 9. 진술조사)

출판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자료,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총괄하였다.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위에 대해, 사업에 대해 이

해도가 높은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따른 것 일 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의상도서관 강연 배제 지시에 대해, 의상도서관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어본 곳으로 잘 모르겠으며, 이 업무는 독립적 성격이 강해 한OO, 윤OO, 배OO 외에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체부의 사전 보고 및 승인에 대해 출판기반조성본부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이런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문체부 주무관 OOO의 진술 (2018. 3. 7. 진술조서)

문체부 인문정신정책과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자료, 출판진흥원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담당하였다.

출판진흥원의 담당자들로부터 각종 선정사업들에 대해 최종 결정전에 진행경과, 심사위원 목록, 선정 목록 등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최종 선전 정에 내역을 보고 받은 이유에 대해, 기존 관례였고, 업무 총괄자로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 사업에 대해 배제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며, 공식적인 결정과 논의 과정에 주무관인 당사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OO 사무관이나 인문정신정책과장이 특정 작가와 특정 도서의 배제 지시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나, 분위기 상 조심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의상도서관과 이상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6) 문체부 사무관 하OO의 진술 (2018. 3. 14. 진술조서)

문체부 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자료, 출판진흥원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담당하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제천 쪽 도서관의 특정 강연자에 대한 배제된 내용으로 파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이에 대해 지시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강OO 진술 (2018. 3. 2. 전화면담 보고)

제천기적의도서관 관장으로, 2016년 출판진흥원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출판진흥원에 제출한 지원 신청서에는 원OO 시인이 강연자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출판진흥원 직원으로부터 원OO 강사를 빼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배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하고, 다른 강연자로 대체하여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배제 지시를 한 사람이 출판진흥원 직원이라는 것은 기억하나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현황

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공모 및 심사 과정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심사회의 개최 결과’[콘텐츠진흥팀 - 178(2015. 06. 29.)]와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심사회의 개최 결과’[콘텐츠진흥팀 - 599(2016. 7. 11.)]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판진흥원은 2015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 후 접수처로 관련서류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2015년은 원고 1,858편, 기획안 1,232편 등 총 3,090편이, 2016년은 원고 2,131편, 기획안 862편 등 총 2,993편이 접수되었다. 지원작 140편 및 후보작 10편 선정을 위해 교수, 저자, 출판 전문가 등 2015년에는 59명, 2016년에는 49명의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고,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5개 분야로 나눠 1차 예비심사, 2차 본심사, 3차 최종심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 접수 응모작에 대해 1차 심사(예비심사)는 2015. 6. 1. ~ 6. 5.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 전원이 소분과별 심사회의를 통해 416편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본심사)는 2015. 6. 10. ~ 6. 12. 진행되었으며, 소분과장 20명과 과학분야 2명 위원 등 22명이 참석하여 274편을 선정하였다. 3차 회의(최종심사)는 분과위원장 5명이 참석하여 2015. 6. 17. 진행되었으며, 선정작 140편, 예비후보작 10편을 선정하였다.

2016년 접수 응모작에 대해 1차 심사(예비심사)는 2016. 6. 7. ~ 6. 13.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 전원이 소분과별 회의를 통해 19개 소분과 총 365편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본심사)는 소분과위원장 18명이 참석(1명 불참)하여 2016. 6. 22. ~ 6. 23. 진행되었으

며, 1차 심사 선정작 365편 중 5개 분야 총 256편을 선정하였다. 3차 심사는 분과위원장 5명이 참여하여 2016. 7. 1. 진행되었으며, 선정작 140편 및 후보작 10편을 선정하였다.

후보작 선정 이유에 대해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 김OO은 선정작 중에 국고 이증지원 등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책 발간을 포기하는 경우를 예비하기 위함이라 진술하였다.

나.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정황

(1)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출판인쇄과장 김OO의 개입

김OO은 출판인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들과 출판진흥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게 ‘제목 : 공모사업 등 관련(매우중요!!!)’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1. 세종도서 학술분야, 2. 월간 추천/권장도서(5월), 3.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4. 지역문화 출판콘텐츠 지원, 5. 한중 출판콘텐츠 지원, 6. 전자책 제작지원(멀티미디어형, 수출전자책, 텍스트 형 3종), 7. 지역축제 연계 북콘서트, 8. 인문독서아카데미 및 북스타트(문화기반국 공조 사업이나 출판과와도 반드시 사전협의)’의 사업을 열거하며,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 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 공유(전체답장 기능 등 활용) 바랍니다(제게는 모든 관련 메일 송부 바랍니다).’와 ‘추후 진행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OO은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제외, 배제 지시를 인정하였으며,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과 초록 샘플 사업이었고”, “1번 세종도서, 3번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6번 전자책 지원 등의 사업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메일 내용 중,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의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문체부 의견을 제출하여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해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이를 심사과정에서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라고 진술하였다.

(2)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선정 배제 지시 기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출판진흥원의 사업에서 배제 지시를 한 기준으로 ‘정무적 판단(북한관련, 자유주의 시장경제 관련, 정부 정책 관련, 지나친 보수주의 시각으로 부담되는 콘텐츠도 포함)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 사회적 쟁점 중 우리 입장을 따르지 않는 듯한 콘텐츠 또는 주제의(일본을 지나치게 동경하는 도서), 저자가 문체부 OB인 경우(2종 발견) 등이 해당되었습니다.’라는 내용과 ‘1차 또는 (거의 대부분) 2차 심사를 거친 후 3차 심사 전에 문체부 출판과 의견을 줍니다’라고 진술하여 2차 심사를 통과한 심사 목록에 대해 배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일을 위원회에 2018. 1. 29. 송신하였다.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기준에 대해, 김OO은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1)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4),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5)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6)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7)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7가지의 규정을 누가 지시하였는지의 물음에 대해 “2년 여의 과장 근무기간 동안 진행한 사안들을 종합해보니 이런 기준들을 정하지 않았으나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김OO의 배제 지시와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김OO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저희 과에서 담당한 사업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체로서의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위해서 말씀드린 불문화된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검토했습니다.’, ‘문서화 된 블랙리스트 소지 여부에 대해 ‘리스트는 없었으며, 창작물과 창작자에 따라서 모든 사례별로 항상 다각도로 검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OO 사무관이 법정에서 진술¹⁵⁾한 김OO이 전달하였다는 출판사와 작가가 적혀있는 메모지에 대해, 김OO은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형사항소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이OO 녹취록 35p

‘이런 사람이나, 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저쪽, BH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4) 출판인쇄과장 김OO이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 지시한 도서 목록

김OO은 2018. 1. 29. 위원회에 “사업별 제외 콘텐츠 및 작가 (당시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억과 유추를 통해 재구성 한 것입니다.) ○ 2015년 우수콘텐츠 : 69, 189, 227, 240, 809, 850, 894, 937, 2107, 2514, 1718, ○ 2016년 우수콘텐츠 : 270”의 내용을 [그림10]과 같이 메일로 송신하였다. 2015,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상정목록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9, 「이혼추진위원회」, 정연철¹⁶⁾ / 189, 「전선일기」, 안재성 / 227, 「세계를 매혹시킨 태극기」, 이현표 / 240, 「낮선 식민지 제주」, 김동현 / 809,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김세연 / 850, 「혁신가 경제학」, 이일영 / 894,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명월관」, 신현규 /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박계리 / 2107,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 이민 김주희 / 2514, 「남북의 연구자가 함께 만든 북한사회의 이해」, 정일영 정대진 김혁 이해란 / 1718, 「가을방학」, 이해진 / [2016년]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향」, 원용찬’으로 확인되었다.

16) 연번, 제목, 작가명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연번은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심사목록표에 기입된 연번임.

[그림-10] 김OO이 위원회에 송달한 메일 중,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 배제 지시 메일 캡처

- 진흥원 통해 민간 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1차 또는 (거의 대부분) 2차 심사를 거친 후 3차 심사 전에 문체부 출판과 의견을 줍니다.
따라서 1차 이전에 처음부터 탈락한 콘텐츠 100% 및 2차에 오르기 전에 탈락한 콘텐츠 대부분과 최종 선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념하셔도 됩니다(물론 2차에서 탈락한 콘텐츠 중에도 문체부 출판과 의견과 무관하게 심사위원들이 자연스럽게-정당하게 탈락시킨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기억을 더듬어 보니 대체로 정무적 판단(북한관련, 자유주의 시장경제 관련, 정부 정책 관련, 지나친 보수주의 시각으로 부담되는 콘텐츠도 포함)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사회적 쟁점 중 우리 입장을 따르지 않는 듯한 콘텐츠 또는 주제(일본을 지나치게 동경하는 도서), 저자가 문체부 OB인 경우(2종 발견)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 나. 사업별 제외 콘텐츠(출판진흥원, 목록상의 번호) 및 작가(번역권, 성명)
(* 당시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억과 유추를 통해 재구성 한 것입니다.)
- 2015년 우수콘텐츠 : 69, 189, 227, 240, 809, 850, 894, 937, 2107, 2514, 1718
- 2016년 우수콘텐츠 : 270
- 2015년 멀티미디어 전자책 : 202
- 2016년 텍스트형 전자책 : 5500, 9180, 9342, 9371, 9484, 9555-9566, 9574-9577, 9580-9583,
- 작가 해외파견 지원 : 한강, 공지영, 황석영, 성석제, 편혜영

(가) 189번 「전선일기」, 작가 안재성

‘189번 「전선일기」의 작가 안재성은 강원대학교 재학 중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제적되었다. 1983년부터 10여 년간 구로공단, 청계피복노동조합, 강원도 탄광지대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다시 구속되었다. 1989년 장편소설 「파업」으로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사랑의 조건」, 「황금이삭」, 「경성트로이카」 등의 장편소설과 「이관술」, 「이현상 평전」, 「박헌영 평전」 「이관술」 등의 인물 평전과 「청계피복노동조합사」 등 역사 다큐멘터리를 집필하였다.¹⁷⁾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비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15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3점, 계 78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작 4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17)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6029993&orderClick=LAG&Kc=>

(나) 240번 「낮선 식민지, 제주」, 작가 김동현

‘240번 「낮선 식민지, 제주」’는 글누림 출판사를 통해 2016. 3. 28.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식민지 시기, 해방기와 전쟁기를 통해 외부에서 바라본 제주에 대해 다루며 한편으로는 내부자의 시선도 함께 그 자리에 놓는다. 구체적인 사건과 텍스트를 통해 제주를 바라보기도 한다. 지난 한 세기동안 제주는 수많은 주석을 달았다. 제주의 특수성을 보는 계보학적 탐구와 제주 4·3과 같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이 큰 즐거움을 주는 가운데 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외부, 즉 내부 식민지주의라는 관점에서 제주를 바라보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기록¹⁸⁾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15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0점, 계 7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도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다) 809번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작가 김세연

‘809번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는 글라이더 출판사를 통해 2016. 3. 25.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위대한 인문·고전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인식을 깨우는 「10대에 마주하는 인문 고전」 시리즈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마르크스의 사상과 《자본론》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기록¹⁹⁾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20점, 우수성 18점, 완성도 22점, 가산점 0점, 계 8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4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18)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63273358&orderClick=LAH&Kc=>

19)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6510131&orderClick=LAH&Kc=>

(라) 850번 「혁신가 경제학」, 작가 이일영

‘850번 「혁신가 경제학」’은 출판사 창비를 통해 2015. 9. 11. 출간되었으며, 작가 이일영에 대한 소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창작과비평』 『동향과 전망』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안적 지역경제 모델로 ‘한반도경제론’을 제기하고 연구하는 한편,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록²⁰⁾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15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10점, 완성도 20점, 가산점 10점, 계 7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1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마) 2718 「수요시위 갈래요」, 작가 윤미향

김OO은 배제 지시 목록으로 ‘1718 「가을방학」’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배제 지시 목록과는 달리 ‘1718 「가을방학」’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며, ‘2718’의 경우 ‘「수요시위에 갈래요」, 윤미향’은 2차 심사까지 통과된 점, 위안부 문제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다뤄진 점 등 김OO이 언급한 배제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미뤄, 2718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718, 「수요시위에 갈래요」’는 출판사 사이행성을 통해 2016. 2. 3.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고 희생된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스런 증언들은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어야 하는지 되새기게 만든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뼈아픈 역사부터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그리고 기나긴 침묵을 깨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나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아픈 역사에 대해 이 책은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작가 윤미향에 대한 소개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1992년 정대협 결성 초기부터 간사로 활

20)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36485993&orderClick=LAH&Kc=>

동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 증언을 녹취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 유럽 연합 의회와 미국 하원 등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섰고, 시민들과 함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건립했다. 2011년 12월 14일에는 천 번째 수요시위를 맞이하여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건립했다. … 그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오늘도 수요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기록²¹⁾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0점, 계 8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도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후보7로 선정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바)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상」, 작가 원용찬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상」’는 출판사 인물과사상사를 통해 2016. 9. 23. 「빵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탐욕과 부패가 만연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첨예한 가운데, 저자는 ‘빵’으로 상징되는 생명을 화두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역사와 문학, 사상과 철학, 과학까지 아우르며 인류가 거처온 경제사상의 다양한 모습을 살핀다. 그 면면은 카뮈나 톨스토이 같은 문학가, 칼 폴라니나 존 러스킨 같은 사상가, 햄릿과 로빈슨 크루소 같은 문학 속 인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 애덤 스미스와 소스타인 베블린, 존 메이너드 케인스, 헨리 조지, 프랑수아 케네, 아마르티아 센, 토마 피케티 같은 경제학자를 넘나든다. 심지어는 양자역학을 통해 호혜와 증여의 경제를 논하기도 한다.’라고 기록²²⁾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완성도 25점, 집필의도 20점, 참신성 10점, 우수성 20점, 가산점 0점, 계 7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21)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716906&orderClick=LEB&Kc=>

22)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9064106&orderClick=LAH&Kc=>

(사) 기타 배제 지시 목록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2107, 「평양 서울-두 도시 이야기」’는 모두 북한을 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 감상」’은 1차 심사결과 출간의 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0점, 계 7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작 5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2107, 「평양 서울-두 도시 이야기」’는 1차 심사결과 출간의 의 20점, 참신성 20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25점, 가산점 10점, 계 9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후보6으로 선정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다. 김OO의 진술과는 상반된 관련자들의 진술

(1) 문체부 사무관 이OO의 진술 (2018. 3. 5. 진술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근무하며, 출판진흥원의 출판진흥본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OO는 세종도서 관련 건 이외의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 대해 특정 도서 및 작가에 대한 지원 배제, 선정 요청 등의 업무 지시를 한 바가 없으며,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배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OO 과장이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과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 사무관, 주무관에게 발송한 메일에 대해서도 이OO는 “이에 관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출판진흥원 사업담당자 김OO 진술(2018. 2. 21. 진술조사)

출판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담당자 김OO은 문체부 출판인쇄과로부터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접수목록을 비롯하여, 1, 2차 선정 목록 등을 문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으며, 팀장이 최종적으로 3차 선정된 결과를 문체부 사무관과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콘텐츠진흥팀의 경우, 사업 담당자들이 (문체부) 사무관과 업무 연락을 주고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OO 과장을 비롯한 문체부로부터 특정 도서의 선정 및 배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으며,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라는 의견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정부 시책에 반하는 원고나 기획안은 선정해도 되는건가 하는 스스로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의 진술(2017. 12. 21. 진술조서, 2018. 02. 21. 진술조서)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담당하는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은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에도 원고나 기획안으로 접수가 되니까 이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인지 배제지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특정 도서의 배제나 선정 등의 요구를 받은 바도 없으며, 김OO이 배제 지시 목록이라며 메일에 적시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배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탈락한 도서가 좋은 책(이달의 읽을만한 책) 선정 사업에서 선정될 수도 있냐는 물음에 대해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서는 말씀드린 것 처럼 도서가 없는 상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원고가 완성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책 선정 사업과의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의 2차 선정 결과와 최종 선정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4) 출판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N의 진술(2017. 11. 07. 진술조서)

출판진흥본부장 N은 ‘진흥본부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문체부 출판인쇄과의) 검토를 받은 이후에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OO 과장이 온 이후부터 치밀하고, 집요하게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검토하는 등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출판진흥원 여타 사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가. 출판인쇄과장 김OO이 출판진흥원 주요 사업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정황

(1) 출판진흥원 주요 사업에 문체부 의견 반영을 지시한 메일 발송

김OO은 출판인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들과 출판진흥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게 ‘제목 : 공모사업 등 관련(매우중요!!!)’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1. 세종도서 학술분야, 2. 월간 추천/권장도서(5

월), 3.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4. 지역문화 출판콘텐츠 지원, 5. 한중 출판콘텐츠 지원, 6. 전자책 제작지원(멀티미디어형, 수출전자책, 텍스트 형 3종), 7. 지역축제 연계 북콘서트, 8. 인문독서아카데미 및 북스타트(문화기반국 공조 사업이나 출판과와도 반드시 사전협의)의 사업을 열거하며,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 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 공유(전체답장 기능 등 활용) 바랍니다(제게는 모든 관련 메일 송부 바랍니다).’와 ‘추후 진행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 대한 배제 지시 인정

김OO은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제외, 배제 지시 여부에 대해 물은 바, “예”,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과 초록 샘플 사업이었고”, “1번 세종도서, 3번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6번 전자책 지원 등의 사업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메일 내용 중,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의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문체부 의견을 제출하여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해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이를 심사과정에서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라고 진술하였다.

문체부 주무관 OOO은 김OO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세종도서를 포함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신경을 썼던 것 같고, 해외파트 사업에 대해서만 지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가와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알고 있어서, 현 정부에 의해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심하는 차원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지원 지시 : 화이트 리스트

(1)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김OO의 지원 지시

김OO은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해 “2016년 늦여름쯤 정관주 차관님께서 책을 구해 검토해보라고 하여 일람하고 번역원(번역)과 진흥원(출판)에 검토 지침을 주었으나 곧 제가 러시아로 부임받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실제로는 유아무야 되었던 것으로 기억 납니다. 비록 차관의 지시(사실 검토 건의에 가까운,,)였으나 담당 과장으로서 해외출판 시 상업적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14차에서 적격 처리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은 문체부에서 특별히 통과시키라는 지시가 온 도서로 알고 있으며, N 본부장도 이걸 챙기며,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 책의 저자가 OOO이라고 OOO 법무법인 대표로, 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이며,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도 박정희를 칭송하며 ‘한강의 기적’은 계속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전임 글로벌사업팀장 정OO은 “N본부장이 쪽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OOOOO 출판사)라는 책이었는데, 문체부 김OO 과장의 지시라면서 이 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책 내용이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한 책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업담당자 OOO는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선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N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OO 과장으로부터 개별적 지시 내려온 것이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

(3) 14차 심사표 조작으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지원 결정

출판진흥원의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보고'[글로벌사업팀 - 609(2016. 08. 29.)]의 '[붙임1] 2016년 제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심사 결과'의 '3.3 김OO 출판수출자문위원'의 심사표에는 연번 12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출판사 영림카디널, 글 김OO)」에 대해 '적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김OO이 제출한 14차 심사표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와 '로컬 콘텐츠 특성상 초록 지원으로 인한 해외시장의 호의적 반응을 전제로 샘플 번역 지원하는 게 좋을 듯 함.'의 의견이 기록되어, 출판진흥원의 결과보고와는 상이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OOO는 심사표 조작이라고 인정하였다.

일자과 지시 경위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출판진흥원은 김OO의 선정 지시에 따라 김OO의 부적격 심사표를 적격으로 변경, 조작하여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청와대 등 유관기관과 상급자의 지시 여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OO는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사업들 중 세종도서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보고 및 선정 결과에 따른 배제 지시 등을 하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은 “저희 과(출판인쇄과)에서 담당 사업들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체로서의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위해서 말씀드린 불문화된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검토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미디어정책국장 등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김OO은 “김희범 당시 차관이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에 선 과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의지 등이 MB때부터 이어져왔던 헌법을 수호하던 노력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괄적 형태에 대해 방향성에 대한 지시는 있었지만, 구체적 지시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과장 부임 직후부터 직급 및 직위와 무관하게 문화부 내부의 유관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영화, 공연, 문학 등과 함께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자주 들었으며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공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개인적 판단에 의한 블랙리스트 실행 기준을 마련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기준에 대해, 김OO은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1)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4),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5)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6)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7)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7가지의 규정을 누가 지시하였는지의 물음에 대해 “2년 여의 과장 근무기간 동안 진행한 사안들을 종합해보니 이런 기준들을 정하지 않았었나 결과를 말씀드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OO 사무관이 법정에서 진술²³⁾한 김OO이 전달하였다는 출판사와 작가가 적혀있는 메모지에 대해,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저쪽, BH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문체부와 출판진흥원과의 관계

(1) 출판진흥원의 문화로 인식된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문체부의 사전 검토

N은 “다른 본부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출판산업)진흥본부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검토를 받은 이후에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 진술하고,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담당자 OOO은 “입사하면서부터 사업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문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산하기관으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체부의 컨펌이 나와만, 이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OO은 “출판과장의 의견 하나에 진흥원에서 결정된 사업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출판담당 과장의 영향력은 출판진흥원 사업에 절대적이

23)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형사항소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이OO 녹취록 35p

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OOO는 문체부 김OO 과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심사결과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물음에 대해 “문체부 김OO 과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표현보다, 출판진흥원 내부에서 문체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 N은 김OO에 대해 “담당 과장(김OO)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는데, 누가 이런 지시를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출판진흥원을 자기 수중에 놓고, 전부 통제하고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진흥원의 제1고객은 문체부 직원들이며, 본부장이라는 자리 역시 문체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진흥원 같은 조직을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폭언을 들은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문체부 과장과 주무관의 지시에 저항하기는 힘든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출판인쇄과장 김OO이 발송한 위 메일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김OO은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입니다. 즉, 제 업무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문체부 주무관 OOO은 “공공기관이고, 100% 국고사업이고 하니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공유를 하였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공기관에 대한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인식

(가) 배제 지시는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 주장

김OO은 “(출판진흥원의) 모든 사업들과 행정행위들에 대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문화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담당 실무부서인 출판인쇄과와 담당 과장인 제가 수시로 의견을 주고 협의함은 부당한 지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정책 집행부서의 행정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오히려 두 기관(출판진흥원과 문학번역원) 임직원들과 민간 심사위원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놓은 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태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창작이나, 출판 유통, 독서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에서 관여가 있었다면 문제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지시는 정부지원의 예산으로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급 되는 도서의 대상기관이 공공도서관이고, 지원되는 콘텐츠의 목적이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국가 정체성 등의 사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업들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공기관 설립 취지는 해당과가 담당할 업무를 소화하기 위함이라 주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 김OO은 “공공기관을 설립한 취지가 과에서 담당할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는 담당과에서 협의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문학의 전문적 영역이 아닌, 행정적 의견은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출판진흥원 관련자의 조사 방해 행위

(1) 출판진흥원장 이기성의 조사 거부

출판진흥원장 이기성은 본 사건 및 출판진흥원의 전반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진술서 제출 요청에 대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전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라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N의 조사 방해 행위

OOO는 “10월 말경, 출판진흥원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 N 본부장 이야기라며, 위원회 조사를 받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⁴⁾

24) 이와 관련하여 N은 다음과 같이 소명함(19. 1. 16.).

당시는 국정감사 기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본인의 발언을 무단 녹취해 감사장에서 폭로하는 등의 일로 인해 담당자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 출판진흥원 직원에게 OOO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하라고 한 적은 있음. 더구나 해당 직원은 계약직 청년인턴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겨우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신입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함.

제7절 | 조사 결과

1.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가.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관련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자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이후,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이 차례로 생산되었는데,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한국의 위 보도에 대하여 문체부가 청와대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편향 논란에 따라 해당 사업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란이 되었던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특히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심사위원 구성 및 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관리 및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심사절차도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2015. 1.경 신은미 「재미동포아줌마, 북한에 가다」 우수도서 선정취소 사건

2013년에 우수도서로 선정된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년 말 저자 신은미가 통일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이를 소위 ‘중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해당 저자의 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되며 2015. 1.경 해당 책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결정이 취소된 사건은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91-92쪽),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쪽),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세종도서 사업에서 도서 선정 과정에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걸러내기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나.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1)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① 청와대의 문체부에 대한 세종도서 관련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및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소영에 대한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및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김상률에 대한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를 통해, ② 청와대의 문체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및 문체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의 경위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및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16)” 문건을 통해, ③ 문체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및 출판진흥원 내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전반적인 경위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및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을 통해 각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한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인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세종도서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김OO 행정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청자 명단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 명단을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를 자신의 상급자인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은 이를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하고 정무수석실에 검토를 받아 다시 이를 문체부에 하달하였고, 문체부는 이 배제명단을 출판진흥원에 하달하여 특정 도서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였다. 또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은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에게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

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고, 이에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은 심의과정에서 배제 지시가 하달된 대상 도서에 대한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배제를 유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관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좌성향 및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 2014, 2015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

- 1)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11. 4.자) 참고자료,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및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는 출판진흥원 유OO 팀장에게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2차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에 송부한 후 검토 결과를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의 참고자료에 정리하여 출판진흥원 유OO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유OO은 자신의 상급자인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판진흥원 N, 유OO은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학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보고를 문체부 이OO 사무관에게 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출판진흥원 N, 유OO은 2014년도 세종도서 3차 최종심사에 참석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기능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책을 선정해달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책을 공공도서관에 보내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심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며, 출판진흥원 N과 유OO은 이 정도의 완곡한 발언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이 해당 발언의 목적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출판진흥원 내에서 블랙리스트 경위를 파악하였다.

- 3) 또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이었던 강OO의 2018. 4. 23.자 유선상 진술에 따르면, 매년 심사 때마다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에 형광펜으로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있는 작품들을 표시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비선정 유도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4) 이로 인한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블랙리스트는 「소년이 온다」 등 총 9건으로 확인된다.

(나)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분' 선정 관련

- 1)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특정 도서 배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5년 세종도서 사업의 최종 선정결과와 공고가 지연되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문체부 김OO 과장이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재심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면서 선정결과 공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3) 이로 인한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블랙리스트는 「꿈결에 시를 베다」(실천문학사) 등 총 8건으로 확인된다.

(다)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관련

유OO 2017. 1. 5.자 특검 진술조서(N 대질), 2017. 1. 5.자 특검 진술시 유OO이 제출한 엑셀자료에 따르면 2차 통과 도서들 중 문체부 이OO로부터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에 대하여 유OO이 자신의 엑셀자료에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라고 기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N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교양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세월호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5년 교양 부문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고 최종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들 중 「잊지 않겠습니다」는 416 가족협의회가 만

든 책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 그림과 가족들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편지글은 모은 책이었으며, 이진경의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파농」 또한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한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분야 블랙리스트는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등 총 5건으로 확인된다.

(라)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선정 관여 여부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문학’ 부문의 경우 심사위원추천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김○○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따르면 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단 또한 문체부 이○○ 사무관은 청와대에 송부한 적이 있고 청와대에서 당시 10여 명 정도의 후보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으로 지적되는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5. 1.경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우수도서 선정취소 사건 및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념편향 도서를 제외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일련의 기재들을 통해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검토 및 배제지시 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마) 배제기준

참고인 김○○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이○○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참고인 김○○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참고인 유○○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세종도서 사업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 대상의 선정기준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문인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반대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 활동에 참여한 문

인들 및 문재인 지지선언 참여 등과 같이 당시 야당인사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문인들이 주로 배제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11. 4.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사무관·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 참고인 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김OO 2018. 3. 14.자 작성 진술서를 종합하면 2014·2015년 세종도서 학술 분야 및 2016 세종도서 학술 및 교양 부문에 대하여 문체부 김OO 과장의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OO 작성 2018. 3. 5.자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2016년 세종도서 심사위원 관련 2018. 4. 23.자 조사보고를 종합하면 위 문체부 김OO 과장의 배제지시를 하달받아 이행했어야 할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및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라.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의 비위 내용 및 사실 관계

[표-4]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의 비위 내용 및 사실 관계

순번	이름	소속 및 직책	비위내용 및 사실관계	비고
1	김OO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사건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자로 세종도서 사업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를 문체부에 하달하였음.	
2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사건 당시 문체부 담당 과장이었던 자로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청와대에 송부하고,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를 문체부 내 사무관을 통해 출판진흥원에 하달하였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가담 정도가 매우 크나, 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상규명에 기여한바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음.

순번	이름	소속 및 직책	비위내용 및 사실관계	비고
3	이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사건 당시 문체부 담당 사무관였던 자로 김OO 과장의 지시에 따라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에게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음.	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상규명에 기여한바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음.
4	N	출판진흥원 본부장	사건 당시 출판진흥원 본부장이었던 자로 문체부 담당 과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음.	
5	유OO	출판진흥원 팀장	사건 당시 출판진흥원 팀장이었던 자로 세종도서 사업의 담당자였으며 문체부의 배제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음.	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상규명에 기여한바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음.
6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2016. 2. ~ 2017. 12.)	사건 당시 출판진흥원장으로 관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위원회의 조사 거부로 가담 정도 및 비위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음.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함.

2.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가. 확인된 사실

(1)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사실

[표-5]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도서 배제 과정 일람

일자	시행자	내용
2016. 7. 6. ~ 2016. 7. 15.	출판진흥원	위탁도서 79종 접수
2016. 7. 21.	출판진흥원 심사위원회	위탁도서 60종 선정
2016. 7. 21.	사업 담당자 OOO	위탁도서 60종 선정 목록 문체부에 발신
2016. 7. 25.	출판인쇄과장 김OO	최종 확정 보류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7. 28.	문체부 주무관 OOO (김OO의 지시)	5종(4, 31, 37, 56, 57번) 배제 지시 메일을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8. 9.	사업 담당자 OOO (팀장 정OO의 지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60종에서 55종 선정된 것으로 허위 작성
	출판진흥원	55종 선정으로 결과 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538(2016. 8. 9.)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과정에서, 김지욱, 김동성의 「느영나영 제주」, 고도원의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정홍규의 「마을로 간 신부」,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1~3」, 박시백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등 5종 도서에 대한 배제가 진행되었다. 출판진흥원은 2016년 7월 21일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여 60종의 위탁도서가 선정되었으나, 55종 선정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2016년 8월 9일 심사위원회 결과보고를 통해 위 5종의 도서를 지원 배제하였다.

해당 사업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며, 심사위원회 이후 회의록을 작성해왔던 허점을 이용하여 출판인쇄과장의 배제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심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야 할 도서들을 선정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도서 배제 사실

[표-6] 2016년 제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도서 배제 과정 일람

회차	일자	시행자	내용
12회차	2016. 7. 26.	심사위원 박OO	12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7. 27.	사업담당자 OOO	12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2016. 7. 27.	출판인쇄과장 김OO	3종 배제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7. 29.	심사위원 김OO	12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7. 29. ~ 8. 4	사업담당자 OOO (팀장 정OO의 지시)	심사위원 김OO에게 배제 지시 도서에 대한 심사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12회차	2016. 7. 29. ~ 8. 4	사업담당자 OOO	N의 심사표 중 3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4.	사업담당자 OOO (팀장 정OO의 지시)	박OO의 심사표 중 3종을 부적격으로 조작
13회차	2016. 8. 10.	사업담당자 OOO	13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2016. 8. 12.	심사위원 김OO	13차 온라인 심사 진행
		심사위원 박OO	13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8. 16.	출판인쇄과장 김OO	1종 배제 지시 메일 출판진흥원에 발신
	2016. 8. 16. ~ 8. 18.	사업담당자 OOO	N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18.	사업담당자 OOO (팀장 정OO의 지시)	박OO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심사일자를 8. 16.로 조작

회차	일자	시행자	내용
		출판진흥원	13차 초록샘플 지원사업 결과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567(2016. 8. 18.)
	일자불상	사업담당자 000	14차 접수목록을 문체부에 발신
	2016. 8. 22.	심사위원 박00	14차 온라인 심사 진행
	2016. 8. 25.	심사위원 김00	14차 온라인 심사 진행
14회차	2016. 8. 26.	사업담당자 000	N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작성
	2016. 8. 29.	사업담당자 000 (팀장 정00의 지시)	박00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김00의 심사표 중 1종을 부적격으로, 김00의 심사표 심사일자를 8. 26.로 조작
14회차	2016. 8. 29.	출판진흥원	14차 초록샘플 지원사업 결과보고 진행 문서번호 : 글로벌사업팀-609(2016. 8. 29.)

2016년 12~14차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12차의 정지형의 「텔레비전나라의 푸푸」, 「삼살개가 독에 감춘 것」,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와 13차의 김종배, 조형근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4차의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 등 5종 도서에 대한 배제가 진행되었다. 12~14차 심사에 참여한 박00은 위 도서들에 대해 전부 '적격'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14차 심사에 참여한 김00 또한 '한국이 싫어서'에 대해 '적격'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였다. 출판진흥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표를 '부적격'으로 조작하여, 2016년 8월 4일 12차, 2016년 8월 18일 13차, 2016년 8월 29일 14차의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위 5종의 도서를 지원 배제하였다.

심사위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던 전례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심사표 조작이 용이하다는 허점, 출판진흥원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허술하게 관리되던 사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는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00의 배제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 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특정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련자들의 행위 사실

(1) 선정 도서에 대해 배제를 지시한 김00의 행위 사실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00은 문체부 주무관 000에게 2016년 찾아가는 중국도서 전 위탁도서 중 5종에 대한 배제 지시 메일을 하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 000에게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접수목록 중 2016년 7월 27일 12

차의 3종, 2016년 8월 16일 13차의 1종, 일자불상 경 14차 1종의 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각 5종의 도서를 배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에서 배제된 도서들의 배제 사유에 대해,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미학에세이」는 중국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따르며,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중국의 사관과 충돌하는 점이 있을 수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수용에 한계가 있고, 「느영나영 제주」는 우리 해군의 대양 진출정책과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로 밝혔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도서들에 대해서는, 해당 도서들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들이며,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대상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출판콘텐츠로써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배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도서들을 직접 검토한 이후 배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배제 지시 등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지도감독 과장으로서의 당연하고 필요한 행정업무였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배제 지시를 받은 문체부 주무관 000, 출판진흥원의 N, 정00, 000, 000 등 누구도 배제 사유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느영나영 제주」처럼 도서에서 배제 사유로 언급한 부분을 김00 본인 스스로도 지적하지 못하는 점, 해외 시장의 적합성이 최우선적인 선정 기준이었던 심사업무에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용 한계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웠던 점, 문체부 과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진술, 공공기관은 해당 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김00의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00은 출판진흥원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인쇄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사업에 배제 지시 등을 통하여 선정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배제 지시 메일을 발송한 000의 행위 사실

문체부 출판인쇄과 주무관 000은 출판인쇄과장 김00의 지시로, 2016년 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 결과 목록 파일에 도서 5종에 대해 음영처리하여 배제 도서임을 표시하고, 「느영나영 제주」에는 ‘4.3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 포함 확인’이라는 내용을 빨간색으로 기입한 이후, 7월 28일 해당 도서들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출판진흥원에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000은 문체부 주무관으로, 출판계의 해외진출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출판진흥원 글로벌사업팀의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지시가 이례적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배제 지시에 부담을 느꼈음에도, 배제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는 진술, 배제 지시에 대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 00의 배제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하기 보다는, 이에 순응하여 출판진흥원에 배제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출판산업진흥본부장 N의 행위 사실

N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닌 자로, 김00, 000으로부터 배제 지시 내용의 메일을 수신하고, 해당도서들이 선정 배제 되는데 일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N은 배제 지시가 왔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으며, 팀장과 담당자가 보고한 적도 없어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진흥원의 각종 선정 사업의 경과와 선정 결과를 문체부에 송부하고, 검토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정00, 정00, 000의 진술, 심사표 조작에 대해 N도 알고 있을 것이며 N이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000의 진술,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 결과보고에 N의 결재가 되어있는 문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000에게 자신이 진행해야할 심사업무를 맡긴 사실이 있다.

(4) 글로벌사업팀장 정00의 행위 사실

정00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실무책임자로, 김00, 000으로부터 배제 지시 내용의 메일을 수신하였다. 이 지시를 따르기 위해 사업담당자 000에게 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에서 60종으로 선정된 위탁도서 목록에서 배제 지시가 내려온 5종이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것처럼 심사결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55종이 선정된 것처럼 허위 작성된 회의록을 첨부한 심사결과보고를 작성, 결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5종의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정00은 김00이 초록·샘플 번역 지원 12~14차 5종의 도서에 대해 배제 지시의견을 하달하자, 사업담당자 000에게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표 조작을 지시하였

다. 5종의 도서들이 부적격이라고 조작된 심사표를 첨부한 심사결과보고를 작성, 결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5종의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담당자 000의 행위 사실

000은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담당자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위탁도서 60종 목록을 검토해달라며 2016년 7월 21일, 김OO, 000에게 메일 발신하였고, 2016년 7월 28일 000으로부터 5종에 대한 배제 지시 메일을 전달 받았다. 000은 배제 지시를 받은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입사한지 1년 남짓의 짧은 근무 경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정OO에게 문의하였다. 정OO은 000에게 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000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지에 배제 지시로 하달된 5종의 도서를 선정 제외하고, 55종이 선정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심사위원회 당일 심사위원들에게 날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6년 8월 9일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000은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라는 정OO 팀장의 지시가 있었던 점, 문체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출판진흥원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 당시 근무기간이 1년 남짓으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일반 사원으로 책임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의 사실 또한 확인된다.

(6)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000의 행위 사실

000은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담당자로, 2016년 7월 27일 12차, 2016년 8월 10일 13차, 일자불상 경 14차의 접수목록을 김OO과 000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 김OO은 2016년 7월 27일 12차 3종, 2016년 8월 16일 1종, 일자불상 경 14차 1종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하달하였다. 정OO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김OO에게 심사 결과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후 정OO의 지시에 따라, 배제 지시가 된 도서 5종이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해 탈락된 것처럼 심사위원 박OO와 김OO이 '적격'으로 심사한 5종의 도서를 '부적격'으로 심사표를 조작하였다. 또한 000은 N의 지시로, N이 진행해야 할 심사업무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김OO의 배제 지시에 따라 심사표를 작성하였다.

김OO의 배제 지시에 따라 조작한 심사표와 000가 작성한 N의 심사표 등을 취합하여 12차는 2016년 8월 4일, 13차는 2016년 8월 18일, 14차는 2016년 8월 29일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결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는 심사표를 조작하라는 정OO 팀장의 지시가 있었으며, 문체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출판진흥원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 청년인턴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3개월 남짓으로 일반 사원으로 책임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의 사실 또한 확인된다.

3.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대한 배제 지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은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을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 주무관을 비롯하여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들의 선정 결과에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의 2차 선정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하였다.

2차 선정 결과를 검토한 김OO은 1)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4)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5)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6)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7)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의 기준과 북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부 정책, 지나친 보수주의 시각,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 사회적 쟁점 중 우리나라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듯한 주제, 저자가 문체부 출신인 경우 등의 자의적인 기준을 준용하여 특정 도서 배제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정연철의 「이혼추진위원회」, 안재성의 「전선일기」, 이현표의 「세계를 매혹시킨 태극기」, 김동현의 「낮선 식민지 제주」, 김세연의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한다」, 이일영의 「혁신가 경제학」, 신현규의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명월관」, 박계리의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이민 김주희의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 정일영 등의 「남북의 연구자가 함께 만든 북한사회의 이해」, 윤미향의 「수요시위에 갈래요」와 2016년 원용찬의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학」 등의 응모작에 대해 배제를 지시하였으며, 각각의 응모작들은 후보작으로 처리 되거나, 비선정 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담당한 문체부 이OO 사무관,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 김OO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진술하고,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은 세종도서와 달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는 배제 지시가 없었다며 김OO의 진술과는 상반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나, 당사자인 김OO이 자신의 행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진술 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김OO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미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 지시를 하였다라는 김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김OO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2차 선정 결과 중 특정 응모작을 탈락시키기 위한 배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김OO이 배제 지시한 작가들 중 위원회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작가는 안재성(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4,110명)이 유일하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청와대, 국정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적용, 실행되었다는 관련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여타의 기관과 사업에서 정부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시행되었던 점,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작가와 도서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김OO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OO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자신이 관장하는 출판진흥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서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적용, 실행한 사례라 판단된다.

4. 인문독서 아카데미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진상규명 사실

가. 제천기적의도서관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 여부

제천기적의도서관은 사업 신청 당시 강연자로 ‘원OO’을 포함하였으나, 사업 과정에서는 ‘원OO’이 강연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도서관장 강OO는 출판진흥원 담당자로부터 원OO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사업담당자 한OO, 윤OO, 배OO은 배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 강OO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제천기적의도서관 사업 신청서에는 강연자로 원OO이 예정되어 있으나, 결과보고에는 강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배제 지시로 인해, 강연자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의상도서관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 여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한 의상도서관장 최OO이 진술이 구체적이며, 허위진술 할 까닭이 없고,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도 특정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정황 등이 확인되는 바,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의상도서관 강연자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사업에 대한 관여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소관부서의 업무가 아님에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문체부 인문정신과 주무관 OOO은 출판진흥원의 담당자들로부터 각종 선정사업들에 대해 최종 결정전에 진행경과, 심사위원 목록, 선정 목록 등을 보고 받았으며, 이는 기존 관례이며 일반적인 업무과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은 사업 진행 중간에 보고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공모사업 등이 최종 결과 발표 전 정보가 사전 유출되는 불합리함을 인정키 어려워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이 크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맞추려 조심을 하는 분위기였다는 OOO의 진술 등으로 미뤄, 문체부 인문정신과가 출판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파악과 방향성 제시 등의 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선정 심사위원들을 살펴보면, 출판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 1인, 문화융성위의 인문정신특별위원회 1인, 출판진흥원 본부장 1인 등으로 5인 중 3인이 출판진흥원 구성원이거나, 문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문체부의 의견이 반영되기 쉬운 구조로, 직접적인 선정 및 배제 지시가 없었다하더라도, 사업 과정에 문체부의 정책 방향 및 분위기에 따라 진행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의 성격

가. 출판계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동의 일부분

세종도서를 포함하여,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 출판진흥원의 주요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찾아가는 중국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도 크지 않고, 입사 1년 정도 되는 신입 직원과 인턴 직원이 사업 담당자로 해당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담당 본부장이 본 사업의 진행경과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출판진흥원 내에서 중요도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소소하고 일상적인 사업에서까지 정치성향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작가와 도서가 선별 배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판결문,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밝혀진 ‘세종도서’ 외에도 출판진흥원의 여러 사업들에서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세종도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기간을 2014년 ~ 2015년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 사업에서도 특정 도서 및 작가가 배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때, 광범위한 출판계의 블랙리스트 작동의 일부분이 밝혀진 것이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문체부 출판인쇄과의 횡포와 출판진흥원의 예측성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문체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²⁵⁾, 사실상 출판진흥원의 정책집행을 좌우하고 있다. 또한 출판진흥

25)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

원의 법인 인가권²⁶)과 원장 임면권²⁷)을 지니고, 각종 사업예산은 문체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²⁸)이고,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및 검사를 통한 감독권²⁹)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출판진흥원의 주무부서인 문체부 출판인쇄과는 출판진흥원과 철저한 상하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문체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준용³⁰)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³¹)에 따라 출판진흥원의 예산 및 정책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사 업무를 하고 있어, 자체의 심사 및 선정 과정 등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률적 원칙보다도 출판인쇄과장과 주무관의 지시가 절대성을 발휘했고, 부당한 지시라 하더라도 이를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출판진흥원 내부에 만연하였다.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했으며, 운영의 투명성 또한 제고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기저에는 위계를 이용한 문체부 출판인쇄과의 횡포가, 위계에 굴복한 출판진흥원의 예측성이 자리하고 있다.

다. 기본적인 준법정신조차 지켜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공정성 훼손

출판진흥원은 계획 수립, 사업 공고, 접수, 심사위원회 운영, 선정 결과 발표 등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출판계, 나아가 국민들에게 국가를 대변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켜가며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절차이다. 그렇지만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문체

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6)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7)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 28) 제21조(경비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및 한국문화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9)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 및 한국문화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0)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1) 제5조(공기업·주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부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편법적이며, 임의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되었다. 결국 출판인쇄과장 개인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표를 조작하는 등 기본적인 준법정신조차 지켜지지 않은 행위들이 발생하였다. 이후 출판인쇄과장의 개인 성향과 업무 스타일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의 선정 결과도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민주주의 원리가 무시되고,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출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라. 올바르지 못한 조직문화 학습과 임원, 간부들의 무책임함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회의록 허위 작성과 심사표 조작의 당사자는 출판진흥원의 1년 남짓의 신입 직원과 계약직 직원이었다. 이들에게 문체부 출판인쇄과장과 주무관의 지시는 거의 절대적이었을 것이며, 문체부의 지시를 당연히 따라야한다는 출판진흥원 내부의 분위기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강제력을 발휘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도 따라야 한다는 올바르지 못한 조직문화를 학습하게 되었으며, 이후 출판진흥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부당한 지시에도 자연스레 굴복하게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이 사건에 내포되어 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발휘하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사건이다.

또한 해당 본부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할 본부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심사 업무를 담당 직원에게 맡기고 처리 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출판진흥원 업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였다. 임원과 간부들이 출판진흥원 외부의 압력과 청탁에 보호막이 되어주는 커녕, 근무태만과 묵인, 책임 회피의 태도가 이 사건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더하여, 핵심 참고인에 대한 위원회 조사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행위까지 한 점은 자신의 부당행위와 업무태만 등을 가리기 위한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간부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다.

마.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전횡

김OO이 어떤 이유로 해당 도서들에 대해 배제 지시를 하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지시를 받아 메일을 보낸 문체부 주무관도, 메일을 받은 본부

장과 팀장도, 회의록을 수정, 조작한 사업 담당자도 왜 이 도서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시만을 따라야했다. 그리고 김OO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등 국가의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는 배제 지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부처의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선정과정에 담당과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논리와 출판진흥원의 주무부처 과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김OO 한사람에 의해 공공기관의 공정성, 민주주의적 절차 등이 완전히 깃밟힌 사건이다.

바. 블랙리스트와 김OO 과장의 배제 지시와의 관계

김OO, 김OO은 청와대와 문체부간의 출판계 관련 담당자로서, 두 사람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출판계와 관련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에 하달되지 않았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여타의 기관과 사업에서 정부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시행되었던 점, 특정 도서와 작가의 배제가 아닌 포괄적 형태의 방향성 -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하라는 - 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김OO의 진술,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작가와 도서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김OO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OO 과장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호응하여, 자신이 관장하는 출판진흥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서 블랙리스트 정책을 적용,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세종도서 사업 관련

- (1) 조사권한 및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2014·2015년 세종도서 교양, 학술 부문, 2016 세종도서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2)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하여 문체부 실국장 및 장차관의 관련 비위행위

가 조사되지 않았다.

- (3)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하여 출판진흥원장 및 사무처장 등 출판진흥원 내 상급자들의 비위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출판진흥원 이기성은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 (4) 세종도서 사업 심사위원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하였는지, 가담 정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5) 출판진흥원 유OO, N 등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은 2014~2015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100여 건에 가까운 배제지시가 문체부로부터 하달되어, 이에 대한 내용검토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을 막아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① 해당 사업에 실제로 하달된 배제지시 건수 및 ② 출판진흥원 해당 사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6) 문체부 이OO 사무관과 청와대 김OO 행정관은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와 관련하여 검토 및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7)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에 학술, 교양 부문에 대한 문제도서 발견 및 심사와 협의 하에 제외 등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대로 보고용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8) 세종도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강OO의 진술에 따르면,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이 정치편향적 도서 등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이 세종도서 심사 단계에 개입하여 특정 도서에 대한 비선정을 유도하는 방식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관련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담당 대리였던 OOO는 퇴직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김OO의 배제 지시가 어떤 경위로 출판진흥원의 선정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기관 감사 등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추가 조사 필요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특정 강연자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사람과 배제 지시 사유를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배OO, 한OO, 윤OO 외의 사람이 업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사업 총괄 본부장의 진술로 미뤄 출판진흥원 관계자 또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은 문체부 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주무관 중 1인이 해당 도서관들에게 특정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배제 지시를 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상국의 경우 여러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상국이 활동하였던 단체 작가회의 등 또한 블랙리스트 단체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제천시적의도서관 강연자에서 배제되었다고 판단되는 원OO의 경우, 위원회 확보자료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천시적의도서관과 의상도서관 외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에서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 여타 사업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김OO이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언급된 내용 중, 전자출판 사업, 지역 축제 연계 북 콘서트 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출판진흥원 전반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배제 지시 등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5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배제 사건



65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배제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출1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배제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창비(대표: 강일우)'(이하 '창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등에서 2014, 2015년 세종도서 3차 심사과정 중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2014년에 2종의 출판사 창비의 도서가 최종 배제된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판결에서 밝혀진 3차 심사 과정 이외의 2014년 1, 2차 심사과정 및 2015, 2016년 전체 심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세종도서 선정사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청와대, 문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관계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을 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신청인 '창비'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청와대 작성),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6] 기존관리 리스트 -149명” 및 “정무리스트(15.4.13현재/중요)-59명”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2014년 세종도서 사업에서 신청인 ‘창비’의 도서가 2건 부당배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3)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서 신청인 ‘창비’에 대한 배제 경위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 조서),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은 사무관과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에게 신청인 ‘창비’의 도서가 해당 세종도서 사업에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출판진흥원 N과 유OO,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예년에도 20종 이상씩 선정되었던 출판사의 도서를 한 권도 선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김OO 과장이 청와대 김OO 행정관에게 양해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 신청인 ‘창비’의 신청 도서들 중 5종만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출판진흥원 N, 유OO은 2015년 세종도서 3차 심사에 참석하여 다른 중소출판사의 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여 신청인 ‘창비’에 대한 선정을 최소화하고자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문체부 담당자는 2016 세종도서 사업과 관련하여 학술과 교양 부문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붙임 :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배제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출1, 창비 등 세종도서 배제 사건

[신청인] 창비(대표: 강일우)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창비(대표: 강일우)(이하 ‘창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등에서 2014, 2015년 세종도서 3차 심사과정 중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2014년에 2종의 출판사 창비의 도서가 최종 배제된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판결에서 밝혀진 3차 심사 과정 이외의 2014년 1, 2차 심사과정 및 2015, 2016년 전체 심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세종도서 선정사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청와대, 문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관계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을 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에 따라 2017. 9. 29.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은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한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인하여 배제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하였는바, ①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하달 및 작동 방식을 면밀히 밝히고, ②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은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현황이 있는지, ③ 신청인 ‘창비’의 블랙리스트 등재 및 배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9건의 문서와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미래한국	
2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2014. 2.)	문체부 이OO	
3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2014. 2. 21.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4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2014. 2. 28.자)	문체부 이OO	
5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2014. 10.)	문체부	
6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		
7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8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9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0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11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2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3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4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출판진흥원 N	
1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문체부	
16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7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2014. 11. 4.자)	문체부 이OO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8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19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출판진흥원 유OO	
20	유OO 컴퓨터 복구 엑셀자료	출판진흥원 유OO	
21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22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 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2018. 4. 23.자)		
23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2018. 4. 23.자)		
24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5	oh&kim 가필 문건	문체부 김OO	
26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오OO	
27	이OO에 대한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록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28	김OO 특검 2016. 12. 19.자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29	2014, 2015, 2016 세종도서 접수목록 및 심사결과	출판진흥원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5인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N	출판진흥원 직원	진술조서(2017. 11. 7.)
2	유OO	출판진흥원 직원	진술조서(2017. 12. 27.)
3	김OO	청와대 행정관	진술조서(2018. 1. 11.) 진술서(2017. 12. 15.)
4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진술조서(2017. 12. 21.) 진술서(2018. 3. 14.)
5	이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진술서(2018. 3. 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개요

세종도서 사업은 문학, 교양, 학술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래 출판진흥원은 교양, 학술 2개 분야에 관해 ‘우수도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문학 분야는 ‘우수문학도서(문학나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민간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서관협회 등 사업자를 달리하며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문학부문까지 출판진흥원에 통합 운영되어 명칭을 세종도서로 바꾸었다.

나.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 (1)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출판사로부터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의 경우 총 5개 분야(시, 소설, 수필, 평론·희곡, 아동청소년)에서 599종, 학술부문 319종, 교양부문 310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 (2)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의 경우 510종, 학술부문 320종, 교양부문 455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다. 세종도서 선정절차

“사업공고 → 도서접수 →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회(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3차) 및 선정 → 도서 구입 및 배포”의 단계를 거친다.

2.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가. 국정원 작성, “문체부장관,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배제지시”(2013. 11. 1.자)

국정원 2013. 11. 1.자 작성 위 문건에는 “유진룡 장관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저자: 신은미) 제하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이 우수문학 도서에 선정되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우수문학도서 선정기관 및 주관부서를 변경, 관리를 강화하라’고 각별 지시”라는 내용이 1면에 기재되어 있다.

2면에서 “이념성향 스크린 및 도서지원 사업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동 문학나눔 사업을 우수 교양·학술도서 보급사업과 통합하여 처리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4. 2. 18.자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논란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경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체게바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¹⁾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2014. 2.)

미래한국 기사관련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의견>	
①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 ② 기자가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	
1. 체 게바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 _ 최광필 글, 오동 그림/ 한우리북스	
기자의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조망함으로써 독자에게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쿠바경제가 창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고 표현하여 쿠바 경제를 미화
타 언론사 추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체게바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는 조금 다르다. 실존 인물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그 인물의 전기를 따라가 재미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길을 보면) 라틴아메리카를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의 눈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 반미 서적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책의 속을 보면)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사회, 문화 등에 관해 어린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야기로 구성하여 소개한 책 <p>- 기자의 시각에는 책이 쿠바 경제를 미화하고 있다고 보나, 책의 앞뒤를 읽어 보면 쿠바경제가 국민의 창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로 쿠바는 나라 안에서 국민 스스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미</p> <p>- 기자의 시각에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p>
2. 나는 빈 라덴이 아니에요! _ 베르나르 상파즈 지음, 양전희 옮김/ 초록개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책을 ‘반미주의 동화책’으로 규정짓고,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강조하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도드라진다”

1) 미래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한’ 교양도서 목록”, 2014. 2. 18.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4> (접속일자: 2018. 4. 20.)

해당 문건은 2014. 2.경 미래한국 기사가 문제가 되면서 청와대 해명용으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사무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미래한국 기사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① 미래한국 기사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하고, ②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한 측면이 많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은 당시 미디어정책관 박OO, 출판인쇄산업과장 정OO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는 미래한국에서 보도한 도서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²⁾

(3)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2014. 2. 21.자)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 우수도서 심사·선정 문제

논란 사항

주간지 미래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미래한국 거론 서적 사례>

- ① 청소년에게 반이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체게바라와 팔팔라 라틴아메리카(서울대 최광열 작)
- ② 민주노총 김진숙 씨의 추천사를 받은 “비정규직 출근 하세요(어린이책 작가모임 작)”
- ③ 김일성 중심의 일제 항거를 담은 한국의 레지스탕스(조한성/진일반민족신상규명위원회)
- ④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책(“고장난 거대기업” ,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등”)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위 미래한국 보도 논란과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비서 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미래한국의 보도와 그 무렵 예술위의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6쪽(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공판기록).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제 삼은 국정원의 문건 등에 관하여 문체부 당시 유진룡 장관이 2014. 2. 21.경 김기춘에게 대면보고 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중 도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간지 미래한국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이에 논란이 된 도서의 선정 경위를 보면 이념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러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향후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련자 징계문제도 검토”하고,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 2013년 하반기 우수도서가 이념편향 논란이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1. 중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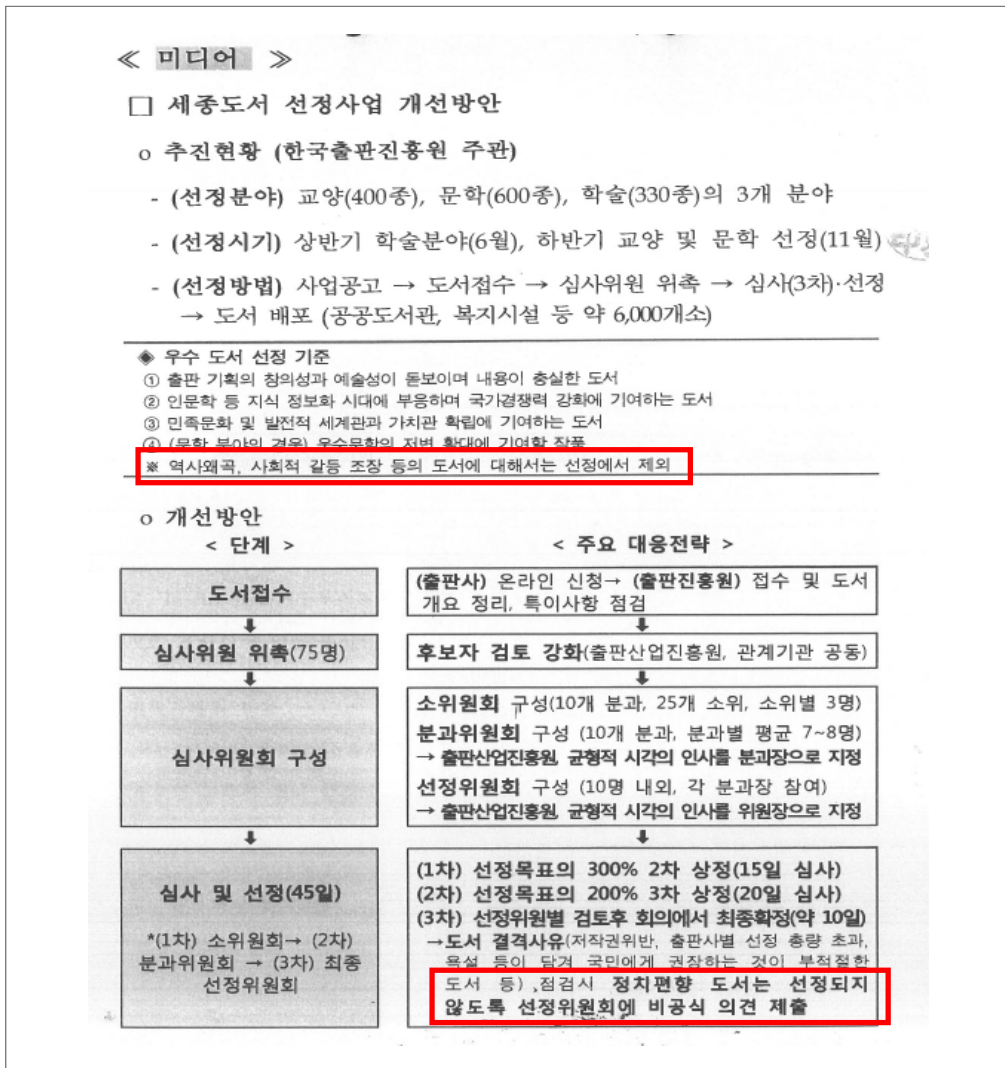
- 우수도서 선정 과정·결과를 둘러싼 외부 영향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 재점검
- 사업의 명칭·시행 주기, 도서선정 방법 재검토

이후 문체부 이OO 사무관 등은 2014. 2. 28.경 유진룡 장관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위 보고의 요지는 ①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 ② 선정시스템 개편·강화로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는 이

년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각 심사, ③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로 이념편향 도서가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우수도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설치, 기타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 문체부 작성,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2014. 10.)



김종덕 장관이 2014. 10.경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 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였는데 그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종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미래한국의 보도) (사례)',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문제점)',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개선방안)' 등이다³⁾.

다. 2015. 1. 7. 신은미 우수도서 선정 취소 사건

(1) 경위

- (가) 신은미는 2011. 10.부터 2012. 5.경까지 북한 여행 경험을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매체에 2012. 6.부터 2012. 10.까지 30회에 걸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고, 이 기고문들을 묶어 동일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이후 2013. 6.경 문체부 주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우수문학도서' 사업에서 신은미의 해당 책이 수필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 (나) 2014. 11. 19. 신은미와 황선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보도를 하는 등 문제가 되었다.
- (다) 문체부는 2015. 1. 7.경 책사회에 신은미의 책에 대한 우수문학도서선정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책사회는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 (라) 문체부는 2015. 1. 13. 전국 각 지역 도서관에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 회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해당 책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111쪽.

(2)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 2424(병합))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에 따르면(188-189쪽), 2014. 11. 25.경 충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신은미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일이 청와대 실수비에서 문제로 거론되었고, 조운선은 그 무렵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하여 정관주는 신은미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와 함께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김소영 문체비서관과 논의한 사실, 정관주 소통비서관은 2015. 5.경 문체부 제1차관이던 박민권에게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3)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91-92쪽)

신은미 책 우수도서 취소와 관련하여 정관주는 2017. 1. 17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 11쪽)에서 “신은미의 책이 문제되었을 때, 조운선 수석이 직접 우수도서 선정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를 하라고 지시해서 제가 김소영 비서관과 협의를 하게 되었고,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문체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아 조운선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소영은 이에 대하여 김상률 수석으로부터도 지시가 있었고, 정관주도 조운선의 지시사항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우수도서 선정취소와 관련한 여러 과정이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책의 우수도서 선정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91쪽). 당시 김소영의 기억에 따르면 신은미 책에 대한 우수도서 취소는 실수비의 지시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상률, 조운선 등이 함께 이 부분을 체크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92쪽), 자신은 김상률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에 전달하였던 것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92쪽).

(4)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쪽)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 12.경 갑작스럽게 우수도서 선정이 취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N은 2014년 말이면 문학나눔 사업이 출판진흥원에

서 진행되고 있을 때여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에 우수도서 취소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우수도서 선정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니 당시 사업을 진행중이던 출판진흥원에 출판진흥원장 명의로 선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은 신은미 책 우수도서 선정결정 취소 사건이 일련의 세종도서 부당배제 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7쪽)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 12.경 갑작스럽게 우수도서 선정이 취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에 해당 책의 선정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 출판진흥원은 2013년에는 문학나눔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4. 2. 미래한국 보도와 함께 신은미 책의 우수도서 취소 결정이 세종도서 선정 부당배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가.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상 “범죄일람표4”(515-516쪽)에는 출판진흥원 2014 세종도서 문학부문, 2015 세종도서 문학 및 교양 부문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배제되었던 도서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2014년 9종, 2015년 13종). 특정 도서 배제와 관련하여 문체부 이OO는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① 2014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③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각 지시하였고, 문체부 이OO의 지시를 받은 출판진흥원 N, 유OO은 ① 2014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창비’는 범죄일람표 순번 1, 3에 기재되어 있다.

[표-3] 범죄일람표상 배제도서목록표

순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담당 (문체부/산하기관)
1	2014년도	소설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강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2	2014년도	시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수호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3	2014년도	시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4	2014년도	시	기문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맹문재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5	2014년도	시	봄눈	도서출판 b	김병섭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6	2014년도	시	영통의 기쁨	서정시학	박희진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7	2014년도	시	장춘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8	2014년도	시	체 게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9	2014년도	소설	검은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정창근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0	2015년도	수필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2)	분도출판사	공지영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1	2015년도	시	A형 기침	도서출판 복인	정안나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2	2015년도	시	금정산을 보냈다	산지니	최영철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3	2015년도	시	꿈결에 시를 베다	실천문학사	손세실리아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4	2015년도	시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실천문학사	이재무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5	2015년도	시	집에 가자	삶창	김해자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6	2015년도	소설	단 한 번의 사랑	(주)해냄출판사	김흥신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7	2015년도	소설	어우동, 사랑으로 죽다	(주)해냄출판사	김별아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순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담당 (문체부/산하기관)
18	2015년도	철학/ 심리학/ 윤리학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북스	이진경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19	2015년도	철학/ 심리학/ 윤리학	파농	(주)도서출판 한길사	이경원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20	2015년도	사회 과학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21	2015년도	사회 과학	자공공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조한혜정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22	2015년도	문학 (교양)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나.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1) 참고인 김OO 관련

김OO는 2014. 3. 31.경부터 2016. 6.경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기간 동안 김OO는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3-8쪽)

- 1) 참고인 김OO는 2018. 1. 11.자 위원회 조사에서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참고인 김OO는 출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때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OO, 김OO,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을 비롯하여 각 담당 사무관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3쪽). 세종도서에 대한 특정 도서 배제지시 하달과 관련하여서는 위에 말한 사람들과 대부분 동일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OO 사무관과 거의 대부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진행 경과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3) 참고인 김OO는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에게 세종도서 관련 2차 선정도서 목록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개선방향” 문건과 관련하여 세종도서에서 이러한 개선방향이 실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 4) 2014 세종도서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 경위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2015년 동일 사업에서는 2차 선정 목록을 엑셀파일로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인터넷으로 저자 이름과 시국선언 정도의 검색어를 넣어 연필로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표기하였고 이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이 이를 부처에 전달하라고 지시하면 참고인이 김OO 과장 또는 이OO 사무관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5)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일관되게 특정 작가 및 출판사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김OO는 “세종도서 2차 선정목록에 있는 작가들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작가 등에 대한 의견을 문체부에 주었을 뿐이지 이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으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가 있다는 참고사항을 전달”한 것이므로 반드시 배제지시를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2-3, 7-8쪽)

- 1) 출판진흥원의 2014, 2015년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김OO는 자신이 출판을 담당하였던 것은 맞고 세종도서도 출판과 업무여서 담당하였던 사업은 맞지만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2)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문건은 김OO가 행정관으로 근무를 시작할 무렵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세종도서 관련 자료를 부탁하여 받은 문건으로, 김OO는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소위 ‘문제도서’가 우수(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3) 김OO는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사업선정 심사결과 명단을 문체부 내부 메일인 ‘나무’를 통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보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문건이 이미 자신이 부임

하기 전에 보고된 내용이었고, 문건에 기재된 개선내용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4) 위 명단을 송부받은 이후 절차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도서심사과정 1, 2, 3차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2차 심사가 끝난 다음에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서 2배수 정도를 송부받으면 이를 저자 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것을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한 다음 부처에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5) 또한 김OO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도서의 저자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표에 부기하여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700~800종의 저자와 작품명을 보고 저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름하고 시국선언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문건에 부기하였다.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김소영이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소영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 선정 제외 명단에 대해 검토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6) 김OO는 선정 제외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할 때 항상 우선으로 연번을 불러주었다. 2차 심사 결과가 왔을 때 10명 내외의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참고인 김소영 관련

김소영은 2013. 11. 경부터 2016. 9. 2.까지 대통령 비서실 문체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가) 김소영 2017. 6. 23. 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90, 112-114쪽)
 - 1) 2015년 하반기 김상률 교문수석으로부터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들은 단 1권도 선정되지 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김상률이 이에 대하여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 중 좌편향 책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비치되었다는 IO 보고서가 올라가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였던 말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소영의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2) 김소영은 세종도서 심사과정에 대해 문체부가 보낸 명단 및 김OO 행정관이 부기한

명단, 그 이유까지 모두 김상률에게 보고하였고, 김상률 또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김소영은 양해 요청과 함께 2차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도 김상률에게 상의하였고, 양해 요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무수석실과 협의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양해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창비와 문학동네가 지원을 더 해주어야 하는 사안 정도로 기억하며 이에 대해 김상률과 상의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 기록, 피의자신문조서 46-50쪽)

- 1)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교문수석실에서 우수도서 사업 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정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소영은 사실이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우수도서 문제는 실수비 전달사항으로 자신에게는 모철민 수석이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2) 우수도서 사업은 사업개편이 이루어져 문학나눔 사업과 우수도서 사업이 통합되어 사업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기존 2단계 심사방법을 3단계 심사로 문학의 경우 심사방법을 강화하여 문학 나눔 추천위원회를 두는 방법으로 심사절차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밀도 있게 도서 선정을 진행하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를 거르는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 12-13쪽), 김소영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3) 김OO 행정관이 세종도서 진행상황 전반을 김소영의 지시에 따라 김소영에게 보고한 것이 맞으며, 김소영은 모철민의 지시를 받아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4) 김OO 행정관은 문체부 김OO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이 자신에게 학술, 교양, 문학 부문 2차 심사 결과를 문체부 내부 메일 '나루'로 송부해 주면, 제가 인터넷 검색하여 시국선언 작가들을 검색하고, 2차 심사 결과 출력물에 부기한 이후,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김소영 비서관이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후 그대로 하라고 김OO에게 지시하면, 문체부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교양, 문학 부문의 선정 제외 대상 연번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면 김

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이 출판진흥원에 통보하여 3차 최종 심사에서 선정 제외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로 학술부문의 경우 전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선정 제외 대상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김소영은 동의하였다.

- 5) 김상률은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세종도서 선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작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교문수석실의 관여로 특정 작가나 출판사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 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소영은 당연히 김상률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통령 서면보고로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방식을 개편하여 문제 도서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VIP께서 “단 1권도 안됨”이라고 지시할 정도의 사안으로 이 엄중한 지시가 김상률 수석 때의 일로 김상률 수석이 이에 대해서 왜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3-44쪽)

김상률은 2014. 11. 18.부터 2016. 6. 7.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김상률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선정사업 심사 과정 결과에 대해서 우수 도서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 세종도서로 이름을 개명해서 진행한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선정과 관련하여 시국선언 작가들을 검색해서 명단 배제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배제명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진술하였다.

(4)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2-43쪽)

김종덕은 2014. 8. ~ 2016. 9.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김종덕은 2014,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도서들에 대한 배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배제 과정에서 자신은 보고를 받거나 관여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5)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9-11쪽)

(가) 이OO는 2013. 12. 13.경부터 2016. 4. 3.경까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사

무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 (나) 이OO는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으로부터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출판진흥원에 전달하여 제외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이OO는 출판진흥원 유OO이 2014.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이OO의 요청에 따라 세종도서의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OO는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2014.~2015. 세종도서 사업선정 시 1~3차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보고하였다. 김OO 행정관이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명단을 보고받은 김OO 행정관은 유선상으로 이OO에게 심사통과자 목록 중 선정제외 대상을 불러주었다. 이를 메모하여 이OO는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 유OO 팀장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다. 유선상으로 선정제외 대상을 받고 출판진흥원에 이를 유선상으로 전달한 이유는, 기록을 남겨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 등 외부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김OO 행정관은 제외대상을 불러주면서 어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는 김OO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을 출판진흥원에서 보내준 심사통과자 목록 연번에 체크하고 이OO의 상관이었던 김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6)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및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은 2014. 10.~2016. 9.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자응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과장이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N, 배OO 등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에 보면 “1. 세종도서 학술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공유” 바라며, 김OO 본인에게는 모든 관련 메일을 송부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

김OO은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에서 위 메일을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업무 사무관, 주무관,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송부한 이유와 관련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라는 답변을 기재하였다.

(다)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2-3쪽)

- (1) 김OO은 출판진흥원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외·배제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세종도서 선정 과정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청와대 및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2014. 10. 과장 부임 직후부터 문체부 내부의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 (2)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절차의 후반부 단계에서 산하기관 담당자들에게 검토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배제지시를 진행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 (3) 배제지시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체부 실국장장과 장차관에게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진행상황 결과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라)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8-11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세종도서의 경우 미리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하여 선정절차 후반부 단계에서 김OO이 검토의견을 주는 것으로 배제지시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배제지시는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OO은 스스로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세월호 및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출판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3.16)

□ 미디어(출판) 분야

○ 세종도서 학술 부문(320종) 선정

- 공고(3.18), 접수(3.23~4.3), 심사(4~5월), 선정(6월)

☞ (추진방향) 학술 분야로 이념성 등 문제 제기 가능성 낮음

○ 세종도서 교양(450종) 및 문학(510종) 부문 선정

- 하반기에 진행(8월 공고, 11월 선정)

☞ (추진방향)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예년 선정 기준을 유지하되, **심사 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문건에서 세종도서 심사 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라는 기재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공성과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정치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지원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18쪽)

(가) N은 2014. 4.경부터 2017. 6.경까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2014, 2015 세종도서 사업에서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는지에 대해 이OO 사무관의 요청에 의해서 유OO 팀장이 송부하였다.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 또한 이OO 사무관이 유OO 팀장에게 하달하였고, N은 유OO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배제지시에 대하여 당시 원장과 사무처장에게 모두 보고하였다. 원장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말만 하였다.

(다) 2014, 2015 세종도서 사업 부당배제가 일어난 경위에 대하여, 한 2년에 걸쳐서 약 100여 종에 대한 배제지시 사항이 문체부로부터 출판진흥원에 하달되었고, 유OO 팀장과 N이 함께 100여 종에 대한 자체 검토보고서를 써서 이OO 사무관에

게 주고 이OO 사무관에게 선정 배제할 만한 도서가 아니라는 설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최종적으로 22종만 기재되어 있지만, 지시는 훨씬 많았으며, 주로 문학과 교양 분야에 하달되었고,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및 참고인 유OO의 진술
(2017. 12. 27.자 진술조사)**

(가) 유OO은 2013. 2.경부터 2016. 7.경까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 진흥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해당 부서가 세종도서 선정정보급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5쪽)

(다)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사, 4-6쪽)

유OO은 이OO 사무관이 2014. 11. 처음으로 배제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OO은 이OO의 이러한 배제지시를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 1) 참고인 유OO은 2017. 12. 2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유OO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OO 과장이 출판진흥원 실본부장들에게 출판진흥원 주요사업 선정에 대하여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N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 3) 유OO은 세종도서 사업에서 주로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배제지시를 하달받았고, 김OO 과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제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OO 사무관은 왜 이러한 지시를 하느냐는 유OO의 물음에 '위'로부터의 지시이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4) 배제지시는 주로 미리 유OO이 송부한 선정도서 목록을 보고 연번을 유선상으로 불러주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유OO은 2014. 2. 미래한국의 보도 이전에는 별다른 배제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후부터 해당 도서사업을 둘러싸고 원장의 사임위기 등 여러 이야기가 무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2차 선정도서 목록을 송부하라는 요청이 시작되었고, 유

OO은 이것이 미래한국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유OO은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되면 이를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N 본부장은 유OO에게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배제 대상을 줄여보라고 하였고, 검토결과를 이OO 사무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도서들의 3, 4배는 되는 훨씬 많은 양의 도서들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4, 2015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2014. 11. 4.자)

참고1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		
도서명	검토의견	비고
거울나기	지자(이수호)가 전교조위원장 출신으로 2009출판참사, 쌍용차 투쟁현장을 함께 했고 도서 내용에 (내용 확인-이번 결론은 꼭 정리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때리고 깃발은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예 불태워버리는구나, 58p 까지 읽4 발췌) 부분 존재	시
그리운 나무	지자(정희성)는 김근태 주모시 "그대를 잊지 못하리(동 도서 수록-한 시대가 이렇게 가는지나 나더러는 조시나 쓰라 하고 김근태가 또 잊지 갔다. 38p 그대를 잊지 못하리 발췌)" 창작자로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 동 도서는 2014정치운동문학상 수상작임.	시
기쁜 어린 양들	지자(명문재)는 전태일문학상 수상자로 노동자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	시
별은	지자(김병섭)가 노동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도서의 내용상의 부담은 없음(내용 확인-공민의 정부 실직자를 최후한 삼키며 우리도 일하고 싶다! 목 앞에는 노동부장관은 무엇이며 근로부장관은 쫓아 지기 가겠나. 60p 실업일기-5월1일 발췌)	시
영웅의 기쁨	지자(박희진)는 99년 정부 보편문화상 수상자, 도서의 내용(내용 확인-재 환 불태운 깃대미에서 불사조가 부활하듯 관공절벽 노동계에 떠오른 새별! 전태일은 불멸의 신화가 되었더니, 71p 전태일 걷기 발췌) 일부에 전태일, 위안부, 한일 관계를 다루고 있음	시
장춘 남편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80-90년대 우리나라의 양철한 시대상을 노래하고 시를 통해 분단, 억압을 극복하고 소통, 이해의길 모색 (1985년 봄, 국가를 의상하다. 광주시민을 살려낸 정부를 알게 되다. 전태일 부는 무엇인 보고서 알게 되다. 1987년 봄과 여름사이, 거리에서 떠난다. 애국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2000년 여름, 너 그려워지다. 11p 약력 발췌)	시
채 개바라 만세	2014대산문학상 수상작이나, 제목이 강령적이고 혁명가 채개바라를 소재로 한 시가 2편 존재(내용 확인-채 개 바라를 좋아하는나는 질문에 절은 인력거꾼은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이라고 대답한다. 105p 산타골라라 발췌)	시
김용준, 최상 태향	지자(정희성)는 독일시민자격으로 양백, 통일문학 <물주>를 발표한사연으로 도서 내용의 통일을 영웅체는 주인공이 독일로 건너가 권익으로 들린 길은 아공공을 주고 받는다. <김용준은 영웅을 영웅으로 자신적 뜻을 펼치자 지자(정희성)는 내용을 읽고 있음	소설
수생이 좋다	2014년제문학상 수상작이나, 지자는 "희곡"이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문학상과 그 주변 인물과 그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위는 내면을 그려내고 있음	소설

1)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1-13쪽)

2014. 11. 4.자로 이OO가 작성한 문건이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당초에 문체부에서 보고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이다.

해당 문건의 '보고배경'에는 '우리 부는 지난해 선정한 우수교양도서 일부가 중복감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3월 도서선정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 중', '그러나, 문학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완전히 제외하는데 어려움', '대상 도서 중 올해의 대산문학상 수상작 등 이미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선정의견 고수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문학의 경우 선정제외 대상인 도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선정의견을 고수하여 배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의 2쪽에는 '참고1.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겨울나기」, 「그리운 나무」, 「기쁜 어린 양들」, 「봄눈」, 「영통의 기쁨」,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갔을까?」, 「체 게바라 만세」, 「검은 눈, 하얀 바람」, 「소년이 온다」 등 9종의 도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OO는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위 9종의 도서를 반드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12쪽). 위 도서의 선정제외 과정에 대해서는 이O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서 알고 있지 못하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제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OO의 지시를 받은 N, 유OO은 선정제외 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문학작품으로서는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의 도서이고, 「그리운 나무」는 정지용 문학상, 「소년이 온다」는 만해 문학상을 수상한 검증된 작품이라는 의견을 이OO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OO는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인 또한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없고, 김OO 과장 등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양해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양해를 요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으나 어떤 도서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3-4쪽)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위 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0.~11.경 세종도서 ‘문학부문’ 2차 심사결과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송부하였고, 이OO 사무관은 유OO이 송부한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4. 11. 7.경 “2014. 11. 4.자 ‘세종도서 추진현황(하반기)’.hwp” 파일을 첨부하여 유OO에게 메일을 송부하였으며, 유OO은 이 메일을 N 본부장에게 발송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 사무관이 첨부한 파일의 제목은 “세종도서의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로 참고자료에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논란 가능 도서 현황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자료에 기재된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이 당시 이OO 사무관이 선정 배제를 요구한 도서 목록이다.

(나) N 관련

1)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7-9, 14-16쪽)

가) N은 2017. 5. 12.자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녹취서 기재되어 있다. N은 유OO 팀장을 통해서 2014. 11. 7.경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2014. 11. 4.에 작성한 지원배제대상 목록을 전달받았으며, 2014년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한 9건의 도서가 모두 세종도서에서 제외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014년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이OO 사무관이 유OO에게 선정제외 연번을 불러주었고, 유OO이 연번을 메모하여 연번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그 연번의 작가, 작품이름, 내용에 대한 문건을 만들어 N에게 보고하였으며, N은 해당 책 내용을 유OO과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4년도 세종도서 3차 최종심사(심사위원 13명, N, 유OO 참석, N 회의 진행)는 2014. 11. 14.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N은 유OO 팀장과 함께 세종도서 선정 심사 위원회에 간사로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4년도 세종도서와 관련하여 N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책을 선정해 달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책을 공공도서관 등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심사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배제지시가 하달된 특정 도서 및 저자를 언급할 수는 없었

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N은 위 발언이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이며, 사업의 취지상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는 책을 선정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스스로 발언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 중 ‘체 게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에 관하여 N은 “2014년 대산문학 수상작이지만 꼭 선정하여야 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체 게바라 만세는 제가 선정을 제외하였으면 좋겠다”고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N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를 하면서 도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미 전반적으로 책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의 요구를 알아듣고 선정 제외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8쪽)

가) N은 2017. 11. 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N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가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내질 텐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들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와 공감을 위한 문학 작품 위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3차 선정회의에는 최종 선정 종수의 2배수 혹은 1.5배수 가량의 책들이 올라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심사위원 분이 특정 시집을 포함되기를 원하셨고, 그 때 그 시집에 성폭력 등을 묘사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어디에 보내지느냐고 물으시길래, 어른들이 보면 관계없지만 청소년 쉼터 등에 보내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년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심사기준 제14조에 보면 “[문학부문] 1.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따라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2호에 보면 “수요자 관점을 종합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에 따라 발언한 것입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심사위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어떤 심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9-11쪽)

- 1) 참고인 유OO은 2017. 12. 27.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3차 회의 때 심사위원들에게는 배제지시가 하달된 연번을 직접 말할 수 없어 당시 회의진행을 맡았던 N 본부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정이 되면 어떤 곳에 배포가 되고 그곳의 수요자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곳들에 배포가 되니 정서치유가 되는 책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돌려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서치유’에 대한 언급이 해당 도서들을 배제하달라는 뉘앙스를 가졌던 이유는 당시 국감 등에서 이미 블랙리스트가 언급되었고, 심사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N 본부장 등이 ‘정서치유’라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여도 정부비판적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들을 알아서 배제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2014년 배제목록을 보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만해문학상 수상작이었고, 「체계바라 만세」도 대산문학상 수상작이었는데 이러한 책들이 배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책들이 선정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 3) 유OO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심사장에서 N이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가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내질 텐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들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와 공감을 위한 문학 작품 위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수요자들의 정서치유에 도움이 되는 책들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기억”하나, “배제지시가 내려온 도서들을 옆두에 둔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접수도서 목록

연번	분야	소분과	도서명	출판사	저자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126	시	시2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수호	선정	선정	비선정
127	시	시2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선정	선정	비선정
128	시	시1	기쁜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영문자	선정	선정	비선정
130	시	시3	꽃눈	도서출판 스타	김병섭	선정	선정	비선정
132	시	시2	영혼의 기록	서정시학	박희진	선정	선정	비선정
133	시	시4	장르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선정	선정	비선정
134	시	시4	제 게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선정	선정	비선정
455	소설	소설3	검은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정철근	선정	선정	비선정
457	소설	소설2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강	선정	선정	비선정

위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첨부 문건에 기재된 9종의 도서는 모두 3차 심사에서 선정 제외되었다.

(2)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선정 관련

(가) 출판진흥원 유OO 팀장 작성,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연번	분야	소분과	도서명	출판사	저자	선정결과	수요자추천	기타	기자	도서	비고
32	시	시1	A형 기쁨	도서출판 북인	김다은	예비			Y		
90	시	시2	운명애 시를 데다	실천문학사	조시영	우선			Y		
120	시	시3	가래운 벗집을	작가세계	유재민	우선			Y		
126	시	시3	금장산을 보았다	산지니	이영진	우선			Y		
139	시	시3	슬픈애기 무릎을 꿇다	실천문학사	이지수	우선			Y	Y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담긴 시집으로 특이사항 없음
200	시	시5	집에 가자	살랑	김재지	우선			Y		
211	소설	소설1	단 한 번의 사랑	(주)세남출판사	김유선	우선	Y		Y	Y	사람의 영혼함을 믿는 이들에게는 가슴속에 간직한 옛사랑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소설로, 특이사항 없음
221	소설	소설1	여우등, 시집으로 죽다	(주)세남출판사	김영미	우선	Y		Y		
230	소설	소설2	임대 없는 여자	실천문학사	신도연	우선			Y		
289	수필	수필1	공자영의 수도암 기행(2)	보도출판사	이진우	우선			Y	Y	수도암을 탐사하면서 겪은 기행문으로 여행자의 풍경과 사색, 개인적 체험을 긴 호흡의 유리천막 문장 안에 담고 있으며, 특이사항 없음

1)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7-8쪽)

본 심사결과 목록은 2015. 10. 중순경 유OO 팀장이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선정제외 대상 도서를 통보받고 정리하여 N 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이다(7쪽). 2015. 10. 중순경 201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OO 사무관이 유선상으로 연번을 불러주고 유OO은 그 연번의 도서와 일치하는지 도서명과 저자명을 확인하였다.

유OO은 N 본부장과 배제지시를 받은 도서를 검토하였으며, 문학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내용이 없어, 해당 도서들의 검토결과를 이OO 사무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OO 사무관은 “위의 요청이 강력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4쪽)

해당 문건은 출판진흥원 유OO이 이OO로부터 선정제외 대상을 전화로 통보받아 메모한 이후, 연번을 정리하여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위 목록 중 32(정안나), 90(손세실리아), 126(최영철), 200(김해자), 212(김홍신), 221(김별아), 289(공지영)이 3차에서 최종 탈락하였는데 이는 이OO가 해당 도서들에 대해 선정제외를 요구하였던 도서들이 맞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출판진흥원 유OO 팀장은 2차 심사를 마치고 3차 심사 전, 2015. 10. 중순에서 하순경 이OO가 위 명단을 불러주어 N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도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는데, 별 문제가 없어 이OO에게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더니, 이OO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능하면 노력해 달라.”고 하여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의 경우

이OO가 선정제외를 지시한 문학분야 10건 중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선정 배제되었는데, 이OO는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해당 도서들이 배제가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이OO가 배제지시를 하달한 10종 중 허

형만, 서성란의 도서 2종은 선정이 되었는데, 당시 문체부에서는 N 본부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모든 심사과정이 종결되어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5년 세종도서 사업 최종 선정 공고 지연 관련

1)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0쪽)

2015년 세종도서 사업 최종 선정 공고 지연에 대해서는 선정배제 지시가 하달된 책들 중 2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문체부 김OO과장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느냐고 연락을 하면서 최종 선정 공고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5쪽)

N 본부장이 3차 심사까지 완료되어 방법이 없다고 하자 김OO 과장이 심사위원회는 다시 개최할 수 없는지까지 물어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보통 3차 심사 이후 10일 내지 2주 정도가 지나면 선정결과를 발표하는데, 당시 선정제외 대상이었던 허형만, 서성란의 작품이 선정되어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제로 공고가 2015. 11. 27.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지연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12쪽)

2015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최종 선정 공고가 지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하나 이OO 사무관에게 유OO이 최종적으로 2종이 배제되지 못하였다고 보고를 하자 김OO 과장이 N 본부장에게 연락을 하여 심사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관련

A	B	C	D	E	F	G	H	I	J	K	L
연번	기준연번	신청분야	교과목	도서명	출판사	금저차	번역사	번역자	주요시 구 권	2차 심사	3차 회의 비고
3	405	사회과학	5.사회/복지 2	자공공	도서출판 또러니의 문화	조한혜정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9	956	문학	5.수필/평 론/회고2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6	60	철학/심리 학/윤리학	2.서양/철학 일반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박스	이진경			Y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7	96	철학/심리 학/윤리학	2.서양/철학 일반	파농	(주)도서출판 한길 사	이경원				예비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24	404	사회과학	5.사회/복지 2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유OO은 2017. 1. 5.자 특검 진술조서(N 대질)(진술조서 25-26쪽)에서 컴퓨터에서 복구한 엑셀자료를 제출하면서,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제외와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이 연번3(조한혜정) 「자공공」, 연번9(김기성 외 120인) 「잊지 않겠습니다」, 연번6(이진경)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연번7(이경원) 「파농」, 연번24(김윤태) 「사회적 인간의 몰락」 등 5종을 이OO 사무관이 탈락하도록 통보하였고,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의 '3차 회의 비고'란에는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9쪽)에서, 2015. 11. 초순경 이OO 사무관으로부터 교양부문 도서 배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공공」, 「잊지 않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파농」, 「사회적 인간의 몰락」 총 5종에 대한 배제지시였고 모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N은 문학 분야 이외에 교양, 학술 부문에서 선정제외 대상을 통보받아 선정제외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OO 사무관이 교양부분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N의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이OO도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18쪽)에서 동의하는 취지와 함께 본인의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선정 관여 여부

(가)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7쪽)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2쪽을 보면,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276명 중 부적합 107명, 부적합사유 중 ‘기타 등 4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OO는 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단도 청와대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청와대에서 당시 10여 명 정도의 후보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7-8쪽)

참고인 김OO는 2018. 1. 11.자 위원회 조사에서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문건에서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276명 중 부적합 107명, 부적합 사유 중 ‘기타 등 42명’” 기재와 관련하여 참고인 김OO는 세종도서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에게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것은 맞으나, 정확하게 몇 명을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배제기준

(1)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3-8쪽)

참고인 김OO는 배제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한 기준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이며, 문재인 지지선언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기준은 참고인 김OO가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실수비 이후 내부 비서관들이 주재하던 회의에서 전달받은 기준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피의자신문조서 47쪽)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해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진술조서 12-13쪽)

문학의 경우 문학나눔 추천위원회를 별도 시스템으로 도입한 이유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밀도 있게 도서 선정을 진행하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정부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를 거르는 장치로 활용되었으며, 정부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란 예컨대 정부정책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의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세월호 사건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하는 서적들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8-9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 스스로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세월호 및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출판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7-18쪽)

참고인 N은 문체부가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5쪽)

유OO은 2014, 2015년 사이에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문인들의 이름만 나열된 목록이 팩스로 온 적이 있는데, 기재된 이름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세월호 시국선언 문인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배제지시가 내려왔던 저자 목록을 차후에 조합해보니 세월호 관련, 정부비판적 발언들을 해온 문인들이라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 (2014. 11. 4.자)

□ 개선된 시스템 적용결과

○ (학술) 총 336종 발표(상반기) 결과 특이사항 없음

- 3,800종 접수 → 1~2차 심사 통과 800종 → 문제도서 120종 발견
→ 심사위와 협의 120종 모두 제외 → 우수작 336종 최종선정

(1) 이OO 작성 2018. 3. 5.자 진술서(3쪽)

이OO가 2018. 3. 5.자 작성 및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위 문건은 이OO가 작성한 문건이 맞으며, 해당 문건은 세종도서 선정 사업의 개선 동향을 보고해 달라는 김OO 과장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나 문건 작성에 대한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서 ‘학술’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도서 102종 발견”, “심사위와 협의 120종 모두 제외”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문건은 청와대 등 정보를 보고받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한 허위 보고서”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며, “1~2차 심사결과 정상적으로 탈락된 도서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어 탈락시킨 것처럼 자료를 가공한 것”이고, 이러한 허위자료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종도서 사업에 대한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016년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이OO는 2016. 4. 4.자로 타 과로 전보되어 해당 업무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2)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10쪽)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문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김OO는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있으며, 위 문건 1쪽에 보면 학술, 교양 부분에서 각 문제도서가 120종, 210종 발견되었으나, “심사위와 협의” “모두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배제지시 사항이 하달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수도서 개선방향이 적용된 결과를 기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배제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6 세종도서에도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3)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1쪽)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문건 1쪽에 보면 학술, 교양 부분에서 각 문제도서가 120종, 210종 발견되었으나, “심사위와 협의” “모두 제외”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문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술, 교양 분야에서도 배제지시 사항이 하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으로는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도서들이 약 100여 건인데 문건에서 문제도서 몇 종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자연탈락된 책들을 이 OO 사무관이 부풀려서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김OO 관련

(1)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N, 배OO 등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에 보면 “1. 세종도서 학술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공유” 바라며, 김OO 본인에게는 모든 관련 메일을 송부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



(2)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11쪽)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동일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3) 김OO 2018. 3. 14.자 작성 진술서(3쪽)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분야에서 특정도서에 대한 배제지시를 출판진흥원 직원에게 하달한 적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배제지시가 청와대 및 국정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 세종도서 학술분야는 문체부 출판과 차원에서 특별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과장으로 부임한 2014년 10월 당해 연도 선정사업

이 한창 진행 중이던 문학분야 종료 시까지는 업무파악 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담당과장으로서 특정도서 선정심의에 의견을 주었던 대상은 2015년 교양 및 문학, 2016년 학술 및 교양인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11쪽)

김OO은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토지조사를 하려는 학자가 쓴 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1-22쪽)

2014, 2015 세종도서 교양, 학술 분야에 모두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것인지에 대해 N은 학술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21쪽). 2016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따로 하달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2쪽).

라.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14-15쪽)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된 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학술의 경우 신청목록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재로 배제지시가 하달된 경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김OO에 대한 2017. 12. 21.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OO은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토지조사를 하려는 학자가 쓴 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유OO은 자신은 잘 모르는 내용이며 심의과정에서 자연탈락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유OO은 2016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학술 분야까지는 자신이 담당하였으나, 배제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6년 세종도서 심사위원 관련 2018. 4. 23.자 조사보고

(1)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 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 (2018. 4. 23.자)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강OO는 2018. 4. 23.자 전화 통화에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으나, 매년 심사 때마다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이 형광펜으로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성적 표현이 있는 작품들을 표시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 (2018. 4. 23.자)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박OO은 2018. 4. 23.자 전화 통화에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신청인 ‘창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신청인 ‘창비’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1) 청와대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8쪽) - 문체부 8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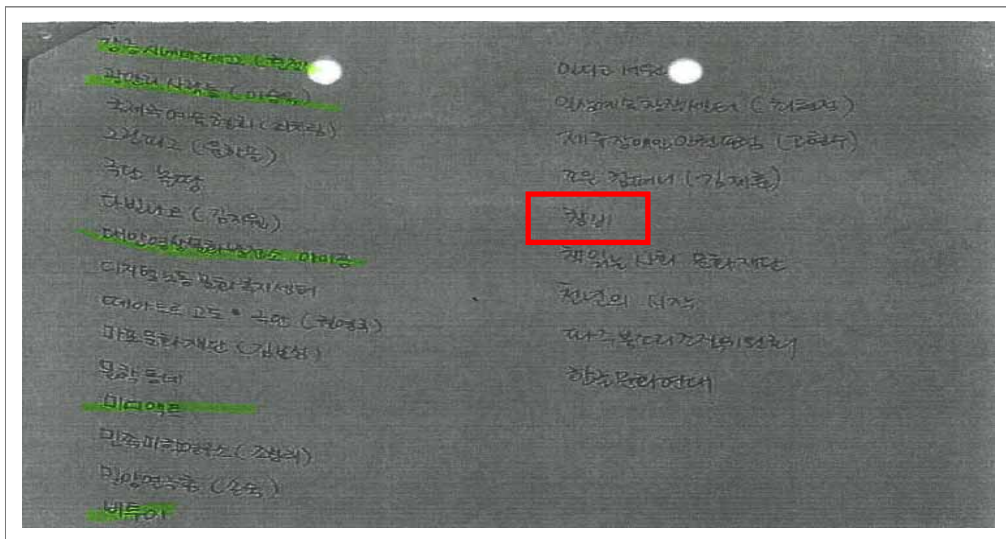
87	창비	<창작과 비평> 발간 지원	16	-	출판인대표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	----	----------------	----	---	--------------	------

김기춘은 2014. 초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4. 4.경부터 국민소통, 교육, 문화체육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

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해당 TF의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⁴⁾

신청인 ‘창비’의 경우, 위 문건의 첨부 일람표상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중 문체부 부분 연번 87번에 기재되어 있다. 출판사 창비의 문예지인 <창작과 비평> 발간 지원과 관련하여 2013년에 지원을 받았으며, 특이사항으로 “출판인대표 문재인지지”, 조치결과로 “지원배제”가 적시되어 있다.⁵⁾

(2) 문체부 공연예술전통과 김OO 사무관 작성, “oh&kim 가필 문건”



김OO은 2013.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2015. 11.경부터는 문체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총괄서기관으로 근무한 자로, 위 문건을 수기로 작성한 후 오OO에게 인계하여, 오OO이 이후 자신의 리스트 문건에 업데이트한 내용이다. 해당 문건에는 “창비”가 기재되어 있다.

4)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7쪽.

5) 위 판결문 8쪽.

(3)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6] 기존관리 리스트 -149명”

<p>공연과 관리 (중요) - 79명</p>	<p>~ 14.4월 문예소식이 있던 부분 제외하고 발간</p>	<p>①강은교(동아대 명예교수), ②고은(시인), ③고연옥(작가, 연극), ④고창훈(전대교수), ⑤구중서(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⑥김경미(시인), ⑦김도연(소설가), ⑧김병호(소설가), ⑨김보성(전 마포문화재단대표), ⑩김상용(화가), ⑪김성철(시인), ⑫김소연(시인), ⑬김영동(일송창작예술센터 대표), ⑭김정은(연극), ⑮김중일(시인), ⑯김태수(혜이수, 소설가), ⑰김혜진(아동문학가), ⑱박솔피(소설가), ⑲서상혁(연극, 호서대교수), ⑳서성린(소설가), ㉑서철원(소설가), ㉒성기용(연극연출), ㉓송미경(아동문학가), ㉔송진권(시인), ㉕양혜규(설치미술가), ㉖오성윤(마당을 나온 압타 감독), ㉗유영소(소설가), ㉘이상국(시인), ㉙이선아(무용가), ㉚이종호(국제무용협회 회장), ㉛이준호(소설가), ㉜이지호(고암문화재단 대표, 이응노미술관 관장), ㉝이진희(은행나무출판사 주간), ㉞정미경(소설가), ㉟정상윤(경남대교수),</p>
<p>- 21 -</p>		
		<p>㊱정혜원(아동문학가), ㊲주원익(시인) ㊳천수호(시인), ㊴권운영(소설가), ㊵최용배(영화사 청어람 대표), ㊶최용탁(소설가), ㊷한창훈(소설가), ㊸함성호(시인), ㊹한정임(소설가), ㊺홍선(희망제작소 부리센터장) ①강릉시네마테크(권정삼), ②광안리 사람들(이승욱), ③국제극예술협회(최치림), ④그린피크(윤한술), ⑤극단놀방, ⑥다빈나오(김지원), ⑦대인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⑧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⑨메이드로드 극단(권영국), ⑩문학동네, ⑪머디엑트, ⑫민족미학연구소(조성래), ⑬밀양연극촌(손숙), ⑭비투이, ⑮산울림극단(임영웅), ⑯서울괴담 극단(유영봉), ⑰실천문학, ⑱아트스페이스 씨, ⑲아트클럽(이지혜), ⑳옛나인필름, ㉑연우무극단(유인수), ㉒연희단거리패(김소희), ㉓오장환문학재추진위원회, ㉔윤이상평화재단(신계륜), ㉕극단 이루(손기호), ㉖인디고서원, ㉗일상예술창간센터(최현경), ㉘제주장애인인권포럼(고현수), ㉙조은컴퍼니(김제훈), ㉚장미, ㉛해맑은사회문화재단, ㉜천년의시작, ㉝파주북소리조각위원회, ㉞안글문화연대</p>

서울중앙지검 2017. 10. 15.자 오OO 진술조서(41-42쪽)에 따르면,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2015. 3. ~ 4.경 이전에 작성한 문건으로, ‘기존관리 리스트’는 당시 청와대 김OO 행정관이 기존관리 리스트를 한 번에 모아서 배제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 문건의 ‘공연과 관리(중요)-79명’란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사무관이 보관하고 있던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4)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정무리스트(‘15.4.13현재/중요)-59명” 문건

창비(창작과비평)	16,000	20,000	16,000	문학행사및연구지원: '14년 10,000천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	--------	--------	---------------------------------------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 3.~4.경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배제 대상자들 명단이 문체부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명단은 2014. 5.경 정무수석실에서 민간단체보조금 TF 당시 작성된 문제단체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별첨 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일람표 중 문체부에 해당하는 명단의 일부와 그 내용·순서가 거의 같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이OO 과장에 따르면, 위 명단은 2015. 3.경 문체부의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와 관련해서 이OO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에게 내려온 것인데, 이를 이OO가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명단에 있던 ‘창비’가 2015년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OO가 경위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명단이 문체부에 전달된 경위에 관하여, 김OO은 정무수석실에서 최근 3년간의 지원내역 점검을 요청받으면서 위 리스트를 받아 문체부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오OO도 2015. 4. 13. 이를 이OO 과장으로부터 받을 때 정무 쪽에서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오OO은 이에 관해 59명의 명단과 이에 대한 2013년~2015년의 지원내역까지 함께 정리된 부분을 ‘정무리스트(15. 4. 13. 현재)’라는 제목으로 보관하였다.⑥ 해당 문건에 ‘창비’가 기재되어 있다.

나.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서 신청인 ‘창비’에 대한 배제 경위

(1)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이OO는 유OO 팀장에게 연락하여 ‘창비’ ‘문학동네’ 두 출판사의 책은 한 권도 선정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시를 전달할 이유에 관하여 이OO는 당시 내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고 창비와 문학동네는 앞으로 선정되면 안 되다는 이야기를 김OO 과장을 통해 들었으며 김OO 과장 또한 위(국정원 또는 청와대)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⑥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173쪽.

당시 유OO 팀장은 “전년도에 20종씩 선정된 출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1종도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가 없이 배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10종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OO에게 요청하였으며, 이OO 또한 청와대 김OO 행정관에게 이것은 무조건 관철시켜 달라고 직접 이야기하였고, 결국 위 출판사 도서 중 5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결과’ 3쪽을 보면, ‘문학동네’ ‘창비’가 5종에 한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는 청와대의 완전배제지시에 대하여 5종에 한해 양해를 얻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선정 출판사 현황
- 문학과지성사 등 225개 출판사 선정

선정종수	선정 출판사명	출판사수
12종	문학과지성사	1
11종	(주)민음사	1
9종	문예바다	1
8종	(주)샘터사, 서점시화	2
7종	(주)천년의시작, 도서출판 복인, 실천문학사, 은행나무, 푸른사상사	5
6종	(주)사계절출판사, (주)웅진씽크빅, 도서출판 경남, 도서출판 시학사, 위즈덤하우스	5
5종	(주)문학동네, (주)창비 , 나무옆의자, 도서출판 황금알, 바람의아이들, 작가세계, 중앙북스주식회사, 한국문연, 현대문학	9

(2)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4, 10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OO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예술정책과에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여러 문제가 있던 시기에 출판인쇄산업과에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출판사들이 창비, 문학동네, 실천문학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김OO은 주로 청와대의 김OO 행정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중간에 창비 건이 문제가 되어 몇 종을 선정할지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었고, 김OO에게 김OO은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하였으나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및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9-12쪽)**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김상률 교문수석이 창비, 문학동네에 대해 언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5년 초에 세종도서 관련은 아니고 문예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7. 1. 7.자 특검 진술조서에서 김OO는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 제외 대상 연번을 불러준 것 외에 창비와 문학동네 출판사의 서적을 세종도서로 선정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선정 사업 진행 당시에 청와대와 문체부에서는 창비, 문학동네 2개 출판사에 대하여 문학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 자신도 2차 심사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때 출판사에 대하여도 유심히 살펴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김OO 과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하여 2014년에 창비, 문학동네가 몇 종이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김소영 비서관이 내용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를 한 이후 김소영이 수석에게 보고하였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그 이후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김OO는 문체부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에게 창비, 문학동네 2개 출판사에 대한 선정 종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는 2018. 1. 11.자 위원회 조사에서 세종도서 문학 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창비' '문학동네'가 한 종도 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문체부에 하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김OO 과장이 갑자기 참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예전에는 창비나 문학동네가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줄어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5~10종 가량을 선정하면 안 되겠냐는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는 이와 같은 양해 요청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특정 출판사에 대한 배제지시를 하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술위에서 진행하던 문학 사업 중 문예지 사업에서 창비, 문학동네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문체부 내에서 공유되고 있어서 김OO 과장이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N 관련

(가)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16-17쪽)

N은 2015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선정종수 제한을 언급하면서 창비와 문학동네의 경우 예전에는 20종 정도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다른 중소출판사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N은 위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창비, 문학동네는 문체부에서 단 한 종도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당시 문학동네는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라는 소설이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창비는 신경숙의 표절시비로 문제가 있는 상태여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문단의 대표적인 두 출판사가 문단의 질서를 흐리는 행동을 해서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9-20쪽)

N은 2015년 세종도서 선정 3차 회의에서 심사위원회 시작 전 심사위원들에게 “기성 작가 대신에 신인작가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선정종수 제한을 언급하면서 “창비와 문학동네의 경우 예전에는 20종 정도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다른 중소출판사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발언에 대하여 당시 창비는 신경숙의 표절 사건, 김훈 「라면을 끓이며」는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상태로 심사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출판사들은 선정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유OO 관련

(가)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7쪽)

이OO 사무관은 유OO에게 창비와 문학동네 두 출판사의 책은 한 권도 선정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OO 사무관은 해당 지시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주지 않고 ‘위의 지시’라고만 말하였다.

(나)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11-12쪽)

2015년 세종도서 선정 3차 회의에서 N이 심사위원회 시작 전 심사위원들에게 “기성작가 대신에 신인작가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선정종수 제한을 언급하면서 “창비와 문학동네의 경우 예전에는 20종정도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다른 중소출판사를 선정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창비, 문학동네가 신경숙 표절,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해당 출판사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배제지시가 직접적으로 있던 출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유OO은 창비나 문학동네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시가 하달된 사유에 대하여 세월호 관련 출판사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창비는 신경숙 작가의 표절 건, 문학동네는 도서정가제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내려온 이후 배제지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발굴한 배제사유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배제사유 발굴이라기보다는 두 사유가 창비, 문학동네 도서의 선정축소에 중점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창비의 신경숙 표절 건은 이러한 사유가 선정배제 사유로 특징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 ‘창비’를 둘러싼 청와대 및 문체부 내 논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관련

(1)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은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예술위는 2014. 11. 11.경 공모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송부하였고, 문체부가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면 교문수석실은 정무수석실로부터 배제대상자를 검토받아 다시 문체부, 예술위에 하달했는데, 이에 따라 예술위는 당시 문체부로부터 실천문학, 문학동네 등이 포함된 배제명단을 하달받았다. 예술위는 실천문학, 문학동네를 배제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문체부도 2015. 3.경 ‘문학검열에 대한 현장의 우려’, ‘문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단초 우려(예

술위의 입장) 등을 이유로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여, 청와대의 양해를 받아 2015. 3. 31. 9개 문예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실천문학’, ‘문학동네’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⁷⁾

(2) 신청인 ‘창비’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누락

위 사업 2015. 3. 31. 심의결과 발표에서 ‘창비’가 포함되자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질책을 받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송OO 기획조정실장에게 경위조사를 지시하였다. 해당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와대로부터 창비가 포함된 배제명단이 ‘건전콘텐츠TF’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이OO 과장에게 하달되었으나 이 명단이 예술정책과장 이OO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우수문예지지원사업 선정 대상에 ‘창비’가 포함된 것이었다.⁸⁾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중 이OO에 대한 2017. 5. 26.자 증인신문 녹취록(47-48 쪽)에는 위 사안의 세부적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OO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예술정책과장이었던 이OO는 2015. 3.~4.경 ‘창비’ 지원과 관련하여 당시 이OO과 장으로부터 리스트를 늦게 받아 예술위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3월 말 심사에서 창비가 선정되면서, 그 후 송OO 기획조정실장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창비가 지원된 데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 경위서를 보고 인사조치 등에 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중에 일정을 확인해 보니 당시 이OO가 다른 일정으로 건전콘텐츠TF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날 이OO이 건전콘텐츠TF 회의에서 해당 리스트를 다른 과장들에게는 하달하였으나, 예술위가 진행하는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담당 부서인 예술정책과 이OO는 리스트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추후에 이OO으로부터 해당 리스트를 받았을 때는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심사 직전으로 해당 리스트를 반영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김OO 당시 예술정책관은 특검에서 “2015. 3.~4.경 정무수석실에서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리스트를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창조행정담당관이던 이OO 과장이 그 리스트의 중요성을 모른 채 저희 부서로 전달하지 않고 약 3주 정도 들고 있었던 적이 있다. 그때

7)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84쪽.

8) 이OO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정무수석실에서 보낸 것은 예술정책관 쪽이 담당하는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만 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 사안들도 섞여 있었는데, 이OO 과장이 3주가 지나서 각 부서별로 정무수석실에서 온 자료를 뿌렸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 김종덕 장관이 송OO 기획조정실장에게 경위조사를 시키고 징계하라고 하였는데, 유아무야되어 징계는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김OO 특검 2016. 12. 19.자 진술조서, 32쪽).

2015. 4. 2.경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은사로부터 ‘월간문학’과 같은 문예지에 대한 지원액이 ‘창비’나 ‘문학동네’와 같은 문예지에 대한 지원액보다 적다고 항의하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위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김상률은 김소영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김소영은 김OO을 통하여 문체부에 이를 전달하였고, 문체부는 정부 비판적인 문예지에 대한 지원은 줄여 나가고, 보수 문예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관련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자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이후,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이 차례로 생산되었는데,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한국의 위 보도에 대하여 문체부가 청와대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편향 논란에 따라 해당 사업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란이 되었던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특히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심사위원 구성 및 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관리 및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심사절차도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2015. 1.경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우수도서 선정취소 사건

2013년에 우수도서로 선정된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년 말 저자 신은미가 통일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이를 소위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해당 저자의 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되며 2015. 1.경 해당 책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결정이 취소된 사건은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91-92쪽),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쪽),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세종도서 사업에서 도서 선정 과정에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걸러내기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나.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1)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① 청와대의 문체부에 대한 세종도서 관련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및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소영에 대한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및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김상률에 대한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를 통해, ② 청와대의 문체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및 문체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의 경위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및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16)” 문건을 통해, ③ 문체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및 출판진흥원 내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전반적인 경위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및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을 통해 각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한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인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세종도서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김OO 행정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청자 명단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 명단을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를 자신의 상급자인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은 이를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하고 정무수석실에 검토를 받아 다시 이를 문체부에 하달하였고, 문체부는 이 배제명단을 출판진흥원에 하달하여 특정 도서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였다. 또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은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에게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고, 이에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은 심의과정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된 대상 도서에 대한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배제를 유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관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좌성향 및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 2014, 2015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

- 1)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11. 4.자) 참고자료,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및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는 출판진흥원 유OO 팀장에게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2차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에 송부한 후 검토 결과를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의 참고자료에 정리하여 출판진흥원 유OO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유OO은 자신의 상급자인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판진흥원 N, 유OO은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학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보고를 문체부 이OO 사무관에게 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출판진흥원 N, 유OO은 2014년도 세종도서 3차 최종심사에 참석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기능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책을 선정해달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책을 공공도서관에 보내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심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며, 출판진흥원 N과 유OO은 이 정도의 완곡한 발언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이 해당 발언의 목적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출판진흥원 내에서 블랙리스트 경위를 파악하였다.
- 3) 또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이었던 강OO의 2018. 4. 23.자 유선상 진술에 따르면, 매년 심사 때마다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에 형광펜으로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있는 작품들을 표시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비선정 유도의 일환이었던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4) 이로인한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블랙리스트는 「소년이 온다」(신청인 ‘창비’) 등 총 9건으로 확인된다.

5) 신청인 ‘창비’의 경우

위 1)항 기재 증거 및 2)항에 기재된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특정 도서 배제 경위를 종합하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 중 신청인 ‘창비’에서 출판된 책은 정희성의 「그리운 나무」, 한강의 「소년이 온다」 2종으로, 두 책 모두 주요 문학상 수상작이었으나 청와대 및 문체부의 배제지시에 따라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이 3차 심의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완곡하게 배제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정제외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분' 선정 관련

- 1)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분 특정 도서 배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5년 세종도서 사업의 최종 선정결과 공고가 지연되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문체부 김OO 과장이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재심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면서 선정결과 공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3) 이로 인한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블랙리스트는 「꿈결에 시를 베다」(실천문학사) 등 총 8건으로 확인된다.

(다)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관련

유OO 2017. 1. 5.자 특검 진술조서(N 대질), 2017. 1. 5.자 특검 진술시 유OO이 제출한 엑셀자료에 따르면 2차 통과 도서들 중 문체부 이OO로부터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에 대하여 유OO이 자신의 엑셀자료에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라고 기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N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교양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세월호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5년 교양 부문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고 최종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들 중 「잊지 않겠습니다」는 416 가족협의회가 만든 책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 그림과 가족들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편지글은 모은 책이었으며, 이진경의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파농」 또한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한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분야 블랙리스트는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등 총 5건으로 확인된다.

(라)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선정 관여 여부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문학’ 부문의 경우 심사위원추천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따르면 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단 또한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청와대에 송부한 적이 있고 청와대에서 당시 10여 명 정도의 후보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으로 지적되는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5. 1.경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우수도서 선정취소 사건 및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념편향 도서를 제외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일련의 기재들을 통해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검토 및 배제지시 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마) 배제기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세종도서 사업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 대상의 선정기준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문인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반대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 활동에 참여한 문인들 및 문재인 지지선언 참여 등과 같이 당시 야당인사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문인들이 주로 배제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사무관 작성, 2014. 11. 4.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사무관·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김OO 2018. 3. 14.자 작성 진술서를 종합하면 2014·2015년 세종도서 학술 분야 및 2016 세종도서 학술 및 교양 부문에 대하여 문체부 김OO 과장의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OO 작성 2018. 3. 5.자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2016년 세종도서 심사위원 관련 2018. 4. 23.자 조사보고를 종합하면 위 문체부 김OO 과장의 배제지시를 하달받아 이행했어야 할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및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라. 신청인 ‘창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 신청인 ‘창비’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중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청와대 작성),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6] 기존관리리스트 -149명” 및 “정무리스트(15.4.13현재/중요)-59명”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서 신청인 ‘창비’에 대한 배제 경위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은 사무관과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에게 신청인 ‘창비’의 도서가 해당 세종도서 사업에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하달하였

고, 이에 출판진흥원 N과 유OO,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예년에도 20종 이상씩 선정되었던 출판사의 도서를 한 권도 선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김OO 과장이 청와대 김OO 행정관에게 양해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 신청인 ‘창비’의 신청 도서들 중 5종만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출판진흥원 N, 유OO은 2015년 세종도서 3차 심사에 참석하여 다른 중소기업의 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여 신청인 ‘창비’에 대한 선정을 최소화하고자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 ‘창비’에 대한 배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구체적인 배제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및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와대 김OO 행정관은 ‘창비’라는 출판사를 특정하여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으며, 문체부 김OO 과장이 갑작스럽게 ‘창비’에 대한 양해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신청인 ‘창비’에 대한 청와대의 배제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판단한다.

(3) 신청인 ‘창비’를 둘러싼 청와대 및 문체부 내 논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관련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및 이OO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OO 2016. 12. 19.자 특검 진술조서에 따르면, 예술위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배제명단을 하달하고 문체부 내에서 담당 부서인 예술정책과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창비’에 대한 배제지시가 누락되면서 위 사업에서 ‘창비’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문체부 김종덕 장관을 질책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예술정책과 이OO 과장이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창비’의 선정과 관련하여 문체부 내에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고인 김OO은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에서 ‘창비’의 세종도서 사업 배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으로 출판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김OO도 세종도서 사업에서 ‘창비’에 대한 구체적인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으며 김OO 과장이 먼저 양해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 김OO은 당시 창비에 대하여 문체부 내에 논란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해당 논란이 바로

예술위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창비’가 선정되면서 비롯된 논란을 의미하는데 김OO은 이를 몇 차례 참석하였던 ‘건전콘텐츠TF’ 회의에서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김OO의 ‘창비’에 대한 배제지시가 청와대에서 세종도서 사업과 관련하여 ‘창비’라는 특정 출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배제지시에 의한 것인지, 위 논란을 인식한 김OO 과장의 자체적인 판단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조사권한 및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2014·2015년 세종도서 교양, 학술 부문, 2016 세종도서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나. 신청인 ‘창비’가 2016 세종도서에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부당하게 배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다.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하여 문체부 실국장 및 장차관의 관련 비위행위가 조사되지 않았다.
- 라.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하여 출판진흥원장 및 사무처장 등 출판진흥원 내 상급자들의 비위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출판진흥원 이기성은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 마. 세종도서 사업 심사위원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인지하였는지, 가담 정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바. 출판진흥원 유OO, N 등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은 2014~2015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100여 건에 가까운 배제지시가 문체부로부터 하달되어, 이에 대한 내용검토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을 막아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① 해당 사업에 실제로 하달된 배제지시 건수 및 ② 출판진흥원 해당 사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사. 문체부 이OO 사무관과 청와대 김OO 행정관은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와 관련하여 검토 및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아.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에 학술, 교양 부문에 대한 문제도서 발견 및 심사위와 협의 하에 제외 등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대로 보고용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자. 세종도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강OO의 진술에 따르면,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이 정치편향적 도서 등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이 세종도서 심사 단계에 개입하여 특정 도서에 대한 비선정을 유도하는 방식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6

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
세종도서 등 배제 의혹 사건



66

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 아카데미 강연, 세종도서 등 배제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출2 [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 세종도서 등 배제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이상국(이하 신청인)은 2016년 중순경 양양 소재의 ‘의상작은도서관’(이하 의상도서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강연자로 섭외되었으나, 출판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신청인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인해 강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 회당 강의비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또한 2015년 3월 ‘달은 아직 그 달이다’는 시집을 출간하여 2016년 세종도서 선정에 공모하였으나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는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관련이 있다 주장하며,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과 세종도서 사업 등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신청인이 2016년 세종도서에서 배제되었는지의 여부

신청인의 작품 「달은 아직 그달이다」가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에서 탈락하였다. 하지만 2016년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탈락이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의한 탈락인지의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 다만, 1, 2차 심사에 통과하고, 3차 심사에서 탈락한 점, 또 다른 블랙리스트 단체로 지목된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로 응모한 점, 작가회의 및 민예총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좌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과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 등 2014, 2015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다른 도서, 작가들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판단된다.

(2) 신청인이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의 여부

의상도서관은 2016년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준비하며, '통섭의 세계에서 만난 문학과 생물학'을 주제로 한 인문학 관련 강의를 기획하였다. 이에 관장 최OO은 신청인에게 강연을 요청하였으나, 출판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신청인을 강연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결국 신청인은 강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한 의상도서관장 최OO이 진술이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할 까닭이 없고,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도 신청인의 경우처럼 특정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정황 등이 확인되는 바,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의상도서관 강연자로 예정되어 있던 신청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여부 확인되지 않았다.

붙임 : [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 세종도서 등 배제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출2 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 등 배제 의혹 사건

[신청인] 이상국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이상국(이하 신청인)은 2016년 중순경 양양 소재의 '의상작은도서관'(이하 의상도서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강연자로 섭외되었으나, 출판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신청인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인해 강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 회당 강의비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또한 2015년 3월 '달은 아직 그 달이다'는 시집을 출간하여 2016년 세종도서 선정에 공모하였으나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는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관련이 있다 주장하며,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과 세종도서 사업 등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8일 제18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①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② 2016년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의 탈락 경위, ③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진행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강연 배제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세종도서 선정 과정 관련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9건에 대한 문서와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미래한국	
2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2014. 2.)	문체부 이OO	
3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2014. 2. 21.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4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2014. 2. 28.자)	문체부 이OO	
5	건전문화예술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2014. 10.)	문체부	
6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		
7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8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9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0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3회) (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11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2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3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4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출판진흥원 N	
1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문체부	
16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7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2014. 11. 4.)	문체부 이OO	
18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9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출판진흥원 000	
20	000 컴퓨터 복구 엑셀자료	출판진흥원 000	
21	이00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22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 강00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2018. 4. 23.자)		
23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박00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2018. 4. 23.자)		
24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5	oh&kim 가필 문건	문체부 김00	
26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오00	
27	이00에 대한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록(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28	김00 특검 2016. 12. 19.자 진술조서 (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29	2014, 2015, 2016 세종도서 접수목록 및 심사결과	출판진흥원	

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관련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9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2]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2016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제천기적의도서관 지원 신청서	출판진흥원	
2	2016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의상도서관 지원 신청서	출판진흥원	
3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결과 보고(제천기적의도서관)	제천기적의도서관	
4	제목없는 명단표	문체부	
5	리스트 - 2014, 2015도분(654명) - 확정	문체부	
6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사업 계획(안) 보고	출판진흥원	
7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국정원	
8	2015. 3. 30. 출판인쇄과장 김00이 출판진흥원 본부장과 사무관, 주무관들에게 발송한 메일	김00	
9	2016. 3. 2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제3기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출범회의 개최”	문체부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세종도서 선정 과정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5인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000	출판진흥원 직원	진술조서(2017. 11. 7.)
2	000	출판진흥원 직원	진술조서(2017. 12. 27.)
3	김00	청와대 행정관	진술조서(2018. 1. 11.)
4	김00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진술서(2017. 12. 15.)
			진술조서(2017. 12. 21.)
5	이00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진술서(2018. 3. 14.)
			진술서(2018. 3. 5.)

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0인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4]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이상국	신청인	면담보고 2017. 11. 20.
2	하00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3. 14.
3	000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주무관	진술조서 2018. 3. 7.
4	윤00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장	진술조서 2018. 2. 22.
5	000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담당자	진술조서 2018. 2. 22.
6	김00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장	진술조서 2018. 3. 8.
7	배00	출판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 2018. 3. 9.
8	최00	의상도서관 관장	면담보고 2017. 11. 24.
9	강00	제천기적의도서관 관장	면담보고 2018. 3. 2.
10	김00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진술서 2017. 12. 15.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¹⁾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²⁾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7월 27일 개원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통계 작성,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지원, 양서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나. 세종도서

(1) 세종도서 사업 개요

세종도서 사업은 문학, 교양, 학술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래 출판진흥원은 교양, 학술 2개 분야에 관해 '우수도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문학 분야는 '우수문학도서(문학나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민간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서관협회 등 사업자를 달리하며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문학부문까지 출판진흥원에 통합 운영되어 명칭을 세종도서로 바꾸었다.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출판사로부터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의 경우 총 5개 분야(시, 소설, 수필, 평론·희곡, 아동청소년)에서 599종, 학술부문 319종, 교양부문 310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의 경우 510종, 학술부문 320종, 교양부문 455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2) 세종도서 선정절차

“사업공고 → 도서접수 →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회(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3차) 및 선정 → 도서 구입 및 배포”의 단계를 거친다.

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국민들의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인문정신 고양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키로 하였다.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인문학 관련 강연과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의 주제로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및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인문정신 고양을 위한 문학, 역사, 철학 및 기타 학문을 융합한 '통섭형' 기획과 독서와의 접목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2016년에는 10억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지역 안배를 고려한 전국 60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강사료, 교재 제작비, 모니터링 활동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였다. 공고 접수, 교육일정 안내, 활동 후기 등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 www.inmunnac-kpipa.or.kr³⁾를 운영하였다.

전국 단위의 50명 이상 교육인원 수용이 가능한 교육장 및 기반시설을 구비한 기관의

3) 현재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는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독서 관련 사업들의 사이트가 통합 운영되는 '독서인' www.readin.or.kr 을 운영하며, 2018년 4월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에 따라 20회 강의, 4개 주제, 주제당 5회, 1회 2시간 강의 등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교육과정 내용의 우수성, 아카데미 운영 능력, 역량있는 강사 섭외, 수행기관의 전국 균형 분포를 위한 지역 안배 등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을 선정, 운영하였다.

출판진흥원에서는 출판기반조성본부 인재양성팀에서 사업을 담당하였다.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위원회 확보자료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에서 ‘6.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공연과 관리(중요) - 79명 ㉞ 이상국(시인)’, 위 같은 문건 ‘㉟정 무리리스트(15.4.13.현재)/중요)-59명 이상국 2013:10,000, 2014:-, 2015:-, 비교(지원 사업명):아르코문학창작기금 *15년도 미신청, 지원 결정후 2년간 지원불가’라고 등재되어 있다. 또한 ‘제목없는 명단표’ 문건에 ‘이상국, 이상국 시집 발간, 10, -,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라고 등재되어 있다. 또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⁴⁾에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에 ‘이상국(시인)’으로,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명단’에 ‘이상국’으로,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명단’에 ‘이상국(문학)’으로 등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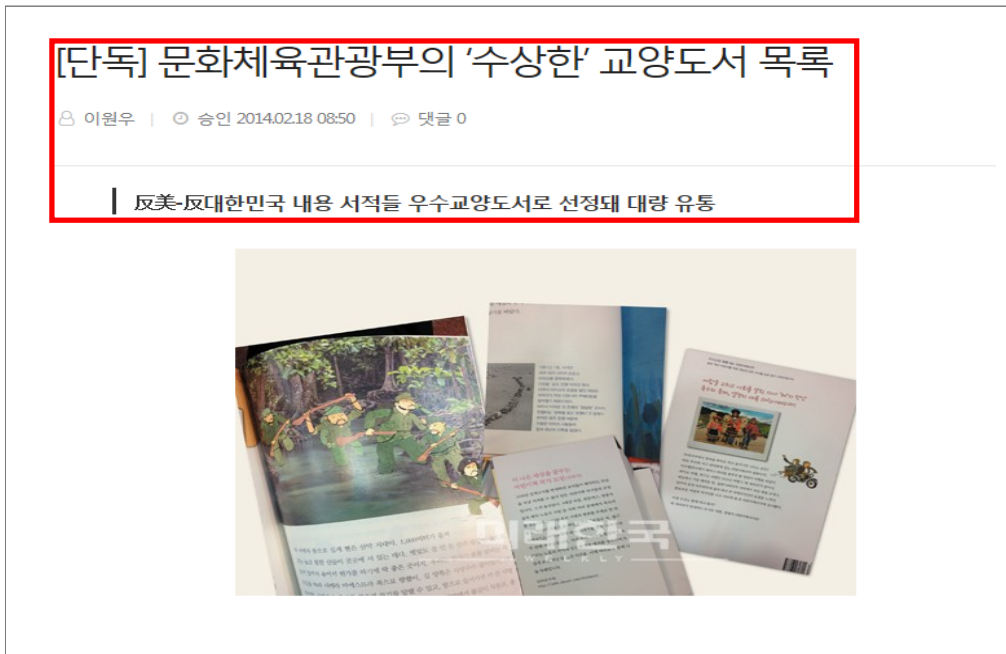
또한 신청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장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작가회의 강원지회장, 부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한국작가회의는 국정원이 2017. 10. 30.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붙임 1의 ‘주요 좌별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15개)’에 ‘연번 1 / 단체명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연번 3 / 한국작가회의’로 등재되어 있다.

4)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등록 2016/10/12 04:40, 수정 2016/10/12 11:47,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2018/4/09-접속날짜)

3.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가. 2014. 2. 18.자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논란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경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체계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⁵⁾

5) 미래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한’ 교양도서 목록”, 2014. 2. 18.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4> (접속일자: 2018. 4. 20.)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2014. 2.)

미래한국 기사관련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의견>	
<p>①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 ② 기자가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p>	
<p>1. 책 게마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 _ 최광범 글, 요동 그림/ 한우라북스</p>	
기자의 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조망함으로써 독자에게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쿠바경제가 정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고 표현하여 쿠바 경제를 미화
다 언론사 추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신일보) '게마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는 조금 다르니, 실존 인물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그 인물의 전기를 따라가 재미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길을 보면) 라틴아메리카를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의 눈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 반미 서적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책의 속을 보면)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사회, 문화 등에 관해 어린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야기로 구성되어 소개한 책 <p>- 기자의 시각에는 책이 쿠바 경제를 미화하고 있다고 보나, 책의 앞뒤를 읽어 보면 쿠바경제가 국민의 정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는 의미가</p>

해당 문건은 2014. 2.경 미래한국 기사가 문제가 되면서 청와대 해명용으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미래한국 기사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① 미래한국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하고, ②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한 측면이 많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은 당시 미디어정책관 박OO, 출판인쇄산업과장 정OO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는 미래한국에서 보도한 도서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⁶⁾

6)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6쪽(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공판기록).

(3)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2014. 2. 21.자)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 우수도서 심사·선정 문제

논란 사항

주간지 미래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미래한국 거론 서적 사례>

- ① 청소년에게 반미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체게바라와 팔팔라 라틴아메리카(서울대 최광열 작)
- ② 민주노총 김진숙 씨의 추천사를 받은 “비정규직 출근 하세요(어린이책 작가모임 작)”
- ③ 김일성 중심의 일제 항거를 담은 한국의 레지스탕스(조한성/진일반민족신상규명위원회)
- ④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책(“고장난 거대기법”,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등”)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위 미래한국 보도 논란과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미래한국의 보도와 그 무렵 예술위의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제 삼은 국정원의 문건 등에 관하여 문체부 당시 유진룡 장관이 2014. 2. 21.경 김기춘에게 대면보고 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중 도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간지 미래한국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이에 논란이 된 도서의 선정 경위를 보면 이념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리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향후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련자 징계문제도 검토”하고,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 ◆ 2013년 하반기 우수도서가 이념편향 논란이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남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1. 중점 검토

- 우수도서 선정 과정·결과를 둘러싼 외부 영향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 재점검
- 사업의 명칭·시행 주기, 도서선정 방법 재검토

이후 문체부 이OO 사무관 등은 2014. 2. 28.경 유진룡 장관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위 보고의 요지는 ①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 ② 선정시스템 개편·강화로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는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각 심사, ③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로 이념편향 도서가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우수도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설치, 기타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2014. 10.)

< 미디어 >

□ 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방안

○ 추진현황 (한국출판진흥원 주관)

- (선정분야) 교양(400종), 문학(600종), 학술(330종)의 3개 분야
- (선정시기) 상반기 학술분야(6월), 하반기 교양 및 문학 선정(11월)
- (선정방법) 사업공고 → 도서접수 → 심사위원 위촉 → 심사(3차)·선정 → 도서 배포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약 6,000개소)

◆ 우수 도서 선정 기준

- ① 출판 기획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며 내용이 충실한 도서
- ② 인문학 등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
- ③ 민족문화 및 발전적 세계관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도서
- ④ (문학 분야의 경우) 우수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작품

※ 역사왜곡,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도서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

○ 개선방안

< 단계 >

< 단계 >	< 주요 대응전략 >
도서접수	(출판사) 온라인 신청 → (출판진흥원) 접수 및 도서 개요 정리, 특이사항 점검
↓	↓
심사위원 위촉(75명)	후보자 검토 강화(출판산업진흥원, 관계기관 공동)
↓	↓
심사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10개 분과, 25개 소위, 소위원 3명) 분과위원회 구성 (10개 분과, 분과별 평균 7~8명) → 출판산업진흥원 균형적 시각의 인사를 분과장으로 지정 선정위원회 구성 (10명 내외, 각 분과장 참여) → 출판산업진흥원 균형적 시각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지정
↓	↓
심사 및 선정(45일) *(1차) 소위원회 → (2차) 분과위원회 → (3차) 최종 선정위원회	(1차) 선정목표의 300% 2차 상정(15일 심사) (2차) 선정목표의 200% 3차 상정(20일 심사) (3차) 선정위원별 검토후 회의에서 최종확정(약 10일) → 도서 결격사유(저작권위반, 출판사별 선정 총량 초과, 용성 등이 당겨 국민에게 귀차하는 것이 부정확한 도서 등), 점검시 정치편향 도서는 선정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 비공식 의견 제출

김종덕 장관이 2014. 10.경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 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였는데 그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종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미래한국의 보도) (사례)’,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문제점)’,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개선방안)’ 등이다.

나. 2015. 1. 7. 신은미 우수도서 선정 취소 사건

(1) 경위

- (가) 신은미는 2011. 10.부터 2012. 5.경까지 북한 여행 경험을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매체에 2012. 6.부터 2012. 10.까지 30회에 걸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고, 이 기고문들을 묶어 동일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이후 2013. 6.경 문체부 주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우수문학도서’ 사업에서 신은미의 해당 책이 수필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 (나) 2014. 11. 19. 신은미와 황선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보도를 하는 등 문제가 되었다.
- (다) 문체부는 2015. 1. 7.경 책사회에 신은미의 책에 대한 우수문학도서선정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책사회는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 (라) 문체부는 2015. 1. 13. 전국 각 지역 도서관에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 회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해당 책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에 따르면(188-189쪽), 2014. 11. 25.경 종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신은미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일이 청와대 실수비에서 문제로 거론되었고, 조운선은 그 무렵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하여 정관주는 신은미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와 함께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김소영 문체비서관과 논의한 사실, 정관주 소통비서관은 2015. 5.경 문체부 제1차관이던 박민권에게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3)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91-92쪽)

신은미 책 우수도서 취소와 관련하여 정관주는 2017. 1. 17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신은미의 책이 문제되었을 때, 조운선 수석이 직접 우수도서 선정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를 하라고 지시해서 제가 김소영 비서관과 협의를 하게 되었고,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문체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아 조운선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소영은 이에 대하여 김상률로부터도 지시가 있었고, 정관주도 조운선의 지시사항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신청취소에 대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91쪽). 당시 김소영의 기억에 따르면 신은미 책에 대한 우수도서 취소는 실수비의 지시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상률, 조운선 등이 함께 이 부분을 체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92쪽). 자신은 김상률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에 전달하였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92쪽).

(4)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쪽)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 12.경 갑작스럽게 우수도서 선정이 취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N은 2014년 말이면 문학나눔 사업이 출판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여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에 우수도서 취소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우수도서 선정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니 출판진흥원장 명의로 선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 참고인은 이 사건이 일련의 세종도서 부당배제 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7쪽)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 12.경 갑작스럽게 우수도서 선정이 취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에 해당 책의 선정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 출판진흥원은 2013년에는 문학나눔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4. 2. 미래한국 보도와 함께 신은미 책의 우수도서 취소 결정이 세종도서 선정 부당배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4.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가.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상 “범죄일람표4”(515-516쪽)에는 출판진흥원 2014 세종도서 문학부문, 2015 세종도서 문학 및 교양 부문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배제되었던 도서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2014년 9종, 2015년 13종). 특정 도서 배제와 관련하여 문체부 이○○는 출판진흥원 N, 유○○에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① 2014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③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각 지시하였고, 문체부 이○○의 지시를 받은 출판진흥원 N, 유○○은 ① 2014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순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비고
1	2014년도	소설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 강	
2	2014년도	시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수호	
3	2014년도	시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4	2014년도	시	기쁜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맹문재	
5	2014년도	시	봄눈	도서출판 b	김병섭	
6	2014년도	시	영통의 기쁨	서정시학	박희진	
7	2014년도	시	장춘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8	2014년도	시	체 게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9	2014년도	소설	검은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정창근	
10	2015년도	수필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2)	분도출판사	공지영	
11	2015년도	시	A형 기침	도서출판 복인	정안나	
12	2015년도	시	금정산을 보냈다	산지니	최영철	
13	2015년도	시	꿈결에 시를 베다	실천문학사	손세실리아	
14	2015년도	시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실천문학사	이재무	
15	2015년도	시	집에 가자	삶창	김해자	
16	2015년도	소설	단 한 번의 사랑	(주)해냄출판사	김흥신	

순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비고
17	2015년도	소설	어우동, 사랑으로 죽다	(주)해냄출판사	김별아	
18	2015년도	철학/ 심리학/ 윤리학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북스	이진경	
19	2015년도	철학/ 심리학/ 윤리학	파농	(주)도서출판 한길사	이경원	
20	2015년도	사회과학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21	2015년도	사회과학	자공공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조한혜정	
22	2015년도	문학 (교양)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나.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1) 참고인 김OO 관련

김OO는 2014. 3. 31.경부터 2016. 6.경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기간 동안 김OO는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3-8쪽)

- 1) 참고인 김OO는 출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때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정OO, 김OO,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을 비롯하여 각 담당 사무관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3쪽). 세종도서에 대한 특정 도서 배제지시 하달과 관련하여서는 위에 말한 사람들과 대부분 동일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OO 사무관과 거의 대부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진행 경과는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9쪽).
- 2) 참고인 김OO는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에게 세종도서 관련 2차 선정도서 목록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는데(8쪽), 이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개선방향” 문건과 관련하여 세종도서에서 이러한 개선방향이 실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8쪽).

- 3) 2014 세종도서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 경위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2015년 동일 사업에서는 2차 선정 목록을 엑셀파일로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인터넷으로 저자 이름과 시국선언 정도의 검색어를 넣어 연필로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표기하였고 이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이 이를 부처에 전달하라고 지시하면 참고인이 김OO 과장 또는 이OO 사무관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8쪽).
- 4)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일관되게 특정 작가 및 출판사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김OO는 “세종도서 2차 선정목록에 있는 작가들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작가 등에 대한 의견을 문체부에 주었을 뿐이지 이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으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가 있다는 참고사항을 전달”한 것이므로 반드시 배제지시를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3-4쪽). 해당 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7쪽).

(나)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 1) 출판진흥원의 2014, 2015년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김OO는 자신이 출판을 담당하였던 것은 맞고 세종도서도 출판과 업무여서 담당하였던 사업은 맞지만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2쪽).
- 2)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문건은 김OO가 행정관으로 근무를 시작할 무렵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세종도서 관련 자료를 부탁하여 받은 문건으로(2쪽), 김OO는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소위 ‘문제도서’가 우수(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3) 김OO는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사업선정 심사결과 명단을 문체부 내부 메일인 ‘나무’를 통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보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문건이 이미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보고된 내용이었고, 문건에 기재된 개선내용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2-3쪽).

- 4) 위 명단을 송부받은 이후 절차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도서심사과정 1, 2, 3차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2차 심사가 끝난 다음에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서 2배수 정도를 송부받으면 이를 저자 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것을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한 다음 부처에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3쪽).
- 5) 또한 김OO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도서의 저자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표에 부기하여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3쪽). 700~800종의 저자와 작품명을 보고 저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름하고 시국선언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문건에 부기하였다(4쪽).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김소영이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소영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 선정 제외 명단에 대해 검토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5쪽).
- 6) 김OO는 선정 제외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할 때 항상 우선으로 연번을 불러주었다(5쪽). 2차 심사 결과가 왔을 때 10명 내외의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참고인 김소영 관련

김소영은 2013. 11.경부터 2016. 9. 2.까지 대통령 비서실 문체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 1) 2015년 하반기 김상률 교문수석으로부터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들은 단 1권도 선정되지 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90쪽). 김상률이 이에 대하여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 중 좌편향 책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비치되었다는 IO 보고서가 올라가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였던 말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소영의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90쪽).
- 2) 김소영은 세종도서 심사과정에 대해 문체부가 보낸 명단 및 김OO 행정관이 부기한 명단, 그 이유까지 모두 김상률에게 보고하였고, 김상률 또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12-113쪽). 또한 김소영은 양해 요청과 함께 2차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도 김상률에게 상의하였고, 양해 요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무수석실과 협의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13쪽). 양해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창비와 문학동네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사안 정도로 기억하며 이에 대해 김상률과 상의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13-114쪽).

(나)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 1)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교문수석실에서 우수도서 사업 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정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소영은 사실이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우수도서 문제는 실수비 전달사항으로 자신에게는 모철민 수석이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46쪽).
- 2) 우수도서 사업은 사업개편이 이루어져 문학나눔 사업과 우수도서 사업이 통합되어 사업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기존 2단계 심사방법을 3단계 심사로 문학의 경우 심사방법을 강화하여 문학 나눔 추천위원회를 두는 방법으로 심사절차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밀도 있게 도서 선정을 진행하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를 거르는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 12-13쪽), 김소영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47쪽).
- 3) 김OO 행정관이 세종도서 진행상황 전반을 김소영의 지시에 따라 김소영에게 보고한 것이 맞으며, 김소영은 모철민의 지시를 받아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47쪽).
- 4) 김OO 행정관은 문체부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이 자신에게 학술, 교양, 문학 부문 2차 심사 결과를 문체부 내부 메일 '나루'로 송부해 주면, 제가 인터넷 검색하여 시국선언 작가들을 검색하고, 2차 심사 결과 출력물에 부기한 이후,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김소영 비서관이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후 그대로 하라고 김OO에게 지시하면, 문체부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교양, 문학 부문의 선정 제외 대상 연번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면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이 출판진흥원에 통보하여 3차 최종 심사에서 선정

제외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로 학술부문의 경우 전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선정제의 대상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김소영은 동의하였다(48쪽).

- 5) 김상률은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세종도서 선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작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교문수석실의 관여로 특정 작가나 출판사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 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소영은 당연히 김상률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통령 서면보고로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방식을 개편하여 문제 도서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VIP께서 “단 1권도 안됨”이라고 지시할 정도의 사안으로 이 엄중한 지시가 김상률 수석 때의 일로 김상률 수석이 이에 대해서 왜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50쪽).

(3)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3-44쪽)

김상률은 2014. 11. 18.부터 2016. 6. 7.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김상률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선정사업 심사 과정 결과에 대해서 우수도서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 세종도서로 이름을 개명해서 진행한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선정과 관련하여 시국선언 작가들을 검색해서 명단 배제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배제명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4)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2-43쪽)

김종덕은 2014. 8. ~ 2016. 9.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김종덕은 2014,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도서들에 대한 배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배제 과정에서 자신은 보고를 받거나 관여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42-43쪽).

(5)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9-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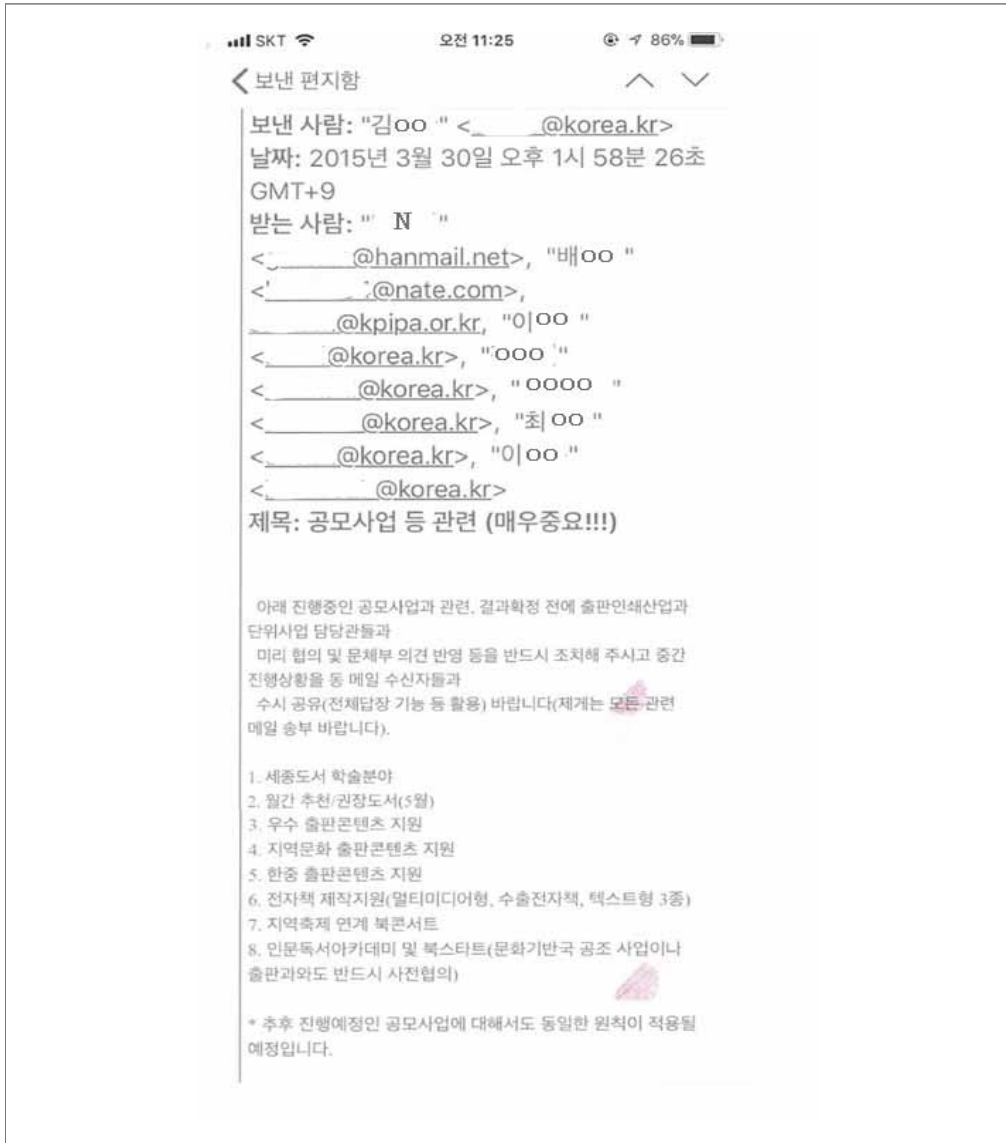
이OO는 2013. 12. 13.경부터 2016. 4. 3.경까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 (가) 이OO는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으로부터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출판진흥원에 전달하여 제외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9쪽).
- (나) 이OO는 출판진흥원 유OO이 2014.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이OO의 요청에 따라 세종도서의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12쪽). 이OO는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2014. ~ 2015. 세종도서 사업선정 시 1~3차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보고하였다(10쪽). 김OO 행정관이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명단을 보고받은 김OO 행정관은 유선상으로 이OO에게 심사통과자 목록 중 선정제외 대상을 불러주었다. 이를 메모하여 이OO는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 유OO 팀장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다. 유선상으로 선정제외 대상을 받고 출판진흥원에 이를 유선상으로 전달한 이유는, 기록을 남겨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 등 외부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0쪽). 김OO 행정관은 제외대상을 불러주면서 어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1쪽). 이OO는 김OO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을 출판진흥원에서 보내준 심사통과자 목록 연번에 체크하고 이OO의 상관이었던 김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6)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및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은 2014. 10.~2016. 9.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N, 배OO 등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에 보면 “1. 세종도서 학술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

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등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공유”이라며, 김OO 본인에게는 모든 관련 메일을 송부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

김OO은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에서 위 메일을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업무 사무관, 주무관,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송부한 이유와 관련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라는 답변을 기재하였다(7쪽).

(나)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

- 1) 김OO은 출판진흥원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외·배제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2쪽). 세종도서 선정 과정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청와대 및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2014. 10. 과장 부임 직후부터 문체부 내부의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10쪽).
- 2)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2쪽).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절차의 후반부 단계에서 산하기관 담당자들에게 검토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배제지시를 진행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2-3쪽).
- 3) 배제지시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체부 실국장과 장차관에게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진행상황 결과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3쪽).

(다)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세종도서의 경우 미리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하여 선정절차 후반부 단계에서 김OO이 검토의견을 주는 것으로 배제지시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8쪽). 배제지시는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1쪽). 또한 김OO은 스스로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8-9쪽).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세월호 및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출판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3.16)

- 미디어(출판) 분야
 - 세종도서 학술 부문(320종) 선정
 - 공고(3.18), 접수(3.23~4.3), 심사(4~5월), 선정(6월)
 - ☞ (추진방향) 학술 분야로 이념성 등 문제 제기 가능성 낮음
 - 세종도서 교양(450종) 및 문학(510종) 부문 선정
 - 하반기에 진행(8월 공고, 11월 선정)
 - ☞ (추진방향)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예년 선정 기준을 유지하되, **심사 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문건에서 세종도서 심사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라는 기재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공성과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정치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지원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18쪽)

N은 2014. 4.경부터 2017. 6.경까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2014, 2015 세종도서 사업에서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는지에 대해 이OO 사무관의 요청에 의해서 유OO 팀장이 송부하였다(16-17쪽). 특

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 또한 이OO 사무관이 유OO 팀장에게 하달하였고, N은 유OO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다(17쪽). 이러한 배제지시에 대하여 당시 원장과 사무처장에게 모두 보고하였다. 원장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말만 하였다(17쪽).

- (나) 2014, 2015 세종도서 사업 부당배제가 일어난 경위에 대하여, 한 2년에 걸쳐서 약 100여 종에 대한 배제지시 사항이 문체부로부터 출판진흥원에 하달되었고, 유OO 팀장과 N가 함께 100여 종에 대한 자체 검토보고서를 써서 이OO 사무관에게 주고 이OO 사무관에게 선정배제할 만한 도서가 아니라는 설득을 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최종적으로 22종만 기재되어 있지만, 지시는 훨씬 많았으며, 주로 문학과 교양 분야에 하달되었고,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17-18쪽).

(8)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및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유OO은 2013. 2.경부터 2016. 7.경까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해당 부서가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유OO은 이OO 사무관이 2014. 11. 처음으로 배제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5쪽). 유OO은 이OO의 이러한 배제지시를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5쪽).

(나)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4-6쪽)

- 1) 유OO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OO 과장이 출판진흥원 실본부장들에게 출판진흥원 주요사업 선정에 대하여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N 본부장에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 2) 유OO은 세종도서 사업에서 주로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배제지시를 하달받았고, 김OO 과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제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4쪽). 이OO 사무관은 왜 이러한 지시를 하느냐는 유OO의 물음에 '위'로부터의 지시이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4쪽).

- 3) 배제지시는 주로 미리 유OO이 송부한 선정도서 목록을 보고 연번을 유선상으로 불러주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유OO은 2014. 2. 미래한국의 보도 이전에는 별다른 배제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후부터 해당 도서사업을 둘러싸고 원장의 사임위기 등 여러 이야기가 무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2차 선정도서 목록을 송부하라는 요청이 시작되었고, 유OO은 이것이 미래한국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4-5쪽).
- 4) 유OO은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되면 이를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N 본부장은 유OO에게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배제대상을 줄여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6쪽). 내용을 검토하여 이OO 사무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도서들의 3, 4배는 되는 훨씬 많은 양의 도서들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진술하였다(6쪽).

다. 2014, 2015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2014. 11. 4.자)

참고1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		
도서명	검토의견	비고
겨울나기	저자(이수호)가 전교조위원장 출신으로 2009용산참사, 쌍용차 투쟁현장을 함께 했고 도서 내용에 (내용 확인-이번 정권은 목 잘린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때리고 짓밟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예 불태워버리는 구나, 59p 까지집4 발췌) 부분 존재	시
그리운 나무	저자(정희성)는 김근태 추모시 “그대를 잊지 못하리(동 도서 수록-한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나더러는 조시나 쓰라 하고 김근태가 또 먼저 갔다, 38p 그대를 잊지 못하리 발췌)” 창작자로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 동 도서는 2014정치용문학상 수상작임.	시
기쁜 어린 양들	저자(맹운재)는 전대일문학상 수상자로 노동자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	시
붉은	저자(김병섭)가 노동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도서의 내용상의 부합은 없음(내용 확인-공민의 정부 실직자들 최후란 삼키며 우리도 일하고 싶다! 목 맺히는데 노동부장관은 무엇하며 근로부장관은 쫓아 저기 가셨나, 60p 실업일기-5월1일 발췌)	시
영웅의 기쁨	저자(박희진)는 99년 정부 보관문학상 수상자, 도서의 내용(내용 확인-제 몸 불태운 깃대미에서 불사조가 부활하듯 감람절벽 노동계에 떠오른 생불! 전태일은 불멸의 신화가 되었다니, 71p 전태일 찬가 발췌) 일부에 전태일, 위안부, 한일 관계를 다루고 있음	시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80-90년대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대상을 노래하고 시를 통해 분단, 억압을 극복하고 소풍, 이해의길 모색(1985년 봄, 국가를 의심하다. 광주시민을 살해한 정부를 알게 되다. 진달래 붉은 꽃잎만 보고도 울게 되다. 1987년 봄과 여름사이, 거리에서 깨닫다. 애국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2000년 여름, 너 그려워지다, 11p 약력 발췌)	시
체 게바라 만세	2014대산문학상 수상작이나, 제목이 강렬하고 혁명가 체게바라를 소재로 한 시가 2편 존재(내용 확인-왜 체 게바라를 좋아하는나는 질문에 젊은 인력거꾼은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이라고 대답한다, 105p 산타를러라 발췌)	시
검은 밥, 하얀 바람	저자(정홍근)는 독일시인자격으로 방북, 통일문학 <물쥐> 발표한사람으로 도서 내용은 통일을 염원하는 주인공이 독일에 건너가 좌익으로 몰려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럼에도 통일을 염원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소설
소년이 온다.	2014만해문학상 수상작이나, 저자는 “한강”이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중학생과 그 주변 인물과 그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받는 내연을 그려내고 있음	소설

1)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녹취서 11-13쪽)

2014. 11. 4.자로 이OO가 작성한 문건이다(11쪽). 해당 사업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당초에 문체부에서 보고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이다(11-12쪽).

해당 문건의 '보고배경'에는 '우리 부는 지난해 선정한 우수교양도서 일부가 중복감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3월 도서선정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 중', '그러나, 문학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완전히 제외하는데 어려움', '대상 도서 중 올해의 대산문학상 수상작 등 이미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선정의견 고수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문학의 경우 선정제외 대상인 도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선정의견을 고수하여 배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2쪽).

해당 문건의 2쪽에는 '참고1.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겨울나기」, 「그리운 나무」, 「기룬 어린 양들」, 「봄눈」, 「영통의 기쁨」,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체 게바라 만세」, 「검은 눈, 하얀 바람」, 「소년이 온다」 등 9종의 도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OO는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위 9종의 도서를 반드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12쪽). 위 도서의 선정제외 과정에 대해서는 이O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서 알고 있지 못하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제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3쪽).

이OO의 지시를 받은 N, 유OO은 선정제외 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문학작품으로서는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의 도서이고, 「그리운 나무」는 정지용 문학상, 「소년이 온다」는 만해 문학상을 수상한 검증된 작품이라는 의견을 이OO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13쪽). 이OO는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인 또한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없고, 김OO 과장 등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양해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양해를 요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으나 어떤 도서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3쪽).

2)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3-4쪽)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위 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0.~11.경 세종도서 ‘문학부문’ 2차 심사결과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송부하였고(3쪽), 이OO 사무관은 유OO이 송부한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4. 11. 7.경 “2014. 11. 4.자 ‘세종도서 추진현황(하반기)’.hwp” 파일을 첨부하여 유OO에게 메일을 송부하였으며, 유OO은 이 메일을 N 본부장에게 발송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3쪽). 이OO 사무관이 첨부한 파일의 제목은 “세종도서의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로 참고자료에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자료에 기재된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이 당시 이OO 사무관이 선정 배제를 요구한 도서 목록이다(4쪽).

(나) N 관련

1)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가) N은 유OO 팀장을 통해서 2014. 11. 7.경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2014. 11. 4.에 작성한 지원배제대상 목록을 전달받았으며(9쪽), 2014년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한 9건의 도서가 모두 세종도서에서 제외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쪽). 2014년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이OO 사무관이 유OO에게 선정제외 연번을 불러주었고, 유OO이 연번을 메모하여 연번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그 연번의 작가, 작품이름, 내용에 대한 문건을 만들어 N에게 보고하였으며, N은 해당 책 내용을 유OO과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5쪽).

나) 2014년도 세종도서 3차 최종심사(심사위원 13명, N, 유OO 참석, N 회의 진행)는 2014. 11. 14.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N은 유OO 팀장과 함께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회에 간사로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9쪽).

다) 2014년도 세종도서와 관련하여 N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책을 선정해 달라.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책을 공공도서관 등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7쪽), 심사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배제지시가 하달된 특정 도서 및 저자를 언급할 수는

없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7-8쪽). N은 위 발언이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이며 (14쪽), 사업의 취지상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는 책을 선정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스스로 발언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14쪽). 또한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 중 ‘체 게바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에 관하여 N은 “2014년 대산문학상 수상작이지만 꼭 선정하여야 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체 게바라 만세는 제가 선정을 제외하였으면 좋겠다”고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6쪽). 증거기록 7243쪽

라) 또한 N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를 하면서 도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미 전반적으로 책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의 요구를 알아듣고 선정 제외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5쪽).

2)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가) N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가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내질 텐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들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와 공감을 위한 문학 작품 위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3차 선정회의에는 최종 선종 종수의 2배수 혹은 1.5배수 가량의 책들이 올라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심사위원 분이 특정 시집을 포함되기를 원하셨고, 그 때 그 시집에 성폭력 등을 묘사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어디에 보내지느냐고 물으시길래, 어른들이 보면 관계없지만 청소년 쉼터 등에 보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이라고 진술하였다(18쪽). 2014년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심사기준 제14조에 보면 “[문학부문] 1.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따라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2호에 보면 “수요자 관점을 종합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에 따라 발언한 것입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심사위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어떤 심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9-11쪽)

- 1) 3차 회의 때 심사위원들에게는 배제지시가 하달된 연번을 직접 말할 수 없어 당시 회의진행을 맡았던 N 본부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정이 되면 어떤 곳에 배포가 되고 그곳의 수요자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9쪽). 이러한 곳들에 배포가 되니 정서치유가 되는 책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돌려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서치유’에 대한 언급이 해당 도서들을 배제해달라는 뉘앙스를 가졌던 이유는 당시 국감 등에서 이미 블랙리스트가 언급되었고, 심사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N 본부장 등이 ‘정서치유’라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여도 정부비판적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들을 알아서 배제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9쪽). 당시 2014년 배제목록을 보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만해문학상 수상작이었고, 「체게바라 만세」도 대산문학상 수상작이었는데 이러한 책들이 배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책들이 선정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9쪽).
- 2) 유OO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심사장에서 N이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가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내질 텐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들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와 공감을 위한 문학 작품 위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수요자들의 정서치유에 도움이 되는 책들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기억”하나, “배제지시가 내려온 도서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11쪽).

(라)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우수도서 목록

연번	분야	소분과	도서명	출판사	저자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126	시	시2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수호	선정	선정	비선정
127	시	시2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선정	선정	비선정
128	시	시1	기쁜 어린 양들	유론사상사	행은재	선정	선정	비선정
130	시	시3	좋은	도서출판 두	김영삼	선정	선정	비선정
132	시	시2	영웅의 기록	서정시학	박희진	선정	선정	비선정
133	시	시4	달콤넠면집 아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용호	선정	선정	비선정
134	시	시4	저 겨울과 함께	실천문학사	박정대	선정	선정	비선정
455	소설	소설3	결혼 날, 학년 바꿨	신아출판사	정영근	선정	선정	비선정
457	소설	소설2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강	선정	선정	비선정

위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첨부 문건에 기재된 9종의 도서는 모두 3차 심사에서 선정 제외되었다.

(2)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선정 관련

(가) 출판진흥원 유OO 팀장 작성,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기자 779. 109

연번	분야	소분과	도서명	출판사	저자	선정결과	유요이유	1차	2차	3차	비고
52	시	시1	사랑 기록	도서출판 북인	이진희	제외			Y		
56	시	시2	죽은 시골 이야기	실천문학사	이진희	유요			Y		
126	시	시2	겨울과 영웅들	창비출판	정희성	유요			Y		
133	시	시4	달콤넠면집 아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용호	유요			Y		
134	시	시4	저 겨울과 함께	실천문학사	박정대	유요			Y	Y	서평을 위한 문헌과 목차에 있는 시문으로 확인이 필요함
200	시	시3	좋은 시	출판	김영삼	유요			Y		
211	소설	소설3	결혼 날, 학년 바꿨	신아출판사	정영근	유요	Y		Y	Y	서평을 위한 문헌을 있는 저술자 정보에 근거한 조사결과 유요를 확인하였는 문헌수령, 책이름 정보
217	소설	소설3	결혼 날, 학년 바꿨	신아출판사	정영근	유요	Y		Y		
240	소설	소설3	결혼 날, 학년 바꿨	실천문학사	정영근	유요			Y		
249	소설	소설3	결혼 날, 학년 바꿨	신아출판사	정영근	유요			Y	Y	저술자를 찾아보면 저술 정보에서 발행처의 출판사, 저자의 저술을 그 출판사로부터 문헌 정보 수집, 확인하여 정보

1)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본 심사결과 목록은 2015. 10. 중순경 유OO 팀장이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선정제외 대상 도서를 통보받고 정리하여 N 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이다(7쪽). 2015. 10. 중순경 201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OO 사무관이 유선상으로 연번을 불러주고 유OO은 그 연번의 도서와 일치하는지 도서명과 저자명을 확인하였다.

유OO은 N 본부장과 배제지시를 받은 도서를 검토하였으며, 문학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내용이 없어(7-8쪽), 해당 도서들의 검토결과를 이OO 사무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OO 사무관은 “위의 요청이 강력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8쪽).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해당 문건은 출판진흥원 유OO이 이OO로부터 선정제외 대상을 전화로 통보받아 메모한 이후, 연번을 정리하여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위 목록 중 32(정안나), 90(손세실리아), 126(최영철), 200(김해자), 212(김홍신), 221(김별아), 289(공지영)이 3차에서 최종 탈락하였는데 이는 이OO가 해당 도서들에 대해 선정제외를 요구하였던 도서들이 맞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4쪽).

출판진흥원 유OO 팀장은 2차 심사를 마치고 3차 심사 전, 2015. 10. 중순에서 하순경 이OO가 위 명단을 불러주어 N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도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는데, 별 문제가 없어 이OO에게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더니, 이OO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능하면 노력해 달라.”고 하여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4쪽).

3)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의 경우

이OO가 선정제외를 지시한 문학분야 10건 중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선정 배제되었는데, 이OO는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해당 도서들이 배제가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5쪽).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이OO가 배제지시를 하달한 10종 중 허

OO, 서OO의 도서 2종은 선정이 되었는데, 당시 문체부에서는 N 본부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모든 심사과정이 종결되어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었다고 진술하였다(8쪽).

(나) 2015년 세종도서 사업 최종 선정 공고 지연 관련

1)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0쪽)

2015년 세종도서 사업 최종 선정 공고 지연에 대해서는 선정배제 지시가 하달된 책들 중 2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문체부 김OO 과장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느냐고 연락을 하면서 최종 선정 공고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쪽).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N 본부장이 3차 심사까지 완료되어 방법이 없다고 하자 김OO 과장이 심사위원회는 다시 개최할 수 없는지까지 물어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보통 3차 심사 이후 10일 내지 2주 정도가 지나면 선정결과를 발표하는데, 당시 선정제외 대상이었던 허형만, 서성란의 작품이 선정되어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제로 공고가 2015. 11. 27.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지연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5쪽).

3)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12쪽)

2015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최종 선정 공고가 지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하나 이OO 사무관에게 유OO이 최종적으로 2종이 배제되지 못하였다고 보고를 하자 김OO 과장이 N 본부장에게 연락을 하여 심사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2쪽).

(3)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관련

A	B	C	D	E	F	G	H	I	J	K	L
연번	기준연번	신청분야	교과목	도서명	출판사	금저지	번역사	번역자	주요사주 권	2차 심사	3차 회의 권고
3	405	사회과학	5사회/복지 2	자공공	도서출판 드림나의 문학	조한영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9	956	문학	5수필/평 론/희곡2	잊지 않겠습니다	연겨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6	80	철학/심리 학/윤리학	2서양/철학 일반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푸리에북스	이진경			Y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7	96	철학/심리 학/윤리학	2서양/철학 일반	파농	(주)도서출판 한길 사	이경원				예비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24	404	사회과학	5사회/복지 2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유OO은 2017. 1. 5.자 특검 진술조서(N 대질)에서 컴퓨터에서 복구한 엑셀자료를 제출하면서,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제외와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이 연번3(조한영) 「자공공」, 연번9(김기성 외 120인) 「잊지 않겠습니다」, 연번6(이진경)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연번7(이경원) 「파농」, 연번24(김윤태) 「사회적 인간의 몰락」 등 5종을 이OO 사무관이 탈락하도록 통보하였고,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5-26쪽). 위 문건의 '3차 회의 비교'란에는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9쪽)에서, 2015. 11. 초순경 이OO 사무관으로부터 교양부문 도서 배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공공」, 「잊지 않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파농」, 「사회적 인간의 몰락」 총 5종에 대한 배제지시였고 모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N은 문학 분야 이외에 교양, 학술 부문에서 선정제외 대상을 통보받아 선정제외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OO 사무관이 교양부분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25쪽). N의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이OO도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18쪽)에서 동의하는 취지와 함께 본인의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선정 관여 여부

(가)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2쪽을 보면,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276명 중 부적합 107명, 부적합사유 중 ‘기타 등 4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OO는 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단도 청와대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청와대에서 당시 10여 명 정도의 후보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7쪽).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7-8쪽)

참고인 김OO는 2018. 1. 11.자 위원회 조사에서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문건에서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276명 중 부적합 107명, 부적합 사유 중 ‘기타 등 42명’” 기재와 관련하여 참고인 김OO는 세종도서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에게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것은 맞으나, 정확하게 몇 명을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7-8쪽).

라. 배제기준

(1)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3-8쪽)

참고인 김OO는 배제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한 기준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이며, 문재인 지지선언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4쪽). 위 기준은 참고인 김OO가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실수비 이후 내부 비서관들이 주재하던 회의에서 전달받은 기준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8쪽).

(2)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피의자신문조서 47쪽)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해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진술조서 12-13쪽)

문학의 경우 문학나눔 추천위원회를 별도 시스템으로 도입한 이유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밀도 있게 도서 선정을 진행하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정부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를 거르는 장치로 활용되었으며, 정부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란 예컨대 정부정책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의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세월호 사건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하는 서적들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2-13쪽)

(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8-9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은 스스로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8-9쪽).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세월호 및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출판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7-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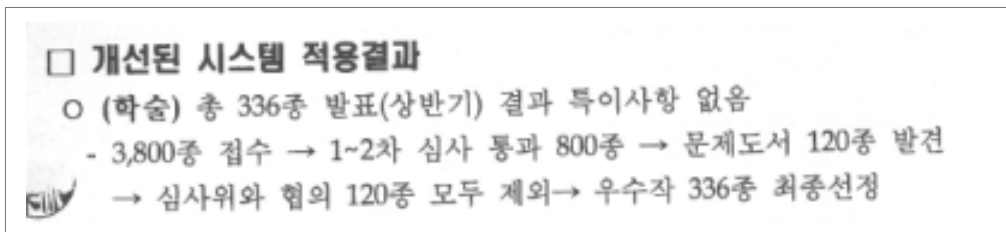
참고인 N은 문체부가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7-18쪽).

(6)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5쪽)

유OO은 2014, 2015년 사이에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문인들의 이름만 나열된 목록이 팩스로 온 적이 있는데, 기재된 이름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세월호 시국선언 문인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배제지시가 내려왔던 저자 목록을 차후에 조합해보니 세월호 관련, 정부비판적 발언들을 해온 문인들이라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5쪽).

5.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 (2014. 11. 4.자)



(1) 이OO 작성 2018. 3. 5.자 진술서(3쪽)

이OO가 2018. 3. 5.자 작성 및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위 문건은 이OO가 작성한 문건이 맞으며, 해당 문건은 세종도서 선정 사업의 개선 동향을 보고해 달라는 김OO 과장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나 문건 작성에 대한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서 ‘학술’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도서 102종 발견”, “심사위와 협의 120종 모두 제외”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문건은 청와대 등 정보를 보고받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한 허위 보고서”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며, “1~2차 심사결과 정상적으로 탈락된 도서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어 탈락시킨 것처럼 자료를 가공한 것”이고, 이러한 허위자료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종도서 사업에 대한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016년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이OO는 2016. 4. 4.자로 타 과로 전보되어 해당 업무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2)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10쪽)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문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김OO는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있으며, 위 문건 1쪽에 보면 학술, 교양 부분에서 각 문제도서가 120종, 210종 발견되었으나, “심사위와 협의”, “모두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배제지시 사항이 하달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수 도서 개선방향이 적용된 결과를 기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배제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0쪽).

2016 세종도서에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10쪽).

(3)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문건 1쪽에 보면 학술, 교양 부분에서 각 문제도서가 120종, 210종 발견되었으나, “심사위와 협의”, “모두 제외”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문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술, 교양 분야에서도 배제지시 사항이 하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으로는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도서들이 약 100여 건인데 문건에서 문제도서 몇 종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자연 탈락된 책들을 이 OO 사무관이 부풀려서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하였다(21쪽).

나. 김OO 관련

(1)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N, 배OO 등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에 보면 “1. 세종도서 학술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공유” 바라며, 김OO 본인에게는 모든 관련 메일을 송부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



(2)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11쪽)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동일한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3) 김OO 2018. 3. 14.자 작성 진술서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특정도서에 대한 배제지시를 출판진흥원 직원에게 하달한 적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배제지시가 청와대 및 국정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 세종도서 학술분야는 문체부 출판과 차원에서 특별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과장으로 부임한 2014년 10월 당해 연도 선정사업

이 한창 진행 중이던 문학분야 종료시까지는 업무파악 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 담당과장으로서 특정도서 선정심의에 의견을 주었던 대상은 2015년 교양 및 문학, 2016년 학술 및 교양인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

(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김OO은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토지조사를 하려는 학자가 쓴 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1-22쪽)

2014, 2015 세종도서 교양, 학술 분야에 모두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던 것인지에 대해 N은 학술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21쪽). 2016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따로 하달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2쪽).

라.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14-15쪽)

2014, 2015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된 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14쪽). 학술의 경우 신청목록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재로 배제지시가 하달된 경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14쪽).

김OO에 대한 2017. 12. 21.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OO은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토지조사를 하려는 학자가 쓴 책에 대해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유OO은 자신은 잘 모르는 내용이며 심의과정에서 자연탈락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유OO은 2016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학술 분야까지는 자신이 담당하였으나, 배제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15쪽).

마. 2016년 세종도서 심사위원 관련 2018. 4. 23.자 조사보고

(1)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 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 (2018. 4. 23.자)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강OO는 2018. 4. 23.자 전화 통화에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으나, 매년 심사 때마다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이 형광펜으로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성적 표현이 있는 작품들을 표시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 (2018. 4. 23.자)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박OO은 2018. 4. 23.자 전화 통화에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신청인의 세종도서 심사 결과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상정목록 및 차수별 심사결과’에 ‘연번 232 / 분야 시 / 도서명 「달은 아직 그달이다」 / 출판사 (주)창비 / 저자 이상국 / 1차심사 ○ / 2차심사 ○ / 3차심사 X / 결과발표 X’로 기재되어 있어, 2차 심사 통과 후 3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가.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과정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회의 개최 결과 보고’[인재양성팀-411(2016. 4. 18.)]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판진흥원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

www.inmunac-kpipa.or.kr를 활용한 온라인을 통해 116개 공공도서관과 문화원 등의 선정 기관 접수를 받았다. 2016년 4월 5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 회의실에서 김OO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이OO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김OO 카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남OO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배OO 출판기반조성 본부장 등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였다. ‘주제의 적절성, 강사의 적합성, 수행기관 운영 능력’ 등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동일 접수일 경우 지역 안배를 위해 소외 지역을 우선 선정기로 하여,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으로 60곳을 선정하였다.

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

(1) 의상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신청인이 강연자 섭외에서 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의상도서관’은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결과’, ‘연번 2 / 권역(기관수) 강원도(5곳) / 수행기관명 의상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의상도서관이 제출한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 신청서(2016. 3. 29.)는 2016. 5. 6. ~ 2016. 9. 28.에 “통섭의 세계에서 만난 문학과 생물학”을 주제로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의상도서관의 사업은 문학, 철학, 예술, 종합 등 4개의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이OO, 임OO, 최OO, 배OO, 김O, 최OO을 강연자 등을 섭외하였다. 2016. 3. 29.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된 지원 내역에는 신청인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제천기적의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제천기적의도서관’은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결과’, ‘연번 59 / 권역(기관수) 충청북도(2곳) / 수행기관명 제천기적의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제천기적의도서관의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 신청서(2016. 3. 29.)를 통

7) 문화융성위원회 소속으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 정책자문의 필요성으로 출범하였으며, 이OO은 3기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장으로 활동하며, 전자신문 eTimes 기획경영실장과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2016. 3. 28. 문화융성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해 제천기적의도서관은 2016. 5. 3. ~ 2016. 10. 12.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신청서를 출판진흥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학, 역사, 철학, 문학 등 4개의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원OO, 강OO, 김OO, 이OO 등의 강연자 등을 섭외하였다.

그렇지만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결과 보고(제천기적의도서관)(2016.11.17.)’에 따르면 강연자가 강OO, 이OO, 김OO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원OO은 누락되고, 김OO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다. 출판인쇄과장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관여 정황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들과 출판진흥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게 [그림1]의 “제목 : 공모사업 등 관련(매우중요!!!)”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1. 세종도서 학술분야, 2. 월간 추천/권장도서(5월), 3.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4. 지역문화 출판콘텐츠 지원, 5. 한중 출판콘텐츠⁸⁾ 지원, 6. 전자책 제작지원(멀티미디어형, 수출전자책, 텍스트 형 3종), 7. 지역축제 연계 북콘서트, 8. 인문독서아카데미 및 북스타트(문화기반국 공조 사업이나 출판과와도 반드시 사전협의)”의 사업을 열거하며,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 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 공유(전체답장 기능 등 활용) 바랍니다(제게는 모든 관련 메일 송부 바랍니다).”와 “추후 진행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OO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주무부서가 아닌 출판인쇄과에 보고, 협의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과들끼리 횡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보를 교환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관련 특정 강연자나 도서에 대한 배제는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8) ‘한중 출판콘텐츠 지원’의 오기로 보임.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참고인 최OO 진술 (2017. 11. 24. 전화면담 보고)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선정 기관인 의상도서관 관장으로, 2016년 출판진흥원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지원을 받아 ‘통섭의 세계에서 만난 인문학과 문학’ 제목의 강연 사업을 진행하였다.

준비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프로그램 기획안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였으나, 출판진흥원 담당자로부터 ‘이상국의 경우 유명인사이기도 하여 부담스러우니, 타인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진술하였다. 신청인에게는 죄송스러웠으나, 출판진흥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강연자 교체는 시기적으로 어려워 기존 강연자들의 강연 회차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전화로 의견을 주고 받아 신청인을 강연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사업 담당자 OOO의 진술 (2018. 2. 22. 진술조서)

출판진흥원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담당자로, 2014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설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담당하고있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특정 작가와 강연자 등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며,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나 의견을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의 심사위원 목록, 접수목록, 기획안 등 최종 선정 전에 문체부에 보고한 적이 없으며, 최종 선정 이후에는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 본부장이 인문독서아카데미 선정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진행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내부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다.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섭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문체부로부터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 강사를 바꿔달라는 언론기사가 나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의상도서관 강연자 교체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며, 당시 강연자 중 스님이 한명 있어 철학은 괜찮으나, 종교적 이야기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니 당부 차원에서 연락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인재양성팀장 윤OO의 진술 (2018. 2. 22. 진술조사)

출판진흥원 인재양성팀장으로 근무했던 자료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담당하였다.

‘의상도서관’에서 신청인에 대한 강연 배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진술하였으며, 제천시적의도서관에서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자로 섭외된 사람에 대해 출판진흥원에서 요청하여 담당자를 변경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문체부 주무부서가 ‘인문정신과’였으며, 출판진흥원의 사업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문체부에 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보고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출판기반조성본부장 배OO의 진술 (2018. 3. 9. 진술조사)

출판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자료,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총괄하였다.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위에 대해,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따른 것일 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이 의상도서관 강연 배제 지시에 대해, 의상도서관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어본 곳으로 잘 모르겠으며, 이 업무는 독립적 성격이 강해 OOO, 윤OO, 배OO 외에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체부의 사전 보고 및 승인에 대해 출판기반조성본부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이런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문체부 주무관 OOO의 진술 (2018. 3. 7. 진술조사)

문체부 인문정신과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자료, 출판진흥원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담당하였다.

출판진흥원의 담당자들로부터 각종 선정사업들에 대해 최종 결정전에 진행경과, 심사위원 목록, 선정 목록 등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최종 선정 전에 내역을 보고 받은

이유에 대해, 기존 관례였고, 업무 총괄자로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 사업에 대해 배제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며, 공식적인 결정과 논의 과정에 주무관인 당사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OO 사무관이나 인문정신과장이 특정 작가와 특정 도서의 배제 지시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나, 분위기 상 조심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의상도서관과 신청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6) 문체부 사무관 하OO의 진술 (2018. 3. 14. 진술조서)

문체부 인문정신과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자로, 출판진흥원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담당하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제천 쪽 도서관의 특정 강연자에 대한 배제된 내용으로 파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이에 대해 지시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강OO 진술 (2018. 3. 2. 전화면담 보고)

제천기적의도서관 관장으로, 2016년 출판진흥원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출판진흥원에 제출한 지원 신청서에는 원OO 시인이 강연자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출판진흥원 직원으로부터 원OO 강사를 빼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배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하고, 다른 강연자로 대체하여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배제 지시를 한 사람이 출판진흥원 직원이라는 것은 기억하나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세종도서 관련 진상규명 사실

가.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자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이후,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이 차례로 생산되었는데,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한국의 위 보도에 대하여 문체부가 청와대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편향 논란에 따라 해당 사업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란이 되었던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특히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심사위원 구성 및 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관리 및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심사절차도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2015. 1.경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우수도서 선정취소 사건

2013년에 우수도서로 선정된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년 말 저자 신은미가 통일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이를 소위 ‘중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해당 저자의 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되며 2015. 1.경 해당 책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결정이 취소된 사건은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91-92쪽),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쪽),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세종도서 사업에서 도서 선정 과정에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걸러내기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나.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1)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① 청와대의 문체부에 대한 세종도서 관련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및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소영에 대한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및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김상률에 대한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을 통해, ② 청와대의 문체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및 문체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의 경위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및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16)” 문건을 통해, ③ 문체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및 출판진흥원 내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전반적인 경위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및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인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세종도서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김OO 행정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청자 명단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 명단을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를 자신의 상급자인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은 이를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하고 정무수석실에 검토를 받아 다시 이를 문체부에 하달하였고, 문체부는 이 배제명단을 출판진흥원에 하달하여 특정 도서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였다. 또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은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에게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

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고, 이에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은 심의과정에서 배제 지시가 하달된 대상 도서에 대한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배제를 유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관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좌성향 및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 2014, 2015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

- 1)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11. 4.자) 참고자료,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유OO 2017. 4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 자 진술조서) 및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는 출판진흥원 유OO 팀장에게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2차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에 송부한 후 검토결과를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의 참고자료에 정리하여 출판진흥원 유OO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유OO은 자신의 상급자인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판진흥원 N, 유OO은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학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보고를 문체부 이OO 사무관에게 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출판진흥원 N, 유OO은 2014년도 세종도서 3차 최종심사에 참석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기능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책을 선정해달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책을 공공도서관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심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며, 출판진흥원 N와 유OO은 이 정도의 완곡한 발언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이 해당 발언의 목적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출판진흥원 내에서 블랙리스트 경위를 파악하였다.

(나)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분' 선정 관련

- 1)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분 특정 도서 배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5년 세종도서 사업의 최종 선정결과 공고가 지연되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문체부 김OO 과장이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재심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면서 선정결과 공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관련

유OO 2017. 1. 5.자 특검 진술조서(N 대질), 2017. 1. 5.자 특검 진술시 유OO이 제출한 엑셀자료에 따르면 2차 통과 도서들 중 문체부 이OO로부터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에 대하여 유OO이 자신의 엑셀자료에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라고 기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N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교양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세월호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5년 교양 부문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고 최종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들 중 「잊지 않겠습니다」는 416 가족협의회가 만든 책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 그림과 가족들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편지글은 모은 책이었으며, 이진경의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파농」 또한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선정 관여 여부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문학' 부분의 경우 심사위원추천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따르면 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단 또한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청와대

에 송부한 적이 있고 청와대에서 당시 10여 명 정도의 후보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으로 지적되는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5. 1.경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우수도서 선정취소 사건 및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념편향 도서를 제외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일련의 기재들을 통해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검토 및 배제지시 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마) 배제기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세종도서 사업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 대상의 선정기준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문인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반대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 활동에 참여한 문인들 및 문재인 지지선언 참여 등과 같이 당시 야당인사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문인들이 주로 배제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11. 4.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사무관·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김OO 2018. 3. 14.자 작성 진술서를 종합하

면 2014·2015년 세종도서 학술 분야 및 2016 세종도서 학술 및 교양 부문에 대하여 문체부 김OO 과장의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OO 작성 2018. 3. 5.자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2016년 세종도서 심사위원 관련 2018. 4. 23.자 조사보고를 종합하면 위 문체부 김OO 과장의 배제지시를 하달받아 이행했어야 할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및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부인하였다.

세종도서 관련자 중 출판인쇄과장 김OO과 다른 이들의 진술이 엇갈려, 2014·2015 세종도서 ‘학술’ 부문 및 2016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

라. 신청인이 세종도서에서 배제되었는지의 여부

신청인의 작품 「달은 아직 그달이다」가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에서 탈락하였다. 하지만 1, 2차 심사에 통과하고, 3차 심사에서 탈락한 점, 또 다른 블랙리스트 단체로 지목된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한 점, 작가회의 및 민예총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좌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과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 등 2014, 2015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다른 도서, 작가들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을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2016년 세종도서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블랙리스트에 의한 탈락인지의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

2.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관련 진상규명 사실

가. 제천기적의도서관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 여부

제천기적의도서관은 사업 신청 당시 강연자로 ‘원OO’을 포함하였으나, 사업 과정에서는 ‘원OO’이 강연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도서관장 강OO는 출판진흥원 담당자로부터 원OO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사업담당자 OOO, 윤OO, 배OO은 배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 강OO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제천기적의도서관 사업 신청서에는 강연자로 원OO이 예정되어 있으나,

결과보고에는 강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배제 지시로 인해, 강연자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의상도서관 강연자 신청인에 대한 배제 지시 여부

의상도서관에서 제출한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애초 기획 당시 신청인이 등재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한 의상도서관장 최OO이 진술이 구체적이며, 허위진술 할 까닭이 없고, 제천시적의도서관에서도 신청인의 경우처럼 특정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던 정황 등이 확인되는 바,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의상도서관 강연자로 예정되어 있던 신청인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여부 확인되지 않았다.

다.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사업에 대한 관여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소관부서의 업무가 아님에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문체부 인문정신과 주무관 OOO은 출판진흥원의 담당자들로부터 각종 선정사업들에 대해 최종 결정전에 진행경과, 심사위원 목록, 선정 목록 등을 보고 받았으며, 이는 기존 관례이며 일반적인 업무과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은 사업 진행 중간에 보고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공모사업 등이 최종 결과 발표 전 정보가 사전 유출되는 불합리함을 인정키 어려워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이 크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맞추려 조심을 하는 분위기였다는 OOO의 진술 등으로 미뤄, 문체부 인문정신과가 출판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파악과 방향성 제시 등의 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선정 심사위원들을 살펴보면, 출판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 1인, 문화융성위의 인문정신특별위원회 1인, 출판진흥원 본부장 1인 등으로 5인 중 3인이 출판진흥원 구성원이거나, 문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문체부의 의견이 반영되기 쉬운 구조로, 직접적인 선정 및 배제 지시가 없었다하더라도, 사업 과정에 문체부의 정책 방향 및 분위기에 따라 진행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세종도서 관련 추가 조사 필요

- (1) 문체부 실국장 및 장차관, 출판진흥원장 및 사무처장 등 출판진흥원 내 상급자, 세종도서 심사위원들이 인지 및 가담 여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
- (2) 출판진흥원 유OO, N 등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은 2014~2015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100여 건에 가까운 배제지시가 문체부로부터 하달되어, 이에 대한 내용검토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을 막아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① 해당 사업에 실제로 하달된 배제지시 건수 및 ② 출판진흥원 해당 사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3) 문체부 이OO 사무관과 청와대 김OO 행정관은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와 관련하여 검토 및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4)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에 학술, 교양 부문에 대한 문제도서 발견 및 심사위와 협의 하에 제외 등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대로 보고용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추가 조사 필요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특정 강연자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사람과 배제 지시 사유를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배OO, OOO, 윤OO 외의 사람이 업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사업 총괄 본부장의 진술로 미뤄 출판진흥원 관계자 또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은 문체부 인문정신과 사무관, 주무관 중 1인이 해당 도서관들에게 특정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배제 지시를 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 여러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활동하였던 단체 또한 블랙리스트 단체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제천시적의도서관 강연자에서 배제되었다고 판단되는 원OO의 경우, 위원회 확보자료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

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천기적의도서관과 의상도서관 외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에서 강연자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7

시인 손세실리아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



67

시인 손세실리아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출3 [시인 손세실리아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손세실리아(이하 신청인)는 시인으로 활동하며, 미선이 효순이 사건, 용산 참사, 대추리 사건¹⁾, 파병 반대 등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탈락하고,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도 지원하였으나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1) 2006년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지 부지로 선정된 대추리 주민들이 이전을 거부하여 주민, 시민단체가 경찰과 충돌한 사건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신청인이 2016년 세종도서에서 배제되었는지의 여부

청와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세종도서 문학분야 선정과정에서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문인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반대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 활동에 참여한 문인들 및 문재인 지지선언 참여 등과 같이 야당인사에 지지를 표명한 문인들을 대상으로 3차 심사과정에서 배제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2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인의 작품 ‘꿈결에 시를 베다’가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에서 탈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신청인이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눈에 밝히다’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하였으나, 1차 심사 통과 후 2차 선정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2015년,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서 3차 심사 과정에서 배제 지시가 있었음은 확인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응모는 2014년 사업이며, 신청인은 2차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정황 등이 확인된 바, 신청인이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유가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의함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붙임 : [시인 손세실리아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출3 시인 손세실리아에 대한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

[신청인] 손세실리아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손세실리아(이하 신청인)는 시인으로 활동하며, 미선이 효순이 사건, 용산 참사, 대추리 사건²⁾, 파병 반대 등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탈락하고,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도 지원하였으나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8일 제18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①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② 2014년 출판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탈락 경위, ③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의 탈락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2) 2006년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지 부지로 선정된 대추리 주민들이 이전을 거부하여 주민, 시민단체가 경찰과 충돌한 사건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세종도서 선정 과정 관련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9건의 문서와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문건 등 자료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미래한국	
2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2014. 2.)	문체부 이OO	
3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2014. 2. 21.자)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4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2014. 2. 28.자)	문체부 이OO	
5	건전문화예술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2014. 10.)	문체부	
6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		
7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8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9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0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11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2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3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4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출판진흥원 N	
1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문체부	
16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17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2014. 11. 4.)	문체부 이OO	
18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9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출판진흥원 유OO	
20	유OO 컴퓨터 복구 엑셀자료	출판진흥원 유OO	
21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22	2016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심사위원 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2018. 4. 23.자)		
23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박OO의 유선상 진술에 대한 조사보고(2018. 4. 23.자)		
24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5	oh&kim 가필 문건	문체부 김OO	
26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오OO	
27	이OO에 대한 2017. 6. 26.자 증인신문 녹취록(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28	김OO 특검 2016. 12. 19.자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29	2014, 2015, 2016 세종도서 접수목록 및 심사결과	출판진흥원	

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관련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15건에 대하여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2]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출판진흥원	2018.1.26.	
2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계획	출판진흥원	2018.1.26.	
3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결과	출판진흥원	2018.1.26.	
4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출판진흥원	2018.1.26.	
5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계획	출판진흥원	2018.1.26.	
6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결과	출판진흥원	2018.1.26.	
7	김OO이 2015. 3. 30. 발송한 메일 (위원회 확보자료) [사건번호 2017노2425]	N	2018.11.7.	
8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소송기록 - 이OO 증인신문조서(2017고합102)	서울고등법원	2018.2.2.	
9	(위원회 확보자료) 리스트 - 16. 2. 1.	문화체육관광부	2018.2.2.	
10	김OO이 2018. 1. 29. 위원회에 발송한 메일	김OO	2018.2.1.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1	참고인 N 전화조사 보고	위원회	2018.2.1.	
12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목록	출판진흥원		
13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목록	출판진흥원		
14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목록	출판진흥원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6. 30. 보도자료	출판진흥원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세종도서 선정 과정 관련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5인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3]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N	출판진흥원 직원	진술조서(2017. 11. 7.)
2	유OO	출판진흥원 직원	진술조서(2017. 12. 27.)
3	김OO	청와대 행정관	진술조서(2018. 1. 11.)
			진술서(2017. 12. 15.)
4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진술조서(2017. 12. 21.)
			진술서(2018. 3. 14.)
5	이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진술서(2018. 3. 5.)

나.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관련 참고인 등 대인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8인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대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4] 참고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손세실리아	신청인	진술조서 (2017. 11. 29.)
2	OOO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	진술조서 (2018. 2. 21.)
3	N	출판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진술조서 (2017. 11. 07.)
4	김OO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진술서 (2017. 12. 15.)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5	김OO	"	진술조서 (2017. 12. 21.)
6	이OO	문체부 출판인쇄과 사무관	진술서 (2018. 3. 5.)
7	유OO	출판진흥원 콘텐츠 진흥팀장	진술조서 1차 (2017. 12. 27.)
8	N	출판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전화조사 보고 (2018. 2. 1.)
9	유OO	출판진흥원 콘텐츠 진흥팀장	진술조서 2차 (2018. 3. 9.)
10	OOO	출판진흥원 좋은책선정 사업담당자	진술조서 (2018. 3. 8.)
11	최OO	출판진흥원 콘텐츠 진흥팀 차장	진술조서 (2018. 4. 20.)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³⁾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⁴⁾에 의해 설립된 법인⁵⁾으로, 2012년 7월 27일 개원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통계 작성,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지원, 양서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나. 세종도서

(1) 세종도서 사업 개요

세종도서 사업은 문학, 교양, 학술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래 출판진흥원은 교양, 학술 2개 분야에 관해 ‘우수도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문학 분야는 ‘우수문학도서(문학나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민간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서관협회 등 사업자를 달리하며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문학부문까지 출판진흥원에 통합 운영되어 명칭을 세종도서로 바꾸었다.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출판사로부터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의 경우 총 5개 분야(시, 소설, 수필, 평론·희곡, 아동청소년)에서 599종, 학술부문 319종, 교양부문 310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여 2015. 8. 20.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의 경우 510종, 학술부문 320종, 교양부문 455종이 최종 선정되었다.

(2) 세종도서 선정절차

“사업공고 → 도서접수 →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회(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3차) 및 선정 → 도서 구입 및 배포”의 단계를 거친다.

다.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1) 출판진흥원은 국내 저자의 우수출판 콘텐츠를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출판사에 우수출판콘텐츠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출판 생산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하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진행하였다.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매년 미 발간된 우수출판콘텐츠 140편을 선정하여, 각 편당 1,000만원(저작 상금 300만원 + 출판지원금 700만원) 씩 총 1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또는 출판사가 원고와 기획안 등으로 접수를 하였다. 선정된 저작물의 경우 출판사와 출판진흥원 간에 출판 협약서를 작성하여 출간되도록 하였으며, 지원 도서 판권란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0000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게 하였다.

선정기준은 집필의도(출간의의), 참신성, 우수성, 완성도, 우대사항 등의 심사 기준과 1저자 1편과 1인 및 지역 출판사의 응모작은 전체 선정작 가운데 25%(2016년에는 30%) 내외를 선정하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 발간된 도서, 외국 번역 도서, 타 공모전에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었다.

(2) 심사는 1단계 예비검토, 2단계 본심사, 3단계 최종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다. 1단계 심사는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소분과별로 최종 선정종수의 3배수를 선정하여, 심사위원별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소분과의 합의결과를 논의하여 최종 선정종수의 2배수를 선정하는 2단계 심사를 진행하였다. 3단계 최종심사는 저자 중복과 분과 간 선정작을 조정하여 최종 선정작을 확정하였다. 년 중 3~4월 공모 및 응모작을 접수하여, 6월 심사회의 및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7월경 저작상금을 지급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12월 선정작 발간도서를 홍보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4], [김기춘 외 3인 2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4]에 “순번 13 / 구분 2015년도 / 3차 심사 2015 - 10 - 29 / 공고 2015 - 11 - 27 / 분야 시/ 도서명 꿈결에 시를 베다 / 출판사 실천문학사 / 저자 손세실리아 / 담당

(문체부/산하기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등 / 출판산업진흥본부 N, 유OO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문체부 감사 보고서, 별표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부당 선정배제 명세에 “연번 14 / 사업연도 2015 / 분야 문학 / 장르 시 / 도서명 꿈결에 시를 베다 / 출판사 실천문학사 / 저자 손세실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⁵⁾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명단’에 ‘손세실리아’로 등재되어 있다.

3.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

가. 2014. 2. 18.자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논란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경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체계바라와 띵 띵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⁶⁾

5)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등록 2016/10/12 04:40, 수정 2016/10/12 11:47,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2018/4/09-접속날짜)

6) 미래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한’ 교양도서 목록”, 2014. 2. 18.자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2014. 2.)

미래한국 기사관련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중합 의견>	
①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 ② 기자가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	
1. 제 게마라와 팔팔라 라틴아메리카 _ 최정원 교, 오봉 그림/ 한수리북스	
기자의 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조망함으로써 독자에게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쿠바경제가 창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고 표현하여 쿠바 경제를 미화
타 언론사 수선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제게마라와 팔팔라 라틴아메리카'는 조금 다르다. 실존 인물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그 인물의 전기를 따라가 재미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겉을 보면) 라틴아메리카를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의 눈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 반미 서적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책의 속을 보면)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사회, 문화 등에 관해 이념이 가릴 수 있게 이야기로 구성되어 소개한 책 <p>- 기자의 시각에는 책이 쿠바 경제를 미화하고 있다고 보나, 책의 앞뒤를 읽어 보면 쿠바경제가 국민의 창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는 의미가</p>

해당 문건은 2014. 2.경 미래한국 기사가 문제가 되면서 청와대 해명용으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미래한국 기사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① 미래한국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하고, ②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한 측면이 많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은 당시 미디어정책관 박OO, 출판인쇄산업과장 정OO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는 미래한국에서 보도한 도서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⁷⁾

⁷⁾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4> (접속일자: 2018. 4. 20.)
7)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6쪽(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공판기록).

(3)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2014. 2. 21.자)

미래한국 기사관련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의견>	
①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 ② 기자가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	
1. 책 제목과 팔팔라 라틴아메리카 _ 최광일 글, 오동 그림/ 판수리북스	
기자의 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조망함으로써 독자에게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미국을 계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쿠바경제가 참이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고 표현하여 쿠바 경제를 미화
타 언론사 수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세계바라와 팔팔라 라틴아메리카'는 조금 다르다. 실존 인물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그 인물의 견기를 따라가 재미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겉을 보면) 라틴아메리카를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의 눈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 반미 서적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책의 속을 보면)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사회, 문화 등에 대해 어린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야기로 구성하여 소개한 책 <p>- 기자의 시각에는 책이 쿠바 경제를 미화하고 있다고 보나, 책의 앞뒤를 읽어 보면 쿠바경제가 국민의 창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는 의미가</p>

위 미래한국 보도 논란과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미래한국의 보도와 그 무렵 예술위의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제 삼은 국정원의 문건 등에 관하여 문체부 당시 유진룡 장관이 2014. 2. 21.경 김기춘에게 대면보고 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중 도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간지 미래한국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이에 논란이 된 도서의 선정 경위를 보면 이념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리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향후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련자 징계문제도 검토”하고,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편향

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 2013년 하반기 우수도서가 이념편향 논란이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1. 중점 검토

- 우수도서 선정 과정·결과를 둘러싼 외부 영향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 재점검
- 사업의 명칭·시행 주기, 도서선정 방법 재검토

이후 문체부 이OO 사무관 등은 2014. 2. 28.경 유진룡 장관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위 보고의 요지는 ①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 ② 선정시스템 개편·강화로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는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각 심사, ③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로 이념편향 도서가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우수도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설치, 기타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2014. 10.)

< 미디어 >

□ 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방안

○ 추진현황 (한국출판진흥원 주관)

- (선정분야) 교양(400종), 문학(600종), 학술(330종)의 3개 분야
- (선정시기) 상반기 학술분야(6월), 하반기 교양 및 문학 선정(11월)
- (선정방법) 사업공고 → 도서접수 → 심사위원 위촉 → 심사(3차)·선정 → 도서 배포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약 6,000개소)

◆ 우수 도서 선정 기준

- ① 출판 기획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며 내용이 충실한 도서
- ② 인문학 등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
- ③ 민족문화 및 발전적 세계관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도서
- ④ (문학 분야만 경우) 우수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작품

※ 역사왜곡,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도서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

○ 개선방안

< 단계 >

< 단계 >	< 주요 대응전략 >
도서접수	(출판사) 온라인 신청 → (출판진흥원) 접수 및 도서 개요 정리, 특이사항 점검
↓	↓
심사위원 위촉(75명)	후보자 검토 강화(출판산업진흥원, 관계기관 공동)
↓	↓
심사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10개 분과, 25개 소위, 소위별 3명) 분과위원회 구성 (10개 분과, 분과별 평균 7~8명) → 출판산업진흥원 균형적 시각의 인사를 분과장으로 지정 선정위원회 구성 (10명 내외, 각 분과장 참여) → 출판산업진흥원 균형적 시각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지정
↓	↓
심사 및 선정(45일) *(1차) 소위원회 → (2차) 분과위원회 → (3차) 최종 선정위원회	(1차) 선정목표의 300% 2차 상정(15일 심사) (2차) 선정목표의 200% 3차 상정(20일 심사) (3차) 선정위원별 검토후 회의에서 최종확정(약 10일) → 도서 결격사유(저작권위반, 출판사별 선정 총량 초과, 용서 등이 달겨 국민에게 권장하는 것이 부적절한 도서 등), 점검서 정치편향 도서는 선정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 비공식 의견 제출

김종덕 장관이 2014. 10.경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 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였는데 그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종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미래한국의 보도)(사례)’,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문제점)’,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개선방안)’ 등이다.

나. 2015. 1. 7. 신은미 우수도서 선정 취소 사건

(1) 경위

- (가) 신은미는 2011. 10.부터 2012. 5.경까지 북한 여행 경험을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매체에 2012. 6.부터 2012. 10.까지 30회에 걸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고, 이 기고문들을 묶어 동일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이후 2013. 6.경 문체부 주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우수문학도서’ 사업에서 신은미의 해당 책이 수필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 (나) 2014. 11. 19. 신은미와 황선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 ‘중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보도를 하는 등 문제가 되었다.
- (다) 문체부는 2015. 1. 7.경 책사회에 신은미의 책에 대한 우수문학도서선정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책사회는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 (라) 문체부는 2015. 1. 13. 전국 각 지역 도서관에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 회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해당 책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에 따르면(188-189쪽), 2014. 11. 25.경 중북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신은미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도서가 2013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일이 청와대 실수비에서 문제로 거론되었고, 조운선은 그 무렵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하여 정관주는 신은미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와 함께 세종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김소영 문체비서관과 논의한 사실, 정관주 소통비서관은 2015. 5.경 문체부 제1차관이던 박민권에게 ‘우수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좌파 성향의 책과 작가들을 골라내어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3)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91-92쪽)

신은미 책 우수도서 취소와 관련하여 정관주는 2017. 1. 17자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신은미의 책이 문제되었을 때, 조운선 수석이 직접 우수도서 선정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를 하라고 지시해서 제가 김소영 비서관과 협의를 하게 되었고, 신은미의 책을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문체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아 조운선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소영은 이에 대하여 김상률로부터도 지시가 있었고, 정관주도 조운선의 지시사항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신청취소에 대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91쪽). 당시 김소영의 기억에 따르면 신은미 책에 대한 우수도서 취소는 실수비의 지시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상률, 조운선 등이 함께 이 부분을 체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92쪽). 자신은 김상률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에 전달하였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92쪽).

(4)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쪽)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 12.경 갑작스럽게 우수도서 선정이 취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N은 2014년 말이면 문학나눔 사업이 출판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여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에 우수도서 취소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우수도서 선정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니 출판진흥원장 명의로 선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 참고인은 이 사건이 일련의 세종도서 부당배제 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7쪽)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 12.경 갑작스럽게 우수도서 선정이 취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에 해당 책의 선정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 출판진흥원은 2013년에는 문학나눔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4. 2. 미래한국 보도와 함께 신은미 책의 우수도서 취소 결정이 세종도서 선정 부당배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4.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가.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상 “범죄일람표4”(515-516쪽)에는 출판진흥원 2014 세종도서 문학부문, 2015 세종도서 문학 및 교양 부문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배제되었던 도서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2014년 9종, 2015년 13종). 특정 도서 배제와 관련하여 문체부 이○○는 출판진흥원 N, 유○○에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① 2014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③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각 지시하였고, 문체부 이○○의 지시를 받은 출판진흥원 N, 유○○은 ① 2014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순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비고
1	2014년도	소설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강	
2	2014년도	시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수호	
3	2014년도	시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4	2014년도	시	기룬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맹문재	
5	2014년도	시	봄눈	도서출판 b	김병섭	
6	2014년도	시	영통의 기쁨	서정시학	박희진	
7	2014년도	시	장춘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8	2014년도	시	체 게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9	2014년도	소설	검은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정창근	
10	2015년도	수필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2)	분도출판사	공지영	
11	2015년도	시	A형 기침	도서출판 북인	정안나	
12	2015년도	시	금정산을 보냈다	산지니	최영철	
13	2015년도	시	꿈결에 시를 베다	실천문학사	손세실리아	
14	2015년도	시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실천문학사	이재무	
15	2015년도	시	집에 가자	삶창	김해자	

순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비고
16	2015년도	소설	단 한 번의 사랑	(주)해냄출판사	김홍신	
17	2015년도	소설	어우동, 사랑으로 죽다	(주)해냄출판사	김별아	
18	2015년도	철학/ 심리학/ 윤리학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북스	이진경	
19	2015년도	철학/ 심리학/ 윤리학	파농	(주)도서출판 한길사	이경원	
20	2015년도	사회과학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21	2015년도	사회과학	자공공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조한혜정	
22	2015년도	문학 (교양)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나.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1) 참고인 김OO 관련

김OO는 2014. 3. 31.경부터 2016. 6.경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기간 동안 김OO는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3-8쪽)

- 1) 참고인 김OO는 출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때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정OO, 김OO,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을 비롯하여 각 담당 사무관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3쪽). 세종도서에 대한 특정 도서 배제지시 하달과 관련하여서는 위에 말한 사람들과 대부분 동일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OO 사무관과 거의 대부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진행 경과는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9쪽).
- 2) 참고인 김OO는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에게 세종도서 관련 2차 선정도서 목록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는데(8쪽), 이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개선방향” 문건과 관련하여 세종도서에서 이러한 개선방향이 실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8쪽).

- 3) 2014 세종도서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 경위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2015년 동일 사업에서는 2차 선정 목록을 엑셀파일로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인터넷으로 저자 이름과 시국선언 정도의 검색어를 넣어 연필로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표기하였고 이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이 이를 부처에 전달하라고 지시하면 참고인이 김OO 과장 또는 이OO 사무관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8쪽).
- 4) 김OO는 위원회 조사에서 일관되게 특정 작가 및 출판사에 대하여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김OO는 “세종도서 2차 선정목록에 있는 작가들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작가 등에 대한 의견을 문체부에 주었을 뿐이지 이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으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가 있다는 참고사항을 전달”한 것이므로 반드시 배제지시를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3-4쪽). 해당 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7쪽).

(나) 김OO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 1) 출판진흥원의 2014, 2015년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김OO는 자신이 출판을 담당하였던 것은 맞고 세종도서도 출판과 업무여서 담당하였던 사업은 맞지만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2쪽).
- 2)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문건은 김OO가 행정관으로 근무를 시작할 무렵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세종도서 관련 자료를 부탁하여 받은 문건으로(2쪽), 김OO는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소위 ‘문제도서’가 우수(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 3) 김OO는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사업선정 심사결과 명단을 문체부 내부 메일인 ‘나무’를 통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보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문건이 이미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보고된 내용이었고, 문건에 기재된 개선내용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2-3쪽).

- 4) 위 명단을 송부받은 이후 절차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도서심사과정 1, 2, 3차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2차 심사가 끝난 다음에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서 2배수 정도를 송부받으면 이를 저자 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것을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한 다음 부처에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3쪽).
- 5) 또한 김OO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도서의 저자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표에 부기하여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3쪽). 700~800종의 저자와 작품명을 보고 저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름하고 시국선언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문건에 부기하였다(4쪽).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김소영이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소영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 선정 제외 명단에 대해 검토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5쪽).
- 6) 김OO는 선정 제외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할 때 항상 우선으로 연번을 불러주었다(5쪽). 2차 심사 결과가 왔을 때 10명 내외의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참고인 김소영 관련

김소영은 2013. 11.경부터 2016. 9. 2.까지 대통령 비서실 문체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 1) 2015년 하반기 김상률 교문수석으로부터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들은 단 1권도 선정되지 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90쪽). 김상률이 이에 대하여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 중 좌편향 책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비치되었다는 IO 보고서가 올라가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였던 말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소영의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90쪽).
- 2) 김소영은 세종도서 심사과정에 대해 문체부가 보낸 명단 및 김OO 행정관이 부기한 명단, 그 이유까지 모두 김상률에게 보고하였고, 김상률 또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12-113쪽). 또한 김소영은 양해 요청과 함께 2차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도 김상률에게 상의하였고, 양해 요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무수석실과 협의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13쪽). 양해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창비와 문학동네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사안 정도로 기억하며 이에 대해 김상률과 상의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13-114쪽).

(나)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 1)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교문수석실에서 우수도서 사업 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정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소영은 사실이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우수도서 문제는 실수비 전달사항으로 자신에게는 모철민 수석이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46쪽).
- 2) 우수도서 사업은 사업개편이 이루어져 문학나눔 사업과 우수도서 사업이 통합되어 사업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기존 2단계 심사방법을 3단계 심사로 문학의 경우 심사방법을 강화하여 문학 나눔 추천위원회를 두는 방법으로 심사절차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밀도 있게 도서 선정을 진행하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를 거르는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 12-13쪽), 김소영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47쪽).
- 3) 김OO 행정관이 세종도서 진행상황 전반을 김소영의 지시에 따라 김소영에게 보고한 것이 맞으며, 김소영은 모철민의 지시를 받아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47쪽).
- 4) 김OO 행정관은 문체부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이 자신에게 학술, 교양, 문학 부문 2차 심사 결과를 문체부 내부 메일 '나루'로 송부해 주면, 제가 인터넷 검색하여 시국선언 작가들을 검색하고, 2차 심사 결과 출력물에 부기한 이후,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김소영 비서관이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후 그대로 하라고 김OO에게 지시하면, 문체부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교양, 문학 부문의 선정 제외 대상 연번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면 김OO 과장 내지 이OO 사무관이 출판진흥원에 통보하여 3차 최종 심사에서 선정

제외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로 학술부문의 경우 전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선정제의 대상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김소영은 동의하였다(48쪽).

- 5) 김상률은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세종도서 선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작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교문수석실의 관여로 특정 작가나 출판사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 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소영은 당연히 김상률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통령 서면보고로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방식을 개편하여 문제 도서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VIP께서 “단 1권도 안됨”이라고 지시할 정도의 사안으로 이 엄중한 지시가 김상률 수석 때의 일로 김상률 수석이 이에 대해서 왜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50쪽).

(3) 김상률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3-44쪽)

김상률은 2014. 11. 18.부터 2016. 6. 7.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김상률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세종도서 선정사업 심사 과정 결과에 대해서 우수도서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 세종도서로 이름을 개명해서 진행한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선정과 관련하여 시국선언 작가들을 검색해서 명단 배제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배제명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4)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42-43쪽)

김종덕은 2014. 8. ~ 2016. 9.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김종덕은 2014, 2015년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도서들에 대한 배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배제 과정에서 자신은 보고를 받거나 관여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42-43쪽).

(5)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9-11쪽)

이OO는 2013. 12. 13.경부터 2016. 4. 3.경까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이OO는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으로부터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출판진흥원에 전달하여 제외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9쪽).

(나) 이OO는 출판진흥원 유OO이 2014.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이OO의 요청에 따라 세종도서의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12쪽). 이OO는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2014. ~ 2015. 세종도서 사업선정 시 1~3차 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보고하였다(10쪽). 김OO 행정관이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명단을 보고받은 김OO 행정관은 유선상으로 이OO에게 심사통과자 목록 중 선정제외 대상을 불러주었다. 이를 메모하여 이OO는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 유OO 팀장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다. 유선상으로 선정제외 대상을 받고 출판진흥원에 이를 유선상으로 전달한 이유는, 기록을 남겨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 등 외부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0쪽). 김OO 행정관은 제외대상을 불러주면서 어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1쪽). 이OO는 김OO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을 출판진흥원에서 보내준 심사통과자 목록 연번에 체크하고 이OO의 상관이었던 김OO 과장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6)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및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現 주러시아한국문화원장)은 2014. 10.~2016. 9.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이 이OO 사무관, OOO 주무관 및 출판진흥원 N, 배OO 등 본부장들에게 보낸 2015. 3. 30.자 메일에 보면 “1. 세종도서 학술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공유” 바라며, 김OO 본인에게는 모든 관련 메일을 송부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

김OO은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에서 위 메일을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업무 사무관, 주무관,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송부한 이유와 관련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행위라는 답변을 기재하였다(7쪽).

(나) 김OO 2017. 12. 15.자 작성 진술서

- 1) 김OO은 출판진흥원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외·배제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2쪽). 세종도서 선정 과정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청와대 및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2014. 10. 과장 부임 직후부터 문체부 내부의 직원들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등으로부터 출판 분야에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그 대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10쪽).
- 2)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다고 진술을 기재하였다(2쪽).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절차의 후반부 단계에서 산하기관 담당자들에게 검토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배제지시를 진행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였다(2-3쪽).
- 3) 배제지시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체부 실국장과 장차관에게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진행상황 결과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다(3쪽).

(다)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사)

세종도서의 경우 미리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하여 선정절차 후반부 단계에서 김OO이 검토의견을 주는 것으로 배제지시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8쪽). 배제지시는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1쪽). 또한 김OO은 스스로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8-9쪽).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세월호 및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출판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3.16)

□ 미디어(출판) 분야

○ 세종도서 학술 부문(320종) 선정

- 공고(3.18), 접수(3.23~4.3), 심사(4~5월), 선정(6월)

☞ (추진방향) 학술 분야로 이념성 등 문제 제기 가능성 낮음

○ 세종도서 교양(450종) 및 문학(510종) 부문 선정

- 하반기에 진행(8월 공고, 11월 선정)

☞ (추진방향)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예년 선정 기준을 유지하되, **심사 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문건에서 세종도서 심사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라는 기재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공성과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정치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지원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7)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18쪽)

N은 2014. 4.경부터 2017. 6.경까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2014, 2015 세종도서 사업에서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는지에 대해 이OO 사무관의 요청에 의해서 유OO 팀장이 송부하였다(16-17쪽).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 또한 이OO 사무관이 유OO 팀장에게 하달하였고, N은 유OO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다(17쪽). 이러한 배제지시에 대하여 당시 원장

과 사무처장에게 모두 보고하였다. 원장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말만 하였다(17쪽).

(나) 2014, 2015 세종도서 사업 부당배제가 일어난 경위에 대하여, 한 2년에 걸쳐서 약 100여 종에 대한 배제지시 사항이 문체부로부터 출판진흥원에 하달되었고, 유OO 팀장과 N이 함께 100여 종에 대한 자체 검토보고서를 써서 이OO 사무관에게 주고 이OO 사무관에게 선정배제할 만한 도서가 아니라는 설득을 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최종적으로 22종만 기재되어 있지만, 지시는 훨씬 많았으며, 주로 문학과 교양 분야에 하달되었고,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17-18쪽).

(8)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및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유OO은 2013. 2.경부터 2016. 7.경까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해당 부서가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유OO은 이OO 사무관이 2014. 11. 처음으로 배제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5쪽). 유OO은 이OO의 이러한 배제지시를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5쪽).

(나)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4-6쪽)

- 1) 유OO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OO 과장이 출판진흥원 실본부장들에게 출판진흥원 주요사업 선정에 대하여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N 본부장으로 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 2) 유OO은 세종도서 사업에서 주로 이OO사무관으로부터 배제지시를 하달받았고, 김OO 과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제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4쪽). 이OO 사무관은 왜 이러한 지시를 하느냐는 유OO의 물음에 '위'로부터의 지시이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4쪽).
- 3) 배제지시는 주로 미리 유OO이 송부한 선정도서 목록을 보고 연번을 유선상으로 불

러주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유OO은 2014. 2. 미래한국의 보도 이전에는 별 다른 배제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후부터 해당 도서사업을 둘러싸고 원장의 사임위기 등 여러 이야기가 무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2차 선정도서 목록을 송부하라는 요청이 시작되었고, 유OO은 이것이 미래한국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4-5쪽).

- 4) 유OO은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하달되면 이를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N 본부장은 유OO에게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배제 대상을 줄여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6쪽). 내용을 검토하여 이OO 사무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도서들의 3, 4배는 되는 훨씬 많은 양의 도서들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진술하였다(6쪽).

다. 2014, 2015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1)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

(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2014. 11. 4.자)

참고1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		
도서명	검토의견	비고
겨울나기	저자(이수호)가 전교조위원장 출신으로 2009용산참사, 쌍용차 투쟁현장을 함께 했고 도서 내용에 (내용 확인-이번 정권은 목 잘린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때리고 짓밟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예 불태워버리는 구나, 59p 까치집4 발췌) 부분 존재	시
그리운 나무	저자(정희성)는 김근태 추모시 “그대를 잊지 못하리(동 도서 수록-한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나더러는 조시나 쓰라 하고 김근태가 또 먼저 갔다, 38p 그대를 잊지 못하리 발췌)” 창작자로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 동 도서는 2014정치용문학상 수상작임.	시
기쁜 어린 양들	저자(맹문재)는 전대일문학상 수상자로 노동자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	시
분류	저자(김병섭)가 노동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도서의 내용상의 부담은 없음(내용 확인-공민의 경부 실직자들 최후란 삼키며 우리도 일하고 싶다! 목 맺히는데 노동부장관은 무엇하며 근로부장관은 쫓아 저기 가셨나, 60p 실업일기-5월1일 발췌)	시
영웅의 기쁨	저자(박희진)는 99년 정부 보관문화상 수상자, 도서의 내용(내용 확인-제 몸 불태운 갯더미에서 불사조가 부활하듯 칸란절벽 노동계에 떠오른 셋별! 전대일은 불멸의 신화가 되었더니, 71p 전대일 찬가 발췌) 일부에 전대일, 위안부, 한일 관계를 다루고 있음	시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80-90년대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대상을 노래하고 시를 통해 분단, 억압을 극복하고 소통, 이해의길 모색 (1985년 봄, 국가를 의심하다. 광주시민을 살해한 정부를 알게 되다. 진달래 붉은 꽃잎만 보고도 줄게 되다. 1987년 봄과 여름사이, 거리에서 깨닫다. 애국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2000년 여름, 너 그러워지다, 11p 약력 발췌)	시
체 게바라 만세	2014대산문학상 수상작이나, 제목이 강렬하고 혁명가 체게바라를 소재로 한 시가 2편 존재(내용 확인-왜 체 게바라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젊은 인력거꾼은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이라고 대답한다, 105p 산타올라라 발췌)	시
검은 땀, 향안 바람	저자(홍광근)는 독일시인자격으로 발췌, 통일문학 <물뿜>을 발표한사람으로 도서 내용은 통일을 염원하는 주인공이 독일에 건너가 좌익으로 몰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럼에도 통일을 염원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소설
소년이 온다.	2014만해문학상 수상작이나, 저자는 “한강”이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중학생과 그 주변 인물과 그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받는 내면을 그려내고 있음	소설

1)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녹취서 11-13쪽)

2014. 11. 4.자로 이OO가 작성한 문건이다(11쪽). 해당 사업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당초에 문체부에서 보고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이다(11-12쪽).

해당 문건의 '보고배경'에는 '우리 부는 지난해 선정한 우수교양도서 일부가 중복감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3월 도서선정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 중', '그러나, 문학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완전히 제외하는데 어려움', '대상 도서 중 올해의 대산문학상 수상작 등 이미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선정의견 고수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문학의 경우 선정제외 대상인 도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선정의견을 고수하여 배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2쪽).

해당 문건의 2쪽에는 '참고1. 문학 분야 논란 가능도서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겨울나기」, 「그리운 나무」, 「기쁜 어린 양들」, 「봄눈」, 「영통의 기쁨」,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체 게바라 만세」, 「검은 눈, 하얀 바람」, 「소년이 온다」 등 9종의 도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OO는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위 9종의 도서를 반드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12쪽). 위 도서의 선정제외 과정에 대해서는 이O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서 알고 있지 못하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제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3쪽).

이OO의 지시를 받은 N, 유OO은 선정제외 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장춘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문학작품으로서는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의 도서이고, 「그리운 나무」는 정지용 문학상, 「소년이 온다」는 만해 문학상을 수상한 검증된 작품이라는 의견을 이OO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13쪽). 이OO는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인 또한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없고, 김OO 과장 등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양해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양해를 요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으나 어떤 도서에 대해서 양해를 요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3쪽).

2)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녹취서 3-4쪽)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위 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0.~11.경 세종도서 ‘문학부문’ 2차 심사결과를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에게 송부하였고(3쪽), 이OO 사무관은 유OO이 송부한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4. 11. 7.경 “2014. 11. 4.자 ‘세종도서 추진현황(하반기)’.hwp” 파일을 첨부하여 유OO에게 메일을 송부하였으며, 유OO은 이 메일을 N 본부장에게 발송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3쪽). 이OO 사무관이 첨부한 파일의 제목은 “세종도서의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로 참고자료에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분야 논란 가능 도서 현황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자료에 기재된 ‘문학 분야 논란 가능 도서 현황’이 당시 이OO 사무관이 선정 배제를 요구한 도서 목록이다(4쪽).

(나) N 관련

1)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가) N은 유OO 팀장을 통해서 2014. 11. 7.경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2014. 11. 4.에 작성한 지원배제대상 목록을 전달받았으며(9쪽), 2014년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한 9건의 도서가 모두 세종도서에서 제외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쪽). 2014년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이OO 사무관이 유OO에게 선정제외 연번을 불러주었고, 유OO이 연번을 메모하여 연번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그 연번의 작가, 작품이름, 내용에 대한 문건을 만들어 N에게 보고하였으며, N은 해당 책 내용을 유OO과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5쪽).

나) 2014년도 세종도서 3차 최종심사(심사위원 13명, N, 유OO 참석, N 회의 진행)는 2014. 11. 14.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N은 유OO 팀장과 함께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회에 간사로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9쪽).

다) 2014년도 세종도서와 관련하여 N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책을 선정해 달라.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책을 공공도서관 등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7쪽), 심사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배제지시가 하달된 특정 도서 및 저자를 언급할 수는

없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7-8쪽). N은 위 발언이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이며 (14쪽), 사업의 취지상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는 책을 선정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스스로 발언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14쪽). 또한 2014년도 세종도서 선정 중 ‘체 게바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에 관하여 N은 “2014년 대산문학상 수상작이지만 꼭 선정하여야 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다른 책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체 게바라 만세는 제가 선정을 제외하였으면 좋겠다”고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6쪽). 증거기록 7243쪽

라) 또한 N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를 하면서 도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미 전반적으로 책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의 요구를 알아듣고 선정 제외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5쪽).

2)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가) N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가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내질 텐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들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와 공감을 위한 문학 작품 위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3차 선정회의에는 최종 선정 종수의 2배수 혹은 1.5배수 가량의 책들이 올라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심사위원 분이 특정 시집을 포함되기를 원하셨고, 그 때 그 시집에 성폭력 등을 묘사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어디에 보내지느냐고 물으시길래, 어른들이 보면 관계없지만 청소년 쉼터 등에 보내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이라고 진술하였다(18쪽). 2014년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심사기준 제14조에 보면 “[문학부문] 1.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따라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2호에 보면 “수요자 관점을 종합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에 따라 발언한 것입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심사위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어떤 심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9-11쪽)

- 1) 3차 회의 때 심사위원들에게는 배제지시가 하달된 연변을 직접 말할 수 없어 당시 회의진행을 맡았던 N 본부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종도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정이 되면 어떤 곳에 배포가 되고 그곳의 수요자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9쪽). 이러한 곳들에 배포가 되니 정서치유가 되는 책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돌려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서치유’에 대한 언급이 해당 도서들을 배제해달라는 누앙스를 가졌던 이유는 당시 국감 등에서 이미 블랙리스트가 언급되었고, 심사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N 본부장 등이 ‘정서치유’라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여도 정부비판적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들을 알아서 배제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9쪽). 당시 2014년 배제목록을 보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만해문학상 수상작이었고, <체계바라 만세>도 대산문학상 수상작이었는데 이러한 책들이 배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책들이 선정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9쪽).
- 2) 유OO은 2014년 세종도서 선정 3차 심사장에서 N이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가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정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내질 텐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들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와 공감을 위한 문학 작품 위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수요자들의 정서치유에 도움이 되는 책들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기억”하나, “배제지시가 내려온 도서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11쪽).

(라)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접수도서 목록

연번	분야	소문과	도서명	출판사	저자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126	시	시2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우호	선정	선정	비선정
127	시	시2	그리운 나무	(주)달비	정희성	선정	선정	비선정
128	시	시1	기쁜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별문재	선정	선정	비선정
150	시	시5	봄눈	도서출판 수	김영삼	선정	선정	비선정
132	시	시2	영혼의 기록	서정시학	백희진	선정	선정	비선정
133	시	시4	달콤넌넌집 아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선정	선정	비선정
134	시	시4	제 게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선정	선정	비선정
455	소설	소설3	결혼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정황근	선정	선정	비선정
457	소설	소설2	소년이 온다	(주)달비	한강	선정	선정	비선정

위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첨부 문건에 기재된 9종의 도서는 모두 3차 심사에서 선정 제외되었다.

(2)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분’ 선정 관련

(가) 출판진흥원 유OO 팀장 작성,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 결과

연번	분야	소문과	도서명	출판사	저자	선정요약	유요비판	기타	요지	비고
126	시	시2	겨울나기	도서출판 삼인	이우호	유요		○		
127	시	시2	그리운 나무	실천문학사	정희성	유요		○		
128	시	시1	기쁜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별문재	유요		○		
150	시	시5	봄눈	도서출판 수	김영삼	유요		○		
132	시	시2	영혼의 기록	서정시학	백희진	유요		○		
133	시	시4	달콤넌넌집 아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유요		○		수정요청 받은 연번과 해당지 일련 시점으로 확인 후, 유요
134	시	시4	제 게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유요		○		수정요청 받은 연번과 해당지 일련 시점으로 확인 후, 유요
455	소설	소설3	결혼 눈, 하얀 바람	신아출판사	정황근	유요		○		
457	소설	소설2	소년이 온다	(주)달비	한강	유요		○		

출판진흥원

1)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본 심사결과 목록은 2015. 10. 중순경 유OO 팀장이 이OO 사무관으로부터 선정제외 대상 도서를 통보받고 정리하여 N 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이다(7쪽). 2015. 10. 중순경 201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OO 사무관이 유선상으로 연번을 불러주고 유OO은 그 연번의 도서와 일치하는지 도서명과 저자명을 확인하였다.

유OO은 N 본부장과 배제지시를 받은 도서를 검토하였으며, 문학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내용이 없어(7-8쪽), 해당 도서들의 검토결과를 이OO 사무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OO 사무관은 “위의 요청이 강력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8쪽).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해당 문건은 출판진흥원 유OO이 이OO로부터 선정제외 대상을 전화로 통보받아 메모한 이후, 연번을 정리하여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위 목록 중 32(정안나), 90(손세실리아), 126(최영철), 200(김해자), 212(김홍신), 221(김별아), 289(공지영)이 3차에서 최종 탈락하였는데 이는 이OO가 해당 도서들에 대해 선정제외를 요구하였던 도서들이 맞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4쪽).

출판진흥원 유OO 팀장은 2차 심사를 마치고 3차 심사 전, 2015. 10. 중순에서 하순경 이OO가 위 명단을 불러주어 N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도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는데, 별 문제가 없어 이OO에게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더니, 이OO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능하면 노력해 달라.”고 하여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4쪽).

3)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의 경우

이OO가 선정제외를 지시한 문학분야 10건 중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선정 배제되었는데, 이OO는 2017. 5. 10. 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해당 도서들이 배제가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5쪽).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이OO가 배제지시를 하달한 10종 중 허

형만, 서성란의 도서 2종은 선정이 되었는데, 당시 문체부에서는 N 본부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모든 심사과정이 종결되어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8쪽).

(나) 2015년 세종도서 사업 최종 선정 공고 지연 관련

1)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20쪽)

2015년 세종도서 사업 최종 선정 공고 지연에 대해서는 선정배제 지시가 하달된 책들 중 2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문체부 김OO 과장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느냐고 연락을 하면서 최종 선정 공고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쪽).

2)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N 본부장이 3차 심사까지 완료되어 방법이 없다고 하자 김OO 과장이 심사위원회는 다시 개최할 수 없는지까지 물어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보통 3차 심사 이후 10일 내지 2주 정도가 지나면 선정결과를 발표하는데, 당시 선정제외 대상이었던 허형만, 서성란의 작품이 선정되어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제로 공고가 2015. 11. 27.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지연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5쪽).

3)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12쪽)

2015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최종 선정 공고가 지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하나 이OO 사무관에게 유OO이 최종적으로 2종이 배제되지 못하였다고 보고를 하자 김OO 과장이 N 본부장에게 연락을 하여 심사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2쪽).

(3)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관련

A	B	C	D	E	F	G	H	I	J	K	L
연번	기준연번	상징분야	소문과	도서명	출판사	금저지	번역사	번역사	수요자 추천	2차 심사	3차 회의 비고
3	405	사회과학	5.사회/복지 2	자공공	도서출판 도라니의 문학	조현혜경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9	956	문학	5.수필/평론/희곡2	잊지 않겠습니다	편저레출판	김기성 외 120인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6	60	철학/심리학/윤리학	2.서양/철학 일반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북스	이진경			Y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7	96	철학/심리학/윤리학	2.서양/철학 일반	파농	(주)도서출판 한길사	이경원				예비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24	404	사회과학	5.사회/복지 2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선정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

유OO은 2017. 1. 5.자 특검 진술조서(N 대질)에서 컴퓨터에서 복구한 엑셀자료를 제출하면서,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제외와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이 연번3(조한혜정) 「자공공」, 연번9(김기성 외 120인) 「잊지 않겠습니다」, 연번6(이진경)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연번7(이경원) 「파농」, 연번24(김윤태) 「사회적 인간의 몰락」 등 5종을 이OO 사무관이 탈락하도록 통보하였고,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5-26쪽). 위 문건의 '3차 회의 비고'란에는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유OO은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9쪽)에서, 2015. 11. 초순경 이OO 사무관으로부터 교양부문 도서 배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공공」, 「잊지 않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파농」, 「사회적 인간의 몰락」 총 5종에 대한 배제지시였고 모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N은 문학 분야 이외에 교양, 학술 부문에서 선정제외 대상을 통보받아 선정제외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OO 사무관이 교양부분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25쪽). N의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이OO도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18쪽)에서 동의하는 취지와 함께 본인의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선정 관여 여부

(가)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2쪽을 보면,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276명 중 부적합 107명, 부적합사유 중 ‘기타 등 4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OO는 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단도 청와대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청와대에서 당시 10여 명 정도의 후보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17쪽).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7-8쪽)

참고인 김OO는 2018. 1. 11.자 위원회 조사에서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문건에서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276명 중 부적합 107명, 부적합 사유 중 ‘기타 등 42명’” 기재와 관련하여 참고인 김OO는 세종도서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이OO 사무관에게 배제지시를 하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은 맞으나, 정확하게 몇 명을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7-8쪽).

라. 배제기준

(1)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3-8쪽)

참고인 김OO는 배제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한 기준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이며, 문재인 지지선언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4쪽). 위 기준은 참고인 김OO가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실수비 이후 내부 비서관들이 주재하던 회의에서 전달받은 기준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8쪽).

(2)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피의자신문조서 47쪽)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된 이유에 대해 좌성향과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진술조서 12-13쪽)

문학의 경우 문학나눔 추천위원회를 별도 시스템으로 도입한 이유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을 밀도 있게 도서 선정을 진행하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정부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를 거르는 장치로 활용되었으며, 정부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도서란 예컨대 정부정책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의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세월호 사건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하는 서적들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2-13쪽).

(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8-9쪽)

참고인 김OO은 2017. 12. 21.자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OO은 스스로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8-9쪽).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세월호 및 밀양 송전탑 반대 등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향, 출판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7-18쪽)

참고인 N은 문체부가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17-18쪽).

(6)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5쪽)

유OO은 2014, 2015년 사이에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문인들의 이름만 나열된 목록이 팩스로 온 적이 있는데, 기재된 이름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세월호 시국선언 문인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배제지시가 내려왔던 저자 목록을 차후에 조합해보니 세월호 관련, 정부비판적 발언들을 해온 문인들이라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5쪽).

마. 신청인 도서 세종도서 심사 결과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상정목록 및 차수별 심사결과’에 ‘연번 107 / 분야 시 / 도서명 꿈결에시를베다 / 출판사 실천문화사 / 저자 손세실리아 / 1차심사 ○ / 2차심사 ○ / 3차심사 X / 결과발표 X’로 기재되어 있어, 2차 심사 통과 후 3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배제 경위

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공모 및 심사 과정

‘2014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회의 개최 계획’[콘텐츠진흥팀 - 172(2014. 06. 16.)]와 ‘2014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심사회의 개최 결과’[콘텐츠진흥팀 - 190(2014. 07. 24.)](조사기록 118쪽)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판진흥원은 2014년 3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우편을 통해 원고 1,508건, 기획안 1,082건 등 총 2,590편의 응모작을 접수받았다. 지원작 140편 및 후보작 30편 선정에 위해 교수, 저자, 출판 전문가 등 37명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5개 분야로 나눠 1차 예비심사, 2차 본심사, 3차 최종심사를 진행하였다.

1차 심사(예비심사)는 2014. 6. 16. ~ 6. 19.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 전원이 소분과 별 심사회의를 통해 468편을 선정하였다. 2차 본심사는 과학분야 6. 19., 인문교양, 문학, 아동 분야가 6. 23. 사회과학 분야가 6. 24.일에 진행되었으며, 238편을 선정하였다. 3차 회의(최종심사)는 6. 27. 분과장들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140편을 선정작으로, 34편을 후보작으로 결정하였다.

후보작 선정 이유에 대해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 000은 선정작 중에 국고 이증지원 등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책 발간을 포기하는 경우를 예비하기 위함이라 진술(조사기록 252쪽)하였다.

나. 신청인의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공모 응모작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신청인은 ‘눈에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였으나,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2014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심사내역’에는 연번 1157, 제목 눈에 밝히다, 신청인 손세실리아로 응모 접수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1차 심사 결과는 ‘선정 / 출간의의 20 / 참신성 17 / 우수성 18 / 완성도 15 / 가산점 0 / 계 70’으로, 2차 심사결과는 ‘비선정 / 2차 심사평 : 차별적인 문학적 시선을 찾기 어려웠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실천문학사가 저의 양해를 구해서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작품을 통해서 현실 참여적인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시집을 출간할 때는 문학적인 시만 내용에 담았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탈락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정황

(1)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출판인쇄과장 김OO의 개입

김OO은 출판인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들과 출판진흥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게 [그림1]의 “제목: 공모사업 등 관련(매우중요!!!)”의 메일(조사기록 138쪽)을 발송하였는데, “1. 세종도서 학술분야, 2. 월간 추천/권장도서(5월), 3.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4. 지역문화 출판콘텐츠 지원, 5. 한중 출판콘텐츠⁸⁾ 지원, 6. 전자책 제작지원(멀티미디어형, 수출전자책, 텍스트 형 3종), 7. 지역축제 연계 북콘서트, 8. 인문독서아카데미 및 북스타트(문화기반국 공조 사업이나 출판과와도 반드시 사전협의)”의 사업을 열거하며,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 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 공유(전체답장 기능 등 활용) 바랍니다(제게는 모든 관련 메일 송부 바랍니다).”와 “추후 진행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기록(조사기록 28쪽)되어 있다.

김OO은 출판진흥원의 각종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제외, 배제 지시를 인정하였으며,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과 초록 샘플 사업이었고”(조사기록 55쪽), “1번 세종도서, 3번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6번 전자책 지원 등의 사업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조사기록 67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메일 내용 중,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의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문체부 의견을 제출하여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해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이를 심사과정에서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조사기록 68쪽)라고 진술하였다.

(2)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선정 배제 지시 기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출판진흥원의 사업에서 배제 지시를 한 기준으로 ‘정무적 판단(북한관련, 자유주의 시장경제 관련, 정부 정책 관련, 지나친 보수주의 시각으로 부당되는 콘텐츠⁹⁾도 포함)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사회적 쟁점 중 우리 입장을 따르지 않는 듯

8) ‘한중 출판콘텐츠 지원’의 오기로 보임.

9) 콘텐츠의 오기로 보임.

한 콘텐츠 또는 주제의(일본을 지나치게 동경하는 도서), 저자가 문체부 OB인 경우(2중 발견) 등이 해당되었습니다.’라는 내용과 ‘1차 또는 (거의 대부분) 2차 심사를 거친 후 3차 심사 전에 문체부 출판과 의견을 줍니다’라고 진술하여 2차 심사를 통과한 심사 목록에 대해 배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일(조사기록 220쪽)을 위원회에 2018. 1. 29. 송신하였다.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기준에 대해, 김OO은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1)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4),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5)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6)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7)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창작인과 창작물이 모두 해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조사기록 55쪽)라고 진술하고, 위 7가지의 규정을 누가 지시하였는지의 물음에 대해 “2년여의 과장 근무기간 동안 진행한 사안들을 종합해보니 이런 기준들을 정하지 않았으나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조사기록 56쪽)라고 진술하였다.

(3) 김OO의 배제 지시와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

김OO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저희 과에서 담당한 사업들은 이른 바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체로서의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위해서 말씀드린 불문화된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검토했습니다.’, ‘문서화 된 블랙리스트 소지 여부에 대해 ‘리스트는 없었으며, 창작물과 창작자에 따라서 모든 사례별로 항상 다각도로 검토 했습니다.’(조사기록 67쪽)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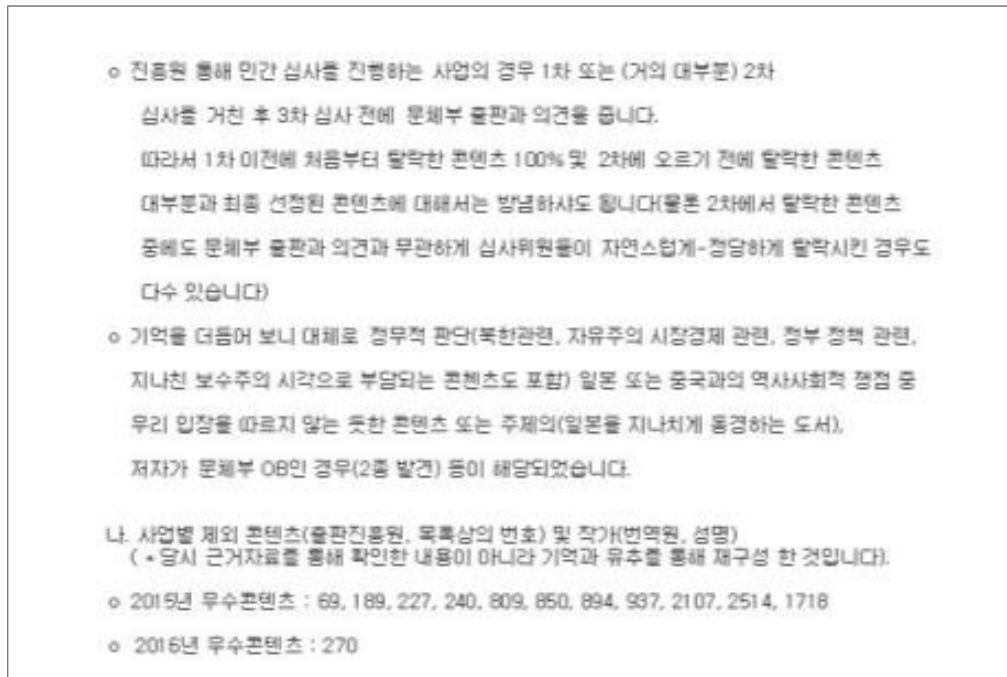
이OO 사무관이 법정에서 진술¹⁰⁾(조사기록 227쪽)한 김OO이 전달하였다는 출판사와 작가가 적혀있는 메모지에 대해, 김OO은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저쪽, BH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했습니다.’(조사기록 56쪽)라고 진술하였다.

10)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형사항소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이OO 녹취록 35p

(4) 출판인쇄과장 김OO이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 지시한 도서 목록

김OO은 2018. 1. 29. 위원회에 “사업별 제외 콘텐츠 및 작가 (당시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억과 유추를 통해 재구성 한 것입니다.) ○ 2015년 우수콘텐츠 : 69, 189, 227, 240, 809, 850, 894, 937, 2107, 2514, 1718, ○ 2016년 우수콘텐츠 : 270”의 내용을 [그림2]와 같이 메일(조사기록 221쪽)로 송신하였다. 2015,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상정목록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9, 이혼추진위원회, 정연철¹¹⁾ / 189, 전선일기, 안재성 / 227, 세계를 매혹시킨 태극기, 이현표 / 240, 낫선 식민지 제주, 김동현 / 809,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김세연 / 850, 혁신가 경제학, 이일영 / 894,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명월관, 신현규 /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박계리 / 2107,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 이민 김주희 / 2514, 남북의 연구자가 함께 만든 북한사회의 이해, 정일영 정대진 김혁 이혜란 / 1718, 가을방학, 이혜진 / [2016년]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상, 원용찬’으로 확인되었다.

[그림-1] 김OO이 위원회에 송달한 메일 중,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 배제 지시 메일 캡처



11) 연번, 제목, 작가명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연번은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심사목록표에 기입된 연번임.

(가) 189번 전선일기, 작가 안재성

‘189번 전선일기’의 작가 안재성은 강원대학교 재학 중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제적되었다. 1983년부터 10여 년간 구로공단, 청계 피복노동조합, 강원도 탄광지대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다시 구속되었다. 1989년 장편소설 『파업』으로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사랑의 조건』, 『황금이삭』, 『경성트로이카』 등의 장편소설과 『이현상 평전』, 『박헌영 평전』, 『이관술』 등의 인물 평전과 『청계피복노동조합사』 등 역사 다큐멘터리를 집필하였다.¹²⁾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15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3점, 계 78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작 4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나) 240번 낮선 식민지, 제주, 작가 김동현

‘240번 낮선 식민지, 제주’는 글누림 출판사를 통해 2016. 3. 28.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식민지 시기, 해방기와 전쟁기를 통해 외부에서 바라본 제주에 대해 다루며 한편으로는 내부자의 시선도 함께 그 자리에 놓는다. 구체적인 사건과 텍스트를 통해 제주를 바라보기도 한다. 지난 한 세기동안 제주는 수많은 주석을 달았다. 제주의 특수성을 보는 계보학적 탐구와 제주 4·3과 같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이 큰 즐거움을 두는 가운데 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외부, 즉 내부 식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제주를 바라보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기록¹³⁾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15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0점, 계 7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도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12)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6029993&orderClick=LAG&Kc=>

13)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63273358&orderClick=LAH&Kc=>

(다) 809번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작가 김세연

‘809번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는 글라이더 출판사를 통해 2016. 3. 25.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위대한 인문·고전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인식을 깨우는 「10대에 마주하는 인문 고전」 시리즈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마르크스의 사상과 《자본론》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기록¹⁴⁾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20점, 우수성 18점, 완성도 22점, 가산점 0점, 계 8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4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라) 850번 혁신가 경제학, 작가 이일영

‘850번 혁신가 경제학’은 출판사 창비를 통해 2015. 9. 11. 출간되었으며, 작가 이일영에 대한 소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창작과비평』 『동향과 전망』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안적 지역경제 모델로 ‘한반도경제론’을 제기하고 연구하는 한편,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록¹⁵⁾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15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10점, 완성도 20점, 가산점 10점, 계 7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1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마) 2718 수요시위 갈래요, 작가 윤미향

김OO은 배제 지시 목록으로 ‘1718 가을방학’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배제 지시 목록과는 달리 ‘1718 가을방학’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며, ‘2718’의 경우 ‘수요시

14)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6510131&orderClick=LAH&Kc=>

15)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36485993&orderClick=LAH&Kc=>

위에 갈래요, 윤미향’은 2차 심사까지 통과된 점, 위안부 문제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다뤄진 점 등 김OO이 언급한 배제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미뤄, 2718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718, 수요일에 갈래요’는 출판사 사이행성을 통해 2016. 2. 3.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고 희생된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스런 증언들은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어야 하는지 되새기게 만든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뼈아픈 역사부터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그리고 기나긴 침묵을 깨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나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아픈 역사에 대해 이 책은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작가 윤OO에 대한 소개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일을 개최하고 있다. 1992년 정대협 결성 초기부터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 증언을 녹취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 유럽 연합 의회와 미국 하원 등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섰고, 시민들과 함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건립했다. 2011년 12월 14일에는 천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건립했다. … 그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오늘도 수요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록¹⁶⁾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10점, 계 8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도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후보7로 선정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바)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향, 작가 원용찬

‘270,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향’는 출판사 인물과사상사를 통해 2016. 9. 23. ‘빵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 소개에 ‘탐욕과 부패가 만연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첨예한 가운데, 저자는 ‘빵’으로 상징되는 생명을 화두로 자본

16)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716906&orderClick=LEB&Kc=>

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역사와 문학, 사상과 철학, 과학까지 아우르며 인류가 거쳐온 경제사상의 다양한 모습을 살핀다. 그 면면은 카뮈나 톨스토이 같은 문학가, 칼 폴라니나 존 러스킨 같은 사상가, 햄릿과 로빈슨 크루소 같은 문학 속 인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 애덤 스미스와 소스타인 베블린, 존 메이너드 케인스, 헨리 조지, 프랑수아 케네, 아마르티아 센, 토마 피케티 같은 경제학자를 넘나든다. 심지어는 양자역학을 통해 호혜와 증여의 경제를 논하기도 한다.’라고 기록¹⁷⁾되어 있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결과 완성도 25점, 집필의도 20점, 참신성 10점, 우수성 20점, 가산점 0점, 계 7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사) 기타 배제 지시 목록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2107,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는 모두 북한을 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937,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 감상’은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15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15점, 가산점 0점, 계 70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후보작 5로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비선정되었다. ‘2107,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는 1차 심사결과 출간의의 20점, 참신성 20점, 우수성 20점, 완성도 25점, 가산점 10점, 계 95점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는 선정되었으며, 3차 심사에서는 후보6으로 선정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라. 김OO의 진술과는 상반된 관련자들의 진술

(1) 문체부 사무관 이OO의 진술 (2018. 3. 5. 진술서, 조사기록 265쪽)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근무하며, 출판진흥원의 출판진흥본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OO는 세종도서 관련 건 이외의 출판진흥원 지원 사업에 대해 특정 도서 및 작가에 대한 지원 배제, 선정 요청 등의 업무 지시를 한 바가 없으며,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배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OO 과장이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과 문체부의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 사무관, 주무관에게 발송한 메일에 대해서도 이OO는 “이에 관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17)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9064106&orderClick=LAH&Kc=>

(2) 출판진흥원 사업담당자 000 진술(2018. 2. 21. 진술조서)

출판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담당자 000은 문체부 출판인쇄과로부터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접수목록을 비롯하여, 1, 2차 선정 목록 등을 문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으며, 팀장이 최종적으로 3차 선정된 결과를 문체부 사무관과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콘텐츠진흥팀의 경우, 사업 담당자들이 (문체부) 사무관과 업무 연락을 주고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00 과장을 비롯한 문체부로부터 특정 도서의 선정 및 배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으며,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라는 의견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정부 시책에 반하는 원고나 기획안은 선정해도 되는 건가 하는 스스로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00의 진술(2017. 12. 21. 진술조서, 2018. 02. 21. 진술조서)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담당하는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00은 '우수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에도 원고나 기획안으로 접수가 되니까 이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인지 배제지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특정 도서의 배제나 선정 등의 요구를 받은 바도 없으며, 김00이 배제 지시 목록이라며 메일에 적시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배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탈락한 도서가 좋은 책(이달의 읽을만한 책) 선정 사업에서 선정될 수도 있냐는 물음에 대해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가 없는 상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원고가 완성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책 선정 사업과의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의 2차 선정 결과와 최종 선전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4) 출판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N의 진술(2017. 11. 07. 진술조서, 조사기록 4쪽)

출판진흥본부장 N은 ‘진흥본부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문체부 출판인쇄과의) 검토를 받은 이후에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OO 과장이 온 이후부터 치밀하고, 집요하게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검토하는 등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N은 2018. 2. 1.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아야겠기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조사기록 223쪽)라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세종도서 관련 진상규명사실

가.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자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이후,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이 차례로 생산되었는데,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한국의 위 보도에 대하여 문체부가 청와대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편향 논란에 따라 해당 사업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란이 되었던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특히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심사위원 구성 및 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관리 및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심사절차도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2015. 1.경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우수도서 선정취소 사건

2013년에 우수도서로 선정된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4년 말 저자 신은미가 통일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이를 소위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여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해당 저자의 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되며 2015. 1.경 해당 책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결정이 취소된 사건은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소영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91-92쪽),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16쪽),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세종도서 사업에서 도서 선정 과정에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걸러내기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나.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1)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① 청와대의 문체부에 대한 세종도서 관련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및 2017. 5. 1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소영에 대한 2017.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및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김상률에 대한 2017. 6. 2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를 통해, ② 청와대의 문체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및 문체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의 경위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김종덕 2017. 6. 19.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김OO 관련 2015. 3. 30.자 메일 및 2017. 12. 15.자 본인 작성 진술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16)” 문건을 통해, ③ 문체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및 출판진흥원 내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전반적인 경위는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및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과장과 이OO 사무관은 세종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인 출판진흥원 N, 유OO에게 세종도서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김OO 행정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청자 명단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 명단을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를 자신의 상급자인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김소영 비서관은 이를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하고 정무수석실에 검토를 받아 다시 이를 문체부에 하달하였고, 문체부는 이 배제명단을 출판진흥원에 하달하여 특정 도서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였다. 또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과장은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에게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고, 이에 출판진흥원 담당자들은 심의과정에서 배제 지시가 하달된 대상 도서에 대한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배제를 유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와대-문체부-출판진흥원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관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좌성향 및 반정부적인 도서를 거르기 위해 세종도서의 심사방법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 2014, 2015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가)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 관련

1)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11. 4.자) 참고자료,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및 N 2017. 5. 12.자 증인신문 녹취서(김기춘 외 3인 1심 공판기록),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는 출판진흥원 유OO 팀장에게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2차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에 송부한 후 검토결과를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의 참고자료에 정리하여 출판진흥원 유OO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유OO은 자신의 상급자인 N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판진흥원 N, 유OO은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서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학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보고를 문체부 이OO 사무관에게 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출판진흥원 N, 유OO은 2014년도 세종도서 3차 최종심사에 참석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거나 문학의 치유기능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책을 선정해달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책을 공공도서관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심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며, 출판진흥원 N과 유OO은 이 정도의 완곡한 발언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이 해당 발언의 목적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출판진흥원 내에서 블랙리스트 경위를 파악하였다.

(나) 2015년 세종도서 ‘문학부분’ 선정 관련

- 1) 유OO 2017. 4.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특정 도서 배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5년 세종도서 사업의 최종 선정결과 공고가 지연되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허형만의 「가벼운 빗방울」, 서성란의 「침대 없는 여자」에 대하여 배제지시가 하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문체부 김OO 과장이 출판진흥원 N 본부장에게 재심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면서 선정결과 공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관련

유OO 2017. 1. 5.자 특검 진술조서(N 대질), 2017. 1. 5.자 특검 진술시 유OO이 제출한 엑셀자료에 따르면 2차 통과 도서들 중 문체부 이OO로부터 배제지시가 하달된 도

서들에 대하여 유OO이 자신의 엑셀자료에 “3차 회의에서 비선정 유도”라고 기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N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교양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문체부 이OO 사무관이 세월호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5년 교양 부문에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고 최종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도서들 중 <잊지 않겠습니다>는 416 가족협의회가 만든 책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 그림과 가족들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편지글은 모은 책이었으며, 이진경의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파농> 또한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선정 관여 여부

세종도서 선정과정에서 ‘문학’ 부문의 경우 심사위원추천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따르면 심사위원 추천 후보자 명단 또한 문체부 이OO 사무관은 청와대에 송부한 적이 있고 청와대에서 당시 10여 명 정도의 후보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작동 배경으로 지적되는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5. 1.경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우수도서 선정취소 사건 및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념편향 도서를 제외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일련의 기재들을 통해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검토 및 배제지시 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마) 배제기준

참고인 김OO의 진술(2018. 1. 11.자 진술조서), 김소영에 대한 2017. 1. 13.자 특검 피의자신문조서(3회)(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이OO 2017. 1. 4.자 특검 진술조서

(김기춘 외 3인 1심 증거기록), 참고인 김OO의 진술(2017. 12. 21.자 진술조서), 참고인 N의 진술(2017. 11. 7.자 진술조서), 참고인 유OO의 진술(2017. 12.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세종도서 사업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배제 대상의 선정기준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문인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반대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 활동에 참여한 문인들 및 문재인 지지선언 참여 등과 같이 당시 야당인사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문인들이 주로 배제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이 세종도서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해 배제된 사실

신청인의 작품 ‘꿈결에 시를 베다’가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에서 탈락하였다. 김기춘 외 6인 2심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4의 ‘12 / 2015년도 / 시 / 꿈결에 시를 베다 / 실천문학사 / 손세실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청와대, 문체부, 출판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관련 진상규명 사실

가.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의 배제 지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은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을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 주무관을 비롯하여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들의 선정 결과에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의 2차 선정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하였다.

2차 선정 결과를 검토한 김OO은 1)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2)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3)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4) 국내 유관사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5)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6)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7)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의 기준과 북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부 정책, 지나친 보수주의 시각,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 사회적 쟁점 중 우리 입장을 따르지 않는 듯한 주제, 저자가 문체부 출신인 경우 등의 자의적인 기준을 준용하여 특정 도서

배제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정연철의 이혼추진위원회, 안재성의 전선일기, 이현표의 세계를 매혹시킨 태극기, 김동현의 낮선 식민지 제주, 김세연의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이일영의 혁신가 경제학, 신현규의 기생과의 만남 그리고 명월관, 박계리의 작품으로 본 북한미술감상, 이민 김주희의 평양 서울 - 두 도시 이야기, 정일영 등의 남북의 연구자가 함께 만든 북한사회의 이해, 윤미향의 수요시위에 갈래요와 2016년 원용찬의 자본주의 너머의 경제사학' 등의 응모작에 대해 배제를 지시하였으며, 각각의 응모작들은 후보작으로 처리되거나, 비선정 되어 최종 제작 지원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담당한 문체부 이OO 사무관, 출판진흥원 사업 담당자 OOO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진술하고,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장 유OO은 세종도서와 달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는 배제 지시가 없었다며 김OO의 진술과는 상반된 내용을 진술하였다. 김OO의 배제 지시를 직접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판진흥원 출판진흥본부장 N은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나, 당사자인 김OO이 자신의 행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진술 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김OO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미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 지시를 하였다라는 김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김OO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2차 선정 결과 중 특정 응모작을 탈락시키기 위한 배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 되었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눈에 밝히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하였으나, 1차 심사 통과 후 2차 선정 과정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김OO이 언급한 배제 목록은 2015년과 2016년 목록으로,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심사 과정에서 배제 지시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출판진흥본부장 N은 김OO 과장 부임 이후부터 문체부가 출판진흥원의 사업들을 관리하고 검토하였다는 진술, 2015년 3월 30일에 관련 기록 등을 문체부에 검토하라는 김OO의 업무 지시 메일 이전에 신청인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점,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에서의 배제 지시는 없었다는 이OO 사무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인의 작품 '눈에 밝히다'의 2차 탈락 결과가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따른 탈락인지의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다.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

김OO이 배제 지시한 작가들 중 위원회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작가는 안재성(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4,110명)이 유일하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청와대, 국정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가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적용, 실행되었다는 관련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여타의 기관과 사업에서 정부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시행하였던 점,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작가와 도서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김OO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OO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자신이 관장하는 출판진흥원의 지원 사업 등에서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를 적용, 실행한 사례라 판단된다.

3.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세종도서 관련 추가 조사 필요

- (1) 문체부 실국장 및 장차관, 출판진흥원장 및 사무처장 등 출판진흥원 내 상급자, 세종도서 심사위원들이 인지 및 가담 여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
- (2) 출판진흥원 유OO, N 등 세종도서 사업 담당자들은 2014~2015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100여 건에 가까운 배제지시가 문체부로부터 하달되어, 이에 대한 내용검토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을 막아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① 해당 사업에 실제로 하달된 배제지시 건수 및 ② 출판진흥원 해당 사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3) 문체부 이OO 사무관과 청와대 김OO 행정관은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와 관련하여 검토 및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4) 문체부 이○○ 사무관이 작성한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문건에 학술, 교양 부문에 대한 문제도서 발견 및 심사위와 협의 하에 제외 등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대로 보고용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나.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여부 조사 필요

N의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014,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담당 대리였던 ○○○는 퇴직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2014년에도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서 배제가 진행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8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68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출4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신청인, 책사회)은 2013년 우수도서 문학나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책사회의 대표 사업인 ‘북스타트 사업’을 2003년부터 진행해왔으나 2015년에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주체가 바뀌며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이후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게 되었다. ‘북스타트’와 같은 내용의 사업임에도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내 생애 첫 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진행해오던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2015년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주체가 바뀌는 등 책사회에서 진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되거나, 공모사업을 전환되는 등 사업주관 단체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내 생애 첫 책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북스타트 사업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책사회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단체로 등재된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신청인이 진행하던 우수문학도서가 출판진흥원 세종도서로 통합, 이관된 경위

2013. 10. 20. 언론에서 북한을 미화하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도서가 신청인이 주관하는 2013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었다고 보도된 이후, 문체부 장관 유진룡은 문체부 실무자들과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책사회가 좌파 문인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도 균형적이지 못하므로, 주관 사업자를 출판진흥원으로 교체토록 지시하였다.

그 이후 2014. 2. 18.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논란 관련 보도 이후,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등의 문건에 따라 ‘이념편향적 도서’를 관리 제외하기 위해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심사위원 구성 및 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수도서 명칭을 세종도서로 변경하고,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을 통합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신청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된 경위

2014년 초, 청와대는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15년 2월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하며, 관련 사업들의 예산 지원 방식 및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 등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진행하는 북스타트 사업과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등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되게 되었으며, 북스타트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확인되었다.

(3) 내 생애 첫 책 사업에서 신청인이 탈락한 정황

2015년 출판진흥원은 북스타트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서, 사업 명칭을 ‘내 생애 첫 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다. 신청인과 국민독서문화진흥회 등이 접수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신청인은 탈락하였다.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탈락한 정확한 사유를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청와대를 비롯하여 문체부에서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단체로 낙인되어 있던 상황과 청와대, 문체부 등에서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진행 사업을 이관 시켰던 정황, 그리고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서 조차 재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정도로

2003년부터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의견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붙임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출4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신청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사무처장 안찬수)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의 취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신청인, 책사회)은 2013년 우수도서 문학나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책사회의 대표 사업인 ‘북스타트 사업’을 2003년부터 진행해왔으나 2015년에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주최가 바뀌며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이후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게 되었다. ‘북스타트’와 같은 내용의 사업임에도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내 생애 첫 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진행해오던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2015년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주최가 바뀌는 등 책사회에서 진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되거나, 공모사업을 전환되는 등 사업주관 단체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내 생애 첫 책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북스타트 사업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책사회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단체로 등재된 때 문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2. 조사 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 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 결정 등)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5일 제21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① 신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② 문학나눔,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등 책사회 주관 사업들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된 경위 ③ 내 생애 첫 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	문예6-5 리스트 - '16. 2. 1. 현재	오OO		
3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	김OO, 오OO		
4	국정원 2013. 11. 1. 보고 문건	국정원		
5	2013. 10. 20. “북한 정권 옹호 책이 우수문학 도서?”	뉴포커스		
6	2013. 10. 21. “북한정권 옹호’ 책이 문광부 ‘우수도서?’	뉴데일리		
7	2014. 2. 18.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한’ 교양도서 목록”	미래한국		
8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이OO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9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2014. 2. 21.자)	문체부 출판인쇄과		
10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2014. 2. 28.자)	이OO		
11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2014. 10.)	문체부		
12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13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2. 25.	문체부		
14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2. 25.	문체부		
15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4. 20	문체부		
16	2013년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17	김OO이 2015. 3. 30. 출판진흥원 본부장들에게 발송한 메일	김OO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안찬수	책사회 사무처장(신청인)	신청인 진술녹음 보고
2	하OO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사무관	참고인 하OO의 진술 (2018. 3. 14. 진술조서)
3	OOO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주무관	참고인 OOO의 진술 (2018. 3. 7. 진술조서)
4	배OO	출판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	참고인 배OO의 진술 (2018. 3. 9. 진술조서)
5	김OO	출판진흥원 독서진흥팀장	참고인 김OO 진술 (2018. 3. 8. 진술조서)
6	김OO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참고인 김OO 진술서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책임는 사회문화재단

모든 시민이 정보와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기반과 기회 확대 기여를 목적으로 2003. 8. 19.에 설립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사업, 북스타트, 공공도서관 수탁 운영 사업, 학교도서관 민영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인회의와 함께 책임는사회만들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수 도정일이 대표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재단법인으로 담당부서는 인문정신문화과이다.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¹⁾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²⁾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7월 27일 개원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통계 작성,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사업

출판 및 국민독서 진흥을 위해 최근 1년간 신규 출판 도서를 대상으로 국민권장도서 선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선정 도서를 1만권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아동 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공공, 복지시설 중심으로 배포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진행되었다. 우수학술도서, 우수교양도서, 우수문학도서로 구분하여 선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학술과 교양은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였으며, 우수문학도서는 2012년까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13년에는 우수문학도서는 책사회에서 주관하여 선정 및 보급을 담당하였다. 2014년부터 세종도서 선정 및 보급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라. 북스타트 사업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영, 유아들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3년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되었다. 책사회에서 주관하며 전국의 143개 지자체(2015년 기준)가 동참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매해 2억 ~ 5억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 신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신청인은 위원회 확보자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6쪽에 ‘32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북스타트 등 독서진흥사업 / 1,225 / 1,070 / ·도정일 이사장 - 문재인 맨토단 참여, ·책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 도정일, 박원순, 진중권 등 공조 / 지원배제’와 ‘37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우수문학도서보급 / 3,930 / - / ·도정일 이사장 - 문재인 맨토단 참여, ·책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 도정일, 박원순, 진중권 등 공조 / 지원배제’라고 등재되어 있다.

구분	단체명	공모전 및 폐선소개회	예산	실액	비고	지원배제
문화체육관광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북스티브 등 독서진흥사업	1,225	1,070	• 도정일 이사장 - 문재인 연토단 참여, 책 쓰기민주주의를 말한다 모임, 박현순, 진중권 등 공역	지원배제
	(재)마포문화재단 (김보성)	문화정책 연구회 및 운영사업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5	-	경남도지사가 경남문화재단 추진총원장에 임명. 총근로자 단추를 해당단체에서 발급. 민중기묘의 노래를 찾는 사람들 대표출신	지원배제
	강릉씨네마테크 (권정삼)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조건부기부금)	11	-	단체를 이끄는 박경수 사무국장이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지원배제
	미디어트	2013 토요일미디어문화학교 <출발! 청소년 미술 여행>	10	-	사정차추진위원 김해준이 광화문에 만든 대표적 미디어센터 학생대상으로 많시즘 교육을 하는 영상교육기관 역할	지원배제
	미디어트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 지원	-	15		지원배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우수문화도서보급	3,930	-	• 도정일 이사장 - 문재인 연토단 참여, 책 쓰기민주주의를 말한다 모임, 박현순, 진중권 등 공역	지원배제

또한 위원회 확보자료 '문예6-5 리스트 - '16. 2. 1. 현재' 14쪽에 '㉔ 기존관리 리스트 -149명'의 '공연과 관리(중요) - 79명 / ㉕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역문화재단 (13년 10월경) - 5명	㉑극단 이루(손기호), ㉒인디고서원, ㉓일상예술창작센터(최희진), ㉔제주장애인인권포럼(고현수), ㉕조은컴퍼니(김계훈), ㉖창비, ㉗책읽는사회문화재단, ㉘천년의시각, ㉙퍼주북소리조직위원회, ㉚한글문화연대 ㉛인권문화재단: 민예총 출신 강광 임명 -> 낙하산 서울문화재단
------------------------	--

또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작성한 후 2015. 7.경 오OO에게 인계한 문건 'Oh & Kim' 블랙리스트 명단³⁾에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3)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작성한 후 2015. 7.경 오OO에게 인계한 문건으로, 특검 작성의 오OO에 대한 2016. 12. 27. 진술조서 제16쪽



3. 우수문학도서 사업 관련

가. 우수문학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이관 지시

(1) 2013. 2. 인터넷 뉴포커스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3. 10. 20.경 인터넷 언론 뉴포커스는 ‘북한 정권 옹호 책이 우수문학도서?’ 제목의 기사⁴⁾를 보도하였다.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는 신은미의 도서가 문체부의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북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하여, 북한 정권을 교묘히 옹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13. 10. 21. “재미동포 여성의 ‘선전용 관광기’를 문광부는 읽어봤나? ‘북한정권 옹호’ 책이 문광부 ‘우수도서?’만 바꾼 같은 기사가 뉴데일리에 보도⁵⁾되었다.

2014. 2. 18.경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체계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⁶⁾

4) 뉴포커스, “북한 정권 옹호 책이 ‘우수문학도서?’” - 서영석 기자

<http://www.newfocus.co.kr/client/news/viw.asp?cate=C02&mcate=M1001&nNewsNumb=20131010894> (접속일자 : 2014. 2. 18.자)

5) 뉴데일리, “재미동포 여성의 ‘선전용 관광기’를 문광부는 읽어봤나? ‘북한정권 옹호’ 책이 문광부 ‘우수도서?’” - 서영석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3/10/21/2013102100070.html> (접속일자 : 2014. 2. 18.자)

6) 미래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한’ 교양도서 목록”, 2014. 2. 18.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4> (접속일자: 2018. 4. 20.)

(2) 국정원 2013. 11. 1. 보고 문건

문체부장관,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左편향 배제 지시

2013. 11. 1

1. 유진룡 장관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저자 : 신은미) 제하 北韓을 미화하는 서적이 우수문학 도서에 선정되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우수문학도서 선정기준 및 주관부서를 변경, 관리를 강화하라'고 각별 지시

해당문건은 문체부에서 유진룡 장관과 실무진이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을 국정원이 2013. 11. 1.경 보고서로 작성한 문건이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도서가 논란이 되자, 유진룡 장관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문학계 좌파인 '작가회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정심사위원들도 좌파 작가들이 많아 균형적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4년부터 업무를 미디어정책국으로 넘기고, 책사회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교체토록 지시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 4) 앞으로 이념성향 스크린 및 도서지원 사업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출판인쇄산업과에서 同 문학나눔사업을 우수 교양·학술 도서 보급사업과 통합하여 처리하게 되면
- 5) 지금과 같은 문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도종환 의원을 포함 「작가회의」 소속·출신 등 左派 작가들이 정부 견제에 반발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실무진에서는 '앞으로 이념성향 스크린 및 도서지원 사업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문학나눔사업을 우수 교양, 학술도서 보급사업과 통합하여 처리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며 '도종환 의원을 포함한 작가회의 소속, 출신 등 좌파 작가들이 정부 견제에 반발할 소지가 높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나. 2014. 2. 18.자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논란

(1) 2014. 2.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2014. 2. 18.경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세계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⁷⁾

7) 미래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한’ 교양도서 목록”, 2014. 2. 18.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4> (접속일자: 2018. 4. 20.)

(2)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2014. 2.)

미래한국 기사관련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의견>	
①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 ② 기자가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	
1. 체 계나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 _ 최광현 글, 오동 그림/ 판유리북스	
기자의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조망함으로써 독자에게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 ■ 책의 일부분에 쿠바경제가 정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고 표현하여 쿠바 경제를 미화
다 언론사 추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신일보) ‘체계나라와 탈탈라 라틴아메리카’는 조금 다르다, 실존 인물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그 인물의 전기를 따라가 재미와 감동을 생성하게 전달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길을 보면) 라틴아메리카를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의 눈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 반미 서적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책의 속을 보면)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사회, 문화 등에 관해 어린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야기로 구성하여 소개한 책 <p>- 기자의 시각에는 책이 쿠바 경제를 미화하고 있다고 보나, 책의 앞뒤를 읽어 보면 쿠바경제가 국민의 정의성, 의지, 자발적 노동력으로 지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로 쿠바는 나라 안에서 국민 스스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미</p> <p>- 기자의 시각에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해 반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p>
2. 나는 빈 리벤이 아니에요 _ 페르나르 샹마스 지음, 알렌희 옮김/ 조목개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책을 ‘반미주의 동화책’으로 규정짓고, “다문화에 대한 오용력을 강조하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도드라진다”

해당 문건은 2014. 2.경 미래한국 기사가 문제가 되면서 청와대 해명용으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미래한국 기사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① 미래한국 기자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관점에서 책을 평가하고, ②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 이야기를 재구성한 측면이 많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문건은 당시 미디어정책관 박OO, 출판인쇄산업과장 정OO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에서는 미래한국에서 보도한 도서에 대한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⁸⁾

(3)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2014. 2. 21.자)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 우수도서 심사·선정 문제

□ 논란 사항

주간지 미래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미래한국 거론 서적 사례>

- ① 청소년에게 반미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채계바라와 팔팔라 리턴아메리카(서울대 최광열 작)
- ② 민주노총 김진숙 씨의 추천사를 받은 “비정규직 출근 하세요(어린이책 작가모임 작)”
- ③ 김일성 중심의 일제 항거를 담은 한국의 레지스탕스(조한성/진일반민족신상규명위원회)
- ④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책(“고장난 거대기업”,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등”)

□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위 미래한국 보도 논란과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비서 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미래한국의 보도와 그 무렵 예술위의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제 삼은 국정원의 문건 등에 관하여 문체부 당시 유진룡 장관이 2014. 2. 21.경 김기춘에게 대면보고 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중 도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간지 미래한국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이에 논란이 된 도서의 선정 경위를 보면 이념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러지지 않은 측

8) 이OO 2017. 5.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6쪽(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공판기록).

면이 존재하므로, 향후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련자 징계문제도 검토”하고,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 2013년 하반기 우수도서가 이념편향 논란이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며 따라 개선책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1. 중점 검토

- 우수도서 선정 과정·결과를 둘러싼 외부 영향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 재점검
- 사업의 명칭·시행 주기, 도서선정 방법 재검토

이후 문체부 이OO 사무관 등은 2014. 2. 28.경 유진룡 장관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위 보고의 요지는 ①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 ② 선정시스템 개편·강화로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는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각 심사, ③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강화로 이념편향 도서가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 이념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우수도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설치, 기타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 문체부 작성,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2014. 10.)

<< 미디어 >>

□ 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방안

○ 추진현황 (한국출판진흥원 주관)

- (선정분야) 교양(400종), 문학(600종), 학술(330종)의 3개 분야
- (선정시기) 상반기 학술분야(6월), 하반기 교양 및 문학 선정(11월)
- (선정방법) 사업공고 → 도서접수 → 심사위원 위촉 → 심사(3차)·선정 → 도서 배포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약 6,000개소)

◆ 우수 도서 선정 기준

- ① 출판 기획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며 내용이 충실한 도서
- ② 인문학 등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
- ③ 민족문화 및 발전적 세계관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도서
- ④ (문학 분야의 경우) 우수문학의 진흥 확대에 기여할 작품

※ 역사왜곡,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도서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

○ 개선방안

< 단계 >	< 주요 대응전략 >
도서접수	(출판사) 온라인 신청 → (출판진흥원) 접수 및 도서 개요 정리, 특이사항 점검
심사위원 위촉(75명)	후보자 검토 강화(출판산업진흥원, 관계기관 공동)
심사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10개 분과, 25개 소위, 소위원 3명) 분과위원회 구성 (10개 분과, 분과별 평균 7~8명) → 출판산업진흥원 균형적 시각의 인사를 분과장으로 지정 선정위원회 구성 (10명 내외, 각 분과장 참여) → 출판산업진흥원 균형적 시각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지정
심사 및 선정(45일) *(1차) 소위원회 → (2차) 분과위원회 → (3차) 최종 선정위원회	(1차) 선정목표의 300% 2차 상정(15일 심사) (2차) 선정목표의 200% 3차 상정(20일 심사) (3차) 선정위원별 검토후 회의에서 최종확정(약 10일) → 도서 결격사유(저작권위반, 출판사별 선정 총량 초과, 용성 등이 뒤겨 국민에게 권장하는 것이 부정확한 도서 등), 점검시 정치편향 도서는 선정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 비공식 의견 제출

김종덕 장관이 2014. 10.경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 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보고서와 함께 2014. 10. 21.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였는데 그 중 세종도서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중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미래한국의 보도) (사례)’,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문제점)’,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개선방안)’ 등이다(111쪽).

4. 책사회가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조정 관련

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김기춘은 2014. 초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4. 4.경부터 국민소통, 교육, 문화체육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해당 TF의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9)

4쪽에 “조치가 필요한 부처”로 문체부가 언급되면서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이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 ⇒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 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라 언급되어 있다.

구분	단체명	공모전 및 피선소개회	10	11	12	비고	지원배제
32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북스타트 등 독서진흥사업	1,225	1,0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정일 이사장 - 문제인 연토단 참여, 책 쓰기 이벤트를 앞둔 도정일, 박완순 진영진 등 공저 	지원배제
33	문화체육관광부	(재)마포문화재단 (김보성)	문화진흥 연구회 및 운영사업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보성 대표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경남문화재단초지총원장에 임명, 홍준표가 당선 후 해임하면서 법적공란. 민중모과 노래를 찾는 사람들' 대표출신 	지원배제
34		강릉씨네마데고 (권정삼)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조건부기부금)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를 이끄는 박광수 사무국장이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지원배제
35		미디어액트	2013 토요일(어)문화학교 <출발! 청소년 미술 여행>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정치추진위원인 김해준이 김화문에 만든 대표적 미디어센터. 학생상으로 당시즘 교육을 하는 영상교육기관 역할 	지원배제
36		미디어액트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 지원	-	15		지원배제
37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우수문화도서보급	3,9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정일 이사장 - 문제인 연토단 참여, 책 쓰기 이벤트를 앞둔 도정일, 박완순 진영진 등 공저 	지원배제	

9)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7쪽.

또한 신청인이 언급된 부분은 첨부 일람표상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중 문체부 부분 ‘연번 32번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북스타트 등 독서진흥사업 / 2013년 1,225 / 2014년 1,070 / ·도정일 이사장 - 문재인 멘토단 참여·책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 도정일, 박원순, 진중권 등 공저 / 지원배제’와 ‘연번 37번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우수문학도서보급 / 2013년 3,930 / 2014년 - / ·도정일 이사장 - 문재인 멘토단 참여·책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 도정일, 박원순, 진중권 등 공저 / 지원배제’라 기재되어 있다.¹⁰⁾

나.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서 책사회 관련 논의

(1)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2. 25.)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보조사업 조정(안) 관련,

- (단체조정)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관
- 지역 독서활성화를 위한 출판진흥원 ‘독서대전’ 사업과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연계 추진, 프로그램 질 제고와 참여 확대
- (사업 및 예산 조정)

(단위 : 백만원)

보조단체명	사업명	'14예산	'15예산	비 고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북스타트 지원	500	500	
	○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400	400	
	○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지원	170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
	계	1,070	900	▽ 170

2015. 2. 25.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2. 25) 문건에 신청인이 진행하고 있던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내용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보조사업 조정(안) 관련, - (단체조정) 하며, 2014년에 1억 7천만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이라 기록되어 있다.

10) 위 판결문 8쪽.

(2)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

-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이하 책사회)' 예산지원 방식 변경
 - '14년 10.7억원을 지정 보조사업으로 지원(북스타트 5억원,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4억원, 기타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1.7억원)
 - '15년 국고보조금 지원방식 변경(모든 보조사업 공모사업 원칙)에 따라 책사회 지원예산도 공모 전환 추진
- ☞ (추진방향)
 -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 대상 순수 독서진흥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책사회 재선정 가능)
 -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책사회가 한국일보사와 공동추진을 협의 중인 사업으로 이념편향성 등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공모 시 공공성을 보다 고려해서 사업자 재선정

2015. 3. 16.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3. 16.)에는 신청인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변경에 대해 2014년 10억 7천만원 지정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모든 보조사업 공모사업 원칙에 따라 2015년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변경하고, 신청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공모로 전환 추진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북스타트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독서동아리 사업은 이념 편향성 소지가 있어 사업자 재선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4. 20.)

□ 주요 논의사항

- (문화기반)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280개 도서관 선정 완료, 감사 리스트 점검 완료, 이상 없음
 - 책사회 '북스타트' 사업 공모 추진 중

2015. 4. 20.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4. 20)에는 신청인의 ‘복스타트’ 사업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1) 참고인 하OO의 진술 (2018. 3. 14. 진술조서)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사무관으로 근무한 자로, 내 생애 첫 책, 독서동아리 사업 등 독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OO은 복스타트 사업과 독서동아리 사업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된 이유는 ‘2014년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출판진흥원, 책사회, 문화복지협의회,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등 4개 기관, 단체 등에서 독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으며, 독서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 중 국민독서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일원화하여 공공기관을 통해서 진행했어야 했기에 출판진흥원으로 전체 사업을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런 결정을 할 때 국장, 과장과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하였으며, 본인의 사업 방식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결정구조를 형성하였고, 출판진흥원, 책사회 등과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건전콘텐츠 활성화 TF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복스타트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는 BH의 지시가 김OO 행정관을 통해 내려왔으며, 그 시기가 2015년 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기재부의 보조사업 일원화 권고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동일한 진술들

OOO은 2013. 12. 경부터 도서관정책과에서 근무하다 2014. 2. 경 과 명칭이 변경되어 인문정신문화과에서 독서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주무관이다.

배OO은 출판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로, 내 생애 첫 책,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등 독서업무를 담당하였다.

김OO은 출판진흥원 독서진흥팀장을 하다가, 2016년 7월부터 독서진흥본부로 승격되어 본부장 직을 겸직한 자이다.

참고인 OOO의 진술 (2018. 3. 7. 진술조서), 참고인 배OO의 진술 (2018. 3. 9. 진술

조서), 참고인 김OO 진술(2018. 3. 8.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북스타트 사업의 주관이 출판진흥원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기재부가 보조금 사업들의 평가에서 사업을 일원화하고, 행사사업을 지양하라는 의견이 있어 출판, 독서 관련 사업이 진흥원으로 일원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김OO은 문체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출판진흥원에서는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배OO은 기재부의 의견 때문에 사업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며, 출판진흥원에서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3년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¹⁾에 따라 2013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진행하였다. 2013. 4. 1. ~ 6. 27 일정으로, 공OO¹²⁾을 단장, 윤OO¹³⁾을 행정간사로 하여 35인의 2013년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 중 ‘기관별, 사업별 평가의견서 - 문화체육관광부’의 5.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에 ‘1. 평가요약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평가되어 있으나, “3. 사업 내용, 추진 방식, 관리의 적절성” 중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업내용/방식 변경’에 ‘√’가 기입되어 있다.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13)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종합판정결과					
경상 추진	조건부 존치		폐지		
	단계적 감축	사업내용/방식 변경	즉시폐지 (차년도)	단계적폐지 (*해당연도표기)	통계합
		✓			
이 사업이 타부서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상호연계를 통한 통계합 혹은 사업방식 변경					

‘II. 평가 의견서’의 ‘4.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에 ‘② 정책 제언 ○ 이 사업은 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책임는 사회문화재단,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 문화복지협의회 등 네 단체가 수행하고 있음. 각각 전담하는 사업은 다르지만 독서진흥이라는 큰 틀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 어느 한 단체가 전담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봄“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북스타트 지원’의 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 신청인 책사회가 2015년 내 생애 첫 책 사업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경위

가. 내 생애 첫 책 사업 공모 과정

(1) 북스타트 명칭 사용 요청

출판진흥원에서는 내 생애 첫 책 사업을 준비하며 “북스타트 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 요청”[독서진흥팀-172](2015. 4. 30.) 공문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내용은 북스타트 지원 사업 명칭을 출판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였으나, 신청인 책사회가 이를 거부하여, 사업 명칭을 “내 생애 첫 책”으로 바꾸어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2) 공모 및 심사결과

출판진흥원의 “2015년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계획 보고”[독서진흥팀-308] (2015. 8. 12.)와 “2015년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수행 주관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 보고”[독서진흥팀-350](2015. 09. 11.), “2015년 <내 생애 첫 책> 지원사업 수행 주관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독서진흥팀-363] (2015.09.23.)를 통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내 생애 첫 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출판진흥원은 2015. 8. 13. ~ 8. 26. 공모 기간을 거쳐, ‘국민독서문화진흥회’와 ‘책사회’ 등 2개 단체가 접수하였다. 학계, 도서관, 언론, 독서, 출판 등 5개 분야 관련 전문가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5. 9. 15. 서울 용산구 소재 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심사 기준은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공공성, 추진의지 등 20점,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4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운용안정성 20점, 홍보계획의 구체성 20점 등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단체 중 최고점 단체를 선정기로 하였다. 심사 결과 국민독서문화진흥회 평균 90.6점, 책사회 84.8점으로, 주관 사업자로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선정되었다.

나. 북스타트 사업에 대한 출판인쇄과장의 개입 관련

문체부 출판인쇄과장 김OO은 2015년 3월 30일, 출판진흥원 본부장들과 출판진흥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사무관과 주무관들에게 [그림1]의 “제목 : 공모사업 등 관련(매우중요!!!)”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1. 세종도서 학술분야, 2. 월간 추천/권장도서(5월), 3.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4. 지역문화 출판콘텐츠 지원, 5. 한중 출판콘텐츠¹⁴⁾ 지원, 6. 전자책 제작지원(멀티미디어형, 수출전자책, 텍스트 형 3종), 7. 지역축제 연계 북콘서트, 8. 인문독서아카데미 및 북스타트(문화기반국 공조 사업이나 출판과와도 반드시 사전협의)”의 사업을 열거하며, “아래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결과 확정 전에 출

14) ‘한중 출판콘텐츠 지원’의 오기로 보임.

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중간 진행상황을 동 메일 수신자들과 수시 공유(전체답장 기능 등 활용) 바랍니다 (제게는 모든 관련 메일 송부 바랍니다).”와 “추후 진행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 메일 내용 중, “결과확정 전에 출판인쇄산업과 단위사업 담당관들과 미리 협의 및 문체부의 의견 반영 등을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문체부 의견을 제출하여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러하니, 이를 심사과정에서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라고 진술하였다.

김OO은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주무부서가 아닌 출판인쇄과에 보고, 혐의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과들끼리 횡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보를 교환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관련 특정 강연자나 도서에 대한 배제는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관련자 진술

(1) 참고인 하OO의 진술 (2018. 3. 14. 진술조사)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사무관으로 근무한 자로, 내 생애 첫 책, 독서동아리 사업 등 독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내 생애 첫 책과 북 스타트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이유는 사업 출판진흥원과 문체부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였고, 사전에 책사회 측과도 직접 만나 협의 과정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5년 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사업명칭, 단체들과의 협의, 공모 절차의 준비 등 실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늦어졌을 뿐, 다른 이유는 없으며, 내 생애 첫 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 구성 절차도 아는 바가 없고,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개입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책사회가 탈락한 것은 자료 제출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심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사 계획에 참석 예정이라 적시된 부분에 대해, 출판진흥원이 사후 승인을 받으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사업이 뒤늦게 추진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나쁜 평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책사회에서 민간단체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으므로, 국고지원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책사회에서 공문을 보내,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국고지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사업을 폐기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으

며, 차기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타 단체가 선정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과 책사회의 의견 수용 등을 이유로 인문정신문화과에서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예산은 다른 사업들 예산을 늘려 활용했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김OO 진술 (2018. 3. 8. 진술조서)

김OO은 출판진흥원 독서진흥팀장을 하다가, 2016년 7월부터 독서진흥본부로 승격되어 본부장 직을 겸직한 자이다.

- (가) 내 생애 첫 책과 북스타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측면은 많으나, 부모 독서 교육, 영유아 독서 정보 제공 등의 차별적이며 추가적인 내용이 내 생애 첫 책 사업에 포함되어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주관 사업자 선정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직접 교부하던 사업이, 출판진흥원을 통해 재교부해야 하다보니,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 민간 단체를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며, 책사회가 탈락한 것에 대해 당시 기억으로는 책사회의 자료 제출의 구체성이 떨어졌다고 느꼈으며, 책사회가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 등이 대상자였으며,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 문체부의 지시나, 구체적인 리스트는 없었으며, 문체부로부터 특정 단체를 선정, 탈락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2015년 내 생애 첫 책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았던 지방을 중심으로, 북스타트와 겹치지 않은 곳이 70%정도였으며, 부모들에게 진행한 독서 관련 교육의 평가도 좋았으나, 일부 도서관에서 북스타트와 중복, 혼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마) 내 생애 첫 책 사업의 폐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민간 차원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독서운동을 국고로 지원하는게 맞는거냐는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5년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끝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6년 독서 관련 예산이 20억 정도였는데, 해마다 예산 사용이 변경되어 왔으며, 내 생애 첫 책은 문체부 위탁사업으로 문체부와 수차례 업무 협의를 진

행하여 2016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이후 문체부와 조정 과정에서 2016년 독서 사업의 방향이 청소년 독서 권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교육부와 연계하여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덧붙여,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편하지만, 이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이었고, 책사회가 해왔던 사업과 중복이 되었던 부분, 사업이 늦게 추진되었던 부분, 현장의 혼란함 등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 (바) 심사 회의에 하OO 사무관이 원래 참석키로 되어 있었으나, 당일 참석을 하지 않았으며, 문체부 사무관이 종종 선정 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심사에 관여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배OO의 진술(2018. 3. 9. 진술조서)

배OO은 출판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로, 내 생애 첫 책,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등 독서업무를 담당하였다.

- (가) 내 생애 첫 책과 북스타트 사업은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연계한 지자체, 세부적인 영역에서 차별화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 (나) 내 생애 첫 책 사업 선정 과정에서 역할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자료를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실무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었으며,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대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인물의 후보군을 추려서 내부 보고를 통해 선정하였고,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바 없으며, 독서 쪽 관련자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자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언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심사위원 후보군 명단을 문체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책사회가 탈락한 사유에 대해, “그 때는 명확했습니다. 사업계획서 퀄리티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문도 없을 정도로 우위가 명확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문체부로부터 특정 단체(책사회)를 탈락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2016년 사업이 폐기된 사유에 대해서는 독서 토론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판진흥원과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개편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책사회에서 진행해왔던 것을, 출판진흥원에서 계속 하는 것도 불편했으며, 출판진흥원에서는 수행기관이다보니, 인문정신문화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마) 출판인쇄과장 김OO의 지시 메일에 대해, 독서 쪽은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이라, 김OO 과장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메일에서 언급된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하지 않았으며, 팀장, 사원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OOO의 진술(2018. 3. 7. 진술조서)

OOO은 2013. 12. 경부터 도서관정책과에서 근무하다 2014. 2. 경 과 명칭이 변경되어 인문정신문화과에서 독서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주무관이다.

- (가) 출판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정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등 행정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사무관 이상의 선에서 중요 결정을 하여, 선정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출판진흥원 담당자들로부터 각종 선정사업의 최종 결정 전 진행경과, 심사 위원 목록, 선정 목록 등을 받아보았으며, 업무 총괄자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업무의 일환이며,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우수문학도서가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로 통합된 경위

2013. 10. 20. 경 ‘뉴포커스’와 ‘뉴데일리’ 등 언론에서 북한을 미화하는 「재미동포 아 줘마, 북한에 가다」의 도서가 책사회가 주관하는 2013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문체부 유진룡 장관은 문체부 실무자들과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책사회가 좌파 문인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도 균형적이지 못하므로, 주관 사업자를 출판진흥원으로 교체토록 지시하고,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토록 하였다.

2014. 2. 18.자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수도서 관련 보도 이후, “미래한국 기사관련 이념편향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작성, 2014. 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건(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작성, 2014. 2. 21.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OO 사무관 작성, 2014. 2. 28.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중 ‘세종도서’ 부분(문체부 작성, 2014. 10.) 문건들이 차례로 생산되었는데,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한국의 위 보도에 대하여 문체부가 청와대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편향 논란에 따라 해당 사업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란이 되었던 우수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특히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심사위원 구성 및 도서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위 ‘이념편향적 도서’를 관리 및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출판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심사절차도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책사회가 진행하던 사업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된 경위

2014년 초, 청와대는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각 부처별로 현황을 취합, 검토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신청인 책사회가 진행하는 북스타트 등 독서진흥사업과 우수문학도서보급이 언급되면서 지원 배제가 결정되었다.

이에, 2015년 2월 문체부에서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하며, 책사회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변경을 논의하였다. 북스타트 사업을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하라는 내용과 독서동아리 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내용이 결정되었다. 이에 문체부에서 독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인문정신문화과는 사업 주관을 옮겨, 2015년 북스타트 사업과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출판진흥원이 주관하게 되었다.

문체부 사무관, 주무관을 비롯하여 출판진흥원 관계자들은 북스타트와 독서동아리 등의 사업 이관이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권고에 따른 것일 뿐,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였다. 그렇지만, 청와대, 문체부 TF 등에서 논의, 결정된 내용이 확인되는 바,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특히 인문정신문화과 하OO 사무관의 경우, 출판진흥원 독서 관련 사업 주무 당사자로 청와대에서 북스타트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전콘텐츠 활성화 TF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책사회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출판진흥원으로 이관된 사유가 기재부의 권고에 의한 것 외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알고 있을 위치에 있는 자로, 허위 진술의 개연성이 높다 판단된다.

다만, 기재부의 권고 사항이 담겨있는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는 2013년 6월경에 작성되어, 2014년 초 작성된 청와대의 ‘문제단체 조치 내역 관리방안’과는 무관하다 판단된다.

다. 내 생애 첫 책 사업에서 신청인이 탈락한 정황

2015년 출판진흥원은 북스타트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자 ‘내 생애 첫 책’이라 명명하고, 주관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탈락한 정확한 사유를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청와대를 비롯하여 문체부에서 신청인이 블랙리스트 단체로 낙인되어 있던 상황과, 청와대, 문체부 등에서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진행 사업을 이관 시켰던 정황, 그리고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서 조차 재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정도로 2003년부터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의견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또한 심사위원회에 참관, 보조했던 출판진흥원 관계자들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획안이

터무니없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들다. 독서 관련 업무에서는 심사위원 명단, 진행 경과 등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독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000은 사전 보고는 일상적이며, 관례였다고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다.

덧붙여, 내 생애 첫 책 사업의 주무 부서인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에서는 2016년도에는 내 생애 첫 책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내 생애 첫 책 사업이 북스타트와 유사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차기년도에도 신청인이 주관 단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 폐지에 대한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이유를 밝혔다. 그렇지만 기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일원화하였다는 주장과는 상반되게, 주관단체가 바뀜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으로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있으며, 차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은 무시되고, 추진방식만 문제 삼아 사업 주관단체를 변경했다가, 사업이 폐기되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유진룡 장관을 비롯하여, 건전콘텐츠활성화 TF에 참여한 관련자,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장 등의 추가 조사를 통해 우수문학도서 사업을 출판진흥원으로 이관할 것을 지시한 이유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 나. 내 생애 첫 책 선정 심사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선정 과정에서의 선정 혹은 탈락에 대한 문체부, 출판진흥원 관계자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내 생애 첫 책 사업 진행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000은 현재 육아휴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 다. 내 생애 첫 책 사업이 폐기된 것 관련하여, 또 다른 추가적인 정황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69

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69

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8[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정세훈은 1990.경부터 ‘한국작가회의’ 단체에 참여하였고, 2015. 4. 인천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5. 5. 1.경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예술인 선언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2016. 10. 12. 경 자신을 포함한 9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위 ‘블랙리스트’로 지목되어 정부로부터 관리 받으면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제와 불이익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2) 박근혜 정부는 국가 기관을 이용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 예술계에 대해 정부 보조 지원 배제를 시행하였다.
- (3) '문예6-5_리스트-' 16.2.1 현재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과 '특검6-7_2015.7.6. 받음. 블랙리스트 목록 1부'를 통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지원 배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붙임 : [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8, 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신청인] 정세훈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정세훈은 1990.경부터 '한국작가회의' 단체에 참여하였고, 2015. 4. 인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인천민예총)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5. 5. 1.경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예술인 선언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2016. 10. 12. 경 자신을 포함한 9천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위 '블랙리스트'로 지목되어 정부로부터 관리 받으면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제와 불이익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 사건에 대해 「11차 전원위원회」(2017. 10. 20.)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

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2호(조사개시)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 목적

① 블랙리스트 등재 이유와 경위 ②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차별 및 지원배제 ③ 신청인에 대한 차별, 배제 사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입수 자료

아래와 같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검토 자료 목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오OO	2018. 1. 31.
2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8. 3. 26.
3	2013. 3. 15.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국정원	2018. 3. 26.
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8. 3. 26.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8. 3. 26.
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오OO	2018. 3. 26.
7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명단	한국일보	2018. 3. 26.
8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결과	국정원	2018. 3. 26.
9	문예 6-5_리스트 '16. 2. 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2018. 3. 26.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0	특검6-7_2015.7.6. 받음. 블랙리스트 목록 1부		2018. 3. 26.
11	서울중앙지검 2017. 10. 15.자 오OO 진술	서울중앙지검	2018. 3. 26.

2.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신청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조사 형태	일자
1	정세훈	신청인	진술조서	2018. 3. 14.
2	오OO	참고인	진술조서	2018. 2. 7.

제3절 | 조사 내용

1. 기초 사실

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문건

[그림-1] ‘선언 관련 9,473명 명단’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

장성희(문화기획) 장순항(한국민예총부이사장) 장용철(배우) 장재승(영화배우) 장준환(영화감독) 견계수(영화감독) 전세훈(배우) 전소현(배우) 전수일(영화감독) 전승일(영화인) 전운환(연출) 전은정(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배우) 전희련(배우) 정종배(사진가) 정광호(영화작가) 정보용(디지털레코드 대표) 정상민(영화인) 정성우(영화인) 정성호(배우) 정세훈(시인) 정세훈(민천민예총이사장) 경수진(영화인) 경양(시인) 경연홍(시인) 경용국(시인) 정용철(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용택(영화인) 정우영(시인) 정운(사진가) 정원욱(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윤섭(영화작가) 정윤철(영화감독) 정윤희(배우) 정은교(배우) 정은진(선인) 정은진(안산민예총 사무국장) 경지영(영화감독) 경지창(문학) 정택용(사진가) 경혜운(꽃

위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 등 총 9,473명에 대한 언론보도, 블로그 포스팅을 스크랩한 목록이다. 위 문건 중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되었는데 ‘정세훈(시인), 정세훈(인천민예총이사장)’으로 적시되어 있다.

위 문건 표지의 표를 작성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다. 오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2015. 5.경1)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이 되어 이 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

한편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본 문건에 대하여, 2015년 5월 경 김OO이 오OO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관련 문화예술인 명단을 뽑아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오OO에게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참고인 본인이 김종덕에게 이를 보고한 뒤 오OO을 통해 교문수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³⁾

즉, 오OO은 김OO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에게 보고하였다. 김OO은 위 문건을 직접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보고하였고,

1) 단,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 5. 11.) 문건에서 “15.4월 현재 9,473건”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며, 공판에서 오OO이 9,473명의 확인 시기가 4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공판 기록 1412), 9,473명에 대한 최초 파악시기가 5월이 아닌 4월일 가능성이 있다.

2)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3)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6. 12. 19.자 진술조서(1313쪽)

오○○으로 하여금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인 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⁴⁾

이후 청와대는 문체부에 위 문건을 ‘지원배제명단’으로 활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문건이 활용되었다.⁵⁾

위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일보는 2016. 10. 12. 보도에서,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 6.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 총 9,473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열 용도의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보도된 내용과 실제 문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⁶⁾

2)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그림-2] 문예6-6_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대외비1-2)

-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현재 9,473건)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15.5월초 추가
 -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오○○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문건은 본인이 2015. 5. 11. 작성한 것이며,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 위 문건에는 소위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⁸⁾ 실적,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블랙리스트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방안,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문

4)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에 대한 2016. 12. 27.자 제2회 진술조서(4973~4974쪽)

5)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에 대한 2017. 4. 21.자 녹취서 일부

6)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04:40,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7) 오○○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제21쪽, 이○○에 대한 2018. 2. 1.자 진술조서 17쪽

8) 배제 조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 일부 사업 양해조치 등을 포함한다.

건의 제1쪽에서 ‘주요 조치 실적’으로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월 현재 9,473건)’를 내세우고 있는데, 분류항목 중 하나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 참여자로서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대1-7_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그림-3]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구분	단체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
	민예총 이사장 : 경지환 영남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미협(미술)·민음협(음악)·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萬 5,000명으로 구성 법민련·실천연대 등과 연대해 광학기지 이전·4大江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반대 활동, 反美·反정부 투쟁을 통한 문화선동대 역할

위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2013. 3. 15.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 허태열, 민정·정무·교문수석에 전달한 것이다.9) 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좌파(左派)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내용과 함께, <붙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표 중 “민예총”의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에서 민예총이 민미협(미술), 민음협(음악), 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만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9) 2018. 1. 4.자 국정원 ‘업무협조 요청 회신’

4) 국정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그림-4] 주요 좌 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
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 정지창
2	문화연대	공동대표 : 김내희
3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 이시영
4	서울연극협회	회장 : 박창철
5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박진화

국정원은 2014. 3. 19. 위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시국선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¹⁰⁾ 위 문건의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중 하나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등재되어 있다.

2. 조사 내용

가. 블랙리스트 등재 이유와 경위

신청인은 1990.부터 한국작가회의에 참여하였고, 2015. 4. 인천민예총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7. 3. 민예총 권역 상임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신청인은 2015. 5.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¹¹⁾ 이는 2016. 10. 12.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

10) 국정원 적폐청산 T/F 작성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11) 신청인 정세훈 진술조서(2018. 3. 14.)

인 명단'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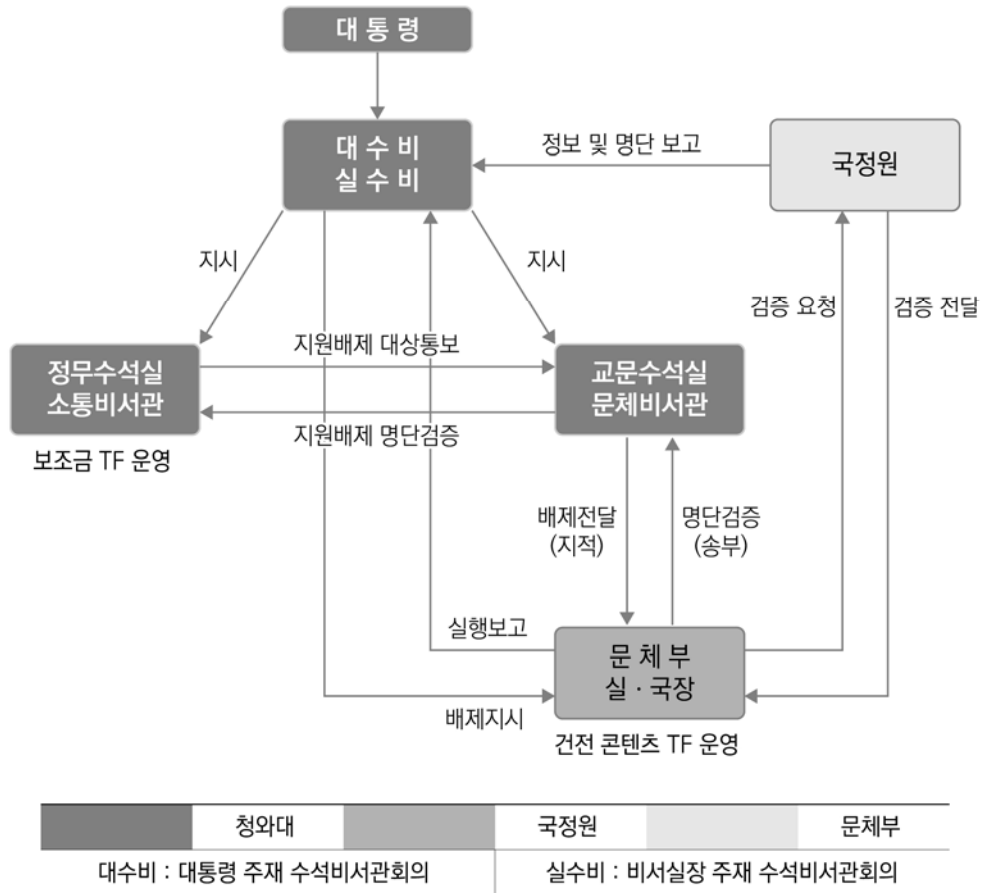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언 관련 9,473명 명단'은 문체부에서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단체에게 차별대우를 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해당하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에 포함된 신청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차별 및 지원배제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정부 보조 지원 배제를 시행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보 보고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에게 보고하였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보 보고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 배제를 위해 보조금 TF를 운영하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배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문화예술계 인물·단체의 성향 검증을 교문수석실과 국정원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교문수석실과 국정원에서 받은 성향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등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에 지원 배제를 지시하였다.

특정 문화예술계의 정부 보조 민간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각각의 역할은 다음 <그림5>와 같다.

[그림-5] 문화예술계 정부 보조 민간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역할



다. 신청인에 대한 차별, 배제 사실

신청인은 2015.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모 등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¹²⁾

‘특검6-7_2015.7.6. 받음. 블랙리스트 목록 1부’와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예6-5_리스트-’16.2.1 현재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에서 신청인의 이름이 적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검6-7_2015.7.6. 받음. 블랙리스트 목록 1부’에는 신청인이 2006. 5. 23.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참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12) 신청인 정세훈 진술조서(2018. 3. 14.)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은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에 대해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이 국정원과 청와대로부터 배제명단을 회신 받아 이를 오OO에게 알려주었고, 오OO은 이 명단을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청와대로부터 배제여부를 확인받았다고 서울지검 진술(2017. 10. 15.)에서 밝혔다.¹³⁾

위 2개의 문건과 서울지검 오OO의 진술조서(2017. 10. 15.)을 통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지원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검6-7_2015.7.6. 받음. 블랙리스트 목록 1부’와 ‘문예6-5_리스트-’16.2.1 현재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은 다음 <그림6>, <그림7>과 같다.

[그림-6] 특검6-7_2015.7.6. 받음. 블랙리스트 목록 1부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직업	지원분야	비고
1	이영준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작가	문학	
2	김민준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작가	문학	
3	박지현	010-5678-9012	서울시 동대문구	작가	문학	
4	홍길동	010-3456-7890	서울시 중구	작가	문학	
5	이영준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작가	문학	
6	김민준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작가	문학	
7	박지현	010-5678-9012	서울시 동대문구	작가	문학	
8	홍길동	010-3456-7890	서울시 중구	작가	문학	

[그림-7] 문예6-5_리스트-’16.2.1 현재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

구분	성명	연락처	주소	직업	비고
1차 순위	이영준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작가	
	김민준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작가	
	박지현	010-5678-9012	서울시 동대문구	작가	
	홍길동	010-3456-7890	서울시 중구	작가	
	이영준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작가	
	김민준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작가	
	박지현	010-5678-9012	서울시 동대문구	작가	
	홍길동	010-3456-7890	서울시 중구	작가	
	이영준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작가	
	김민준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작가	
2차 순위	이영준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작가	
	김민준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작가	
	박지현	010-5678-9012	서울시 동대문구	작가	
	홍길동	010-3456-7890	서울시 중구	작가	
	이영준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작가	
	김민준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작가	
	박지현	010-5678-9012	서울시 동대문구	작가	
	홍길동	010-3456-7890	서울시 중구	작가	
	이영준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작가	
	김민준	010-9876-5432	서울시 서초구	작가	

13) 서울지검 오OO 진술조서(2017. 10. 15.)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2014. 11. 959명의 지원 신청자가 공모하였다. 당시 김OO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은 김소영 청와대 교문수석실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에 예술위에서 진행하는 2015 문예진흥기금 사업(아르코문학창작기금 포함) 공모 신청자 전체 명단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위에 동일한 지시를 하였고, 예술위에서 신청자 명단을 받은 문체부는 이를 청와대에 송부하였다. 김OO 행정관은 김소영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소통비서관실에 이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 배제명단을 받아 다시 이를 문체부에, 문체부는 이를 예술위에 하달하였는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959명 중 약 76명이 배제 명단에 포함되었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블랙리스트 등재 이유와 경위

청와대, 문체부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감시 사찰 차별 배제하기 위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실제로 배제하여왔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명단은 문체부 등에서 차별 배제를 위해 관리하여 온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감시 사찰 차별 배제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차별 및 지원배제

박근혜 정부는 국가 기관을 이용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계에 대해 정부 보조 지원 배제를 시행하였다. 정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거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을 창작, 전시, 상연, 상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 예술작품을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 될 수 없다.

다. 신청인에 대한 차별, 배제 사실

신청인은 2015.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모 등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체부에서 제출한 ‘문예6-5_리스트-’16.2.1 현재 2015-1 문학분야[2015 예술위 공모사업]-118명’과 ‘특검6-7_2015.7.6. 받음. 블랙리스트 목록 1부’를 통해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지원 배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청와대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지원 신청자 전체 명단을 송부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하였고, 이에 문체부는 예술위에 동일한 지시를 하였고, 예술위에서 위 명단을 받은 문체부는 이를 청와대에 송부하였다. 청와대는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문체부는 이를 예술위에 하달하여 배제를 지시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0

작가 유영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70

작가 유영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이[작가 유영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유영소(이하 ‘신청인’)는 동화와 청소년 문학을 쓰는 작가인데 2016. 12. 26. SBS 뉴스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2013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2013년부터 2년간 지원 유보 기간에 해당하여 예술위 지원 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예술위 지원배제 피해는 없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의 예술인파견사업 및 문체부(이하 ‘문체부’) 추천도서에서 배제당하는 등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2013년 예술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받은 문화예술인들 중에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가입하여 문재인 지지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자로 확인되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배제 의혹과 2016년 예복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배제 의혹은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붙임 : [작가 유명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9, 작가 유명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신청인] 유명소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¹⁾

신청인 유명소(이하 ‘신청인’)는 동화와 청소년 문학을 쓰는 작가인데 2016. 12. 26. SBS 뉴스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2013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2013년부터 2년간 지원 유보 기간에 해당하여 예술위 지원 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예술위 지원배제 피해는 없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의 예술인파견사업 및 문체부(이하 ‘문체부’) 추천도서에서 배제당하는 등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7. 10. 27.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²⁾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혹시 나도?’ 블랙리스트, 그 섬뜩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프레시안>, 2016. 12. 28.	프레시안	2018. 3. 23.
2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8. 3. 23.
3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실	2018. 3. 23.
4	리스트-’16. 2. 1.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8. 3. 23.
5	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OO	2018. 3. 23.
6	201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신청 안내	예술위	2018. 3. 28.
7	201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결과 발표	예술위	2018. 3. 28.

2) 제12차 전원위원회 의결서

연번	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8	2015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지원신청 안내	예술위	2018. 3. 28.
9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 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하 '출판진흥원')	2018. 3. 28.
10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 접수도서 목록(아동청소년)	출판진흥원	2018. 3. 28.
11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 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	출판진흥원	2018. 3. 28.
12	2015 세종도서 교양부문 접수도서 목록(아동청소년)	출판진흥원	2018. 3. 28.
13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상정목록 및 차수별 심사결과	출판진흥원	2018. 3. 29.
14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상정목록 및 차수별 심사결과	출판진흥원	2018. 3. 29.
15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 도서등록내역	교학사	2018. 3. 29.
16	예북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안내	예북	2018. 3. 29.
17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공고	예북	2018. 3. 29.
18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공고	예북	2018. 3. 29.
19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예북	2018. 3. 29.
20	2014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시행지침	예북	2018. 3. 29.
21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예북	2018. 3. 29.
22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예북	2018. 3. 29.
23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결과 발표	예북	2018. 3. 29.
24	2016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선정결과보고	예북	2018. 3. 29.
25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참여예술인 모집) 심의 결과 보고	예북	2018. 3. 29.
26	참여예술인 서류심의 총평서	예북	2018. 3. 29.
27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지원자 및 선정자 현황	예북	2018. 3. 29.
28	사실확인 관련 이메일	김OO	2018. 3. 29.
29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계획 공고	출판진흥원	2018. 4. 22.
30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계획 공고	출판진흥원	2018. 4. 22.
31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2009년 시국선언 모집글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2018. 4. 22.
32	"희망찬 세상 아냐"... 어린이책 작가 258명 시국선언, <한겨레>, 2009. 7. 1.	한겨레	2018. 4. 22.
33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문재인 지지선언 모집글	다건	2018. 4. 22.
34	동화작가 등 362명, 문재인 지지선언, <베이비뉴스>, 2012. 12. 13.	베이비뉴스	2018. 4. 22.
35	세종도서 선정 목록 누적(일부)	문체부	2018. 4. 22.
3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오OO에 대한 2017. 10. 15.자 진술조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8. 4. 22.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N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진술조서 (2017. 11. 7.)
2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진술서 (2017. 12. 15.)
3	유OO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 팀장, 정책개발팀 팀장	진술조서 (2017. 12. 27.)
4	김OO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진술조서 (2018. 1. 3.)
5	이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진술조서 (2018. 3. 5.)
6	김OO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진술서 (2018. 3. 14.)
7	유영소	신청인	진술조서 (2018. 3. 23.)
8	유영소	신청인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9.)
9	김OO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담당 팀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9.)
10	염OO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심사위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9.)
11	김OO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심사위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9.)
12	OOO	출판진흥원 2016년도 세종도서 문학나눔 담당	진술조서 (2018. 4. 20.)
13	강OO	2016년도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4. 23.)
14	박OO	2016년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4. 23.)
15	OOO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 주임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4. 23.)

제3절 | 조사 사항·내용

1. 기초사실

가. 예술위 아르코문학창작기금³⁾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⁴⁾

3) 2013·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신청 안내

4)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위는 ‘문학적 잠재력이 뛰어난 작가가 우리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작품을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과 창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 시조, 소설, 희곡, 아동문학(동시, 동화), 수필, 평론 등 문학 분야에서 등단 5년 이상의 작가 혹은 등단 5년 미만의 작가 중 만 35세 초과 연령의 작가는 위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시기 2년 이내에 예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위 및 서울문화재단의 문학창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가는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청인 역시 2013년 이후에는 예술위와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지원신청하지 않았다.⁵⁾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사업에 지원 선정되면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받는다.

2.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및 경위

가.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⁶⁾

7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최홍익	최홍익 소설집 발간	10	-	• 문제인 지지 1인칭 세습인	지원배제
78		정혜원	정혜원 장편동화 발간	10	-	•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문제인 지지	지원배제
79		유영소	유영소 청소년소설 작품집 발간	10	-	•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문제인 지지	지원배제
80		김혜진	김혜진 장편동화 발간	10	-	•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문제인 지지	지원배제

(1) 신청인의 이름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담당부처 : 문체부(예술위)
- 지원내용 : 유영소 청소년소설 작품집 발간
- 지원금액 : 2013년 1천만 원, 2014년 -
- 특이사항 :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문제인지지
- 조치결과 : 지원배제

(2)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2013. 8. 5. ~ 2015. 2. 22.)은 2013. 8. 21.경부터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실수비')에서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으며, 정부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특히 김기춘은 2013년 하반기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등 대통령 풍자, 정부비판 문화예술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정부비판적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수차례 지시하였다.

5) 신청인에 대한 2018. 3. 23.자 진술조서

6)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판결문

- (3)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4. 3. 14.경 정무수석 박준우와 소통비서관 신동철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비서실장 김기춘의 지시 등에 따라, 정무수석 박준우와 소통비서관 신동철 등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동철은 문체비서관실을 포함한 여러 비서관실에 보조금 지원자 명단, 지원 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문체비서관실 A 행정관은 2014. 2.~3.경 예술위를 포함한 문체부 지원사업 내역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정무수석실에 전달하였다. 2014. 3.경 신동철이 주관하는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NGO 사업, 공모사업 위탁사업 등 사업종류 전체의 총괄정리, 민간단체 보조금 효율화 방안, 기금운영자, 기존심사위원 교체, 공모사업시 평가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민간단체보조금 TF 첫 회의는 2014. 4. 4.경 열렸는데, 정무수석 박준우가 회의를 주관하였고, 모철민 교문수석도 참석하였다. 그 외에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8개 비서관이 참석하였고, 이후 2014. 5.말경까지 2~3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
- (4) 정무수석 박준우와 소통비서관 신동철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박OO에게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박OO는 2014. 5. 말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특정 개인·단체를 '문제인 지지', '좌파성향' 등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하고, '좌편향인사'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지속감시하며, '좌편향인사'를 정부 공모사업 및 정부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고, 변호인 등 정치편향 영화에 투자한 모태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교체하고, 간부공무원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의 장·차관을 교체하고 산하기관 구조조정까지 한다는 것이고, 보고서 첨부 일람표에는 지원배제 등의 사유로 '좌파성향', '문제인 지지', '안철수 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보고서는 비서실장 김기춘의 지시를 바탕으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배제의 기준과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정무수석 박준우와 소통비서관 신동철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중간진행상황을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보고하였고, 박OO는 신동철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 첨부 자료 일람표 중 해당 부처 부분만을 따로 출력하여 해당 비서관들에게 배부하였으며, 2014. 5. 하순경 비서실장, 대통령 부속실로 서면보고를 한 후 박준우와 신동철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제외한 보고서와 파일들을 모두 파기·삭제하였다.

- (5) 정무수석 박준우는 2014. 6. 중순경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인 조윤선을 만나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현안을 설명하면서 업무를 인계하였고, 그 무렵 소통비서관 신동철도 부임한 정무수석 조윤선에게 ‘보조금 문제와 우파지원 문제가 소통비서관실의 가장 큰 현안이다. 좌파들에게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문제라는 상부 지적이 있어 문재인·박원순 지지, 민노당 지지 등에 참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를 추진 중이고, 공모사업 심의위원이나 정부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하여 좌파인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에 정무수석 조윤선은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과 함께 대통령과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지시에 의한, 위와 같은 소위 ‘좌파(좌편향)’ 배제 기조에 따른 지원배제업무 등을 인계받아, 정무수석으로서 정무수석실 산하 각 비서관실을 총괄·관리하며, 정무적 판단에 따른 좌파(좌편향) 인사·단체 선별을 통한 보조금 차단, 심사·정부위원 선정배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6) 한편, 신동철은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4. 10. 2. 경 정관주가 후임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정관주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하면서 위 문건이 민간단체보조금 TF에서 만든 문건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제 학술 관련 연구용역 비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관주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2014. 10. 2. 경 정관주가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김소영이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기 위해 신동철을 찾아오자 신동철은 김소영에게 앞으로 정관주에게 검토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김소영은 정관주를 찾아가 명단을 건네면서 배제대상자 선별을 요청하였다. 정관주는 소통비서관실 우OO 행정관에게 명단 검토업무를 맡겼는데, 우OO은 정관주가 보여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참삼아 그 첨부 일람표의 ‘특이사항’, ‘비고’란에 기재된 지원 배제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명단을 검토하고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7) 이후 정무수석실은 정무수석 조운선의 총괄 관리하에 2015. 4.경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기초한 예술위원회 배제리스트 총 59명(문학 26, 연극 15, 무용 2, 미술 1, 국제교류 15)을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하여 2015 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재차 확인, 점검하기도 하였다.

나. 정무리스트(15. 4. 13. 현재/중요)-59명(이하 ‘2015. 4. 13.자 정무리스트’)

단체명(사업명) 문 학	2013	2014	2015	비 고(지원 사업명)
이성국	10,000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13년도 지원용, 지원 결정후 2년간 지원불가
송정권	10,000	-	-	*
김정기	10,000	-	-	*
정수호	10,000	-	-	*
주원익	10,000	-	-	*
김영동	10,000	-	-	*
김소연	10,000	-	-	*
김광일	10,000	-	-	*
서경환	10,000	-	1차실의탈락	작가약으로 신청하였으나 심의탈락
이준호	10,000	-	-	* 13년도 지원용, 지원 결정후 2년간 지원불가
김도익	10,000	-	-	*
김태수(재미서)	10,000	-	-	*
김영호	10,000	-	-	*
최용환	10,000	-	-	*
김재희	10,000	-	-	*
윤영호	10,000	-	-	*
김민준	10,000	-	-	*
고민준	10,000	-	-	*
15년도 1차실의탈락(2013년 문체부)	14,000	18,000	지원실의 탈락	후수준에서 지원
실천문학	16,000	28,000	16,000	후수준에서 탈락이전 * 13년 16,000만원, 14년 28,000만원, 15년 16,000만원 문학평사및연구지원: 14년, 30,000만원
15년도서학(서학)	14,000	14,000	지원실의 탈락	

(1) 신청인의 이름은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다. 위 리스트에는 신청인이 201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지원 결정된 2013년부터 2년간은 지원불가하다는 예술위 공고에 따라 2014~2015년까지는 예술위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2015. 3. 25.자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으로 “현재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

는데, 상당 부분이 중복 좌파세력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고 하는바,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은 실제 현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특히 문화관련 단체 지원) 전체적으로 면밀히 스크린해 볼 것. 다만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로키(low key)로 차분히 진행할 것(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진행 中”이라는 수기로 쓴 글씨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의 내용은 좌파단체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으로 위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의 작성 근거가 되는 명단이 최초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 하달되었던 것을 위 ‘진행 중’인 조치 내역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15. 3.경 문체비서관 김소영에게 민간단체 중 문체단체에 과거 3년간 예산 지원현황을 문체부에 파악하라고 요구하며 명단을 함께 보냈다. 김소영은 위 명단을 김OO 행정관에게 전달하였는데, 김OO 행정관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 창조행정담당관실에 보냈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낸 리스트에는 예술정책관 쪽이 담당하는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만 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 사안들도 섞여 있었다. 위 리스트를 받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 이OO은 위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2~3주가 지나서 각 부서별로 정무수석실에서 온 자료를 전달하였다. 위 리스트를 전달받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이OO은 2015. 4. 13. 이를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2012. 4. 17. ~ 2016. 8. 15.)에게 전달하면서 ‘위 리스트는 정무수석실에서 전달받았고, 앞으로 위 리스트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지원배제 하라’고 하였다. 오OO은 위 59명의 명단과 이에 대한 2013년~2015년의 지원 내역까지 함께 정리된 부분을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로 보관하였다. 오OO은 위 리스트가 정무수석실에서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 리스트에 정무리스트라고 표시를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표시를 한 것이다. 이후 행정관 김OO은 창조행정담당관실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 문체비서관 김소영에게 보고한 후 정무수석실로 보냈다.

- (4) 그런데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의 첨부 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 중 소관 부처가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로 표시된 부분의 명단과 3명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⁸⁾ 그 기재 순서까지도

8)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에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첨부문서에 포함되었던 ‘서OO’, ‘구OO’가 빠지고 위 첨부문서에 없던 ‘OOO학회’가 추가된 것인데, 서OO이 빠진 것은 서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2015. 4. 13.자 정무리스트는 2015. 3.경 정무수석실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별첨된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일람표 중 문체부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점검·파악하기 위하여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하달한 명단 중 문체부 〇〇〇 사무관이 담당하는 예술위 관련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2013년 ~ 2015년)

단체명	지원내용	'13년 (지원액)	'14년 (지원액)	'15년 (3.25기준)	비고
서성만	스틸하우스	10	-	심의 탈락	
이준호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10	-	'13년 지원 이후 2년간 지원 불가 대상사업이므로 미신청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도연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10	-	"	"
김태수(레이수)	점은 방고 장편 발간	10	-	"	"
김병호	김병호 장편소설 발간	10	-	"	"
최용탁	최용탁 소설집 발간	10	-	"	"
정혜원	정혜원 장편동화 발간	10	-	"	"
유영소	유영소 청소년소설 작품집 발간	10	-	"	"
김혜진	김혜진 장편동화 발간	10	-	"	"

신청인의 이름은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2013년 ~ 2015년)’ 문건에도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은 ‘2015. 4. 13.자 정무리스트’와 같은 내용이므로,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〇〇이 지원받은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사업이 예술위가 아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이었기 때문이고, 구〇〇가 빠지고 ‘〇〇〇학회’가 추가된 것은, 구〇〇는 2014. 1.경까지 〇〇〇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구〇〇 개인이 아닌 〇〇〇학회이므로 그와 같이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라. 「Oh&Kim 블랙리스트 명단」 및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건



(1) 「Oh&Kim 블랙리스트 명단」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작성한 후 2015. 7.경 오OO에게 인계한 문건에 해당한다.9) 신청인의 이름은 위 문건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소설가로 분류되어 있다.

<p>공연과 관리 (중요) - 79명</p>	<p>- 122명들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 제외하고 발간</p> <p>①강은교(동아대 명예교수), ②고은(시인), ③고연욱(국가,연극), ④고창훈(전대교수), ⑤구중서(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⑥김경미(시인), ⑦김도연(소설가), ⑧김병호(소설가), ⑨김보성(전 카프문화재단 대표), ⑩김상용(화가), ⑪김성필(시인), ⑫김소영(시인), ⑬김영웅(일상문학예술센터 대표), ⑭김정은(연극), ⑮김종필(시인), ⑯김재수(혜이수,소설가), ⑰김태진(아동문학가), ⑱박승희(소설가), ⑲이상혁(연극, 호서대학교수), ⑳서정관(소설가), ㉑서철원(소설가), ㉒정기웅(연극연출), ㉓송미경(아동문학가), ㉔송권민(시인), ㉕양해근(설치미술가), ㉖오상운(마당울 나온 안무 감독), ㉗유영소(소설가), ㉘이장국(시인), ㉙이선아(무용가), ㉚이준희(국제무용협회 회장), ㉛이준호(소설가), ㉜이지호(고일문화재단 대표, 아송노드미술 풍경), ㉝이경희(브랜나무출판사 주간), ㉞정미경(소설가), ㉟정상원(경남대학교수), ㊱정혜원(아동문학가), ㊲주원익(시인), ㊳신수효(시인), ㊴필운명(소설가), ㊵최용재(영화사 장미칼 대표), ㊶최용택(소설가), ㊷함정희(소설가), ㊸양성호(시인), ㊹안정필(소설가), ㊺홍진(희탈계작소 부리센터장)</p> <p>의안</p>
------------------------------	--

(2) 또, 신청인의 이름은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6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중 '공연과 관리(중요)-79명' 중 27번째로 기재되어 있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2012. 4. 17. ~ 2016. 8. 15.) 오OO은 2017.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6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는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 김OO이 자신에게 기존 관리 리스트를 한 번에 모아서 배제를 하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2015. 3. ~ 4.경(2015. 4. 13.보다는 이전)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인물을 정리한 리스트라고 진술하였다. 그중 '공연과 관리(중요)-79명'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오OO이 정리한 리스트

9) 특검 작성의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제16쪽

이다.¹⁰⁾ 그런데 ‘공연과 관리(중요)-79명’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 OO이 수기로 작성한 「Oh&Kim 블랙리스트 명단」 중 일부(증거기록 제6465, 6466쪽)와 기재 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다.

- (3) 즉, ‘공연과 관리(중요)-79명’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 OO이 수기로 작성한 「Oh&Kim 블랙리스트 명단」 중 일부(증거기록 제6465, 6466쪽)를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 OO이 컴퓨터로 정리한 명단에 해당한다.

마. 신청인 진술¹¹⁾

신청인은 2018. 3. 2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문재인 지지선언,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바가 있다. 크고 작은 세월호 관련된 추모행사나 문학콘서트 활동에 참가하였고, 그런 행사의 내용이 포함된 책들이 발간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단원고 학생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을 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다.
- 만약 국가기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중요한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면, 그건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동안 가까이에서 추모활동을 하였고, 어린이·청소년 문학이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처음 명단을 보았을 때는 아르코 지원금도 받고, 문재인 지지선언도 하신 분들의 명단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아르코 지원금도 받고 문재인 지지선언도 했던 사람들이 9명가량 있었는데, 그중 4분 정도는 없으신 거 같다.
- ‘어린이책을만드는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없다. 당시에 세월호 추모 활동을 하기 위해 작가, 일러스트작가, 편집자, 평론가 등이 모여서 ‘우리는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선언을 했다. 정식으로 그런 이름이 있거나, 단체를 만든 것은 전혀 아니다.
- 청와대에서 파악하기로는 위와 같은 단체 활동을 어떠한 조직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오 OO에 대한 2017. 10. 15.자 진술조서

11) 신청인에 대한 2018. 3. 23.자 진술조서

있던 것 같다. 세월호 추모 활동을 캠페인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마음을 모아 함께했던 것뿐이다. 리스트에 ‘어린이책을만드는사람들’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은 잘은 모르는 분들이지만, 문재인 지지선언을 같이 했던 사실은 기억이 난다. 당시 어린이책을 만드는 분들이 세월호 추모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단체로서 기재된 것 같기도 하다.

바.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 (1)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2000. 4. 18. 개설된 다음 카페의 이름이며, 위 카페에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특이사항에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기재된 신청인, 김OO, 정OO, 김OO, 송OO이 가입되어 있다.¹²⁾ 또한 이들은 전부 201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 선정된 자들이다.¹³⁾
- (2) 2009. 6. 26.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다음 카페에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에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 시국선언에 동참하여달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다.¹⁴⁾ 이후, 어린이책 작가 258여명은 2009. 7. 2. 이명박 前 대통령 국정운영 비판 및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신청인은 위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¹⁵⁾
- (3) 2012. 12. 11.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다음 카페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다¹⁶⁾ 이후, 동화작가 가OO, 문OO, 안OO 등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 362인은 2012. 12. 13.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해 18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선언문을 발표하였다.¹⁷⁾ 관련 기사에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작가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2014. 9. 17. ‘어린이책 작가들’과 함께 ‘세월호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원혼들을 추모하는 한편 참사의

12) <http://cafe.daum.net/childbooks>

13) 201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결과 발표

14) <http://cafe.daum.net/childbooks/FtS/5699>

15) “희망찬 세상 아냐”...어린이책 작가 258여명 시국선언, <한겨레>, 2009. 7. 1.

16) <http://cafe.daum.net/childbooks/FtS/6946>

17) 동화작가 등 362명, 문재인 지지선언, <베이비뉴스>, 2012. 12. 13.

원인이 날날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는데, 신청인은 위 책 발간에 작가로 참여하였다. 신청인 외에 김OO, 정OO, 김OO, 송OO은 위 책 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¹⁸⁾

3.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배제 의혹

가.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계획 공고 및 심사결과

(1)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계획 공고

(가)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1997. 7.경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의거해 법정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발족하였고, 2012. 7. 27.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해 출판진흥원으로 출범하였다.

(나) 출판진흥원은 출판 활동을 고취하고, 국가 지식사회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16. 7. 21.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정대상도서 : 2015. 8. 1. ~ 2016. 7. 31.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교양도서
- 선정종수 : 450종 내외
- 선정분야 : 10개 분야(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 선정방법 : 학자, 출판평론가, 사서, 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최소 70%) 및 공공도서관 등 수요자 추천도서(최대 30%)로 선정
- 신청기간 : 2016. 8. 1.(월) 9:00 ~ 8. 10.(수) 18:00
- 선정방침
 - 국내출판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창작도서 우선 선정
 - 특정 출판사의 과다선정 방지 및 다양한 도서의 선정기회 확대를 위해 출판사별 선정종수 최대 8종(분야별 4종) 제한
 - 국고지원으로 제작 및 구입 지원된 도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 문화콘텐츠 출판

18)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108662

지원, 한중 출판콘텐츠 발간 지원), 국방부(진중문고), 대한민국학술원(우수 학술도서), 한국과학창의재단(우수과학도서), 한국연구재단(우수저서사후 지원), 환경부(우수환경도서)

- 동일 저자의 도서가 복수로 선정 후보가 되었을 경우 1종에 한하여 선정
- 저작권 위반, 표절 등 지적재산권 분쟁 도서와 개정판 도서는 선정 제외
- 선정도서 지원 : 종당 1,000만원 이내의 도서를 구입 공공·복지 시설 등에 배포

(2)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상정목록 및 차수별 심사결과

연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1차심**	2차심**	3차심**	결과합계	비고
4720	문학	여우색시	문학출판경진(학자 와비밀)	이정민, 박민아	○	X	X	X	
4721	문학	여우와 뱀	(주)서적출판사	크랄라 빅토르 스키 스	X	X	X	X	
4722	문학	여자 중심	(주)출판부영이	송창민	X	X	X	X	
4723	문학	여자가 세상을 바꾸다 : 한국편	교학사	류경소	○	X	X	X	

교학사는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에 신청인의 '여자가 세상을 바꾸다 : 한국편'을 신청하였고,¹⁹⁾ 위 도서는 1차심사를 통과하였으나, 2차·3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계획 공고 및 심사결과

(1)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계획 공고

출판진흥원은 2016. 7. 21.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정대상도서 : 2015. 8. 1. ~ 2016. 7. 31.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국내 창작 문학도서

19)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 도서등록내역

- 선정종수 : 500종 내외
- 선정분야 : 5개 분야(시, 소설, 수필, 평론·희곡, 아동청소년)
- 선정방법 : 심사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최소 70%) 및 공공도서관 등 수요자 추천도서(최대 30%)로 선정
- 신청기간 : 2016. 8. 1.(월) 9:00 ~ 8. 10.(수) 18:00
- 선정방침
 - 국내출판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창작도서 우선 선정
 - 특정 출판사의 과다선정 방지 및 다양한 도서의 선정기회 확대를 위해 출판사별 선정종수 최대 20종(분야별 8종) 제한
 - 국고지원으로 제작 및 구입 지원된 도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 문화콘텐츠 출판 지원, 한중 출판콘텐츠 발간 지원), 국방부(진중문고), 대한민국의학술원(우수학술도서), 한국과학창의재단(우수과학도서), 한국연구재단(우수저서사후지원), 환경부(우수환경도서)
 - 동일 저자의 도서가 복수로 선정 후보가 되었을 경우 1종에 한하여 선정
 - 저작권 위반, 표절 등 지적재산권 분쟁 도서와 개정판 도서는 선정 제외
- 선정도서 지원 : 종당 1,000만원 이내의 도서를 구입 공공·복지 시설 등에 배포

(2)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상정목록 및 차수별 심사결과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상정목록 및 차수별 심사결과									
연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1차심	2차심	3차심	결과발표	비고
2026	아동청소년	꼬래이에서 온 아이	비활피아이돌	이슬진	○	○	○	○	
2027	아동청소년	꼬부랑 늑대 할머니	김영사	나카무라 요코	X	X	X	X	
2028	아동청소년	꼬부랑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	(주)연화사	유영소	X	X	X	X	

(※)샘터사는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에 신청인의 ‘꼬부랑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을 신청하였고, 위 도서는 1차·2차·3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에서 신청인이 배제되었는지에 관한 점

(1) 신청인의 주장²⁰⁾

신청인은 2018. 3. 2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가 집필한 ‘여자는 힘이 세다’라는 작품이 4권짜리 시리즈물인데, 교학사에서 출간되었다. ‘여자는 힘이 세다’라는 작품이 1~3권까지는 문체부 추천도서로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2015. 10.경에 ‘여자는 힘이 세다’ 4권이 나왔는데 4권만 문체부 추천도서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 교학사 담당자도 “늘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문체부 추천도서로 선정이 되면 도서관에서도 많이 사주고, 판매도 많이 된다. 그래서 혹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체부 추천도서로 선정이 되지 않는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여자는 힘이 세다’ 외에도 2015년 이후에 다른 출판사에서도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였는데, 문체부 추천도서로 전혀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제 책이 자주 추천도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이런 피해를 입은 것 같다.

(2) 과거 신청인의 책이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등에 선정된 내역

(가) 2013~2016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상정목록 및 차수별 심사결과

201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신청인의 책 중 ‘열두 해의 대장 십이지신 동물 이야기’, ‘유럽에 사는 내 친구들’, ‘초등 세계 문화 100배 즐기기 : 유럽’이 신청되었으나 1~4차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여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에는 신청인의 책이 신청되지 아니하였다.²¹⁾

20) 신청인에 대한 2018. 3. 23.자 진술조서

21)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 접수도서 목록(아동청소년), 2015 세종도서 교양부문 접수도서 목록(아동청소년)

(나) '문체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지원' 사업 선정 내역²²⁾

'문체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출판진흥원에서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을 하기 이전, 문체부가 출판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국민 독서 문화를 향상하고자 1968~2012년까지 추진하였던 있는 출판 진흥을 위한 최대 규모의 정책 사업이다. 위 사업에서 신청인이 저술한 책이 아래와 같이 각 선정되었다.

- 2010년 '여자가 세상을 바꾸다 : 세계편'
- 2009년 '천둥 치던 날'
- 2005년 '겨울 해바라기'

(3)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가) 참고인 김OO의 진술²³⁾**

2014. 4. 15.경부터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참고인 김OO는 2018. 1. 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 관하여도 배제지시를 하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

(4)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가) 참고인 이OO의 진술²⁴⁾**

2013. 12. 13. ~ 2016. 4. 3.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이었던 이OO는 2018. 3. 5.자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 4. 4.에 다른 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2016년 세종도서 학술 분야에서도 배제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22) 세종도서 선정 목록 누적

23)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3.자 진술조서

24)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5.자 진술조서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²⁵⁾

2014. 10. ~ 2016. 9.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서기관)이었던 김OO은 2017. 12. 15. 작성한 진술서에서 ‘2016년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선정, 배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었으며,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지시를 하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대상이었으며 진흥원의 담당 본부장 과 출판과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고 협의했습니다.

또, 참고인 김OO은 2018. 3. 14. 작성한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담당과장으로서 특정도서 선정심의에 의견을 주었던 대상은 2015년 교양 및 문학, 2016년 학술 및 교양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거의 대부분 N 본부장에게 의견을 주었으며(N 본부장은 자주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간혹 강하게 반대도 했습니다),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김OO 행정관과 관련 업무연락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의 동 사업과 관련한 협의 또는 업무연락은 없었습니다.

(5) 출판진흥원 관계자의 주장**(가) 참고인 N의 진술²⁶⁾**

2016년에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이었던 참고인 N은 2017. 11. 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상반기 학술부문까지는 제가 담당자였는데, 배제지시가 따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세종도서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다.
- 2016년 세종도서에서도 배제지시사항이 하달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전과 달리

25) 참고인 김OO이 작성한 2017. 12. 15.자·2018. 3. 14.자 진술서,

26) 참고인 N에 대한 2017. 11. 7.자 진술조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나) 참고인 유OO의 진술²⁷⁾

2016. 6.까지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 팀장, 2016. 7.부터 정책개발팀 팀장이었던 참고인 유OO은 2017. 12. 2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상반기 학술부문까지는 제가 담당자였는데, 배제지시가 따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세종도서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강OO의 진술²⁸⁾

2016년도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이었던 참고인 강OO는 2018. 4. 23.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자신도 작가회의 소속인데, 2016년도 세종도서 문학나눔 분야 심사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 심사연도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세종도서 심사과정에서 세월호 관련 르포가 제외된 것은 위 작품이 창작물이 아니라 르포였기 때문이고, 공지영의 작품이 제외된 것은 위 작품이 베스트셀러라 지원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며, 창비와 실천문학사는 수상내역이 많아서 일부러 종수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
- 다만, 매년 심사 때마다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이 형광펜으로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성적표현이 있는 작품 등을 표시해서 주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라) 참고인 박OO의 진술²⁹⁾

2016년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이었던 참고인 박OO는 2018. 4. 23.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도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

27) 참고인 유OO에 대한 2017. 12. 27.자 진술조서

28) 참고인 강OO에 대한 2018. 4. 23.자 전화통화결과보고

29)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4. 23.자 전화통화결과보고

지 않았으며, 특이한 점도 전혀 없었다.

(마) 참고인 000의 진술³⁰⁾

현재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팀 주임인 참고인 000는 2018. 4. 23.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자신은 세종도서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담당자인 000는 현재 퇴사하였고,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담당자인 000은 현재 콘텐츠진흥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 참고인 000의 진술³¹⁾

출판진흥원에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사업을 담당하였던 참고인 000은 2018. 4. 2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세종도서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실행, 작동된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언론보도된 이후 알게 되었다. 실무진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니 당시에는 인지를 할 수가 없었다.
- 세종도서 문학나눔은 워낙 출판계와 문학계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사업 절차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의견이 전달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4. 2016년 예복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배제 의혹

가. 2016년 예복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계획 공고 및 선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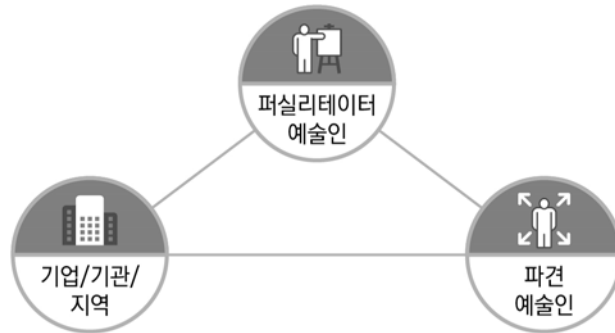
(1) 2016년 예복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모집 공고

(가) 예복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³²⁾

30) 참고인 000에 대한 2018. 4. 23.자 전화통화결과보고

31) 참고인 000에 대한 2018. 4. 20.자 진술조서

(나) 예복의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 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예술인의 사업이해도, 관련활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을 기업(기관)에 매칭하며, 활동보고서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32) **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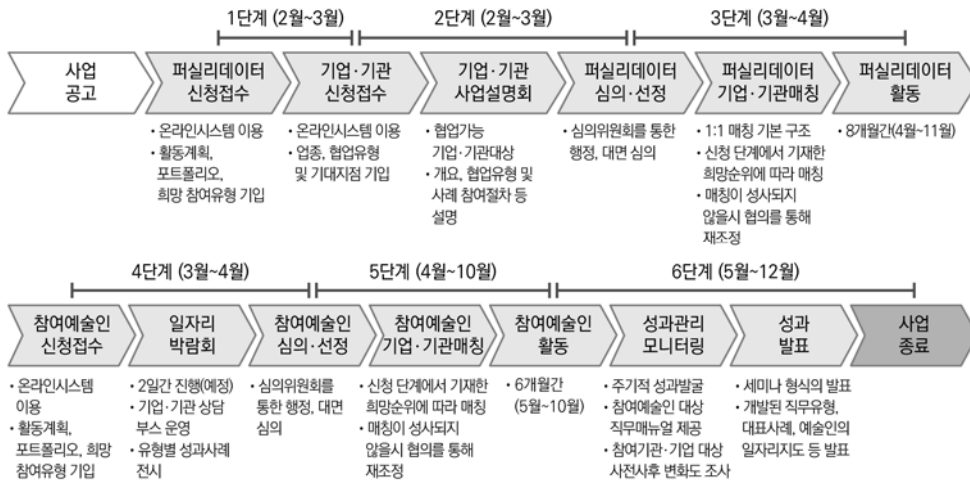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예복은 2016. 3. 22.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집인원 : 약 700~800명
- 지원내용 : 1인 월 120만 원 지원(교통비, 재료비, 회의비 포함)
- 활동기간(시간) : 5~10월(6개월), 월 10일/30시간 이상
- 참여대상자격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참여제한 : (중복사업참여)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지원 및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지원에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중복 수혜 불가, (재단사업참여제한)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이 사업의 진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참여예술인 선정은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심의를 진행하며, 서류 심의의 평가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사업의 이해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사업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사업이해를 바탕으로 신청 예술인의 기관연계 전략은 어떠한가? ▶ 신청 예술인의 직업 방식 및 역량이 사업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활동계획의 적절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예술인의 활동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기업/기관의 문화예술자원 활용 및 적용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활동내용의 지속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활동이 가능한가? ▶ 문화예술의 사회저변에 확장·적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활동의 성실성*	40점	▶ 참여기간 동안 주어진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가?
합계	100점	

(2) 2016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결과 발표³³⁾

예북은 2016. 4. 29. 2016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서류심의를 통해 최종심사결과 655명이 선정되었으며, 신청인은 위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선정되지 아니하였다(유*소는 신청인의 이름에 해당함³⁴⁾).

No.	성명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신청일자	신청상태	비고
1	유*소	28	남	고졸	무직	2016.03.29	불합격	신청인

신청인이 탈락한 사유는 ① 사업이해 및 고민의 구체성 부족,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③ 사업취지 이해부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6년 예북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서 신청인이 배제되었는지에 관한 점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8. 3. 29.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4년 위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고, 이후 2016년 위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33) 2016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선정결과보고,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지원자 및 선정자 심의결과

34)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이 작성한 사실확인 관련 이메일

(2) 출판진흥원 관계자의 주장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³⁵⁾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참고인 김OO은 2018. 3. 29.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심사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 신청인이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었으며, 2016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 신청한 것은 사실이다.

(나) 참고인 염OO의 진술³⁶⁾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심사위원이었던 참고인 염OO는 2018. 3. 29.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심사과정에서 예복으로부터 특정인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나 지시는 듣지 못하였고,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된 점도 없었다.
- 그러나 문학 부문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문학 관련 심사위원은 없었고, 예복이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작가회의 등 정부비판적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정부비판적인 사람은 제외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다) 참고인 김OO의 진술³⁷⁾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심사위원이었던 참고인 김OO은 2018. 3. 29.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심사과정에서 예복으로부터 특정인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나 지시는 듣지 못하였고,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된 점도 없었다.

35)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9.자 전화통화결과보고

36) 참고인 염OO에 대한 2018. 3. 29.자 전화통화결과보고

37)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9.자 전화통화결과보고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및 경위

- (1) 신청인의 이름은 「Oh&Kim 블랙리스트 명단」,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중 「6기존관리 리스트 - 149명」 중 「공연과 관리(중요)-79명」,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2015. 4. 13.자 정무리스트」,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2013년 ~ 2015년)」 등에 등재되어 있다.
- (2) 신청인의 진술,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활동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가입한 다음 카페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① 2009. 7. 2. 이명박 前 대통령 국정운영 비판 및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② 2012. 12. 13.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해 18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선언, ③ 2014. 9. 17. ‘어린이책 작가들’과 함께 ‘세월호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정권비판, 세월호 추모 활동을 하였고, 신청인은 그 중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및 ‘세월호 이야기’ 발간 활동 등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3. 8. 21.경부터 실수비 등에서 정부비판적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수차례 지시하였다. 비서실장 김기춘의 지시 등에 따라, 정무수석 박준우와 소통비서관 신동철 등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였고, 소통비서관실 박OO 행정관에게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박OO는 2014. 5. 말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前 비서실장 김기춘,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고되었다. 또한 박OO는 신동철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 첨부 자료 일람표 중 해당 부처 부분만을 따로 출력하여 해당 비서관들에게 배부하였다. 이후 정무수석실은 정무수석 조운선의 총괄 관리 하에 2015. 4.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기초한 예술위

원회 배제리스트 총 59명(문학 26, 연극 15, 무용 2, 미술 1, 국제교류 15)을 교문 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하여 2015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재차 확인, 점검하기도 하였다.

- (4) 위와 같은 사실과 신청인과 함께 기재된 김OO, 정OO, 김OO, 송OO 역시 ① 2013년 예술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받았으며, ②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가입하여 문재인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자들인 점을 종합하면,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2013년 예술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받은 문화예술인들 중에 ‘어린이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가입하여 문재인 지지선언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한 자로 확인되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는 2014. 5.말경 작성되었고, ‘세월호 이야기’는 2014. 9. 17. 발간되었으므로, ‘세월호 이야기’의 발간과 블랙리스트 등재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예술위 사업 배제 의혹

신청인은 2013년 이후에는 예술위 사업에 지원한 적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됨으로 인해 위 사업에서 지원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가.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배제 의혹

신청인이 저술한 책인 ‘여자가 세상을 바꾸다 : 한국편’와 ‘꼬부랑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는 위 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또, 신청인이 저술한 책이 201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2005·2009·2010년 문체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지원사업에 각 선정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6년 세종도서 사업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진술 또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2016년 예북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배제 의혹

신청인이 2014년 예북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6년 위 사업에 지원신청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김OO, 위 사업의 심사위원이었던 염OO와 김OO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사업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진술 또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1

소설가 김성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



71

소설가 김성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10[소설가 김성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김성군은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소설부문)에 당선된 이래, 창작활동을 하면서 '한국작가회의' 단체에 참여하여, 2009년 6월 9일 경 '이명박정부의 독재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2014년 6월 2일 '4·16 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다.

신청인은 2012. 10. 2.경부터 약 2개월여간 백담사 '만해마을 문인집필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던 중 같은 집필실에 입주한 동료 작가로부터 사상검증을 위한 불법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후에 낯선 자들에 의한 개인 감시, 미행, 스마트폰 해킹, 노트북 해킹 등의 방식으로 해킹을 당했으며, 특히 개인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이 있어 2 차례 차량을 폐차시킨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 관련 범법자 강력처벌'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 6. 9.경 (재)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로서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과거 정부에서 작성·관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의 요지

당시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기관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사찰을 하였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스마트폰과 사용 인터넷 계정에 대한 해킹, 차량에 대한 위치 추적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정된 조사 기한 등으로 인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붙임 : [소설가 김성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사 건] 2017특10 소설가 김성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
[신청인] 김성군

제1절 | 조사 개요

1. 신청 취지

신청인 김성군(필명 ‘유 민’)은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소설부문에 당선된 이후 창작활동을 하면서 (재)한국작가회의에 참여하여 2009. 6. 9. 경 ‘이명박정부의 독재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신청인은 2012. 10. 2.경부터 약 2개월여 간 백담사 ‘만해마을 문인집필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던 중 같은 집필실에 입주한 사람으로부터 작가에 대한 사상검증을 위한 불법 사찰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 6. 2.경 신청인은 ‘4·16 세월호 참

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이후부터 노트북이 해킹당하기 시작했다 하며, 낯선 자들로부터 감시와 미행을 받았고 차량에 대해서도 위치추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 10. 30.경 신청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문인 1217인 성명'에 참여하였는데, 이후부터 미행과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 하고, 위치추적을 받던 차량을 2017. 8. 18. 폐차 시키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미행,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해킹 당하였기에 자신의 경우처럼 특정 문인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추적, 해킹했던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및 경과

(1) 각하 결정 경위

위원회는 본 건 조사 신청 검토 결과 지난 정부에서 작성·관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신청인이 등재된 사실은 없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피해 내용으로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2017. 11. 15. '각하' 결정하였다.

(2) 이의신청 및 조사개시 경위

위 각하 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는 않았어도 등재된 예술인들과 유사한 사회 참여 활동들을 했기에, 이미 확인된 블랙리스트 등재자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국한하지 말고 자신의 경우와 같은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줄 것을 주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이 작가로서 사회적 참여 활동을 한 내용과 이로 인해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감시와 미행, 해킹 등의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기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2017. 12. 22.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하였다.

나. 조사 목적

신청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해킹 등의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한다.

제2절 | 조사 경과

위원회는 본 사건 조사에 있어서 한정된 조사활동기간과 권한, 인력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의혹으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부분적으로 신청인이 (사)한국작가회의 회원 작가로서 참여했던 시국선언 내지 성명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1. 자료조사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1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2009. 6. 9.
2	한국작가회의 “독재 회귀 우려” 시국선언	한겨레신문	2009. 6. 9.
3	문학인 시국선언 - 우리는 이런 권력에게 국가개조를 맡기지 않았다	문학인 시국선언 참가자	2014. 6. 2.
4	[전문] 문학인 시국선언	한겨레신문	2014. 6. 3.
5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명단	한국일보	2016. 10. 12.
6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문인 1217인 성명	한국작가회의 사무처	2015. 10. 30.
7	공지영·김경주·도정일…작가들도 “역사 읽을 자유마저 빼앗지 말라”	한겨레신문	2015. 10. 19.
8	제주출신 작가 유민, 첫 장편 소설 ‘시마연어’ 발간	제주의소리	2018. 3. 21.

2. 신청인 등 진술조사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전화면담 조사 외에 신청인의 주변 인물 등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조사 기한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제3절 | 조사 결과

1. 신청인의 시국선언 등 참여 내용

신청인은 2009. 6. 9. (재)한국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라 한다)의 소속 문학인들 514명이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제목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¹⁾ 이날 작가회의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사무실에서 문학평론가 염OO과 당시 최OO 이사장과 도종환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은 문인들이 회합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신OO, 백OO, 이OO, 송OO, 윤OO, 안OO 등 문학계 원로에서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참여했다.²⁾

시국선언문에서 문인들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의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 서거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쏟아내는 끝없는 비통함은 고인에 대한 애도에 한정되지 않고 붕괴 직전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책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인터넷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및 미디어 관련 악법 폐기 ▲냉전적 대북정책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2009. 6. 무렵에는 작가회의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전국의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시민단체와 연극인 등 문화예술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신청인은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인 6. 2.경 ‘4·16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작가회의 사무처에

1)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514인 명단 (2009. 6. 9.)

2) 한겨레신문, 「한국작가회의 “독재회귀 우려” 시국선언, 2009. 6. 9.

문의 결과 신청인의 이름은 참여 작가 명단에 없다 하였고, 2014. 6. 3.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전문] 문학인 시국선언' 제목의 기사에도 신청인의 이름은 없었다.³⁾

신청인이 2015. 10. 19.경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문인 1,217명 성명'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역사를 해석할 자유', '역사를 상상할 자유'를 위해 단일한 역사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참여 문인들은 "정부의 '단일한 역사 만들기' 책략은 현 정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폭력적으로 시행된 문학예술에 대한 검열과 연결되어 있다"며, "현실의 모순과 가난을 말할 수 있는 문학예술의 가치를 박근혜 정권은 일관되게 무시하고 차별해 왔으며, 이제 드디어 역사를 읽을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확인해본 바, 2009년과 2015년에 신청인은 필명인 '유민'의 이름으로 위에 서술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수집한 문체부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에서 관리하던 각종 블랙리스트 관련 기록에서 신청인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신청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미행, 감시, 해킹 등 사찰 여부

신청인은 2012. 10. 2.경부터 약 2개월여 간 백담사 '만해마을 문인집필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던 중 같은 집필실에 입주한 사람으로부터 작가에 대한 사상검증을 위한 불법 사찰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2014. 6. 2.경 '4·16 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이후부터 노트북이 해킹당하기 시작했다 하며, 낯선 자들로부터 감시와 미행을 받았고 차량에 대해서도 위치추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5. 3. 29. 차량을 폐차시키고 같은 해 5. 경 경남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미행, 감시, 차량추적 등과 관련하여 고소 여부를 상담했으나, '증거가 없어 고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경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대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담했으나 해킹 스파이 앱을 삭제했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청인은 2015. 8. 4.경 인터넷을 통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해킹, 추적감시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완전한 실체가 없어 수사할 수

3) 한겨레신문, 「'전문' 문학인 시국선언」, 2014. 6. 3.

없다’, ‘조사 성립 안 되므로 자료 남길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경에는 고향인 제주를 방문할 때도 수십 명이 몰려다니며 자신을 감시하는 정황이 있었다 하고, 9. 19.경 제주경찰청을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추적 감시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고소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은 해 12월 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노트북이 해킹당하여 이상 증상을 일으켜 고소장 접수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등이 국가권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2017. 1. 10.경 13명의 예술인(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 소설가 등)과 함께 중국 탈북루트 탐방기행을 함께 갔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해 밀착 감시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 21. 제2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현장 토론회(문학)’에 참가한 이후부터 추적 감시 및 인터넷 해킹 등의 현상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의 의혹 사항을 기초로 2012년 당시 ‘만해마을 문인집필실’에 입주하였던 문인들과 2017년 중국 기행에 동행했던 예술인 등을 특정하여 신청인의 제기 사항들을 조사하려 했으나 위원회의 조사 기한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72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72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1[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가. 신청 취지

신청인 김중미(이하 '신청인')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 10. 30. 공개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자신이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와 국가기관이 자신 및 주변인을 사찰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신청인은 2004년경 ~ 2008. 2. 14.까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의 활동 때문에 국정원이 2014. 3. 19.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리스트-」16. 2. 1. 현재」 중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중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문학분야(15. 6월) - 13명」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리스트는 위 사업의 심사위원 후보자가 2배수 정도로 구성된 이후, 위 심사위

원 리스트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에게 보내졌고, 오OO이 위 리스트를 2015. 6.경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검토 받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민노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시국선언 등의 활동을 한 자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위 사업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과 함께 활동한 유OO, 임OO, 최OO, 심OO은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 :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특21,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신청인] 김중미

제1절 | 사건 개요

1. 신청의 취지¹⁾

신청인 김중미(이하 ‘신청인’)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 10. 30. 공개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자신이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와 국가기관이 자신 및 주변인을 사찰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7. 12. 1.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²⁾

나. 조사의 목적

신청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유, 국가기관이 신청인 및 주변인을 부당하게 감시하였는지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조사 경과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8. 4. 23.
2	리스트-’16. 2. 1.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8. 4. 23.
3	인천지역 민노당 당원 134명 탈당, <레디앙>, 2008. 2. 13.	레디앙	2018. 4. 23.
4	봉준호 이어 변영주 및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 <오마이뉴스>, 2012. 4. 6.	오마이뉴스	2018. 4. 23.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3.
6	“정권교체 원한다” 시인·소설가 137명 선언문 발표, <경향신문>, 2012. 12. 13.	경향신문	2018. 4. 23.

2) 제15차 전원위원회 의결서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7	[시국선언] 작가 188명(6월9일), <한겨레>, 2009. 6. 10.	한겨레	2018. 4. 23.
8	2015년도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분야 모집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2018. 4. 23.
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3.
10	문화예술계531인, 민노당 지지선언, <아이뉴스24>, 2006. 5. 23.	아이뉴스	2018. 4. 23.

2. 신청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중미	신청인	전화통화결과보고 (2017. 12. 18.)
2	김중미	신청인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4. 23.)
3	장OO	2014. 1. 10. ~ 2015. 8. 23.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4. 23.)
4	양OO	2015. 8. 24. ~ 2015. 11. 22.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4. 23.)
5	정OO	예술위 문학지원부 부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4. 23.)

제3절 | 조사 사항·내용

1.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가.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³⁾

17	문학	김중미	민노당 당원	C
----	----	-----	--------	---

3)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 10. 30. 작성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 (1) 신청인의 이름은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
- 분야 : 문학
 - 특이사항 : 민노당 당원
 - 등급 : C
- (2) 위 블랙리스트에 ‘민노당(민주노동당, 이하 ‘민노당’) 당원’이라는 특이사항이 기재된 문화예술계 인사는 신청인, 김만곤, 강찬우, 김대승, 김태용, 문소리, 변영주, 봉준호, 오지혜, 조영각이다.
- (3) 신청인은 2004년경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하였으며,⁴⁾ 2008. 2. 14. 민노당에서 탈당하였다.⁵⁾ 이후 신청인은 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최근 노동당에서도 탈당하였다.⁶⁾ 한편, 신청인은 2006. 6. 23. ‘문화예술계 531인 지지선언’에 참여하여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⁷⁾ 위 지지선언에는 위 블랙리스트에 ‘민노당 당원’이라는 특이사항이 기재된 문화예술계 인사 중 김대승, 김태용, 변영주, 오지혜, 조영각이 기재되어 있다. 또, 신청인은 2012. 4. 6.경 ‘4·11 총선 진보신당 지지선언’에 참여하였다.⁸⁾
- (4) 국정원은 2014. 3. 19. 작성한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에서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 시국선언, 야당 인사 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였는데, 위 249명의 문제인물의 경우, 활동전력, 영향력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당시 국정원 지휘부도 위 보고서를 보고받고 호평하였다.

4) <https://blog.naver.com/madger/20003702611>

5) 인천지역 민노당 당원 134명 탈당, <레디앙>, 2008. 2. 13.

6) 신청인에 대한 2018. 4. 23.자 전화통화결과보고

7) 문화예술계531인, 민노당 지지선언, <아이뉴스24>, 2006. 5. 23.

8) 봉준호 이어 변영주 및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 <오마이뉴스>, 2012. 4. 6.

나.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262명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공인예술분야('15.4월말) -2명	차비당(서광일) ①이길준(하명새공인 출연), ②이지영(예화동 1번지 공인출연), ③ 시상현(협상)	-전원제외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문학분야('15.6월) - 13명	*심사위원: ①구효서, ②권명관, ③김태용 ④윤고은, ⑤김명희, ⑥박지현, ⑦김수현, ⑧김태훈(단순기말 출연) *지원자: ⑨김동훈, ⑩김민철, ⑪이정민, ⑫이나영(남/경주) (심사위원 8명)	

- (1) 신청인의 이름은 「리스트-」16. 2. 1. 현재」 중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중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문학분야('15. 6월) - 13명」에 '심사위원', 비교란에 전원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재판기록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⁹⁾
- 2015. 7.경 차세대예술인력지원 김동환 등 4명 등 총 113명의 배제 명단이 적힌 정무리스트가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내려왔다.
 -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는 2015년 문예진흥기금 정기 공모사업을 제외한 2015. 3.~12. 문예기금 연중사업, 예술국 소관 사업, 문화기반국 등 타 실국 사업 및 문화훈장 대상자 등에서 배제되어야 할 명단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 (3)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 천명관, 윤고은, 구병모, 김태용은 2012. 12. 14.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선언문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천명관은 위 선언을 주도하였다.¹⁰⁾ 구효서는 2009. 6. 9. 작가 188인 ‘6.9 작가선언’이라는 시국선언에 참가하였다.¹¹⁾ 신청인과 김탁환은 2004. 4. 12.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였다.

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제30쪽

10) “정권교체 원한다” 시인·소설가 137명 선언문 발표, <경향신문>, 2012. 12. 13.

11) [시국선언] 작가 188명(6월9일), <한겨레>, 2009. 6. 10.

2. 공모사업 등 지원·심사위원 배제 사실

가. 공모사업 등 지원 배제

(1) 신청인의 주장¹²⁾

신청인은 2017. 12. 18.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유정복 인천 시장 취임 후에는 예술위 등에 지원을 신청하거나, 인천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이에 관한 배제사실은 없다.

나.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분야 심사위원 배제

(1)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분야

예술위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학 분야 차세대 유망주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분야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¹³⁾ 위 사업의 세부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1단계(연 4차)	2단계(연 8회)	3단계(연 1회)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표 원고 검토·심의를 통한 작가 선발 • 온라인 작품 게재 및 원고료 지원 • 개별 비평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선발작가 중 우수작가 선발(차수별 4명)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독자와의 만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선발된 16명(차수별 4명)중 최종 5명을 선발해 시상금(1천만원) 지급 	
선발 규모	차수별	12명	4명	-
	연간	48명	16명	5명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응모 : 4월 중 • 2차 응모 : 6월 중 • 3차 응모 : 7월 중 • 4차 응모 : 9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12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및 발표 : 12월 	

12) 신청인에 대한 2017. 12. 18.자 전화통화결과보고

13) 2015년도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분야 모집안내

(2) 신청인이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분야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점에 관하여

(가) 신청인의 주장¹⁴⁾

신청인은 2018. 4. 23.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사업에 관해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나) 예술위 관계자의 주장

1) 참고인 장OO의 진술¹⁵⁾

2014. 1. 10. ~ 2015. 8. 23.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참고인 장OO은 2018. 4. 23.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사업 당시 담당자는 OOO이었으므로 자신은 이에 관해 알지 못한다.

2) 참고인 OOO의 진술¹⁶⁾

2015. 8. 24. ~ 2015. 11. 22. 예술위 창작지원부 부장이었던 참고인 OOO은 2018. 4. 23.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자신이 위 사업의 담당자였으나, 위 사업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만일 위 사업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면 문학지원부장인 정OO이 알고 있을 것이다.

3) 참고인 정OO의 진술¹⁷⁾

예술위 문학지원부 부장인 참고인 정OO은 2018. 4. 23.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위 사업의 심사위원풀이 2배수 정도로 구성되었는데, 이와 같이 심사위원풀이

14) 신청인에 대한 2017. 12. 18.자 전화통화결과보고

15) 참고인 장OO에 대한 2018. 4. 23.자 전화통화결과보고

16)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4. 23.자 전화통화결과보고

17) 참고인 정OO에 대한 2018. 4. 23.자 전화통화결과보고

구성된 이후 위 심사위원 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 오OO에게 보내졌고, 오OO이 이를 검토하여 예술위 부서장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위 사업 관련 리스트 심사위원에 기재된 구효서, 천명관, 김탁환, 윤고은, 김OO, 최 OO, 구병모, 김태용은 각 1회 이상 심사위원에 위촉되었고, 신청인 김중미만 심사위원에 위촉된 적이 없다.
- 당시 오OO은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상주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

1) 오OO의 진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재판기록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리스트는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명단들을 연중사업 리스트로 정리해둔 것이다.¹⁸⁾
- 괄호 안에 표시된 날짜는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통보된 날짜이다.¹⁹⁾
- 블랙리스트 배제작업은 당시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OO, 창작지원부장 장OO, 국제교류부장 류OO 등에게 주로 리스트를 유선으로 불러주거나 명단 숫자가 좀 많은 경우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만나 신청자 명단을 보고 배제자 명단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²⁰⁾

1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제33쪽

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제33쪽

2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제31쪽

3. 국가기관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변인을 부당하게 감시하거나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는지에 관한 점

가. 신청인의 진술

- 자신은 특별히 사찰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나, 함께 활동한 유OO, 임OO, 최OO, 심OO이 신청인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사찰을 당했는지 여부가 걱정된다.

나. 신청인 주변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여부

위 인물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가.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

신청인은 국정원이 2014. 3. 19. 작성한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249명)」과 前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관리한 「리스트-」16. 2. 1. 현재」 중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중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문학분야(15. 6월) - 13명」에 기재되어 있다.

나. 블랙리스트 등재 경위

- (1) 신청인은 2004년경 ~ 2008. 2. 14.까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최근 노동당에서 탈당하였다. 신청인이 2008. 2. 14. 민노당에서 탈당한 것은 인터넷에 기사로 게재된 사실이며

로, 신청인이 국정원이 2014. 3. 19.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에 기재된 것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의 활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리스트-’16. 2. 1. 현재」 중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중 「차세대예술훈육성사업 문학분야(’15. 6월) - 13명」은 위 사업의 심사위원 후보자가 2배수 정도로 구성된 이후, 위 심사위원 리스트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에게 보내졌고, 오OO이 위 리스트를 2015. 6.경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검토 받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민노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시국선언 등의 활동을 한 자들에 해당한다.

다. 공모사업 등 지원 배제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4년 이후에는 공모사업 등에 지원 신청한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에서 배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분야 심사위원 배제

관련자들의 진술 및 「리스트-’16. 2. 1. 현재」 중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중 「차세대예술훈육성사업 문학분야(’15. 6월) - 13명」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업의 심사위원 후보자가 2배수 정도로 구성된 이후, 위 심사위원 리스트가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에게 보내졌고, 오OO이 위 리스트를 2015. 6.경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검토 받아 정부비판적인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리스트를 확인한 후, 예술위에 위 인물들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위 사업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마. 신청인 주변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여부

신청인과 함께 활동한 유OO, 임OO, 최OO, 심OO은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가. 국가기관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변인을 부당하게 감시하였는지에 관한 점

우리 위원회의 조사권의 한계로 인하여 관계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의혹은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 기획·편집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집 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부록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 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비매품/무료

94300



9 791163 570370

ISBN 979-11-6357-037-0

ISBN 979-11-6357-035-6 (세트)